

# 경제통계시스템 효율화 방안

- 국민계정, 물가, 광공업생산 및 고용을 중심으로 -

2010년 8월

고려대학교

통계청 통계개발원

# 제 출 문

통계청 통계개발원장 귀하

본 보고서를 “경제통계시스템 효율화 방안 - 국민계정, 물가, 광공업생산 및 고용을 중심으로 -”의 최종 연구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0년 8월 31일

연구책임자 : 이 충 열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참여연구원 : 이 종 하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강사)

## < 목 차 >

### <요 약>

제 1 장 서론 .....	1
1. 연구의 목적 .....	1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론 .....	2
1) 연구의 범위 .....	2
2) 연구의 방법론과 구성 .....	3
제 2 장 국가통계시스템 .....	6
1. 국가통계시스템의 정의 .....	6
2. 국가통계기관 .....	7
1) 국가통계기관의 설립 .....	7
2) 국가통계기관이 갖추어야 할 성격 .....	8
(1) 독립성 .....	8
(2) 관련성 .....	9
(3) 정확성 및 신뢰성 .....	10
(4) 응답자의 정책 .....	10
3. 국가통계의 구분 .....	11
1) 조사통계 .....	11
2) 보고통계 .....	11
3) 가공통계 .....	12

4. 국가통계시스템의 구분 .....	12
1) 집중형시스템 .....	12
2) 분산형시스템 .....	14
3) 양시스템의 비교분석 .....	15
5. 국가통계시스템의 역사와 최근변화 .....	19
1) 경제통계의 중요성 증대 .....	19
2) 국가통계시스템의 발전 .....	20
3) 통계이용자의 증가 .....	20
4) 통계자료 보급경로의 다양화 .....	20
5) 국가통계기관의 생산성 향상 .....	21
6) 국가통계기관의 독립성 보장 .....	22
7) 기술개발과 통계의 발전 .....	22
8) 응답률 저하 .....	23
9) 국가통계기관의 통계 분석력 증가 .....	23
10) 국가통계의 발전 .....	24
6. 우리나라의 국가 통계시스템 .....	25
제 3 장 경제통계작성 시스템의 개요 .....	30
1. 경제통계의 정의 및 성격 .....	30
1) 경제통계의 정의 .....	30
2) 경제통계의 작성 목적 .....	30
3) 경제통계의 특징 .....	31
2. 우리나라의 경제통계 .....	33
1) 경제통계의 구분 .....	33
2) 주요 경제통계 .....	36
(1) 국민계정 .....	36

(2) 물가지수 .....	42
(3) 노동(고용 및 임금) .....	44
(4) 광공업생산지수 .....	45
(5) 재정 .....	46
제 4 장 최적 경제통계작성 시스템 .....	47
1. 최적 국가통계 및 최적경제통계 .....	47
1) 최적 국가통계 및 최적 경제통계 .....	47
2) 통계작성 비용 .....	47
3) 통계구분과 통계작성 비용 .....	48
2. 최적 경제통계 시스템 .....	50
1) 최적 국가통계시스템 .....	50
(1) 최적 국가통계시스템의 정의 .....	50
(2) 통계작성 시스템과 최적 국가통계 시스템 .....	51
2) 최적 경제통계시스템 .....	53
(1) 최적 경제통계시스템의 정의 .....	53
(2) 통계작성 시스템과 최적 경제통계시스템 .....	54
3. 경제통계와 품질 .....	56
1) 통계품질진단의 정의 및 관리의 필요성 .....	56
2) 주요 품질진단 기준 .....	56
(1) OECD 및 통계청의 통계품질진단 .....	56
(2) IMF의 경제통계품질 .....	58
4. 경제통계시스템의 효율성 .....	61
1) 개별 통계 작성의 효율성 .....	61
(1) 정의 .....	61
(2) 개별 경제통계의 최적작성시스템 판단 기준 .....	64

2) 그룹별 통계 작성의 효율성 .....	64
3) 경제통계 작성의 효율성 .....	65
4) 최근 통계 작성 환경 변화와 효율성 .....	68
제 5 장 우리나라의 주요 경제통계 및 작성 시스템 .....	70
1. 국민계정 .....	70
1) 개요 .....	70
2) 국민소득계정 .....	70
(1) 개요 .....	70
(2) 작성 절차 .....	73
3) 산업연관표 .....	75
(1) 개요 .....	75
(2) 주요특징 .....	78
4) 국제수지 .....	82
(1) 개요 .....	82
(2) 주요특징 .....	79
5) 자금순환 .....	84
(1) 개요 .....	84
(2) 주요특징 .....	84
6) 국민계정 종합 .....	85
2. 물가지수 .....	85
1) 개요 .....	85
2) 소비자물가지수 .....	87
3) 생산자물가지수 .....	88
4) 수출입물가지수 .....	89
5) 물가지수 종합 .....	90
3. 산업생산 .....	91

1) 광업제조업동향지수 .....	91
(1) 광공업생산지수의 개요 .....	91
(2) 작성방법 .....	92
4. 고용 및 임금 .....	93
1) 경제활동인구조사 .....	93
(1) 개요 .....	93
(2) 조사방법 .....	94
2) 사업체임금근로시간조사 .....	95
(1) 조사목적 .....	95
(2) 조사방법 .....	96
3) 종합 .....	96
5. 재정 .....	96
1) 개요 .....	96
6. 우리나라 경제통계시스템의 특성 .....	97
1) 분산형시스템 .....	97
2) 초기 한국은행의 역할 증대 .....	99
3) 통계청의 역할 증대와 집중형시스템의 성격 도입 .....	101
4) 통계품질의 개선과 신뢰성 확보 .....	102
5) 높은 IT 기술 활용성 .....	107
제 6 장 각국의 경제통계시스템 .....	109
1. 미국 .....	109
1) 개요 .....	109
2) 미국의 주요 경제통계시스템 .....	112
(1) 국민계정 .....	112
(2) 물가 .....	113
(3) 산업생산 .....	115

(4) 고용 .....	116
2. 영국 .....	116
1) 개요 .....	116
2) 영국의 주요 경제통계시스템 .....	118
(1) 국민계정 .....	118
(2) 물가 .....	120
(3) 산업생산 .....	121
(4) 고용 .....	121
3) 캐나다 .....	121
1) 개요 .....	121
2) 캐나다의 주요 경제통계시스템 .....	123
(1) 국민계정 .....	123
(2) 물가 .....	125
(3) 산업생산 .....	126
(4) 고용 .....	126
4) 호주 .....	127
1) 개요 .....	127
2) 호주의 주요 경제통계시스템 .....	128
(1) 국민계정 .....	128
(2) 물가 .....	130
(3) 산업생산 .....	131
(4) 고용 .....	131
5) 일본 .....	132
1) 개요 .....	132
2) 일본의 주요 경제통계시스템 .....	133
(1) 국민계정 .....	133



(2) 물가 .....	135
(3) 산업생산 .....	136
(4) 고용 .....	136
6) 독일 .....	137
1) 개요 .....	137
2) 독일의 주요 경제통계시스템 .....	137
(1) 국민계정 .....	137
(2) 물가 .....	138
(3) 산업생산 .....	139
(4) 고용 .....	139
7) 프랑스 .....	139
1) 개요 .....	139
2) 프랑스의 주요 경제통계시스템 .....	139
(1) 국민계정 .....	141
(2) 물가 .....	143
(3) 산업생산 .....	144
(4) 고용 .....	145
제 7 장 우리나라 주요 경제통계의 효율성 분석 .....	147
1. 개별 통계 .....	147
1) 국민소득계정 .....	147
(1) 통계품질 .....	147
(2) 통계작성 비용 .....	149
(3) 통계발표 및 홍보 .....	155
(4) 장기적인 효율성 유지 및 개선 .....	158
(5) 국민소득 계정 효율성 분석 종합 .....	160
2) 산업연관표 .....	162
(1) 품질진단 결과 .....	162

(2) 통계작성 비용 .....	163
(3) 통계발표 및 홍보 .....	167
(4) 장기적인 효율성 유지 및 개선 .....	169
(5) 산업연관 분석 효율성 분석 종합 .....	171
3) 국제수지 .....	171
(1) 통계품질 .....	171
(2) 통계작성비용 .....	173
(3) 통계발표 및 홍보 .....	176
(4) 장기적인 효율성 유지 및 개선 .....	178
(5) 국제수지 효율성 분석 종합 .....	179
4) 자금순환 .....	179
(1) 통계품질 .....	179
(2) 통계작성비용 .....	180
(3) 통계발표 및 홍보 .....	183
(4) 장기적인 효율성 유지 및 개선 .....	185
(5) 자금순환 효율성 분석 종합 .....	185
5) 소비자물가지수 .....	186
(1) 통계품질 .....	186
(2) 통계작성비용 .....	189
(3) 통계발표 및 홍보 .....	192
(4) 장기적인 효율성 유지 및 개선 .....	194
(5) 소비자물가 효율성 분석 종합 .....	194
6) 생산자물가지수 .....	194
(1) 통계품질 .....	194
(2) 통계작성비용 .....	196
(3) 통계발표 및 홍보 .....	201
(4) 장기적인 효율성 유지 및 개선 .....	202
(5) 생산자물가 효율성 분석 종합 .....	203
7) 수출입물가지수 .....	204

(1) 통계 품질 진단 .....	204
(2) 통계작성비용 .....	205
(3) 통계발표 및 홍보 .....	208
(4) 장기적인 효율성 유지 및 개선 .....	210
(5) 수출입물가 효율성 분석 종합 .....	211
8) 광공업생산지수 .....	211
(1) 통계품질 .....	211
(2) 통계작성비용 .....	213
(3) 통계발표 및 홍보 .....	215
(4) 장기적인 효율성 유지 및 개선 .....	216
(5) 광공업생산지수 효율성 분석 종합 .....	218
9) 경제활동인구조사 .....	219
(1) 통계품질 .....	211
(2) 통계작성비용 .....	220
(3) 통계발표 및 홍보 .....	223
(4) 장기적인 효율성 유지 및 개선 .....	224
(5) 경제활동인구 조사 효율성 분석 종합 .....	225
10) 사업체임금근로시간조사 .....	225
(1) 통계품질 .....	225
(2) 통계작성비용 .....	227
(3) 통계발표 및 홍보 .....	230
(4) 장기적인 효율성 유지 및 개선 .....	231
(5) 사업체임금근로시간조사 효율성 분석 종합 .....	233
2. 부문별 경제통계 .....	233
1) 국민계정 .....	233
2) 물가부문 .....	236
3) 산업생산지수 .....	239
4) 고용 및 임금 .....	241
3. 경제통계 시스템 .....	244

제 8 장 경제통계 효율화 정책 .....	248
1. 효율화 정책 설정의 기준 .....	248
2. 효율화 정책 방향 .....	252
1) 기준에 따른 평가 .....	252
2) 효율화 정책의 추진 .....	258
(1) 국민소득계정 .....	258
(2) 산업연관표 .....	260
(3) 국제수지 .....	261
(4) 자금순환 .....	261
(5) 소비자물가, 생산자물가 및 수출입물가 .....	262
(6) 사업체임금근로시간조사와 경제활동인구 .....	262
(7) 국민계정 4대 통계 동시 이전 .....	262
3. 주요 효율화 정책 .....	263
1) 주요 효율화 정책수단 .....	263
(1) 국가통계작성기관 이전 및 집중 .....	263
(2) 작성기관간 연계성 강화 .....	264
(3) 통계청이 통계작성의 일부 위탁업무 수행 .....	264
(4) 통계청의 조정 기능 활용 .....	265
2) 효율화 추진을 위한 통계청의 장단기 전략 .....	266
(1) 장기 전략 .....	266
(2) 단계별 전략 시행 .....	273
4. 효율화 방안 시나리오 .....	275
1) 작성기관 이전 시나리오의 종류와 내용 .....	275
(1) 작성기관 이전 시나리오의 포함 내용 .....	275
(2) 작성기관 이전 시나리오의 구분 .....	276
2) 단기적 이전 시나리오 .....	277
(1) 작성 기관 이전비용이 크지 않은 경우 .....	277

(2) 작성기관 이전비용이 큰 경우 .....278

제 9 장 결론 .....281

## <표 차례>

<표 2.1> 분산형시스템과 집중형시스템 비교 .....	17
<표 2.2> 분산형시스템인 미국과 집중형시스템인 캐나다의 시스템 비교	18
<표 2.3> 기관별 국가승인통계 현황 .....	27
<표 2.4> 주요 국가통계와 작성기관 .....	28
<표 3.1> 경제통계의 구분 .....	35
<표 4.1> 통계작성 별 비용 .....	50
<표 4.2> 통계작성 시스템 별 효율성 판단 기준표 .....	53
<표 4.3> 개별통계의 효율성 평가 기준표 .....	63
<표 4.4> 그룹별 통계의 효율성 평가 기준표 .....	65
<표 4.5> 경제통계의 효율성 평가 기준표 .....	67
<표 5.1> 우리나라 국민계정의 기준년 개편연혁 .....	71
<표 5.2> 국민소득 통계의 구성 .....	72
<표 5.3> 통계별 공표 내용 .....	75
<표 5.4> 각 산업연관표의 주요 특징 .....	76
<표 5.5> 산업연관표의 기본구조 .....	79
<표 5.6> 산업연관표에서 도출되는 계수 .....	80
<표 5.7> 우리나라의 주요 물가지수 비교 .....	86
<표 5.8> 한국은행에서 시작한 이관된 주요 경제통계 .....	100
<표 5.9> 통계청의 정기통계품질 진단 통계 수 .....	103
<표 5.10> 주요 한국통계의 IMF 품질진단 결과 .....	105
<표 5.11> 주요 선진국의 IMF품질진단 결과 .....	105
<표 5.12> 언론보도 관련한 통계청의 해명자료 .....	106
<표 5.13> 세계 주요국의 주요 정보통신시장 지표 .....	108
<표 6.1> 미국의 주요 10개 통계기관과 예산 내용 .....	110
<표 6.2> OMB 소속 주요 통계 작성기관의 인력구조 .....	111
<표 6.3> 미국의 국민계정통계 및 작성기관 .....	112
<표 6.4> 영국의 국민계정통계 및 작성기관 .....	119
<표 6.5> 캐나다의 국민계정통계 및 작성기관 .....	125

<표 6.6> 호주 통계청의 예산규모 .....	128
<표 6.7> 호주의 국민계정통계 및 작성기관 .....	129
<표 6.8> 일본의 통계예산 .....	134
<표 6.9> 일본의 국민계정통계 및 작성기관 .....	134
<표 6.10> 독일의 국민계정통계 및 작성기관 .....	138
<표 6.11> 프랑스의 국민계정통계 및 작성기관 .....	142
<표 6.12> 프랑스 산업생산지수 연혁 .....	142
<표 7.1> 국민소득계정 품질진단 결과 .....	148
<표 7.2> IMF의 국민계정 품질진단 결과 .....	150
<표 7.3> 한국은행의 국민계정 편제 연혁 .....	151
<표 7.4> 국민소득 계정의 원자료 구성 .....	153
<표 7.5> 2007년~2009년 국민계정 관련 한국은행 보도 자료 .....	156
<표 7.6> 국민계정관련 조사통계월보 논고와 계간 국민계정 관련 설명자료 .....	157
<표 7.7> 2007년~2009년 최근 한국은행의 주요 경제교육 .....	158
<표 7.8> 2007년~2010년 동안 한국은행의 국민소득계정 관련 연구 결과	159
<표 7.9> 주요 국민소득 계정의 영문국제발간물 .....	160
<표 7.10> 산업연관표 품질진단 결과 .....	162
<표 7.11> 한국은행의 산업연관표 편제 연혁 .....	164
<표 7.12> 2007년~2009년 산업연관표 관련 한국은행 보도 자료 .....	168
<표 7.13> 산업연관표 관련 조사통계월보 논고와 계간 국민계정 관련 설명 자료 .....	168
<표 7.14> 2007년~2009년 최근 한국은행의 주요 경제교육 .....	169
<표 7.15> 최근 한국은행의 산업연관표 관련 연구 결과 .....	170
<표 7.16> 국제수지 품질진단 결과 .....	172
<표 7.17> IMF의 국제수지 품질진단 결과 .....	174
<표 7.18> 국제수지 작성 연혁 .....	175
<표 7.19> 국제수지 홍보자료 .....	177
<표 7.20> 조사통계월보와 계간 국민계정의 국제수지 설명자료 .....	177
<표 7.21> 한국은행의 국제수지 관련 강연 .....	178

<표 7.22> 한국은행의 국제수지 관련 발간물 .....	178
<표 7.23> 자금순환 품질진단 결과 .....	180
<표 7.24> 자금순환통계 작성 연혁 .....	182
<표 7.25> 자금순환 홍보자료 .....	184
<표 7.26> 조사통계월보와 계간 국민계정의 자금순환 설명자료 .....	184
<표 7.27> 한국은행의 자금순환 관련 강연 .....	184
<표 7.28> 한국은행의 자금순환 관련 연구 .....	185
<표 7.29> 소비자물가조사 품질진단 결과 .....	187
<표 7.30> IMF의 소비자물가 품질진단 결과 .....	188
<표 7.31> 소비자물가통계 작성 연혁 .....	190
<표 7.32> 소비자물가 홍보자료 .....	193
<표 7.33> 소비자물가 관련 발간물 .....	193
<표 7.34> 통계청의 소비자물가 관련 강연 .....	193
<표 7.35> 통계청의 소비자물가 관련 연구 .....	194
<표 7.36> 생산자물가지수 품질진단 결과 .....	195
<표 7.37> IMF의 생산자물가 품질진단 결과 .....	197
<표 7.38> 생산자물가통계 작성 연혁 .....	198
<표 7.39> 2007년~2009년 생산자물가통계 관련 한국은행 보도 자료 .....	201
<표 7.40> 조사통계월보와 계간 국민계정의 생산자물가통계 설명자료 .....	202
<표 7.41> 한국은행의 생산자물가 관련 강연 .....	202
<표 7.42> 2005년 이후 한국은행의 생산자 물가지수 관련 연구 결과 .....	203
<표 7.43> 수출입물가지수 품질진단 결과 .....	204
<표 7.44> 한국은행의 수출입물가지수 편제 연혁 .....	205
<표 7.45> 2007~2009년 수출입 물가지수 관련 한국은행 보도 자료 .....	209
<표 7.46> 수출입 물가지수 관련 조사통계월보 논고와 계간 국민계정 관련 설명자료 .....	209
<표 7.47> 2007년~2009년 최근 한국은행의 주요 경제교육 .....	209
<표 7.48> 한국은행의 수출입물가통계 관련 연구 .....	211
<표 7.49> 광업제조업동향조사(구 광공업동태조사) 품질진단 결과 .....	212
<표 7.50> 산업생산지수의 주요 연혁 .....	214



<표 7.51> 2007년~2009년 산업생산지수 관련 통계청 보도자료 .....	216
<표 7.52> 통계청 산업생산지수관련 설명자료 .....	217
<표 7.53> 2007년~2009년 최근 통계청의 주요 경제교육 .....	217
<표 7.54> 통계청의 산업생산지수 관련 연구 결과 .....	218
<표 7.55> 경제활동인구조사 품질진단 결과 .....	219
<표 7.56> 경제활동인구조사 연혁 .....	221
<표 7.57> 2007년~2009년 경제활동인구조사 관련 통계청 보도자료 .....	223
<표 7.58>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관련 설명자료 .....	224
<표 7.59> 2007년~2009년 최근 통계청의 주요 경제교육 .....	224
<표 7.60> 경제활동인구조사 관련 연구 .....	225
<표 7.61> 사업체임금근로시간조사 품질진단 결과 .....	226
<표 7.62> 사업체임금근로시간조사의 주요 연혁 .....	229
<표 7.63> 2007년~2009년 사업체임금근로시간조사 관련 노동부 보도자료 .....	

231

<표 7.64> 고용노동부 사업체임금근로시간조사 관련 설명자료 .....	231
<표 7.65> 고용노동부의 사업체임금근로시간조사 관련 발간물 .....	232
<표 7.66> 주요국 국민계정 작성기관 .....	235
<표 7.67> 주요국의 물가통계 작성기관 .....	239
<표 7.68> 주요국의 산업생산 작성기관 .....	240
<표 7.69> 우리나라 고용 및 임금부문 통계작성 현황 .....	242
<표 7.70> 주요국의 고용 및 임금 통계 작성기관 .....	244
<표 7.71> 세계 주요국의 주요 경제지표 작성기관 .....	256

## 〈그림 차례〉

〈그림 1.1〉 본 연구의 구성 .....	5
〈그림 2.1〉 경제통계의 구분 .....	35
〈그림 4.1〉 부문별 통계시스템 구분 .....	66
〈그림 4.2〉 최적통계 작성구조 .....	67
〈그림 5.1〉 국민소득 편제작업 흐름도 .....	74
〈그림 5.2〉 2003년 산업연관표 작성과정 .....	81
〈그림 7.1〉 한국은행 국민소득팀 조직도 .....	151
〈그림 7.2〉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작성팀 구성 .....	164
〈그림 7.3〉 한국은행 국제수지팀 조직 .....	174
〈그림 7.4〉 한국은행 자금순환팀 조직 구성 .....	181
〈그림 7.5〉 통계청 물가동향과 조직구성 .....	189
〈그림 7.6〉 한국은행 물가통계팀 조직구성 .....	198
〈그림 7.7〉 통계청 산업통계과 조직구성 .....	213
〈그림 7.8〉 통계청 사회통계국 조직구성 .....	220
〈그림 7.9〉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 조직구성 .....	228

〈부록 차례〉

[ 부록 A. 1 ] 국민계정 추계를 위한 기초자료 .....	292
1. 생산계정 .....	299
2. 재화서비스(지출) 계정 .....	276
3. 분배(소득)계정 .....	302
[ 부록 A. 2 ] 소비자물가지수 .....	303
[ 부록 A. 3 ] 수입물가지수 .....	306
[ 부록 A. 4 ] 수출물가지수 .....	309
[ 부록 A. 5 ] 경제활동인구조사 및 임금 .....	311
[ 부록 A. 6 ] 생산자물가지수 .....	316
[ 부록 B. 1 ] IMF 통계품질평가프레임(Data Quality Assessment Framework) .....	321
[ 부록 B. 2 ] IMF의 일본 통계 품질진단결과 .....	324
[ 부록 B. 3 ] IMF의 독일 통계 품질진단결과 .....	325
[ 부록 B. 4 ] IMF의 이탈리아 통계 품질진단결과 .....	326
[ 부록 B. 5 ] 통계청 정기품질진단 결과(국민소득계정) .....	327
[ 부록 B. 6 ] 통계청 정기품질진단 결과(산업연관표) .....	328
[ 부록 B. 7 ] 통계청 정기품질진단 결과(국제수지) .....	329
[ 부록 B. 8 ] 통계청 정기품질진단 결과(자금순환표) .....	330
[ 부록 B. 9 ] 통계청 정기품질진단 결과(소비자물가지수) .....	331
[ 부록 B.10 ] 통계청 정기품질진단 결과(생산자물가지수) .....	332
[ 부록 B.11 ] 통계청 정기품질진단 결과(수출입물가지수) .....	333
[ 부록 B.12 ] 통계청 정기품질진단 결과(광업제조업동향조사(구광공업동태조사)) .....	334
[ 부록 B.13 ] 통계청 정기품질진단 결과(경제활동인구조사) .....	335
[ 부록 B.14 ] 통계청 정기품질진단 결과(사업체임금근로시간조사) .....	336
[ 부록 C. 1 ] 주요 국가통계작성기관 .....	337
[ 부록 C. 2 ] 산업연관표의 기초자료 구성 .....	339
[ 부록 C. 3 ] 우리나라 주요 경제통계 작성 기관 .....	344
[ 부록 C. 4 ] 국가승인통계 중 경제통계 현황 .....	350

## 〈요 약〉

### 1. 최적경제통계와 경제통계작성의 효율성 분석

- 경제통계는 국가통계의 일부를 구성하면서 경제현상을 반영하고, 이의 특징 및 변화를 나타내는 통계
  - 때문에 경제통계는 각종 경제정책의 수립과 소비자 및 기업들 경제활동 결정의 기초 자료로 사용되고 경제이론의 검증 수단으로 활용
  
- 우리나라의 경제통계는 2010년 10월 현재 33부문, 850종의 국가승인통계에서 전체 37%인 21개 부문의 321종의 통계가 해당
  - 이는 가계소비(소득), 건설, 경기, 고용, 광공업, 국민계정, 국제수지·외환, 금융, 기업경영, 농림, 도소매, 무역, 물가, 서비스, 수산, 에너지, 임금, 재정, 정보통신, 주택, 지역계정 등이 해당
  - 이때 시도기본통계 308종을 제외하면 전체 542종중 47.4%인 257종이 경제통계에 해당
  
- 효율적인 경제통계작성 시스템은 (1) 단기적으로 우수한 품질의 경제통계를 최소의 비용으로 작성하며, (2) 장기적으로 경제상황 및 통계작성 환경변화에 신속하게 적응하는 시스템을 의미
  - 이때 경제통계의 작성 비용을 고려할 때, 독립적인 개별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와 관련 통계를 같이 작성할 경우를 모두 고려할 수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경제통계의 정의를 (1) 개별통계, (2) 그룹별 통계 (3) 전체 경제통계 등으로 구분하여 설정
  
- 개별 통계작성의 효율성을 정의하기 위하여 최적 개별경제통계를 우수한 품질을 갖추면서, 독립적으로 가장 낮은 비용에서 생산되는 경제통계로 정의
  - 이를 보다 현실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현재 작성기관과 현재 통계청이 작성하는 유사 통계간의 상호 효율성을 비교하여 효율성을 평가

- 예를 들어, 한국은행의 국민소득계정과 통계청의 지역소득계정의 비교 시스템 및 성과를 비교
- 즉 개별 통계의 특성과 현 작성기관이 갖고 있는 통계작성시의 이점과 단점과 통계청이 갖는 이점과 단점을 비교하여 평가
- 예를 들어, 국민소득통계에서 한국은행은 현재 상당수준의 품질을 유지하고 있으며, 각종 지표작성의 노하우 축적, 지표 활용 및 분석능력에서 우수한 점을 보이고 있음, 반면, 통계청은 각종 원자료 수집시 비용절감의 가능성을 갖고, 새로운 원자료 수집을 통하여 지표 개선의 가능성을 갖고 있음)

□ 그룹별 통계작성의 효율성은 개별통계의 효율성이 유지되는 가운데, 그룹별로 통계작성 비용이 최소화하는 것을 의미

- 현 작성기관의 효율성과 이를 통계청이 작성한다고 가정할 경우의 효율성 비교하기 위하여 통계청 작성이 발생하는 규모의 경제 및 범위의 경제 효과 발생 가능성 제시
- 예를 들어 한국은행이 국민소득 계정만을 작성하지 않고, 국제수지, 산업연관표 등을 다른 국민계정을 작성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규모의 경제 효과 등을 의미
- 한편 보다 광위의 의미로, 국민소득 계정을 작성할 때, 산업생산이나 무역지표 등의 각종 지표를 작성할 경우 발생할수 있는 규모의 경제효과 역시 포함

□ 경제 통계작성의 효율성

- 개별통계의 효율성이 유지되는 가운데, 전반적인 경제통계작성 비용이 최소화

## 2. 우리나라 주요 경제통계의 효율성 분석

### 2.1 우리나라 경제통계시스템의 특성

□ 분산형시스템: 통계청이 전체 경제통계의 기획과 조정 업무를 담당하는 가운데 많은 작성기관이 필요에 따라 각종 경제통계를 작성하여 활용

- 역사적으로 분산형시스템을 사용하는 일본과 미국의 영향을 받은 가운데 최근에는 전반적으로 국가통계를 기획할 인재 및 경제적인 여유를 갖게 되었음

□ 초기 한국은행의 역할 증대: 통계작성을 위한 자원이 부족한 가운데 중앙은행이 경제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제통계를 자체적으로 작성하여 활용하였음

□ 통계청의 역할 증대와 집중형시스템의 성격 도입: 경제발전과 더불어 경제통계의 중요성 및 활용도가 증대되면서 이를 관장하는 통계청의 역할 증대되고 집중형시스템의 중요성이 강조

□ 통계품질의 개선과 신뢰성 확보: 통계 활용도가 높아지고, 통계품질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가운데 경제통계의 품질이 크게 개선되고 신뢰성이 확보

□ 높은 IT 기술 활용성: 국내의 IT기술 활용도가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하였기 때문에 이를 경제통계작성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음

## 2.2 우리나라 주요 경제통계 효율성 분석

□ 국민계정(국민소득, 산업연관표, 국제수지, 자금순환)

- 한국은행이 작성하는 국민계정 관련 4대 통계는 현재 개별통계의 효율성 측면에서 볼 때 매우 우수한 것으로 평가

\* 국민소득계정: 한국은행이 국민소득계정을 작성할 논리적 당위성은 없으나, 현재 국민소득계정의 품질진단 결과나 국민소득 지표를 활용한 다양한 관련 연구 및 홍보 실적에서 한국은행은 국내외적으로 매우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음.

0 그러나 관련 위성계정의 개발 및 행정자료의 활용 등 미래대비 통계수요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

- \* 산업연관표: 산업연관표는 많은 통계자료를 수집하여 장기간 분석하는 통계이기 때문에 통계청 작성이 보다 효율적일 가능성
  - \* 국제수지: 국제수지 통계는 무역 및 은행결제 등 금융관련 자료를 활용하기 때문에 중앙은행이 작성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
  - \* 자금순환: 자금순환 통계는 전반적인 금융기관의 각종 통계자료를 수집하여 작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앙은행이 작성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
- 부문별 통계에서 현재 한국은행은 4대 국민계정 지표를 모두 생산하면서 범위의 경제 효과를 이미 누리고 있음
    - \* 다만 국민소득계정이 많은 기초통계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작성하는 통계청이 직접 국민소득계정을 작성한다면 이에 수반되는 일부 규모의 경제 효과를 누릴 수 있음.
- 결론적으로, 통계작성 효율성면에서 통계청으로 국민소득관련 통계를 이관할 경우, 국민소득 통계작성의 효율성 개선 효과는 크지 않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를 이관한다고 주장할만한 근거가 부족
    - \* 다만 장기적으로 통계청이 작성할 경우 다양한 원자료를 활용하여 개선할 수 있는 이점이 존재하므로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 \* 이러한 이유로 효율성 개선 효과를 주장하여 국민계정 관련 4대 통계를 한꺼번에 통계청으로 이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먼저 이전시 효율성 면에서 가장 효과가 큰 산업연관표의 이전을 주장하고, 차차 다른 통계로 이전하는 것이 합리적

□ 물가(소비자물가, 생산자물가, 수출입물가)

- 현재 통계청이 소비자물가를, 한국은행이 생산자물가와 수출입물가를 작성하고 있음
  - \* 이때 이들 주요 물가지수는 개별 통계로서 품질의 우수성을 모두 인정받고 있음

- 그러나 이들 물가지수가 전국적인 표본조사를 통하여6 작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통계작성을 위한 지방사무소를 전국에 이미 갖고 있으면서, 보다 전문화된 인력으로 각종 조사를 수행하는 통계청이 작성할 경우, 보다 효율적일 수 가능성이 있음
- 또한 이들 물가지표들은 작성방법이 유사하고, 많은 표본조사를 활용하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통합하여 한 기관이 작성하면 규모의 경제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임
  - \* 특히 지수개편이나 개선시 유사한 방법론을 활용하기 때문에 한 기관이 작성할 경우 규모의 경제 효과를 누릴 수 있음

□ 산업생산(산업생산)

- 현재 통계청이 산업생산지수를 매우 효율적으로 작성하고 있는 형편
  - \* 전국적인 표본의 많은 자료를 활용하여 매월 작성할 수 있는 기관은 국내에서 현재 통계청이 유일한 기관으로 평가됨.

□ 고용 및 임금(경제활동인구, 사업체임금조사)

- 경제활동인구는 통계청이 전문성을 활용하여 우수한 품질로 작성하고 있으나, 사업체임금조사는 현재 고용노동부가 외주에 의하여 작성하고 있는 형편
  - \* 때문에 이들 통계를 통계청이 모두 작성할 경우 효율성 개선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 일반적으로 고용과 임금은 노동시장의 가장 중요한 변수들로 한기관이 이를 동시에 작성할 경우 규모의 경제효과가 발생할 것임



### 3. 경제통계효율화와 작성기관 이전

#### 3.1 주요 효율화 정책 실시 방안

- 주요 경제통계 효율화 정책 실시방안으로는 (1) 국가통계작성기관 이전 및 집중, (2) 작성기관간 연계성 강화, (3) 통계청이 통계작성의 일부 위탁업무 수행 (4) 통계청의 조정 기능 활용 등이 있음
  - 통계청은 해당 통계의 효율성 분석 결과에 기초하여 (1) 현 통계품질 수준평가, (2) 비용극소화, (3) 장기적인 개선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이들 방안중 일부를 선택하여 실시
  
- 작성기관 이전 방안은 (1) 통계이관 업무를 위한 협의 및 이전계획수립, (2) 해당 통계를 작성할 수 조직 작성, (3) 구체적인 인력 확충 및 이전 계획 수립 등이 필요
  
- 통계청이 일부 작성 지원하는 경우는 해당통계의 대한 분석 및 지원범위 협의하되, ① 통계청내에 종합컨설팅 부서를 구성하고 전문적으로 이를 실시하는 방안과 ② 현재 통계청내에서 현재 작성되는 통계와 가장 유사한 통계를 작성하는 부서가 협력하는 방안을 고려하되, 단기적으로는 ②를, 장기적으로 ①을 추진
  
- 통계청이 용역형식으로 대행하는 경우는 해당 통계에 대한 용역 가능성을 분석하고 계약하는 것으로 ① 외부용역 담당부서 설립하거나 ② 기존의 통계청내 유사통계 작성기관에서 TF를 만들어 수행 성립하는 두 가지 방안을 갖고 업무를 실시.
  - 이때 단기적으로 ②를 먼저 추진하되 장기적으로 ①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 3.2 주요 효율화 정책 추진을 위한 통계청의 준비 방안

- 통계청의 국가통계 작성 역할 강화
  - 통계청의 역할은 크게 (1) 국가통계의 관리와 조정과 (2) 국가통계의 작성 등으로 구성
  - 이때, 만약 통계청이 주요 통계를 직접 작성하여 효율성을 개선하려면 장기적으로 통계청의 통계 작성 역할을 보다 강조하여야 할 것임
- 통계청의 국가통계 효율화 방안 수립: 경제통계 역시 국가통계에 해당되기 때문에 경제통계 효율화 방안 역시 전반적인 국가통계 효율화 방안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
  - 경제통계 뿐만 아니라, 보건, 사회, 지역통계 등을 포함하는 전반적인 국가 통계 효율화방안 수립이 우선되어야 할 것임
- 장기적이고 점진적인 작성기관 이전 준비: 각종 경제통계가 오랜 기간동안 개별 기관들이 작성하여왔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들 통계작성의 효율성을 논하고, 구조조정을 실시하는 것은 보다 장기적이고 점진적인 관점에서 실시하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
- 통계청의 통계작성 역량 강화: 집중형 시스템을 활용한 통계효율성 개선을 위해서는 통계작성 역량 강화와 이를 위한 연구 결과 발표가 매우 필요
- 통계청의 홍보 강화: 통계청의 효율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통계청에 대한 신뢰성구축이 필수적이고 이를 위해서는 홍보 강화가 필요
  - 일반인에 대한 홍보뿐만 아니라 각종 학술활동을 통한 전문성 역량 과시 등이 필요
- 관련 통계 개발 추진: 통계청은 시장 수요에 부응하여 보다 필요시 적합한 통계를 개발하여 제공할 수 있는 경쟁력을 키워야 할 것임

- 유사통계 협력 및 통합 추진: 통계청은 국가통계작성 효율화를 추진하는 방안으로 각종 통계의 구조조정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작성기관과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여야 함

### 3.3 작성기관 이전 시나리오(국민계정을 중심으로)

- 통계청이 실제로 일부 통계를 이관하여 작성한다는 상황을 하나 가정하여 이에 대한 방안으로 2가지 안을 제시
- 제1안: 공동작업 실시 후 이전
  - 국민소득계정의 이전을 위하여 통계청과 한국은행이 공동연구 및 협업을 통해 국민계정의 연구 및 생산을 진행
- 제2안: 신규연구기관 수립 후 업무를 담당
  - 통계청 내에 국민소득 계정 작성 관련 업무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기관 등을 설립하고 이를 추진하는 방법

# 제 1 장 서론

## 1. 연구의 목적

경제통계는 우리나라 국민의 경제생활을 나타내는 통계지표들을 의미한다. 국민 생활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경제적인 요소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를 나타내는 경제 통계의 중요성은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하겠다.

먼저 정부는 경제통계를 통하여 보다 객관적으로 국민들의 생활수준 및 형태를 파악할 수 있게 되므로 이에 기초한 효과적인 정책을 수립할 수 있게 된다. 정부 정책의 가장 중요한 목적중의 하나가 국민들의 복지 및 생활 수준 향상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정부가 국민경제 현황을 정확하게 나타내는 각종 지표를 개발하여 작성하여 활용한다면, 매우 정확하고 신속하게 국민경제의 현실을 판단할 수 있게 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할 수 있게 된다.

둘째, 기업들 역시 이들 경제통계지표를 적절하게 기업활동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기업 역시 이들 경제통계를 활용한다면 보다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현재의 경제 수준을 판단하고 미래를 전망하여 각종 기업경영전략을 수립하고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경기선행지수나 동행지수의 변화에 기초하여 기업들은 미래 경제상황을 예상하고, 이에 적합한 전략을 수립할 수 있게 된다.

셋째, 가계들 역시 이들 경제통계지표를 사용하여 가계 경제활동이나 계획수립에 활용한다. 가계들은 각종 지표를 보고 자신들의 현재 소득 수준을 파악하고, 미래소득을 예상하여 지출활동을 하게 된다. 또한 각종 산업활동이나 산업구조의 변화에 기초하여 자신의 미래 직업활동을 선택하게 된다.

이렇게 경제통계는 국민생활이나 정책결정에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지만 실제로 이들 경제통계가 무엇이고, 이것이 과연 효율적으로 작성되고 있는가에 대한 연구는 별로 없다. 실제로 국내에서 아직까지 경제통계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내려져있지 않고, 몇 종의 통계가 경제통계인가에 대한 분석이 없는 실정이다. 예를 들어 경제통계소개서로 가장 일반적으로 인용되는 『알기쉬운 경제지표 해설』(한국은행 발간, 2010년)에서도 경제통계에 대한 특별한 정의를 제공하지 않고, 다만 중요 경제지표를 선정하고, 이를 직접 해설하고 있다. 다만 이책의 부록에서 주요 기관별 경제통계 작성현황에서 경제통계를 18개 기관이 108종의 통계를 작성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경제통계에 대한 정의가 뚜렷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구분이나 분류에 대한 구분이 뚜렷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더 나아가, 이 통계작성에 관련된

효율성 분석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 즉 국가경제를 나타내는 이들 지표들이 하나의 뚜렷한 분야로 인식되고 이들 통계 작성의 효율성을 분석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다. 다만 국가통계시스템에 대한 일부 연구에서 이들에 대한 언급이 다소 이루어져 있거나 국가통계 품질진단 사업의 하나로 경제분야 통계들에 대한 통계품질 연구가 진행되어 왔었다.<sup>1)</sup>

본 연구는 이러한 시점에서 최초로 경제통계를 정의하고, 이들의 성격을 조사하며 효율성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도출한 후 그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때 우리나라의 경제통계의 종류가 너무 많고, 다양하기 때문에 모든 통계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경제통계의 일반적인 정의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특성을 살펴본다.

그리고 본격적인 효율성 분석에서는 국민계정, 물가지수, 광공업생산지수 및 고용부문의 주요 통계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일반적으로 이들 통계는 국민경제를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통계들로 가장 인용이 되는 통계들이기 때문에 가장 시급하게 분석이 필요한 통계들이다.

한편 본 연구는 효율성 분석 연구를 수행하면서 이들 주요 통계의 효율성을 통계청의 작성 가능성과 비교하고, 작성기관 이전 가능성을 살펴본다. 즉 만약 이들 통계작성의 효율성이 통계청이 작성할 경우와 비교할 때 심각하게 차이가 난다면 이들 통계를 직접 통계청이 작성하는 것이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론

### 1) 연구의 범위

일반적으로 경제통계는 본 보고서의 3장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이 매우 다양하다. 통계청에 등록된 국가승인통계 중 통계부문별로 보았을 때 가계소비(소득), 건설, 경기, 고용, 광공업, 국민계정, 국제수지·외환, 금융, 기업경영, 농림, 도소매, 무역, 물가, 서비스, 수산, 에너지, 임금, 재정, 정보통신, 주택, 지역계정 등 21개 부문에 해당하는 통계가 이에 해당될 수 있다.<sup>2)</sup>

이때 본 연구는 주로 국민계정, 물가, 국제수지, 산업생산, 고용 등 거시경제통계

---

1) 2006년부터 통계청은 개별국가통계에 대한 품질진단을 실시하였다. 이때 국민계정, 소비자물가, 산업생산 등 주요 경제통계들은 인구나 각종 사회통계와 같이 품질진단을 받았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제4장 최적 경제통계작성 시스템의 3. 경제통계와 품질을 참조하시오.  
2) 경제통계에 대한 정의 및 구분 등과 본 연구가 국민계정, 물가, 국제수지 등에 한정된 이유 등은 모두 제3장에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다.

들을 다룬다. 이들 통계는 특정 산업이 아니라 전반적인 국민생활에 밀접한 관계를 갖는 통계로 국민경제를 가장 대표하는 통계들이기 때문이다.

## 2.2 연구의 방법론과 구성

본 연구는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림 1.1>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되며, 총 9장으로 진행된다.

제1장은 서론이고, 제2장은 국가통계시스템의 정의 및 각종 성격을 조사하고, 최근 국가통계시스템의 발전 동향을 살펴본다. 국가통계시스템은 일국의 통계를 기획·작성하는 총체적인 시스템으로 모든 통계의 효율성 및 발전 과정 분석은 국가통계의 효율성이나 발전 계획 및 전략에 기초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가통계의 최근 변화나 특성을 살펴보는 것은 본 연구의 시작이 된다. 이때 각국 국가통계 발전 과정 및 최근 선진각국 국가통계의 현황 등을 조사하여 포함한다.

즉 먼저 국가통계기관의 설립 역사를 조사하고, 국가통계기관이 갖추어야 할 성격으로 독립성, 관련성, 정확성 및 신뢰성 및 응답자관련 정책 등을 살펴본다. 이후 국가통계의 구분방법으로 조사통계, 보고통계, 가공통계 등을 제시한 후, 국가통계시스템의 구분으로 집중형시스템과 분산형시스템을 설명한 후, 이 두 시스템을 비교분석한다. 마지막으로 국가통계시스템의 최근 변화방향으로 1) 경제통계의 중요성 증대, 2) 국가통계시스템의 발전, 3) 통계이용자의 증가, 4) 통계자료 보급경로의 다양화, 5) 국가통계기관의 생산성 향상, 6) 국가통계기관의 독립성 보장, 7) 기술개발과 통계의 발전, 8) 응답률 저하, 9) 국가통계기관의 통계 분석력 증가 등을 살펴본다.

제3장은 경제통계의 정의 및 특성 및 최근 동향과 발전방향 등을 살펴본다. 본 연구의 주제인 경제통계의 효율성 분석을 위한 기초분석으로 경제통계의 기본성격을 살펴보고, 경제통계의 포함 범위 및 작성기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본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제통계를 분류별로 구분하고, 주요 경제통계로 (1) 국민계정, (2) 물가지수, (3) 노동(고용 및 임금), (4) 광공업생산지수, (5) 재정 등을 포함한다.

제4장은 이상의 분석을 사용하여 최적경제통계시스템을 정의하고, 이의 달성 조건을 살펴본다. 먼저 통계품질과 경제통계 작성 비용에 기초하여 최적 개별 경제통계를 정의하고, 이들을 구분한 부문통계시스템이 갖추어야 할 최적부문경제통계시스템을 정의하고, 마지막으로 전체적인 최적경제통계시스템을 정의하고 이들이 갖추어야 하는 성격을 제시한다. 이때 이들 통계의 작성비용을 통계기획, 조사, 자료분석, 홍보 등의 작성단계별로 구분하고 이들의 성격을 살펴본다. 개별 통계나 부문별

통계의 작성비용의 최소화를 비용함수를 통한 계량분석으로 점검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한편 이과정에서 통계품질진단의 중요성을 살펴보고, 주요 품질진단 기준으로 (1) OECD 및 통계청의 통계품질진단과 (2) IMF의 경제통계품질을 살펴본다. 또한 효율성의 기준으로 1) 개별 통계 작성의 효율성 2) 그룹별 통계 작성의 효율성, 3) 경제통계 작성의 효율성 등을 살펴본다.

제5장은 국내 경제통계의 현황과 작성 시스템이다. 이때 모든 경제통계를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주요 경제통계로, 국민계정, 물가, 산업생산, 노동 및 임금 등의 부문을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또한 우리나라 경제통계시스템의 특성으로 1) 분산형시스템, 2) 초기 한국은행의 역할 증대, 3) 통계청의 역할 증대와 집중형시스템의 성격 도입, 4) 통계품질의 개선과 신뢰성 확보, 5) 높은 IT 기술 활용성 등을 제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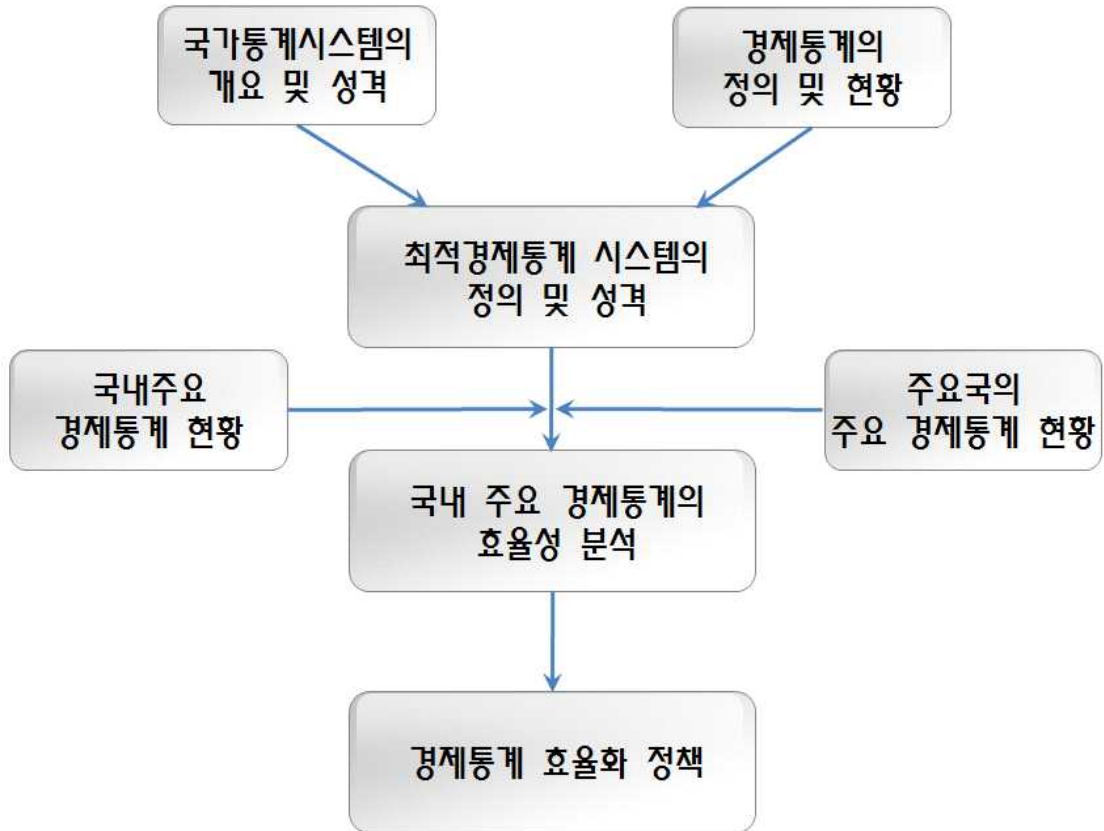
제6장은 세계 주요국의 주요 경제통계 현황 및 추세를 살펴본다. 집중형시스템을 택하고 있는 국가인 캐나다, 호주, 독일 등과 분산형시스템을 택하고 있는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등의 경제통계시스템의 현황과 발전과정 등을 조사한다. 이들 국가들의 다양한 경제통계작성시스템을 제시하여 우리나라 경제통계작성 시스템 개선방안 작성에 이용한다.

제7장은 최적경제통계작성 시스템의 정의 및 성격에 기초하여 우리나라 주요 경제통계 및 경제통계작성시스템의 효율성을 판단한다. 이때 이들 통계의 품질을 먼저 살펴보고, 이어서 비용극소화 여부를 판단한다. 현재 각 통계를 작성하는 기관이 하나이기 때문에 이의 효율성을 직접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들 통계를 통계청이 작성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효율성을 판단한다. 그리고 또한 통계작성시스템 구분이론과 관련 사용하여 간접적으로 제시한다.

제8장은 경제통계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한다. 먼저 효율화 정책 설정의 기준을 제시하고, 효율화 정책 방향을 설정하기 위하여 기준에 따른 평가결과를 제시하고, 각 통계에 대한 추진방향을 제시한다. 주요 효율화 정책수단으로는 (1) 국가통계작성기관 이전 및 집중, (2) 작성기관간 연계성 강화, (3) 통계청이 통계작성의 일부 위탁업무 수행, (4) 통계청의 조정 기능 활용을 등을 제시하고, 2) 효율화 추진을 위한 통계청의 장단기 전략을 설명한다. 이때 개별 통계 혹은 부문별 통계의 효율성 개선을 위하여의 통계청으로의 작성이전 가능성을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제9장은 본 연구의 결론을 제시한다.

<그림 1.1> 본 연구의 구성





## 제 2 장 국가통계시스템

### 1. 국가통계시스템의 정의

공식통계 혹은 국가통계는 국민들의 경제 및 사회생활, 의료, 교육, 환경 등과 같이 국민들의 생활의 주요 영역의 정보를 제공하는 각종 통계로 주로 정부나 공공기관 혹은 국제기구 등에서 작성하여 발표한다.<sup>3)4)</sup> 이들 국가통계들은 대체로 국가기관이 지정하고 고시하는 통계들도 대체로 일정한 품질을 유지하고 있다.<sup>5)</sup>

17세기 이전까지 국가통계는 국가의 중요 자원인 인구나 노동력을 조사하는 통계로 주로 정부의 효율적인 통치정책 수립을 위하여 작성되었다.<sup>6)</sup> 예를 들어, 당시 통치자인 국왕들은 정기적으로 노동력 조사를 실시한 후, 이에 기초하여 국가재정을 운영하고, 위기시 전쟁을 수행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후 사회가 발전하고 민주주의가 정착되면서 국가통계에 대한 수요는 다양하게 전개되었다. 즉 사회의 다양한 구성원들이 자신들의 고유한 목적으로 이러한 국가통계를 필요로 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민주주의 국가에서 일반 국민들은 국가나 사회에 대한 각종 통계를 알아야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고 이를 통하여 국가운영에 기여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정부 역시 국가 현황에 대한 통계에 기초하여 과학적인 정책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마지막으로 기업들 역시 사회현상에 대한 정확한 자료에 기초하여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경영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정보는 다양한 분야의 발전과 분야별 상호간의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것이고 개인 간, 국가 간 거래에 있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한편 20세기 후반 및 21세기 들어 지식정보화 사회가 도래되고, 네트워크가 발달됨에 따라 수많은 정보와 지식을 생산되고 교환되면서 이들의 활용을 위한 지식의

3) Official statistics are statistics published by government agencies or other public bodies such as international organizations. They provide quantitative or qualitative information on all major areas of citizens' lives, such as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living conditions, health, education, and the environment.(UN (2003), *Handbook of Statistical Organization; The Operation and Organization of a Statistical Agency, 3rd edition*, United Nations New York, 2003)

4) 우리나라의 통계법에 따르면 "통계"란 통계작성기관이 정부정책의 수립·평가 또는 경제·사회현상의 연구·분석 등에 활용할 목적으로 산업·물가·인구·주택·문화·환경 등 특정의 집단이나 대상 등에 관하여 직접 또는 다른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이하 "기관등"이라 한다)에 위임·위탁하여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를 의미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때 통계는 국가통계 혹은 공식통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다 본 연구의 정의보다 구체적으로 되어 있다.

5) 국가기관이 지정하고 고시하는 통계는 반드시 공공기관이나 정부가 작성하는 통계일 필요는 없다. 민간기관이 작성하는 통계라 할지라도 일정한 성격과 품질을 유지할 경우 공식통계가 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통계법 18조에 따라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새로운 통계를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 그 명칭, 종류, 목적, 조사대상, 조사방법, 조사사항의 성별구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미리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을 받은 통계는 승인통계 즉 국가통계가 된다.

6) 영어로 통계를 의미하는 Statistics는 라틴어 Status(state) 즉 국가 혹은 국가에 필요한 지식이라는 용어에서 기초한 것이다.

계량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민간수준에서 계량화된 정보나 지식은 명확성과 포괄성에서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민간부문에서 작성하는 정보나 지식은 그 작성하는 기관의 목적에 적합하게 작성되기 때문에 그 개관성이나 신뢰성에서 의문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최근 정부, 기업, 개인의 합리적 판단에 의한 의사결정을 뒷받침하는 인프라로서 국가통계(official statistics, governmental statistics)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사회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한편, 국가통계시스템(National Statistical System)은 이러한 국가통계를 기획하고 작성하는 총체적인 시스템을 의미하여 국가통계작성기관들과 이들에 관련된 법, 제도 등을 통칭하여 의미한다.

## 2. 국가통계기관

### 1) 국가통계기관의 설립

국가통계작성기관은 위에서 설명한 국가통계를 작성하는 기관을 의미한다. 이때 국가통계는 일정수준의 품질을 지니고, 신뢰성이 보장되어야 하는 등 일정한 성격을 지니게 된다. 때문에 국가통계를 작성하려는 기관은 사전에 해당 통계가 국가통계가 될 수 있는가를 특정 정부기관(우리나라의 경우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것이 이루어진 경우, 이 국가통계 작성기관은 국가통계작성기관이 된다.

한편, 국가통계기관(National Statistical Institute or National Statistical Office)은 (1) 국가통계작성기관을 기획, 총괄하는 기관으로 전반적인 조정업무를 수행하고, (2) 일부 혹은 상당수의 국가통계를 스스로 작성하기도 한다.

국가통계작성기관들은 공공성이 높은 통계를 작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체로 정부기관이나 각종 공공기관의 하나로서 존재한다.<sup>7)</sup>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통계청은 각종 센서스 및 동향조사 업무를 수행하고 이들 통계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분석하고 있다. 캐나다나 영국의 통계청 역시 다양한 통계를 작성하여 발표하고 있다. 한편 이밖에 많은 정부기관이 각종 통계를 작성한다. <부록 C>에 제시된바와 같이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은행, 각 부처 및 협회 등 공공기관이 많은 통계를 작성한다.

7) 일부 통계는 민간기관이 작성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각종 협회는 협회 소속 기관들의 자료를 취하여 통계를 작성하고 이를 국가통계에 포함할 수 있다. 이때에도 물론 민간기관의 통계가 국가통계가 되려면 정부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민간기관이 국가통계로 등록하려면 통계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국가통계작성기관은 서비스 조직으로 정부와 사회에 중요한 문제의 해결을 위한 정보의 제공 능력을 갖추게 된다. 즉 통계제공은 가계, 기업, 정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이들 활동의 효율성을 개선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절한 홍보 및 정보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 2) 국가통계기관이 갖추어야 할 성격<sup>8)</sup>

국가통계작성기관들은 우수한 질의 통계를 작성하여야 하고, 국가통계기관은 자신을 포함한 여러 국가통계작성기관들이 이러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총괄하는 역할을 한다.

이때, 통계의 질은 각 분야 응답자의 신뢰성이 보장된 자료의 제공에 달려있다. 그리고 대중으로부터 통계가 신뢰성을 얻기 위해서서 통계 작성기관은 반드시 통계 작성에 대한 기본원칙을 가지고 있어야한다. 이 UN에 정한 통계작성기본원칙에는 독립성, 타당성, 신뢰성 및 응답자의 권리 배려 또한 포함 되어야한다.

### (1) 독립성(Independence)

독립성은 통계작성기관에게 필수적인 요소로서 통계작성기관이 신뢰성을 얻고 대중과 정책 입안자들을 위한 정보의 제공 기능 수행을 위해서도 필수적인 요소이다. 만약 통계작성기관이 독립성 부족으로 신뢰성이 결여된다면 정보이용자들은 통계자료에 대한 정확성과 객관성을 신뢰하지 않게 되어 통계작성기관에 협력하지 않을 수 있게 된다.

독립성이 보장되려면, 본질적으로 통계 작성 기관은 정책집행과 정책입안의 기능을 수행하는 정부와 구분되어야한다. 이는 공정성을 확보하고 정보수집, 분석, 보고 과정이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 조정되어지거나 개인적인 자료가 정책집행의 목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이다.

통계작성기관의 독립성과 관련된 특성은 주로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첫째, 통계작성기관은 통계작성 범위, 내용, 자료 작성의 빈도, 분석, 출판에 대한 전문적인 결정권을 보유하여야 한다. 둘째, 통계작성기관은 전문적, 기술적, 운영직원의 선출과 승진에 대한 권한 보유이다. 셋째, 통계작성기관장은 작성된 통계에 대해서 정부나 대중보다 먼저 알 수 있는 권한을 보유이다. 만약 타 기관이 통계작성기관의 장보

---

8) 본 장에서 제시하는 내용은 *Handbook of Statistical Organization; The Operation and Organization of a Statistical Agency, 3rd edition*, United Nations New York, 2003 에서 인용한 것이다.

다도 먼저 알게 된다는 사실은 사실상 통계작성기관장보도 우월한 권한을 행사한다는 의미가 된다. 넷째, 통계작성기관은 주요 경제자료의 공표 시 정치적인 목적으로 공표일정의 조정을 방지하기 위해서 통계 자료 공표 일정을 미리 결정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정해진 시각에 통계를 발표하는 것은 통계신뢰성에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

다섯째, 통계작성기관은 공표된 통계자료를 통계에 대한 정치적 해석과 분명하게 구별되어야 한다. 통계는 정치적인 목적에 사용될 수 없기 때문이다.

여섯째, 통계작성기관은 대중매체와 인터넷 및 기타 수단을 통해 주기적이고 규칙적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 (2) 관련성(Relevance)

통계작성기관은 정확하고 시기적절하며 공공정책의 변화에 적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통계작성기관은 정책수요에 대응하고, 추가적으로 새로운 수요가 발생할 것에 대비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1990년대 초 언론과 경제학자들 사이에는 “New economy“ 의 존재에 대한 논쟁이 시작되었고, 이어 2~3년 이내에 선진국에서 매우 중요한 정치이슈가 되었다. 이는 결국 각 국의 GDP 추계의 정확성에 대해서 통계학자들의 의문으로 연결되었다.

국내에서도 1997~1998년 경제위기 이후 실업문제가 중요시 되면서 고용통계에 대한 관심이 매우 커지게 되었다. 특히 청년실업문제가 사회적인 이슈로 등장함에 따라 이들에 보다 집중한 청년패널자료가 신규로 작성되기 시작하였고, 이에 대한 유용성이 크게 증대되었다.

물론 통계학자들이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 모든 시사문제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통계자료의 개선 및 신규 통계작성에 몰입한다면 이 또한 많은 낭비를 유발할 것이다. 따라서 통계작성기관은 일시적인 이슈와 항구적인 이슈 등을 구분하고, 이슈의 중요성에 기초하여 신규통계를 작성하고 기존통계를 개선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통계작성 기관들은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첫째, 통계작성 기관은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 현실의 중요 이슈를 인식하여 통계를 작성하여야 하지만, 정치적 노선의 변화를 작게 하기 위하여 충분히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갖고 있어야 한다.

둘째, 통계작성의 예비 능력을 구축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수 있는 준비태세를 갖춰 통계작성기관의 본래의 기능에 방해가 되지 않아야 한다.

셋째, 통계작성기관은 현실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인력과 기관의 프로그램 변화

에 효과적으로 변화하기 위해 호환성을 갖춘 인력의 배출을 위한 인적자원개발정책을 갖고 있어야 한다.

넷째, 개별 통계작성기관은 다른 통계 작성기관과 통계작성의 기술적인 정보와 아이디어를 공유하여 데이터수집과 분석, 자료 홍보 기법 등이 상호 발전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조건이 성립할 경우, 이들 통계작성기관들은 현실 상황의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상당부분 보유하게 될 것이다.

### (3) 정확성 및 신뢰성

통계작성기관이 작성한 통계가 정확하지 않고, 이에 대한 신뢰가 성립되어 있지 않다면 이 통계에 기초한 각종 정책이나 활동이 크게 잘못될 것이고, 활용도 역시 크게 줄어들 것이다. 즉 정확하지 않는 통계는 단순히 통계의 오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활용한 잘못된 정책수립이나 전략수립을 통하여 많은 사회적비용을 유발할 수 있다. 또한 통계작성기관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질 경우, 누구도 사용하지 않는 통계가 작성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잘못 추정된 소비자물가지수에 기초하여 통화신용정책을 추진할 경우, 이는 실업이나 추가적인 인플레이션 유발을 통하여 수많은 국민들의 생활을 어렵게 할 것이다. 또한 통계작성기관에 대한 신뢰도가 낮다면 이 기관이 작성하는 통계의 활용도는 매우 낮게 된다. 따라서 통계의 신뢰성은 통계가 갖추어야 할, 통계작성기관의 갖추어야 할 매우 중요한 성격이 된다.

이를 위하여 통계작성기관은 자료수집의 요구조건 충족, 자료 가공방법, 결과의 도출에 대한 기준을 매우 엄격하게 설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통계작성기관은 직원들에게 높은 수준의 윤리기준과 동일한 수준의 직업관을 불어넣어야 한다. 이에 따라 통계작성시의 수집되는 원자료나 통계 생산방법 및 품질통제가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통계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통계청은 조직적으로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만약 통계작성기관에 의해 채택된 통계작성방법이 외부의 평가를 받고 통계자료의 공개를 통해 이용자들은 안심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 (4) 응답자의 정책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우수한 통계의 질은 응답자의 성실하고 정확한 답변에 의지한다. 이때 이들의 성실하고 정확한 답변을 얻으려면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실제로 응답자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것은 이들에 대한 비밀보장이다. 응답자에 대한 비밀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이들로부터 수집된 정보의 실은 보장될 수 없게 된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이들은 사실보다는 다른 내용으로 응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보장하기 위하여 법적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 있어야 할 것이며, 이들이 제공하는 정보의 오남용에 대한 우려를 줄이고, 도덕성 및 윤리관, 이들이 제공하는 정보의 가치 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하여야 할 것이다.

이때 주의사항은 이러한 노력은 통계작성기관의 독립적인 노력만으로는 어렵다는 것이다. 통계에 관련된 모든 기관들이 통계의 중요성이나 가치 등을 인식하고 사회적인 노력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 3. 국가통계의 구분

#### 1) 조사통계

조사통계란 통계작성기관이 조사대상에 대해 면접, 우편, 전화, 인터넷 등을 통해 직접 조사한 통계결과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경제활동인구조사, 광업제조업조사, 가계동향조사 등이 조사통계에 해당된다.

즉 가계동향조사는 가구에 대한 가계수지 실태를 파악하여 국민의 소득과 소비 수준변화의 측정 및 분석 등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작성되는 통계로 매 월 전국에 거주하는 일반가구 중 999개 조사구에서 약 9,000가구를 선택하여 가구의 실태에 관한 사항을 면접조사원이 기입식으로, 가계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을 가계부 자기기입식으로 작성한 조사표를 직접 방문 회수하거나 전자가계부 기입을 통하여 회수하여 작성한다.

또한 경제활동인구조사는 전국 27011개의 조사구를 추출단위 조사구로 선정하고, 이중 1629개 조사구를 대상으로 조사직원이 각 대상가구를 방문하여 면접과 동시에 조사내용을 PDA에 내장된 전자조사표(CAPI)에 직접 입력하여 작성한다.

#### 2) 보고통계

보고통계란 통계작성기관이 인가, 허가, 보고, 면허 등의 행정행위를 함으로서 부

수적으로 얻어지는 통계결과이다. 예를 들어, 많은 재정통계와 자동차등록통계, 화폐발행고 등이 이에 해당되겠다. 즉 조세수입은 국세청이 각종 세금으로 징수한 수입 통계로 보고통계가 된다. 한편 각종 통화지표는 한국은행이 본부 및 지역본부(16개)로부터 한국은행계정이나 일반은행의 각종 지표를 보고를 받아 작성하는 통계이다. 예를 들어 화폐발행고는 화폐발행잔액, 화폐발행·환수현황을 한국은행이 본점과 지점으로부터 받아 작성하고, M1은 현금통화와 요구불예금 통계를 한국은행과 각종 일반은행으로부터의 예금 자료를 보고 받아 작성하는 통계이다.

### 3) 가공통계

가공통계는 기존의 조사 또는 보고통계를 활용하여 새로운 형태의 지표, 지수 등으로 작성한 통계결과물을 의미한다. 가장 대표적인 가공통계로는 경기종합지수와 국민소득 통계 등을 들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기종합지수는 국민경제의 각 부문을 대표하고 경기대응성이 높은 각종 경제지표들을 선정한 후 이를 가공·종합하여 작성된 것으로 통계청에서 1981년 3월부터 매월 작성하고 있다.

이중 가장 대표적인 경기선행지수는 생산, 소비, 투자, 무역, 고용, 금융 등의 부문에서 10개 지표(재고순환지표, 소비자기대지수, 기계수주액(불변), 자본재수입액(실질), 건설수주액(실질) 순상품교역조건, 구인구직비율, 종합주가지수, 금융기관 유동성, 장단기금리차)를 결합하여 지수화 한 것이고, 경기동행지수는 생산, 소비, 무역, 고용 부문의 8개 지표(광공업생산지수, 제조업가동률지수, 건설기성액(실질), 서비스업생산지수(도소매업제외), 도소매업판매액지수(불변) 내수출하지수, 수입액(실질), 비농가취업자수)를 결합하여 지수화한 것이다.<sup>9)</sup>

## 4. 국가통계시스템의 구분

### 1) 집중형시스템

집중형 국가통계시스템(centralized system)은 하나의 독립된 정부기관이 국가의 중요 통계를 모두 기획하고 작성하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즉 각종 통계프로그램의 운영과 조정이 독립적인 정부기관의 국가통계최고책임자의 주도아래 이루어지는 시스템이다. 또한 집중형시스템하에서 국가통계 사용자들은 하나의 사용자로부터 여

9) 국민소득 계정에 대해서는 제5장에서 자세하게 다룰 것이므로 본장에서는 설명을 생략한다.

러 가지 다양한 통계정보를 얻고 서버이나 센서스 통계응답자들은 이들 하나의 기관을 상대하는 경우가 된다.<sup>10)</sup>

집중형 국가통계시스템의 이점은 하나의 기관이 여러 가지 통계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규모의 경제 및 범위의 경제 효과로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이점이 있다.

첫째, 전문성의 집중이다. 통계를 기획하고 작성하는 것은 매우 전문화된 작업이다. 때문에 하나의 기관이 국가통계의 전반적인 기획과 작성을 총괄할 경우 전문성이 집중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즉 국가 통계들은 대체로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필요한 통계의 기획이나 작성방법 선택 등에서 많은 고급 지식을 필요로 한다. 이때 이러한 고급지식을 보유한 인력들이 한 기관에 소속되어 있다면 이들의 능력을 각 통계작성시마다 매우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만약 국가통계가 많은 기관에 분산되어 있다면 이들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어렵고, 각 기관들은 단기간의 인력 활용을 위하여 장기간 고용하여야하는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다.

둘째, 한 기관 내 협조의 용이성이다. 즉 많은 통계들은 조사방법이나 분석방법 등이 유사하기 때문에 새로운 통계를 기획하거나 개발할 때 유사 혹은 주변 통계 전문가들의 도움을 필요하다. 이때 이들이 하나의 기관에 소속되어 있다면 이들과 손쉽게 협조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셋째, 운영을 위한 장치와 노하우의 집중이다. 통계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낮은 비용으로 우수한 원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분석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 이 경우, 많은 원자료 수집시 전국적인 표본조사와 인터뷰를 거치면서 많은 비용이 소요되게 된다. 이 경우, 집중형시스템하에서는 지역의 필드직원의 관리와 구성 등에서 규모의 경제효과를 누릴 가능성이 매우 커지게 된다. 또한 대용량의 수집된 자료를 가공 분석하는 과정에서 방법론에 대한 많은 노하우를 쌓을 수 있게 된다.

넷째, 정치적인 간섭으로부터 통계품질과 공정성, 작성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보다 용이하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우수한 통계는 정치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는 객관성이 보장되어야한다. 만약 통계작성기관이 통계활용기관과 동일하고, 각 통계활용기관이 이들 국가통계를 작성한다면, 이들의 독립성은 쉽게 훼손될 가능성

---

10) ..A national statistical service is centralized if the management and operations of the statistical programmes are predominantly the responsibility of a single autonomous government agency, headed by the country's chief statistician. Centralization can include outposting of staff to other departments or the delegation of certain functions to geographically separate units, which, however, remain subordinate to the central authority.. it is also convenient and efficient for users to secure statistical materials in a variety of fields from a single source, and that respondents to censuses and surveys find it convenient to deal with a single office, especially if they suspect duplication in *Handbook of Statistical Organization, 3rd edition, The Operation and Organization of a Statistical Agency*, United Nations New York, 2003 .



이 높다. 즉 통계작성자의 인사권을 통계활용부처 혹은 해당통계의 목표치 달성여부에 따라 평가받는 부처가 갖게 되므로 이 통계는 객관성을 잃고 정확하지 않게 추정될 가능성이 보다 높아진다.

## 2) 분산형시스템

분산형 국가통계시스템(decentralized system)은 여러 기관이 독립적으로 각 기관의 필요에 따라 국가통계를 기획 및 작성하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분산형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기본 형태를 가진다.

첫째, 중앙의 조정기구를 갖추고 작성통계의 주제에 따라 통계작성기관이 구분되는 분산형시스템이다.

둘째, 중앙정부의 조정기구나 기능이 없는 가운데 작성통계의 주제에 따라 통계작성기관이 구분되는 분산형시스템이다.

셋째, 중앙정부의 조정기구가 기능이 매우 작은 가운데 작성통계의 주제에 따라 통계작성기관이 구분되는 분산형시스템이다.

이중 첫 번째 시스템은 대체로 통계작성의 과거 역사상 해당 기관이 작성하거나 통계수요가 급격하게 발생하여 필요에 따라 해당 기관이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이다. 두 번째 경우와 세 번째 경우는 중앙정부기관의 역할이 없거나 매우 제한된 가운데 각 통계작성기관이 독립적으로 작성하는 경우이다. 이 둘의 차이점은 제도적인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다. 즉 두 번째 경우는 제도적으로 중앙정부기관의 역할이 없는 경우이고, 세 번째 경우는 제도적으로 존재하나 그 역할이 여러 가지 이유로 매우 미약한 경우이다.

분산형시스템은 국가 규모가 큰 연방국가에서 많이 발생한다. 각 지역별 산업이나 기후, 인구구조 등이 서로 다를 경우, 각 지역정부들은 필요에 따라 매우 다른 통계를 작성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분산형시스템의 한 형태로 주제선정 및 통계작성 기준 선정은 중앙기관이 하고, 각 지방정부는 이를 작성하도록 자율권을 보장받는 경우도 있다.<sup>11)</sup>

분산형시스템이 집중형시스템에 비하여 갖게 되는 이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해당 통계에 특별한 지식을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통계작성기관이 관련 통계를 활용하는 기관과 가깝기 때문에 통계작성기관은 해당 통계의 특수한 성격이나 필요성 등을 항시 인식하고 보다 유용한 통계를 작성하려는 인센티브가 존재한다

둘째, 통계작성기관은 사용자의 수요 변화에 적극적으로 쉽게 적용할 수 있다. 앞

11) 독일이 이에 해당하고, 영국도 일부 이에 해당한다.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가통계가 갖추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성격중의 하나는 관련성이다. 즉 통계는 필요에 따라 작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관련성이 높은 통계는 그 유용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경제구조 변화나 사회구조 변화를 반영하여 통계가 개선되어야 하는데 이 경우 매우 빠르게 이를 진행할 수 이점이 있다.

셋째, 국가통계의 발전이 중앙통계작성 기관장의 자질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집중형시스템에서 중앙통계작성 기관장은 통계품질 개선이나 통계 발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리고 중앙통계작성 기관장의 능력과 윤리성은 통계발전의 연관성이 매우 큰데 이것이 때로는 통계발전의 저해요인이 될 수 있다. 즉 중앙정부가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로 부적합한 통계작성기관장을 임명할 경우, 통계의 품질은 떨어지고, 신뢰성이 크게 하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국가 통계는 신뢰성이 매우 중요한데 이것이 일단 떨어질 경우, 이를 회복하는 데에는 너무도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분산형시스템에서 잘못 선출한 기관장의 영향력은 다른 기타 기관으로의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고 단지 특정 기관만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을 최소화한다고 할 수 있다.

넷째, 권력집중을 막는다. 통계작성기관 역시 정부의 한 기관에 속한다. 때문에 통계작성기관의 형태는 전반적인 정부의 구조나 정치적인 구조에 영향을 받는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권력집중에 대한 방이나 개인 자유의 보장을 매우 중요시하기 때문에 하나의 기관이 모든 통계를 작성하고 보유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게 되어 분산형시스템을 선호하게 된다. 또한 독일의 경우 역사적으로 지방정부의 역할이 큰 연방제이기 때문에 지역별 통계 자료 수집이 독립적으로 이루어진다.

넷째, 통계작성 기관들간의 경쟁유발로 통계품질 개선이 빠르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통계작성기관들이 분산되어 있는 가운데 유사한 종류의 통계를 서로 다른 기관이 작성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의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는 반면, 서로 통계를 경쟁적으로 작성하여 통계품질이 장기적으로 쉽게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

### 3) 양시스템의 비교분석

현실적으로 모든 국가통계를 하나의 기관이 기획하고 작성하는 국가는 없고, 여러 기관이 독립적으로 각 기관이 필요에 따라 통계를 작성하는 국가도 없다.

다만 중앙정부의 국가통계기관이 상대적으로 많은 중요 통계를 기획하고 작성할 경우, 이를 집중형시스템이라고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이를 분산형시스템이라고 칭하고 있다.

때문에 현실적으로 집중형시스템과 분산형시스템의 구분은 다음과 같은 점을 고

려하여 이루어진다.

첫째, 통계조정능력의 정도이다. 국가 통계는 국가통계시스템 하에서 작성되면서 각종 통계들간의 조정이 필요하다. 통계작성에 대한 기법이나 개념, 정의, 분류 및 자료수집 방식 등에서 여러 가지 표준화가 필요하며 유사중복 통계의 작성을 통한 비효율을 막기 위해서도 이러한 조정이 필요하다. 이때 이러한 조정능력이 여부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sup>12)</sup>

둘째, 국가통계기관의 주요 통계의 작성 및 발표 여부이다. 국가통계기관이 주요 통계를 작성하고 발표할 경우, 이는 국가통계기관의 역할이 매우 크다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sup>13)</sup>

셋째, 국가통계기관의 브랜드 가치 역시 매우 중요한 고려대상이 된다. 실제 독립 작성기관의 법적인 독립성과는 별도로 일반 대상이나 국민에게 통계작성기관이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 가 혹은 독립성을 보유하고 있는 가에 대한 인식 역시 실제로 통계시스템의 결정요인이 될 수 있다.

넷째, 통계시스템의 독립성 여부의 주요한 기준으로 예산 확보의 독립성을 지적할 수 있다. 만약 독립된 국가통계기관이 독립적인 예산을 부여받는다면 이는 집중형시스템의 근거가 될 수 있다. 더욱이 국가통계기관이 이 예산을 받아서 다른 기관의 통계작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 이는 더욱더 국가통계기관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시스템이 될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집중형시스템과 분산형시스템 모두 서로 다른 이점과 단점을 갖고 있다. 때문에 어느 특정한 시스템이 보다 우수하다고 볼 수 없고, 다만 각 국가의 통계작성에 관련된 역사적인 배경이나 정치적인 철학 등에 기초하여 집중형시스템을 선택한 경우가 있고, 분산형시스템을 선택한 경우가 있다.

각 시스템의 장점과 단점이 매우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들 국가들은 대체로 각 시스템의 장점을 활용하되 단점을 보완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추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최근 각국 통계제도 변화 특성중의 하나가 양 시스템의 수렴화이다. 다음절

---

12) "... A national statistical service is centralized if the management and operations of the statistical programmes are predominantly the responsibility of a single autonomous government agency, headed by the country's chief statistician. Centralization can include outposting of staff to other departments or the delegation of certain functions to geographically separate units, which, however, remain subordinate to the central authority." in *Handbook of Statistical Organization*, published in 1980

13) "...A system of this nature is typified by the establishment of one department within the Government to organize and operate a scheme of coordinated social and economic statistics pertaining to the whole country. This department collects, compiles and publishes statistical information ... and, in addition, collaborates with other departments of Government in the compilation of administrative and specialized statistics." in *Handbook of Statistical Organization*, published in 1954

에서 보다 자세하게 살펴보겠지만 전통적으로 집중형시스템을 선택하고 있는 국가는 분산형시스템의 장점을 받아들이기 위하여 일부 통계의 분권화를 시도하고, 반대로 분산형시스템을 선택하고 있는 국가는 집중형시스템의 장점을 받아 일부 집중형시스템의 특징을 찾아 가는 것이다.

<표 2.1> 분산형시스템과 집중형시스템 비교

(a) 평가기준

	집중형시스템	분산형시스템
통계조정능력	국가통계기관이 커다란 조정능력을 보유	국가통계기관이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하여도 조정능력이 크지 않음
주요 통계작성	국가통계기관이 주요 통계를 상당수 작성	개별 기관이 주요 통계를 작성
국가통계기관의 브랜드 가치	국가통계기관의 브랜드 가치나 영향력이 높음	국가통계기관의 브랜드 가치나 영향력이 높지 않음
통계작성기관의 예산독립성	국가통계기관이 전반적인 통계작성의 예산을 조정	국가통계기관이 예산 조정능력이 없음

(b) 양 시스템의 장점

집중형시스템	분산형시스템
공급부문에서 통계 작성의 전문성 집중	개별 통계 수요 변화에 빠르고 적극적 대응 가능
기관내 협조 용이	통계활용기관과 접촉이 용이하므로 개별 통계 관련 지식활용 가능
운영을 위한 장치 및 노하우의 집중	중앙통계기관장의 영향을 덜받아 민주적으로 개별통계가 작성됨
정치적인 간섭으로부터 작성의 자유를 보장하기 보다 용이	권력집중을 막을 수 있음

<표 2.2> 분산형시스템인 미국과 집중형시스템인 캐나다의 시스템 비교

(a) 주요 사항

	미국	캐나다
통계관련법	각 기관에 해당하는 많은 법이 존재함	Statistics Act 법에 따라 캐나다 통계청의 모든 활동에 대한 법을 명시하고 있음
자료공유 정도	연방통계시스템의 각 기관들 사이에 상당한 제한이 있음	행정기록 관련 자료를 거의 제한 없이 접근하고, 통계청 각 부서가 자료를 공유할 수 있음
법의 종류	각 기관들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법과 통계자료 사용에 관한 법령과 프로그램이 따로 작성	하나의 법으로 통일됨
Privacy 관련	The Privacy Act와 Freedom of Information Act가 개인신상 관련 조항을 구체화하고 개인신상 관련 자료 발표를 제한함	Canada's Access to Information Act와 Privacy Act가 자료에 응답한 개인의 기밀성을 보호함
기밀성관련	기밀성과 관련하여 하나의 법이 대체로 한 기관에만 적용. 최초로 자료를 수집한 기관은 다른 기관과 자료 공유할 수 있는 것이 제한됨	Canada's Privacy Act는 자료 제공자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자료에 대해 기밀성을 유지하고 개인정보의 수집과 사용을 결정

(b) 통계청장의 역할

	미국	캐나다
공통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0 통계시스템 관련 일을 조정 또는 종합</li> <li>0 각 국가의 최고 고위직 공무원에 해당</li> <li>0 정치적 간섭으로부터의 독립을 위해 법적보호아래 업무수행</li> </ul>	
차이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0 Senior Executive Service 지위로 Office of Information and Regulatory Affairs (OIRA)의 기관장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음</li> <li>0 OMB의 Statistical Policy Branch를 지휘하며 연방통계시스템을 종합할 책임이 있으나 통계정보의 생성, 보급에는 직접적인 책임이 없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0 수상에 의해 선택되는 최고위직 공무원.</li> <li>0 캐나다 통계청장으로서 대부분의 국가 공식 통계 정보를 생성하고 보급시키는 책임이 있음</li> </ul>

주: 이때 양국 통계청장은 Chief Statistician을 의미하는 것임. 즉 미국은 통계청이 없으나 이를 책임지는 직위의 해당자를 의미함

## 5. 국가통계시스템의 역사와 최근 변화<sup>14)</sup>

2차 대전 이후 최근까지 유럽을 비롯한 선진국국가의 재건계획 수립과 개도국의 발전과정에서 국가통계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각국은 우수한 국가통계를 효율적으로 작성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수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국제기구는 매우 커다란 역할을 하였다. 특히 1947년에 공식통계 혹은 국가통계의 발전을 위하여 설립된 UN의 국제연합통계위원회(National United Statistical Commission)는 많은 역할을 하였다. 국제연합통계위원회는 먼저 국가통계시스템의 기준을 설정하고, 각종 국가통계의 작성방법을 제시하고, 통일하였으며, 신규통계의 작성 연구를 수행하였고 개도국의 통계개발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또한 OECD나 유럽연합 역시 개별 국가 통계의 편차를 줄이고 상호간의 이익을 공유하는 활동을 하여 국제간의 통계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각국 국가통계에서 나타난 추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경제통계의 중요성 증대

경제통계는 행정적인 시스템(예. 세관, 조세, 노동판례, 건물허가)과 경제센서스 또는 농업이나 제조업 같은 주요 산업에 대한 센서스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국민경제생활 측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국민소득과 국제수지, 물가 등 주요 통계의 작성법이 통일되었고, 여러 가지 방면으로 활용되기 시작하였다.

이는 크게 다음과 같은 이유에 기인한다. 먼저, 1930년대 경제정책의 실패로 거시경제정책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각종 통계의 필요성이 등장하였다. 또한 2차 대전이후 각국이 경제재건을 가장 우선적인 정책 순위로 삼으면서 경제변수들에 대한 정확한 통계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그리고 각종 경제이론의 발전과 함께 이들 이론들을 활용할 통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마지막으로 정부 뿐만 아니라, 일반 개인이나 기업 등도 이러한 경제통계에 기반한 활동에 익숙하게 되어 새로운 통계를 계속 필요로 하게 되었다.

예를 들어, 케인즈 이론이 활용됨에 따라 지출국민계정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이들에 대한 보다 정확하게 세분화된 통계가 작성되게 되었고, 서비스부문의 발전에 따라 무형 및 유형 요소들을 포함하는 각종 통계가 발전하게 되었다. 인플레이션이

14) 본 내용은 2007년에 개최된 UN 국가통계세미나에서 발표된 “The evolution of national statistical systems: Trends and implications.”를 요약한 것이다. 이는 후에 Statistical Journal of the IAOS 24 (2007) 5-33에 게재되었다.

통화정책의 목표변수가 되어 그 유용성이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물가에 관련된 다양한 지표가 개발되었다.<sup>15)</sup>

또한 각종 경제지표는 금융시장에 커다란 영향을 주게 되었고 정치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변수가 되었다. 예를 들어, EU지역에서, 거시경제 지표에 기초하여 마스트리히트 조약을 만들었고, 유럽통합의 기초 여건을 도출하였다.

## 2) 국가통계시스템의 발전

과거 각국 국가통계가 차지하는 역할이 점차 커짐에 따라 이를 작성하는 부서나 부처의 역할은 더욱 커지게 되었고 이는 정형화된 국가통계시스템의 형태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각 국들은 통계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관련 예산이나 기구를 확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더욱이 최근 들어서는 분산형시스템을 가진 국가들은 전체 통계시스템의 단결성(cohesion)과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 보다 통합성을 높이려는 경향이 나타나게 되었고 이는 결국 국가통계기구(National Statistics Office)의 역할 강화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집중형시스템가 통계작성면에서 여러 가지 이점이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로 표시된다.

## 3) 통계이용자의 증가

지난 수십년동안 통계사용자의 수가 크게 늘어났고, 그 활용도가 크게 높아졌다. 보다 많은 사용자들은 양질의 다양한 통계를 수요하게 되었고 이는 통계청에 많은 압력으로 등장하였다. 반면 이러한 통계수요의 증가는 통계작성기관의 역할 강화라는 긍정적인 효과로 나타났다.

이용자 참여는 크게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형태로 이루어진다. 첫째, 국가통계기관이 통계 주 사용자들의 관심사와 요구를 수용하여 통계를 개발하고 개선하는 경우와 둘째, 통계발전 계획을 이용자들에게 인지시키고, 이들이 관심을 얻을 수 있는 통계 결과물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국가통계기관은 이들과 다양한 소통의 틀을 갖고 있어야 한다.

## 4) 통계자료 보급경로의 다양화

---

15) 예를들어 목표물가상승률 제도하에서 어떠한 물가를 목표 물가로 삼는가에 대한 논쟁이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근원인플레이션(core inflation)이라는 용어와 이를 추정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개발되었다.

지난 수십년 동안 통계를 보급하는 방법은 크게 변화하였다. 2차 대전 이후 1990년대까지 대부분의 통계는 종이로 된 인쇄물형태로 발표되었고 그 수 역시 매우 작았다. 이후 경제발전에 따라 다양한 통계공표수요가 증가하였지만 종이 형태로 분배되는 통계자료로는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전자식으로 통계자료를 제공하기 시작하면서 이러한 추세는 크게 바뀌기 시작하였다. 먼저 전자 데이터의 등장은 통계시점을 크게 단축할 수 있게 되어 보다 현실에 근접한 통계를 발표할 수 있게 되었고, 보다 자세한 통계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으며, 각종 그림이나 도표 등을 활용하여 보다 손쉽게 이해할 수 있는 통계작성이 가능하게 되었다.

특히 과거 통계간행물의 경우, 통계테이블만이 자료에 대한 설명이 거의 없이 발표되었으나 이제는 통계발표시 통계분석에 대한 각종 설명(eg.계절조정)이나 통계이용자의 이해를 돕는 내용을 포함하여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트렌드와 차이를 정확하게 나타내는 그래프와 개념에 대한 설명, 출처 방법 등이 추가되었다.

한편 연구와 분석을 목적으로 자세한 자료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면서 마이크로데이터의 공급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였고 이를 국가통계기관을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되었다. 초기에는 자기테이프, CD-ROM의 형태로 사용가능하였으나 현재에는 인터넷을 이용한 데이터 직접 접근을 통하여 다양한 대용량 자료를 제공하기에 이르렀다.

## 5) 국가통계기관의 생산성 향상

지난 수십년 동안 국가통계기관의 생산성은 크게 증가되었고 이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예를 들어 호주 통계청의 경우 전체 예산이 60년전인 1947년에 비해 증가하지 않았고 최근 오히려 직원 수가 감소하는 사태까지 이르렀다.

이는 지속적인 기술발전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컴퓨터를 중심으로한 IT 기술의 발전으로 통계자료 수집과 분석 및 배포에 여러 가지 혁명적인 변화가 발생하였다. 과거에 불가능하였던 대용량의 자료를 이제는 통계분석 직원 혼자서 자신의 개인용 컴퓨터에서 단기간에 수행하게 되었다.

통계이론의 발전 역시 비용절감에 크게 기여하였다. 조사방법론의 발전으로 서베이 질문서나 구성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지는 등 효율적인 표본조사기법이 사용되었다.

국가통계기관들의 지식공유 역시 이러한 생산성 향상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



된다. 많은 국가에서 민주화 및 개방화가 이루어지면서 국가통계기관들 사이에 상호간 경쟁과 함께 지식공유현상이 이루어졌고 이는 생산성 향상에 크게 기여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국제적인 공조 역시 크게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예를 들어, 미국의 US Bureau of Census가 처음 시작한 가구조사시스템을 많은 국가들이 받아들이고 유사하게 수행함으로써 각국의 통계 발전에 기여하게 되었다.

또한 최근 인터넷과 웹사이트를 통한 정보교환의 용이성은 이러한 추세를 더욱 가속화시킨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국가통계기관이 실시하는 다양한 교육 역시 생산성 향상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현재 각국의 국가통계기관이나 국제기구 등을 통계작성을 위한 각종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개도국의 통계수준 향상에 힘쓰고 있고 이는 생산성 향상의 형태로 나타난다.

## 6) 국가통계기관의 독립성 보장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국가통계기관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독립성의 보장이 매우 필요하다고 설명하였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각국의 국가통계기관들은 보다 많은 자치권 및 독립성을 보장받는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민주사회의 진전으로 권력집중이 해소되고, 실제로 독립적인 국가통계기관이 작성하는 통계정보가 정부 혹은 다른 기관들로 하여금 좋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움준다는 사실을 많은 정부 혹은 국가 깨달았기 때문이다. 또한 독립적인 통계정보는 국가나 지역사회로 하여금 중앙정부 혹은 지방정부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한 만한 근거가 되기 때문에 선거제도가 민주적으로 수행되는 국가에서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 된다. 국민들은 통계를 통하여 어떤 일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기준을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 7) 기술개발과 통계의 발전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기술혁신은 국가통계기관의 효율성을 크게 증진시킨다. 이를 보다 자세하게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새로운 형태로 자료를 수집하게 된다. 즉 기존의 설문지를 나누어주고 이를 수집하는 단계에서 벗어나 전자적으로 자료를 수집할 수 있게 되었다. 즉 각 기관의 자신이 작성하는 자료를 컴퓨터 파일형태로 국가통계작성기관에 제출할 수 있게

되었다. 예를 들어 정기적으로 설문에 응답하는 기관들에게는 PDA나 PC를 지급하고 이를 통하여 직접 자료를 입력한다.

둘째, 정보관리가 좀 더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즉 모든 자료를 컴퓨터 파일 형태로 보관하기 때문에 과거의 종이에 비하여 그 저장소의 규모가 크게 줄어들 수 있다. 또한 관리자들은 이들 자료를 자신의 개인용 컴퓨터에 쉽게 다운받아 필요시에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마지막으로 SAS와 같은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대용량 통계프로그램이 개발됨에 따라 통계관리가 보다 손쉽게 되었다.

셋째, 자료접근성이 좀 더 용이해졌다. 통계사용자들은 과거 종이로 이루어진 각종 매체를 보고 자료를 획득하였으나 이제는 자신의 자리에서 인터넷과 개인용 컴퓨터를 통하여 쉽게 해결할 수 있다.

## 8) 응답률 저하

최근 들어 전 세계적으로 응답률이 하락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먼저 정부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에 대한 반대의사 표시로서 통계자료 수집에 부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개인 프라이버시 문제가 매우 심각하게 대두되면서 응답을 꺼리는 응답자가 나타나게 되었다. 과거 설문지 조사는 1회성 조사로서 그 의미를 마칠 수 있었으나 이제는 모든 것이 컴퓨터 데이터베이스에 자료로 저장되기 때문에 자료 유출의 문제점 등에 대한 우려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응답자의 응답시간에 대한 부담이 더욱 커졌다. 과거 사회가 복잡해지고 시간의 중요성이 강조되기 이전에는 응답시간이 그렇게 중요한 요인으로 작동하지 않았다. 그러나 시간당 임금이 일반화되고 분, 초 등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응답시간에 따른 기회비용 보상문제는 더욱 커지게 되었다.

실제로 저조한 응답률은 통계의 질을 저하시키기 때문에 이를 보상하기 위하여 더 큰 표본 수를 확보하여야 하며, 더 큰 비용을 지출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때문에 국가통계기관은 자신의 신뢰성과 생성된 통계의 유용성을 홍보하여 응답률 저하 방지에 크게 노력하여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 9) 국가통계기관의 통계 분석력 증가

1960년대 이전까지 국가통계기관들은 통계를 공표할 때 단순히 숫자만을 제공할 뿐 이에 대한 통계작성방법을 별로 제시하지 않았다. 즉 이들은 자신들이 작성한

통계를 제시하고, 이를 작성방법에 대한 설명은 추가적으로 설명하는 형태였다.

그러나 1960년대에 이르러서 각국 국가통계기관들은 시계열 자료의 계절조정을 시행하기 시작함에 따라 자료의 수집이나 조정 및 분석방법을 자세하게 설명하기 시작하였다.

일반적으로 국가통계기관들은 자신들이 직접 자료 분석을 하거나 아니면 외부에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로 구분된다. 이때 통계에 대한 신뢰성이나 책임문제가 제시되자 각국의 국가통계기관은 자세하게 이러한 내용을 설명하기에 이르렀다. 특히 원자료와 발표 자료가 변화하게 되는 계절조정기법의 등장은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추가하지 않고는 신뢰성을 갖기 매우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특정 국가통계기관은 새롭게 분석팀이나 연구기관을 설립하여 분석방법(예를 들어 모형에 기초한 방법)을 사용하여 기존의 자료에 새로운 부가가치를 형성하는 연구를 시작하기 시작하였다. 각종 보도 자료나 기존 통계의 분석 자료를 독립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통계의 부가가치 확대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10) 국제통계의 발전

세계통계시스템에 대한 움직임은 1947년에 UNSC와 UN Statistics Division(UNSD)의 설립으로 시작되었다. UNSC는 1947년 설립된 이래 통계기준확립, 국제통계보급, 샘플링과 가구조사에 대한 좋은 지침을 위해 노력하여 왔다. 통일된 기준의 국민계정통계, 국제무역통계, 산업통계, 인구통계 등은 이들의 주요 업적이라고 볼 수 있다.

최근 들어, UNSC는 국제통계의 질 향상을 위하여 보다 노력하고 있다. 즉 각 국가 간의 차이를 밝혀내고 통계중복을 줄이기 위해 국제 통계 일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적절한 관리체계 하에서 Population Census, International Comparison Program 등과 같은 글로벌한 통계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다.

한편 국제적인 데이터세트는 국제기관이나 많은 국가들에 의해 크게 이용되고 있으며 웹사이트의 발전으로 이 자료에 대한 접근성 또한 크게 개선되고 있다.

특히 현존하는 정책의 효율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다른 국가와 비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이 인식되면서 이들 국제통계의 발전은 그 유용성이 더욱 증가하게 되었다.

국제기관의 통계조정업무가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올바른 국제통계를 통하여 각 국가들은 다른 국가에서 어떠한 사항이 발생하는가를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하여 각 국가들은 자신들 국가의 계획이나 정책수립에 근거자료

로 삼을 수 있게 된다.

둘째, 국가들 간의 통계기준과 개념응용의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 즉 국제기관들이 통계기준을 작성하여 제공하면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국가의 통계와 쉽게 비교하고 판단할 수 있게 된다. 만약 다른 국가가 같은 통계지표를 다른 정의하여 작성한다면 이를 국내 비교시 많은 오류를 발생할 수 있게 된다.

셋째, 국제통계에 존재하는 주된 차이점을 알 수 있게 된다. 각국들은 자신들 국가의 현황에 따라 같은 통계라도 다른 분류나 정의 및 작성방법을 사용하여 작성할 수 있다. 이때 이에 대한 근거를 일정 기준에 맞추어 제공한다면 사용자들은 오류를 줄이고 이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세계적인 통일된 국가통계시스템이 과연 필요한가에 대하여서는 많은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각국이 처해있는 경제 및 사회현실이 너무도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국제기구의 조정 및 기준 설립을 통하여 상호간의 차이점을 줄이고, 일정한 기준을 만족하는 통계자료를 작성하고 데이터베이스로 보관하여 제공하는 것은 분명한 이점이 있다 특히 저개발 국가들은 이들 기관의 도움을 받아 빠르게 통계를 개발과 개선할 수 있게 된다.

## 6. 우리나라의 국가 통계시스템

우리나라 통계시스템의 특징을 살펴보기 위하여 앞에서 제시한 4가지 구분방법에 따라 국내통계시스템을 조사하였다.

첫째, 통계조정능력 면에서 국내 국가통계시스템은 집중형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즉 유흥립·전명식의 주장과 같이 우리나라 통계청은, 최소한 명목적으로는, 앞서 소개한 통계조정 수단들 가운데 ‘예산배정 및 조직 관리를 통한 조정’을 제외한 통계지정제도, 통계승인제도, 통계생산기관 지정제도, 통계작성사무에 대한 개선요구제도 등 여러 가지 수단 모두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통계청의 위상은 정부 내에서 낮은 편이며, 통계 인력의 수와 전문성 부족과 같은 문제로 인하여, 통계청이 보유하고 있는 통계조정수단의 상당부분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이러한 권한이 2007년 개정된 통계법에 기초하였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 효과는 크지 않다고 볼 수 있다.<sup>16)</sup>

둘째, 통계청의 국내 주요통계의 작성 여부 면에서는 분산형시스템의 특징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먼저 <표 2.3> 및 <표 2.4>와 같이 2010년 8월 1일 현재

16) 이는 국내 통계조정시스템을 연구한 연구논문 “국가통계기관의 통계조정방법” 유흥립, 전명식(2007)에 주장과 일치한다.

국가승인통계 850종으로 약 375개 기관이 이를 작성하고 있다. 때문에 평균적으로 보면 개별 기관이 약 2.3개의 통계를 작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 분산형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리고 이중 6.2%에 해당하는 52종의 통계를 통계청이 작성하여 발표하고 있다. 특히 통계청을 제외한 통계작성 국가기관이 37개 기관이고 이들이 278개의 통계를 작성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통계청의 작성비율은 매우 낮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국가기관이 작성하는 통계가 국가 및 사회에 매우 중요한 통계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비율은 낮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국가통계기관의 브랜드 가치를 볼 때 우리나라의 통계청의 위상은 그렇게 높지 않다고 볼 수 있다. 통계청이 청으로 독립한 것이 1992년이고, 차관청으로 위상이 확립된 것이 2005년이고, 개정 통계법에 따라 각종권한이 부여된 것도 2008년으로 아직까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통계청에 대한 위상이 크게 개선된 것이 사실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것이 시행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아직까지 통계청이 국가 기관내에서 권위있는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최근 들어 통계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방송이나 신문 등 언론을 통하여 통계청에 대한 각종 홍보가 이루어지면서 통계청에 대한 인식이 국민들에게 각인되고, 또한 개선되고 있지만 이는 매우 최근의 일이기 때문에 높은 브랜드가치를 부여 받고 있다고는 볼 수 없다.

넷째, 통계작성기관의 예산독립성에서 통계청의 예산은 독립되어 있지만, 다른 통계작성기관의 예산을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은 없다. 때문에 우리나라 통계시스템은 분산형의 특징을 많이 갖는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국가통계시스템을 집중형 특성을 가진 분산형시스템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분석된다.<sup>17)</sup>

한편 우리나라 통계청의 비전은 ‘국민과 함께 미래를 여는 선진 일류 통계청’이고, 이에 해당하는 미션은 ‘국가통계발전 선도, 신뢰받는 통계생산’이다. 이때 통계청의 미션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우리는 국가중앙통계기관으로서 효율적인 통계 조정 및 협력 활동을 강화하고 국가통계 품질향상을 주도하여 국가 통계의 발전을 선도한다.

우리는 급격한 경제, 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른 다양한 통계수요와 조사환경 악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지속적인 국가통계시스템 혁신으로 정확성, 시의성, 유용성을 갖춘 신뢰받는 통계를 생산한다.

17) 유홍림·전명식(2007)은 “국가통계기관의 통계조정방법” 연구 논문에서 우리나라의 통계시스템을 ‘분산형성격이 강한 집중형시스템으로 정의하였다. 이때 유홍림·전명식(2007)은 우리나라의 통계청이 상당 수준의 통계조정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우리는 통계 생산 및 보급에 있어 관련 법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 개인의 사생활과 기업의 영업비밀을 보장함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는다.”

즉 첫 번째 항목은 통계청의 조정 능력 및 협력활동을 통하여 국가통계발전을 주도한다는 의미이고 두 번째 항목은 직접 통계청이 신뢰받는 통계를 생산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통계청 업무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통계청이 각종 조정 능력 및 업무를 통하여 통계청 및 통계청 이외의 기관이 작성하는 국가통계의 품질을 개선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후자는 통계청이 직접 우수한 통계를 작성하겠다는 의지를 포함한다.

<표 2.3> 기관별 국가승인통계 현황

(단위: 기관, 종)

기관구분	작성기관수	작성통계수	통계종류별		작성형태별		
			지정	일반	조사	보고	가공
계	375	850	90	760	342	452	56
○ 정부기관	298	702	74	628	246	11	45
중앙행정기관	38	330	58	272	157	151	22
통계청	1	52	41	11	42	2	8
이외기관	37	278	17	261	115	149	14
지방자치단체	260	372	16	356	89	260	23
○ 지정기관	77	148(149)	16(17)	132	96(97)	41	11
금융기관	9	26(27)	8(9)	18	16(17)	6	4
공사·공단	22	41	2	39	17	22	2
연구기관	15	22	2	20	17	3	2
협회·단체	25	40	4	36	34	4	2
기타기관	6	19	-	19	12	6	1

주: ( )는 복수기관 공동통계가 포함된 수치임

<표 2.4> 주요 국가통계와 작성기관

구분	작성기관	작성통계수	작성통계
국가기관	기획재정부	6	공적개발원조실적통계, 국가채권, 국가채무, 국유재산현황, 통합재정수지, 해외직접투자통계
	고용노동부	17	고령자고용현황,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근로자건강진단실시상황보고, 기업직업훈련실태조사, 기업체노동비용조사, 노사분규통계, 사업체고용동향조사, 사업체기간제근로자현황조사, 사업체노동실태현황, 사업체임금근로시간조사, 산업재해현황, 산재보험통계, 외국인근로자(고용허가제)고용동향, 임금교섭타결현황, 장애인의무고용현황, 전국노동조합조직현황, 최저임금적용효과에관한실태조사
	농림수산식품부	17	과실류가공현황, 농기계보유현황, 농림업생산지수, 누에사육 및양잠규모현황, 도축검사보고, 등록어선통계, 배합사료생산 실적및원료사용실적, 버섯생산통계, 수산물가공업통계, 수출입수산물검사검역통계, 시설채소온실현황및생산실적, 식품산업분야별원료소비실태조사, 여성농업인실태조사, 우유및유제품생산소비상황, 채소류가공현황, 천해양식어업권통계, 화훼류재배현황
	중소기업청	8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상가건물임대차실태조사, 소상공인경기동향조사, 신설법인동향, 장애인기업실태조사, 전국소상공인실태조사, 중소기업수출통계, 중소기업실태조사
	지식경제부	20	IT산업수출입통계, 공공기술이전사업화조사, 광산물생산량현황, 국내바이오산업실태조사, 미시산업통계조사, 봉제업체실태조사, 부품소재산업동향조사, 산업기술인력수급동향실태조사, 산업디자인통계조사, 선박건조량조사, 에너지사용량통계, 에너지총조사, 엔지니어링활동주체 현황, 외국인직접투자통계, 우편물통계, 이러닝산업실태조사, 정보통신기술산업(ICT)통계, 주요유통업체매출동향조사, 중소유통업실태조사, 한국인인체치수조사
	통계청	52	가계금융조사, 가계동향조사, 가축동향조사, 건설경기동향조사, 건설업조사, 경기종합지수, 경제총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 광업제조업동향조사, 광업제조업조사, 국가자산통계, 국내인구이동통계, 국제인구이동통계, 기계수주동향조사, 기업활동조사, 농가경제조사, 농가판매및구입가격조사, 농림어업인복지실태조사, 농림어업총조사, 농어업법인조사, 농업면적조사, 농업조사, 농작물생산조사, 농축산물생산비조사, 도소매업조사, 사교육비조사, 사망원인통계, 사이버쇼핑동향조사, 사회조사, 생명표 생활시간조사, 서비스업동향조사, 서비스업조사, 설비투자지수, 소비자물가조사, 양곡소비량조사, 어가경제조사, 어류양식동향조사, 어업생산동향조사, 어업조사, 운수업조사, 인구동향조사, 인구총조사, 장래가구추계, 장래인구추계, 전국사업체조사,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조사, 전자상거래동향조사, 주택총조사, 지역별고용조사, 지역소득, 통계인력및예산조사

구분	작성기관	작성통계수	작성통계
금융기관	중소기업은행	3	중소제조업경기전망조사, 중소기업동향조사, 중소기업설비투자전망조사
	한국은행	14	국민계정, 국제수지통계, 국제투자대조표(IIP), 금융기관대출행태조사, 기업경기조사, 기업경영분석, 대외채무및대외채권, 산업연관표, 생산자물가조사, 소비자동향조사, 수출입물가조사, 자금순환표, 지급결제통계, 통화금융통계
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3	도시계획현황, 부동산거래현황, 전국지가변동률조사
협회	대한건설협회	5	건설업경영분석, 건설업임금실태조사, 국내건설수주동향조사, 완성공사원가통계, 종합건설업조사
	중소기업중앙회	3	월간중소기업경기전망조사, 중소기업기술통계조사, 중소기업직종별임금조사
	한국무역협회	4	SITC에의한무역통계, 기업물류비 실태조사, 수출산업경기전망조사, 수출산업실태조사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4	월별정보통신주요품목동향조사, 정보통신부문인력동향실태조사, 정보통신산업기업경기조사, 정보통신산업실태조사
기타기관	한국고용정보원	6	고용보험통계,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산업직업별고용구조조사, 워크넷구인구직및취업동향, 청년패널조사, 한국노동패널조사
	한국전력거래소	4	가전기기보급률및가정용전력소비행태조사, 발전설비현황, 상용자가발전업체조사, 전력시장통계

주: 2010년 8월 1일 현재



## 제 3 장 경제통계작성 시스템의 개요

### 1. 경제통계의 정의 및 성격

#### 1) 경제통계의 정의

경제통계는 경제현상의 특징 변화를 나타낼 수 있는 각종 정보를 나타내는 통계를 의미한다. 또한 경제통계는 이러한 경제통계를 정의, 분류하며 분석하는 통계학의 분야로 해석할 수 있다.

경제통계는 특정 지역이나 국가 경제 혹은 국제경제에 관련한 통계를 수집하고, 분류하고, 분석하는 응용통계학의 분야로 공식통계(Official Statistics)를 구성하고 있다.

경제통계는 대체로 각국의 통계청, 정부기관, 중앙은행 등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 및 UN이나 OECD, 유럽연합 등 국제기구 등이 작성하여 제공하고 있다.

#### 2) 경제통계의 작성 목적

경제통계는 매우 다양한 목적으로 작성된다. 정부가 현황 파악이나 정책수립에 활용하고 가계와 기업들은 이들 지표를 활용하여 자신들의 경제활동을 결정에 활용한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통계는 정부가 현실 경제 현황 파악을 위한 통계자료를 제공된다. 일반적으로 정부기관은 정부정책을 실시하기 이전에 현실경제에 대한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수단으로 객관적인 통계치를 필요로 하게 된다.

예를 들어 경제활동이 둔화되어 경기침체가 발생하였다면 과연 어느 정도 경제활동이 위축되었는가를 구체적으로 알아야 하는데 이때 국민소득 자료나 산업생산자료 등의 객관적인 지표가 활용된다. GDP성장률이 0%인 경우와 -3%인 경우 정부가 취해야 할 정책을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둘째, 경제통계는 특정 경제정책이나 각종 정책 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정부는 특정한 경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경제정책을 실행하고 있다. 이때 정부는 과연 이들 정책이 경제목표 달성에 적절한 것인가를 미리 파악하기 위하여 이들 정책의 효과를 미리 예측하고,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정부는 경제통계를 활용하여 각종 경제정책의 효과를 미리 측정해보고 싶어 하게 된다.

예를 들어, 경기침체에 과연 어떠한 이유로 경기침체에 도달하였는가를 살펴보

기 위하여 소비지표와 투자지표를 살펴보게 된다. 만약에 소비가 많이 하락하여 경기침체가 발생한 것이라면 정부는 이를 진작시킬 정책을 추진하여야 하고, 투자가 많이 감소한 것이라면 투자확대를 유도할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셋째, 경제통계는 경제이론을 검증하는 수단이 된다. 각종 경제이론은 경제변수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들 경제이론은 경제통계를 통하여 타당성이 검증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소비 지출 통계와 소득 통계를 활용하면 케인즈 이론의 소비이론을 검증할 수 있게 된다.

한편 가계와 기업 역시 이러한 경제통계를 효과적으로 활용한다. 먼저 각 가계의 경제활동은 이들 경제지표의 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게 된다. 예를 들어, 중앙은행이 기준 금리 인상으로 가계대출이자율이 상승한다면 대출을 받아 자동차나 집을 장만한 가계들은 원금 및 이자로 더 많은 대금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하기 때문에 각자의 소비행태를 변화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기업의 입장에서든 경제통계는 매우 중요하다. 예를 들어 소비자심리지수가 개선된다면 다음 기에 소비지출이 증가할 것이므로 기업의 매출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때문에 이 기업은 미리 생산여력을 확보하고 원자재 구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게 될 것이다.

이상과 같은 경제통계는 국민경제를 구성하는 가계, 기업 및 정부의 활동에 영향을 주는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3) 경제통계의 특징

위에서 설정한 경제통계의 정의에 기초하여 경제통계가 갖는 여러 가지 특징 및 성격을 조사하였다.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통계는 현실경제의 발전 및 변화에 따라 크게 변화하고, 발전하며 새롭게 등장하고 사라지게 된다.

먼저 경제변수들 간의 관계는 경제, 사회 및 정치제도의 변화에 따라 서로 변화하기 때문에 경제통계 역시 이러한 사회 및 정치제도 변화를 반영하기 때문에 새롭게 조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국가 간 실물 및 자본이동의 활발해짐에 따라 국제수지계정이 발전하게 되었고, 서비스산업의 발전을 반영하여 지적재산권이나 무형자산 등을 반영하는 통계의 중요성이 강조되기 시작하였다. 과거 농업중심의 사회에서는 농업에 관련된 각종 통계가 중요 통계로 인식되었으나 산업구조의 조정으로 현재에는 그 필요성이 크게 줄어들고 있다. 또한 최근 고용 및 실업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각종 고용 통계가 보다 세분화되고 대형화되는 현상이 나타

나고 있다.

이렇게 경제통계는 현실의 상황을 반영하고, 정책의 필요성에 맞추어 작성되어야 하기 때문에 계속하여 변화하고 조정되는 특징을 갖는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단기간에 산업화를 이루어 경제구조가 바뀌는 국가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매우 빠르게 일어난다고 할 수 있다.<sup>18)</sup>

둘째, 경제통계는 경제이론의 발전과 밀접한 관계를 맺는다. 경제이론은 현실 경제를 분석하는 틀로 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통계적인 자료를 요구하고 있다. 때문에 새로운 경제이론의 등장은 이에 연관된 경제통계의 작성을 요구하게 된다. 예를 들어, 국민소득계정은 케인즈 이론의 등장 이후, 신고전학과 경제학이론에 기초하여 작성되기 보다 광범위하게 활용되기 시작하였다.

셋째, 국제적인 표준화가 매우 강조되고 있다. 최근 개별국가 경제간의 연계성이 강화됨에 따라 이들 국가들의 관계를 분석할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다 특히 금융위기나 경제위기가 주변국으로 전파되는 전염효과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주변국가들의 통계를 항시 관찰하고 분석하여야 하는 필요성이 증가한다. 또한 특정 이론이 과연 여러 국가들에 성립하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경제이론 검증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등장한다. 이 경우, 각국의 경제통계가 과연 상호 비교 가능한 것인가에 대한 의문점이 발생할 경우, 이러한 분석이 가능하지 않게 된다. 따라서 국제적인 표준화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넷째, 국민생활에 매우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공공성이 강조된다. 사회가 보다 민주화되고 경제정책이 보다 투명화 됨에 따라 과학적인 경제정책이 수립되어 실행되고 있다. 때문에 경제통계의 활용도가 보다 증대되어 경제통계의 공공성이 더욱 강조되게 되었다. 특히 이들 경제지표가 정부의 정책 평가지표로 등장함에 따라 각 경제주체들이 경제통계자료에 보다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었다.

다섯째, 경제통계는 다양한 시계열 및 횡단면 자료로 구성된다. 경제통계는 초단위 혹은 분단위 조사 자료부터 시작하여 10년 주기의 조사 자료까지 매우 다양한 시계열 자료로 구성된다. 예를 들어, 주식이나 외환거래는 매우 짧은 주기의 자료가 작성되며, 국부통계와 같은 것은 10년 단위로 작성된다. 이는 정부나 국민들이 관심 있는 경제현상이 초 단위나 분단위 부터 10년 단위까지 구성되기 때문이다.

다섯째, 통계작성 비용극소화 보다는 우수한 통계품질이 보다 중요시되는 특징을 갖는다. 통계의 활용도 및 중요성이 증가됨에 부정확한 통계가 제공하는 부작용의 크기가 더욱 확대되었다. 각종 정책 수단과 평가방법이 매우 정교해짐에 따라 이들

---

18) 예를 들어 1960년대 중반 우리나라에서 농업은 GDP의 45%에 해당되었고 농업인구는 전경제활동인구의 60%에 이르렀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 농업의 비중은 6% 미만으로 하락하였고 농업인구는 12%에 그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농업통계는 구조조정의 대상이 되었다.

의 설정에 대한 지표의 중요성은 더욱 중요해졌다. 예를 들어, GDP 증가율이 실제로는 2% 수준인데 지표의 부정확한 추계로 0%로 추계된다면 이는 정책수립에 매우 커다란 오류를 유발할 가능성이 클 것이다. 또한 전체 실업률이 3% 수준으로 추정되어 전반적인 실업률에는 문제가 없을 경우 정부는 뚜렷한 실업률하락 정책을 취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20대 청년의 실업률이 8~10% 대를 움직인다면 정부는 이들에게 집중된 정책을 수행하여야 하기 때문에 보다 세분화된 통계를 갖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전반적으로 우수한 품질의 통계에 대한 사회적인 수요가 보다 증가하였고 통계의 품질은 경제통계가 갖추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연간이나 5년 마다 실시되는 서베이 통계는 장기적인 정책수립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실제 통계상의 오류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시정할 시간적인 여유를 갖게 된다. 그러나 월별 혹은 분기별 자료에서 오류가 발생할 경우 이는 즉각적인 정책수립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어 시정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게 된다.

## 2. 우리나라의 경제통계

### 1) 경제통계의 구분

앞에서 정의한 바와 같이 경제통계는 경제현상의 특징 변화를 나타낼 수 있는 각종 정보를 나타내는 통계이다. 이에 해당하는 통계는 정부나 공공기관, 기업 등이 제공하는 것으로 매우 다양하다.

이러한 다양한 통계 중 통계청에 등록되는 국가승인통계로 경제통계로 공식적으로 구분되는 통계는 아직까지 뚜렷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다. 다만 분석자나 연구자에 따라서 경제생활에 크게 연관되는 통계로 경제통계라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일단 경제통계를 통계청에 등록된 국가승인통계 중 통계부문별로 보았을 때 <표 3.1>과 같이 경제통계로 구분하였다. 즉 통계부문별로 가계소비(소득), 건설, 경기, 고용, 광공업, 국민계정, 국제수지·외환, 금융, 기업경영, 농림, 도소매, 무역, 물가, 서비스, 수산, 에너지, 임금, 재정, 정보통신, 주택, 지역계정 등 21개 부문에 해당하는 통계를 경제통계로 구분하고 나머지 과학, 교육, 교통, 기타, 문화, 보건, 복지, 사회, 시도기본통계, 인구, 토지, 환경 부문에 해당되는 통계를 기타 통계로 구분하였다. 이들은 대체로 국민계정, 물가 등과 같이 국가전체의 경제생활에 영향을 주는 거시경제변수와 광공업, 서비스, 농림 등 산업별 통계에 해당되는 것으로 구성된다.

한편 본 연구에서 사용한 이러한 구분에 대하여 의문을 표시할 수 있다. 이들 통계부문에 해당되는 통계 중 경제생활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통계가 있을 수 있고, 반대로 다른 부문의 통계 중 경제생활에 크게 영향을 주는 통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별통계를 보고 경제통계인가 아닌가를 구분하는 것은 너무도 자의성이 클 것이다. 또한 850개에 해당하는 국가승인통계를 모두 보고 이것이 경제통계에 속하는 것을 분석하는 것은 너무도 비효율적인 분석이다.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통계부문을 고려하여 이 방법을 선택하였다.

이러한 분류법에 기초할 때 경제통계는 <표 3.1>과 같이 국가승인통계 33개 부문 중 21개 부문, 총 850종 통계의 37.8%에 해당하는 321종의 통계가 해당되고, 12개 부문, 전체의 62.2%에 해당하는 529종의 통계가 비경제통계 통계에 해당된다.<sup>19)</sup>

이때 각 시도기본통계 등 지역에 관련된 기본 통계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제외하고, 전국의 통계만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경제통계는 전국단위통계가 257종이고 지방자치단체가 추정하는 지역에 특화된 통계가 64종이며, 비경제통계 중 전국단위통계가 285종, 지방자치단체가 추정하는 지역관련 통계가 244종으로 나타나 전국단위로 볼 때, 경제통계의 비율을 47.4%로 약 절반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sup>20)</sup>

이중 거시경제나 국민경제 생활에 크게 영향을 주는 통계는 <그림 2.1>과 같이 6개의 그룹으로 구분될 수 있다. 이들은 국민계정, 재정, 물가, 금융, 산업생산, 고용 등과 특정 산업이 아니라 전반적인 국민생활에 밀접한 관계를 갖는 통계로 본 연구의 주요 연구 대상이 된다.

---

19) 국가승인통계는 2010년 8월 1일 기준으로 선정하였다. 실제로 통계청의 국가승인통계는 시시각각으로 저정된다. 일부 통계는 통계작성기관의 신청으로 새롭게 승인을 받고, 일부 통계는 폐지가 되기 때문이다. 국가승인통계 목록 및 구분은 본 보고서의 '부록 C.4 국가승인통계중 경제통계현황' 및 '부록 C.3 우리나라 주요 경제통계작성기관'에 제시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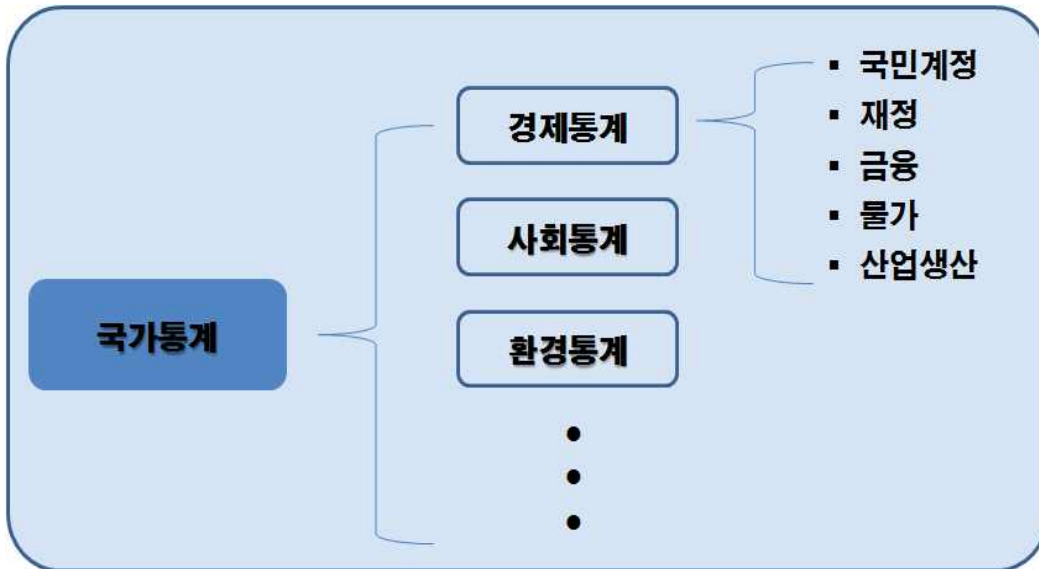
20) 이때 통계청이 추계하는 지역총생산은 전국단위통계로 포함되었다. 이 통계는 전국의 광역시와 도의 통계를 추계하는 것으로 특정 지역에 국한되어 추계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국단위 통계에 포함하였다.

<표 3.1> 경제통계의 구분

구분	통계종수		통계부문
	전체	시도통계 제외	
경제통계	전체	21부문 (321종, 37.8%)	가계소비(소득), 건설, 경기, 고용, 광공업, 국민계정, 국제수지·외환, 금융, 기업경영, 농림, 도소매, 무역, 물가, 서비스, 수산, 에너지, 임금, 재정, 정보통신, 주택, 지역계정
	시도통계 제외	21부문 (257종, 47.4%)	
비경제통계	전체	12부문(529종, 62.2%)	과학, 교육, 교통, 기타, 문화, 보건, 복지, 사회, 시도기본통계, 인구, 토지, 환경
	시도통계 제외	11부문(285종, 52.6%)	
총	전체	33부문(850종)	
	시도통계 제외	32부문(542종)	

자료: 통계청, 국가승인통계 현황, <http://kostat.go.kr/>

<그림 2.1> 경제통계의 구분



## 2) 주요 경제통계

### (1) 국민계정

#### ① 개요

국민계정체계는 국민경제의 종합재무재표로서 일정기간 중 국민경제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경제주체들의 다양하고 복잡한 경제활동 결과와 일정시점에서 국민경제 전체의 자산과 부채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작성된다. 따라서 국민계정은 경제 내에서 일어나는 각종 경제활동과 경제주체들의 상호작용에 관한 종합적이고 상세한 정보를 담고 있으며 수많은 통계표로 구성된다.

국민계정체계는 국제적 표준으로 국제적으로 합의된 개념과 정의, 분류 및 회계 방식에 의해 작성된 각종 계정과 표로 구성되는 일관성 있고 통합된 통계시스템으로서 경제데이터를 경제 분석과 정책결정에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하여 나타난다. 따라서 국민경제의 순환과 변동을 체계적으로 기록한 사회회계로서 경제활동을 거래형태별 및 거래에 참가하는 경제주체별로 파악하여 복식부기 방식으로 기록한다.

국민계정체계는 UN(United Nations)에 의해 1953년 처음으로 제정된 이후, 1968년과 1993년, 2008년 각각 개정되었다. 국민계정체계는 기존의 산업연관표·국민소득통계·자금순환표·국제수지표 등 별개로 파악하던 각종 국민계정 관련 통계를 통합하여 거시경제분석에 적합하도록 거래형태와 거래주체를 경제활동의 동질성에 따라 몇 가지 부문으로 나누어 체계적으로 작성되는 것이다. 따라서 국민계정은 국민경제순환에 따른 변동을 실물거래와 금융거래의 활동 면에서 모두 파악한다.

1960년대 이후 각국은 국민경제의 종합적 분석을 위하여 국민소득 통계와 국제수지표 이외에 자금순환표와 산업연관표, 그리고 국민대차대조표를 공식적으로 작성·이용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가가 이들 5대 국민경제통계를 각각 별개의 기준에 따라 분리 작성하여 왔기 때문에 이들을 연결시켜 이용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뒤따랐다. 이와 같은 개별통계의 이용 상 제약을 해소하고자 각 통계에 대한 편제경험을 바탕으로 이들 통계를 통합한 새로운 국민계정을 작성하자는 움직임이 일어났다. 결국 1968년 UN은 1953년에 제정된 국민소득통계 편제지침을 근본적으로 확대 개편하여 새로운 국민계정의 편제기준인 국민계정체계(1968 SNA)를 발표하여 그동안 별개로 작성되어 왔던 기존의 5대 국민경제통계를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통합시키게 되었다.

그러나 통합된 국민계정의 편제는 작업량이 방대하고 수많은 기초통계 자료를 추가로 개발해야 하는 문제점 때문에 대부분 국가들은 1968 SNA 이행에 어려움을 겪었다.

한편 1970년대 후반 이후 금융혁신 진전, 지구환경문제의 부각, 정부역할의 변화 등 경제 환경이 크게 달라짐에 따라 국민계정체계의 개정 필요성이 또 제기되었다. 이를 반영하고 5대 국민경제통계의 유기적인 연계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UN, OECD, IMF 등의 국제기구는 1993년에 새롭게 개정된 국민계정체계(1993 SNA)를 발표하게 되었다. 1993 SNA는 이전의 1968 SNA의 계정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하였다 기보다는 그동안의 세계경제 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각국 정책당국과 국제기구의 경제분석 목적과 정책적 관심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새로운 개념의 통계지표들을 계정체계 내에 도입하고 계정의 분류체계를 개선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었다. 아울러 1968 SNA 내에서 분석할 수 없었던 경제·사회적 관심사항을 보다 신축적으로 편제할 수 있는 위성계정(satellite accounts) 체계를 도입하여 환경, 관광, 보건복지 등과 같은 특정분야에 대한 분석도 가능하도록 하였다. 최근에 2008 SNA가 발표되었고, 각국의 담당기관은 발표된 2008 SNA를 이행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중이다.

국민계정은 다음과 같이 5대 국민경제통계로 구성되고, 모두 동일한 국민경제를 대상으로 하여 작성되지만 그 작성 목적과 배경이 서로 다르며, 각각 독자적으로 발전되어 왔다.

## ② 국민소득통계

국민소득통계: 일정기간 동안 경제주체들이 생산활동에 참여한 결과 창출된 국민소득이 어떻게 분배되고 어떻게 처분되는지를 나타내는 통계 즉 한 나라의 경제활동을 소득순환 중심으로 파악하고자 하는 통계

국민소득통계의 기원은 국민소득의 규모를 통계적으로 파악해 보려는 노력이 시작되었던 17세기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1696년 영국의 페티(W. Petty)와 킹(G. King)이 영국의 국민소득을 추계하였고, 비슷한 시기에 프랑스의 브와귀베르(Boisguillebert)가 프랑스의 국민소득을 산출하였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그러나 이들이 산출한 국민소득은 이론적인 면에 너무 치우쳤기 때문에 통계적인 관점에서 보면 미흡한 점이 많았다. 그 이후 18세기 들어 스미스(A. Smith)와 리카르도(D. Ricardo)가 국민소득의 개념을 발전시켰으며 이에 따라 국민소득을 추계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당시의 국민소득자료 역시 국민경제순환에 관한 이론적 보충표로서는 이용가치가 있었지만 경제규모의 통계적 포착이라는 면에서는 미흡한 점이 많았다.



즉, 그 당시에는 국민소득의 개념과 추계방법을 결정할 때, 작성자 개인의 자의적 판단에 전적으로 의존하였고 실제 통계작업도 시산적인 수준에 머물렀으며 주로 생산측면을 중심으로 국민경제를 설명하려고 하였다. 오늘날에 비하면 개념이나 내용, 작성방법 등에 있어서 상당히 불완전한 수준이었던 것이다. 이와 같이 시산적인 수준에 머물렀던 국민소득통계가 비교적 정비된 개념과 추계방법에 따라 새로운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 것은 19세기 말경으로 이때부터 미국과 유럽 각국에서 국민소득 통계를 본격적으로 작성하기 시작하였다.

국민소득통계가 오늘날과 같은 모습으로 발전하게 된 것은 1929년 세계 대공황(Great Depression)이라고 할 수 있다. 당시에는 일찍이 경험하지 못했던 극심한 경제 불황으로 각국은 종전과 같이 부분적이고 추상적인 경제정책만으로는 이를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 보다 실증적인 통계적 연구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시대적 요청을 배경으로 하여 국민소득에 관한 이론과 통계적 연구는 일대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다. 그 이후 제2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전시경제의 운영과 전후경제의 부흥이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면서 국민소득통계는 국민경제를 분석하는 데에 유용하고 필요불가결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통계로서 크게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다. 또한 국민소득의 추계내용과 방법 면에서도 현저한 발전을 거듭하여 종전의 총액과약 중심에서 국민경제 순환구조의 유기적 파악을 위한 사회 회계체제로의 획기적인 진전을 이루게 되었다. 그러나 1940년대 후반까지도 국민소득통계의 편제를 위한 국제적으로 통일된 기준이 마련되지 못해 나라마다 서로 다른 기준에 따라 작성되고 있었다.

기업의 재무제표가 해당 기업의 이해당사자가 모두 알아볼 수 있는 기준에 의해 작성되어야 하는 것처럼 국민계정도 당연히 이해당사자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편제되어야 한다. 국민계정의 이해당사자에는 한 나라 안에 있는 기업, 가게, 정부는 물론 다른 나라와 국제기구까지도 포함되므로 국민계정의 편제기준을 국제적으로 일치시킬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UN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민계정편제의 국제기준을 마련하고자 노력한 끝에 1953년 국민계정체계와 부표(A System of National Accounts and Supporting Tables: 1953 SNA)라는 국민소득통계 편제지침서를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이후 새로운 국민계정체계가 나오기 전까지 각국은 1953 SNA에 따라 플로우통계인 국민소득통계를 편제하여 왔다.

그 이후 UN에서는 1968년에 새로운 국민계정체계(System of National Accounts: 1968 SNA)를 발표하고 이 지침에 따라 국민계정통계를 편제하도록 하였다. 1968 SNA에서는 국민경제를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존의 5대 국민경제통계를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시켰다.

한편 1970년대 후반 이후 금융혁신, 경제의 국제화, 정부역할의 변화 등 경제환경이 크게 달라짐에 따라 국민계정체계를 다시 개정할 필요가 생겼다. 이에 UN, OECD, IMF 등의 국제기구는 공동으로 1993년에 다시 1968 SNA를 개정한 국민계정체계(System of National Accounts: 1993 SNA)를 발표하고 이 지침에 의한 국민계정의 편제를 각국에 권고하였다.

### ③ 산업연관표

산업연관표는 일정기간 동안 특정상품을 생산하기 위해 어떤 상품이 얼마나 투입되었는지(투입구조)와 특정상품이 어떤 부문에 중간수요 또는 최종수요의 형태로 팔렸는지(배분구조)를 보여주는 통계로 중간생산물의 산업간 거래도 포괄한다는 점에서 국민소득통계와 구분된다.

산업연관표는 1936년 미국의 레온티에프(Wassily W. Leontief) 교수가 미국 경제를 대상으로 시산한 투입산출표를 작성·발표함으로써 시작되었다. 산업연관표의 기본적인 착상은 경제주체간의 거래관계를 체계적으로 기록하고자 하였던 케네(F. Quesnay)의 경제표(Tableau eco-nomique: 1758)나 마르크스(K. Marx)가 시도했던 재생산표식(Reproduktions Schema)에 기초를 두고 있다.

이후 레온티에프 교수는 1919년 및 1929년의 미국 경제를 대상으로 한 산업연관표를 작성하여 1941년에 미국경제의 구조(The Structure of American Economy: 1919-1929)라는 책을 발간하였다. 이어 그는 1939년을 대상으로 산업연관표를 작성하고 이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를 담아 전술한 책의 제2판, 미국경제의 구조, 1919-1939(The Structure of American Economy: 1919-1939)를 1951년에 발간하였는데 이 책은 산업연관표의 원전이 되었다.

미국은 공식적으로 1947년 산업연관표를 최초로 작성하였으며 이어 영국은 1948년표를, 일본은 1951년표를 각각 작성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각국의 노력 속에서 산업연관분석은 활동분석(activity analysis)과 선형계획(linear programming) 등의 발전에 힘입어 그 실용성이 더욱 커졌다.

한편 UN통계국은 1966년 “투입산출표와 분석의 제문제(Problems of Input Output Tables and Analysis)” 매뉴얼을 만들어 각국에 산업연관표 작성기준으로 제공함으로써 산업연관분석은 국민경제 분석의 유용한 도구로서 세계적으로 널리 보급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종래의 산업연관표에서는 상품별 단일분류를 채택하여 왔으나 스톤(R. Stone)에 의해 상품과 산업의 이중분류를 채택하는 방식이 고안되는 등 산업연관표의 작성 및 분석 방법이 많이 발전하였다.

#### ④ 자금순환표

자금순환표는 일정기간 동안 국민경제 안에서 발생한 다양한 금융활동들이 서로 어떠한 관계를 갖고 있으며 이러한 금융활동들이 생산·지출 등 실물활동과 어떠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지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통계, 즉 자금의 흐름을 실물과 금융의 양 측면에서 기록한 국민경제의 현금 흐름표를 의미한다.

자금순환표는 미국의 코플랜드(Morris A. Copeland) 교수가 1952년에 발표한 “미국의 자금순환연구(A Study of Money Flow in the United States)” 라는 논문에서 처음으로 사용되었다. 이후 그 유용성이 인정되어 1955년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1939~53년간의 미국 자금순환표를 작성 발표함으로써 자금순환표가 국민경제 분석에 본격적으로 이용되기 시작하였다.

일본은 1958년 일본은행에서 1954~57년 중의 일본 자금순환표를 작성한 것이 효시이며, 1978년 UN의 1968 SNA 기준에 의거 개편한 후 1999년에 다시 UN의 권고대로 1993 SNA기준에 의한 자금순환통계를 편제하고 있다. 자금순환통계의 금융계정은 일본은행 조사통계국에서, 실물계정인 자본계정은 내각부에서 작성하는 등 편제가 이원화되어 있다. 영국은 1963년부터 자금순환통계의 거래표는 영란은행에서, 잔액표는 통계청(ONS: Office of National Statistics)에서 각각 작성해 오다가 1992년에 통계청으로 일원화되었다.

현재의 자금순환표는 OECD 회원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에서 공식적인 통계로 작성되고 있으며, 이를 이용한 경제예측모형이 개발되어 경제개발계획과 경제정책의 수립과 평가 등에 널리 활용되고 있다.

#### ⑤ 국제수지표

국제수지표는 일정기간 동안 국가 간에 일어난 실물과 자금의 흐름을 기록한 통계로 한 나라가 외국과 상품과 서비스를 사고파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외화의 운용을 체계적으로 기록한 외화수지 계산서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각국이 국제수지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14세기 후반 중상주의 시대부터이다. 당시 각국은 금을 비롯한 귀금속보유량을 국부의 지표로 생각했기 때문에 외국과의 무역이 한 나라의 금보유량, 즉 국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큰 관심을 가졌으며 그 결과 국제수지가 국부의 변동을 파악하는데 있어 중요한 개념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출발하였기 때문에 그 당시의 국제수지

개념은 상품수지와 같은 의미로서 국외거래의 내용이나 항목의 변동보다는 종합적인 수지 또는 수지잔액의 파악에 중점을 두고 있었다. 그 이후 국가 간 교역이 크게 늘어나고 거래형태도 다양해짐에 따라 모든 국외거래를 포괄할 수 있는 종합적인 통계표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현재와 같은 개념과 원리에 따라 국제수지표가 작성되기 시작한 것은 UN과 IMF가 설립된 1940년대 후반부터이다. UN이 1948년에 1939~45년간의 각국 국제수지표를 작성 발표하였고, IMF는 1948년 1월 국제수지 편제매뉴얼, 초판을 발간하고 이 기준에 따라 각 가맹국으로 하여금 1946년 및 1947년 국제수지통계를 작성하도록 각국에 권고하였다. 한편 IMF는 UN으로부터 국제수지표 편제업무를 이관 받아, 1949년 7월 국제수지연보(Balance of payment Yearbook)를 발간하였다. 그 이후 세계교역의 증대, 국제금융환경의 변화 등으로 국제수지 편제기준의 개정이 필요하게 됨에 따라 IMF는 동 편제기준을 1950년, 1961년, 1977년 및 1993년 네 차례에 걸쳐 개정하였다.

한편 1993년 국제수지 편제매뉴얼, 제5판(BPM 5: Balance of Payments Manual, fifth edition)이 발간된 이후 세계 경제 환경과 금융 환경이 크게 달라진 데다 서비스 무역협상의 진전으로 서비스무역통계를 보다 세분화할 필요성이 생기게 되었다. 이에 따라 최근 IMF 국제수지통계위원회는 각국의 의견을 수렴하여 2008년 12월 편제매뉴얼을 개정하였다.

## ⑥ 국민대차대조표

국민대차대조표는 일정시점에서 한 나라의 경제가 보유하고 있는 유형의 실물자산(생산설비, 토지, 건물 등), 무형의 비금융자산, 대내외 금융자산 및 부채를 모두 기록한 통계로 실물자산과 금융자산 등 국부의 변동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국민경제의 대차대조표를 의미한다.

국민대차대조표의 원형이 되는 국부통계는 1679년 페티(W. Petty)가 자본환원법이란 간편한 방법으로 영국의 국부를 추산한 데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 그 이후 킹(G. King), 데커(M. Decker) 등이 영국의 국부를 추계하였고 1850년에는 영국 정부에 의해 처음으로 국부가 공식적으로 추계되었다. 프랑스에서는 1789년에, 독일에서는 1896년에 각각 국부가 추계되었으며, 특히 미국에서는 1850년에 센서스방식에 의한 국부 추계를 처음 시도하였다. 아시아에서는 일본이 1841년에 경제학자에 의해 처음으로 국부를 계산한 이래 1905년 일본은행이 공식적으로 국부를 추계하였으며 1913년부터는 일본 정부가 국부를 직접 추계하기 시작하였다.

한편 1968년 UN이 발표한 1968 SNA에서 플로우 통계인 국민소득통계와 스톡통계인 국부통계를 연결시키기 위하여 동 체계 내에 국민대차대조표를 도입하였다. 아울러 1977년 UN은 1986 SNA의 선언적 규정을 보다 구체화하기 위해 국민대차대조표 및 조정계정에 관한 국제기준(International Guidelines on the National and Sectoral Balance-Sheet and Reconciliation Accounts)을 발간함으로써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국민대차대조표의 작성기준을 마련하였다.

그 이후 1993년에 UN, OECD, IMF 등 국제기구들이 공동으로 제정한 1993 SNA에서는 국민대차대조표의 작성 목적 및 기준에 관한 보다 자세한 지침을 제시하였다. 즉 1993 SNA에서는 국민대차대조표와 자산의 기타증감계정(재평가계정, 자산량 기타증감계정)의 구체적인 작성방법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 (2) 물가지수

### ① 소비자물가지수(CPI)

소비자물가지수(CPI, Consumer Price Index)는 1870년대 상품가격의 평균개념으로 처음 소개된 후, 20세기 초 생활비지수(the cost of living index)에 대한 개념이 추가적으로 도입되면서 보다 보편적인 지수가 되었다.

각국이 소비자물가지수를 추계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근로자의 실질임금의 감소분에 대한 보상금을 결정하기 위한 것이었다. 즉 소비자물가지수의 백분위 변화에 비례하여 임금을 조정하는 지수화(indexation)을 통해 근로자의 실질임금 감소에 대한 보상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공식적인 소비자물가지수는 각국 노동관련 부서에서 집계되는 경향이 있었고 이후 통계청으로 이관되는 모습을 보인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오래 전부터 UN(국제연합)의 ILO(국제노동기구)는 소비자물가지수 작성에 대한 국제적인 표준을 제정하였다. 1925년 ILO는 노동통계 국제컨퍼런스(International Conference of Labor Statistics, ICLS)에서 소비자물가지수의 국제적 표준에 대한 첫 번째 권고안을 제시하였고, 1947년, 1957년, 1962년, 1987년 등에 소비자물가지수의 국제적인 작성표준을 확립하였다. 이런 작성기준이 표준화됨에 따라 소비자물가지수에 대한 국제적인 비교가 가능하게 되었다.

이후 1989년 소비자물가지수에 대한 종합매뉴얼이 발간되었으며, 모든 국가들이 이 매뉴얼에 기초하여 소비자물가지수를 측정하게 되었다. 즉 이 매뉴얼은 소비자물가지수 지수 작성시 표본의 범위, 정의, 가중치, 표본, 자료수집, 대체문제 등을

다루고 있다.

한편, 유럽연합(EU)이 만들어지면서 유럽 국가들은 각 국가의 소비자물가지수를 통합한 유럽연합 통합소비자물가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Eurostat 과 Member States는 통합된 시장을 반영한 HCIP(Harmonised Index of Consumer Prices)를 만들게 되고 이에 대한 기준과 그 과정들을 발전시켰다. HCIP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지표로 통화 동맹의 이자율을 결정하는 데 사용된다.

최근에는 소비자물가지수를 단지 하나만 측정하여 발표하기 보다는 많은 지수를 생성하고 발표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한 개의 소비자물가지수가 단점 없이 여러 가지 목적으로 적절하게 사용되기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되었기 때문이다.

## ② 생산자물가지수

생산자물가지수(PPI, Producer Price Index)는 19세기 후반 도매물가지수(WPI, Wholesale Price Index)라는 이름으로 작성되기 시작되었다. 추계방식으로는 19세기 중반에 처음으로 소개된 라스파이레스와 파쉐 지수로 현재까지도 널리 사용되었다. 이후 20세기 후반 들어 고정투입 및 산출 (fixed-input output) 가격지수와 고정산출 투입 (fixed output-input) 지수가 소개되어 생산자물가지수의 기본적인 틀로 자리를 잡았다.

처음 도매물가지수를 추계하기 시작한 가장 주요한 이유는 마지막 생산단계인 소매시장 수준에 도달하기 전 도매시장에서 상품이 팔린 가격의 변화를 측정하기 위함이었다. 이에 따라 그 목적도 소매시장이 아닌 도매시장의 가격을 측정하는 데 두었다. 이후 도매물가지수는 생산자물가지수로 명칭을 변경하였는데, 그 이유는 생산자물가지수라는 개념이 상품이나 산업 등 넓은 범위까지 포함하여 측정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또한 전체적인 생산자물가지수와 어떤 상품에 해당하는 생산자물가지수는 장기구매와 판매계약의 자본투입량의 가격을 조정하는데 사용되었다. 이처럼 생산자물가지수는 많은 곳에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 자료에 대한 수요 또한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생산자물가지수를 인플레이션 지수로 사용하려고 한다면, 이 지수가 더 많은 산업과 상품을 나타내야 한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많은 국가들에서는 초기에 광업·제조업에만 국한하던 생산자물가지수의 범위를 모든 경제활동의 범위로 넓혀야 한다.

### ③ 수출입물가지수

수출입물가지수는 대체로 수출품과 수입품의 가격을 평균낸 물가지수이다. 일반적으로 수출입물가는 소매상품의 가격보다는 생산자의 가격에 해당되기 때문에 대체로 생산자물가의 일부로 작성되었다.

초기의 수출입물가는 각 국가의 필요성에 따라 작성되기 시작하였다. 미국의 경우 1960년대에 그 작성방법이 도입되기 시작하여 1970년대 세계적인 석유파동으로 수출입 상품 가격이 크게 변화하기 시작하면서 이를 독립적으로 추계하기 시작하였다. 1973년 연간지수가 작성되기 시작하였고, 1983년부터 분기별 지수가 작성되었으며 1989년부터 월별지수가 작성되었다. 일본 역시 도매물가지수의 일부로 작성되다가 1985년부터 작성되기 시작하였으며, 우리나라 역시 1974년부터 작성하기 시작하였다.

### (3) 노동(고용 및 임금)

노동통계는 노동시장 및 노사관계의 구조, 그리고 그 변화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작성되는 통계이다. 이는 생산요소로서의 노동을 통하여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과 경제발전을 위한 자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협의의 노동통계는 임금노동자를 대상으로 하고, 노동력 수급, 임금수급, 등의 면에서 경제 분석에 크게 공헌하고 있다. 광의의 노동통계는 대상이 되는 노동자를 광범위하게 분류한 경우로, 여기에는 서비스 및 상품을 생산·판매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 나아가서 소득과 수입을 얻으며 일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이 포함된다. 통계의 종류로는 광의의 경우 인구 통계상 산업별 인구통계, 직업별 인구통계 등이 있고, 협의의 경우는 노동력에 관한 것(노동력·고용·실업 등), 노동조건에 관한 것(실수입금·지불임금총액 등 임금 구조의 기본조사 통계), 노동운동에 관한 것(노동쟁의 통계) 등이 있다. 경제통계로 분류되는 통계 중 경제활동 인구조사는 광의의 개념에 들어가고 임금이나 고용통계는 협의의 개념으로 들어간다.

노동통계의 영역은 ILO에서 1985년 6월 발표한 노동통계협약에 의해서 규정된다. 노동통계협약은 회원국이 정기적으로 작성 발표해야 할 기본적인 노동통계를 규정하고 있다. 규정된 노동통계의 영역으로는 1) 경제활동인구, 취업자 및 실업자, 불완전 고용, 2) 경제활동인구의 구조 및 분포, 3) 평균임금 및 근로시간, 시간당 임금을, 통상근로시간, 4) 임금구조 및 분포, 5) 노동비용, 6) 소비자물가지수, 7) 가계지출 및 수입, 8) 사업재해 및 직업병, 9) 노동쟁의로 구분된다.

#### (4) 광공업생산지수

광공업생산지수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광업과 제조업상품 생산의 변화를 나타내는 지수이다. 따라서 광공업생산지수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주어진 기간 동안 상품과 서비스의 부가가치에 대한 단기간의 변화를 추계하고 그것을 공급하는 데 있다. 상품과 서비스의 대한 자료의 수집이 기간 동안 수시로 시행되기 어렵기 때문에 추계가 정확하기 이루어져야 한다.

광공업생산지수는 단기적인 경제지표로 매우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다. 또한 경제의 상황을 평가하기 위해서 다른 지표와 연계하여 사용하거나 비교를 위해 사용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에 따라서 광공업생산지수는 몇몇 나라에서 분기별 국민계정 추계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앞서 말했듯이 광공업생산지수는 단기적인 경제지표로 많이 사용된다. 그 이유는 산업 활동의 변동성은 국가의 단기적인 경제활동에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따라서 광공업생산지수는 단기적인 정책을 결정할 때, 그리고 정책의 전환점을 잡을 때 많이 사용된다.

광공업생산지수는 국가의 산업 부문에서 모든 계층에게 일정하게 공급되어야 하기 때문에 가장 일반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발표된다. 반면에 몇몇 국가들은 자료에 접근하는 “과정”이나 자료를 “사용” 하는 차이에 따라 그룹을 지어서 광공업생산지수를 발표한다.

산업생산에 대한 통계적 조사는 1920년대에 시작되었다. 이는 일반적으로 경제의 단기적인 변화를 보기 위해서 조사되었고 이후 1950년 UN(국제연합)의 통계위원회의 권고로 인해 체계적으로 생산되기 시작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UN은 1950년 “Index Numbers of Industrial Production” 으로 광공업생산지수에 대한 자세한 추계방법을 소개하였다. 또한 이와 관련된 주제로 “Guidelines on Principles of a System of Price and Quantity Statistics(1977)” 과 “Manual on Producer’s of a System of Price Indices for Industrial Goods(1979)” 같은 간행물을 추가로 발표하였다.

1950년 이후 경제는 빠른 변화를 겪으면서 광공업생산지수의 개정이 강력히 요구되었다. 이를 위해 UN에서는 자료수집이나 지수의 편제에 더 정확한 방법을 찾게 되었고, 이를 통해 지수에 대한 통계적인 표준이 변경되었다. 이런 통계적 표준의 개선은 기존의 매뉴얼을 토대로 이루어졌지만 몇 가지 개정된 사항이 있었다. 그 사항은 1) 분기별 국민소득과 광공업생산지수 간의 연결, 2) “The International



Recommendations for Industrial Statistics(IRIS) 2008” 에서 제시된 조사범위에 대한 표준, 3) “The International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 of All Economic Activities(ISIC) 4th Edition” 에 수록된 자료 수집에 관련하여 산업 분류에 대한 표준, 4) “The Central Product Classification(CPC) version 2”에 수록된 새로운 산업 분류 및 그룹에 대한 표준이 포함된다. 이런 표준들은 광공업생산지수의 추계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고, 현재 계속 사용되고 있다.

#### (5) 재정

현재 한국에서 통합재정의 작성기준으로 삼고 있는 IMF의 “정부재정통계편람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Manual, GFS 편람)” 은 1986년에 발간되었다. 최근 IMF에서는 개정판으로 기존의 것을 대폭 수정한 “2001 정부재정통계편람” 을 발간하였다. 새로운 GFS 편람의 가장 큰 특징은 발생주의 회계방식을 도입한 점과 1993년 국민계정체제(SNA)와의 조화를 추구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1986년에 발간한 기존의 정부재정통계편람 편람은 현금주의에 기초하고 있다. 따라서 현금 형태가 아닌 각종 거래는 통계에 반영되지 않았다. 예를 들어 국민 주택채권 1종의 경우 이자가 원금상환 시 한 번에 지급되는데, 원금상환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5년 동안 이자는 비용으로 계산되지 않고, 또한 정부가 공기업에 대해 보유하고 있던 출자지분을 민간 기업에 대해 현물 출자할 경우 이는 재정통계에 반영되지 않는다. 따라서 현금주의는 정부의 재정활동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 많은 한계점이 있다.

개정판에서 발생주의를 도입한 가장 큰 이유는 현실과 가까운 재정활동의 파악에 있다. 더욱이 발생주의는 유량(流量, flow)과 저장(貯量, stock)의 결합을 가능하게 한다. 한국의 재정통계는 통합재정통계와 국가채무·채권통계 사이의 연계성이 약하기 때문에 발생주의를 도입할 경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신정부재정통계편람 편람의 또 다른 특징은 1993 SNA와 조화를 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은 국민계정 재정통계와 정부 재정통계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존재한다. 특히 정부부문의 포괄범위나 재정수지의 개념에 있어서 두 통계체제는 많은 차이를 보인다. 신정부재정통계편람 체제는 가능한 한 1993 SNA에서 제시하는 원칙에 따라서 재정통계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정부부문이나 공공부문의 범위를 1993 SNA에 따라 설정하고 있다.

## 제 4 장 최적 경제통계작성 시스템

### 1. 최적 국가통계 및 최적경제통계

#### 1) 최적 국가통계 및 최적 경제통계

최적 국가통계는 우수한 품질을 갖추면서 낮은 비용에서 생산되는 국가통계를 의미하며, 최적 경제통계는 우수한 품질을 갖추면서 낮은 비용에서 생산되는 경제통계를 의미한다.

이때 우수한 품질의 통계는 정확하며 신뢰성이 있으며 사용에 편리한 통계를 의미한다. 이러한 추상적인 개념의 우수한 품질은 협의의 개념에서 “OECD나 IMF 등 국제기구가 제시하는 국가통계 혹은 경제통계가 갖추어야 하는 종합적인 품질”을 갖춘 통계가 된다.<sup>21)</sup> 즉 해당 통계가 제공하고자하는 내용을 보다 정확하게 제공하면서 정책의 활용가치가 높으며 매우 편리하게 접근이 가능한 통계를 의미한다.

이때 통계를 활용하는 주요 주체가 정부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도 해당되기 때문에 이들 통계에 대한 신뢰성도 통계 품질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만약에 매우 정확한 통계가 국민이 매우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매체로 제공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활용하는 국민에게 신뢰성을 갖지 못한다면 실제로 이 통계의 활용성은 매우 낮게 될 것이다. 때문에 각종 홍보의 중요성이 매우 부각될 수 있다.

국가통계나 경제통계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공재의 성격을 지니는 것으로 주로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이 작성하는 것이다. 때문에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때문에 이들 통계에 필요 없는 비용이 수반될 경우 이는 국가적인 낭비가 될 수 있으며 이는 국민세금으로 충당되게 된다. 또한 재정의 특성상 이러한 비효율이 자체적으로 해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지속적인 경영혁신을 통하여 비용 절감을 추진할 것이나 공공기관의 경우 이러한 인센티브가 작기 때문이다.

#### 2) 통계작성 비용

통계를 작성하기에는 비용이 수반된다. 이들 비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통계작성의 단계를 살펴보고 이에 따른 비용을 제시한다.

통계작성은 먼저 (1) 통계기획에서 시작하여 (2) 구체적인 자료조사, (3) 정리, 분

21) 국가통계품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다음 절에서 자세하게 설명한다.

류 및 분석작업을 거쳐 (4) 통계표로 발표하는 4단계로 구성된다.

이때 (1) 통계기획단계는 해당 통계의 필요성에 맞추어 이를 작성하는 적절한 방법을 결정하는 단계이고, (2) 구체적인 자료수집조사는 기획안에 따라 필드에서 직접 자료를 수집하는 단계이며, (3) 정리, 분류 및 분석작업은 이들 수집된 자료를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통하여 합산하고, 이를 분류하는 단계를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4)는 이렇게 작성한 통계를 발표 및 홍보하는 단계이다.

통계작성에는 위의 각 단계에 따라 비용이 수반된다. 먼저 통계기획을 위해서는 통계기획비용이 수반된다. 이때에는 통계작성 목적에 가장 적합한 통계를 작성하는 방법을 찾는 단계이기 때문에 통계를 활용하려는 기관의 전문가와 통계이론 전문가가 협력하는 과정에서 많은 비용이 수반된다고 하겠다.

자료수집단계에는 각종 조사원의 고용과 조사지 인쇄와 배포 및 회수 시 비용이 발생한다. 자료조사비용은 작성되는 통계의 종류에 따라 그 비용이 매우 차이가 난다. 보고통계의 경우에는 이미 작성된 자료를 취합하는 비용에 불과하지만 조사통계의 경우 조사지 배포 및 회수, 작성에서 많은 비용이 수반될 수 있다.

자료 정리 및 분석단계에서는 수집된 통계를 정리 분류하여 각종 통계지표를 만드는 과정에서 비용이 수반된다. 이때 자료 정리비용은 회수된 조사지의 내용을 컴퓨터에 기입하거나 다른 컴퓨터 파일 형식의 자료를 작성에 필요한 형식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의미하고 분석비용은 컴퓨터에 입력된 기초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통계표로 만드는 비용을 의미한다. 특히 통계 분석 전문가의 인력 활용에 대한 비용이 수반되고 또한 이에 필요한 컴퓨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작성 비용이 역시 수집된 통계 분류 및 지표 작성 비용에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작성한 통계를 통계사용자에게 제공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발생한다. 이는 통계가 필요한 사람이 접근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는 것으로 통계의 홍보 및 광고, 인쇄물 발행,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 및 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을 의미한다.

### 3) 통계구분과 통계작성 비용

제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개별 통계는 보고통계, 조사통계, 가공통계 등으로 구분된다. 이때 이들 통계는 작성과정에서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이들 통계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에서 커다란 차이를 보이게 된다.

먼저 통계기획 비용은 보고통계, 조사통계, 가공통계 크게 차이를 보일 수 있다. 특히 조사통계의 경우에는 실제로 모집단에 대한 적합한 표본을 추출하여야 하기

때문에 표본추출법 등 통계이론에 보다 전문적인 인력이 필요하게 된다.

자료수집비용 역시 통계구분별로 큰 차이를 보이게 된다. 앞에서 구분한 바와 같이 보고통계는 각 담당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의 부산물로 제공되는 통계로 따로 이 통계를 작성하기 위하여 새롭게 조사를 수행하지 않기 때문에 자료조사비용이 추가적으로 지출되지 않는다.<sup>22)</sup> 반면, 조사통계는 실제로 조사원들이 현장에서 조사대상을 면접하고, 조사표를 작성하는 통계이기 때문에 매우 커다란 자료조사비용이 수반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가공통계 비용은 여러 가지 기존 통계를 결합하여 새로운 통계를 작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통계를 수집하는 방법과 사용하는 기존통계 수 등에 의존하게 된다. 예를 들어, 많은 통계를 사용하여 작성하는 가공통계는 많은 수집비용이 소요될 수 있는 반면, 그렇지 않는 가공통계는 그 비용이 적게 된다.

자료 정리 및 분석비용 역시 통계별로 큰 차이를 갖는다. 보고통계는 대체로 하나의 형식으로 작성되고 같은 컴퓨터 파일 형태로 작성되기 때문에 이를 취합하여 자료를 정리하고 분석하는 비용은 크지 않게 된다. 반면, 조사통계는 각종 조사지를 컴퓨터에 기입하는 자료정리 과정에서 많은 비용이 수반되게 된다. 최근 PDA 등 기기를 사용하여 자료를 수집 조사하는 것은 이러한 비용을 크게 줄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일단 수집된 자료를 관련 통계표로 만드는 비용은 크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통계자료량이 방대할 경우, 이에 적합한 통계프로그램과 대용량 컴퓨터를 사용하여야 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비용이 수반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가공통계는 이러한 비용이 크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만약에 가공통계작성에 필요한 통계가 서로 다른 형식으로 작성되거나 이러한 통계가 많은 경우, 이를 하나의 컴퓨터 파일 형식으로 구축하는데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수반될 수 있다. 그러나 유사한 형식으로 제공되는 몇 개의 자료를 활용하여 작성되는 가공통계라면 이러한 비용은 크게 줄어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통계홍보 비용은 대체로 통계별로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다만 특정 통계가 여러 가지 세부항목으로 구성되어 많은 자료를 제공할 경우, 이에 따른 인쇄비용이나 홈페이지 관리 비용이 크다고 볼 수 있다.

---

22) 보고통계의 경우 실제로 작성에 까지 매우 많은 비용이 수반된다고 할 수 있다. 즉 통계작성을 위하여 정부 부처가 하는 행정행위 자체에 많은 비용이 수반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 고에서는 행정자체에 사용되는 비용은 제외하고 통계작성에 국한한 비용만을 고려한다. 예를 들어, 주민등록인구를 추계하려면 온 국민이 주민등록을 하여야 하고, 이 경우 엄청난 비용이 수반된다. 그러나 일단 주민등록이 완료되면 이를 통하여 통계를 작성하는 비용은 매우 작게 된다. 본고에서는 의미하는 통계작성비용은 주민등록비용을 제외하고, 주민등록이 완료된 이후 이를 통계로 만드는 비용만을 의미한다. 따라서 주민등록통계의 작성비용은 매우 작다고 할 수 있다.

<표 4.1> 통계작성 별 비용

단계	보고통계	조사통계	가공통계
통계기획	중 소	대 중	대 중
자료조사	소	대 중	중
자료정리	소	대	중
통계발표	소	소 중	소 중
총작성비용	소 중	중 대	소 중

## 2. 최적 경제통계 시스템

### 1) 최적 국가통계시스템

#### (1) 최적 국가통계시스템의 정의

최적 국가통계는 전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최소의 비용으로 작성되는 우수한 품질의 통계를 의미하고, 최적국가통계시스템은 제1장에서 설명한 바와 같은 우수한 품질의 국가통계를 보다 낮은 비용으로 작성하는 가운데 각종 통계 작성 환경이나 해당 분야 및 정책 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적응하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보면 최적 국가통계시스템은 다음의 세 가지 내용으로 구체화된다.

첫째, 국가통계시스템은 우수한 품질의 통계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는 국가통계시스템 하에서 작성되는 개별 국가통계의 품질이 매우 우수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다.

둘째, 국가통계시스템은 국가통계는 낮은 비용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이는 국가통계시스템 하에서 작성되는 개별 국가통계가 최소의 비용을 작성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셋째, 국가통계시스템은 작성 환경이나 해당 분야 및 정책 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적응하는 시스템이어야 한다. 이는 첫째와 두 번째 조건으로 작성되는 최적개별통계가 통계 작성환경이나 변화에도 불구하고 지속될 수 있는 시스템이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 세 번째 성격은 최적국가통계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동태적 성격을 의미한다. 즉 통계는 현실 사회를 반영하는 지표이고, 통계작성 목적중의 하나가 각종 경제, 사회, 복지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것이다. 때문에 사회나 경제의 변화에 따라 필요한 통계가 바뀔 수 있고, 기존의 통계 역시 작성범위나 방법 또한 조정될 필요가 있다. 때문에 우수한 통계작성 시스템은 이러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비하여야 한다고 할 수 있다.

현재 매우 우수한 품질의 통계를 저렴한 비용으로 작성하고 있다 하더라도 작성환경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그 통계의 품질이 떨어지고, 활용도가 낮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 (2) 통계작성 시스템과 최적 국가통계 시스템

제2장에서 살펴본 바와 국가통계시스템은 크게 집중형시스템과 분산형시스템으로 구분된다.<sup>23)</sup> 집중형시스템은 중앙 통계작성기관이 대부분의 통계를 통합하여 작성하는 시스템이고, 분산형시스템은 개별 통계작성기관이 독립적으로 통계를 작성하는 시스템이다.

이때, 어느 통계작성시스템이 보다 효율적인가에 대한 판단 기준은 위에서 설명한 작성통계의 품질과 이에 수반되는 비율에 기초하여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시스템을 분석하기 위하여 가장 기본적으로 각국의 시스템을 비교하고, 이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시스템을 분석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현재 국내 경제통계작성 시스템의 효율성을 판단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판단기준은 (1) 우수한 품질 통계의 작성 가능성, (2) 이에 수반되는 작성비용의 극소화 여부, (3) 지속적으로 우수한 품질의 통계를 작성할 수 있는 시스템의 존재 여부가 될 수 있다.

이때 개별통계의 중요성이나 비용의 크기에 따라 품질과 비용 간의 우선순위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어 획일적인 기준을 찾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국민소득이나 물가 등 주요 경제통계가 정부 경제정책이나 개개인의 경제활동에 주는 영향을 고려할 때 품질이 비용에 크게 우선됨을 쉽게 가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다음의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만약 현행 시스템 하에서 제공되는 통계의 품질이 일정수준에 미달한다면

23) 물론 이 둘을 절충한 혼합형시스템도 존재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집중형시스템과 분산형시스템으로 구분하여 분석한다. 이는 현실적으로 완전한 집중형시스템도 존재하지 않고, 완전한 분산형시스템도 존재하지 않아 상대적으로 보다 가까운 형태의 시스템만이 존재하기 때문에 굳이 혼합형시스템으로 구분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이 시스템은 매우 비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고, 적극적으로 작성시스템을 개선할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둘째, 만약 현행 통계의 품질이 대체로 우수하더라도 비용이 매우 많이 수반되는 시스템이라면 개선과 조정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셋째, 만약 현행 통계의 품질이 우수하고 비용극소화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이 품질을 유지하거나 비용극소화가 이루어지기 어렵다면 시스템을 개선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때 현행 작성 통계가 과연 우수한 품질의 통계인가를 검정하기 위해서는 OECD 및 IMF 혹은 국내 통계청이 제시하는 통계품질지표에 우수하게 나타나는 통계를 작성할 수 있는가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최소비용은 일정 품질 수준의 통계를 작성하는 비용을 최소화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일정수준의 품질을 유지하는데 어느 시스템이 보다 효율적인가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다. 이때 최소비용 여부를 검정하는 것은 비용함수를 추정하여 그 결과를 통하여 분석하여야 하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각 통계의 작성비용에 대한 자료를 얻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집중형통계시스템 하에서 중앙국가통계기관이 달성할 수 있는 수준의 효율성을 기초로 하여 분석한다. 일반적으로 중앙국가 통계작성기관은 많은 전문 인력을 활용하고 필드조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극소화된 비용으로 통계를 작성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이 기관이 작성할 경우의 관련비용을 비교하는 것은 효율성을 평가하는 지표가 될 수 있다. 이때 만약 새롭게 이 집중형시스템 하의 중앙통계작성기구가 새롭게 인력을 구비하고 작성시스템을 갖추는데 소요되는 일시적인 비용과 이러한 시스템이 갖추어진 후 발생하는 가변비용을 구분하여 살펴본다. 이렇게 일시적비용과 가변비용을 분리하여 고려하는 것은 새롭게 제도가 바뀌는 경우에는 언제나 새로운 비용이 수반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장기적인 품질개선의 효율성은 현재의 우수한 품질의 통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비용을 의미한다. 이는 향후 통계작성 여건변화에 따라 어떻게 적응할 수 있는가를 통계청이 작성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평가한다.

이상에서 제시한 효율성 판단 기준표를 살펴보면 <표 4.2>와 같다.

〈표 4.2〉 통계작성 시스템 별 효율성 판단 기준표

기준		판단 방법	구체적 자료
1.	통계품질	품질진단결과	통계청 품질진단결과 IMF의 통계품질 진단 결과 활용
2.	통계작성비용	현재의 비용과 통계청 이 작성한다고 가정할 경우의 비용과 비교	통계기획, 자료조사, 자료 분석, 홍보 및 자 료 배포비용
3.	장기적으로 효율적인 통계작성 가능성	통계청이 작성할 경우 의 통계작성의 효율성 유지 가능성과 비교	통계개선을 위한 연구 및 개발 실적

## 2) 최적 경제통계시스템

### (1) 최적 경제통계시스템의 정의

최적 경제통계시스템은 경제통계를 작성하는 최적의 시스템으로 위의 최적국가통계 시스템과 같이 우수한 품질의 경제통계를 보다 낮은 비용으로 작성하며 각종 경제 및 정책 환경 변화와 통계 작성 환경에 신속하게 적응하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이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경제통계 역시 국가통계를 구성하는 일부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최적 국가통계가 갖추어야 하는 성격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즉 우수한 품질의 경제통계는 해당 통계가 국가통계가 갖추어야 하는 여러 가지 성격을 모두 갖추는 동시에 경제통계가 갖는 다양한 특성을 모두 갖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낮은 비용으로 이를 생산하는 것은 전반적인 국가통계와 같이 통계작성에 사용되는 각종 비용을 최소화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경제상황 및 통계작성 환경변화에 신속하게 적응한다는 것은 경제통계가 급변하는 경제 환경을 반영하고 경제정책 수립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제공되도록 제도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 (2) 통계작성 시스템과 최적 경제통계시스템

전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통계작성시스템은 크게 집중형시스템과 분산형시스템으로 구분된다. 따라서 경제통계시스템 역시 이들 집중형시스템과 분산형시스템으로 구분하고 그 효율성을 분석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국가통계시스템을 집중형시스템과 분산형시스템으로 구분하여 분석하는 것과 경제통계시스템을 집중형시스템과 분산형시스템으로 구분하여 분석할 경우 다소간의 차이가 발생한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현실적으로 모든 국가통계를 하나의 기관이 작성하면서 조정작업을 수행하는 집중형시스템의 국가도 없고, 또한 모든 국가통계를 서로 다른 기관이 작성하는 분산형시스템도 존재하지 않는다. 대체로 각 국가에서 일부의 통계는 국가 통계를 담당하는 중앙기관인 통계청이 작성하고, 일부의 통계는 그 통계를 활용하거나 필요로 하는 담당 기관이 작성하고 있으며 국가통계기관은 어느 정도의 통계조정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형편이다. 따라서 전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집중형시스템과 분산형시스템과의 차이점은 국가통계기관의 업무 조정능력과 중앙의 국가통계기관이 담당하고 작성하는 통계의 비율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국가통계기관의 업무 조정 기능이 매우 크고, 국가통계기관이 작성하는 통계의 비율이 높을 경우 집중형시스템이 되고, 반대의 경우 분산형시스템이라고 말할 수 있다.<sup>24)</sup>

그러나 이를 경제통계에 응용할 경우 다소 차이점이 발생한다. 즉 분산형의 국가통계시스템을 채택하고 있는 국가라 할지라도 한 두 개의 기관이 거의 대부분의 경제통계를 작성하고 있다면 이는 집중형의 국가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집중형 국가통계시스템을 채택하고 있는 국가라 할지라도, 상대적으로 많은 경제통계를 해당기관이 작성한다면 이는 분산형경제통계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구분을 고려할 때 경제통계시스템의 효율성을 분석하는 과정에서는 전체 국가통계시스템의 구분과는 다른 기준을 사용하여 집중형시스템과 분산형시스템을 구분이 필요하게 된다. 즉 경제통계중 상대적으로 많은 통계를 중앙 통계담당기관이 작성할 경우, 이를 집중형경제통계시스템으로 고려하고, 적은수의 통계를 작성할 경우, 분산형경제통계시스템으로 구분한다.

이러한 구분은 또한 그룹별로 통계작성의 효율성을 분석할 때도 사용한다. 특정 그룹에 해당하는 통계를 모두 작성할 경우, 이를 부문별 집중형경제통계시스템으로 구분하고, 그룹의 효율성을 분석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부문별 분산형경제통계시스템으로 구분하여 이 경우 각 그룹 통계의 효율성을 분석한다.

24) 물론 국가통계기관의 평판이나 예산 독립성 권한 등 다른 기준도 있으나 여기서는 국가통계기관의 조정기능과 통계작성비율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예를 들어, 대부분의 통계를 국가통계기관이 작성하지만 상당수의 경제통계를 여러 기관이 나누어서 작성할 경우, 국가통계 작성 면에서는 집중형시스템이지만 경제통계작성에서는 분산형시스템이 된다. 또한 경제통계를 몇 개의 부문으로 구분할 경우, 개별 그룹을 모두 다른 기관이 작성할 경우, 경제통계 전반적으로는 분산형시스템이지만, 부문통계면에서는 집중형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대부분의 통계를 여러 기관이 나누어서 작성할 경우 국가통계시스템은 분산시스템이지만 이중 상당수의 경제통계를 하나의 기관이 작성할 경우 경제통계시스템 면에서는 집중형시스템이 된다. 또한 경제통계를 몇 개의 그룹으로 구분할 경우, 해당 기관들이 개별 부문의 통계를 모두 작성하지 않고, 나누어진 경우, 전체적으로는 모두 다른 기관이 작성할 경우, 경제통계 전반적으로는 분산형시스템이지만, 부문통계 면에서는 집중형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경제통계시스템에서 분산형시스템과 집중형시스템의 특성은 제2장 국가통계시스템의 분산형시스템과 집중형시스템의 특징과 같이 나타날 수 있다. 즉 집중형 국가통계시스템의 이점은 첫째, 하나의 기관이 여러 가지 통계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규모의 경제 및 범위의 경제 효과로 인한 전문성의 집중, 둘째, 한 기관 내 협조의 용이성, 셋째, 효과적 통계 작성 시스템과 노하우의 집중, 넷째, 정치적인 간섭으로부터 통계품질과 공정성, 작성의 자유 보장의 용이성 등이다. 반면 분산형시스템은 첫째, 통계작성기관이 정책수요에 적극적으로 쉽게 대응할 수 있고 둘째, 국가통계의 발전이 중앙통계작성 기관장의 자질에 크게 영향을 받은 채 독립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셋째, 권력집중을 막으며, 넷째, 통계작성기관들 간의 경쟁유발로 우수한 통계작성이 더 빠르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제2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지난 세기 세계주요국 통계시스템 변화중의 하나는 집중형시스템과 분산형시스템의 수렴화라고 볼 수 있다. 즉 양 시스템모두 뚜렷한 장점과 단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장점을 누릴 뿐 만 아니라 이 장점이 이미 극대화되었다고 판단할 경우 타 시스템의 장점을 적절하게 취하기 위하여 일부 다른 시스템의 내용을 도입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분산형시스템을 상당부문 채택하고 민주화에 성공하여 권력집중에 따른 통계의 공정성 훼손이나 신뢰성 확보 등의 문제를 해결한 국가는 일부 집중형시스템을 도입하여 효율성을 추진하려고 한다. 반면 집중형시스템을 도입하여 효율성을 이루었으나 공정성 및 신뢰성에 문제를 갖고 있는 국가들은 분산형시스템을 도입하여 이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

따라서 경제통계시스템을 집중형시스템으로 구성하여야 할 것인가 아니면 분산형시스템으로 구성하여야 할 것인가는 이러한 특성을 살펴보고 결정하여야 할 것이

다.

일반적으로 경제통계시스템의 단기적인 효율성을 찾는다면 집중형시스템을 선택할 것이고, 장기적인 효율성이나 신뢰성 공정성 등을 보다 중요시 여긴다면 분산형시스템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 3. 경제통계와 품질

#### 1) 통계품질진단의 정의 및 관리의 필요성<sup>25)</sup>

통계품질진단은 통계가 작성되고 공표되기까지의 전 과정에 걸쳐 품질관리기반, 이용자만족도 및 요구사항 반영실태, 세부작성절차별 체계, 수집 자료의 정확성, 통계자료 서비스 등 통계품질을 종합적으로 진단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

전통적 의미에서 우수한 품질의 통계는 ‘정확하고 신속한 통계’였다. 그러나 품질의 개념에 점차 고객만족의 속성이 도입되기 시작하면서 통계품질의 의미도 ‘통계가 이용자들에게 얼마나 사용하기 적합하도록 작성·제공되고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재해석 되었다. 통계이용자의 요구사항을 얼마나 잘 반영하고 있는가 하는 사용적합성(Fitness for use)을 고려하여 한 가지측면이 아니라 다차원적인 개념(Multi-dimensional concept)으로 통계품을 다루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변화를 고려하여 우리나라의 통계청은 6가지 혹은 8가지 차원(관련성, 정확성, 시의성/정시성, 비교성, 일관성, 접근성/명확성, 신뢰성)으로 정의하고 있다. 통계품질진단은 궁극적으로 이 여러 가지 차원의 품질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측정하고 각 차원의 품질수준을 높이기 위해 통계를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지 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 2) 주요 품질진단 기준

##### (1) OECD 및 통계청의 통계품질진단<sup>26)</sup>

OECD 및 우리나라 통계청이 통계품질진단에 사용하는 각종 진단 기준은 다음과 같은 지표를 통하여 분석된다.

첫째, 관련성(relevance)으로 이용자 관점에 초점을 둔 측면으로 통계자료가 포괄

25) 통계품질관리 이렇게 합니다.(2010, 통계청)

26) 통계품질관리 이렇게 합니다.(2010, 통계청), 해외통계동향(2010, Vol.13, 통계청)

범위와 개념, 내용 등에 있어서 이용자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정도를 말한다. 즉, 통계이용자에게 얼마나 의미 있고 유용한 통계를 작성하여 제공하고 있는가와 관련된 개념이다. 통계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통계의 목적을 명확히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이용자 파악, 전문가 자문회의, 이용자 만족도 조사 등 이용자의 요구를 파악하고 반영하는 것이 통계의 관련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다.

둘째, 정확성(Accuracy)은 측정하고자 하는 모집단의 특성이나 크기를 얼마나 근사하게 측정했는가를 말한다. 대부분의 통계는 알 수 없는 참값을 추정하게 되는데, 정확성은 미지의 참값과 추정된 값과의 근접성에 관한 개념이다. 따라서 참값과 추정된 값의 차이인 오차가 작을수록 정확성이 높은 통계가 된다. 조사통계의 경우, 포괄범위, 표본추출, 응답 및 무응답, 작성 과정 등에 의해서 오차가 발생한다. 국민계정과 같은 가공통계는 투입자료인 다른 표본조사나 총조사 자료의 오류나 포괄범위, 조사 시기, 평가방법 등의 불일치 등에 의해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 정확성은 표본오차의 크기, 비표본오차의 정도 및 잠정치/확정치 간의 차이 등을 검토함으로써 알 수 있다.

셋째, 시의성 및 정시성(Timeliness and Punctuality)으로 통계의 시의성은 작성기준시점과 결과공표시점간의 차이를 나타내는 통계의 현실 반영도와 관련된 개념이고, 정시성은 예고된 공표시기를 정확히 준수하는가에 대한 개념이다. 작성기준시점과 결과발표시점이 근접할수록 시의성이 높은 통계가 된다. 통계이용자들이 통계의 공표일정을 사전에 알 수 있도록 일부 주요통계는 사전 예고제를 실시하는데 이러한 사전공표일정을 정확히 준수할수록 정시성이 높은 통계이다.

넷째, 접근성 및 명확성(Accessibility and clarity)으로 이때 접근성은 이용자가 통계자료에 얼마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도를 말하며, 명확성은 통계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정보제공 수준을 말한다. 통계자료의 DB화, 간행물 및 보도자료 홈페이지 게시, SMS로 속보 전송 등 다양한 방법으로 통계자료를 제공하고, 자료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검색기능을 추가하는 것 등이 통계의 접근성을 높이는 활동이 된다. 또한 이런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제공되는 통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통계를 작성하는 과정, 자료이용방법, 마이크로데이터 이용방법, 통계 이용상의 조언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자료(메타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이 통계의 명확성을 높이는 방법이다.

다섯째, 해석가능성(Interpretability)으로 이용자가 자료를 이해하고, 적절하게 사용,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OECD의 통계처리는 분산적으로 이루어져 이용자의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OECD는 상이한 공표 매체의 공존을 최소화하고 이용자들이 최적의 정의를 선택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여섯째, 비교성(comparability)으로 시간 또는 공간이 달라도 통계 자료가 동일한 개념, 분류, 측정도구, 측정과정 및 기초자료 등을 기준으로 집계되어 서로 비교가 가능한지를 나타낸다. 비교성은 특정 통계에 대하여 다른 나라, 다른 도시 또는 다른 연도의 자료와 비교가 가능한지를 보는 것으로, 국제 비교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기준 및 분류, 평가방법 등의 적용이 필요하다. 또한 작성주기가 부정기 또는 장기인 경우는 담당자 변동, 환경변화 등으로 과거조사와 개념, 조사항목, 조사방법 등이 달라져 시간적 비교성이 낮아질 수 있으므로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일곱째, 일관성(Coherence)은 동일한 경제·사회현상에 대해 서로 다른 기초자료나 작성방법에 의해 작성된 통계자료 들이 얼마나 유사한가를 나타낸다. 예를 들어, 잠정자료와 확정자료, 연간자료와 분기(월)자료, 각 통계조사와 국민계정은 서로 다른 자료원과 작성방법에 의해 작성될 수 있으나 서로 유사한 결과를 보인다면 일관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여덟째, 신뢰성(Credibility)은 통계 자료의 객관성에 대한 믿음으로, 자료가 적절한 통계적 표준에 의하여 생산되고 정책적으로나 실제적으로 투명함을 의미한다. OECD는 자료에 품질적 오류가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여 낮은 품질의 자료는 공표하지 않는다.

## (2) IMF의 경제통계품질

IMF는 1995년 멕시코 금융위기 및 1997년 아시아금융위기 이후 금융위기의 원인 중 하나가 개도국의 부정확한 경제통계라는 점을 인식하고, 경제통계 특히 거시경제통계 작성의 품질 기준을 제시하고 각국 정부가 이에 기초하여 거시경제통계를 작성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를 위해 IMF는 1997년부터 이에 대한 연구를 착수하여 2001년 IMF 이사회에 경제통계품질진단 방법(The Data Quality Assessment Framework) 보고서를 제출하고 이에 기초하여 각국의 통계품질을 진단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2003년에는 기존의 진단 형식을 일부 개편한 진단방법으로 하였다.<sup>27)</sup>

IMF에 의한 회원국 통계품질진단은 다음의 순서로 이루어진다. 먼저 회원국의 통계담당자가 IMF의 통계품질기준에 따른 품질평가서를 사전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IMF 평가단 면접 및 이사회 검토를 통하여 최종 평가 결과서를 작성한다.

27) 현재 IMF가 사용하는 통계진단방식은 2003년 개정된 방식으로 본 연구는 이에 기초하여 설명한다. 우리나라의 통계는 실제로 2001년과 2009년에 2회에 걸쳐서 품질진단을 받았는데 첫 번째는 2001년 방식으로 두 번째는 2003년 방식으로 받았다. 실제로 2001년 진단 형식과 2009년 진단형식은 일부 항목에서 다소간의 차이가 나타날 뿐 큰 차이가 없다.

IMF는 경제통계품질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6개 기준(품질의 전제조건(Prerequisites of quality), 통계작성의 성실성 확보(Assurance of integrity), 방법론적 건전성(Methodological soundness), 정확성과 신뢰성(Accuracy and reliability), 서비스 제공가능성(Serviceability), 접근성(Accessibility))을 제시하고 이에 기초하여 22개 지표를 만들고 이 지표에 기초하여 경제통계의 품질을 분석하고 있다.

이들 구성 지표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sup>28)</sup>

첫째, 품질제고의 전제조건(Prerequisites of quality)은 먼저 우수한 품질의 통계를 작성할 수 있는 법률 및 제도적 환경(Legal and institutional environment)의 구비를 의미한다. 즉 법이나 제도 등에서 통계 정보수집, 처리, 전파의 책임이 분명히 명시되어있어야 하고, 자료 생성기관사이의 자료 공유와 협력 관계가 알맞게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개인의 모든 자료는 비밀이 보장되어야 하고 통계적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한편 통계작성기관에 대한 직원이나 시설 예산 등이 작성하려는 통계에 맞추어 적합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이들 자원에 대한 효율적인 이용이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실제 작성되는 통계는 이것이 의도하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관련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적절한 품질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통계작성의 성실성 확보(Assurance of integrity)이다. 즉 통계적 업무의 전문성(Professionalism of statistical work) 확보되어 공정한 기준 하에서 통계가 작성되며, 소스 및 통계적 기법의 선택과 공표 역시 통계적인 고려사항에 의해서 단독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잘못된 해석이나 통계의 오용이 발생할 경우 이를 논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성실성 확보는 통한 통계작성의 투명성(Transparency) 확보와 연결된다. 통계가 수집되고 가공 및 공표되는 각종 용어나 조건 등이 모두 공표되며, 공식적인 통계 공표이전에 일부 정부기관이 이 통계에 먼저 접근하는 것이 공개적으로 알려져 있어야 한다. 또한 통계작성기관은 그 역할이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어야 하며, 작성방법이나 원천자료, 통계적 기법 등의 변화는 항상 공표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성실성 확보는 통계작성 기관 직원들이 자신들에게 적합한 행동지침을 잘 알고 준수하는 것을 포함한다.

셋째, 방법론적 건전성(Methodological soundness)은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통계작성기준과 지침 등을 사용하여 국제 분류 기준에 적합하도록 통계를 작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전반적인 용어나 개념에서 국제적인 기준(Use of international standards)을 따르는 것이고,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지침과 관행을 따르는 것

28) IMF 품질진단 기준에 대한 자세한 설명표는 부록에 제시하였다.

을 의미한다. 한편 각종 지표 분류 시 국제 분류를 이용(Use of international classifications)하며, 국제적인 회계기준(Use of international accounting principles)의 사용을 포함한다.

넷째, 정확성과 신뢰성(Accuracy and reliability)은 원자료나 중간자료에 대한 정확성 및 우수한 통계적 작성기법의 활용을 포함한다. 먼저 현황을 나타내는 원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포괄적인 자료 수집프로그램이 작동하는 가를 살펴보고, 적시에 이러한 자료가 제공되는 가를 고려하게 된다. 그리고 수집한 원자료를 평가하는 작업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는가의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이 자료를 다룰 수 있는 적절한 통계적 기법이 사용(Statistical techniques used)되는 가를 조사하고, 자료 조정, 변형, 통계분석 등 추가적인 통계방법이 적절한 것인가를 조사한다.

그리고 중간 자료와 통계적 산출자료에 대한 평가와 검증(Assessment and validation of intermediate data and statistical outputs)이 이루어진다. 마지막으로 정기적 혹은 부정기적으로 통계가 개선되는 시스템을 갖추었는가를 조사한다.

다섯째, 서비스 이용 가능성(Serviceability)으로 정기성 및 적시성(Periodicity and timeliness), 데이터세트의 일관성 및 다른 자료와의 조화롭게 일치하는 가 등이 성립하여야 한다. 또한 통계개정이 이루어질 때 정기적이고 투명한 일정을 따르는 가 혹은 개정된 자료와 과거 자료가 제공되는 가 및 개정에 대한 연구와 분석은 공공에 공개되는 가 등이 고려된다.

여섯째, 접근성(Accessibility)으로 이는 자료 접근성(Data accessibility)과 통계설명자료 접근성 등으로 구분된다. 자료접근성에 대한 고려사항으로는 통계공표 매체와 형식의 적절성 및 미리 계획된 공표일정에 따라 실제로 통계가 공표 되는가 등이 평가기준이 된다. 한편, 통계설명자료의 접근성(Metadata accessibility)은 문헌상 개념과 분류, 기록의 기준, 원천자료, 통계적 기법이 이용가능성과 국제적으로 채택된 기준과의 차이가 있는 가 혹은 이용자가 요구하는 세부사항들이 적절하게 제공되는 가 등이 포함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용자 지원(Assistance to users)을 위하여 각 분야에 대한 문의 연락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는 가 혹은 출판물과 문서의 카탈로그와 기타 서비스의 모든 변경사항에 대한 정보의 이용 가능성 등이 점검대상이 된다.

이러한 기준 하에서 IMF는 각국의 통계작성과정과 현황을 분석하고, O(실제 준수), LO(대체로 준수), LNO(상당부문 준수되지 않음); NO(전혀 준수되지 않음) 등 4 단계로 구분하고 각 항목을 표시한다. 즉 우수한 통계일 경우 대체로 기준을 충족하기 때문에 많은 항목에서 O를 받고, 품질이 낮은 통계일수록 많은 항목에서 NO나 LNO를 받게 된다. 이때, 국가별로 점수 또는 순위를 정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렇게 평가된 결과를 IMF는 회원국의 동의를 얻어 IMF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으며, 현재 82개국의 평가 보고서를 공개하고 있다.

#### 4. 경제통계시스템의 효율성

##### 1) 개별 통계 작성의 효율성

###### (1) 정의

효율적인 경제통계작성 시스템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우수한 품질의 경제통계를 보다 낮은 비용으로 작성하며, 경제상황 및 통계작성 환경변화에 신속하게 적응하는 시스템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경제통계가 존재하고, 이들 개별 통계의 작성 시스템 및 작성기관이 존재하는 가운데 개별통계의 특성이 매우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들 통계 작성의 효율성을 전반적인 시스템에 기초하여 평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즉 개별 통계의 활용도 및 중요성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들 통계의 품질이나 작성시스템의 평가 기준도 달라야 된다. 예를 들어, 통계작성 비용에 비하여 정확성의 중요성이 크게 강조되는 통계가 있는 반면, 비용의 효율성이 강조되는 통계도 존재한다. 이때 통계의 중요성을 실제로 측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통계가 부정확하게 발표되거나, 적절한 시간에 발표되지 않을 경우 그 피해를 중심으로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잘못 작성된 경제통계가 경제에 미치는 부작용은 경제통계마다 다를 수 있어 개별 통계마다 이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국민계정과 같이 국가 경제 전체의 현황을 제시하는 통계는 오류가 발생할 경우, 이에 따른 피해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클 수 있기 때문이다. 즉 경기상황에 대한 잘못된 판단은 이후 잘못된 경제정책의 실시로 연결되어 커다란 문제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규모가 작은 특수한 산업에 대한 통계 작성의 오류는 상대적으로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작을 수 있고 이에 기초한 정책의 부작용 역시 크지 않을 수 있다.

또한 개별 경제통계의 품질이 차지하는 중요성은 그 경제통계가 나타내는 현상이 그 시점에서 얼마나 중요한가에 따라 크게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 최근과 같이 실업이 사회 문제화 되는 기간에는 실업률 통계가 매우 중요한 통계가 되며, 2008년 10월 리만 브라더스의 파산신청에 따른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 중에는 국제금융



시장의 환율이 매우 중요한 경제통계라고 할 수 있었다.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기간 중에는 대외채무가, 1970년대에는 석유파동 기간 중에는 유가상승률이 매우 중요한 경제통계였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10년 현재, 통계의 중요성을 여러 가지 경제현상을 중심으로 평가하고, 이에 기초하여 비용대비 효율성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 (2) 개별 경제통계의 최적작성시스템 판단 기준

개별통계의 최적작성 시스템 판단 기준은 아래의 3가지 분류에 따라 기준을 사용하여 판단한다.

첫째, 기준 1로 현재 작성되는 통계의 품질이다. 이는 기존 통계청이나 기타 국제기관에서 실시한 통계의 품질진단 결과를 활용하여 이용자만족도, 작성절차별 통계 품질진단 결과, 차원별 품질진단결과 등을 활용한다.

둘째, 기준 2로 작성통계의 작성 비용이다. 이는 특정 품질의 통계를 작성하는 비용의 최소화 가능성을 의미한다. 이는 보다 구체적으로 통계작성단계, 자료 수집단계, 수집된 자료 정리 및 분석 단계 및 공표 및 홍보 등 단계로 구분하고 해당통계가 조사통계인가, 보고통계인가 혹은 가공통계인가를 구분하여 이를 분석한다.

셋째, 기준 3으로 작성통계의 품질 개선 및 가능성이다. 이는 현재 작성된 통계의 품질이 우수하다는 점을 가정하고, 향후 각종 작성환경변화에 따른 대응능력을 의미한다. 즉 체계적인 개선 가능성, 전문지식의 활용 여부 및 신속한 수요 대응 능력 등을 의미한다.

넷째, 이상의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로 국제협력 가능성 등을 들 수 있다.

한편 위에서 설명한 여러 가지 기준중 어느 것을 먼저 고려하여야 할 것인가는 조사하려고 하는 개별지표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이때 일반적인 거시경제 지표 - 국민소득, 국제수지, 물가, 경기 및 고용지표 등 - 는 경제 전반적인 상황을 나타내는 지표이고, 경제분석 및 정책 수립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정확성이나 기타 통계가 지녀야 할 품질진단 기준을 가장 우선적으로 충족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기준 1을 먼저 충족한 후, 기준 2와 3을 고려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가 될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많은 거시경제 통계중 상당수의 통계가 이미 기준 1을 충족하였다고 판단되어 기준 2 및 기준 3을 중심으로 분석하게 된다. 예를 들어 국민소득계정이나 소비자물가 등 주요 경제통계들은 정시성과 같은 기준으로 볼 때 대부분 달성된 것으로 나오기 때문이다.

이상의 기준에 기초하여 개별 경제통계의 효율성 평가 기준표를 만든 것이 <표 4.3>이다. 그리고 이 표에 근거하여 (1) 우수한 품질을 제공하고, (2) 통계작성비용이 가장 낮아지며, (3) 장기적인 통계개선이 이루어지는 경우 가장 효율적인 통계라고 할 수 있다.

이때 국가통계가 국민생활에 미치는 중요성에 비추어볼 때, 통계품질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고, 이를 유지하고 개선하고자 하는 장기적인 개선 관련 사항이 추가되며 마지막으로 비용절감사항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sup>29)</sup>

<표 4.3> 개별통계의 효율성 평가 기준표

구분	주요 지표	평가기준
기준 1: 통계품질	이용자만족도	통계품질진단 결과의 서베이분석
	작성절차별	통계품질진단 결과
	차원별	통계품질진단 결과
	신뢰성	주요 신문기사 및 보도자료
기준 2: 통계작성 비용	기획비용	통계 기획 및 개선 부서의 존재 및 인력
	자료수집비용	자료 수집 비용, 원자료 통계명 및 원자료 작성기관 등
	자료 정리 및 분석	전체 통계작성 인력 및 설비
	발표 및 홍보	홍보 인력 비용
기준 3: 장기 적인 개선	전문지식	통계관련 연구보고서 및 논문수
	개선 시스템	통계작성 부서의 규모
	신속한 수요 대응	통계작성부서와 통계활용부서와 관계
기준 4: 기타	국제 협력	현 국제협력 규모 및 인력, 다른 나라의 해당 통계작성기관과의 유사성

29) 물론, 국가통계이지만 그 활용도가 매우 제한되거나 유용성이 낮은 경우에는 품질보다도 비용이 보다 강조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가통계는 국민생활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 품질유지가 가장 중요한 사항이 된다.

## 2) 그룹별 통계 작성의 효율성

경제통계는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몇 개의 부문통계로 구분된다. 즉 국민계정, 물가, 노동, 산업생산, 재정, 금융 등과 같이 관련 부문의 통계를 결합한 하나의 그룹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이는 여러 개별 통계들이 유사한 사항을 내포하거나, 유사한 목적에 사용되기 때문이다. 또한 통계작성에 유사한 방법론이 사용되거나 개별통계의 작성에 필요한 원자료를 하나의 기관이 제공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예를 들어, 국민계정은 일국의 전반적인 생산, 소득 흐름을 나타내므로 일국의 경제를 분석하려면 필연적으로 다루어야 하는 통계이고, 이를 사용하여 거시경제정책을 수행하기 때문에 하나의 통계군으로 구분된다. 한편 소비자물가 및 생산자물가 등으로 구성되는 물가는 상품과 서비스의 평균 가격을 반영한다는 측면에서 같은 성격을 갖는 가운데 유사한 방법론으로 작성되기 때문에 같은 그룹에 속하게 된다. 한편 정부지출과 예산 등을 구성하는 재정통계 역시 일국 정부의 수치 및 활동을 나타낸다는 공통적인 의미를 지니면서 대체로 예산과 지출을 담당하는 정부부처가 제공한다는 점에서 같은 부문의 통계로 구분될 수 있다.

이때 개별적으로 통계가 매우 효율적으로 작성된다 하더라도 이러한 그룹별 작성의 효율성과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즉 이들 같은 그룹에 속해있는 통계들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유사한 특성을 지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할 경우 통계작성의 추가적인 품질개선이나 비용 절감 혹은 환경변화에 필요한 유연한 대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같은 그룹에 속해 있는 특정 통계들이 매우 효율적으로 작성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서로 다른 기관이 작성할 경우, 각각의 기관이 사용하는 비용을 합할 경우, 추가적인 비용절감이나 품질 개선의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같은 그룹에 속해있는 유사한 통계를 두 개의 기관이 독립적으로 작성한다면, 이들 통계 개선을 위한 연구 개발 시 중복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반면 이 경우 상호 경쟁을 통한 연구 증가 등의 다른 이득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야 하는 복잡한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개별적인 통계 분석이외에도 그룹별 분석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그룹별 통계작성의 효율성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분산형시스템과 집중형시스템의 이점과 단점을 상호 비교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즉 그룹별로 통계를 구분한 경우, 분산형의 경우에는 같은 그룹에 속해있는 개별 통계를 서로 다른 기관이 작성하는 경우에 해당되고, 집중형시스템은 하나의 기관이 이들 그룹내 통계를 모두

작성하는 것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이때 그룹별 경제통계 작성의 효율성 분석은 앞에서 실시한 역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된다. 즉 분산형시스템과 집중형시스템으로 구분하고, 하나의 기관이 이들 통계를 모두 생산하는 가에 따라 구분하여 분석한다.

이상의 사항을 요약하여 제시한 것이 <표 4.4>이다. 이는 개별통계의 효율성 평가에서 품질진단 결과를 제외한 나머지 기준을 제시한 것이고, 평가기준에서 규모의 경제 및 범위의 경제 효과 발생 가능성을 집중하여 살펴보는 것이 된다.

즉 개별 통계의 품질 유지가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되는 가운데 해당 통계의 장기적인 개선 가능성이 고려되고 마지막으로 그룹별 통계내에서 비용 최소화 문제가 고려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그룹별 통계에서는 개별통계의 품질이 유지되는 가운데 장기적인 개선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 통계작성비용이 가장 낮아지도록 그룹별 통계를 작성하는 시스템이 바로 가장 효율적인 통계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표 4.4> 그룹별 통계의 효율성 평가 기준표

구분	주요 지표	평가기준
통계작성 비용	기획비용	규모 및 범위의 경제 효과를 활용할 수 있는 전체 통계작성 수, 유사통계 작성 수 및 통계작성 인원 등
	자료수집비용	
	자료 정리 및 분석	
	홍보	
장기적인 개선	전문지식	
	개선 시스템	
	신속한 수요 대응	

### 3) 경제통계 작성의 효율성

개별 통계 및 그룹별 통계작성의 효율성 분석이 이루어진 이후 전반적인 경제통계작성 효율성을 분석한다. 이는 각종 개별통계와 그룹별 통계의 효율성 분석에 기초하여 수행한다.

이는 주로 경제통계 그룹별 통계들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이들 통계를 효율적으로 작성하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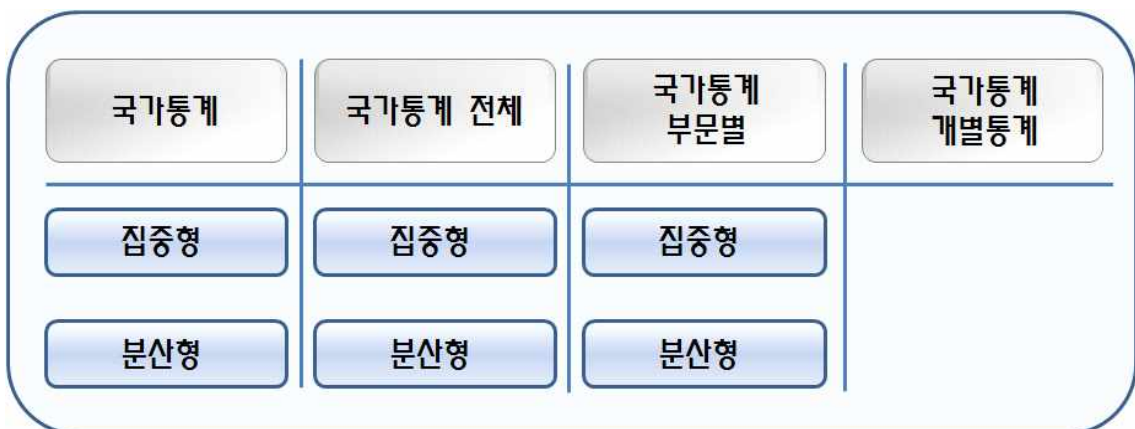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경제통계와 기타 사회통계, 보건통계 등 여타 국가통계를 모두 포함한 국가통계시스템에 대한 효율성 분석이 있다. 이는 국가통계 모두를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통계 전반적인 시스템의 효율성 분석을 의미하는 것이 된다. 그러나 본 연구는 경제통계의 효율성 분석에 국한되기 때문에 보다 광범위한 국가통계 효율성 분석은 실시하지 않는다. 이는 경제통계 뿐만 아니라, 사회통계나 보건통계 등 다양한 통계에 대한 효율성 분석과 함께 이루어져야 하고 이들 통계와의 연관성이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개별통계, 그룹별 통계, 경제통계 및 국가통계 전체의 효율성 분석을 그림으로 살펴보면 <그림 4.1>과 같다. 즉 최초 경제통계의 개별통계 효율성에서 시작하여 이들 간의 연계성에 중점을 둔 경제통계 내 그룹별 통계작성의 효율성을 고려하고 이어서 경제통계 전반적인 효율성과 분석으로 이어지며 결국은 제 1 장의 통계시스템 분석으로 연결된다. 즉 통계작성의 효율성 분석에서는 (1) 국가 전반적인 국가통계시스템의 효율성을 분석하는 것과 (2) 경제통계 효율성 분석 (3) 부문별 통계작성의 효율성 분석 및 (4) 개별통계작성의 효율성 분석으로 구성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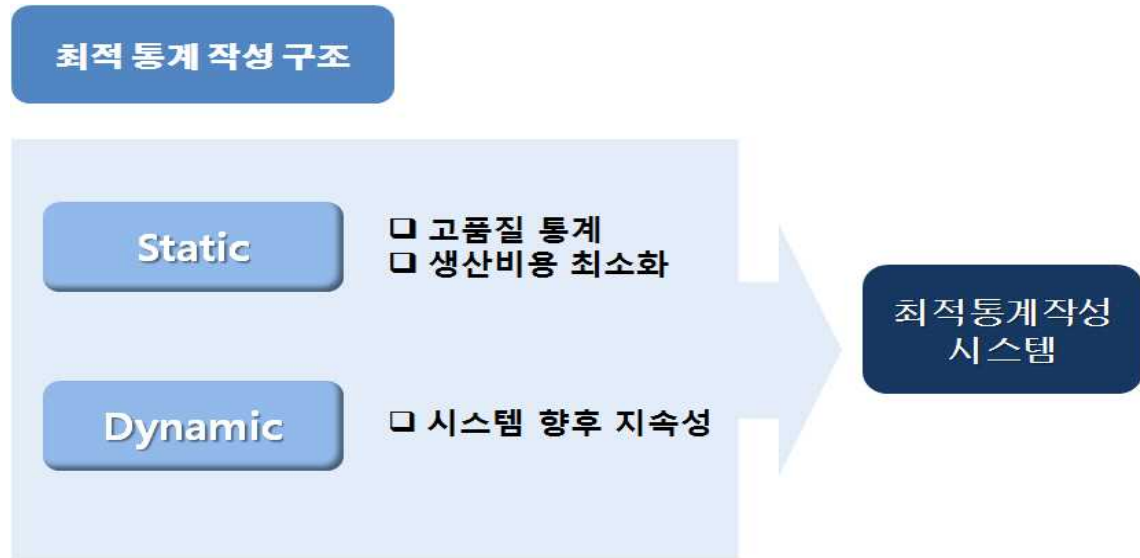
즉 광의로 볼 때 모든 통계를 총괄하여 효율적으로 분석하는 시스템 분석을 국가 전반적인 통계 시스템의 효율성을 분석하는 것이고, 이중 경제통계의 효율성을 분석하는 것을 경제통계의 효율성 분석이 되면, 경제통계중 일부의 통계를 분석하는 것이 경제통계 내 부문별 통계의 효율성 분석이 되고 마지막으로 개별통계의 효율성 분석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사항에 기초하여 최적경제통계작성시스템은 (1) 단기적으로 우수한 품질의 경제통계를 작성하고 (2) 장기적으로 이러한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3) 비용을 최소화하는 시스템으로 정의할 수 있다.

<그림 4.1> 부문별 통계시스템 구분



<그림 4.2> 최적통계 작성구조



<표 4.5> 경제통계의 효율성 평가 기준표

구분	주요 지표	평가기준
통계작성 비용	기획비용	규모 및 범위의 경제 효과를 활용할 수 있는 전체 통계작성 수, 유사통계작성 수 및 통계작성 인원 등
	자료수집비용	
	자료 정리 및 분석	
	홍보	
장기적인 개선	전문지식	
	개선 시스템	
	신속한 수요 대응	

#### 4) 최근 경제통계 작성 환경 변화와 효율성

이상의 기준을 사용하여 먼저 현행 작성기관의 효율성을 판단하고, 이어서 미래 통계작성환경의 변화에 비추어 효율성 분석을 실시한다. 즉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효율적이라는 것이 최근 변화하는 통계환경 하에서 미래에도 효율적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즉 이를 위해서는 앞에서 설명한 최근 통계작성 환경의 변화 사항을 나열하고 이것이 위의 효율성이 미치는 효과를 제시할 것이다.

주요 최근 통계작성환경의 변화는 위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통계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이다. 세계적으로 정치적인 안정세가 지속 되면서 경제발전이 가장 중요한 관심대상이라는 점을 반영하여 이를 나타내는 경제통계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이다. 이러한 경제통계의 중요성이 더욱 커짐에 따라 경제통계의 품질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져서, 경제통계의 오류는 매우 커다란 사회적인 반향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각종 경제통계작성 기관들은 보다 다변화되고, 세분화되며 정확한 경제통계를 작성하여야 하는 보다 큰 책임을 지게 되고 이를 총괄하는 국가통계중앙기관의 역할이 보다 커지게 될 것이며 이 기관의 독립성에 대한 요구는 더욱 커질 것이다. 결론적으로 보다 다양하고, 우수한 품질에 대한 수요는 계속 지속될 것이며 통계작성기관은 이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이다. 만약 이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다면 통계작성기관들은 이에 대한 비난을 감수하게 될 것이다.

둘째, 통계이용자의 이용의 증가이다. 통계활용도가 증가하면서 각종 통계사용자들은 사회의 특성이나 변화를 반영하는 다양한 통계를 요청하게 되고, 통계작성기관들은 이들의 요구에 적절하게 대응하여야 한다. 때문에 국가통계작성기관들은 사회변화에 대응하고, 통계이용자들의 수요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셋째, 정보화의 진전이다. 최근 정보기술의 도입은 통계작성과 보관, 분석 및 통계홍보 및 보급면에서 모두 크게 영향을 주었다. 통계작성에서 각종 통계가 컴퓨터 파일형태로 작성 저장되기 때문에 낮은 비용으로 이를 보관하고 전송하고 분석하기 매우 수월하게 되었다. 반면 홍보면에서는 인터넷 등과 같은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각종 정보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게 되었으며 기초자료나 시계열자료 제공에 매우 편리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비용 변화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응답률 저하이다. 정보누출에 따른 불이익이 매우 커짐에 따라 각 개인이나

기업 등 응답대상자들이 응답을 꺼리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전자적인 방법을 통한 자료수집이나 보고통계활용 등 새로운 방법을 사용하여 보다 응답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도록 준비하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 국제표준 및 협력의 확대이다. 많은 통계작성 기준이 국제적인 표준으로 수집되고, 비교됨에 따라 각 작성기관들에는 국제기관의 기준을 준수하고, 국제회의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하게 되었다. 국가통계작성기관들은 국제기구가 제공하는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우리나라의 특성이나 현황 등을 작성하여 국제통계의 표준화 작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야 한다. 또한 국내의 각종 통계자료를 영어로 제공하고, 영어 웹사이트를 통하여 각종 자료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여섯째, 통계작성의 전반적인 효율성 개선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상당수의 통계에서는 어느 정도 통계품질의 우수성이 달성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2006년부터 정기품질진단이 실시되었고, 개정 통계법에 따라 2008년부터 개별기관의 품질진단이 법제화됨에 따라 각 기관이 이를 체계적으로 실시하게 되어 주요 통계의 품질은 상당수준에 이른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추가적인 요구는 대체로 통계작성의 효율성 개선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국민들이 우리나라 통계에 대한 신뢰성이 확립될 때까지 효율성 보다는 품질개선에 대한 노력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 제 5 장 우리나라의 주요 경제통계 및 작성 시스템

### 1. 국민계정

#### 1) 개요

국민계정은 일국에서 국민경제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경제주체들의 다양하고 복잡한 경제활동 결과와 일정 시점에서의 국민경제 전체의 자산과 부채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통일된 회계기준을 따라 작성하는 통계이다.

국민계정은 국민소득통계, 산업연관표 자금순환표, 국제수지표와 국민대차대조표의 5대 국민경제통계로 구성된다.

이런 점에서 볼 때 국민경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국민계정은 기업에서의 재무제표와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그 구성 또한 유사하다.<sup>30)</sup>

#### 2) 국민소득계정

##### (1) 개요

우리나라의 국민계정은 한국은행이 1957년 우리나라 국민소득통계의 공식제편기관으로 지정되면서 시작되었다. 당시 한국은행은 UN이 1953년에 발표한 국민계정체계와 그 부표(A System of National Account and Supporting Tables)의 작성기준에 따라 1953년 이후의 국민소득통계를 작성해 왔다.

이후 한국은행은 <표 5.1>과 같이 총 10차에 걸쳐 기준년 개편을 실시하였고, 또한 크게 2회에 걸쳐 추계방법을 새롭게 하여 국민계정을 개정하였다. 대체로 1, 2, 3, 4, 6, 7차 개정은 주로 기준년 개편에 중점을 둔 개정이었으며, 5차와 8차 및 9차는 새롭게 추계방법을 개선하면서 실시한 개편이었다.

예를 들어, 1986년에 개정된 제 5차 개정에서는 UN이 1968년에 개정한 새로운 국민계정체계(System of National Account, 1968 SNA)에 의거하여 1970년부터 당시까지의 국민계정을 개정하였다. 또한 6차 개정에서는 국민소득통계와 산업연관통계를 연결하였으며 8차 개정과 9차개정에서는 UN이 1993년 개정한 국민소득체계(System of National Accounts, 1993 SNA)에 기초하여 기존의 국민소득통계를 전면 개편하였다. 당시 UN은 1970년대 후반 이후 여러 가지 경제환경이 급격히 달라짐에 따라 1993년 새롭게 국민소득체계(System of National Accounts, 1993 SNA)를 개정하여

30) 기업의 재무제표가 손익계산서, 제조원가명세서, 현금흐름표, 대차대조표 등을 구성되는 것과 유사하다.

발표하였고, 한국은행은 신체제로 이행하기 시작하여 2004년 이를 완료하였다.

한편 이 기간 중에 기준년 개편은 5년마다 주기적으로 이행되었다. 국민계정은 기준년 중심의 실질지표와 명목지표를 동시에 제공하여야 하므로 기준년이 개편될 경우, 개편된 통계를 제공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표 5.1> 우리나라 국민계정의 기준년 개편연혁

개편 회차	기준년	공표연도	대상기간	비고
-	1955년	1958년	1953년 ~ 1957년	1953년 SNA에 의거 작성
1차	1960년	1964년	1953년 ~ 1963년	-
2차	1965년	1967년	1953년 ~ 1966년	-
3차	1970년	1972년	1953년 ~ 1971년	-
4차	1975년	1978년	1953년 ~ 1977년	-
5차	1980년	1984년	1970년 ~ 1982년	-
-	1980년	1986년	1980년 ~ 1984년	1968년 SNA로 이행
-	1980년	1987년	1970년 ~ 1985년	1968년 SNA로 이행
6차	1985년	1989년	1970년 ~ 1987년	국민소득통계와 산업연관표 연결
7차	1990년	1994년	1970년 ~ 1992년	-
8차	1995년	1999년	1970년 ~ 1997년	1993년 SNA로 부분 이행
9차	2000년	2004년	1970년 ~ 2002년	1993년 SNA로 이행 완료
10차	2005년	2009년	1970년 ~ 2008년	

자료: 한국은행, 『국민계정의 이해』, 2005

국민계정은 일정기간 동안 경제주체들이 생산활동에 참여한 결과, 창출된 소득이 어떻게 분배되고 처분되는가를 나타내는 통계로서 국민경제의 손익계산서에 해당된다

국민계정은 생산, 소득, 소비, 자본축적, 부 등을 구성하는 중심체계(central framework)와 위성계정(satellite accounts)과 사회계정 행렬(Social accounting matrix) 등 기타체계로 구성된다. 이때 중심체계는 모든 거주자의 제도부문과 국외 부문에 대한 거래 및 기타 플로우와 자산부채를 기록하는 경상계정, 축적계정, 대차대조표, 국외거래계정 등으로 구성된다.

경상계정은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 생산에 의한 소득발생, 제도 단위 간 소득의 분배와 재분배, 소비와 저축을 위한 소득의 사용을 기록하는 계정으로 생산계정과

소득계정으로 구성된다. 축적계정은 제도부문이 거래 또는 기타 활동을 통해 취득하고 처분한 자산과 부채를 기록한 계정으로 자본계정과 금융계정, 자산의 기타 증감계정으로 구성된다. 국민대차대조표는 회계기간의 기초 및 기말에 제도부문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과 부채의 스톡을 기록하는데 기초대차대조표, 대차대조표 증감계정 및 기말 대차대조표 등으로 구성된다. 국외거래 계정은 거주자 제도 단위와 비거주자 제도 단위간의 거래와 이와 관련된 자산 및 부채의 스톡을 기록하는 계정으로 국내경제와 동일하게 경상계정과 축적계정, 대차대조표로 구성된다.

국민계정의 가장 중요한 계정인 국민소득은 <표 5.2>와 같이 크게 생산국민소득, 분배국민소득 및 지출국민소득 계정으로 구성된다. 생산국민소득은 경제활동별 분류체계에 따라 크게 농림어업,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등 산업과 정부생산자 등으로, 분배국민소득은 피용자보수, 영업잉여, 고정자본소모, 생산 및 수입세 등으로, 지출국민소득은 최종소비지출, 총고정자본형성, 재고증감, 수출, 수입 등으로 구성된다.

<표 5.2> 국민소득 통계의 구성

생산국민소득	분배국민소득	지출국민소득
농림어업 및 어업	피용자보수	민간소비지출
광업	영업잉여	정부소비지출
제조업	고정자본소모	총고정자본형성
전기·가스 및 수도업	생산 및 수입세	재고증감
건설업	(공제)보조금	재화와 서비스의 수출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공제)재화와 서비스의 수입
운수·창고 및 통신업		
금융·보험업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기타서비스업		

자료: 한국은행, 『국민계정의 이해』, 2005

현재 우리나라의 생산국민소득은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에 기반을 두고 통계작성의 기본단위인 397개 품목분류에서 출발하여 차상위의 78개 기본분류, 23개 중분류 및 13개의 대분류로 그 체계가 확립되어 있으며, 지출국민소득은 최종소비지출 16개(국외, 민간비영리단체, 정부 등의 소비 포함), 총고정자본형성 3개, 재고증감 1개, 수출 및 수입 각 2개 등 총 24개 부문으로 그 체계가 이루어져 있다. 생산·분배 및 지출국민소득 각각의 기본적인 항목구성 내역은 <표 5.2>와 같다.

## (2) 작성 절차

국민소득 추계의 첫 단계는 통계작성에 필요한 관련 기초통계자료의 수집에서부터 시작된다. 국민소득통계는 국민경제 전체의 움직임을 체계적이고도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2차 가공통계임에 따라 170여종의 단위기초통계가 이용되고 있으며, 체계화되지 않은 단순자료를 포함하면 기초통계자료의 수는 300여종에 이른다. 이것을 모두 여기에서 나열하기 어렵기 때문에 본 보고서는 이를 부록에 첨가하였다.

국민소득통계는 적합성을 갖춘 기초통계자료를 적시에 얼마만큼 많이 수집하여 이용하느냐에 따라 통계의 질적 수준이 좌우되기 때문에 한국은행은 기초통계자료의 개선·개발과 함께 수집에 상당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분야별로 다양한 형태의 기초통계자료가 수집되면 이의 오류를 확인한 다음 상품기준(397개 품목)의 산출액, 중간투입 및 부가가치를 추계하고 그 결과가 경제현실과 부합하는지 등의 적정성 검토를 거친 후 생산국민소득을 확정한다.

한편 국민소득통계는 산업연관표의 상품분류체계에 기반을 두고 상품기준으로 작성됨에 따라 이를 산업 간의 비교가능성과 통계의 유용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에 근거하여 산업분류체계로 전환해 준다. 이렇게 하여 생산측면의 국민소득 추계작업이 완료되면 다음 단계로 지출국민소득 추계작업에 들어가게 된다. 지출국민소득은 생산국민소득을 근간으로 총공급액(산출액+수입)을 결정하고 이로부터 중간수요 및 수출액을 차감하여 국내최종수요액을 구한 후 이를 「상품흐름법」에 따라 세부 지출항목별로 구분하는 작업을 진행하여 가계소비지출, 총고정자본형성 및 재고증감 등 부문별 최종수요를 작성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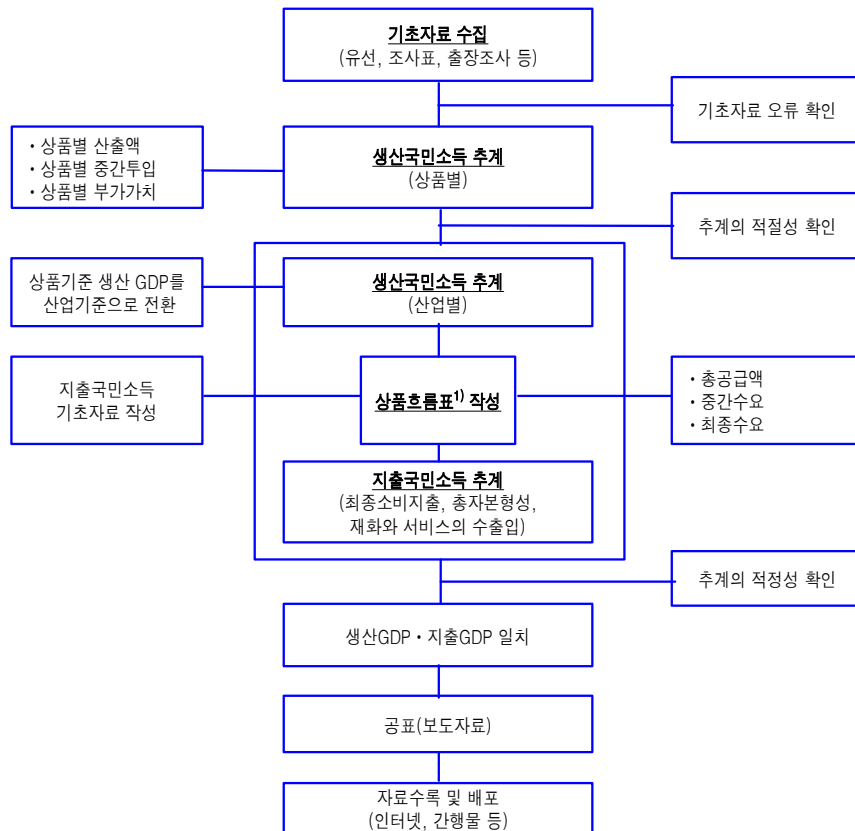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재화 및 서비스의 수출과 수입(차감항목)을 추가하여 지출측면의 GDP가 최종적으로 확정되면 추계 결과치와 메타데이터를 보도 자료로 공표함과 동시에 한국은행 인터넷 홈페이지에 수록한다.

지금까지 기술한 생산 및 지출국민소득의 추계 흐름을 요약하여 표시하면 <그림 5.1>과 같고 공표 내용은 <표 5.3>과 같다.

이렇게 국민계정은 관련 기초통계를 바탕으로 국제기준(1993년 SNA)에 따른 추계

방법을 이용하여 작성되는 가공통계이기 때문에 이들 문제점들은 이와 관련된 기초 통계의 문제점 및 추계방법상의 부실로부터 기인할 가능성이 높다. 한편, 국민계정 작성과정은 작성자의 판단을 포함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이와 관련된 품질 평가는 사실상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초통계의 충실성 및 정확성, 그리고 국민계정 통계 작성환경에서의 인력이나 예산과 같이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한 부분에서 품질 진단을 실시할 것이다.

<그림 5.1> 국민소득 편제작업 흐름도



주: 1) 생산 측면의 최종생산물이 지출 측면에서 어떻게 처분되는가를 유통과정을 통해 순차적으로 추적파악하는 기법

자료: 한국은행, 『분기 국민소득 추계 편람』, 2006

<표 5.3> 통계별 공표 내용

표 이 름	작성 공표 내용			
	분기 (속보)	분기 (잠정)	연간 (잠정)	연간 (확정)
표 준 계 정				
종합계정(국내총생산 지출, 국민처분가능소득과 처 분, 자본거래 국외거래)			○	○
제도부문별 소득계정			○	○
제도부문별 자본계정				○
부 표				
경제활동별 국내총생산 및 국민총소득	○	○	○	○
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	○	○	○	○
경제활동별 국내총부가가치와 요소소득				○
국민소득과 국민처분가능소득			○	○
자본재형태별 총자본형성	○	○	○	○
경제활동별 총자본형성				○
가계의 목적별 최종소비지출	○	○	○	○
가계의 형태별 최종소비지출	○	○	○	○
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의 목적별 최종소비지출			○	○
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의 목적별 투입 및 산출				○
일반정부의 목적별 최종소비지출				○
일반정부의 목적별 지출(I · II)				○
일반정부의 부문별 소득거래			○	○
일반정부의 부문별 자본거래				○
국외거래(경상거래, 자본 및 금융거래)			○	○
총저축과 총투자		○	○	○

자료: 한국은행, 『분기 국민소득 추계 편람』, 2006

### 3) 산업연관표

#### (1) 개요

산업연관표는 한 나라 국민경제의 수량적인 투입산출체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한 경제에서 재화와 서비스가 생산되고, 그 생산과정에서 각 산업은 원재료의 거래관계를 토대로 직접, 간접으로 연관을 맺게 된다. 이와 같이 산업연관표는 생산 활동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산업 간의 상호연관관계를 수량적으로 파악하는 분석방법을

말한다.

한국은행은 <표 5.4>와 같이 1960년 산업연관표를 최초로 작성한 이래 최근의 2003년에 이르기까지 열한차례의 실측표와 아홉 차례의 연장표를 작성하여 왔다. 1963년, 1966년, 1970년, 1975년, 1980년, 1985년,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의 실측표와 1968년, 1973년, 1978년, 1983년, 1986년, 1987년, 1988년, 1993년 및 1998년, 2003년의 연장표를 작성하였고, 2006년부터는 매년 연장표를 발표하고 있다.<sup>31)</sup>

<표 5.4> 각 산업연관표의 주요 특징

구분	부 문 분 류				가격의 평가	수입의 취급
	기본부 문	소분류	중분류	대분류		
'60	266	109	43	-	생산자 가격	① 경쟁·비경쟁수입(절충)형 ② 비경쟁수입형
'63	270	109	43	-		
'66	298	117	43	-		
'70	340	153	56	-	생산자 가격 구매자 가격	① 경쟁수입형, ② 비경쟁수입형·국산, 수입표 를 경쟁수입과 비경쟁수입 으로 구분
'75	392	164	60	-		
'80	396	162	64	19		① 경쟁수입형(생산자가격평가표) ② 비경쟁수입형(국산거래표와 수입거래표로 구분)
'85	402	161	65	20		
'90	405	163	75	26		
'95	402	168	77	28		
'00	404	168	77	28		
'05	404	168	78	28		

자료 : 한국은행, 「산업연관분석 해설」, 2007

1960년에 최초로 작성된 산업연관표는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1962-1966) 입안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되었으며, 1970년 산업연관표는 국제표준산업분류(ISIC, 1968)와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1970)에 의거하여 개편하였다. 또한, 제3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1972-1976)의 주요사업을 반영하여 1차 산업과 중화학공업 및 이와 관련되는 산업부문을 세분한 점 등이 이전의 산업연관표와 차이점이다.

1980년 산업연관표는 1979년 제2차 석유파동으로 인한 상대가격체계의 변동과

31) 미국은 1947년에 산업연관표를 최초로 작성하였으며, 영국은 1948년, 일본은 1951년에 산업연관표를 각각 작성하기 시작함으로써 세계 각국에서 산업연관분석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활동분석 내지 선형계획 등의 발전과 더불어 상호보완적으로 그 실용성이 더욱 제고되었다.

1970년대 중반 이후 중화학공업부문의 육성발전에 따른 생산기술구조의 변화 등으로 겪게 된 산업구조면에서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하여 작성하였다. 부문분류는 SNA 방식에 의한 활동별 분류에 따라 일부 서비스 부문을 산업, 국공립, 민간비영리 등으로 구분함으로써 기본부문을 396개 부문으로 확대하고 이를 162부문과 64부문으로 통합하여 발표하였다.

1990년 산업연관표는 1960년 산업연관표를 최초로 작성한 이래 여덟 번째로 작성된 실측표이다. 1990년 산업연관표는 1985년 이후 새로운 상품의 출현과 신기술의 도입에 따른 생산기술 구조의 변화, 원유를 비롯한 국제원자재의 가격과 환율변동 등에 의한 상대가격체계의 변동 그리고 기술집약적 첨단산업의 발전에 따른 산업구조면의 변화 등을 반영한 새로운 산업연관표의 필요성에 따라 작성되었다. 이렇게 산업연관표는 내외경제여건의 변화를 반영함으로써 산업구조나 산업부문간의 상호의존관계 등 국민경제의 구조에 관한 총체적인 파악과 각종 가격변수의 파급효과분석 그리고 경제예측과 경제정책의 효과측정 등에 기초자료로 제공되었다. 아울러, 국민계정통계로서의 SNA에 의한 생산계정작성과 국민소득계정의 1990년 불변가격 기준으로의 개편 등에도 이용되었다.

2000년 산업연관표는 2001년 1월에 작성계획을 수립하여 부문분류, 투입구조조사, 부문별 추계 및 확정작업 등 총 2년 8개월에 걸쳐 작업한 끝에 2003년 8월에 공표하였으며 1960년 산업연관표를 최초로 작성한 이래 열 번째 작성된 실측표이다. 2000년 산업연관표는 1995년 산업연관표 작성 이후 1997년에 발생한 외환위기에 따른 경제 전반에 대한 구조조정의 영향, 경제의 디지털화 진전 및 신기술 개발과 신상품의 출현과 경제의 서비스화 진전 등에 따른 생산기술구조의 변화의 상품별 상대가격체계 변화로 인한 산업간 투입산출구조의 변화, 그리고 1993 SNA(System of National Accounts)를 반영한 새로운 산업연관표의 편제가 필요한데에 따른 것이다. 2000년 산업연관표는 이러한 경제변화를 반영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구조에 관한 총체적인 파악 경제예측과 경제정책의 효과측정 등에 이용되는 한편 국민계정과 생산자물가지수의 년 기준년 개편자료로도 활용되었다.

2005년 산업연관표는 2000년 산업연관표 작성 이후 경제의 서비스화 진전 등에 따른 경제전반의 급격한 산업 및 생산기술 구조 변화 등을 반영한 새로운 산업연관표의 편제가 필요하고, 2003년 지역 산업연관표를 병행 편제함에 따라 실측표로 작성되었다. 2005년 산업연관표는 이러한 대내외 경제여건의 변화를 반영하여 작성되었기 때문에 산업구조나 산업부문간의 상호의존관계 등 경제구조의 총체적인 파악 및 경제예측과 경제정책의 각종 파급효과 측정 등에 유용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 (2) 주요특징

### ① 「산업연관표」의 기본구조<sup>32)</sup>

국민경제내의 각 산업은 재화와 용역의 생산을 위해 서로 다른 산업으로부터 원재료, 연료 등의 중간재와 노동, 자본 등 본원적 생산요소(primary inputs)를 구입하고,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를 다른 산업부문에 중간재로 팔거나 최종수요자에게 소비재나 자본재 등으로 판매하게 된다.

산업연관표는 이러한 국민경제 내에서의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 및 처분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거래를 일정한 원칙에 따라 행렬형식으로 기록한 종합적인 통계표이다. 일정기간(보통 1년) 동안 국민경제 내에서의 재화와 서비스의 거래를 ①산업 상호간의 중간재거래부문, ②각 산업에서의 노동, 자본 등 본원적 생산요소의 구입부분 그리고 ③각 산업부문 생산물의 최종소비자에게로의 판매부분 등 세 가지로 구분하여 기록한다.<sup>33)</sup>

산업연관표는 두 방향으로 읽을 수 있는데 표의 세로(列, column) 방향은 각 산업부문이 재화 및 용역을 생산하기 위하여 지출한 생산비용의 구성 즉, 투입구조를 나타낸다. 이는 원재료 투입을 나타내는 중간투입(intermediate inputs) 부문과 임금, 이윤, 이자, 간접세 등 본원적 생산요소의 구입비용을 나타내는 부가가치(value added) 부문으로 구분되며 그 합계를 총투입액이라 한다. 또한 이 표의 가로(行, row) 방향은 각 산업부문의 생산물의 판로구성 즉 배분구조를 나타내는 것으로 중간재로 판매되는 중간수요(intermediate demand) 부문과 소비재, 자본재, 수출상품 등 최종재로 판매되는 최종수요(final demand) 부문의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그리고 중간수요와 최종수요를 합한 것을 총수요액이라 하고 여기서 수입을 공제한 것을 총산출액이라 하는데 각 산업부문의 총산출액과 이에 대응되는 총투입액은 항상 일치된다.<sup>34)</sup>

한편 재화와 서비스의 산업부문 상호간의 거래인 중간수요와 중간투입을 기록하는 부분을 “내생부문”이라 하고 최종수요와 부가가치를 기록하는 부분을 “외생

32) 한국은행, 「산업연관분석 해설」, 2004 에서 재인용.

33) 내생부문의 산업부문 분류는 각 산업의 투입구조가 안정적이라는 가정이 유지될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산업연관분석에서의 산업부문 분류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한다. ①투입구조 및 배분구조가 유사한 품목들은 동일한 부문으로 분류한다. ②각 품목별 총산출액, 투입구조, 배분구조 등을 조사할 때 기초통계자료의 이용이 용이한가의 여부 및 각종 통계와의 비교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분류한다. ③과거에 작성된 산업연관표와의 비교 및 국제비교의 가능성 여부에 따라 분류한다.

34) 세로방향의 투입(input)과 가로방향의 산출(output)을 합하여 산업연관표를 Input-Output Table(투입산출표)라고도 부르는 것이다.

부문”이라 한다. 따라서 산업연관표는 내생부문과 외생부문으로 구성된다고 볼 수 있다. 내생부문은 외생부문의 수치가 모형 밖에서 주어지면 이에 따라 수동적으로 모형 내에서 그 값이 결정되는 부분이란 의미로 산업연관표 작성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며 작성된 표의 분석이나 이용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외생부문은 내생부문과는 관계없이 모형 밖에서 값이 결정된다는 의미로 이 부분의 변동이 국민경제에 어떠한 파급효과를 미치는가를 알아보려는 것이 산업연관표 작성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표 5.5>에서 보면 먼저 行방향은 i 부문의 국내생산  $X_i$ 와 수입  $M_i$ 를 합한 총공급  $X_i + M_i$  중  $ID_i (= \sum_{j=1}^n X_{ij})$ 는 자체부문과 타 부문에 중간재로,  $Y_i (= C_i + I_i + E_i)$ 는 소비, 투자, 수출 등 최종수요로 판매된 것을 나타낸다. 列방향으로 j부문의  $X_j$ 의 생산을 위해 자체산업 및 타 부문으로부터  $II_j (= \sum_{i=1}^n X_{ij})$ 를 원자재로 구입하고  $V_j$ 의 분원적 생산요소를 구입한 것을 나타낸다.

<표 5.5> 산업연관표의 기본구조

		내 생 부 문		외 생 부 문			수 입 (공제)	총 산 출 액
		1 …… j …… n	중간수요계	소비 투자 수출	최종수요 계			
내 생 부 문	1	$X_{11} \cdots X_{1j} \cdots X_{1n}$	$ID_1$	$C_1$ $I_1$ $E_1$	$Y_1$	$M_1$	$X_1$	
	⋮	⋮	⋮	⋮	⋮	⋮	⋮	
	⋮	⋮	⋮	⋮	⋮	⋮	⋮	
	i	$X_{i1} \cdots X_{ij} \cdots X_{in}$	$ID_i$	$C_i$ $I_i$ $E_i$	$Y_i$	$M_i$	$X_i$	
	⋮	⋮	⋮	⋮	⋮	⋮	⋮	
	n	$X_{n1} \cdots X_{nj} \cdots X_{nn}$	$ID_n$	$C_n$ $I_n$ $E_n$	$Y_n$	$M_n$	$X_n$	
	중간투입 계	$II_1 \cdots II_j \cdots II_n$						
외생부문	부가가치 계	$V_1 \cdots V_j \cdots V_n$						
총 투입액		$X_1 \cdots X_j \cdots X_n$						

자료 : 한국은행, 「산업연관분석 해설」, 2007

② 「산업연관표」의 작성 과정 및 원칙

산업연관표의 작성작업은 준비작업, 투입구조 조사, 부문별 추계, 조정작업, 각종 계수의 도출 등 여러 단계로 나누어져 진행된다. 산업연관표는 기본적으로 각 산업

부문의 투입구조가 안정적이라는 가정에서 출발하므로 동일 부문에 포괄되는 품목들은 동질성이 있어야 하며 그 투입구조나 배분구조에 유사성이 있어야 한다.

<표 5.6> 산업연관표에서 도출되는 계수

구분	부문	계수	비고
거래표	404 기본부문 및 , 168, 77 및 28통합부문)	- 생산자가격평가표 - 구매자가격평가표	o 국산거래표 o 수입거래표
투입계수표	28 통합부문 등	- 생산자투입계수표 - 국산 및 수입투입계수표	
생산유발계수표	28 통합부문 등	- $(I-A)^{-1}$ 형 - $(I-A^d)^{-1}$ 형	
수입유발계수표	28 통합부문 등	- $A^m(I-A^d)^{-1}$ 형	
부가가치유발계수표	28 통합부문 등	- $\widehat{A}^V(I-A^d)^{-1}$ - $\widehat{A}^V[I-(I-\widehat{m})A]^{-1}$	
부속표		- 도소매마진액표 - 화물운임표 - 고용표 - 고정자본형성표 - 잔폐물발생수요표 - 부문별 품목별 공급액표 - 기초가격평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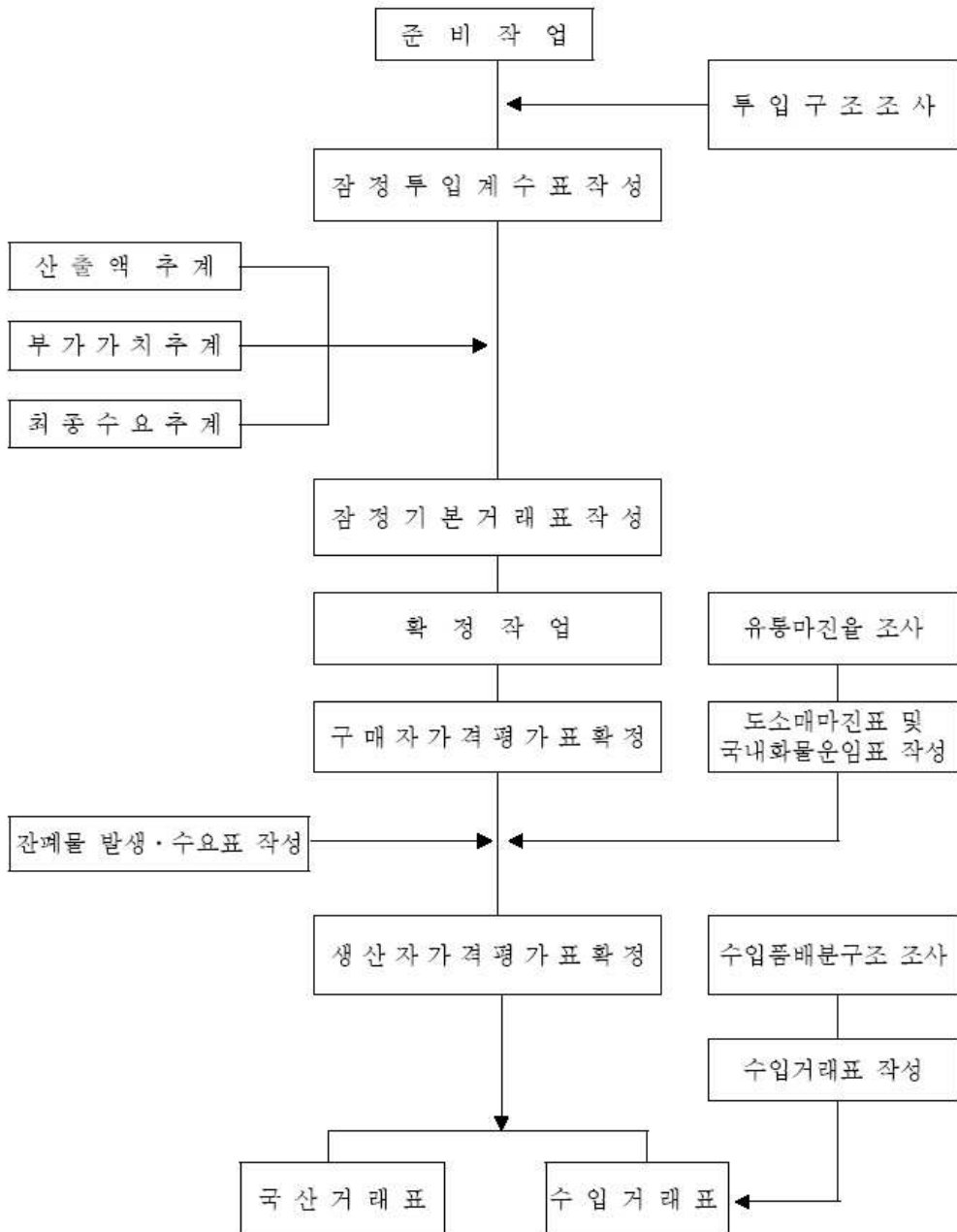
자료 : 한국은행, 「산업연관분석 해설」, 2007

준비작업은 산업연관표의 작성계획을 수립하고, 작성할 표의 체제와 종류나 작성 원칙 등을 결정하는 단계로 산업연관표 작성과 관련되는 기본원칙을 결정하며, 각 부문의 정의 및 포괄범위 등을 정하고 추계방법과 기초 통계자료를 검토하는 단계이다. 투입구조조사는 기존에 통계자료가 있는 부문이나 품목은 재분류 집계하며, 기존 통계자료가 없는 부문은 표본조사에 의해서 투입구조를 파악하는 단계이다. 2003년의 경우 산업연관표 상의 투입구조조사 대상 표본업체수는 5,000개 였으며 확률비례추출법을 이용하여 표본시 발생하는 gamma 분포의 특징을 제거하였다.

투입구조조사가 완성된 이후에는 부문별 추계하는 단계로 총산출액, 투입내역, 수출입, 최종수요 등을 추계한다. 이와 더불어 부가가치추계, 유통마진추계가 이루어

지며, 확정작업으로 투입과 산출의 일치작업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부문별 추계작성이 완성되면, 부문통합과 각종 계수가 도출된다. 산업연관표에서 도출되는 계수는 다음과 같다.

<그림 5.2> 2003년 산업연관표 작성과정



자료 : 한국은행, 『산업연관분석 해설』, 2007

#### 4) 국제수지

##### (1) 개요

국제수지는 일정기간 동안 한 국가의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에 발생한 모든 경제적 거래를 체계적으로 기록한 통계로서 1940년대 UN과 IMF 주도로 작성된 매뉴얼에 따라 집계를 시작하였다. 우리나라는 한국은행이 1958년 이래 반기별로 작성하였고, 1968년부터는 분기별로, 1979년부터는 월별로 작성하고 있다.

국제수지는 IMF의 「국제수지 매뉴얼 제5판」에 따라 작성되며, 「경상계정」, 「자본계정」, 「준비자산증감」 등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첫째, 경상계정은 외국과의 상품, 서비스 거래와 외국에 투자한 대가로 벌어들이는 배당금, 이자 등의 소득과 대가 없이 이전되는 이전거래를 계상한다. 경상계정은 상품수지, 서비스수지, 소득수지, 경상이전수지로 구성되어 있다. 상품수지는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상품거래를 계상하며 기초통계로 이용되고 있는 「통관수출입통계」에 대해 시차조정, 포괄범위조정, 분류조정 등의 작업을 거쳐 국제수지 기준의 상품수출입을 산출한다. 서비스수지는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용역거래를 계상하며 운수, 여행, 통신서비스, 보험서비스, 특허권 등 사용료, 사업서비스, 정부서비스 및 기타서비스로 구분된다. 소득수지는 노동의 대가로 수취 또는 지급하는 「급료 및 임금」과 대외금융자산 및 부채와 관련된 배당, 이자 등 「투자소득」의 수입 및 지급을 계상한다. 경상이전수지는 아무런 대가 없이 제공되며 수혜자의 소득 및 소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송금, 구호를 위한 의약품의 무상원조, 국제기구출자금등을 계상한다.

둘째, 자본계정은 내국인이 외국에 투자하거나 대금을 빌려주는(유출)거래와 외국인이 우리나라의 주식 및 채권 등 금융자산을 구입하는(유입) 거래에 대한 기록이다. 자본계정은 투자수지(직접, 포트폴리오, 기타), 기타 자본수지, 준비자산증감으로 구성되어 있다. 투자수지는 통화당국의 준비자산을 제외한 대외금융자산·부채의 소유권 변동과 관련된 모든 거래를 계상하며 직접투자, 증권투자, 기타투자로 세분화 된다. 기타 자본수지는 해외이주비 지급 등 자본이전거래와 특허권 등 비생산·비금융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을 계상한다.

셋째, 준비자산증감은 외환보유액 변동분 중 통화당국의 외환매입, 이자소득 등 거래적 요인에 의한 것만을 포함한다. 준비자산증감은 통화당국이 국제수지 불균형을 직접 보전하거나 또는 외환시장 개입을 통해 국제수지 불균형을 간접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대외자산의 증감을 계상한다.

국제수지 통계의 기초자료는 금융기관의 외환전산망 보고, 조사대상기관이 작성

한 자료를 입수하여 사용한다. 즉 한국은행은 매월 10~20일 중 금융기관, 관세청, 해운회사, 카드사 등 업체 및 협회 등을 통한 전수 조사를 실시하여 기초자료를 획득하며, 외환수급통계는 on-line을 통해 입수한다. 주요 관련 자료는 외환수급통계(매월), 통관 수출입통계(매월), 금융기관 B/S 등(매월)이다.

## (2) 주요특징

국제수지 통계는 우리나라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우리나라와 같이 소규모 개방경제의 경우, 대외거래가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국제수지를 통한 경제 분석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국제수지 통계는 일정기간동안 한 나라의 거주자와 비거주자 사이에 발생한 모든 경제적 거래를 체계적으로 기록한 통계를 말한다. 일정기간이라 함은 일정기간 중에 발생한 거래를 집계한 것을 말하며,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법률상의 국적보다는 이익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를 기준으로 한다.

기초자료인 통관수출입통계, 외환수급통계, 금융기관 B/S등을 이용하여 경상수지, 자본수지, 준비자산증감을 작성 제공함으로써 경제정책 수립과 정책효과 분석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되는 유용한 지표이다.

국제수지통계 작성연혁은 우리나라가 1955년 IMF에 가입한 것을 계기로 한국은행에서 1950~1956년 중의 국제수지표를 연도별로 1957년 최초 작성하였으며 1958년부터는 반기별로, 1968년부터는 분기별로, 1979년부터는 월별로 작성 공표해오고 있다. 1993년 IMF가 새로운 「국제수지 매뉴얼 제5판」을 개정함에 따라 1998년 동기준에 의거 1980년 이후의 국제수지 통계를 개편하였다.

IMF의 「국제수지 매뉴얼 제5판」(BPM 5)에 의거 작성된 1980년 이후 계열과 이전 계열 간 시계열이 단절되어 있다. 이는 1980년 이전의 원자료가 「국제수지 매뉴얼 제5판」을 적용할 수 없을 정도로 세 분류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제수지 통계는 통계 작성 후 기초통계와의 일치 여부 확인 및 과거 시계열 및 모니터링 결과와도 비교 후 최종 확정 후 결과를 공표한다. 통계의 공표주기는 매월이며 공표 시기는 잠정치는 익월말(단, 1월 통계는 3월초)과 연간(익년도 2월말) 공표하며 확정치는 익년도 10~11월중 전년도 월별 및 연간통계 확정 후 공표한다.

국제수지 통계는 보도자료(월중 국제수지 동향)를 통해 공표하며 국제수지(e-Book), 조사통계월보, 경제통계연보 그리고 DB사이트인 경제통계시스템(<http://ecos.bok.or.kr>)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 5) 자금순환

### (1) 개요

자금순환표는 국민경제 내에서 발생한 다양한 금융활동들이 상호간에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생산·지출 등 실물활동과는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체계적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놓은 표이다. 이 표에서는 국민경제 주체를 의사결정 형태가 유사한 그룹으로 묶어 금융법인기업, 정부(일반정부), 비금융법인기업, 개인, 국외라는 제도부문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제도부문이 자금을 조달하고 운용한 결과를 기록한다. 따라서 자금순환표를 보면 실물부문의 경제활동이 금융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반대로 금융시장의 변화가 재화 및 서비스의 수요 등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지를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금융거래의 결과로 나타나는 경제주체별 금융자산 및 부채의 잔액규모도 알 수 있다.

### (2) 주요 특징

자금순환표는 1952년에 미국의 코플랜드(Morris A. Copeland)교수가 발표한 「A Study of Money Flows in the United States, N. Y.」(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1952) 논문이 그 효시가 되며 1955년에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Flow of Funds in the United States, 1939~53」(Federal Reserve Bulletin, Oct. 1955)를 발표하면서 공식적으로 편제되기 시작하였다. 현재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자금순환표를 공식통계로 작성하고 있으며 각국의 경제정책 수립 및 그 효과분석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65년부터 한국은행이 분기 및 연간으로 자금순환표를 작성하여 발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자금순환표는 최초로 작성된 1965년에는 법적 제도적 기준에 따른 부문분류체계를 채택하였으나 1985년에 자금순환계정을 UN의 국민계정 체계로 전면 개편하면서 경제적 기능에 의한 분류체계로 변경하였으며 금융법인기업, 정부(일반정부), 비금융법인기업, 개인, 국외등 5개 대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금순환통계는 자금의 흐름을 통해 실물 및 금융경제활동을 종합적으로 볼 수 있게 해주는 통계이다. 따라서 자금순환통계는 실물경제 또는 금융경제의 흐름을 나타내는 국민소득통계, 통화금융통계, 재정통계 및 국제수지통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예를 들어, 국민소득통계는 생산, 소득, 자본 및 금융계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

민경제가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한 결과 발생한 소득(생산계정)을 경제주체별로 분배하고 분배된 소득은 소비지출로 사용되거나 저축(소득계정)으로 남게 된다. 그런데 경제주체의 지출에는 소비지출 뿐 아니라 투자지출과 같은 자본지출(자본계정)도 포함된다. 이러한 저축, 투자 등을 위해서는 자금조달과 운용 등 금융거래(금융계정)가 필요하다. 이때, 국민소득통계의 자본계정과 금융계정이 바로 자금순환통계가 된다.

## 6) 국민계정 종합

국민계정은 국민소득통계, 산업연관표 자금순환표, 국제수지표와 국민대차대조표의 5대 국민경제통계로 구성된다. 2010년 현재 우리나라에서 한국은행은 국민계정의 5대 계정중 국민소득통계, 산업연관표 자금순환표, 국제수지표 등 4개의 통계를 작성하고 있으며, 국민대차대조표를 준비하고 있다.<sup>35)</sup>

이러한 점에서 살펴볼 때 우리나라의 국민계정 작성시스템은 집중형시스템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즉 국민계정에 관련된 모든 통계를 하나의 기관이 작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 2. 물가지수

### 1) 개요

물가란 시장에서 거래되는 개별 상품의 가격을 경제생활에서 차지하는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평균한 종합적인 가격수준을 말한다. 물가지수는 이러한 물가의 움직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기준시점을 100으로 표시한 지수이다.

개별 상품의 가격이 그 상품에 대한 수요와 공급의 관계에 의해서 결정되고 변동되듯이 개별 상품가격을 종합한 물가도 마찬가지로 경제전체의 총수요와 총공급의 관계에 의해 결정되고 변동된다. 따라서 물가의 변동은 공급 측의 생산이나 수요 측의 소비, 투자 등 한 나라의 모든 경제활동 결과를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가지수는 경제동향을 분석하거나 경제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기초통계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작성되는 물가지수로는 <표 5.7>과 같이 소비자가 소비생활을 위하여 구입하는 재화의 가격과 서비스요금의 변동을 측정하기 위한 소비자물가지수(Consumer Price Indexes), 생산자의 국내시장 출하단계에서 재화 및 서비스의 평

35) 한국은행은 경제통계국 국민계정실 내에 국민소득팀 국민대차대조표반을 운영하여 국민대차대조표작성을 준비하고 있다.



균적인 가격변동을 측정하기 위한 생산자물가지수(Producer Price Indexes), 수출입 상품의 가격동향을 파악하고 그 가격변동이 국내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기 위해 작성되는 수출입물가지수(Export and Import Price Indexes) 등이 있다. 이들의 차이점은 지수 산정에 포함되는 상품의 범위와 가중치에 있다. 예를 들어, 소비자물가는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소비자가 직접 직면하는 상품의 가격 평균을 의미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직접 구입하는 상품을 선택하여 평균가격을 계산하며, 소비자들의 생활에 중요한 상품의 가중치가 상대적으로 높게 된다.

<표 5.7> 우리나라의 주요 물가지수 비교

분류	소비자물가지수	생산자물가지수	수출입물가지수
작성 기관	통계청	한국은행	한국은행
작성 목적	가계가 소비하는 상품 가격과 서비스요금의 변동 측정	국내생산자가 생산·출하하는 상품 및 서비스의 가격변동 측정	수출입상품의 가격변동 측정
대상 품목	가계소비지출 비중이 큰 소비재와 개인서비스 489개 품목	국내 거래규모가 큰 884개 품목	수출 및 수입규모가 큰 수출 211개, 수입 234개 품목
대상 품목 선정 기준	2005년 도시가계조사 품목별 소비지출액 기준 1/10,000이상 거래품목	2005년 개별품목의 국내거래액 이 상품은 1/10,000이상, 서비스는 1/2,000 이상인 품목	2005년 상품별 수출입액기준 1/2,000이상 거래품목
기준 연도	2005년(5년마다 변경)	좌동	좌동
조사 가격	소비자 구입가격	생산자 판매가격	수출입계약가격 (수출은 FOB, 수입은 CIF기준)
지수 산식	라스파이레스식	좌동	좌동
이용 범위	소비자의 생계비 변동 파악, 노사간 임금조정 기초자료 등	시장동향분석, 구매 및 판매계약, 예산편성 및 심의 자산재평가 등	수출입상품의 가격변동이 국내물가에 미치는 영향의 측정 등

자료: 한국은행, 『알기쉬운 경제지표 해설』, 2010

한편 산업기술의 발전이 가속화되고 소비자의 기호도 다양화되면서 시장에는 매일같이 새로운 제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으며 제품의 라이프사이클(life cycle)이 점점 짧아짐에 따라 물가지수 조사대상 품목을 교체해야 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물가지수에서는 동일 품질을 전제로 순수한 가격변동만을 포착해야 하므로 새로운 제품으로 교체 시에는 적절한 품질조정방법을 이용하여 품질변화로 인한 가격변동분을 제외시키고 있다.

이와 함께, 특정년도 거래액을 기준으로 하여 선정된 조사대상 품목 및 이들 품목의 가중치는 해를 거듭할수록 새로운 상품의 출현과 기존상품의 퇴장, 국민생활양식의 변화 등으로 경제 현실을 정확히 반영하기 어렵다.

UN통계위원회는 조사대상품목과 가중치의 고정으로 인한 지수의 왜곡도를 방지하고 현실 반영도를 높일 수 있도록 물가지수의 기준년도를 5년마다 변경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기준년도를 5년마다 변경하여 오고 있다.

## 2) 소비자물가지수

소비자물가 지수는 최종 소비단계에서 나타나는 물가수준을 종합적으로 측정하는 지표로서 재화와 서비스의 가격을 조사하여 작성한다. 소비자물가는 국민생활에 직접적으로 크게 영향을 주는 지표로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첫째, 화폐의 구매력을 측정하는 수단이며, 둘째, 경기판단지표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셋째, 주요 경제지표의 디플레이터로 활용된다.

우리나라의 소비자물가조사는 1936년에 경성상공회의소에 의해 일부 상품을 대상으로 처음 실시되었고 이어 1945년 8월부터 한국은행의 전신인 조선은행에서 작성하였으며, 1947년에는 『서울소매물가지수』를 1936년 기준지수와 1945년 8월 기준지수로 병행하여 작성 발표하였다.

1949년 4월 품목별 가중치를 처음으로 사용하여 1947년 기준의 『전국소매물가지수』를 발표하였으며, 1955년 기준 『서울소비자물가지수』부터 서비스요금까지를 포함하는 소비자물가지수를 작성하기 시작하였다.<sup>36)</sup>

1963년 소비자물가작성이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으로 이전되었고, 1965년부터는 전국의 주요 도시를 포함하는 『전도시 소비자물가지수』를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에서 작성하였으며, 1990년 12월부터는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이 통계청으로 독립, 승격됨에 따라 통계청이 소비자물가지수의 편제·공표 기관이 되었다.

36) 당시에는 소비자물가는 상품만을 대상으로 편제한 지수이었다.

소비자물가지수는 1990년 기준 지수부터 기본분류지수외에 특수분류지수인 상품성질별지수, 신선식품지수, 구입빈도별지수 등 4가지의 특수분류지수를 작성·발표하였으며, 1995년 기준 지수부터는 자기소유주택의 주거비용을 귀속임대료 방식으로 물가지수에 포함하는 자가주거비용포함 총지수를 작성하여 보조지표로 활용하고 있고, 2000년 2월부터는 일기변화에 민감한 농산물과 원료를 수입에 의존하는 석유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시적인 외부충격에 따른 물가 변동분을 제외한 장기적인 기초물가인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지수를 작성하여 물가정책수립에 활용토록 하고 있다. 2003년 4월에는 보조지표로 전국기준 2002년 연쇄지수를 작성하여 발표하였다.

한편 도시가계의 소비구조변화를 반영하기 위하여 매 5년 주기로 지수를 개편하여 왔으며 2006년 12월에 2005년 기준 지수개편 결과를 발표하였다.

소비자물가의 조사 품목은 백화점, 대형마트 등을 포함한 약 22,000여개 소매점포 및 서비스점포를 조사대상처로 선정하여 가격을 조사하고 있고, 집세는 약 9,500개 임차가구)에서 임대료를 조사하고 있다.

2000년 기준 지수에서는 전자상거래 업체를 조사대상처에 추가하여 전자상거래 비중이 높은 도서류 10개 품목(2000년 기준)에 대한 전자상거래 가격변동분을 반영하였다.

2005년 기준 지수에서는 화장품, 가전기기 등을 추가하여 현재 19개 품목에 대해 전자상거래 가격을 반영하고 있다.

조사지역으로는 38개 주요도시(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수원, 성남, 안양, 의정부, 부천, 고양, 안산, 춘천, 원주, 강릉, 청주, 충주, 천안, 보령, 서산, 진주, 군산, 남원, 목포, 여수, 순천, 포항, 경주, 안동, 구미, 창원, 울산, 김해, 마산, 진주, 제주, 서귀포)이며, 2010년 7월 1일자로 통합창원시(창원, 마산, 진해)가 출범함에 따라 37개 주요도시 조사하고 있다.

### 3) 생산자물가지수

생산자물가지수는 국내에서 생산된 상품과 기업서비스가 국내시장에 출하되어 1차 거래단계에서 기업 상호간에 이루어진 가격의 변동을 측정하는 물가지수이다.

생산자물가는 1910년 처음으로 편제된 이래 2005년 기준지수에 이르기까지 13차례에 걸친 개편과정을 거치면서 많은 개선과 발전을 거듭하여 왔으며, 해방되던 해인 1945년 7월과 6.25동란 중이던 1950년 7월부터 1951년 3월까지 9개월간 두 번 중단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속 편제되어 왔다.

생산자물가는 1910년 최초 물가작성 당시에는 『경성중요물가표』라는 명칭으로 발표되었고, 1939년 1월에 완성된 1936년 기준지수부터 『경성도매물가표』라는 명칭으로 작성되었으며, 1947년 기준치부터 서울도매물가지수라 불리어져 도매물가지수 라는 용어로 작성되었다. 이후 전국적으로 표본이 확대되었고, 1990년 기준지수 이후 (1992~현재)부터는 그 명칭을 가격조사단계(생산자출하단계)에 부합하도록 「생산자물가지수」로 변경되었다.

한편, 경제의 서비스화 진전에 부응하여 1995년 기준지수부터는 운수, 통신, 금융, 부동산 등 기업용 서비스품목도 조사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생산자물가지수는 소비자물가지수보다 포괄범위가 넓어 전반적인 상품의 수급동향을 반영하고 있다.

생산자물가지수의 조사기준가격은 생산자출하가격 즉,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생산자판매가격(공장도가격)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조사대상품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현행 2005년 기준지수에서는 거래액이 국내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거래 총액의 1/10,000 이상이 되는 품목(서비스의 경우 전체 거래액의 1/2,000 이상인 품목)으로서 소속 상품군의 가격변동을 대표할 수 있고 가격시계열의 유지가 가능한 884개(상품 801개, 서비스 83개) 품목을 조사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선정된 품목들은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체계에 따라 기본분류 지수가 작성되며, 그밖에 특수한 이용 목적에 맞추어 특수 분류로 재분류되는데 현재 식료품과 식료품이외, 신선식품과 신선식품이외, 에너지와 에너지이외, IT와 IT이외, 신선식품 및 에너지 이외 등이 특수 분류 지수로 작성되고 있다.<sup>37)</sup>

#### 4) 수출입물가지수

수출입물가지수는 수출입상품의 가격변동을 조사함으로써 국내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기 위하여 작성되는 물가지수이다. 이 지표는 수출입 관련업체들의 수출채산성 변동이나 수입원가부담 등을 파악하는 한편, 수출입물가지수의 상호비교를 통하여 가격측면에서의 대외교역조건 등을 측정하는 데에도 이용된다.

한국은행은 1957년을 기준년도로 한 수출입물가지수를 1958년 10월에 처음으로 편제하여 공표하였다. 그러나 당시 우리나라의 무역규모가 작았을 뿐만 아니라 수출입물가지수의 이용도가 낮아 1964년 말에 편제가 중단 되었고, 이를 대신하여 1955년부터 도매물가지수의 한 유별지수로 편제되고 있던 수입상품 도매물가지수가 사용되었다.

1960년대 들어서 우리 경제는 대외지향적인 경제개발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에

37) 가공단계별물가지수는 현재 미국, 일본, 캐나다, 등 주요 선진국에서 작성중이며 원재료 중간재 최종재로구분하여 작성됨에 따라 물가파급과정 분석에 활용되는 등 분석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 되고 있다

따라 해외의존도가 심화되었고 그 결과 수출입상품의 가격변동에 의해 국내물가가 크게 영향을 받기 시작하였다. 특히 1973년 10월 석유파동을 계기로 수입원자재 가격이 급등함으로써 1973년 이후 2년 동안 우리 경제는 극심한 물가고를 겪었으며 해외상품의 수급 및 가격동향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수출입물가지수의 편제가 절실히 필요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은 1974년 기준 수출입물가지수를 1971년까지 소급, 편제하여 1976년 1월부터 발표하게 되었다.

이후 정부의 제3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완료와 더불어 주요 경제지표의 기준년도가 1970년에서 1975년으로 개편됨에 따라 이 지수도 1975년 기준으로 개편되었으며 무역구조변화 및 상대가격체계변동 등에 따른 품목 및 가중치의 구조변화를 지수에 적절히 반영하기 위해 매 5년마다 기준년도를 변경하여 왔다.

가격조사 품목으로는 2005년 기준지수에서 수출 211개, 수입 234개가 선정되어 있는데 이 품목들은 2005년 통관기준 수출 또는 수입 총액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2,000 이상인 품목들로서 선박, 항공기, 예술품, 귀금속, 무기류 등 가격조사가 곤란하거나 가격시계열 유지가 어려운 품목들은 제외되고 있다. 조사가격은 원칙적으로 수출은 FOB가격, 수입은 CIF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처의 거래관행에 따르고 있으며, 조사시점은 국내물가에 대한 선행성과 국제시장가격을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 수출입계약시점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또한 수출입물가지수는 국내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수출입가격을 원화로 환산하여 작성되는데 보조지수로서 계약통화를 기준으로 산출되는 계약통화기준지수와 미달러화로 환산된 달러기준지수도 함께 작성하고 있다.

수출입물가지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산업별분류를 기본분류로 하고 특수분류로는 용도별분류, 무역분류별분류, 산업형태별분류 등이 있다.

## 5) 물가지수 종합

이상에서와 같이 우리나라의 물가지수 통계는 통계청과 한국은행이 작성하고 있다. 유사한 방법론을 사용하고 있는 3개의 물가지수중 소비자물가지수를 통계청이 작성하며, 나머지 생산자물가지수와 수출입물가지수를 한국은행이 작성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물가지수 작성시스템은 분산형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 3. 산업생산

#### 1) 광업제조업동향지수

##### (1) 광공업생산지수의 개요

광공업생산지수는 경제활동의 변화수준을 측정하기 위하여 작성되는 경제지표의 하나로서 기준연도의 생산수준에 비해 현재의 생산수준이 어느 정도인가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광공업생산지수는 한국 표준산업분류의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업 부문에 대해 중분류와 소분류 단위까지 매월 작성·공표되고 있으므로 경기 동향을 파악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경제지표로 이용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의 경제정책 수립이나 민간부문의 투자계획 수립 등 의사결정과 학계나 연구기관에서의 장단기 경기변동 분석 등에 기초자료로 사용되고 있다.

이밖에 광공업생산지수는 국내총생산(GDP) 및 지역내생산(GRDP) 추계, 노동생산성 측정, 경기종합지수 등 가공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에도 필수자료로 이용되고 있으므로 기초통계로서의 중요성도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광공업생산지수는 1957년에 기준연도를 1955년으로 하고 가중치는 산업별 종사자규모를 사용하여 처음으로 작성하기 시작하였다. 종사자규모를 가중치 산정의 기초자료로 이용한 것은 가중치 작성에 필요한 부가가치 자료가 없었던 것에 기인한 것이었다. 따라서 이 당시 발표한 광공업생산지수는 “잠정치”로서 현재 작성하고 있는 지수와 작성체계가 상이한 것이었다.

1959년에 이르러 1958년 기준 광공업센서스 결과가 발표되자 그 동안 잠정치로 발표되던 광공업생산지수를 부가가치 기준으로 재작성하는 작업에 착수하게 되었다. 그 결과 1960년에는 1955년을 기준연도로 하고 부가가치를 가중치로 사용하는 광공업생산지수를 1954년까지 소급하여 작성함으로써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지수와 체계가 동일한 광공업생산지수를 작성하게 되었다.

그 후 급속도로 발전·변화하는 산업구조를 적절히 반영하기 위하여 가중치를 현실화하고 지수작성품목을 조정하는 광공업생산지수 개편작업을 5년마다 실시하고 있으며, 2008년 3월부터는 2005년을 기준연도로 하는 지수를 편제·공표하고 있다.

광공업생산지수를 작성하는 기관은 그 동안 몇 차례 변경되어 왔다. 즉, 1957년부터 1968년까지는 한국은행에서 작성하였고, 1969년부터 1970년 6월까지의 한국산업은행에서 작성하였으나, 1970년 7월부터 통계청(구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으로 지수 편제 업무가 이관된 이후에는 통계청에서 광공업생산지수를 작성·공표하고 있다.

통계청은 광공업생산지수 편제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할 목적으로 1970년 3월에 광업제조업동향조사를 지정통계(승인번호 10111)로 고시하여 법적 근거를 부여하고, 업종별 지수 작성 외에도 각종 특수분류지수를 확대 작성하는 등 광공업생산지수 편제업무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 (2) 작성방법

광공업생산지수는 매월 작성되면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광업, 제조업 및 전기·가스업에 속하는 사업체중 광업·제조업동향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체로 생산, 출하 품목수는 633개, 재고 품목수는 519개, 생산능력 및 가동률의 품목수 288개로 총 8,300개 중 2,600여개 제조업 사업체 등이 포함된다.

조사범위로는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07-53호)에 의한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업 부문의 797개(전국지수품목: 633개, 순수 시·도지수품목: 164개)품목을 생산하는 사업체 중에서 조사대상을 선정한다.<sup>38)</sup>

지수산정에서는 생산·출하·재고 부문은 기본분류지수(업종별지수)와 특수분류지수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생산능력, 가동률 부문은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로 작성한다.

이때 생산·출하·재고의 기본분류지수(업종별지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3개 대분류(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업), 28개 중분류, 85개 소분류에 대해서 작성하고, 특수분류지수는 제조업재별분류지수(자본재, 중간재, 소비재), 제조업공업구조별지수(중화학공업, 경공업), 산업형태별지수(기초소재형, 가공조립형, 생활관련형), 설비용기계류지수(25.(금속가공)부터 31.(기타운송장비)까지의 7개 중분류 품목중 기계설비 및 이의 구성품에 해당하는 103개 품목들의 종합지수), 제조업ICT지수(OECD분류 기준의 정보통신기술산업에 해당하는 1개 중분류(26)의 품목중 ICT산업에 해당되는 71개 품목들의 종합지수), 기업규모별지수(대기업, 중소기업) 등의 지수를 작성한다. 한편, 생산능력, 가동률 부문에서, 제조업생산능력지수와 제조업 가동률지수는 대분류(제조업), 중분류(22개), 소분류(69개)로 작성하고,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대분류(제조업)로 작성한다.

한편, 광공업생산지수는 원자료와 계절 변동되는 자료로 모두 제공된다.

38) 그러나 조사기간 중 설립중에 있는 사업체, 교도소의 작업장, 공공단체 및 학교에 속해 있는 실습장, 시험소, 연구소, 국군이 직영하는 사업체, 특수수용시설내 작업장 등은 제외한다.

## 4. 고용 및 임금

### 1) 경제활동인구조사

#### (1) 개요

경제활동인구조사의 목적은 국민의 경제활동 즉, 국민의 취업, 실업 등과 같은 경제적 특성을 조사하여 거시경제 분석과 인력자원의 개발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인 노동공급, 고용구조, 가용노동시간 및 인력자원의 활용정도를 제공하고 정부의 고용정책입안 및 평가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있다.

경제활동인구에 관한 조사는 내무부 통계국에서 노동력조사라는 명칭으로 1957년부터 1962년까지 지방행정기관을 통하여 조사하였다. 1963년에는 경제개발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따른 자료요청에 부응하기 위하여 노동력조사의 결함을 보완하고 보다 정확한 자료를 작성할 목적으로 통계법(1962년 1월 15일 공포) 제2조에 의한 지정통계 제4호로 지정하고 조사명칭도 경제활동인구조사로 개편하였으며,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현 통계청)에서 매분기(3월, 6월, 9월, 12월)마다 연기식조사표(조사표 1매에 여러명 조사)에 의해 15개 항목을 면접 조사하였다.

1980년에는 다양한 자료 생산을 위하여 조사항목을 26개로 확대하였고 조사표도 단기식(조사표 1매당 1명씩 조사)으로 변경하였다. 1982년 7월에는 고용구조의 변화 추이를 신속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조사주기를 월간으로 변경하였으며, 조사표도 단기식과 연기식을 병행 사용하였다. ILO 권고안(1982년)에 따라 1983년 조사표를 전면 보완하였으며, 1985년 1월부터는 조사결과의 이용 확충을 위하여 단기식 조사표로 통일하여 조사하였다.

1988년 7월 이후 기존의 표본 17,500가구를 32,500가구로 확대하여 조사결과의 신뢰도를 제고시켰으며, 1989년부터 전국자료 뿐만 아니라 시·도별 자료를 분기별로 작성하여 발표하였다.

1990년대 들어 산업구조의 변화, 여성의 사회진출 등 고용사정이 변화를 고려하고, OECD 가입에 따른 실업률 국제비교를 위하여 작성기준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1998년 조사표를 개편하였고, 월별로 16개 시도별 자료도 함께 공표토록 하였다.

1998년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동안의 시험조사 기간을 거쳐 1999년 1월부터 컴퓨터를 이용한 조사(CAPI, Computer Assisted Personal Interviewing)를 도입하여 자료 입력시 착오를 사전에 방지하였으며 신속성 등을 제고시켰다.

2003년 1월에는 2000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기준으로 작성된 추계인구의 변경



과 연령계층별 승수를 적용하여 1991년 1월 이후 시계열자료를 보정하였으며, 계절 조정자료를 기존에 농가, 비농가별로 작성하던 것을 성별, 연령별로 구분 작성하였다. 또한, 이용자 의견수렴과 전문가회의를 거쳐 취업자에 대해서는 부업소유여부를 파악하여 취업시간을 주업과 부업으로 구분하였고, 실업자에 대한 취업제의 여부와 미취업사유를 추가하는 한편, 비경제활동인구에 대한 활동상태를 세분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부분적으로 조사표를 개편하여 적용하였다.

2004년 1월에는 PDA를 이용하여 조사함으로써 조사직원의 편의를 도모하였고, 2005년 1월 일부 조사표를 수정하고, 전국적으로 연동표본을 도입, 적용하였으며, 2005년 7월 공식 실업통계의 기준을 「구직기간 1주」에서 OECD국가 대부분이 채택하고 있는 실업통계의 기준인 「구직기간 4주」로 변경하였다.

2007년 1월에는 산업별 취업자 계절조정 계열을 추가하였고, 9월에는 2005년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기준으로 표본개편(32,580→32,000가구)을 하였으며, 2008년 1월에는 인터넷조사(CASI)를 도입하였다.

## (2) 조사 방법

경제활동인구조사 대상자는 표본조사구 32,000가구 내에 상주하는 자로서, 매월 15일 현재 만15세 이상인 자이다.<sup>39)</sup> 주요 조사항목으로는 가구원 관리번호, 가구주와의 관계, 성별, 생년월일, 교육정도, 혼인상태, 활동상태 등의 인적사항이다.

이때, 취업자 관련항목으로는 취업여부, 일시휴직 여부 및 이유, 부업여부, 취업시간, 36시간미만 일한 이유, 추가취업 및 전직희망 여부, 추가 취업 또는 전직가능성 및 시기, 추가취업 탐색여부, 산업, 직업·종사자 규모, 종사상의 지위, 취업 시기, 고용계약 설정여부 등이다.

실업자 관련항목으로는 취업여부, 일시휴직 여부 및 이유, 1주간 구직여부, 4주간 구직여부, 취업가능성 여부, 구직경로, 구직활동기간, 희망고용형태, 전 직장 유무 및 이직시기, 이직사유, 전 직장의 산업, 전 직장의 직업·종사자 규모, 전 직장의 종사상 지위 등이다.

비경제활동인구 관련항목으로는 취업여부, 일시휴직 여부 및 이유, 1주간 구직여부, 4주간 구직여부, 취업희망여부, 취업가능성 여부, 비구직사유, 지난 1년간 구직경험여부 및 최근의 구직시기, 전 직장 유무 및 이직시기, 이직사유, 전 직장의 산업, 전 직장의 직업·종사자 규모, 전 직장의 종사상지위 등이다.

39) 이때, 상주하는 자란 조사대상 주관을 기준으로 하여 그 가구 내에서 살고 있는 사람을 말하며 대상주관에 새로 전입하여 온 사람도 포함된다. 이때, 현역군인 및 공익근무요원, 형이 확정된 교도소 수감자, 전투경찰(의무경찰 포함) 등은 제외된다.

조사는 매월 15일이 포함된 1주간(일요일~토요일)을 조사대상주간으로 하며, 그 다음 주간에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방법으로는 49개 지방사무소 5개 지방청의 조사담당 직원이 표본가구 내에 상주하는 만 15세 이상 인구에 대하여 주간 동안의 경제활동상태를 조사하며, 조사원이 PDA를 휴대하여 대상가구를 방문, 면접하여 조사내용을 직접 입력하는 단계식 조사방법에 의한다.

조사지역은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10% 표본조사구중 섬조사구(섬 지역에 설정된 조사구)와 시설단위 조사구(기숙사, 양로원, 고아원 등과 같은 기숙시설에 설정된 조사구)를 제외한 26,505조사구와 총조사 실시 이후부터 표본개편 시까지의 신축아파트 506개 조사구를 기본 추출단위 조사구로 설정(총 27,011조사구)하여 지역별 표본수에 따라 크기에 비례한 확률추출법(PPS)을 이용 1,629개 조사구(동부: 1,233, 읍·면부: 396)를 표본조사구로 선정하였다.

## 2) 사업체임금근로시간조사

### (1) 조사목적

사업체 임금근로시간조사는 고용, 임금 및 근로시간에 관한 사항을 매분기 조사하여 그 변동추이를 파악하여 임금상승률, 주당 근로시간 등 거시경제지표 산정 및 임금·고용 등 노동정책의 기초자료로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기업의 각종 경영전략자료 및 공사 입찰시 승가(escalation) 제출자료, 산재보상금 책정, 법원의 손해배상 등의 참고자료, 개별기업체의 임금협상 자료, 경제성장 전망 시 기초자료, 산업활동 후행지표화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1963년 시작된 「매월근로자임금조사」와 1968년 4월에 시작한 『노동이동조사』가 1969년 1월 결합하여 『매월노동통계조사』가 작성된 것이 2008년 3월 사업체 임금근로시간조사로 변경되었다. 1980년부터는 보고서 발간주기를 분기별에서 월별로 변경하였으며 1999년 3월 근로기준법개정에 따른 노동행정대상이 기존의 10인 이상의 상용근로자 사업체에서 5인 이상의 상용근로자 사업체로 확대됨에 따라 매월노동통계의 조사대상이 기존의 상용근로자 10인 이상에서 상용근로자 5인 이상으로 확대되었다.

한편, 2008년 3월에는 조사명칭이 매월노동통계조사에서 사업체 임금근로시간조사로, 조사대상이 상용근로자 5인 이상에서 상용근로자 1인 이상으로, 조사주기는 월에서 분기로 조정되었다.

## (2) 조사방법

조사범위는 농업, 수렵업, 임업 및 어업부문을 제외한 전산업으로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중 총화계통 추출방법에 의하여 추출된 7,208개 표본사업체이다.<sup>40)</sup>

조사방법으로는 타계식 조사방법을 원칙으로 하되 응답자의 조사표 작성시간, 작성능력 등을 고려하여 자계식 조사를 병행 실시하였다.

조사사항으로는 고용부문에서 임금이 지급된 근로자수(상용, 임시 일용)이고, 근로일수 및 근로시간 부문에서는 소정근로일수(상용), 소정근로일수 중 출근하지 않은 일수(상용), 휴일에 근로한 일수(상용), 소정, 초과근로시간(상용), 실제근로일수(임시 일용), 실제근로시간(임시 일용) 등이 포함된다. 임금 부문에서는 임금총액, 정액급여, 초과급여, 특별급여 등이 포함된다. 집계방법으로는 전산집계 방법을 사용하며, 매분기 월 급여를 계산 기간에 사용한다.

## 3) 종합

우리나라 노동통계는 대체로 상당부문의 통계가 여러 기관이 작성하는 분산형통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가장 중요한 노동통계와 가계관련 통계는 통계청이 작성하고 있지만 임금이나 기타 근로조건에 관련된 통계는 고용노동부가 작성하고 있으며, 노동패널관련 통계는 노동연구원이 작성하고 있는 등 여러기관이 작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 5. 재정

### 1) 개요

대한민국은 정부수립 당시의 재정통계를 연도별 예산편성과 결산처리 과정에서 생산된 행정적인 통계에 의해서 작성해 왔고, 특히 1951년 9월에 제정된 재정법에 의한 작성체계를 1960년까지 지속되었다. 이 후 1961년 12월 “예산 회계법”이 제정되어 중앙정부의 예산업무는 경제기획원이, 결산업무는 재무부가 주관하였고, 예·결산 재정통계는 1968년 이후 “지방재정법”에 의해 내무부에서 담당하였다.

1961년에 재무부는 “결산관련통계자료”를 발간하여 정부거래를 통계적으로 분

40) (단, 국가 또는 지방행정기관, 군 경찰, 국 공립교육기관은 조사대상에서 제외)

류하고, 여기에는 중앙정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결산통계 및 시계열(1948년 이후), 그리고 세출결산의 기능적 분류(1959년 이후)가 포함되었다.

한편 한국은행은 한국은행법 제 36조에 의거해 창립부터 재정통계를 작성하였다. 이런 초기의 재정통계는 자료들의 요약정리에 그쳤고, 이 후 1959년부터 UN의 “정부계정분류요람” 기준을 적용하여 중앙정부의 세입과 세출을 경제적 및 기능적인 기준으로 분류하고 재정수지의 보전내역을 별도로 작성하기 시작하였다.

1974년 국제통화기금(IMF)은 “정부재정통계편람(A Manual on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을 작성하고 이를 기준으로 재정통계를 작성할 것을 각 회원국에게 권고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은 1976년 “정부재정통계개편 합동 실무반(경제기획원 예산 총괄과, 재무부 국고과·회계과, 한국은행 금융통계과)”를 구성하였다. 이 합동실무반은 4개월에 걸쳐서 1차로 1972~77년 시계열의 재정통계개편을 완료하고 1979년에 1970년까지 시계열을 소급한 IMF체제의 재정통계를 작성하였다. 재무부에서는 이 결과를 1979년부터 해마다 “한국의 재정통계”로 발간하였고, 최근엔 “한국통합재정수지”로 명칭을 변경하여 발간하였다.

한국은행도 동일한 재정통계를 “경제통계연보”와 “조사통계월보”를 통하여 발표하였다. 이 결과로 중앙정부의 재정활동에 대한 통계는 1970년도 통계부터 새로운 체계로 편제되어 정착되었다.

한편 한국은행은 지방정부의 세입·세출상황표를 기초로 1962년부터 지방정부 재정통계를 시작하였고, 1972년부터는 보전재원 내역도 포함해서 작성하였다. 그리고 1980년에는 지방정부 재정통계를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연감을 토대로 IMF 기준에 의해 한국은행에서 작성하고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통합한 일반정부 재정통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재정통계가 IMF 기준으로 개편된 이후 편제되기 시작하였다. 한국은행은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가 작성한 중앙정부 재정통계와 한국은행이 작성한 지방정부 재정통계를 단계적으로 통합하여 이를 작성하고 있다.

## 6. 우리나라 경제통계 시스템의 특성

### 1) 분산형시스템

우리나라의 경제통계시스템은 현재 기본적으로 분산형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다. 전체 국가통계의 기획과 조정 업무를 담당하는 통계청이 있지만 국가기본 통계는 서로 다른 많은 작성기관이 작성하고 있으며 부처별로 필요한 통계를 자체 작성하

여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제3장의 <표 3.1>과 같이 2010년 8월 1일 현재 총 375개 기관이 850개의 국가승인통계를 작성하고 있고 중요 통계역시 여러 기관으로 나누어져 작성되고 있다. 즉 대체로 한기관이 약 2.3개의 통계를 작성하고 있기 때문에 분산화된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나라의 통계가 분산형시스템을 갖게 된 이유로는 다음과 같다고 할 수 있다.

첫째, 역사적인 이유로 분산형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일본이나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우리나라는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받았고 당시 모든 정부기관이 일본식 시스템을 따랐다. 이전에 우리나라가 전근대적인 왕조이었던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일본제도의 도입을 필연적으로 새로운 서구식제도로 알려지게 되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통계작성 시스템 역시 일본이 택하고 있는 분산형시스템을 택하기에 이르렀다.

한편 1945년 해방이후 우리나라는 미국의 군정을 받았고, 6.25전쟁 이후에도 미군이 진주하고 많은 원조를 제공하면서 미국의 제도를 받아들기에 이르렀다. 이 과정에서도 미국이 채택하고 있는 분산형시스템을 받아들이게 되어 우리나라의 통계제도는 자연히 미국식 영향을 받기에 이르렀다.

둘째, 해방이후, 6.25전쟁 등을 겪으면서 우리나라는 최빈국에 해당하였고, 경제개발을 하면서 관련 부문에 집중하여 통계를 작성하여 사용하였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국가통계작성을 기획하고 추진한 여유가 없었다.

정부가 경제개발 정책을 최우선으로 삼고 이를 추진하는 1960년대에도 경제개발에 필요한 통계를 우선적으로 작성하는 기치아래 경제통계를 작성할 기관으로 경제기획원내의 조사통계국을 설치하고 각종 경제통계만을 전문적으로 작성하도록 하였다.

한편 이러한 과정에서 일부의 중요 경제통계를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이 작성하기 시작하였지만 행정부의 국 단위의 기관으로는 경제통계만 담당하기에도 어려운 실정이었다. 조사통계국이 이후 통계청으로 승격되고 그 역할이 증대되었지만 이는 훨씬 이후의 일이다.

이렇게 전반적인 국가통계시스템이 분산형시스템으로 이루어지면서 경제통계작성 시스템 역시 분산형시스템을 고수하였다. 현재 통계청, 노동부, 기획재정부 등 중앙정부부서와 한국은행이나 중소기업은행 등 금융기관과 한국무역협회 등 각종 공공기관 등 다양한 기관이 각종 경제통계를 작성하고 있다.

예를 들어, 통계청은 총 52종의 통계를 작성하고 있고 기획재정부는 5종, 고용노동부는 17종을 담당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총 14종의 통계를 작성하며, 고용정보원

은 6종의 통계를 작성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현실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경제통계시스템 역시 분산형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 2) 초기 한국은행의 역할 증대

우리나라의 경제통계 발전과정에서 한국은행은 많은 역할을 하였다. 특히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이 1962년 설립되고 통계법이 신설되기 이전에 우리나라 주요 경제통계는 대부분 한국은행이 작성하였으며, 조사통계국이 설립된 이후에도 주요 경제통계를 계속 작성하고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당시 우리나라의 경제현황이나 인력현황에 기초한 것으로 해석된다. 우리나라가 6.25 전쟁 이후 최빈국에서 통계작성에 집중할 부서를 가질 여유를 갖지 못한 가운데 거의 유일한 경제 분석 담당기관인 한국은행이 각종 경제분석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제통계를 작성하였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표 5.8>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우리나라의 주요 경제통계를 한국은행이 최초로 작성하였고, 현재에도 중요 통계를 작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경제통계작성에서 중앙은행의 역할이 중요하였던 것은 우리나라만의 특징이 아니고, 많은 개발도상국이 갖고 있는 특징 중의 하나로 이미 UN의 국가통계보고서도 지적한 바이다.<sup>41)</sup>

즉 경제개발 초기, 많은 국가들은 주요 통계를 독립적으로 작성할 능력이 없었다. 식민지나 전쟁으로부터 회복한 직후이기 때문에 적절한 통계를 작성할 수 있는 인력이 크게 부족하였다. 또한 이들 국가들은 대체로 대외원조에 의존하여 국가를 운영하기 때문에 국민들의 의식주를 해결하는데 집중하는 단계로 이를 전문적으로 작성할 기관을 설립할 정도로 경제적인 여유가 없었고, 때문에 이들 국가에서 통계작성기관을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였다.

반면, 이러한 국가에서도 통화를 발행하고, 통화정책을 수행하는 중앙은행은 항상 존재한다. 이는 국가존립의 기본조건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이때 이 중앙은행은 자신의 통화정책 수립에 필요한 최소 통계를 작성하게 된다.

---

41) "...many developing countries have experienced severe losses of professional staff in their central statistical organizations, thus reducing their contributions to planning and policy formulation processes. Those losses and the generally severe shortages of trained statistical personnel in those countries reflected in large part the disadvantaged position of the statistical services with respect to pay scales and related working conditions." in *Handbook of Statistical Organization: The Operation and Organization of a Statistical Agency*, 3rd edition, United Nations New York, 2003 pp24

<표 5.8> 한국은행에서 시작한 이관된 주요 경제 통계

통계명		현재	연혁
소비자물가	최초	한국은행	1945년 서울시내 생활필수품소매물가지수로 시작하여 1949년 전국소매물가지수로 확대되었고, 1957년 서울소비자물가지수로 개편
	현행	통계청	1967년 1월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에서 작성하기 시작
도소매판매 지수	최초	한국은행	1965년 8월 서울 소매판매지수로 시작
	현행	통계청	1970년 11월 경제기획원으로 이전하면서 도소매판매지수로 확대
광공업생산 지수	최초	한국은행	1957년 8월 최초 ‘잠정 생산지수’로 1955년 기준치로 작성하기 시작하여 1960년부터 광공업생산지수로 확대
	현행	통계청	1969년부터 산업은행이 작성한 후, 1970년 2월부터 경제기획원(현통계청)이 작성하기 시작
가계동향조 사	최초	한국은행	1950년 1월 서울시 120가구를 대상으로 생계비조사에 시작하여 이후 서울시가계조사, 도시가계조사 등으로 확대
	현행	통계청	1963년 1월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현 통계청)으로 이전되었고, 2003년 가계조사, 2008년 가계동향조사로 발전
농가경제조 사	최초	한국은행	1953년 7월 농림부와 합동으로 300호를 대상으로 영농실태와 생산비, 농가생계비조사를 조사
	현행	통계청	1962년 1월부터 농림수산부가 작성하였고, 1998년 7월부터 통계청이 작성하기 시작

자료: 한국은행, 『한국은행의 통계 - 어제와 오늘-』, 1995

이러한 국가들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서 본격적인 경제성장 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게 된다. 이 경우 UN이나 IMF, 세계은행, ADB 등 국제기구의 도움을 받아 선진적인 경제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면서 통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작성하기 시작한다.

이때 이들 국가들은 새로운 통계작성기관을 구성하는 가 혹은 기존의 기관에서 필요한 통계를 작성하는 가를 선택하게 된다.

경제개발 초기 이들 국가 정부들은 개발재원 부족으로 어려운 때이기 때문에 대체로 새로운 통계작성 기관을 구성하기 보다는 기존의 기관에게 통계작성을 위임하고, 일정 수준이 오른 다음에 통계작성 전문기관을 수립하게 된다.

중앙은행은 이러한 이유로 경제개발 초기에 많은 경제통계를 작성하게 된다. 또한 상대적으로 중앙은행은 중앙정부보다 예산활용에 자유롭기 때문에 새로운 통계가 필요할 시 적절한 인원을 보강하여 통계를 작성하게 된다. 그리고 중앙은행직원들은 상대적으로 공무원보다 많은 급여를 받기 때문에 통계지식을 갖고 있는 많은 인력들이 중앙은행에 지원하게 된다.

### 3) 통계청의 역할 증대와 집중협시시스템의 성격 도입

최근 우리 경제에서 통계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통계청의 역할이 점차 중요해지고 역할이 커지기 시작했다.

통계청은 1961년 7월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에서 시작된 것이다. 당시 경제개발에 필요한 각종 통계의 체계적인 작성이 필요해짐에 따라 분산형시스템하에서 경제통계만이라도 우수한 품질로 작성해야 한다는 목표아래 경제정책 총괄기관인 경제기획원소속으로 전문 통계담당기관을 설립한 것이다. 이후 경제기획원의 조사통계국은 1992년 통계청으로 확대 개편되었고, 2005년에는 기관장이 차관급인 기관으로 승격된 것이다.

특히 그동안 일부 개정되었던 통계법이 2007년 4월 전면 개정되면서 통계청의 역할이 보다 강화되었다.<sup>42)</sup> 예를 들어, 개정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은 통계작성기관을 직권 지정할 수 있게 되었다. 과거 국가통계를 작성하는 기관이 통계작성기관으로 지정을 신청하면 통계청장이 지정하게 되어 있다. 이 경우 국가의 중요정책 수립뿐만 아니라 국제기구에서 요구하는 중요 통계를 작성하는 기관에서 통계작성기관으로 지정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국가의 중요통계가 품질의 담보 없이 그대로 국제기구에 제공되는 등 문제점을 보완할 장치가 없게 된다. 그러나 개정된 통계법에서는 국가정책 수립 등에 중요한 통계를 생산하고 있으나 통계작성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기관 중에서 공공성을 가진 일부의 기관들에게 통계작성을 지정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통계청이 주관하여 각 통계작성 기관들이 정기적인 통계품질진단을 수행하도록 하여 통계품질 제고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게 되었다. 이 제도는 통계작성기관이 매년 자체적으로 정해진 품질진단매뉴얼을 토대로 자기소관통계에 대한 품질진단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우선적으로 통계작성기관의 통계인프라 및 전문성 등의 부족으로 인하여 체계적인 품질진단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통계청과 통계

42) 통계법은 2062년 1월 15일 법률 제980호로 공포되었고, 이후 수차례 개정되었으며, 특히 2007년 4월 27일 전면개정 되었고, 2007년 7월 23일, 2008년 21월 31일, 2009년 4월 1일 각각 개정되었고, 현재 2010년 3월 31일 개정법률 제10196호로 공포된 법률이 적용되고 있다.



관련전문가의 살아있는 노하우를 전수하여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국가통계를 생산하여 보급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통계청이 관련 통계의 품질 향상이나 개선을 위한 각종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많이 제기된다.

예를 들어, 통계청이 2009년 국회에 제출한 각종 자료에 따르면 2004년 이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통계작성 지정기관에서 모두 103건의 통계법 위반이 적발됐으나 과태료 부과는 단 1건도 없었다. 통계법 41조는 통계를 무단작성 또는 변경, 공표규정 미준수 등의 통계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100~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실행한 적이 없는 것이다.<sup>43)</sup>

현재 통계청은 위법행위가 적발된 기관에 개선권고를 하는 수준에서 마무리하고 있다. 이는 통계작성 환경이 열악한 여건에서 통계법 처벌 규정을 엄격히 적용할 경우 통계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처벌보다는 가능하면 협조를 구하는 방향을 정책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통계청이 이들 기관에게 적극적으로 제재를 가할 힘이 없기 때문이라는 의견도 대두되고 있다.

#### 4) 통계품질의 개선과 신뢰성 확보

최근 우리나라 통계에 대한 관심이 매우 커지면서 통계품질에 중요성이 강조되었고, 그 결과 통계품질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 5.9>와 같이 지난 2006년 통계청 주관 하에 국가승인통계에 대한 정기품질진단이 시작된 이후 2010년에 이르기 때문에 총 434개의 국가승인통계에 대한 품질진단이 이루어졌다. 이 과정에서 중앙정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공공기관이나 사기업에 이르기까지 작성통계에 대한 품질진단이 이루어지면서 전반적인 통계 수준을 점검할 수 있게 되었고, 일정 수준이하에 대한 통계의 개선과제가 도출되고 점차적으로 품질개선이 이루어졌다.

특히 2007년 개정된 통계법에 따라 국가승인통계에 대한 정기품질진단과 자체품질진단이 의무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통계작성 기관들의 통계에 대한 의식이 개선되었다.

한편 이러한 통계품질 수준 개선은 <표 5.10>과 <표 5.11>에 제시된 우리나라에 대한 국제기구 통계품질 검사결과에서도 나타난다. 제7장에서 보다 자세하게 설명

43) 통계청이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일호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4년 이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통계작성 지정기관에서 모두 103건의 통계법 위반이 적발됐으나 과태료 부과는 단 1건도 없었다. 통계법 41조는 통계를 무단작성 또는 변경, 공표규정 미준수 등의 통계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100~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다.(머니투데이, 2009년 10월 8일)

하지만 IMF가 한국의 주요 경제통계의 품질을 2001년과 2009년 각각 진단한 결과, 우리나라 주요 통계의 품질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설명된다.<sup>44)</sup>

2001년에는 총 126개 항목 중 만족수준인 실제준수(O)를 받은 항목이 73.2%인 92개 항목에 불과하였으나 2009년에는 총 132개 항목은 86.4%인 112개를 받아 상당히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보다 낮은 등급인 대체로 준수(LO)를 받은 항목 역시 22.2%인 28개 항목에서 12.9%인 17개 항목으로 감소하였고 이보다 더 낮은 등급인 대체로 준수하지않음(LNO) 등급을 받은 항목은 4개에서 1개로 줄어들었다.

<표 5.9> 통계청의 정기통계품질 진단 통계수

연도	구분	통계수
2005년	소계	16
2006년	소계	86
2007년	경제	110
	사회	70
	총계	180
2008년	경제	102
	사회	68
	총계	170
2009년	경제	21
	사회	23
	총계	44
2010년	총계	40
총계		536

주: 2007년 통계품질진단은 국민계정·국제수지·외환(7종), 경기(10종), 재정·금융(9종), 물가(7종), 기업실태(15종), 농림(13종), 광공업(13종), 주택·건설(15종), 육상교통·항공(13종), 해운(8종), 교육(9종), 사회·문화(20종), 복지(10종), 보건(16종), 환경(15종) 등 15개 주제 분야별로 이루어졌으나 이중 교육, 사회문화, 복지 보건 환경 등을 편의상 사회통계로 구분하였음. 2010년은 통계1, 통계2, 통계8로 구분되어 통계별 구분이 뚜렷한 의미를 가지지 않기 때문에 단순 총계만 제시하였음. 한편 이는 품질진단 이후 중지 및 통합 등으로 없어진 통계가 모두 포함된 수치임

44) IMF의 품질진단 항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부록 B. 1] IMF 통계품질평가프레임(Data Quality Assessment Framework)을 참조하시오.

이러한 국내통계의 품질수준을 평가하기 위하여 주요 선진국의 IMF 통계품질 진단결과를 비교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은 부록에 제시되어 있는 것으로 IMF가 일본과 독일, 이탈리아의 통계를 2005년 11월, 2006년 3월, 및 2007년 2월에 각각 평가한 결과이다.<sup>45)</sup> 각국의 통계시스템이 다르기 IMF 진단한 내용을 갖고 동일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려우나 단지 실제준수(O), 대체로 준수(LO), 대체로 비준수(LNO), 비준수(NO) 등의 비율을 사용하여 간단하게 비교하였다.<sup>46)</sup>

먼저 실제준수(O) 항목비율아 일본은 82.6%, 독일이 88.6%, 이탈리아가 87.5%를 기록하여 2009년 우리나라의 86.4%와 대체로 유사한 것으로 제시되었다. 또한 대체로 준수(LO)의 비율도 일본은 12.9%, 독일이 11.4%, 이탈리아가 12.5%를 기록하여 2009년 우리나라의 12.9%와 거의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주요 경제통계의 품질은 대체로 일본이나 독일, 이탈리아 등 주요 선진국과 비슷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주요 경제분야 통계의 품질이 최근 들어 세계적인 수준으로 향상되었으나 아직도 기타 경제통계의 품질이 이러한 수준에 와 있는 가는 커다란 의문이다. 실제로 많은 신문기사나 국회의 대정부 질문에서 통계의 문제점이나 오류가 지적되고 있기 때문이다.

<표 5.12>은 언론보도에 관련한 통계청의 해명자료 발표 건수이다. 이는 언론보도 내용중 통계에 문제가 있는 보도내용을 모두 찾은 것이 아니라, 통계청 홈페이지에서 통계청이 통계관련 언론보도에 대하여 비판이나 오류가 있을 경우 통계청이 해명한 자료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는 2005년 33건으로 가장 많은 건수를 기록한 후, 2006년과 2007년 각각 29건을 기록하였고, 2008년과 2009년에는 각각 14건과 16건으로 감소하였다.

이러한 언론보도와 해명자료 제공 사실은 크게 두 가지 원인으로 발생한다. 첫째는 실제로 작성 통계에 오류가 발생하여 지적이 된 경우이고, 둘째는 이들 통계는 오류를 갖고 있지 않지만 사용자나 기자가 잘못 이해하거나 잘못 사용하여 오해가 유발되어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이다. 전자의 경우라면 통계작성기관들은 통계품질 개선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고, 후자의 경우라면 통계의 홍보에 보다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45) 이들 국가에 대한 품질진단 결과는 부록 [ 부록 B. 2 ] IMF의 일본 통계 품질진단결과, [ 부록 B. 3 ] IMF의 독일 통계 품질진단결과, [ 부록 B. 4 ] IMF의 이탈리아 통계 품질진단결과에 자세하게 제시되어 있다.

46) 독일, 이탈리아 일본을 비교국가로 선택한 이유는 선진국중 2000년 들어 통계품질진단을 수행한 국가는 이들 국가이기 때문이다. IMF는 미국과 영국, 캐나다 등 국가들에 대한 통계품질진단은 하지 않았다.

<표 5.10> 주요 한국통계의 IMF 품질진단 결과

평가	2001년		2009년	
	항목수	(%)	항목수	(%)
실제 준수(O)	91	72.2	112	86.4
대체로 준수(LO)	29	23.0	17	12.9
대체로 준수 없음(LNO)	4	3.2	1	0.8
실제 준수 없음(NO)	0	0	0	0
알 수없음(NA)	2	1.6	2	1.5
총계	126	100.0	132	100.0

주: N/A는 자료 부족으로 판단을 유예한 것임

자료: IMF, 『Republic of Korea: Report on the Observance of Standards and Codes—Data Module; Response by the Authorities; and Detailed Assessments Using Data Quality Assessment Framework』, IMF Country Report No. 03/127 May 2003

IMF, 『Republic of Korea: Report on Observance of Standards and Codes—Data Module』, IMF Country Report No. 10/229, July 2010

<표 5.11> 선진국 주요 통계의 IMF품질진단 결과

평가	일본		독일		이탈리아	
	항목수	(%)	항목수	(%)	항목수	(%)
실제 준수(O)	109	82.6	78	88.6	77	87.5
대체로 준수(LO)	17	12.9	10	11.4	11	12.5
대체로 준수 없음(LNO)	6	4.5	0	0	0	0
실제 준수 없음(NO)	0	0	0	0	0	0
알 수없음(NA)	0	0	0	0	0	0
총계	132	100	88	100	88	100

자료: IMF, 『Germany: Report on Observance of Standards and Codes—Data Module, Response by the Authorities, and Detailed Assessments Using the Data Quality Assessment Framework (DQAF)』, IMF Country Report No. 06/18, January 2006

IMF, 『Japan: Report on Observance of Standards and Codes—Data Module, Response by the Authorities, and Detailed Assessments Using the Data Quality Assessment Framework (DQAF)』, IMF Country Report No. 06/115, March 2006

IMF, 『Italy: Report on the Observance of Standards and Codes—Data Module, Response by the Authorities, and Detailed Assessment Using the Data Quality Assessment Framework (DQAF)』, IMF Country Report No. 07/87, February 2007

<표 5.12> 언론보도 관련한 통계청의 해명자료

연도	해명자료 발간 회수
2004	4
2005	33
2006	29
2007	29
2008	14
2009	16
2010	24

통계품질진단이 2008년 개정된 통계법에 명시되어있고, 정기 통계품질진단이 통계청 주관으로 2007년부터 시작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통계품질에 대한 각종 정책이나 정기품질진단 등이 2008년과 2009년 해명 자료수 감소에 기여한 것으로 해설된다.

한편 이러한 해명자료 발간수나 통계품질진단 노력 등을 고려할 때 최근 수년 동안 상당수의 통계에서 품질 개선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그동안 통계청의 정기품질진단과 함께 많은 통계작성기관들이 통계품질이라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추진하여 상당 수준의 품질개선이 이루어진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징후에도 불구하고, 많은 통계들이 IMF가 진단한 주요 경제통계가 수준만큼 우수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즉 IMF가 진단한 통계는 대체로 통계를 전문으로 수십 년을 작성한 기관들이 작성한 통계인 반면, 다른 통계들은 통계활용기관의 일부 부서에서 작성한 통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수준으로 볼 때 이들 두 가지 원인이 동시에 작동하여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고, 점차로 후자의 비율이 점차로 높아지는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어느 원인으로 이러한 현상이 제기되었던 간에 확실한 것은 통계에 대한 신뢰성은 높지 않다는 것이다. 즉 실제 통계가 문제가 없는데 이에 대한 오류로 언론에 부각을 받거나 혹은 실제 통계가 문제가 있던 가의 차이에 관계없이 일단 이러한 문제점이 언론에 제기된다는 것은 통계에 대한 신뢰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발

생한 현상인 것이다.

따라서 통계의 신뢰성 개선이 아직까지 우리나라 경제통계 개선 및 현대화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된다.

한편 통계의 신뢰성 문제는 여러 가지 면에서 기인할 수 있다. 통계의 정확성에 대한 문제에서 발생할 수 있고, 권위적인 정부 하에서 통계치에 대한 편이가 발생할 가능성도 많이 있기 때문이다.

전자의 경우에는 통계청의 독자적인 노력으로 개선할 수 있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국가시스템이 총체적으로 분권화 및 민주화되어야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달성하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다. 즉 이를 해결하는 방안은 장기적으로 꾸준히 우수한 품질의 통계를 작성하고 통계작성기관이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건이기 때문이다.

## 5) 높은 IT 기술 활용성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최근 통계작성환경의 변화를 살펴보면 가장 중요한 특성중의 하나가 IT 기술 활용에 따른 효율성 개선효과이다. 이는 단순히 통계작성기관의 IT 기술 활용성을 의미하는 것 뿐 만 아니라 사회전반적인 IT 기반 조성 과 통계사용자 및 원자료 제공자의 IT기술 활용 가능성을 포함한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나라 전반적인 IT기술 저변의 확대 및 활용성 제고는 통계작성환경 및 활용도 면에서 크게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표 5.13>에서 보여 주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IT 환경은 세계 최고의 수준이다. 무선전화가입자가 인구 100인당 99.2명으로 거의 모든 사람들이 휴대전화를 보유하고 있으며, 미국이나 일본의 수준을 초과하고 있다. 한편 이는 싱가포르나 영국의 경우 GSM 휴대전화 방식으로 1인당 휴대전화 보유규모가 1대를 초과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한편 인터넷가입자수를 보더라도 100인당 81.6명으로 영국을 제외하고는 가장 높은 수준이고, 초고속인터넷가입자수는 100인당 33.82명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렇게 인터넷환경이 구축됨에 따라 통계 작성이나 보급에서 인터넷을 활용한 방안이 계속하여 등장하고 있다.

먼저 PDA를 통한 통계자료 작성을 통하여 직접 작성자에게서 통계작성기관 데이터베이스로 자료가 수집되고, 온라인을 통한 조사가 활성화되어 자료수집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통계 작성시 각종 자료가 인터넷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작성기관 사이를 쉽

게 이동하며, 이들 자료를 또한 작성기관의 서버나 개인용 PC에 보관되고 활용된다.

<표 5.13> 세계 주요국의 주요 정보통신시장 지표

	유선전화가입자 (인구100명당)		무선전화가입자 (인구100명당)		인터넷사용자 (인구100명당)	
	2009	2004~09 증가율	2009	2004~09 증가율	2009	초고속가입 자
한국	39.91	-4.3	99.20	5.6	81.60	33.82
미국	49.26	-3.6	94.83	10.1	76.24	27.10
영국	54.60	-1.1	130.55	6.1	83.56	29.81
싱가포르	39.11	-2.4	140.43	10.8	77.23	23.71
중국	-23.31	-0.5	55.51	17.4	28.53	7.70
일본	34.89	-5.7	90.37	4.7	76.8	24.94

자료: ITU, <http://www.itu.int/ITU-D/icteye/Indicators/Indicators.aspx>

한편 통계이용자들은 언제 어디서든지 자신의 개인용 컴퓨터를 사용하여 통계작성기관의 웹사이트에 접근하여 자신이 원하는 통계를 찾아보게 된다. 또한 PC를 사용한 각종 통계분석이 쉽게 이루어짐에 따라 이들 이용자들은 수시로 각종 통계를 이용하게 된다.

이러한 전자매체의 등장으로 통계작성자와 이용자들 간에는 각종 소통의 기회가 많아지게 되었다. 사용자들은 통계작성기관의 웹사이트에 통계에 관련된 각종 의문사항을 질문하고 작성기관은 이를 성실하게 답변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통계작성기관들은 사용자들의 욕구를 자연스럽게 알게 된다.

## 제 6 장 각국의 경제통계시스템

### 1. 미국

#### 1) 개요

미국은 전형적인 분산형 통계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약 100개 정부기관이 각각 자신이 필요로 하는 통계를 작성하고 있으며, 통계활동에 연간 50만 달러 이상을 투입하고 있는 70여개의 연방기관에서 통계정보를 수집·관리하고 있다. 이 중 통계적 활동을 위한 법률권한과 예산집행은 상무부 센서스국과 경제분석국, 노동부의 노동통계국, 농무부의 국립농업통계서비스, 보건복지부의 국립보건통계센터, 법무부의 법무통계국, 교통부의 교통통계국, 에너지부의 에너지 정보청, 교육부의 국립교육통계센터 등 주요 10개 기관들은 수행하면서 미국의 주요통계기관(Principal Statistical Agencies)으로 특별히 분류되고 있다. 이들 기관을 포함한 15개 기관이 통계정책을 위한 협의회를 구성하고 통계조사의 기획, 통계의 생산, 조정 및 관리, 생산된 통계의 보급 및 응용분석, 통계인력에 대한 교육 등 다양한 통계활동을 자체적으로 행하고 있다.

미국의 통계생산기관의 예산규모는 <표 6.1>과 같이 2009년 기준으로 센서스국 3,169.9백만 달러, 노동통계국 592.8백만 달러, 교육통계센터 359.1백만 달러, 농업통계국 153.5백만 달러, 보건통계센터 124.7백만 달러가 배정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인력구조를 보면, <표 6.2>와 같이 규모가 가장 큰 상무부 센서스국에는 2009년 말 기준 8,698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이 외에 노동부의 노동통계국에 2,620명, 농림부의 농업통계국에 1,107명, 상무부 경제분석국에 530명, 국가보건통계센터에 520명 등의 통계인력이 배치되어 있다.

지방통계조직으로는 센서스국이 총 12개의 지방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각 지방 사무소에서는 현지 자료수집 및 조사원들을 관리한다. 인력은 사무소 본부 기준으로 1개 지방사무소 당 평균 약 50여 명이 근무하고 각 지방사무소에는 조사원(Field Representative)과 지도원들이 배치되어 있어 이들이 현장조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또한 총 13개 주요 통계 기관에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다.<sup>47)</sup>

한편, 미국은 각 기관별로 통계수요에 대처하여 통계를 작성하고 있으므로 업무관련 전문지식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신속하게 수요에 대처할 수 있으나 예산과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게 되고, 유사통계의 중복작성이나 통계기준의 불일치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정 장치를 두면서 발전하였다. 즉 분산

47) “Statistical Programs of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FY2009”에서 발췌하여 작성하였다.



형 통계제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산과 인력의 비효율적인 활용과, 유사통계의 중복작성, 또는 국가 통계 작성 기관 별 통계기준의 불일치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실 직속 행정관리 예산처(OMB :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를 중심으로 다양한 조정 장치를 구축하였다.

<표 6.1> 미국의 주요 10개 통계기관과 예산 내용

(단위 : 백만달러)

정부 부처	통계기관	2007	2008	2009
Department of Commerce	Bureau of Economic Analysis	75.8	77.2	86.5
	Census Bureau	913.0	1467.2	3169.9
Department of Labor	Bureau of Labor Statistics	548.1	544.3	592.8
Department of Agriculture	Economic Research Service	75.2	77.4	82.1
	National Agricultural Statistics Service	147.3	162.2	153.5
Department of Education	National Center for Education Statistics	222.0	255.2	359.1
Department of Energy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90.7	95.5	110.6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National Center For Health Statistics	107.1	113.6	124.7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321.8	321.7	330.0
Department of Justice	Bureau of Justice Statistics	40.3	41.8	53.0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Bureau of Transportation Statistics	26.7	27.5	27.0

자료 : 통계청, 『국내외 통계제도 및 통계작성현황 비교분석 연구용역 보고서』(2009.12)

<표 6.2> OMB 소속 주요 통계 작성기관의 인력구조

단위 : 명

		2007	2008	2009
Bureau of Economic Analysis	총 인원	505	501	530
	전문 통계학자	15	17	17
Bureau of the Census	총 인원	7,192	8,315	8,698
	전문 통계학자	1,584	1,617	1,656
Bureau of Labor Statistics	총 인원	2,494	2,408	2,620
	전문 통계학자	158	156	168
Economic Research Service	총 인원	392	446	448
	전문 통계학자	3	3	3
National Agricultural Statistics Services	총 인원	1,116	1,116	1,107
	전문 통계학자	596	596	590
National Center for Education Statistics	총 인원	108	107	110
	전문 통계학자	64	67	69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총 인원	369	377	382
	전문 통계학자	70	72	73
National Center for Health Statistics	총 인원	477	515	520
	전문 통계학자	155	171	175
Bureau of Justice Statistics	총 인원	48	59	61
	전문 통계학자	28	35	37
Bureau of Transportation Statistics	총 인원	90	122	122
	전문 통계학자	16	14	14
Statistics of Income	총 인원	172	168	182
	전문 통계학자	44	43	43
Office of Research, Evaluation, and Statistics	총 인원	105	105	100
	전문 통계학자	7	7	7
Science Resources Statistics	총 인원	44	47	47
	전문 통계학자	16	19	19

자료 : 통계청, 『국내외 통계제도 및 통계작성현황 비교분석 연구용역 보고서』, 2009.12

## 2) 미국의 주요 경제통계시스템

전형적인 분산형 통계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은 주요 경제통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작성하고 있다.

### (1) 국민계정

미국에서 국민소득 통계의 추계는 1930년대에 시작되었다. 1929년 대공황의 발생으로 경제적 데이터의 필요성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NBER(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은 국민소득 추계를 위한 방법을 개발하였고, 이때 처음 추계된 1929-32의 국민소득 통계는 1934년 상원의회에 보고되었다.

이후 미국의 2차 세계대전 참전으로 전시경제계획 수립의 목적으로 거시경제통계 수요가 증가하게 되었고, 결국 1942년 초 연간 GNP추정이 국민소득의 추정의 구성요소로 도입되었다. 또한 경제의 각 분야에서 소득이 발생하고 지급되며, 지출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알기위한 방향으로 추계방법이 개발되어 1947년 7월 SURVEY OF CURRENT BUSINESS의 부록으로 미국의 국민소득과 생산 통계가 처음 발간되었다. 이때 미국의 국민소득은 1929-46년 기간에 해당하는 48개의 표로 구성되었다.

<표 6.3> 미국의 국민계정통계 및 작성기관

통계명	작성기관
국민소득통계	상무부(BEA)
산업연관표	상무부(BEA)
자금순환표	연방준비은행
국제수지표	상무부(BEA)
국민대차대조표	연방준비은행

1951년 실질GNP와 물가 Deflators가 추가적으로 도입되었고 이에 기반한 실질GNP가 도입되었으며, 1958년 회계시스템이 조정되고 새로운 계정이 추가로 도입되었다. 이때 또한 국민소득의 5가지 주요 계정이 산출, 소득, 지출, 외국거래, 저축/투자로 규정되었고, 실질GNP의 분기별 추계가 도입되었다.

1976년 국민계정통계에 대해 보다 일관적인 평가를 제공하기 위해서 고정자본의

소비의 추계는 현재비용기준으로 변경되었고, 1985년 헤도닉 가격 지수가 도입되어 컴퓨터와 주변장치에 대한 가격변화측정 능력이 향상되었다.

1991년 미국의 BEA는 GNP에서 GDP로 미국 생산 측정방법을 변경하였고 이후 GDP는 미국의 고용, 생산성, 산업생산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경제지표가 되었다.

1993년 BEA의 SNA 93 준비에 적극적인 참여를 하였고 SNA 93으로의 채택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실제로 SNA 93에 참여하였다.

1999년 국민소득계정의 개정은 근본적인 계정에 대한 정의와 계정 내에서 현 달러추정의 통계적 토대의 보다 큰 발전을 이루었다. 예를 들면 기업과 정부의 소프트웨어에 대한 지출은 고정투자로 인식하기 시작하였고, 은행 활동의 측정을 통합함으로써 일정한 가격으로 매길 수 없는 은행 서비스의 실질 가치를 계산하기위해 새로운 방법을 도입하였다. 이후 BEA는 다시 2004년 국민소득계정을 개정하여 은행 및 보험서비스 측정방법을 개선하였다.

이상과 같이 BEA는 국민소득계정 개발을 위하여 항시 연구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00년 자문위원회를 설립하고 쟁점사항에 대한 논의와 국민계정의 발전을 위함을 위한 논의를 위해 연간 2회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2004년에는 미국 국민계정의 완전한 통합과 폭넓은 발전을 위한 제안을 하였는데, 보다 완전한 국민계정의 통합, 비 일치성의 확인, 핵심 시스템과 관련한 시장 외 계정 시스템으로의 확장 및 통합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경험의 한 부분으로 참여자들은 노동통계청에 의해 작성되는 생산성 계정과 연방은행에서 작성하고 있는 자금순환계정을 포함한 기타 미국 경제적 계정과 현존하는 국민소득의 계정을 통합하기 위하여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 (2) 물가

### ① 소비자물가조사(Consumer Price Indexes, CPI)

미국의 소비자물가조사는 각종 경제지표의 디플레이터 산정, 임금 연동 지수 산정 등의 목적으로 1913년부터 작성되기 시작하였다. 이후 1919년부터는 BLS(Bureau of Labor Statistics)가 정기적인 물가조사를 실시하고 32개 도시에 대한 각각 지수 작성하고 이를 공표하기 시작하였다.

1921년 BLS는 미국 도시들의 평균을 나타내는 국가지수(national index)의 발표를 시작하였으며 이후 6번의 개정(1940, 1953, 1964, 1978, 1987, 1998)을 거쳐 최근에 이르렀다.

특히 1978년 소비자물가 4차 개정에서 도시거주자의 소비자물가지수를 나타내는 CPI-U를 추가함에 따라 이전의 소비자물가를 CPI-W로 부르게 되었다. 또한 소비자물가 샘플링에 있어 확률표본방법론(probability sampling methods)을 도입하여 소비자물가CPI 샘플링 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한 최적의 샘플 선정법 등을 개발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였다.

1987년 5차 개정은 가구조사의 재구성 및 샘플링·자료수집·통계추정방법 등 개선하고 소비자물가 생산과 추정을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방법론 등이 고안되었다. 1990년대 들어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1998년 6차 개정을 견인하였는데 이때부터 컴퓨터를 이용한 자료수집이 시작되었다. 또한 이후 헤도닉 회귀분석을 더욱 확장하여 사용하였고 2002년 연동표본제도를 도입하였다.(Chained Consumer Price Index for All Urban Consumer, C-CPI-U)

이렇게 발전되어온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는 현재 전국 87개 도시지역, 23,000 소매점 및 서비스점 등에서 물품과 서비스 자료를 수집하고, 집세에 관한 자료는 50,000 주인 또는 토지소유자에게 수집한다. 이러한 조사는 매월 실시되고 매월 중순 공표되며 소비자물가지수 등이 BLS 홈페이지에 수록된다. 대표적인 간행물로는 Historical data in Handbook of Labor Statistics 등이 있다.

## ② 생산자물가지수(Producer Price Index, PPI)

미국의 생산자물가조사는 소비자물가지수와 마찬가지로 경제 지표, 다른 경제계열의 디플레이터 등을 목적으로 BLS(Bureau of Labor Statistics)가 1890년부터 1901년까지의 물가지수를 1902년 처음으로 공표하기 시작하였다. 처음 공표되었을 당시 지수는 비가중 평균값 이었으나 1914년 가중시스템이 처음으로 사용되었다. 이후 1952년과 1967년에 표본을 재분류하고 대상을 확장하였다. 또한 1978년 Wholesale Price Index라고 불리던 생산자물가지수가 Producer Price Index로 명칭이 바뀌고, 모든 상품가격지수로 나타내어지다가 최종소비재가격지수로 변화하였다.

매월 우편 및 Fax를 통해 25,000여개 기관(기업)을 대상으로 조사가 실시되고 있으며 100,000여개 가격자료를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조사된 PPI는 매월 중순 공표되며 생산자물가지수 등이 BLS 홈페이지에 수록된다. 또한 ‘U.S. Producer Price Index’ 및 ‘Historical data in Handbook of Labor Statistics’ 등의 간행물을 통해서도 자료가 제공되고 있다.

## ③ 수출입물가지수(Import/Export Price Indexes, MXP)

미국의 수출입물가조사는 1961년 NBER(National Bureau of Economics Research)의 보고서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 당시 이 보고서는 수출입가격지수 편찬은 연방통계기관에서 담당해야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후 1971년 The International Price Program을 시작으로 1973년 첫 번째 연간 국제가격지수가 생성되게 되었다. 1974년 국제가격지수의 수집과 발표가 분기별로 행해지기 시작하면서 1983년 수입가격의 분기별 지수를 나타내는 수입가격지수가 처음으로 발표되었고 1984년 수출가격의 분기별 지수를 나타내는 수출가격지수가 처음으로 발표되었다. 1989년에 이르러 BLS가 오늘날과 같은 월별에 기초한 제한적인 지수를 생성하기 시작하였고, 1993년 1월 처음으로 월별 수출입물가지수가 발표되었다.

수출입물가는 매월 첫날 우편, Fax, 전화를 통해 조사되어오다가 1990년대 들어 인터넷조사가 활용되고 있다. 수출입물가지수는 매월 둘째 주에 BLS에 의해 공표되고 있으며 BLS홈페이지에서 게시된다. 또한 미국 수출입물가는 ‘U.S Import and Export Price Indexes’ 및 ‘Historical data in Handbook of Labor Statistics’ 등의 간행물을 통해서도 자료가 제공되고 있다.

### (3) 산업생산(Industrial Production (IP) index)

미국의 산업생산지수는 가공통계로 1919년 처음으로 작성되었다. 최근에 발표되고 있는 산업생산지수는 2002 NAICS(North American Industry Classification System) 코드에 따라 산업이 분류되고 총 312개 항목으로 구성된다. 산업생산지수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많은 기관에서 작성하고 있는 통계가 활용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센서스국(Census Bureau)에서 조사되는 Censuses of Manufactures and Mineral Industries, Annual Survey of Manufactures, Manufacturers’ Shipments, Inventories, and Orders Survey과 Department of the Interior에서 조사되고 있는 United States Geological Survey의 Minerals Yearbook, Department of Energy의 발간물 등에 기초해서 작성된다. 작성된 산업생산지수는 매월 15일경에 공표되고 FRB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된다.

이중 현재의 경제 상황 및 제조업체들의 향후 생산 작업에 폭넓은 월별 통계자료 제공하기 위해 조사되고 있는 Manufacturers’ Shipments, Inventories, and Orders Survey의 경우 1957년부터 조사가 시작되었으며 연간 5억 달러 이상 출하하는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업 등 4,200개 기업체를 대상으로 전화, Fax, 인터넷들을 이용해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 (4) 노동(The Current Population Survey, CPS)

미국의 경제활동인구 수, 취업자 수, 실업자 수 등 주요 노동통계는 1942년부터 최근까지 매월 제공받고 있다. 이는 경제 분석, 노동시장 연구, 연방기금 배정 및 고용과 실업률 추정치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공되는 것이다.

CSP는 1940년 Works Progress Administration에 따른 월간 실업보고서(Monthly Report of Unemployment)에서 시작되었다. 이후 CPS는 1942년 미국상무부의 센서스국(Census Bureau)으로 이관되었고, 조사명도 Monthly Report on the Labor Force로 바뀌게 되었다. 이후 1948년 조사명이 다시 Current Population Survey로 다시 바뀌어 최근까지 지속되고 있다.

1959년 CPS Labor Force 자료의 분석과 발표가 BLS로 이관되었으나 자료 수집은 계속해서 센서스국이 담당하였다. 1994년 CPS 구성항목 재구성하였는데, 이때 과거 주급 위주였던 임금항목이 응답자 편의에 따라 시급, 주급, 2주급, 월급, 연봉으로 다양하게 작성하도록 개정되었다. CPS의 가구표본은 2000년 인구조사에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조사대상이 2001년 50,000가구에서 10,000가구 추가되어 현재 60,000가구를 조사대상으로 하여 매월 조사되고 있다.

## 2. 영국

### 1) 개요

영국은 30여개 이상의 정부 부처 및 에이전시(Agency)에서 국가통계를 생산하는 전형적인 분산형 통계제도를 갖고 있는데 정부통계서비스를 기획·조정하기 위한 기능을 중앙통계기관인 통계청(ONS: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이 담당하고 있다.

영국의 통계제도는 통계생산의 관점에서는 전형적인 분산형 통계제도를 취하고 있지만 운영의 관점에서는 주요 국가 통계 작성기관의 연합체인 정부통계기구(GSS: Government Statistical Service)라는 하나의 조직을 통하여 대부분의 공식통계를 제공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혼합-분산형시스템이라고 하겠다.

이러한 정신은 영국의 정부통계기능의 미션을 세부 통계를 작성하는 각 부처마다 개별적으로 미션을 세우지 않고, 통합적으로 동일한 미션을 정하는 것으로 알 수 있다. 영국은 정부통계기구의 주 고객은 의회와 기타 정부조직이라는 것을 천명하고 있으며, 통계 생산의 목적이 이들 조직의 의사결정을 돕는 것임을 GSS의 포괄적 미션으로 제시한 점에서 나타난다. 또한 ‘National Statistician’은 영국공식통계를

생산하는 ONS의 수장이며, 또한 동시에 GSS의 장이 된다. 대다수 부서의 GSS 직원과 각 행정 기관은 전문 통계수장(Statistical Head of Profession: HoP)이라고 불리는 전문통계가가 관리한다.

국가통계전문가로서 통계청장은 재무장관에게 보고한다. 즉, 국가통계전문가는 전문 통계수장으로서 국가 통계의 수행과 승인된 연간 업무 계획의 이행을 재무장관에게 보고할 책임이 있다.

1996년 중앙통계국과 인구총조사국이 합병하여 탄생한 국립통계청(ONS)은 2008년 기준으로 3,900명으로 구성된다. 이는 약 1,300명의 현장직원, 200명 내외의 정부사회연구서비스(GSR)의 구성원과 GSS의 250 여명의 통계학자 그룹, 기타 정부부처에 소속된 통계인력은 1,500명 여명으로 구성된다. 이때 100명 이상의 통계인력을 보유한 정부부처로서는 농업·어업·수산부, 국방부, 관세청, 교육·노동부, 환경·교통부, 복지부, 사회보장부이며, 이 밖에도 정부통계기구와 긴밀한 협조 하에서 통계인력을 통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들로는 영국중앙은행, 영국지질조사국, 민간항공당국, 에너지기술 지원국, 균등기회를 위한 협회, 중등교육 기금위원회 등이 있다.

GSS는 30개 기관의 통계책임관으로 구성된 정책관리위원회(의장 : 통계청장)와 9개 분과위원회(정보시스템, 자료배포, 경제통계, 사회통계 등)를 설치하여 이를 통해 각종 통계조정활동을 수행한다.

한편, 정부통계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국가통계의 품질문제, 우선순위문제, 통계적 정직성을 위한 제반 절차 등에 대한 자문을 하기 위하여 ONS와 내각으로부터 독립된 비정부 공공자문기구로 통계위원회를 설립하였다. 통계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과거보다 더욱 향상시키기 위해 수차례 개편된 끝에 2008년 4월에 UK Statistical Authority (UKSA 또는 SA)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출범하였다. SA는 여왕에 의해 임명된 의장과 공식채용 및 관련부서의 협의를 통해 임명되는 8명의 비상임이사(non-executive)와 3명의 상임이사(executive)(1명은 국가통계학자, 다른 2명은 Head of Assessment, Finance Director for ONS)로 구성되어있다. National Statistician은 UKSA의 Chief Executive 뿐만 아니라 전문적이고 주요한 통계관련 사안들에 대해서 제1의 조언자가 되며, 이사회 운용에 대한 최종 책임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한다.

국가통계 전반에 걸친 전문가적 권위를 활용하여 국가통계의 품질 향상, 우선순위의 올바른 선정, 통계적 정직성 제고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문을 수행하고 있으며, 국가통계가 가치가 있고 공공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통계청(ONS)과 협력하고 있다.



## 2) 영국의 경제통계시스템

### (1) 국민계정

영국 국민소득의 공식적인 추계는 2차 세계대전 중에 시작되었고, 1950년대 분기 국민계정이 추계되기 시작하였고, 금융계정과 대차대조표도 추가되었다. 오늘날에도 국민계정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는데 이는 크게 다음 같은 세 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다.

첫째, 1980년대 후반 동안 영국은 경제통계의 신뢰성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특히 Pickford보고서의 발표 이후 크게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예를 들어, 중앙통계기관내에서 국민계정작성에서 ‘집중화’가 시작되었고 ‘supply and use tables’이 도입되었다.

둘째, 1998년 ONS가 ESA1995를 채택하여 작성방법을 수정하였으며 해당 통계 발표 방식 등에 있어서 변화를 가져왔다.

셋째, 2003년 경제성장률 추계를 위하여 연쇄가중법을 채택하였다.

영국 국민계정의 이러한 발전은 영국의 독립적인 현상이기 보다는 유럽연합 내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 변화와 그 맥을 같이 한다. 즉 1960년대 초기 유럽연합 국가들은 유럽연합 구성 국가들을 위한 Harmonized national accounts statistics가 필요함을 인식하였다. 이에 따라 유럽연합은 1968SNA에 입각하여 유럽내의 국민계정작성법인 1970년 European System of Accounts(1970ESA)를 발표하였고 이어 1979년에 이를 수정한 1970ESA를 발표하였다. 또한 1993SNA의 유럽버전이라고 할 수 있는 현재의 1995ESA를 새롭게 작성하였다.<sup>48)</sup> 1995ESA는 1993SNA와 99% 거의 같고 1993SNA에서 남겨둔 일부 미해결과제에 대하여보다 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예를 들어, 1993SNA에서 “시장”과 “비시장” 사이의 구분은 생산자가 그들의 생산물을 경제적으로 유의한 가격으로 판매하는지에 따라 구분되나 1995ESA는 비시장 생산자를 산출물을 생산비용의 50%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할 경우로 한정짓는다. 1995ESA에서 정의하는 경제적으로 유의한 가격은 생산

---

48) 1970 ESA와 1995 ESA는 범위와 개념 면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대부분의 차이는 1968 SNA와 1993 SNA 사이의 차이점과 비슷하다. 1968 SNA에서 1993 SNA으로 이행되면서 범위 면에서 나타난 주요 차이점은 1) 대차대조표의 포함, 2) 자산계정 내 기타변화의 포함, 3) 가계 하위분류의 도입, 4) 최종소비의 새로운 개념의 도입, 5) 구매력평가개념의 포함, 6) 문예활동이 생산 활동으로 포함, 7) 보험서비스에 대한 평가의 변화, 8) 무역과 운송이익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관리 9) 가격의 산출에 연쇄가중법의 도입, 10) 금융리스 개념이 도입(1968SNA와 1970ESA는 운용리스의 개념만 포함), 11) 광물탐사에 대한 지출과 컴퓨터 소프트웨어에 대한 지출이 중간소비에 기록되는 대신에 자본형성에 기록, 12) 자본소비는 정부의 기간산업에 기록, 13) 새로운 금융제도의 도입 : 환매, 옵션과 같은 파생금융제도, 14) 중간소비로서 분류되어왔던 간접적으로 측정된 금융중개서비스(FISIM)의 이용이 최종소비와 수출의 항목으로 분류되고, FISIM의 수입 역시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함

비용의 50% 이상을 의미한다. 이러한 보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의 제시하는 이유는 European Commission이 국민계정통계를 정책실행의 기준으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지역개발 자금의 할당 및 유럽연합재정에 대한 기여도를 계산하는데 이용하고 있다. 보다 최근에는 공공자금의 안정성을 모니터하기 위한 방편으로 그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또한 1995ESA는 유럽연합차원에서 입법·제정되어있는데 이는 국민계정의 국제적인 조화가 유럽연합 구성 국가에 요구되는 사항이었을 뿐만 아니라 미래 유럽연합 가입국에도 적용되기 때문이다. 1993SNA는 다양한 경제시스템과 개발정도의 차이를 가지는 많은 국가에 적용이 가능하도록 매우 융통성 있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1993SNA는 1995ESA보다 국제적인 비교차원에서 다소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한편, 1995ESA의 개정은 다음과 같은 사항에서 1993SNA의 개정된 부분과 다르게 다음과 같은 점을 덧붙이고 있다. 우선 1968SNA에는 이미 포함되어 있었으나 1970ESA에서 고려하지 못한 supply and use tables의 도입하였고 유럽 연합의 구체적인 제도를 참고하였으며, 1970ESA, 1968SNA와 1993SNA에서는 생산자물가에서 평가함을 채택한 것과 달리 생산물 가치평가에 대한 기초물가의 선택하였다. 마지막으로 경제활동인구와 실업률 개념의 도입하게 되었다. 최근 UN에서 2008 SNA를 발표함에 따라 유럽연합도 역시 새로운 ESA를 준비하고 있고 영국도 역시 이에 대비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표 6.4> 영국의 국민계정통계 및 작성기관

통계	영국
국민소득통계	통계청(ONS)
산업연관표	통계청(ONS)
자금순환표	통계청(ONS)
국제수지표	통계청(ONS)
국민대차대조표	통계청(ONS)

자료: ONS website

## (2) 물가

### ① 소비자물가조사(CPI, RPI(retail price index))

영국의 소비자물가조사는 거시경제지표, 소득조정, 가격조정 및 물가 안정목표제를 위한 지표로 사용되는 것을 목적으로 약 650개의 대상품목 중 계절품목을 제외하고 면접조사와 전화조사 등을 통해 매월 ONS(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United Kingdom)가 조사하고 있다.

물가조사는 1914년부터 생계비 조사에 기원하였고 소비자물가와 같이 전반적인 물가에 대한 조사는 1947년부터 작성되기 시작한 소매물가지수(RPI)를 기원으로 한다. 이에 영국은 1947년부터 RPI(Retail Price Index)를 사용하였으나 1996년부터 통화위원회의 요청에 의해 기존의 RPI를 1996년부터 작성되기 시작한 소비자물가(CPI, Consumer Price Index)로 대체하여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유로화 출범이후 2003년 12월 CPI는 HICP(Harmonised Index of Consumer Prices)로 개편되었고, 2003년 12월 이후 영란은행 통화정책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물가안정목표제의 기본이 되는 새로운 역할을 반영시키기 위해서 CPI를 HICP로 변환시켜 사용하고 있다.

### ② 생산자물가지수

영국의 생산자물가지수는 1903년 도매물가지수(WPI, Whole Price Index)라는 명칭으로 무역위원회(Board of Trade)가 1871년부터 45개 품목을 포함하여 처음으로 작성하면서 시작하였다. 이후 1935년에 1930년을 기준년으로 1955년까지 도매물가를 작성하였다. 1950년대 중반 지금의 생산자물가지수의 기초가 갖추어지고 1956년 Phillips에 의해 기본개념이 갖추어짐에 따라 1979년 이후 현재까지 생산자물가지수가 작성되고 있다. 생산자물가지수는 총 7회에 걸쳐 개정되었으며, 현재는 5,000개의 사업체와 9,000개의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고 있다.

### ③ 수출입물가지수(The Import Price Indices(IPIs), The Export Price Indices(EPIs))

영국의 수출입물가지수는 ONS에 의해 조사되는데 수입물가지수는 1600개의 사업체와 2500개의 가격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고, 수출물가지수는 1900개의 사업체와 3800개의 가격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어 매월 공표되고 있다.

### (3) 산업생산(Manufacturing : Index of Production-UK)

영국의 산업생산지수는 단기 산업 활동 동향을 파악하고 GDP 생산부문 측정과 EC 지수작성 자료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이 지수는 1948년 연간조사를 시작으로 1968년부터는 월간조사를 실시하여 매월 공표하고 있다. 월간제조업조사를 바탕으로 작성되는 가공통계로 제조업의 75%에 해당하는 6,000개 기업을 표본으로 한다.

### (4) 노동(Labour Force Survey(LFS))

영국의 노동통계는 노동시장 정책을 개발, 관리, 평가하기 위해 1973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조사되고 있는 주요 경제통계로 현재 ONS(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의해 조사 및 공표되고 있다.

최초 작성되기 시작한 1973년에는 2년 단위로 작성되었으나 1984년부터 년단위, 1992년부터는 분기단위로 작성하고 있다. 또한 1992년~1993년에 임금관련 문항을 추가하였으며, 1994년에는 북아일랜드에서도 분기단위 작성방식을 채택하였고, 1997년 임금관련 문항 추가하였다. 2000년 지역 경제활동인구조사 및 웨일즈지방 경제활동인구조사를 도입하였다.

현재 분기별로 60,000가구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그 결과를 매월 발표하고 있다.

## 3. 캐나다

### 1) 개요

캐나다 통계제도는 전형적인 중앙집중형시스템(Centralized system)이다. 국가통계기관인 캐나다 통계청(StatCan: Statistics Canada)은 정부부처를 포함하여, 국가 전체의 통계수요 충족을 그 주요 책임으로 하고 있다. 캐나다 통계청은 산업부(Industry Canada) 산하 기관으로 조직은 6개 국(Group), 60개 과로 이루어져 있다. 전국에 지역사무소(regional offices) 5개와 위성사무소(satellite offices) 4개를 두고 있으며 지방 소재 통계사무소들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청장격인 수석 통계관을 중심으로 6개의 분과(사회·공공 및 노동통계, 사업 및 무역통계, 국민계정 및 분석연구, 홍보·보급 및 운영, 정보과학 및 방법론, 관리서비스)로 구성되어 있다. 통계청장 직위는 차관급으로 총리에 의해 임용되나 보고대상은 산업부장관으로 정치적인 독립성이 보장되고 임기는 20년 이상 가능하

며 청장아래 7명의 차관보를 두고 있다.

캐나다 통계청은 통계제도를 규율하는 대표적인 법률인 통계법(Statistics Act, 1971)을 근거로 하여 캐나다 국가통계정보의 조사, 수집, 분석, 요약 및 출간과 이를 위하여 기타 정부부처와의 협력하고, 통계법에 의해 규정된 인구센서스와 농업센서스의 수행하며, 정부부처에 의해 수집된 정보의 중복회피를 위한 조정기능과 국가 및 지방관련 통계의 개발 및 통계의 통합을 위한 조정계획 수립 등을 수행한다.

캐나다 통계청의 업무활동은 국제·국내경제통계(International and Domestic Economic Statistics), 사회경제통계(Socio-economic Statistics), 센서스 및 사회통계(Census and Social Statistics), 공공통계(Institutions Statistics), 기술적 하부조직(Technical Infrastructure), 조직 관리서비스(Corporate Management Service) 등 6개 분야로 나누어져 있다.

이중 국제·국내경제통계, 사회경제통계, 센서스 및 사회통계, 공공통계 등 4가지 부문의 활동은 통계청에서 생산하는 통계정보의 계획, 개발 및 생산에 관련된 것이다. 한편, 기술적 하부 조직 활동은 조사방법론, 설문지 디자인, 분류체계, 자료수집 및 정보 분석 등 캐나다 통계청 뿐 만 아니라 다른 기관이 작성하는 모든 통계적 활동에 필요한 기술을 중점적으로 지원할 뿐만 아니라 특정 통계의 생산 및 서비스, 연구 분석, 마케팅 및 정보서비스 등의 업무를 포함한다. 마지막의 조직관리 서비스 활동은 통계청의 행정기획, 인사관리, 재정 및 프로그램 평가 및 내부 회계감사 등에 관한 업무이다.

캐나다 통계청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주요 임무를 맡고 있다. 첫째, 캐나다의 경제적, 사회적 구조에 대한 통계적 정보와 분석을 제공하여 정부의 정책과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대중과 개인의 의사 결정을 향상시켜 캐나다 국민의 이익을 증강시키도록 하는 것이다. 둘째, 통계 수준을 향상 시키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셋째, 캐나다에서 통계생산은 연방정부의 의무이기 때문에 캐나다의 중앙 통계기관으로서 통계생산을 통하여 캐나다의 전체 국민과 각 주를 돕는 것이다.

집중형시스템 하에서 캐나다 공식 통계기관인 통계청(Statistics Canada)은 약 5천명에 해당하는 방대한 인력과 조직뿐만 아니라 그에 적합한 예산을 갖추고 있다.<sup>49)</sup> 캐나다 통계청은 단일 통계예산을 집행하고 있으며, 통계 활동에 이용 가능한 정보나 자원에 대한 수요가 변화할 때 조직 내에서 자원을 재분배할 수 있다. 캐나다 통계청 예산은 정부의 행정 기록으로부터 수집된 자료에 기초한 통계 정보 생산 활

49) Statistics Canada 2008-2009  
(<http://www.tbs-sct.gc.ca/rpp/2008-2009/inst/stc/stctb-eng.asp>)

동 및 통계 목적의 정부 자료 수집 활동에 지출된다. 이러한 자금 중 대부분은 통계청에 대한 의회 승인 정부지출금에 해당하며, 일부 통계자료 제공기관으로부터 받은 보상금으로도 충당하고 있다.

통계청의 지방조직은 전국에 걸쳐 지역사무소(regional offices) 5개와 위성사무소(satellite offices) 4개를 두고 있다. 이들 9개의 지방사무소는 자료수집, 통계이용자에 대한 상담 및 자료 제공, 통계이용자를 위한 워크숍 개최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한편, 캐나다 통계청은 통계정책 자문위원회로서 국가통계위원회(National Statistical Council)를 두고 있다. 국가통계위원회는 통계청 업무 전반의 지도 및 프로그램 우선순위에 대한 자문제공 등을 주요 임무로 하고 있다. 약 40명으로 구성된 국가통계위원회의 위원들은 개인적 자질을 토대로 선정 되고, 다양한 이해관계와 정보이용자들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도록 조직된다. 위원들의 임기는 3년(재임 가능)이며 통계청장(Chief Statistician)은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 위원회는 다양한 분야(경제, 학계, 대중매체)의 출신이라는 특징 때문에 다양한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고 자문역할을 실질적으로 수행한다. 자문위원회 1.5일 동안 열리는 회의를 매년 2번씩 갖는다. 중요한 프로젝트인 경우 보다 전문적인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전문자문위원회가 별도로 존재한다.

## 2) 캐나다의 주요 경제통계시스템

### (1) 국민계정

캐나다의 국민계정시스템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로 국민계정 구성부분에 관한 여러 가지 간행물의 발표와 더불어 발전되었다. 국민계정은 연간, 분기별 수입·지출계정(Income and Expenditure Accounts, IEA), 국제수지계정(Balance of Payment), 투입산출표(Input-Output Tables of the System), 금융계정으로 구성된다.

국민계정시스템은 전체 개념적인 틀로 1993SNA에서 제시하고 있는 국제적인 기준과 같이 여러 부문들이 서로 연결된 하부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는 이 부문들에 대한 직접적인 비교는 기관과 법적단체별로 종합된 수준의 자료에서만 가능하지만 현재 캐나다 통계청을 중심으로 기업 및 기관 관계이 이에 대한 연구를 지속하고 있다.

1990년 국민계정추계에 필요한 자료와 방법에 대한 간행물을 발표한 이후 캐나다 국민계정(Canadian System of National Accounts: CSNA)은 약 10년마다의 개정을 통

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CSNA는 1997년 개정에서 1961년부터 1997년까지의 분기 및 연간 국민계정통계를 새로운 국제기준 즉 1993SNA(System of National Accounts)과 BPM5(Balance of Payments Manual 5th edition)의 권고안에 따라 이를 이행하도록 하였다. 또한 계정의 발표, 개정된 새로운 데이터 결합, 개선된 추정방법의 채택, 통계적 결합 제거, 구성부문들 간 통합정도의 심화 등 다양한 부분에서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수입·지출계정(IEA)의 부문계정에 대한 계절조정 및 요약된 금융계정을 추가시키는 등의 재구성을 통해 모든 자료의 출처와 자금의 사용내역을 알 수 있게 하였다.

2000년 연간 개정은 정부가 재원을 조달하지 않는 연금계획의 조정을 목적으로 개인 저축, 자산, 부와 정부흑자, 적자와 부채에 대한 측정을 상당부문 개선시키고자 하였다. 이 개정을 통해 이러한 부채들을 정부부문의 부채와 가계자산의 부문으로 명확하게 구분하게 되었다.

2001년 연간개정에서는 크게 두 가지의 변화가 이루어졌다. 첫째, 수입·지출계정(IEA)에서 실질 GDP에 대해 연쇄피셔지수(Chain Fisher Index)가 채택되었다. 분기별 수입·지출계정(IEA)는 2001년에 GDP에 기초한 실질 지출을 공식 측정함으로써 피셔지수공식을 채택하였다. 피셔지수공식을 채택한 이유는 먼저, 분기에서 분기로의 GDP 성장과 그 구성요소들을 가장 정확히 측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변화를 통해 캐나다의 분기별 자료와 연쇄피셔지수로 실질 GDP 측정을 추계하고 있는 미국의 Income and Product Accounts의 비교가 가능하다.

둘째, CSNA에서 투자지출의 범위가 소프트웨어까지 확장되어 소프트웨어를 투자로 여기는 새로운 방법이 2001년 개정에서 IEA에 반영되었다. 소프트웨어는 현재 생산과정에서 다른 자본투입과 같이 최종생산물을 구성하기 위한 중간물로 처리되어 왔는데, 1993SNA는 기업과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소프트웨어의 경우 국민계정에서 경상지출로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지출로 처리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러한 UN의 권고에 따라 미국을 비롯한 다른 G7 국가들 역시 GDP의 개념에서 소프트웨어를 자본으로 포함시키는 것으로 개정하였다.

또한 2007년 기준년을 2002년으로 하는 연쇄피셔지수(Chain Fisher Index)로 개편되었다. 최근 UN에서 새롭게 2008SNA를 권고함에 따라 권고안과 여타 G7국가들의 이행계획 및 개편 등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표 6.5> 캐나다의 국민계정통계 및 작성기관

통계명	작성기관
국민소득통계	통계청
산업연관표	통계청
자금순환표	통계청
국제수지표	통계청
국민대차대조표	통계청

자료: StatCanweb site

## (2) 물가

### ① 소비자물가조사

캐나다의 소비자물가조사는 1914년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해 조사되기 시작하였다. 첫째, 소비자물가가 일반적인 수준의 물가변화지표로서 폭넓게 사용되고, 둘째, 소비자의 구매력을 나타내 국민 모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셋째, 소비자에게 소비자물가의 변동을 비교함으로써 개인 소득의 변화를 관리하고 자신의 재무상황 변화를 예측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었다.

1913년과 1926년 사이 Department of Labour(DL)과 Dominion Bureau of Statistics(DBS, 현재 통계청)가 각각의 소비자물가를 만들기 시작하였으나 DL은 제한된 조사대상으로 작성한 반면 DBS는 캐나다 전체인구를 조사대상으로 하였다. 1920년대 초 DBS는 DL이 수집한 자료를 사용하여 월별자료 만든 이후 월자료를 작성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1971년 1월 도심지역 수준의 데이터시리즈 형성되었고, 1978년 9월에 이르러서야 주(province) 수준까지 자료를 조사하여 작성하기 시작하였다.

현재 통계청은 소비자물가를 작성하기 위하여 168개의 기본 상품 분류에서 600개 상품의 가격변동을 조사하는데 표본의 크기는 660,000개의 가격자료를 바탕으로 휘발유와 식품 등 소비재는 매월 조사하는 반면 가구, 가구집기 등 내구재는 연 6회 조사하고 있다.

### ② 생산자물가조사

캐나다의 생산자물가는 농업생산물가와 산업생산물가로 구분되어 조사되고 있다.



우선 농업생산물가(Farm Product Price Index, FPPI)는 표본을 추출한 후 FAX 및 전자우편을 통해 매월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FPPI는 The Ontario Hayand Straw Prices Survey, The Grains and Specialty Crops Survey, The Potato Prices Survey, The Grains and Oil seeds Survey를 통해 각각 분기별, 월별로 샘플을 추출하여 표본크기를 결정한 후 조사를 실시한다. 각 조사별로 표본 수는 The Ontario Hayand Straw Prices Survey: 분기별 125개 가격, The Grains and Specialty Crops Survey: 월별 13개 기업, The Potato Prices Survey: 월별 600개 가격, The Grains and Oil seeds Survey: 월별 21개 기업 등이다.

산업생산물가(Industrial Product Price Index, IPPI)는 1920년대 초 the Dominion Bureau of Statistics(현재 Statistics Canada)가 처음 실시하였고, 1956년에 Industry Selling Price Index(ISPI)로 개편된 후 1980년대 초 ISPI에서 IPPI 바뀌었다. 매달 우편 조사(80%), 전화조사(10%), 다른 통계로부터 인용(10%) 등을 통해 3,000개의 생산자로부터 9,000개 가격을 조사하고 있다.

### ③ 수출입물가조사(International Merchandise Trade Price Index, IMTPI)

캐나다의 수출입물가는 매월 USPPI로부터 2000개의 지수, Canada IPPI로부터 1000개 지수, 일본수출지수를 기반으로 하여 작성되어 매월 공표되고 Canadian International Merchandise Trade과 International Merchandise Trade Annual Review 등의 간행물을 통해 발표되고 있다.

### (3) 산업생산(Monthly Survey of Manufacturing)

캐나다의 산업생산지수는 Statistics Canada에 의해 2001년부터 조사가 시작된 “Monthly Survey of Manufacturing” 를 바탕으로 작성되고 있다. 이때 “Monthly Survey of Manufacturing” 는 제조업의 출하, 재고, 수주잔고, 신규수주 파악 등 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제조업은 16,000개 표본을 대상으로 분기 1회 조사, 광업은 분기 1회 조사 및 당국 월간자료, 전기/가스업은 분기전수조사, 수도업은 표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 (4) 노동(Labour Force Survey, LFS)

캐나다의 노동통계는 고용, 실업, 비경제인구에 대한 상세한 자료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Statistics Canada의 LFS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캐나다의 LFS는 1945년 분기별 조사를 시작으로 1952년 월별조사로 개편되었다. 1960년 Interdepartmental Committee On Unemployment Statistics의 권장으로 인해 LFS가 캐나다 실업률 공식추정 조사로 지명된 후 1976년과 1997년 조사항목 등의 개편을 거치면서 LFS에 의해 제공되는 정보가 질적/양적으로 크게 확대되었다. 이로 인해 LFS는 캐나다 노동시장을 나타내는 중요한 조사로 확고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 1997년 1월부터 세전 임금자료가 LFS 한 부분으로 수집되기 시작함에 따라 조사의 가치가 더욱 높아지게 되었다. 현재는 표본규모 54,000가구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 4. 호주

##### 1) 개요

호주는 통계제도 분류상 집중형 통계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국가통계기관인 호주통계청(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ABS)이 통계생산 및 기타 통계관련 서비스를 수행하고 있다. 호주통계청은 호주연방정부의 재무부(Dept. of Treasury) 소속으로, 1975년에는 호주 통계청법(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Act 1975)이 제정되면서 호주 정부, 주 정부 및 지방의 중앙 통계 당국 역할을 담당하는 통계청이 설립되었다. 호주 통계청(ABS)과 그 전신(前身)인 연방 센서스 및 통계 연방국(Commonwealth Bureau of Census and Statistics: CBCS)이 1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국가 통계 서비스를 담당해왔다. 통계청장은 행정적 문제에 대해서만 의회의 구성원인 재무장관(Australian Treasurer)에게 보고한다.

ABS는 국가 통계서비스에서 높은 품질과 객관성을 선도함으로써, 정부와 지역사회에서의 정책결정과, 연구, 논의를 돕고 장려하고, 정부와 사회 분야 연구 토론에 있어서 의사 결정을 도우며, 객관적이고 효율적인 고급 국가 통계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연방정부 및 주(州)정부를 위한 중앙통계기관으로서 통계서비스 제공, 통계자료 수집, 작성, 분석 및 보급, 공식기구의 통계활동 조정, 통계 표준 설정 및 이행, 통계관련 공식기구에 자문 및 지원, 국제통계협력 활동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ABS는 8개의 지방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완전 독립적인 체제로서 각 주에서는 각각 독립적인 통계를 작성하거나 각 주정부와 각 ABS지방사무소는 유기적으로 협조를 통해 ABS에 지역통계의 작성을 요구할 수 있다.

ABS 예산은 2007/08년, \$300m 정도로 연방정부예산의 1/8에 해당한다. 새로운 예산은 정부예산결정을 통해 배정받고, ABS 내에서 심의 후 할당되고 재정관리 및 책

입 법 1997의 49항에 의해, 재정보고서는 작성 및 보고된다. 통계의 규모와 경제의 복잡성은 증가했지만, 2008/09 예산은 1998/99 대비 2% 감소하였다.

2008년 6월 30일 기준, ABS는 3,024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데, 고용은 일반고용, 석사 고용으로 구분되고 석사고용프로그램은 ABS의 연속적 계획과 입사등급 채용전략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석사고용프로그램은 지원자의 증가에 따라, 점진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추세이다. 2008년 84명이 석사고용을 통해 채용되었다.

한편, 호주 통계청의 주요 통계 자문 단체는 호주통계자문위원회(Australian Statistics Advisory Council, ASAC)로 ABS와 장관에게 통계서비스에 관한 주요자문기구의 역할을 한다. 중앙정부와 모든 주(Province) 및 지역정부(State and Territorial Governments) 대표로 구성되며, 그 외 구성원들은 광범위하게 이해집단 및 기타 단체의 대표 중에서 차출되고 있다. 위원들의 조직은 위원장(임기 5년), ABS청장 외 21명의 위원(임기 3년)으로 구성된다. 위원은 대체로 연방 및 주정부대표, 학계, 연구기관 전문가를 대상으로 임명된다. 통계자문회의는 통계법에 따라 연간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실제 매년 2회씩 개최되고 있다.

<표 6.6> 호주 통계청의 예산규모

연도	2007-08	2006-07	증감액
단위	\$m	\$m	\$m
예산 수입 (appropriation revenue)	302.3	414.4	112.1
기타 수입 (other revenue)	26.2	23.8	2.4
총 소득 (total income)	328.5	438.2	109.7
employee expenses	220.5	294.7	74.2
supplier expenses	73.1	107.5	34.4
other expenses	36.4	35.4	1.0

## 2) 호주의 주요 경제통계시스템

### (1) 국민계정

호주에서 국민소득의 공식추계는 Clark and Crawford 등에 의해 1938년에 처음으로 작성되었고, 국제수지표는 1928-29과 1937-38에 작성되기 시작하였다. 1945년부터는 국민계정이 최초로 통합 편제되어 Commonwealth Bureau of Census and Statistics (CBCS)에 의해 발간되었다.

1960대들어 1960년 12월 분기국민소득과 지출이 추계되기 시작하였고, 1963년 CBCS는 최초로 호주국민계정을 발표하고, 처음으로 연간 실질가격으로 추계된 국민계정을 포함한 “National Income and Expenditure (ANA) Bulletin” 을 발표하였다. CBCS는 1967년부터 분기국민소득 추계에 계절조정을 시작하였고 산업별 실질총생산의 추계는 1969년에 최초로 발표되었다.

CBCS는 1971년 분기실질국민소득 추계에 처음으로 계절조정을 적용한 이후 대부분의 국민계정으로 확대하여 적용하였다. 또한 UN의 권고에 따라 1973년 SNA68에 따른 국민소득 및 지출추계를 발표하였고, 동년에 1964년부터 준비해온 산업연관표를 처음으로 발표하게 된다.

<표 6.7> 호주의 국민계정통계 및 작성기관

통계명	작성기관
국민소득통계	통계청
산업연관표	통계청
자금순환표	통계청
국제수지표	통계청
국민대차대조표	통계청

자료: ABS web site

1980대 들어 CBCS가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ABS)으로 바뀌게 되었고, ABS는 1981년 “Australian National Accounts: Concepts, Sources and Methods” 을 처음으로 발표하게 된다. 또한 ABS는 분기국민소득 및 지출의 정확성과 신뢰성 재고를 위해 연구를 진행하였고, 1982년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주(state)별 추계는 1984년부터 준비하기 시작하여 1987년부터 공식적으로 발표되기 시작하였고 현재는 매년 발표되고 있다. 1986년에는 자본스톡을 공식추계하기 시작하여 1987년 자본스톡의 공식추계를 발표하게 된다. 1988년 산업별 분기실질총생산을 추계하기 시작하였고, 분기 호주국민계정에 현재까지 포함되어 발표되고 있다.

1990년대 들어 국민계정과 수반된 통계들은 더 크게 발전하여 1990년에

“Australian National Accounts: Concepts, Sources and Methods”의 개정판이 출판되었다. ABS는 또한 경제의 생산 활동으로 인해 증가하는 금융자산과 부채의 변화를 보여주는 펀드계정을 발표하였다. 펀드계정은 각 분기 말 시점에서 금융자산과 부채의 양(stock)을 추계하여 발표하였다. 국민대차대조표는 1995년에 처음으로 공표하였고 부문별로는 1997년에 공표하기 시작하였다. 국제기준이 SNA93(System of National Accounts, 1993)로 개편됨에 따라 ABS는 이를 이행하기 위해 개편작업을 진행하였고, SNA93에 따른 개편결과는 1998년 9월에 처음으로 발표하기 시작하였다. 최근 UN은 새로 개편된 SNA2008을 발표함에 따라 호주도 이를 이행하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다.

## (2) 물가

### ① 소비자물가조사(Consumer Price Index)

1960년 이전에는 호주의 소비자물가조사는 Commonwealth Bureau of census and statistics가 작성한 5가지의 시계열로 구분된다. 먼저 1912년~1938년 동안 작성된 A series로 1913년과 1933년 사이의 임금조정지표로 사용되었다. 이어 B series(1925년~1953년), C series(1921년~1961년), D series(1933년~1934년 사이 간헐적으로 작성) The interim retail price index(1954년~1960년) 등이 이다.

1960년 이후 호주통계청은 소비자물가를 작성하기 시작하여 품목별 가중치를 수차례(1960, 1963, 1968, 1973, 1982, 1992, 1998, 2000, 2005) 변화시켰다. 소비자물가는 100,000여개 가격 자료를 표본으로 분기 1회 조사하되 가격 변동폭이 큰 품목은 매월 조사하고 교육비같이 가격 변동폭이 작은 품목은 연간 조사를 실시한다.

### ① 생산자물가조사(Stage of Production Producer Price Indexes)

호주의 생산자물가조사는 1912년 도매물가지수(WPI, Whole Price Index) 작성되기 시작하여 1970년까지 작성되었다. 1976년에 1968년을 기준으로 한 생산자물가지수 월별지수가 공표되었고 1990년 1988-89=100 기준의 지수작성에 대한 개정이 이루어진 이후 1997년까지 분기별 및 월별지표를 발표하였다. 2000년 1998-99=100으로 다시 한번 지수개편을 실시하였다.

### ③ 수출입물가조사(International trade price indexes)

호주의 수출입물가는 2001년 국제무역가격지수(International trade price indexes)로 통합되기 이전까지 수출물가와 수입물가로 구분하여 조사되고 있다. 우선 수출물가(Export Price Index)는 1901년 ABS에 의해 최초로 작성되었고 1937년 새로운 Series 도입 후 1962년까지 작성되었다.

1962년 1959-60=100기준으로 작성되었고 1979년의 개편은 1974-75=100기준, 1990년 개편에서는 1989-90=100기준으로 하고 Export Price Index 공표하였다. 1999년 기준년을 다시 개편하였고, 2001년에는 International trade price indexes로 통합하여 분기별로 작성 및 공표하고 있다.

수입 물가는 1928년 RBA(Reserve bank of australia)에 의해 1982년까지 작성되다가 1983년 ABS에 의해 1981-82=100을 기준으로 분기별로 작성되기 시작하였고 1997년까지 분기단위 지수 작성되었다. 1999년 연간 작성을 위하여 가중치 재조정하였고 1989-90=100을 기준으로 개편되었으나 2001년부터 International trade price indexes로 통합되어 작성되고 공표되고 있다.

### (3) 산업생산(Mining and Manufacturing Industries)

호주의 산업생산지수는 분기별 국민계정 추계 기초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분기별로 조사되어 작성되어 왔으나 1990년 국민계정과 통합된 후 1998년 11월 이후 발간이 중지되었다.

### (4) 노동(Labor Force Survey)

호주의 노동통계는 민간 노동력 월별 인구조사를 중심으로 조사되고 있다. 1960년 분기별 조사를 시작으로 작성하기 시작하였고 1970년 계절조정 시리즈를 도입한 후 1978년 2월부터는 월간조사로 개편되었다. 이후 1979년 ASIC(Australian Standard Industry Classification) 1978에 의한 산업분류, 1989년 CCLO(Census Classification and Classified List of Occupations)에 의한 직업분류, 1984년 ASIC 1984년에 의한 산업분류, 1986년 ASCO(Australian Standard Classification of Occupations)에 의한 직업분류, 1987년 1986년 센서스 기준으로 표본조정, 1993년 계절조정 및 추세의 도입, 2002년 2001년 센서스 기준으로 표본조정 등 수많은 개편을 통해 조사의 품질을 향상시켜 왔으나 2003년 월간 Labour Force 발행은 중단하고 2007년 Composite Estimation의 도입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 5) 일본

### 1) 개요

분산형 통계 작성체제를 채택하고 있는 일본은 내각부, 총무성, 농림수산업성 등 각 부처별로 소관 통계 작성을 위한 통계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농림수산업성 등 일부 부처를 제외한 중앙부처는 기획업무를 담당하고, 현장조사는 지자체(도도부현)에 위탁하여 수행하면, 현장조사를 수행하기 위한 자체 지방통계조직을 운영한다.

신통계법(2007년 5월 23일 법률 제53호)에 의하여 구성된 내각부의 통계위원회는 중앙통계기관으로서 부처 간 통계업무를 조정하고 있다. 또한, 공적 통계의 정비에 관한 기본 계획을 정리하여 발표하고 있는데, 이는 향후 5년간의 공적 통계의 정비에 관한 기본적 개념, 방향성, 필요한 조치 등을 나타낸 것으로 경제 환경이나 생활양식의 변화에 맞추어 지식재산, 환경, 소자녀화 등에 대해서 새로운 통계를 만들고 데이터를 일반에 공개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일본 중앙정부의 통계행정기구(통계행정기구)는 세 가지 형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통계작성을 주된 업무로 하는 중앙기구로서 총무성, 통계국, 내각부, 경제사회총합연구소, 경제산업부 정책국, 통계부 등이 해당된다. 둘째는 지방통계기구로서 여기에는 각 부성(府省)의 地方·支分·部·局과 지자체(都道府縣, 市區町村)의 통계주관과, 교육위원회의 보건·사회복지통계 주관과 등이 있다(이상 표 5-4 참조). 셋째는 각 정부부처의 일반 정책·행정 부서 가운데서 통상적인 업무와 병행하여 통계업무를 담당하는 경우로서, 여기에는 내각부 정책총괄과, 국민생활국의 소비자 조정과, 경찰청의 형사기획과, 교통기획과 등 수많은 부·과가 포함된다.

총무성 통계국이 중앙통계기관의 실질적인 역할을 담당하는데 통계에 관한 실질적이고 종합적인 조정기능(통계기준부)을 수행하고 있었다. 통계조정(통계조정)의 공식적 수단으로는 ‘통계승인제도’, ‘감사제도’, ‘예산 선심제’ 라는 방법 등을 사용하고 있다. 총무성 대신이 통계법에 의해 지정통계조사에 대해 작성 승인을 하며, 지정통계 이외의 기타 통계는 신고에 의해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나아가 통계보고조정법에서는 보고통계의 작성과 관련하여 작성승인제도를 두고 있다.

지정통계조사에 대해서는 사무감사제도를 도입하여, 중앙통계기관인 총무성은 각 행정기관의 장 또는 기관이 실시하는 지정통계조사 실시의 사항에 대하여 감사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총무성 대신은 예산 선심제를 통해 통계조정기능을 행사한다. 예산요구단계에서 통계국이 타 부, 성, 청(府·省·廳)의 익년도 통계조사에 대한 타당성을 미리 심사하여 재무성에 기존 통계로의 대체가능성(중복통계 방지), 적정 표본 수, 조사방법(면접, 우편) 등 세부사항에 대한 검토 의견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

다.

일본의 지방자치단체의 통계기구는 분산형을 채택한 나라 가운데서도 지방자치단체 통계조직이 거의 모든 국가통계의 조사기능을 수행한다는 독특한 특징을 갖고 있다 즉, 지자체 통계조직은 중앙정부 통계기구의 공동 조사조직인 셈이다. 지방통계기구가 행하는 중앙정부의 조사기능에 대해서는 중앙정부로부터 예산이 배정되고, 중앙통계기구의 조사기능과 함께, 지역통계의 작성기능도 수행하고 있다. 지역국민소득, 지역IO, 지역경기지표, 지역고용통계 등은 모두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작성하는 통계인데, 이를 위하여 표본조사의 경우는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의 위탁 조사기능을 수행하면서 표본을 추가하여 독자적으로 지역통계를 작성한다.

2008년도 일본 정부 예산이 2008년 3월 28일 국회에서 통과됐다. 이는 2007년도 초기 예산에서 2년 연속 증가한 83조 6,000억 엔으로 책정되었다. 일본의 통계 관리(SBJ)와 감독에 대한 총 예산은 정기 인사에 대한 경비를 제외한 일반 정책 기획(통계기준) 예산으로 지난해에 비해 약 17.8% 증가한 269억 9,000만 엔이다.

일본정부는 공적 통계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정비 및 그 유용성 확보를 도모하기 위해 통계법을 개정한 신통계법(2007년 5월 23일 법률 제53호)을 발표하고 이에 근거하여 전문적이고 중립·공정한 제 3자 기관으로서 내각부에 통계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통계위원회는 13인 이내의 위원, 특별사안의 조사·심의를 위한 임시위원, 전문적인 사항의 조사를 위한 전문위원으로 구성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결정하면서 공적 통계의 정비에 관한 사령탑 기능의 중핵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한다.

## 2) 일본의 주요 경제통계시스템

### (1) 국민계정

일본에서 국민소득통계는 1928년 Cabinet Bureau of Statistics에 의해 처음으로 작성되었다. 이후 인구센서스가 실시된 1930년과 1935년에 걸쳐 추계되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국민소득통계에 대한 업무는 Economic Stabilization Board(현재 the Economic and Social Research Institute, Cabinet Office)로 이관되었고, 1953년 “Report on National Income Statistics of 1951” 가 처음으로 발표된 이후 지금까지 매년 발표되고 있다.

1951년 일본에서 산업연관표가 처음으로 작성되기 시작하였고 이후 기준시점이 1955년부터 5년 단위로 작성되고 있으며 가장 최근에는 2005년 기준의 산업연관표



가 발표되었다.

이후 UN, OECD와 주요 선진국에서 국민계정추계의 방법론과 표준이 발달함에 따라 일본의 국민계정통계는 1978년에는 SNA68, 2000년에는 SNA93에 따라 개편되었다. 최근에는 UN이 제시한 SNA2008로 이행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표 6.8> 일본의 통계예산

(million yen)

Items	Fiscal 2008
Labor Force Survey	1,564.8
Retail Price Survey	686.3
Family Income and Expenditure Survey	1,162.2
Unincorporated Enterprise Survey	189.3
Survey of Research and Development	22.2
Current Survey operations	80.3
Survey of Household Economy	587.9
System of Social and Demographic Statistics	21.0
Input-Output Tables	103.5
Enumerator administration costs	50.2
Population Census	436.1
Housing and Land Survey	7,018.2
Monthly Survey on Service Industries	464.4
Economic Census(tentative name)	896.9
Cooperation for SIAP	313.6
Compensation for statistical staff of prefectural governments	11,779.9
Other	1,609.7
Total	26,986.5

자료: 일본 통계청 홈페이지, <http://www.stat.go.jp/>

<표 6.9> 일본의 국민계정통계 및 작성기관

통계명	작성기관
국민소득통계	내각부(ESRI)
산업연관표	총무성(통계국)
자금순환표	일본은행
국제수지표	일본은행
국민대차대조표	내각부(ESRI)

자료: 일본 통계청 홈페이지, <http://www.stat.go.jp/>

일본은행, <http://www.boj.or.jp/>

## (2) 물가지수

### ① 소비자물가지수(Consumer Price Survey)

일본의 소비자물가지수는 경제 지표 디플레이터, 임금 등 연동 수단, 통화정책 기초자료로 활용 등을 목적으로 총무성 통계국이 1946년 8월 작성하기 시작하였고, 그 후 몇 차례에 걸친 개정을 거쳐 2006년 8월에 2005년 기준시와 가중치를 참고하여 다음해 제 13차 개정을 실시하였다.

작성되기 시작한 1946년 8월 당시에는 Consumer Price Survey(CPS)와 Family Income and Expenditure Survey(FIES)를 기초로 Fisher 방식을 이용한 소비자물가지수를 작성하였고, 1949년 Laspeyres방식으로 소비자물가지수 개편하여 인구가 5만이 넘는 도시와 도쿄의 Ku-area중심으로 조사하여 물가지수를 작성하였다. 1950년 일본경제가 안정됨에 따라 CPS 대신 Retail Price Survey(RPS)로 조사방식 변경하였다. 또한 1952년에는 1949년의 조사범위에서 27개의 다른 도시를 포함하여 조사 실시하였고 1955년에는 5년마다 기준년도를 변경하는 방식 시작하였다. 1966년엔 조사범위를 각 도시그룹단위와 도시단위 지방단위로 나누어 각각의 평균기준으로 조사 및 작성하였다.

현재 34,000여개상품에 대해서 매월 1회, 신선식품은 매월 3회 조사를 실시하여 매월 26일이 포함된 주의 금요일에 공표하고 있다.

### ② 생산자물가지수(Producer Price Index, PPI)

일본의 생산자물가지수는 1887년부터 도매물가형태로 작성되기 시작하였다. 당시 1887년 1월 기준으로 동경도매물가지수(Tokyo Wholesale Price Index)가 처음 작성되기 시작하였고, 1933년 보다 정확한 물가를 측정하기 위해 Laspeyres방식 도입하였다.<sup>50)</sup> 이후 1952년 Wholesale Price Index로 이름을 변경한 후 1960년 5년마다 기준년도를 변경하는 방식 채택하였다. 1980년부터는 Domestic Wholesale Price Index, Export Price Index, Import Price Index를 포함하여 작성하기 시작하였고, 2000년에 이르러 Corporate Goods Price Index(CGPI)로 이름을 변경하고 공표방법 개선하는 등 지속적인 개편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CGPI(Corporate Goods Price Index)는 1987년 이후로 작성되어 왔고,

---

50) Explanation of the 2000 Base Corporate Goods Price Index(CGPI)

CSP(Corporate Services Price)는 1985년부터 작성되었는데 CGPI는 Domestic Corporate Goods Price Index 910개 상품, Export Price Index는 222개 상품, Import Price Index는 293개 상품으로 구성되며, CSPI는 110개 상품으로 구성된다.

### ③ 수출입물가조사

일본의 수출입물가조사는 CGPI와 CSPI의 지수 안에 포함된다. 1991년 일본중앙은행은 Corporate Goods Price Index에 추가하여 1985년 기준으로 수출입물가지수를 공표 하였다. 이후 일본중앙은행은 1995년에 제공범위 확대 실시하였고, 2000년 조사 범위 및 제공범위의 확대하는 개편을 단행하였다.

### (3) 산업생산(생산동태통계(生産動態統計))

일본의 산업생산지수는 월간 광공업 생산동향 파악을 목적으로 하는 생산동태통계조사에 근거하여 작성된다. 본 조사는 1926년 조사하기 시작하여 1934년 최초로 공표하였다.

현재 생산, 출하에 대해 521개 품목을, 재고에 대해 375개 품목을 표본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생산동태통계조사, 농수산물, 운수성, 후생성의 행정자료와 주조조합, 정밀공업협회 등 업계자료 활용하여 매일 공표되고 있다.

### (4) 노동

일본의 노동통계는 국가전반 및 지역에 걸쳐 고용구조에 대한 실제적인 정보를 얻기 위한 자료 구축하기 위해 1946년 9월에 시작하여 약 1년간의 연구 및 시험기간을 거쳐, 1947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매일 노동통계 관련통계를 작성하였다. 그 후, 1950년 4월부터 통계법 (1947년 법률 제 18호)에 의한 국가지정 통계로 지정되었으며 1982년 표본 확대하였고 2002년부터는 노동력 특별 조사(Labour Force Special Survey)를 노동력조사에 통합하는 개정을 실시하였다. 2009년 4월부터 통계법 (2007년 법률 제 53호)에 의한 기간 통계 조사로 실시하고 있다. 표본규모는 인구조사의 약 90만 조사구에서 약 2,900 조사구를 선정하여 이 조사 구 내에서 선정된 4만 가구이고, 총무청 통계청에서 매일 말일을 포함한 1주에 조사한 후 매일 공표하고 있다.

## 6. 독일

### 1) 개요

독일의 중앙통계기관은 독일통계청(Federal Statistical Office, FSO)으로 독일통계법에 따라 연방정부로부터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다. 독일통계청은 통계조사 실시에 대해 모든 권한을 가지며 각 부처가 통계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독일통계청에 요청하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독일은 연방공화국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통계작성업무가 매우 뚜렷하게 구분되어 있다. 이는 독일헌법에 명시된 것으로 중앙통계청은 항상 지방정부와 협의하고, 실제 통계는 모두 지방정부가 통계조사를 실시, 집계하고 있다.

따라서 독일은 실제 기획 및 조정업무에서는 전형적인 집중형통계제도를 채택하고 있지만 실제 자료수집 과정에서는 지방정부에 의존하는 독특한 형태를 구성하고 있다.

### 2) 독일의 주요 경제통계시스템

#### (1) 국민계정

독일은 국민계정은 1930년대 당시 많은 경제학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1929년 자료를 기초로 작성되어 1932년에 공표를 시작하였다. 1932년을 시작으로 작성된 국민계정은 1949년까지 계속되었지만 세계 2차 대전 이후 많은 경제학자들의 논의에 따라 1932년부터 1949년까지의 국민계정을 무시하고 다시 새로운 국민계정을 추계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동독과 서독으로 분단된 독일은 1990년 3분기 이전까지 동독과 서독으로 분리된 상태로 국민계정을 추계하다가 통일된 이후 서독과 동독의 데이터를 함께 포함한 국민계정 추계를 시작하였다. 이후 독일은 영국과 마찬가지로 1995 ESA에서 제공하고 있는 국민계정분류체계 및 작성방법에 따라 국민계정을 작성하고 있다.

독일의 분기별 국민계정은 생산측면에 부분에서는 5개의 산업의 데이터를 기초로 추계되었고, 지출측면에서는 6가지 총지출에 관련된 데이터를 기초로 추계되었다. 또한 이때 개인소비, 정부지출, 수출, 고용 등 다른 지표들도 포함되었다.

독일에서는 분기와 연간 GDP와 GNP를 추계하였는데, 추계하는 과정에서 X-12 ARIMA방법을 사용하여 계절조정을 실시하였다.

국민계정을 추계하는 과정에서 생산측면에서는 기업, 정부, 가계, 비공공기관 등 모든 부분을 포함하여 추계하였고, 지출 측면에서는 소비지출, 고정자본형성, 무역수지 등 크게 3가지의 지출 측면을 고려하여 작성되었다.

이후 보다 발전된 국민계정 추계를 위해서 통계청 내에 1) 국내생산, 생산 및 소비, 2) 국민소득, 정부지출, 대외거래, 3) 투입-산출계정, 4) 노동시장, 국부계정, 5) 환경-경제 계정 등 5가지 부분을 담당하는 부서를 만들어 QNA(Quarterly National Account)를 발간하는 등 국민계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추계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독일에서는 분기별로 추계되는 QNA를 연간보고서로 통합되어 QNA의 특정적인 정보들을 다른 연구들에 포괄적으로 이용하였고 각 부분의 결과들과의 상호관계를 분석하는데 지속적으로 노력하였다.

독일의 QNA는 국민계정에 대한 분기보고서가 모두 완료된 후 약 45일 전후로 공표된다. 이때 공표되지 않은 제조업을 포함한 7가지 산업 등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 산업 및 국민총생산의 생산측면에 대한 더욱 구체적인 내용 그리고 노동시장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 등은 국민계정에 대한 분기보고서가 완료된 후 약 55일 전후로 GENESIS Database를 통해 인터넷으로 공표되고 있다.

<표 6.10> 독일의 국민계정통계 및 작성기관

통계명	독일
국민소득통계	연방통계청
산업연관표	연방통계청
자금순환표	연방은행
국제수지표	연방은행
국민대차대조표	연방은행

자료: FSA 웹사이트, <http://www.destatis.de/jetspeed/portal/cms/>

## (2) 물가

### ① 소비자물가조사

물가통계법과 연방통계법에 의해 조사되고 있는 독일 소비자물가조사의 작성목적은 다음 3가지 항목을 조사하는 것이다. 첫째, 다른 가격지표와 함께 국가경제의 가격의 안정성을 측정하는 인플레이션 지표로 사용될 수 있고, 둘째, 민법에 의거하여

임금조정의 수단으로 사용되며, 셋째, 경제통계의 디플레이션 명목변수로 사용하는 것이다.

소비자물가통계는 190개 지자체에서 상품과 서비스를 합하여 약 700가지의 제품으로 구성되어 있고, 제품의 가격들은 월별로 약 30,000개 보고집단에서 300,000개 대표가격을 추출하여 작성되고 매월 공표되고 있다.

### (3) 산업생산(Manufacturing and mining)

독일의 산업생산통계는 1991년부터 조사가 시작되었고, 분기별 GDP 추계 및 경기변화에 대한 예측 등의 자료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고 있다. 표본규모는 20인 이상 15,000 기업을 대상으로 6,000개 품목을 전수조사한다.

### (4) 노동

독일의 노동통계는 크게 노동력을 나타내는 ILO labour market statistics과 노동비용서베이(Labor cost survey)통계로 구성된다

이때 ILO labour market statistics는 전체인구에 대한 노동력에 대한 기본자료 제공하기 위해 1957년 시작되었고, 2005년 “EU regulation on the labour force survey”에 근거하여 the Micro census Law(Federal Law Gazette I p.1350 “을 개정 후 매월 독일 통계청(Federal Statistical Office)에 의해 조사되고 있다. 표본규모는 연간 380,000가구(월 15,000 ~ 25,000가구)이고 15세~74세 인구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다. 한편 노동비용인덱스통계는 1996년 처음 실시된 것으로 FSO가 분기별 소득서베이를 통하여 산출한 임금과 기타 소득을 활용하여 작성한다. 즉 독일 FSO는 매 분기 약 650개의 노동조합과 기업 간의 계약 등을 평가하여 임금자료를 추출한다.

## 7. 프랑스

### 1) 개요

프랑스는 집중형 성격이 강한 분산형통계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프랑스의 국가통계생산조직은 중앙통계기관인 국립경제통계연구소(Institut National de la Statistique et des Etudes Economiques, INSEE)를 중심으로 중앙은행인 프랑스은행(Banque de France)과 각 행정부처의 통계담당기관 등 수 많은 정부 및 준정부 기관들로 구성

되어 있다.

INSEE는 프랑스 재정경제산업부(MINEFI)의 이사회(General Directorate) 중 하나이기 때문에 정부기관으로 분류되고, 정부 회계 규정에 따라 중앙정부의 일반 예산으로 운영되며, 연구소 자체가 발행한 간행물 판매나 다른 기관들과의 계약 업무를 통해 얻은 수입을 예산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

중앙통계기구는 그 규모, 시설(지방사무소 포함) 및 통계축적의 바탕인 등록자료 관리 등의 역할로 인해 공식통계시스템 내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중앙통계기구의 기능상 중요성은 법률에 근거를 둔 통계의 일반조정 역할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그 외에도 연구 및 분석 분야에서 다른 기관과 협력 하여 국민계정 산출, 경제추세 분석, 특히 정부의 경제계획을 위한 예측수행 등 몇 가지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중앙통계기관 이외에도 특정 민간 및 전문기관들은 통계 조사시 중재역할을 담당하도록 법률상 권한을 부여받고 있다.

INSEE는 프랑스 경제와 사회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산출하는 역할을 한다. 이 정보는 연구 및 전망, 의사 결정의 목적으로 국가 일반 사회(정부, 기업, 연구원, 미디어, 교육자, 개인)에서 이용된다. INSEE의 주요임무는 인구, 사회 및 경제통계의 수집 및 생산, 중요 기본 등록자료 관리(기업체, 시설, 개인), 통계시스템의 조정, 경제 및 사회연구 실시, INSEE 및 기타 기관들에서 생산한 통계정보의 보급, 개발도상국에 대하여 교육, 연구 및 기술적 지원을 통한 통계·경제적 know-how 전수 등이다.

프랑스는 국가통계에 대한 자문기구로서 전국통계정보위원회(CNIS; Conseil National de l'information Atatistique)를 갖고 있다. CNIS는 경제부 장관이 의장이 되며, 사무국은 INSEE에 설치되어 있다. CNIS의 위원은 100명 내외로 정부 주요 부처의 장, 지역 및 전국적으로 선출된 위원, 노동조합 및 사회단체 대표, 상공회의소 및 고용자단체 대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CNIS의 주요 업무는 국가통계자료의 생산자 및 이용자에 대한 자문 제공, 국가통계정책 및 행정에 대한 자문 등이다.<sup>51)</sup>

프랑스 정부는 CNIS 외에 1978년에 「국가정보 및 자유위원회」(La Commission Nationale de L'Informatique des Liberte's-CNIL)를 설립했다. 이것은 정부와는 완전히 별도의 독립기관으로 정보화의 진전에 대해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각 부처의 통계국은 통계조사의 실시, 파일의 작성, 데이터 이

51) 한CNIS에는 통계전문가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하부조직에 (1) 통계조사심사위원회(Comite' du Label des Enquetes Statistique), (2) 통계조사소송위원회, (3) 기업통계비밀보호위원회 등이 있다. 이중 통계조사심사위원회는 현재 실시되고 있는 통계조사 및 지금부터 실시하고자 하는 통계조사의 필요성 또는 질적인 수준이 충분한가를 심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용 등에 대해 CNIL의 허가가 필요하다.

INSEE는 각주에 지방통계국으로 24개 지방통계사무소(2개 해외사무소)를 두어 인구센서스, 가계지출조사, 지역통계 기획, 자료 분석 및 통계생산을 담당한다. 자치단체의 통계활동은 미약하지만 지방사무소별 지역특성을 살린 지역프로젝트를 운영(비용은 자치단체에서 부담)한다. 지방통계국은 나폴레옹시대부터 설치되고 특히 제2차 세계대전시에는 지방통계국에는 전에 군인이었던 사람이 임명되어 있었다. 이 때문에 지방통계국은 인사제도의 독립성이 높고 지방통계국의 인사교류는 최근까지 대부분 행해지지 않았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프랑스의 통계시스템은 분산형이기 때문에 종합조정을 어떻게 하는가가 중요한 과제로 된다. 종합조정을 위해 프랑스에서는 조직으로서 국가통계정보심의회(CNIS), 국가정보 및 자유위원회(CNIL)가 설치되고 그 하부기구로서 통계조사심사위원회 등이 설치되어 있다. 한편, 실제 통계작성업무를 수행하는 INSEE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조정업무를 수행한다. 첫째, INSEE의 내부에 「타부처 통계서비스 관계부」가 설치되어 있고 부처의 통계부에 INSEE의 통계전문직원도 파견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고용·노동·연대부의 통계부를 방문해 보면, 통계부장은 그 부의 출신자이나 통계조사의 기획담당, 실시담당, 분석담당의 간부직원은 INSEE의 파견 직원이었다. 그들은 3~5년 각부에 근무하면서 교체하고 있다.

둘째, 각부의 종합조정이 통계의 연구분석을 통해 행해지고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INSEE에는 연구·종합경제부가 설치되어 있고 여기에는 일본의 전 경제계획청 조사국과 같이 프랑스 경제 전반에 걸쳐서 조사연구가 행해지고 있다. INSEE는 2~3개월에 한번 비율로 「통계정보」(Courrier des Statistique)를 발간하고 있으며 이것을 보면, 매월호가 특집호로 인구, 고용, 교육, 보건, 무역 등 하나의 테마마다에 각부의 통계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통계의 종합적 분석을 통해 각부의 통계의 문제점, 부족한 통계가 무엇인가를 지적하고 있다.

셋째, INSEE가 통계의 분류기준을 설정, 개념정의를 행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INSEE가 행하고 있는 타 부처로의 직원파견은 다른 국가에서는 볼 수 없는 현상으로 영국 등에서는 프랑스의 실례를 배워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는 정도이다. 프랑스에서는 분산형의 단점을 파견 직원과 종합분석에 의해 보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2) 프랑스의 주요 경제통계시스템

### (1) 국민계정



프랑스는 실질적으로 1929년 이전 국민계정 개발에 적극적이지 않았다. 또한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시점에도 국민계정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국민계정의 국제 기준의 합의를 위한 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을 만큼 국민계정에 무관심했다.

1950년 SEEF(the economic and financial studies office)의 설립으로 국민계정 작성의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다음의 변화가 나타났다.

첫째, SEEF는 최초로 예산의 종합을 위한 목적의 도구를 고안하였다. 둘째, SEEF는 최초의 국제적 기준으로 알려져 있는 SNA1952의 국제기준에 대해서 비판을 가했다. SEEF에서는 1950년 출판된 Claude Gruson의 제안에서 국민계정의 기본적인 토대와 개념 및 1942년의 SNA를 자세히 설명했다.

1960년대 프랑스 국민계정에 대한 제안이 있었다. 1955년부터 주요 3년 기준 시스템이 도입되었다. 1960년대 말 프랑스 국민계정은 세계와 불일치하는 구조를 가졌다. 또한 1960년 국민계정의 통계적 기준 또한 활발하게 확장되었으며 이는 특히 국민계정 작성권이 1962년 INSEE로 이전됨에 따라 나타났다.

이후 1960년대는 프랑스의 국민계정은 일부 국제적인 기준에 맞추는 동시에 일부는 자국의 특성을 보존하는 방식으로 전개되었다. 그러나 1970년대 ESA가 등장하면서 프랑스의 시스템은 국제시스템에 적합하도록 조정되었고, 결국 1976년 프랑스 국민계정과 국제기준사이의 차이가 종결되었다.

1993년 SNA는 국부계정과 위성계정과 분석, 경제 계정의 개념이 포함되었다. 국제 기준의 프랑스 계정의 영향력은 보다 강해졌다. 1993년 SNA는 1950년대 이후로 보다 많은 부문에서 프랑스의 시스템에 많이 수용되어졌다.

<표 6.11> 프랑스의 국민계정통계 및 작성기관

통계명	프랑스
국민소득통계	INSEE
산업연관표	INSEE
자금순환표	INSEE, BDF
국제수지표	INSEE
국민대차대조표	INSEE

자료: INSEE website

## (2) 물가

### ① 소비자물가지조사

프랑스의 소비자물가지수는 거시경제 평가, 연금 등의 실질가치산정, 국제비교, 통화정책의 기초자료(HCPI), 등의 목적으로 1914년부터 작성되기 시작하였다. 이후 소비자물가지수의 적용범위는 지리적, 인구적 측면으로 보다 다양하게 확장되었다. 1998년 기준 소비자물가지수는 7번째 개정 지수로 159개 그룹, 86개 그룹핑, 그리고 12개 소비부문으로 구성되었고, 2001년 1월에는 161개 그룹으로 확대되었다.

현재 매월 100여개 도시 지역에서 면접 조사를 통해 대부분의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조사 기준을 지리적 기준, 생산유형, 소비유형으로 구분하고 각각 다음과 같이 조사되고 있다. 지리적 기준은 10개 대도시 지역뿐만 아니라 약 2,000명이 넘는 주민들이 분산된 96개의 도시에서 실시된다. 생산유형에 따라서는 1,000개 제품군의 샘플 종류라는 게시물 내에서 제품의 지표계산과 검토를 위한 기준인 다양성을 반영하도록 정의된다. 소비유형에 따라서는 판매 유형별로 27,000 점포, 샘플 제품의 분류 및 소비자의 구매 방식의 다양성을 대표하고 계정의 가격 변동에 걸릴 차별화된 판매양식이 형성되고 있다.

### ② 생산자물가지조사

프랑스의 생산자물가지수는 크게 국내 시장에서의 산업 생산자 물가지수와 국외 시장에서의 산업 생산자 물가지수로 구성된다. 국내 시장에서의 산업 생산자 물가지수는 프랑스 내 시장에서 판매되는 상품과 산업 활동에 의한 상품의 부가 가치세를 제외한 가격이 측정되는 반면 국외시장에서의 산업 생산자 물가지수는 프랑스에서 생산된 상품이 국외시장에서 판매되는 거래가격에 대한 추세를 보여준다. 이때, 국외시장에서의 산업 생산자 물가지수의 경우 유로로 변화되어 계산되기 때문에 환율효과가 포함된다. 이 지수들은 Industrial Prices and Corporate Service Observation Survey에서 채택된 4,200개 기업의 샘플로부터 보고된 24,000개 상품에 대한 월별가격으로 측정된다.

### ③ 수출입물가지조사

프랑스의 수출물가지수는 생산자물가지수의 일부로 구성된다. 프랑스 생산자물가

지수는 국내시장에 대한 지수와 해외시장에 대한 지수로 구분될 수 있는데 여기서 해외시장에 대한 산업생산자물가지수(The French industrial producer price indices for foreign markets)가 수출물가지수를 나타낸다. 이 지수는 프랑스 산업활동에 의해 생산된 상품과 서비스의 거래비용 변화를 측정한다. 이 거래비용은 유로로 환산되기 때문에 환율의 영향을 받는다. 측정은 European Regulation n° 1165/98에 따라 FOB(본선인도: 무역거래조건의 하나로 계약상품의 인도(引渡)가 수출항의 본선 선상에서 이루어지는 계약)가격에 의해 수행된다. 모든 수출은 역내수출(그룹내 수출)이건 아니건 간에 측정시 포함된다.

프랑스의 수입물가지수 (Importation Price Index) 다른 국가에서 생산된 상품과 서비스의 거래비용 변화를 측정하는 것이다. 이 거래비용 또한 유로로 환산되기 때문에 환율의 영향을 받는다. 측정은 European Regulation n° 1165/98에 따라 CIF(운임 및 보험료포함인도: 수출업자가 화물을 선적하고 운임료와 보험료도 부담하는 무역거래조건)가격에 의해 수행된다. 모든 수입은 역내수입(그룹 내 수입)이건 아니건 간에 측정시 포함된다.

### (3) 산업생산

프랑스 산업생산지수는 1913년 기준지수로 1924년에 시작하여 1939년까지 업데이트 되었다. 이 시기에 산업통계가 매우 취약하여 지수는 단지 27개 생산계열만 포함하고 있었다. 즉 이 당시 자료 부족으로 산업적용범위는 30~40%에 불과했다. 이 중에서도 제철산업은 강철소비로 대체되었으며, 피혁제품은 20개 도시에서 도살된 동물의 숫자로 대체 되었다. 또한 구리공업부문은 구리의 수입, 제지산업은 셀룰로우스 펄프의 수입, 고무산업은 고무의 수입으로 대체 되었다. 마지막으로 건설업은 프랑스 7개 도시의 월별 건설 허가수로 결정되었다. 27계열에 대한 가중치는 1906년 각 산업에 종사자수에 비례하여 결정되었다.

프랑스에서는 라스페이레스 산식을 이용하여 전체 산업생산에 대한 변화를 측정하고자 하였으나 이를 위해서는 필요한 자료에 대한 조사시스템이 먼저 갖춰져야만 했다. 따라서 프랑스 산업생산지수의 역사는 이론적 수단을 생산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는데 적용하기 위해 통계학자들이 만든 절충, 조정안이다.

1995년 기준 지수 이전에 11개의 지수가 생성되었으며, 예전의 지수와 구성 등을 비교하였을 때 적용 범위의 확대, 대표 바구니(basket)의 강화, 생산지표의 개선, 월별 지수의 생산 등 통계의 발전과 더불어 구체화되었다.

#### (4) 노동

프랑스의 노동력조사(Enquête Emploi en continu depuis)는 1950년에 시작되었고 매년 정기적으로 추계되어 일반적으로 매년 3월에 발표되고 있다. 본 조사는 노동력에 대한 기본 자료를 제공하고 노동시장의 구조와 순환을 관측한다. 또한 International Labor Office (ILO)에 정의된 활동, 비고용, 고용, 비활동에 관한 자료를 제공한다. 조사는 면접조사(CAPI)와 전화조사를 통해 가구, 표본 가구 내 15세 이상 인구를 조사한다. 이때, 프랑스 전역에서 7만 2천명, 38,000가구를 대상으로 조사가 실시된다.

조사가 시작된 1950년 이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표본구성과 정보수집, 자료의 계산방법에 대한 기술적인 개혁이 적용되었다. 생산된 통계의 품질 향상과 공표지연의 감소는 영원한 목표가 되었다. 고용조사의 역사는 ILO의 권고에 맞추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추계되고 있다. 1975년부터 ILO기준 실업률 작성하였고, 2001년 7월 지속적인 고용에 관한 조사를 최초로 실시하였다. 유럽적인 차원의 규제에서는 유럽 연합 내 국가들에게 분기별 조사를 하도록 하고 있고 비고용개인의 구분을 위한 세부적인 원칙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2003년 1월 이후 고용조사는 분기단위로 작성되고 있다.

〈표 6.12〉 프랑스 산업생산지수 연혁

산출 순서	기준 연도	유효기간	Series available	주기	계열 수 (Number of Series)	적용 범위(%)	가중치 계산 (Calculating of Weighting)	관측 (Observation)
1	1913	1924-1935	1898-1939	월별	27	30-40	1906년 고용인 수준	광업, 철강업 외에는 가공되지 않은 생산지수
2	1928	1936-1939	1928-1939	월/연	110 (43M+67A)	월(M):약40 연(A):약60	1928년 고용인 수준	처음으로 노동시간과 계절변화 조정
3	1938	1941-1946	1936-1946	월/연	98 (81M+17A)	A:50	주부문: 1938년 총생산 가치 계열: 고용인 수준	부문조사 시작
4	1938	1947-1956	1936-1946	월별	170	약 70	주부문: 총생산가치 계열:고용인 수준	
5	1952	1957-1961	1939-1956	월별	186	약 80	주부문: 총생산가치 계열:고용인 수준	
6	1959	1962-1968	1949-1961	월별	230	약 80	30개 주부문: 요소비용으로부터 총부가가치 계열: 지불된 임금	3개의 기간별 지수로 분리
7	1962	1969-1973	1955-1968	월/분기/ 연	354 (241M+90+23A)	M: 64 T: 84 A:87	80개 부문의 요소비용으로부터 총부가가치	
8	1970	1976-1986	1963-1986	월/분	387 (270M+100T+17A)	M: 63 T: 83 A:86	연간 국민계정에 의해 평가된 요소비용으로부터의 총부가가치	
9	1980	1987-1990	1980-1990	월/분	648 (447M+201T)	M:70 T:86	연간 국민계정에 의해 평가된 요소비용으로부터의 총부가가치	연간주기 없앰 전체 적용범위 확장 계열수 2배
10	1985	1991-1995	1980-1995	월/분	652 (446M+206T)	M:68 T:85	연간 국민계정에 의해 평가된 요소비용으로부터의 총부가가치	
11	1990	1996-00 'Jan	1985-2000 Jan	월/3개월	642 (463M+179T)	M:71 3M:86	연간 국민계정에 의해 평가된 요소비용으로부터의 총부가가치	3개월별 지수 시작 노동시간의 효과에 대한 조정 없앰 NAF 분류에 따라 보급

## 제 7 장 우리나라 주요 경제통계의 효율성 분석

### 1. 개별 통계

#### 1) 국민소득계정

##### (1) 통계품질

###### ① 통계청 정기품질진단 결과

우리나라의 국민소득계정은 제5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많은 원자료를 사용하는 한국은행이 작성하는 가공통계로 가장 대표적인 경제통계라 할 수 있다. 기획에 많은 비용이 수반되고, 전문인력이 필요하다. 또한 많은 자료를 수집하여 작성하기 때문에 자료수집에 많은 비용이 수반되고 이러한 자료를 정리분석에 많은 비용이 수반된다. 또한 국민계정 추정 결과가 국민생활에 미치는 중요성을 고려할 때, 체계적인 홍보시스템이 요구된다.

국민소득계정 통계의 효율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먼저 국민계정 통계의 품질진단 결과를 살펴보고, 이후 작성에 대한 효율성을 분석한다.

즉 경제현상에 대한 판단이나 정책이 모두 국민소득 통계에 기초하기 때문에 통계품질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국민계정 통계에 대한 품질의 중요성은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국민소득 통계의 품질은 크게 국내에서의 품질진단과 국제기구의 품질진단 결과를 통하여 살펴볼 수 있다.

국민소득 통계는 2007년 통계청의 정기 품질진단을 받았다. 이때 품질진단은 OECD 통계품질 진단 방법에 기초하여 통계청이 자체 제작한 통계품질진단 매뉴얼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작성환경, 이용자만족도 및 작성절차별 진단결과, 품질차원별 진단 결과를 통하여 살펴볼 수 있다.

먼저 <표 7.1>과 같이 이용자 만족도 결과를 살펴보면 종합만족도가 3.8이고, 100점 환산으로 76점이 도출되어, 주요 가공통계 6종의 평균인 3.6을 크게 초과하여 상당 수준에 이른 것으로 분석되었다.<sup>52)</sup> 한편 전문가 분석을 포함한 작성절차별 진단결과나 품질차원별 분석결과에서도 종합진단 결과 5점 만점에 4.8로 추정되었다. 주요 가공통계평균이 4.75인 점을 고려할 때 평균이상으로 나타났다. 또한 품질진단 결과 판정에서 많은 경우 가장 높은 등급인 ‘매우 우수’로 나타났다.

52) 주요 가공통계는 경기종합지수, 국민계정, 국제수지, 산업연관표, 자금순환표, 지역소득통계 등이다.

이러한 결과를 살펴볼 때 한국은행의 국민소득 통계는 통계청이 사용하는 통계품질 기준에 비추어볼 때, 매우 우수한 것으로 할 수 있다.

<표 7.1> 국민소득계정 품질진단 결과

(a) 국민소득계정 종합만족도

	종합만족도		중요도 (%)
	5점척도	100점 환산	
통계생산과정부문	3.91	78.16	40.28
활용 편리성 부문	3.70	74.10	31.55
내용충실성부문	3.73	74.70	28.17
종합만족도	3.80	76.00	100.0

(b) 국민소득계정 작성절차별 및 품질차원별 진단결과

자체 진단	외부진단			종합 진단	품질평가 수준
	진단1	진단2	평균		
5.0	4.6	5.0	4.8	4.8	매우우수

자료: 통계청, 『국민계정 품질진단 보고서』, 2007

② IMF 품질진단 결과

IMF는 2001년 11월과 2009년 12월 한국의 주요 거시경제 통계품질에 대한 진단을 각각 실시하였다. 이때 IMF는 제3장에서 제시한 통계품질진단 기준에 기초하여 한국의 국민소득계정을 비롯한 평가하였고 이에 기초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였다.<sup>53)</sup>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표 7.2>와 같이 IMF는 2009년 품질진단에서 전반적으로 국민소득계정의 통계는 문제점이 없고 상당히 높은 수준의 통계를 작성하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특히 전체 22개 항목중 통계기법, 개정을 위한 연구 및 자료 접근성 등 3항목이 ‘대체로 준수’ 항목이었고, 18개 항목이 ‘실제 준수’로 표시되었다. 이중 자료접근성은 사용자의 컴퓨터소프트웨어의 설치에 관한 것으로 국내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는 항목이기 때문에 실제로 2항목에서 대체로 준수 판정을

53) IMF, Republic of Korea: Report on the Observance of Standards and Codes—Data Module; Response by the Authorities; and Detailed Assessments Using Data Quality Assessment Framework, IMF Country Report No. 03/127 May 2003 및 IMF, Republic of Korea: Report on Observance of Standards and Codes—Data Module, IMF Country Report No. 10/229, July 2010

받을 것이라고 할 수 있다.<sup>54)</sup>

한편 IMF가 2001년에 실시한 국민소득계정의 품질진단과 2009년의 품질진단 결과를 비교할 때 이 기간 중 국내 국민소득계정 통계가 상당히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2003년에는 ‘실제 준수’ 항목이 14항목이었고, ‘대체로 준수’ 항목이 5항목이었으며, ‘상당부문 준수되지 않음’ 항목도 2항목에 달하여 2009년 품질진단 결과와 큰 차이를 보였다. 특히 통계기법상에서 분기별자료와 연간자료의 추정시업데이트 문제나 지출자료가 서베이를 사용하지 않고 commodity flow 방법으로 작성되는 등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또한 메타자료의 설명이 불충분한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었으나 이러한 점이 더 이상 문제점으로 지적되지 않았다.

## (2) 통계작성 비용

### ① 기획관련 사항

한국은행이 작성하는 국민소득 계정이 기획 비용면에서 과연 효율적으로 작성되는가를 살펴보기 위하여 현재 작성인력과 구성 시스템을 살펴보았다.

국민소득계정은 한국은행 경제통계국 국민소득 팀이 작성하는 통계이다. 2007년 현재 국민소득팀은 경제통계국 소속으로 국민계정을 총괄하는 국민계정 실장하에 팀장 1인과 팀원 7인의 국민소득 총괄팀, 팀장 1인과 팀원 2인으로 구성된 국민소득팀 국민대차대조표반, 팀장 1인과 팀원 5인으로 구성된 지출국민소득팀 등으로 총 18명에 해당하는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다.<sup>55)</sup> 또한 독자적인 통계개발팀을 두고 개정 SNA 등을 연구하는 점을 고려하면 약 20명의 인원이 국민소득계정에 종사한다고 있다. 그리고 비정규직 임시직 근로자로 몇 명을 활용하고 있으며 이들 모든 팀원들은 각자에 대한 뚜렷한 업무 분담 하에 일을 추진하고 있다.

이들은 대체로 대학졸업자로서 수년 동안 통계를 전문하여 작성한 직원들로 인력의 수준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인력 구성은 현재 국민소득통계를 기획하고, 개선하는 데 충분한 인력이라고 평가된다. 한국은행은 지난 60년간 국민소득 통계를 작성하면서 많은 경험과 지식이 축적하여 이러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 <표 7.3>

54) 한국은행이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여 자료를 다운 받으려면 반드시 웹브라우저로 Internet Explorer를 사용하고, 보안프로그램으로 Active X 프로그램을 사용하여야 한다. 즉 다른 웹브라우저를 사용하는 사람의 경우, Active X 프로그램을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호환성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의 인터넷사용자들이 Internet Explorer를 사용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으나 외국에서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55) 이 인력구조는 2007년 국민소득계정 품질진단보고서의 내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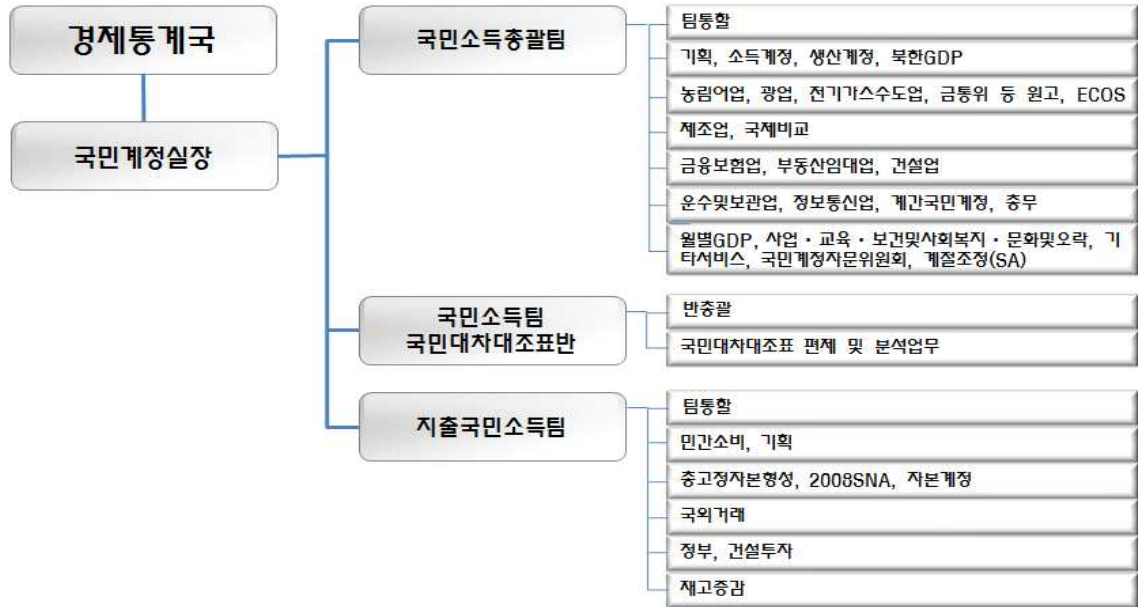
과 같이 한국은행은 1957년부터 국민소득계정을 작성하기 시작하여 기준년 개정 및 새로운 SNA 추정방식 채택, 계절조정, 속보치 제공 등 새로운 개선작업을 성공리에 추진하였기 때문이다.

<표 7.2> IMF의 국민계정 품질진단 결과

요소		평가							
		2001				2009			
		O	LO	LNO	NO	O	LO	LNO	NO
0. 품질제고의 전제조건	0.1 법률 및 제도적 환경	X				X			
	0.2 원자료(Resources)	X				X			
	0.3 관련성	X				X			
	0.4 기타품질관리	-	-	-	-	X			
1. 성실성확보	1.1 전문성	X				X			
	1.2 투명성		X			X			
	1.3 윤리적 기준	X				X			
2. 방법론적 건전성	2.1 개념과 정의		X			X			
	2.2 범위		X			X			
	2.3 분류 및 구분	X				X			
	2.4 기록의 근거		X			X			
3. 정확성과 신뢰성	3.1 원자료	X				X			
	3.2 원자료의 접근성					X			
	3.3 통계기법						X		
	3.4 중간단계 생산물의 타당성과 평가	X			X	X			
	3.5 개정을 위한 연구	X					X		
4. 서비스제공	4.1 관련성	X				-	-	-	-
	4.2 적시성 및 정시성	X				X			
	4.3 일치성		X			X			
	4.4 개정을 위한 연구와 시행	X				X			
5. 접근성	5.1 자료 접근성	X					X		
	5.2 메타자료 접근성				X	X			
	5.3 사용자에게 대한 도움	X				X			

주: O는 실제로 준수, LO는 대체로 준수, LNO 상당부분 준수되지 않음; NO 전혀 준수되지 않음을 의미. SDDS = Complies with SDDS Criteria

<그림 7.1> 한국은행 국민소득팀 조직도



<표 7.3> 한국은행의 국민계정 편제 연혁

년 도	연 혁
1937-1945년	조선총독부 재무국에서 매년 상품별 총생산량을 개략적으로 추계
1957년	한국은행이 공식 편제기관으로 지정되면서 국민소득추계를 전담
1958년	1953-1957년까지 각 년의 「산업별 국내총생산」과 「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을 1953 SNA에 따라 추계
1968년	분기국민소득통계 작성
1986년	UN이 권고한 1968 SNA에 의거 국민소득통계, 자금순환표 및 국제수지표를 통합한 국민계정을 발표
1988년	산업연관표와 국민소득통계를 연결하여 생산계정을 작성함으로써 4개의 국민경제통계를 통합한 국민계정체계를 갖추게 됨
1995년	경제성장률의 중심지표를 국민총생산(GNP)에서 국내총생산(GDP)으로 변경
1999년	국민총소득(GNI) 도입 등 1993 SNA를 일부 반영하였고, 분기 명목 국내총생산 및 계절변동조정 통계를 새로이 공표
2004년	1993 SNA 체제로 이행 완료
2005년	국내총생산 분기 속보치 발표
2006년	분기 국내총생산의 주지표를 원계열 전년동기비에서 계절조정계열 전기비로 변경
2009년	실질 국내총생산(GDP) 추계방법을 1993 SNA에 맞춰 고정가중법에서 연쇄가중법으로 변경. 지출국민소득(GDE) 추계방법을 생산국민소득을 기반으로 하는 상품흐름법 대신 민간소비, 재고증감 등 지출 항목을 직접 추계하는 지출접근법으로 변경

자료: 한국은행, 『국민계정』

## ② 자료수집비용

국민소득계정은 가공통계로 수많은 자료를 수집하여 작성하는 통계이다. 따라서 국민소득계정 작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려면 업무수행자가 다양한 자료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갖고 많은 자료 제공기관들로부터 효율적으로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자료수집비용 면에서 이 두 가지 점에 착안하여 다음과 같이 현 국민소득계정의 효율성을 판단하는 것이 가능하다.

첫째, 국민소득계정 작성자들이 국민소득통계에 사용되는 각종 자료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습득하고 있는 가이고, 둘째, 작성자들이 이들 자료에 대한 각종 정보를 쉽게 획득할 수 있는 가이다,

먼저 통계작성에 참여하는 개개인의 능력 및 지식수준 및 정보수집 정도를 측정하여 비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뚜렷한 답변을 할 수 없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관련 정보를 쉽게 획득할 수 있다는 가능성 면에서 효율성을 보기 위하여 통계청과 비교한 결과 현 작성인원들이 이러한 정보를 접할 가능성은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통계청은 국민계정 통계에서 사용하는 가장 중요한 원자료중 하나인 산업생산, 각종 소비 및 투자지표 등 매우 다양한 지표를 작성하여 제공하는 기관이다. 때문에 관련 부서 직원들과 손쉽게 접할 수 있고 관련내용들의 보도 자료나 각종 세미나 등에 참여하여 각종 자료를 획득하고 논의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실제로 이들 부서의 직원들이 국민소득계정 부서에 와서 근무할 가능성도 발생한다. 따라서 통계청에 비하여 관련 원자료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수월하다. 한국은행이 손쉽게 수집하여 작성하는 통계는 대체로 금융기관에서 제공하는 금융통계에 해당하기 때문에 관련 정보 수집시 효율성이 보다 떨어질 수 있다.<sup>56)</sup>

---

56) 물론 이는 필요조건으로 충분이 아니다.

〈표 7.4〉 국민소득 계정의 원자료 구성

	통계수	비율	작성 통계 자료명
통계청	21	16.5%	광공업통계조사, 도기가계조사, 국부통계조사, 도 소매업 통계조사 보고서,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양곡소비량조사, 농업기본통계조사, 내수출하, 도 소매판매액지수,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 산업활 동동향, 도시가계연보, 어가경제통계, 운수업통계 조사보고서, 서비스업통계조사보고서, 농가경제 통계, 건설업통계조사보고서, 미용, 육당 및 유사 서비스업 종사자수, 서비스업활동지수, 운수업통 계조사보고서, 소비자물가통계
한국은행	8	6.3	외환수급, 정부부문 추계자료 및 금융/보험/부 동산업 추계자료, 국제수지, 산업연관표, 수출입 물가, 자금순환계정, 기업경영분석, 생산자물가
총원자료	128개	100%	-

자료: 한국은행,

둘째, 한국은행이 각종 원자료를 효율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법과 제도적 장치 및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가이다. 이것이 효율적으로 작동하려면 한국은행이 국민소득계정 작성에 필요한 각종 법적인 제도와 권위를 갖추고 있어야 하고, 한국은행과 기타 원자료 수집기관과의 원활한 관계가 유지되어야 하며, 한국은행에 대한 각 기관의 신뢰성이 성립되어 있어야 한다. 즉 원자료 제공기관이 한국은행이라는 기관에 대한 신뢰성을 갖고 있어야 국민소득계정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경우, 부담없이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은행은 큰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다. 일단 한국은행은 통계 작성시 가능한 정보누출 등의 문제를 막기 위하여 법이나 규정 등을 제정하였다. 그리고 한국은행은 지난 1957년 이후 지금까지 국민소득계정을 작성하여왔고, 또한 이 기간중 국민소득 계정에 대한 문제가 부각되어 사회적으로 문제화된 경우가 없기 때문에 상당한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다. 또한 한국은행이 중앙은행으로서 발권력을 갖고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하는 중요기관이라는 것을 거의 모든 원자료 제공기관이 알고 있기 때문에 신뢰성 부족에 따른 비효율은 발생할 가능성이 낮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이러한 점을 국내에서 국가통계를 책임지는 통계청과 비교할 경우에도 큰 차이를 발견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다. 비록 통계청이 현재에 국내통계의 상당부분을 작성하고 국내 통계를 전반적으로 기획하고 있지만 통계청이 청으로 승격하여 오늘날과 같은 권위를 갖게 된 기간은 한국은행이 국민계정이나 기타 통계를 작성한 기간보다 작다. 때문에 그동안 한국은행이 쌓아온 신뢰성에 비교할 때 통계청이 보다 높은 신뢰성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없다. 더욱이 각종 통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신문이나 방송 등 언론에서 모든 책임을 통계청에 떠맡기는 현실을 고려할 때, 한국은행의 신뢰성은 오히려 통계청보다 높을 가능성도 있다.

셋째, 한국은행이 각종 자료를 수집하는 물리적인 비용이 과연 통계청보다 높아서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는 가이다.

<부록 A.1>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은행이 작성하는 국민소득 계정은 128개의 각종 조사통계 및 보고통계를 사용하여 작성된다. 이중 한국은행이 작성하는 통계는 6.3%에 해당하는 9종이고, 통계청은 작성하는 통계는 16.5%로 21종의 통계를 작성하고 있다.<sup>57)</sup>

특히 통계청이 제공하는 통계는 광공업통계조사, 도시가계조사, 서비스업 통계조사 등 각종 산업에 관련된 각종 조사통계가 포함되어 있어 국민소득계정 작성에 매우 중요한 기초자료를 많이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한국은행이 국민계정을 작성할 경우, 통계청이 작성하는 것에 비하여 효율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실제 작성기관에서 제공하는 통계를 받는 것이 다른 기관에서 받는 것보다 비용을 낮추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정기적으로 한국은행이 기초통계 작성기관인 통계청 등과 협의를 통하여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통계청이 직접 작성할 경우 이러한 비용은 줄어들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재 국민소득 계정 작성 과정에서 많은 사항이 매뉴얼화가 되어있고, 데이터베이스의 표준화가 진행되었으며, 엑셀과 SAS와 같은 공통 통계소프트웨어를 사용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비효율성 과거보다 작아졌고 앞으로도 더욱 줄어들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반면, 많은 각종 자료를 다양한 기관으로부터 수집하여야 하는 국민소득계정의 특성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은 통계작성전문기관이 아니고 중앙은행이기 때문에 향후 각 기관의 협조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날로 통계 제공의 응답률이 낮아지는 환경을 고려할 때 이 문제는 더욱 커질 가능성이 있다.

---

57) 물론 국민소득 추정에 필요한 통계중 중요성이 보다 높은 통계와 그렇지 않은 통계가 있다. 본 연구의 계량적인 분석에서는 일단 단순한 통계수에 기초하여 보고, 질적인 분석에서 이를 보다 개선하여 보겠다.

### ③ 자료 정비 및 분석

국민소득 계정과 같이 통계작성에 많은 자료를 수집하여 이를 사용하여 분석한 후 자료를 공포하려면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과 인력이 필요하다.

현재 한국은행은 이에 필요한 각종 시스템과 인력을 보유하고 있다. 2007년의 통계청의 품질진단과 IMF의 품질진단 결과 한국은행은 적절한 인력과 기자재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은행 경제통계국의 국민소득팀의 인원 분포를 보면 담당 과장은 15년이 넘게 통계작성에 참여한 인력으로 충분한 인력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한국은행의 각종 작업환경은 국민소득 계정을 효율적으로 작성할 정도로 잘 구비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한국은행의 국민소득팀은 필요한 예산을 배정받고 독립적으로 수행하며 관련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다.

통계작성에 필요한 장비 및 시스템이 과연 통계청과 유사한가에 혹은 통계청에 비하여 보다 효율적인가를 비교하기 위하여 현 통계청의 시스템이나 기자재를 비교할 수 있다. 현재 통계청은 이러한 국민계정을 담당하지 않고 있어 이를 직접 비교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다만 실제로 통계청의 다른 부서의 인력 구조나 시스템을 비교해보면 한국은행의 시스템이 결코 뒤진다고 할 수 없다. 특히 최근 IT 기술의 발전에 따라 개인용 컴퓨터에서 손쉽게 대용량 자료를 취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전산장비의 중요성은 더욱 줄어들게 되어 설비 구축에 따른 차이점의 의미는 없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보관에 대한 설비의 중요성이 대두되는데 한국은행은 매우 우수한 데이터베이스 환경을 구축하고 이를 사용하고 있다.

### (3) 통계발표 및 홍보

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홍보에 많은 인력을 투입하고, 보도 자료를 제공하며 또한 각종 분석 자료를 제공한다.

한국은행은 국민계정 통계를 발표할 때마다 보도 자료를 만들어서 기자에게 배포하기 때문에 익일날 자세한 설명과 함께 신문 및 잡지를 통하여 그 내용이 알려진다. 또한 신문이나 잡지보다 더욱더 자세하게 알고 싶은 사람들은 홈페이지를 통하여 원자료를 손쉽게 찾아 볼 수 있다. 특히 한국은행은 [ecos.bok.or.kr](http://ecos.bok.or.kr) 웹사이트를 통하여 매우 편리하게 국민계정 관련 통계를 제공하고 있다. 이 웹사이트는 통계청

을 비롯한 국내 다른 기관의 웹사이트를 선도할 정도로 우수한 시스템이다.

한국은행은 매우 우수한 품질의 각종 통계설명자료를 제공한다. 알기쉬운 경제지표와 같이 전반적으로 경제통계지표를 쉽게 설명하는 자료를 일찍이 작성하여 배포하였고, 『국민계정의 이해』이나 『분기 국민소득 추계 편람』 등의 국민소득 관련 간행물을 발간하여 우리나라의 국민소득계정의 현황과 역사, 추계방법 등을 일반인 등은 물론 전문가에게도 도움을 주고 있다.

한편 한국은행은 영어로 된 국민소득 계정 설명서인 *Quarterly National Income in Korea*을 발간하여 국제적인 홍보에도 힘쓰고 있다.

한국은행이 국민소득계정에 대한 홍보 현황을 볼 때 매우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각종 지표의 설명이나 보도자료 및 문헌 등을 통한 종합적인 홍보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표 7.5> 2007년~2009년 국민계정 관련 한국은행 보도 자료

연도	날짜	제목
2007	2007.06.01	2007년 1/4분기 국민소득(잠정)
	2007.09.03	2007년 2/4분기 국민소득(잠정)
	2007.12.03	2007년 3/4분기 국민소득(잠정)
2008	2008.06.02	2008년 1/4분기 국민소득(잠정)
	2008.09.05	2008년 2/4분기 국민소득(잠정)
	2008.12.02	2008년 3/4분기 국민소득(잠정)
	2008.12.22	실질 GDP 추계방법 변경
2009	2009.06.05	2009년 1/4분기 국민소득(잠정)
	2009.09.03	2009년 2/4분기 국민소득(잠정)
	2009.12.04	2009년 3/4분기 국민소득(잠정)

자료: 한국은행, 보도자료 웹사이트, [www.bok.or.kr](http://www.bok.or.kr)

<표 7.6> 국민계정관련 조사통계월보 논고와 계간 국민계정 관련 설명자료

구분	연도	권호	제목
조사통계월보	2007	7월호	2006년중국민계정(잠정)의주요내용
	2008	4월호	2007년국민계정(잠정)의주요내용
	2009	4월호	2008년중국민계정(잠정)의주요내용
계간국민계정	2007	1호	국민계정으로 본 2006년 경제동향
	2007	2호	국민계정으로 본 2007년 1/4분기 경제동향
	2007	3호	국민계정으로 본 2007년 2/4분기 경제동향
	2007	4호	국민계정으로 본 2007년 3/4분기 경제동향
	2007	2호	2006년 잠정 GDP 통계 계절조정계열 수정 결과
	2007	2호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2007」로 본 세계속의 한국경제(2005)
	2007	3호	국민소득과 기업회계의 재고자산 기록방법 비교
	2008	1호	국민계정으로 본 2007년 경제동향
	2008	2호	국민계정으로 본 2008년 1/4분기 경제동향
	2008	3호	국민계정으로 본 2008년 2/4분기 경제동향
	2008	4호	국민계정으로 본 2008년 3/4분기 경제동향
	2008	2호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2008」로 본 세계속의 한국경제(2006)
	2008	2호	2007년 잠정 GDP 통계 계절조정계열 수정 결과
	2009	1호	국민계정으로 본 2008년 경제동향
	2009	2호	국민계정으로 본 2009년 1/4분기 경제동향
	2009	3호	국민계정으로 본 2009년 2/4분기 경제동향
	2009	4호	국민계정으로 본 2009년 3/4분기 경제동향
	2009	1호	실질 국내총생산(GDP) 추계방법 변경
	2009	2호	국민계정 2005년 기준년개편 결과
	2009	2호	기준년개편에 따른 GDP통계 계절조정계열 작성결과
2009	3호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2009」로 본 세계속의 한국경제(2007)	

자료: 한국은행, 『조사통계월보』, 각호  
 한국은행, 『계간국민계정』, 각호



<표 7.7> 2007년~2009년 최근 한국은행의 주요 경제교육

연도	날짜	제 목	교육자
2007	04/13	2006년 GDP 추계결과	안길효
2008	04/11	2007년 GDP로 본 우리나라의 경제현황	박진욱
2009	01/02	실질GDP 추계방법이 이렇게 변경됩니다	신승철

#### (4) 장기적인 효율성 유지 및 개선

##### ① 변화에 대한 대응 능력 및 현황

현재 통계작성기관인 한국은행은 통계공급부문에서 발생하는 변화에 대하여 대응력이 다소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많은 원자료를 사용하여 가공하는 국민계정은 여러 가지 관련 자료를 수집하지만 실제로 이들 자료의 많은 변화를 충분히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다. 즉 국민소득 계정 작성에 사용되는 수많은 통계가 경제 환경의 변화에 따라 작성기준이나 방법이 바뀌게 되는데, 현재와 같은 한국은행의 구조상 손쉽게 이를 따라가기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이점을 통계청과 비교할 경우, 그 차이점은 뚜렷하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통계청은 다양한 많은 통계를 작성하기 때문에 관련 통계의 작성기법이나 방법에서 변화가 발생할 때, 이에 대한 정보를 즉각적으로 통보하고 서로 공유할 가능성이 높지만 한국은행은 많은 통계작성과 독립적이기 때문에 그렇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통계수요부문의 변화에 대하여 한국은행은 매우 뛰어난 적응능력을 보유하고 실제로 빠르게 대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을 담당하고 금융경제원이나 통화신용정책 담당 부서 등 매우 뛰어난 거시경제 분석 부서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소득계정 통계에 대한 새로운 수요나 시장의 요구에 매우 빠르게 적응하고, 시장수요를 예측하여 대응하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실제로 통계청은 통계작성에 보다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통계수요 분석 및 작성통계 활용에서는 다른 기관에 뒤지는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통계청은 각종 미시통계를 작성하고 있기 때문에 통계수요 변화나 분석시 이들 미시통계를 활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국민계정에서 산업별 구분이 대분류이지만 통계청은 각종 서베이를 직접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한 추가분석이 매우 용이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최근과 같이 산업

구조의 변화가 매우 빠르게 발생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러한 분석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특정 산업의 부가가치가 크게 증가할 경우, 통계청은 해당 산업에 대한 서베이 자료를 활용하여 이들 산업에 대한 추가분석이 가능하지만 한국은행은 이러한 접근이 어려운 실정이다.

## ② 최근 연구 결과

한편 한국은행의 실제 분석능력의 개선 노력 및 실적을 보기 위하여 최근 수년 동안 국민소득계정 관련 연구 결과를 <표 7.8>에서 살펴보았다. 한국은행은 『계간 국민계정』 등 연구 잡지를 발간하여 국민계정관련 여러 가지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국민소득계정 통계의 발전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한국은행은 2004년 기존의 국민소득계정 추정방식을 1968 SNA방식에서 1993년 SNA 방식으로 전환하였고, 2005년 계절조정지수를 도입하였고, 분기속보치를 제공하기 시작하는 등 국민소득 추정의 새로운 방법을 도입하여 개선하였다.

또한 2014년에는 2008년 UN이 제정한 2008 SNA기준 방식으로 새롭게 국민계정 자료를 발표할 예정으로 준비하고 있다.

<표 7.8> 2007년~2010년 동안 한국은행의 국민소득계정 관련 연구 결과

연도	권호	제 목
2007년	1호	GDP통계의 추세순환계열 작성 방안, 국민소득팀
2007년	2호	인자모형을 이용한 월별 GDP 추정, 국민소득팀
2007년	2호	2006년 잠정 GDP 통계 계절조정계열 수정 결과, 국민소득팀
2007년	3호	국민소득과 기업회계의 재고자산 기록방법 비교, 국민소득팀
2008년	1호	결합추정기법을 이용한 분기 GDP 추정, 국민소득팀
2008년	2호	2007년 잠정 GDP 통계 계절조정계열 수정 결과, 국민소득팀
2009년	1호	실질 국내총생산(GDP) 추계방법 변경, 국민소득팀
2009년	2호	기준년개편에 따른 GDP통계 계절조정계열 작성결과, 국민소득팀
2009년	4호	2008 SNA의 주요 개정내용과 향후 과제, 개정 SNA연구반

자료: 한국은행, 『계간국민계정』 각호

## ③ 국제협력

한국은행은 국제협력에 유용한 인력을 보유하고 현재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먼저 통계작성에 관련된 각종 국제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 결과로 한국은행은 국민소득계정 속보치나 계절조정 등의 새로운 방법론이 2000년 대 들어 새롭게 활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58)

한국은행은 국민소득계정의 보도 자료를 영문으로 작성하여 매 분기 통계발표시 제공한다. 이는 약 3쪽 내용으로 분기 국민소득의 변화를 지출측면과 산업측면을 구분하여 통계표와 약간의 설명을 포함하여 제공한다. 또한 *Quarterly Bulletin* 이나 *Annual Report*, 매년 발간하는 정간물 *Korean Economy* 등을 통하여 국민소득계정의 변화가 추가적으로 설명된다.

한편 한국은행은 우리나라의 국민소득계정 추정방법을 영어로 설명하여 *Quarterly National Account in Korea*를 2007년에 발간하여 대외적으로 우리나라 국민소득계정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있다.

<표 7.9> 주요 국민소득 계정의 영문국제발간물

구분	자료명
보도자료	매 분기 통계작성 시 제공(예, Real Gross Domestic Product: The 2nd Quarter of 2010)
국민소득분석	<i>Quarterly Bulletin, Korean Economy(annual)</i>
국민소득작성법	<i>Quarterly National Account In Korea</i>

#### (5) 국민소득 계정 효율성 분석 종합

한국은행이 작성하는 국민소득 통계는 이미 국내외의 품질진단에서 그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 또한 한국은행이 지난 1950년대 이후 현재까지 작성하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한국은행의 국민소득 계정 작성 능력에 대한 신뢰성은 매우 높다

58) 이러한 사실은 IMF의 품질진단보고서에 다음과 같이 설명되어 국제협력을 위한 준비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The BOK takes every opportunity to send staff on international training courses, seminars, and workshops. A separate budget is available to the ESD for these purposes, The BOK actively participates in statistical meetings and seminars organized by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uch as the UN, the IMF, and the OECD in order to keep up with international issues and other countries' experiences in compiling the national accounts. As a member of the Korea Statistical Society the BOK encourages its staff to present research papers on national accounts at meetings of the Society.

고 할 수 있다. 또한 작성과정이 상당히 체계화된 것을 알 수 있다.

기본적으로 이들 국민소득 관련 통계들의 장단기 효율성은 해당 통계 작성 비용 보다는 그 유용성이나 개선 성과 등으로 판단된다. 이때 이 통계는 국민전체가 활용하는 통계이기 때문에 그 효용에 비하여 비용이 상대적으로 매우 작은 통계이다. 즉 이 통계들은 가공통계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원자료 작성비용 보다는 가공 능력이나 가공 방법에 따라 그 비용이 결정되는 통계이므로 이 통계들의 작성비용은 새롭게 서베이를 실시하는 조사통계에 비하여 현저하게 작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한국은행의 국민소득 계정 작성의 효율성은 매우 뛰어나다고 할 수 있다. 이를 간접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의 국민소득팀과 통계청의 지역소득팀의 성과를 비교할 경우, 한국은행은 매우 뛰어나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국민소득 계정에 대한 각종 연구 실적이나 홍보 실적을 볼 때 한국은행의 수행기록은 지역소득팀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한국은행의 국민소득팀은 관련 분야에 대한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고 이를 논문으로 발표하며, 각종 설명서를 정기적 혹은 부정기적으로 발간하는 반면, 지역소득팀은 이러한 실적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속보치를 도입하고, 계절조정치를 도입하는 등 2000년대 들어 각종 통계개선활동을 추진하고 이를 각종 문헌을 통하여 발표하였다. 또한 다양한 홍보물이나 보도자료를 통하여 통계수요자들에게 접근하고 있다.

이에 비하여 통계청은 지역소득팀은 2009년 새롭게 소득계정을 작성하여 공표하였지만 크게 주목을 받지 못하였다. 특히 통계청은 2009년에야 지역소득추정에서 기존의 생산계정이나 지출계정에 추가하여 소득계정을 공표한 반면, 한국은행은 수십년을 생산, 지출, 소득 계정을 모두 작성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작성능력의 차이나 신뢰성은 서로 차이가 크다고 볼 수 있다. 비록 통계청이 내부자료 등을 통하여 각종 연구자료를 발표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는 학계나 연구자 등 통계사용자들로부터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신뢰성 개선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통계청이 우위를 누릴 수 있는 부문은 국민소득 계정이 수많은 원자료를 사용하는 가공통계이기 때문에 통계청이 이를 작성할 경우, 이 통계에 대한 충분한 이해에 기초하여 작성할 수 있고, 향후 미시적인 자료분석과 거시적인 자료 분석의 일치성이 중요해질 경우, 이러한 성격을 잘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는 현재의 작성 효율성이라기보다는 미래 국민계정의 개선 및 신규 활용 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아직 현실화되지 않은 것이다.

## 2) 산업연관표

### (1) 품질진단 결과

산업연관표 통계는 2008년 통계청의 정기 품질진단을 받았다. 이때 품질진단은 OECD 통계품질 진단 방법에 기초하여 통계청이 자체 제작한 통계품질진단 매뉴얼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작성환경, 이용자만족도 및 작성절차별 진단결과, 품질차원별 진단 결과를 통하여 살펴볼 수 있다.

먼저 <표 7.10>과 같이 이용자 만족도 결과를 살펴보면 종합만족도가 3.8이고, 100점 환산으로 75.9점이 도출되어 산업연관표에 대한 만족도는 상당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주요 6종의 가공통계평균이 3.6에 비추어볼 때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sup>59)</sup> 한편 전문가 분석을 포함한 작성절차별 진단결과나 품질차원별 분석결과에서도 종합진단 결과 5점 만점에 4.9로 추정되었고 품질진단 결과 판정에서 많은 경우 가장 높은 등급인 ‘매우 우수’로 나타나 한국은행의 산업연관표 통계는 통계청이 사용하는 통계품질 기준에 비추어볼 때, 매우 우수한 것으로 할 수 있다.

<표 7.10> 산업연관표 품질진단결과

#### (a) 산업연관표 종합만족도

	종합만족도		중요도 (%)
	5점 척도	100점 환산	
통계생산과정부문	3.3	65.4	11.3
활용 편리성 부문	3.4	68.3	52.0
내용충실성부문	3.7	73.5	36.7
종합만족도	3.5	76.0	100.0

#### (b) 산업연관표 작성절차별 및 품질차원별 진단결과

자체 진단	외부진단			종합 진단	품질평가 수준
	진단1	진단2	평균		
5.0	4.9	4.9	4.9	4.9	매우우수

자료: 통계청, 『산업연관표 품질진단보고서』, 2008

59) 6종의 가공통계는 경기종합지수, 국민계정, 국제수지, 산업연관표, 자금순환표, 지역소득통계 등을 의미함

## (2) 통계작성 비용

### ① 기획관련 사항

한국은행이 작성하는 산업연관표 통계가 기획 비용 면에서 과연 효율적으로 작성되는가를 살펴보기 위하여 현재 작성인력과 구성 시스템을 살펴보았다.

국제수지계정은 한국은행 경제통계국 투입산출팀이 작성하는 통계이다. 현재 투입산출팀은 경제통계국 소속으로 국민계정을 총괄하는 국민계정 실장 하에 투입산출팀장 1인과 팀원 등 총 16인인 함께 작성하고 있다.<sup>60)</sup> 이들 조직은 <그림 7.2>과 같이 (1) 팀총괄, (2) 수출입, 수입거래표, 정부, 최종수요, 생산물세, 국제I/O 부문, (2) “일반기계, 전기전자, 정밀기기, 1차금속, 금속제품, 수송장비, 고정자본형성표” 부문, (3) “농림어업, 광업, 석유화학, 비금속광물, 금통위 및 ECOS자료, 잔폐물 발생수요표” 부문, (4) “섬유가죽, 목재·종이, 기타제조업, 전기가스수도업, 음식료품, 불변I/O” 부문, (5)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통신, 가설부문, 운수, S.U표, 지역I/O, 고용표” 부문, (6) “도소매, 음식숙박, 금융보험, 교육보건, 기타서비스, 건설업, 도소매마진표” 부문, 등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이들 인원들은 모두 통계전담인원으로 상당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sup>61)</sup>

이들은 대부분은 경제학이나 통계학 학사이상의 학력을 갖고, 통계업무를 전담하며, 일부 직원은 10년 이상 통계업무에 전담하여 상당수준의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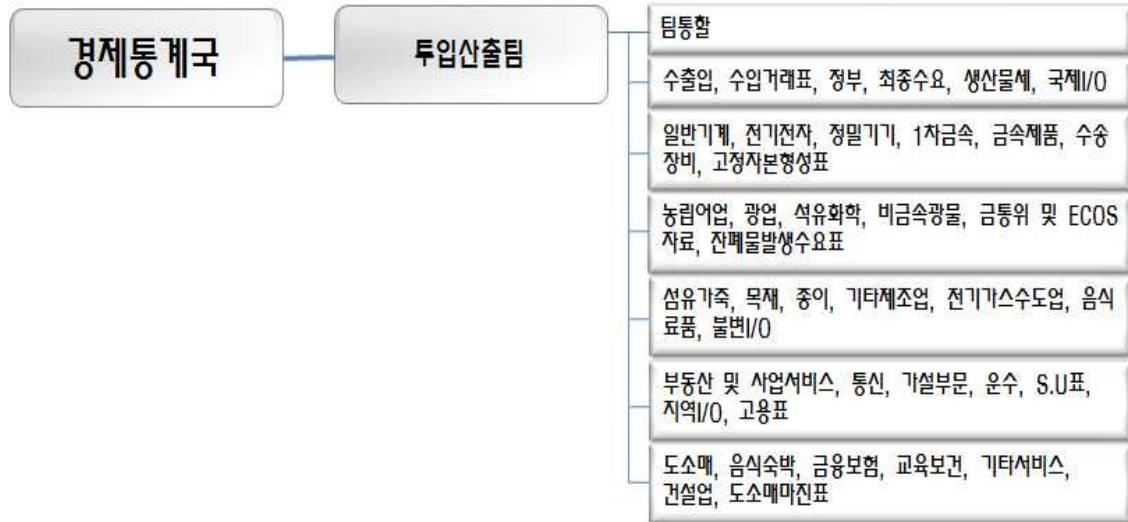
이러한 인력 구성은 현재 산업연관 통계를 기획하고, 개선하는 데 충분한 인력이라고 평가된다.

한국은행은 지난 1960년부터 최근까지 계속 산업연관표를 작성하여 많은 경험과 지식이 축적하였고 또한 상당수준의 효율성을 보유한 것으로 판단된다. 즉 <표 7.11>과 <표 5.4>와 같이 한국은행은 1960년 작성한 이후 부문을 계속 확대하였고, 실측표, 연장표, 접속불변표, 고용표 등을 추가로 작성·공표하였으며, 2003년에는 지역산업연관표를 작성하는 등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였다.

60) 2009년 실시된 IMF의 통계품질진단 보고서이 내용이다. 2007년 통계청 품질진단 결과보고서에서는 팀장 1인하에 8명의 팀원이 이 업무에 종사하고 있었다.

61) 2008년 품질진단 결과에서는 한국은행 투입산출팀 담당부서의 통계업무 경력은 통계업무 경력 및 현 보직근무연수 각각 평균 약 6년, 6.5년으로 파악되었다. 팀장이나 차장은 각각 보직근무연수 9년과 4년, 통계경력 18년 및 11년의 경력을 가지고 있어 상당히 숙련된 인력으로 평가된다. 또한 매년 산업연관표 작성을 위해 한국은행에서는 별도의 I/O 반이 약 9명 규모로 구성되는 것으로 파악되어 순환보직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잘 보완하여 매우 높은 신뢰성과 숙련성을 제시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림 7.2>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작성팀 구성



자료: 한국은행, 웹사이트. www.bok.or.kr

<표 7.11> 한국은행의 산업연관표 편제 연혁

년 도	연 혁
1958년	부흥부 산업개발위원회가 57년과 58년의 산업연관표 작성 - 19개 산업부문으로 분류
1960년	1960년 산업연관표」는 한국은행이 최초 작성한 표로써 체계적인 형식과 내용을 구비
1976년	1976. 7: 통계작성 승인
1996년	1996. 12: 지정통계로 전환
2003년	2003. 9: 지역산업연관표 작성
2007년	이후 한국은행은 「2007년 산업연관표」에 이르기까지 실측표, 연장표, 접속불변표, 고용표 등을 작성·공표

자료: 한국은행, 『산업연관분석 해설』, 2007

② 자료수집비용

산업연관표는 한국은행이 작성하는 가공통계로 전문인력과 각종 통계자료 등 방대한 자원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장기의 작업기간을 소요된다. 실제로 작성작업은

① 준비작업, ② 투입구조조사, ③ 부문별 총산출액 추계, ④ 최종수요 및 부가가치 추계, ⑤ 수출입 추계, ⑥ 도소매마진, 화물운임 및 잔폐물 추계, ⑦ 투입과 산출의 일치(확정작업), ⑧ 투입계수, 생산유발계수 등 각종 분석계수의 도출 등의 단계로 나누어 진행된다.

특히 투입구조조사단계에서는 투입내역에 관한 기존의 통계자료가 있는 부문이나 품목에 대해서는 이를 재분류 집계함으로써 투입구조를 쉽게 파악할 수 있으나 투입내역에 관한 기존 통계자료가 없는 부문에 대해서는 표본조사에 의해서 투입구조를 파악한다. 즉 품목별로 표본업체를 선정하여 주·부원재료, 연료비, 간접비 등 투입내역에 관한 실지조사(survey)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재분류 집계하여 투입구조를 추계한다.<sup>62)</sup>

때문에 산업연관표는 가공통계이면서도 조사통계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복잡함을 모두 갖고 있는 통계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부록 C.2 산업연관표의 기초자료 구성>과 같이 방대한 기초자료를 사용하여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자료수집관련 비용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은 2008년 통계청의 품질진단결과에서 한국은행이 원자료 수집에 일부 어려움이 있고, 또한 보다 정확한 산업연관표를 작성하려고 하여도, 원자료를 제공하는 기관이 이에 필요한 자료를 충분하게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문제점으로 제기되었다. 예를 들어, 통계청이 작성하는 운수업통계조사보고서에서는 철도운송업이 여객과 화물로 구분되어 있지 않아, 이를 구분된 자료가 필요하며, 국세청이 각 기업으로부터 부가가치세액을 신고 받아 이를 업체별로 매입액과 매출액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바, 업체별(국세청 산업코드) 매입액과 매출액 자료를 제공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sup>63)</sup> 특히 2009년 국세청 자료를 통계청이 공식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는 통계비용 절감이나 품질개선에 매우 중요한 사

62) 실지조사의 대상이 되는 표본업체는 투입구조 조사대상품목을 생산하는 업체로서 품목별 생산기술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대표적 업체 가운데서 통계적 절차에 따라 선정한다. 조사내용은 각 조사대상업체의 손익계산서, 제조원가보고서 등에서 얻게 되는 품목별 총산출액과 이의 생산을 위하여 1년 동안 지출한 모든 경상적 비용 즉 품목별 원재료비 및 부재료비, 연료비, 인건비 및 기타 각종 비용을 포함한다. 이와 같이 조사된 내용을 산업연관표의 부분분류에 따라 재분류 집계하여 각 품목 및 부문별 투입구조를 추계한다.

63) 이밖에 2008년 산업연관표 품질진단 보고서는 원자료 확보에서 다음의 사항을 지적하였다. 첫째, 통계청의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에서 물량에 대한 조사를 충분하게 하여 이에 대한 기초통계자료를 확보하고, 둘째, 철강통계연보(한국철강협회), 석유류 수급통계(한국석유공사), 석유화학편람(한국석유화학공업협회) 등 관련 통계와 통계청의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를 모두 활용하기 위하여 협회통계에 자가소비항목의 단가를 포함하도록 요구하며, 셋째, 지방정부 예·결산서(각 지방자치단체)로 중앙정부의 예·결산서와 같이 Excel 형태의 전자파일로 받기를 원하며, 넷째, 운수업통계조사보고서(통계청)에서는 철도운송업이 여객과 화물로 구분되어 있지 않아, 이를 구분된 자료가 필요하고, 화물포장업에 대한 조사, 무형고정자산의 조사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지고, 연료비는 세부품목별(휘발유, 경유 등)로 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일부 품목(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업, 주차장 운영업, 항공 및 기타해상터미널 운영업, 항공운송지원 서비스업 등)의 경우 통계조사가 미흡한 실정인 바 이의 보완조사가 필요한 실정이다. 다섯째, 국세청은 각 기업으로부터 부가가치세액을 신고 받아 이를 업체별로 매입액과 매출액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바, 업체별(국세청 산업코드) 매입액과 매출액 자료를 제공받는 것이 필요하다.



향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한국은행이 현재 우수한 품질의 산업연관표를 작성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에 관련된 효율성 측면에서는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하겠다. 즉 산업연관표가 많은 국가통계를 활용하는 가공통계와 새롭게 많은 통계조사를 하여야 하는 조사통계의 성격을 모두 다 갖고 있는 한 통계청이 작성할 경우 보다 효율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즉 전자의 경우에는 통계작성기관들과 보다 깊은 유대를 형성하고, 보다 우수한 원자료를 확보할 수 있으며, 후자의 경우에는 자료 서베이 과정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 ③ 자료정비 및 분석

산업연관표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많은 기초통계를 활용하고, 동시에 관련 기업 서베이를 수행하여야 하는 통계이다. 따라서 이러한 많은 자료를 수집하여 이를 사용하여 분석한 후 자료를 공포하려면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과 인력이 필요하다.

현재 한국은행은 이에 필요한 각종 시스템과 인력을 보유하고 있다. 2008년의 통계청의 품질진단과 IMF의 품질진단 결과 한국은행은 적절한 인력과 기자재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은행 경제통계국의 투입산출팀 인원 분포를 보면 담당팀장은 10년이 넘게 통계작성에 참여한 인력으로 통계작성에 전문화된 인력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한국은행 경제통계국의 각종 작업환경은 투입산출팀이 산업연관표를 효율적으로 작성할 정도로 잘 구비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한국은행의 투입산출팀은 필요한 예산을 신청받고 독립적으로 수행하며 관련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장비 및 시스템이 과연 통계청과 유사한 가에 혹은 통계청에 비하여 보다 효율적인가를 비교하기 위하여 현 통계청의 시스템이나 기자재를 비교할 수 있다. 현재 통계청은 산업연관표를 담당하지 않고 있어 이를 직접 비교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실제로 통계청의 다른 부서의 인력 구조나 시스템을 비교해보면 한국은행의 시스템이 결코 뒤진다고 할 수 없다. 특히 최근 IT 기술의 발전에 따라 개인용 컴퓨터에서 손쉽게 대용량 자료를 취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전산장비의 중요성은 더욱 줄어들게 되어 설비 구축에 따른 차이점의 의미는 없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보관에 대한 설비의 중요성이 대두되는데 한국은행은 매우 우수한 데이터베이스 환경을 구축하고 이를 사용하고 있다.

### (3) 통계발표 및 홍보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각종 금융시장 관련 분석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홍보에 많은 인력을 투입하고, 다양한 보도 자료와 분석자료 및 간행물을 제공한다.

그러나 산업연관표는 5년 주기로 작성되고 매년주기로 연장표가 작성되고 있기 때문에 보도 자료 역시 이 주기에 맞추어 제공된다. 즉 한국은행은 <표 7.12>과 같이 산업연관표 및 산업연관표 연장표를 작성하여 때마다 보도자료를 만들어서 기자에게 배포하기 때문에 익일날 신문 및 잡지를 통하여 그 내용이 알려진다. 또한 이를 보다 더 자세하게 알고 싶은 사람들은 홈페이지를 통하여 원자료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다. 특히 한국은행은 ecos.bok.or.kr 웹사이트를 통하여 매우 편리하게 산업연관표 관련 통계를 제공하고 있다. 다만 산업연관표가 갖고 있는 본질적인 특성인 자료의 방대함과 전문성 때문에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하여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sup>64)</sup>

한국은행은 산업연관표 관련하여 매우 우수한 품질의 각종 통계설명자료를 제공한다. <표 7.13>과 같이 『알기쉬운 경제지표』와 같은 일반 경제통계지표 해설서에서 산업연관표를 보다 쉽게 설명하고 있으며, 『산업연관분석 해설』이나 『산업연관표 해설 편』 등의 관련 간행물을 발간하여 우리나라의 산업연관표의 현황과 역사, 추계방법 등을 일반인 등은 물론 전문가에게도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조사통계월보에서도 매년 1회 산업연관관련 내용을 제공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정기적으로 은행이 실시하는 금요경제강좌를 일반인 및 전문가를 위한 산업연관분석 결과 해설에 활용하고 있다. <표 7.14>과 같이 매년 1회 산업연관분석 결과를 활용하여 한국경제를 분석한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산업연관표 홍보 현황을 볼 때 매우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각종 지표의 설명이나 보도자료 및 문헌 등을 통한 종합적인 홍보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64) 이 웹사이트는 통계청을 비롯한 국내 다른 기관의 웹사이트를 선도할 정도로 우수한 시스템으로 평가받고 있다.

<표 7.12> 2007년~2009년 산업연관표 관련 한국은행 보도 자료

연도	날짜	제목
2007	04/05	2003년 산업연관표를 이용한 물가과급효과 분석
	03/20	2003년 지역산업연관표로 본 지역별 경제구조 및 지역간 산업연관관계
	03/07	2003년 산업연관표(통계편:고용표)
	03/07	2003년 산업연관표(본문편:고용표)
	03/07	2003년 산업연관표(통계편:산업연관표)
	03/07	2003년 산업연관표로 본 우리나라의 경제구조
2008	12/17	2005년 산업연관표를 이용한 물가과급효과 분석
	10/29	2005년 산업연관표(실측표) 작성결과
2009	08/06	2005년 지역산업연관표 작성결과
	04/22	2007년 산업연관표 작성 결과
	01/29	2006년 매년 산업연관표 작성 결과[보도자료]
	12/17	1995-2000-2005년 접속불변산업연관표 작성결과

자료: 한국은행, 보도자료 웹사이트, www.bok.or.kr

<표 7.13> 산업연관표 관련 조사통계월보 논고와 계간 국민계정 관련 설명자료

구분	연도	권호	제목
조사 통계 월보	2007	4월호	2003년 산업연관표(실측표) 개요
	2007	6월호	2003년 지역산업연관표 작성결과
	2008	11월호	2005년 산업연관표(실측표) 작성 결과
	2006	2월호	2006년 산업연관표(연장표) 작성결과
	2009	6월호	2007년 산업연관표(연장표) 작성결과
산업 연관 표	2009	단행본	2007년 산업연관표
	2009	단행본	2006년 산업연관표
	2009	단행본	2005년 산업연관표
	2010	단행본	2008년 산업연관표

자료: 한국은행, 『조사통계월보』, 각호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각호

<표 7.14> 2007년~2009년 최근 한국은행의 주요 경제교육

연도	날짜	제 목	교육자
2007	05/15	2003년 산업연관표로 본 우리나라의 경제구조	김종귀
2008	11/14	2005년 산업연관표로 본 우리나라의 경제구조	정창덕
2009	02/13	2006년 산업연관표로 본 한국경제 현황과 과제	정창덕

자료: 한국은행 웹사이트

#### (4) 장기적인 효율성 유지 및 개선

##### ① 변화에 대한 대응 능력 및 현황

한국은행이 우수한 품질의 통계를 지속적으로 작성할 수 있는 가는 통계공급부문과 통계 수요부문에서 발생하는 변화나 충격에 대하여 한국은행이 대응할 수 있는 신속성과 능력에 의하여 결정된다.

기본적으로 산업연관표는 5년 주기로 실측표가 작성되고, 매년 연장표가 작성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산업연관표는 주로 장기적인 추세를 반영하고, 단기적인 충격을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항목의 필요성이나 중요성이 다른 분기 및 월간통계에 비하여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먼저 통계공급부문의 변화나 충격에 대하여 한국은행의 대응능력이 다소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산업연관표는 많은 자료를 수집하고 사용하여 작성하는 통계이기 때문에 작성자가 이들 자료를 모두 충분하게 이해하고 작성하기 어려울 수 있다. 또한 산업연관표 계정 작성에 사용되는 수많은 통계가 경제환경의 변화에 따라 작성기준이나 방법이 바뀌게 되는데 이를 모두 추적하고 따라가는 것은 현재의 구조상 쉽지 않은 실정이다.

특히 이점을 통계청과 비교할 경우, 그 차이점은 더욱 커진다고 할 수 있다. 즉 통계청은 다양한 많은 통계를 작성하기 때문에 관련 통계의 작성기법이나 방법 변화시 이에 대한 정보를 즉각적으로 통보하고 공유할 가능성이 높지만 한국은행은 독립적이기 때문에 그렇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산업연관표의 통계수요 부문의 변화에 대하여도 한국은행은 일부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을 담당하고 매우 뛰어난 거시경제 분석 부서를 보유하고

고 있기 때문에 거시경제부문에 수요변화에 매우 빠르게 반응할 수 있다. 그러나 산업연관분석표는 개별 산업 간의 관계에 집중되는 것이다. 때문에 미시적인 분석에 집중한 기관이 수요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산업간 관계 변화나 구조변화에 대하여 한국은행은 그 변화포착이나 대응이 다소 늦어질 수 있게 된다.

## ② 최근 연구 결과

한편 한국은행의 산업연관표 관련 분석능력이 어느 정도 빠르게 개선되는 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최근 수년 동안 산업연관표 관련 연구 결과를 <표 7.15>에서 살펴 보았다. 이는 한국은행이 계간 국민계정에서 산업연관표 관련 발표한 연구논문을 조사한 것이다. 조사 결과 한국은행은 지난 수년간 산업연관표 관련 여러 가지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산업연관표 통계 발전을 위하여 상당 수준 노력하는 것으로 제기되었다.

예를 들어, 한국은행은 2006년 3편, 2007년 4편, 2008년 1편, 2009년 4편의 연구논문과 경제분석 논문을 발표하였으며 또한 환경산업연관표, 국제산업연관표, 지역산업연관표 등 산업연관표의 개선에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표 7.15> 최근 한국은행의 산업연관표 관련 연구 결과

연도	권호	제 목
2006	1호	환경산업연관표 작성 및 분석방법에 관한 연구
2006	2호	환경산업연관표 작성 및 분석방법에 관한 연구(2)
2007	1호	2003년 산업연관표로 본 우리나라의 경제구조
2007	1호	국제산업연관표를 이용한 한국·중국·일본의 상호의존관계 분석
2007	2호	2003년 지역산업연관표로 본 지역별 경제구조 분석
2008	4호	2005년 산업연관표로 본 우리나라의 경제구조 및 시사점
2009	1호	2006년 산업연관표로 본 우리나라의 경제구조 및 시사점
2009	2호	2007년 산업연관표로 본 우리나라의 경제구조 및 시사점
2009	4호	2005년 지역산업연관표로 본 지역별 경제구조 및 지역간 연관관계
2009	1호	접속불변산업연관표를 이용한 한국경제의 성장요인 분석

자료: 한국은행, 『계간 국민계정』, 각호

### (5) 산업연관 분석 효율성 분석 종합

한국은행이 작성하는 산업연관은 품질진단결과 우수한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산업연관은 가공통계로 다양한 기초 통계 자료를 수집하여서 작성하는 통계이기 때문에 조사전문기관이 아니고, 각종 지역 통계청을 구비하고 있는 통계청에 비하여 작성시 효율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통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산업연관 역시 단순한 통계작성보다는 이를 통한 각종 분석이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경제관련 지식이 상대적으로 작은 통계청이 작성할 경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할 것이다. 즉 단순히 정해진 산업연관표를 작성하기에는 통계청이 보다 효율적으로 낮은 비용으로 작성할 수 있지만 이를 개선하려면 산업구조변화나 경제구조변화를 고려하여야 하는데 실제로 통계청에는 이러한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 3) 국제수지

### (1) 통계품질

#### ① 통계청 정기품질진단 결과

우리나라의 국제수지 통계는 제5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은행이 매월 작성하는 가공통계이다.

국제수지 통계의 품질진단 결과를 크게 국내에서의 품질진단과 국제기구의 품질진단 결과를 통하여 살펴볼 수 있다.

국제수지 통계는 2007년 통계청의 정기 품질진단을 받았다. 이때 품질진단은 OECD 통계품질 진단 방법에 기초하여 통계청이 자체 제작한 통계품질진단 매뉴얼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작성환경, 이용자만족도 및 작성절차별 진단결과, 품질차원별 진단 결과를 통하여 살펴볼 수 있다.

먼저 <표 7.16>과 같이 이용자 만족도 결과를 살펴보면 종합만족도가 3.92로 이고, 100점 환산으로 78.4점이 도출되었다. 한편, 거시경제관련 6개 지표(경기종합지수, 국민계정, 국제수지, 산업연관표, 자금순환표, 지역소득통계)의 종합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평균이 3.61로 나타났고, 이들 지표가 모두 국제수지의 만족도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 국제수지 지표의 만족도는 최고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문가 분석을 포함한 작성절차별 진단결과와 품질차원별 분석결과에서도

종합진단 결과 5점 만점에 4.8로 추정되었고 품질진단 결과 관정에서 많은 경우 가장 높은 등급인 ‘매우 우수’로 나타났다. 이를 6개 주요 가공통계지표와 비교한 결과 2위를 기록하여 상당히 품질이 우수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결과를 살펴볼 때 한국은행의 국제수지 통계는 통계청이 사용하는 통계품질 기준에 비추어볼 때, 매우 우수한 것으로 할 수 있다.

<표 7.16> 국제수지 품질진단 결과

(a) 국제수지 종합만족도

	종합만족도		중요도 (%)
	5점척도	100점 환산	
통계생산과정부문	3.96	79.13	45.10
활용 편리성 부문	3.90	78.05	33.00
내용충실성부문	3.85	77.07	21.90
종합만족도	3.92	78.40	100.0

(b) 국제수지 작성절차별 및 품질차원별 진단결과

자체 진단	외부진단			종합 진단	품질평가 수준
	진단1	진단2	평균		
4.9	4.9	4.8	4.8	4.8	매우우수

자료: 통계청, 『국제수지 통계품질진단 보고서』, 2007

② IMF 품질진단 결과

IMF는 2001년 11월과 2009년 12월 한국의 주요 거시경제 통계품질에 대한 진단을 각각 실시하였다. 이때 IMF는 제3장에서 제시한 통계품질진단 기준에 기초하여 한국의 국제수지를 이에 기초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였다.<sup>65)</sup>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표 7.17>와 같이 IMF는 2009년 품질진단에서 전반적으로 국제수지 통계는 문제점이 없고 상당히 높은 수준의 통계를 작성하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특히 범위, 분류 및 구분, 국제기준에 따른 가치 산정 및 자료접

65) IMF, Republic of Korea: Report on the Observance of Standards and Codes—Data Module; Response by the Authorities; and Detailed Assessments Using Data Quality Assessment Framework, IMF Country Report No. 03/127 May 2003 및 IMF, Republic of Korea: Report on Observance of Standards and Codes—Data Module, IMF Country Report No. 10/229, July 2010

근성 등 4항목을 제외한 18개 항목에서 품질기준을 ‘실제 준수’로 평가하고, ‘대체로 준수’ 항목은 3부문에 불과하였다. 이중 자료접근성은 사용자의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설치에 관한 것으로 국내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는 항목이기 때문에 실제로 항목에서 대체로 준수 판정을 받을 것이라고 할 수 있다.<sup>66)</sup>

일부 항목에서 기업의 외환거래 포함 범위 및 무역신용과 단기 신용, 기타 소득 거래에서 발생주의 기준으로 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여 이들 항목에 대체로 준수 판정을 내렸다.

한편 IMF가 2001년에 실시한 국제수지계정의 품질진단과 2009년의 품질진단 결과를 비교할 때 이 기간 중 국내 국제수지계정 통계가 상당히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2001년에는 ‘실제 준수’ 항목이 14 항목이었고, ‘대체로 준수’ 항목이 6 항목이었으며, ‘대체로 준수되지 않음’ 항목도 1 항목에 달하였다. 그러나 2009년의 품질진단 결과는 ‘실제 준수’ 항목이 18항목이고, ‘대체로 준수’가 4개에 그쳐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일치성이나 메타자료 제공 등과 같은 부문에서 문제를 해결하여 적합판정을 받았다.

## (2) 통계작성 비용

### ① 기획관련 사항

한국은행이 작성하는 국제수지 통계가 기획 비용면에서 과연 효율적으로 작성되는가를 살펴보기 위하여 현재 작성인력과 구성 시스템을 살펴보았다.

국제수지계정은 한국은행 경제통계국 국제수지팀이 작성하는 통계이다. 현재 국제수지팀은 경제통계국 소속으로 국민계정을 총괄하는 국민계정 실장 하에 팀장 1인과 팀원 등 총 12인이, 7인의 임시직원들과 함께 작성하고 있다.<sup>67)</sup> 이들 조직은 그림 7.3>과 같이 경상계정총괄, 외채 및 IIP, 자본수지, 수출입 및 무역지수 등의 업무 분담 하에 통계를 작성하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경제학이나 통계학 학사이상의 학력을 갖고, 통계업무를 전담하며, 일부 직원은 10년 이상 통계업무에 전담하여 상당수준의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

66) 한국은행이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여 자료를 다운 받으려면 반드시 웹브라우저로 Internet Explorer를 사용하고, 보안프로그램으로 Active X 프로그램을 사용하여야 한다. 즉 다른 웹브라우저를 사용하는 사람의 경우, Active X 프로그램을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호환성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의 인터넷사용자들이 Internet Explorer를 사용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으나 외국에서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67) 2009년 실시된 IMF의 통계품질진단 보고서의 내용이다. 2007년 통계청 품질진단 결과보고서에서는 팀장 1인하에 8명의 팀원이 이 업무에 종사하고 있었다.



<표 7.17> IMF의 국제수지 품질진단 결과

요소		평가							
		2001				2009			
		O	LO	LNO	NO	O	LO	LNO	NO
0. 품질제고의 전제조건	0.1 법률 및 제도적 환경	X				X			
	0.2 원자료(Resources)	X				X			
	0.3 관련성	X				X			
	0.4 기타품질관리	-	-	-	-	X			
1. 성실성확보	1.1 전문성	X				X			
	1.2 투명성		X			X			
	1.3 윤리적 기준	X				X			
2. 방법론적 건전성	2.1 개념과 정의	X				X			
	2.2 범위		X				X		
	2.3 분류 및 구분		X				X		
	2.4 기록의 근거		X				X		
3. 정확성과 신뢰성	3.1 원자료		X			X			
	3.2 원자료의 접근성	-	-	-	-	X			
	3.3 통계기법	X				X			
	3.4 중간단계 생산물의 타당성과 평가	X				X			
	3.5 개정을 위한 연구	X				X			
4. 서비스제공	4.1 관련성	X				-	-	-	-
	4.2 적시성 및 정시성	X				X			
	4.3 일치성		X			X			
	4.4 개정을 위한 연구와 시행	X				X			
5. 접근성	5.1 자료 접근성	X					X		
	5.2 메타자료 접근성			X		X			
	5.3 사용자에게 대한 도움	X				X			

주: O는 실제로 준수, LO는 대체로 준수, LNO 상당부분 준수되지 않음; NO 전혀 준수되지 않음을 의미 SDDS = Complies with SDDS Criteria

<그림7.3> 국제수지팀 조직



이러한 인력 구성은 현재 국제수지 통계를 기획하고, 개선하는 데 충분한 인력이라고 평가된다.

한국은행은 지난 1957년간 국제수지 통계를 작성하면서 많은 경험과 지식이 축적하여 이러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 <표 7.18>과 같이 한국은행은 1957년부터 연도별 국제수지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하여 반기별, 분기별, 월별 국제수지표 작성에 성공하였고, 계절변동 조정계열 보조지표를 제공하는 등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였다. 특히 1998년부터 국제수지 매뉴얼 제5판(BPM5: Balance of Payment Manual, fifth edition)에 맞추어 새롭게 국제수지를 개편하였으며, 최근 2008년 12월 국제수지 매뉴얼 제6판(BPM6: Balance of Payment Manual, 6th edition)이 국제적으로 승인됨에 따라 이를 준비하고 있다.

<표 7.18> 국제수지 작성 연혁

년 도	연 혁
1957년	1950~56년중 연도별 국제수지표 작성·공표(*1957년 확정통계부터 IMF 국제수지 작성기준에 의해 편제)
1958.7월	반기별로 국제수지표 작성
1965년	분기별로 국제수지표 작성
1978년	월별로 국제수지표 작성
1998년	BPM5로 국제수지표 작성 시작
2006.2월	계절변동조정계열을 보조지표로 공표
2006.8월	UN, IMF 등의 서비스무역통계매뉴얼에 의거 서비스수지를 세분화한 서비스 무역세분류통계(EBOPS) 공표

## ② 자료수집비용

국제수지자료는 전수조사로 기업 및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취합하는 것이다. 즉 한국은행 국제수지팀은 국제수지 통계작성을 위하여 통관수출입통계, 외환수급통계, 금융기관 외환전산망 보고서(거주자의 해외증권투자 현황, 금융기관 외화 B/S 등), 기타 업체대상 조사표(직접 조사)등을 사용하여 경상수지(상품수지, 서비스수지, 소득수지, 경상이전수지), 자본수지(투자수지, 기타 자본수지), 준비자산증감의 주요 지표를 생산한다.

이때 이들 자료들은 대체로 외환거래를 다루는 금융기관이나 통계청, 관세청, 수출입은행 등 국내 주요기관들로부터 받는 자료 등으로 비교적 좋은 품질의 자료이다. 때문에 이들 자료수집에 따른 추가적인 수집비용은 크게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겠다.

한편 이 기관의 효율성을 보기 위하여 통계청이 이 업무를 담당할 경우의 효율성을 비교하였다. 이 통계는 가공통계로 대체로 금융기관의 통계와 수출입관련 관세청의 통계를 많이 활용하는 통계이다. 따라서 금융 및 수출입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다. 또한 국제수지와 함께 국제투자대조표(IIP) 역시 같이 추정이 되는데 이 통계는 더욱더 금융관련 지식이 필요한 통계이다. 이러한 통계를 통계청이 작성하려면 상당수준의 금융 및 무역관련 지식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이러한 이유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에서 국제수지 통계는 중앙은행이나 경제통계전문기관이 작성하고 있는 실정이다.

### ③ 자료 정비 및 분석

국제수지는 가공통계이나 국민소득 계정과 같이 수많은 원시자료 통계를 활용하는 통계가 아니다. 무역이나 자본이동에 관련된 통계를 사용하여 작성하는 통계이다. 물론 경제상황의 변화나 새로운 항목발생 등으로 독자적으로 조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나 이는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이들 자료 조사나 분석을 위한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에 대한 비용은 크지 않다고 볼 수 있다.<sup>68)</sup>

때문에 이 업무를 통계청이나 기타 통계전문기관이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크게 비용이 변화하는 효과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 (3) 통계 발표 및 홍보

국제수지는 매월 발표되는 자료로서 거시경제의 주요 성과지표이자 현황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정부는 물론이고 가계와 기업 모두 매우 관심 깊게 보는 통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신뢰성 확보와 적절한 홍보는 매우 중요한 작업이 된다.

한국은행은 국제수지에 대하여 매우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있다. <표 7.19>와 같이 매월 국제수지 통계가 발표되면 한국은행은 보도자료를 만들어 언론에 배포하고 이를 홈페이지에 올리고 있다.

68) 2007년 통계청 품질진단서 국제수지팀은 자체실시 통계조사비용으로 약 11.584천원을 지출하였다.

또한 <표 7.20>과 같이 조사통계월보나 계간 국민계정 등 한국은행에서 발간하는 월간지에 국제수지의 동향과 변화에 대한 설명 자료를 실고 있다.

또한 한국은행은 <표 7.21>과 같이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금요강좌에 매년 1회씩 국제수지의 이해와 변화에 대하여 설명하여 일반인은 물론 전문가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표 7.19> 국제수지 홍보자료

연도	날짜	제 목
2007	01/31	2006년중국국제수지동향(잠정)
	매월	매월 국제수지 동향(잠정)
2008	01/31	2006년중국국제수지동향(잠정)
	매월	매월 국제수지 동향(잠정)
2009	01/31	2006년중국국제수지동향(잠정)
	매월	매월 국제수지 동향(잠정)

자료: 한국은행, 보도자료 웹사이트, [www.bok.or.kr](http://www.bok.or.kr)

<표 7.20> 조사통계월보와 계간 국민계정의 국제수지 설명자료

구분	연도	권호	제목
조사통계월보	2007	3월호	2006년중 국제수지동향(잠정)
	2007	9월호	2007년 상반기중 국제수지동향(잠정)
	2008	3월호	2007년중 국제수지동향(잠정)
	2008	9월호	2008년 상반기중 국제수지동향(잠정)
	2009	3월호	2008년중 국제수지동향(잠정)
	2009	9월호	2009년 상반기중 국제수지 동향(잠정)
계간 국민계정	2005	1호	국제수지매뉴얼 제5판(BPM5) 개정안의 주요내용
	2005	4호	국제수지통계 계절조정계열 시험편제 결과
	2007	2호	용어해설 : 국제수지표(BOP)와 국민계정

자료: 한국은행, 『조사통계월보』, 각호  
한국은행, 『계간국민계정』, 각호

<표 7.21> 한국은행의 국제수지 관련 강연

연도	날짜	제 목	교육자
2007	03/09	국제수지통계의 이해와 최근 동향	정삼용
2007	05/18	우리나라 국제수지의 발전단계 변화와 향후 과제	장광수
2008	03/14	국제수지통계의 이해와 최근 동향	이상현
2009	08/14	최근 국제수지 동향과 특징	이상현
2010	03/05	국제수지통계의 이해와 최근 동향	김성환

자료: 한국은행 웹사이트

#### (4) 장기적인 효율성 유지 및 개선

장기적으로 한국은행이 국제수지 통계를 효율적으로 작성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은 한국은행의 연구 능력과 실태를 통하여 설명할 수 있다. <표 7.22>과 같이 한국은행은 2007년 우리나라 국제수지의 발전단계 변화와 향후 과제의 연구보고서를 작성하였으며 단행본으로 『국제수지표와 국제투자대조표의 이해』를 발간하였다. 이 책에서 한국은행은 국제수지의 기본개념에서 시작하여 국제수지의 자세한 편제방법까지 소개하고 이 분야의 이슈를 정리하였다.

특히 국제수지와 관련된 개념으로 국제투자대조표와 연결하여 국제간 플로우와 거래의 연결성을 보다 확실하게 보여주었다.

또한 기존의 국제수지 매뉴얼 제5판(BPM5: Balance of Payment Manual, fifth edition)에서 2008년 12월 국제수지 매뉴얼 제6판(BPM6: Balance of Payment Manual, 6th edition)이 국제적으로 승인됨에 따라 이에 대한 연구를 추진하였고, 그 결과를 『국제수지표와 국제투자대조표의 이해』의 부록에 추가하였다. 즉 IMF의 개정배경과 주요 개정 내용 및 이행계획 등을 소개하여 한국은행이 우리나라 국제수지 통계를 보다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보여주었다.<sup>69)</sup>

69) IMF는 국제수지와 IIP통계의 BPM6로의 이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중에 있다. 이는 크게 각종연수프로그램운영, 기술적 지원 및 Manual 업데이트로 구성된다.

<표 7.22> 한국은행의 국제수지 관련 발간물

연도	권호	제 목
2007	한은조사 연구9호	우리나라 국제수지의 발전단계 변화와 향후 과제
2009	단행본	국제수지표와 국제투자대조표의 이해

자료: 한국은행, 웹사이트, [www.bok.or.kr](http://www.bok.or.kr)

#### (5) 국제수지 효율성 분석 종합

국제수지는 한국은행이 작성하는 통계로 수출입과 금융거래를 종합하는 통계이다. 해당통계는 상당히 금융기관업무에 전문적인 통계이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매우 전문성을 갖고 있는 통계라고 할 수 있다.

국제수지 역시 통계청이나 IMF 품질진단결과 우수한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최근 더욱더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각종 해당 자료 발표 이후 이를 통한 각종 분석 및 해석에 많은 분석이 요구되는 바 한국은행은 많은 노하우를 갖고 정책분석에 활용하고 있다. 특히 1990년 후반 아시아 금융위기와 최근 글로벌금융위기 이후 자본유출입에 통계의 중요성 및 개선 작업이 꾸준히 진행되는바, 전문성을 갖고 있는 기관의 통계작성이 매우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 4) 자금순환

#### (1) 통계품질

우리나라의 자금순환 통계는 제5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금의 흐름을 통해 실물 및 금융경제활동을 종합적으로 볼 수 있게 해주는 통계로 한국은행이 1965년부터 분기 및 연간으로 작성하는 가공통계이다.

자금순환 통계의 효율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통계청 품질진단 결과를 통하여 자금순환통계의 품질을 살펴보고, 이후 작성에 대한 효율성을 분석한다.

자금순환 통계는 2006년 통계청의 정기 품질진단을 받았다. 이때 품질진단은 OECD 통계품질 진단 방법에 기초하여 통계청이 자체 제작한 통계품질진단 매뉴얼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작성환경, 이용자만족도 및 작성절차별 진단결과, 품질차원별 진단 결과를 통하여 살펴볼 수 있다.

먼저 <표 7.23>과 같이 이용자 만족도 결과를 살펴보면 종합만족도가 3.46으로 이고, 100점 환산으로 69.20점이 도출되었다. 거시경제관련 6개 지표(경기종합지수, 국민계정, 국제수지, 산업연관표, 자금순환표, 지역소득통계)의 종합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평균이 3.61로 나타나 자금순환표의 만족도는 이들 지표에 비하여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문가 분석을 포함한 작성절차별 진단결과나 품질차원별 분석결과에서 종합진단 결과 5점 만점에 4.4로 추정되었고 품질진단 결과 판정에서 많은 경우 ‘우수’ 또는 ‘매우 우수’로 나타났다. 그러나 다른 가공통계 6개 지표(경기종합지수, 국민계정, 국제수지, 산업연관표, 자금순환표, 지역소득통계)중에서는 가장 낮은 것으로 제시되었다. 즉 주요 가공통계의 진단결과보다 다소 낮은 것이 된다.

<표 7.23> 자금순환 품질진단 결과

(a) 자금순환 종합만족도

	종합만족도		중요도 (%)
	5점 척도	100점 환산	
통계생산과정부문	3.54	70.85	26.50
활용 편리성 부문	3.36	67.20	33.32
내용충실성부문	3.43	68.68	40.18
종합만족도	3.46	69.20	100.00

(b) 자금순환 작성절차별 및 품질차원별 진단결과

자체 진단	외부진단			종합 진단	품질평가 수준
	진단1	진단2	평균		
4.4	4.4	4.2	4.3	4.4	우수

자료: 통계청, 『자금순환 품질진단 보고서』 2006

(2) 통계작성 비용

① 기획관련 사항

한국은행이 작성하는 자금순환통계가 기획 비용 면에서 과연 효율적으로 작성되

는 가를 살펴보기 위하여 현재 작성인력과 구성 시스템을 살펴보았다.

자금순환통계는 한국은행 경제통계국 자금순환팀이 작성하는 통계이다. 현재 자금순환팀은 경제통계국 소속으로 국민계정을 총괄하는 국민계정 실장 하에 전담팀장 1인과 기획과 분석 1명, 자료처리 및 분석 5명, 지원 2명 등 총 9인이 작성하고 있다. 이들 조직은 <그림 7.4>과 같이 자금순환 관련 업무를 기획하고 총괄하여 통계를 작성하고 있다.

이러한 인력 구성은 현재 자금순환통계를 기획하고, 개선하는 데 충분한 인력이라고 평가된다.

한국은행은 지난 45년간 자금순환통계를 작성하면서 많은 경험과 지식이 축적하여 이러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7.24>과 같이 한국은행은 1965년부터 연도별 자금순환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하여 분기 및 연간 자금순환표 작성에 성공하였다. 또한 급속한 경제발전과 함께 금융 산업이 크게 발전하고 새로운 금융자산이 개발·보급되는 등 금융구조도 급격히 변화함에 따라 이러한 변화를 자금순환계정에 반영해야할 필요성이 높아지게 되었다. 따라서 금융 산업의 발달에 따른 금융기관분류 및 신설금융기관을 추가 등의 표본개편 뿐만 아니라 UN에서 권고하고 있는 국민계정 편제기준(SNA)에 따라 '68SNA, '93SNA를 이행하는 등 통계의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1975년, 1985년 및 2006년에 대폭 개편되었다. 최근 UN은 경제 환경의 변화에 따라 2008SNA를 권고하였는데 한국은행은 이에 맞추어 새롭게 자금순환통계의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

<그림 7.4> 한국은행 자금순환팀 조직구성





<표 7.24> 자금순환통계 작성 연혁

년 도	연 혁
1965	자금순환통계 연간통계 편제 시작
1971	1970년까지의 연간 시계열 보완 및 1965년~1970년간의 분기통계 편제 및 공표
1975	5 대분류, 11 소분류 → 5 대분류, 13 소분류하고 신설 금융기관을 추가
1985	1968SNA에 의한 자금순환통계 개편
1989	법인기업 부문의 표본업체 선정기준 변경
1991	기업 및 개인부문의 주식추계방법 개선
1992	국외부문 거래항목 세분화
1994와 1997	법인기업 부문의 표본설계 개편
1998	비법인기업 부문의 표본설계 개편
1999	증권회사 및 공공비영리기관 기초자료 수집방법 개선 뮤추얼펀드, 채권시장안정기금 및 한아름 상호신용금고 추가
2000	여신전문기관 부문 및 여신전문기관대출금 항목 신설 자산유동화전문회사 추가
2001	법인기업 부문의 표본설계 개편 국제수지통계 개편 내용 반영 및 항목 세분화
2002	증권회사 부문의 기초자료 수집방법을 전수조사로 개선
2004	법인기업의 표본설계 개편
2006	1993SNA에 의한 자금순환통계 편제
2007	1993 SNA 기준 시계열 소급완료

자료: 한국은행, 『자금순환계정 해설』 2007

## ② 자료수집비용

자금순환통계는 전수조사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취합하는 것이다. 즉 한국은행 자금순환팀은 자금순환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먼저 국민경제주체를 금융거래상 유사한 특성을 지닌 동질적인 그룹 또는 의사결정단위(부문)로 구분한 후 해당 그룹별(부문별)로 기초·기말 대차대조표를 작성하는 과정을 거쳐 부문별 자금조달 및 운용표가 작성되면 이를 열에는 경제주체(부문), 행에는 금융거래 형태로 종합·정리하여 자금순환표를 작성하게 된다.

이때 이들 자료들은 대체로 금융거래를 다루는 국내 주요 금융기관들로부터 받는 자료이기 때문에 비교적 좋은 품질의 자료라 할 수 있다. 때문에 이들 자료수집에 따른 추가적인 수집비용은 크게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겠다.

한편 이 기관의 효율성을 보기 위하여 통계청이 이 업무를 담당할 경우의 효율성을 비교하였다. 이 통계는 가공통계로 대체로 금융기관 등의 대차대조표를 활용하는 통계이다. 따라서 대차대조표에 대한 이해, 금융시장에 대한 이해 등 금융관련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다. 이러한 통계를 통계청이 작성하려면 상당수준의 금융 지식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에서 자금순환 통계는 중앙은행에서 작성하고 있는 실정이다.<sup>70)</sup>

### ③ 자료 정비 및 분석

자금순환통계는 가공통계이나 국민소득 계정과 같이 수많은 원시자료 통계를 활용하는 통계가 아니다. 국민경제를 경제활동을 중심으로 몇 개의 부문으로 나누고 자본 및 금융계정상 부문별 대차대조표를 토대로 부문별 자금조달 및 운용표를 작성한 다음 이를 종합·정리하여 작성하는 통계이다. 물론 경제상황의 변화나 새로운 항목발생 등으로 독자적으로 조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나 이는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이들 자료 조사나 분석을 위한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에 대한 비용은 크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때문에 이 업무를 통계청이나 기타 통계전문기관이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크게 비용이 변화하는 효과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 (3) 통계 발표 및 홍보

자금순환표는 분기 및 연간 발표되는 자료로서 자금의 흐름을 통해 실물 및 금융 경제활동을 종합적으로 볼 수 있게 해주는 통계이다. 정부는 물론이고 금융기관, 가계 및 기업의 자금흐름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통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신뢰성 확보와 적절한 홍보는 매우 중요한 작업이 된다.

한국은행은 자금순환표에 대하여 매우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있다. <표 7.25>와 같이 매분기 자금순환통계가 발표되면 한국은행은 보도 자료를 만들어 언론에 배포하고 이를 홈페이지에 올리고 있다.

또한 조사통계월보나 계간 국민계정 등 한국은행에서 발간하는 간행물에 자금순환의 동향과 변화 및 개편 등에 대한 설명 자료를 제공하여 통계수요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또한 한국은행은 <표 7.27>과 같이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금요강좌에서 매년 1회씩 자금순환통계의 이해와 변화에 대하여 설명하여 일반인은 물론 전문가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70) 각국의 자금순환통계 작성기관은 다음절을 참조하시오.

<표 7.25> 자금순환 홍보자료

연도	날짜	제 목
2007	03/27	2006년중 자금순환동향(잠정)
	06/26	2007년 1/4분기중 자금순환동향(잠정)
	09/27	2007년 2/4분기 중 자금순환동향(잠정)
	12/26	2007년 3/4분기 중 자금순환동향(잠정)
2008	03/17	2008년중 자금순환동향(잠정)
	06/12	2009년 1/4분기중 자금순환동향(잠정)
	09/14	2009년 2/4분기중 자금순환동향(잠정)
	12/15	2009년 3/4분기중 자금순환동향(잠정)
2009	03/27	2007년중자금순환동향(잠정)
	06/25	2008년 1/4분기중 자금순환동향(잠정)
	09/17	2008년 2/4분기 자금순환동향(잠정)
	12/12	2008년 3/4분기중 자금순환동향(잠정)

자료: 한국은행, 보도자료 웹사이트, [www.bok.or.kr](http://www.bok.or.kr)

<표 7.26> 조사통계월보와 계간 국민계정의 자금순환 설명자료

구분	연도	권호	제목
조사통계 월보	2007	10월호	2007년 상반기 자금순환동향(잠정)
	2007	5월호	2006년 자금순환동향(잠정)
	2008	10월호	2008년 상반기 자금순환동향(잠정)
	2008	5월호	2007년 자금순환동향(잠정)
	2009	9월호	2009년 상반기중 자금순환동향(잠정)
	2009	5월호	2008년중 자금순환동향(잠정)
계간 국민계정	2006	3호	자금순환통계의 1993 SNA 개편 결과

자료: 한국은행, 『조사통계월보』, 각호  
한국은행, 『계간국민계정』, 각호

<표 7.27> 한국은행의 자금순환 관련 강연

연도	날짜	제 목	교육자
2009	05/22	자금순환표의 이해와 활용	박승환

#### (4) 장기적인 효율성 유지 및 개선

장기적으로 한국은행이 자금순환통계를 효율적으로 작성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한국은행의 연구 능력과 실태를 통하여 설명할 수 있다. 한국은행은 자금순환통계를 작성한 이후 1969년 ‘한국의 자금순환’ 발간을 시작으로 자금순환표의 작성 및 분석방법에 대한 해설집을 개편할 때 마다 새롭게 작성하여 제공하고 하였다.<sup>71)</sup> 최근에는 <표 7.28>과 같이 자금순환계정 조사표 및 추계방법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작성하였으며 단행본으로 『우리나라 자금순환계정의 이해』를 발간하였다. 이 책에서 한국은행은 자금순환통계의 기본개념에서 시작하여 자세한 편제방법까지 소개하고 이 분야의 이슈를 정리하였다.

특히 『우리나라 자금순환계정의 이해』의 부록에서는 우리나라의 자금순환표 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등 주요국의 자금순환통계를 제시함으로써 우리나라와 세계 주요국들의 자금순환통계를 비교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1993 SNA에 적합하도록 자금순환계정을 개정하는 작업을 마쳤다.

이러한 한국은행의 체계적인 노력은 한국은행이 우리나라 자금순환통계를 보다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보여주었다.

<표 7.28> 한국은행의 자금순환 관련 연구

연도	권호	제 목
2006년	단행본	자금순환통계 추계 매뉴얼: 1993SNA기준 추계방법
2007년	단행본	우리나라 자금순환계정의 이해

자료: 한국은행 웹사이트. [www.bok.or.kr](http://www.bok.or.kr)

#### (5) 자금순환 효율성 분석 종합

자금순환은 한국은행이 작성하는 금융기관 및 비금융기관의 자금 거래, 이전 및 축적 통계이다. 이 통계는 상당히 금융기관업무에 전문적인 통계이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매우 전문성을 갖고 있는 통계라고 할 수 있다. 이들 자료들은 대체로 금융 거래를 다루는 국내 주요 금융기관들로부터 받는 자료이기 때문에 비교적 좋은 품

71) 한국은행 발간물 ‘우리나라 자금순환계정의 이해’의 <표 I-2> 자금순환계정관련 주요 발간자료목록을 참고하였음.

질의 자료라 할 수 있다. 때문에 이들 자료수집에 따른 추가적인 수집비용은 크게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겠다.

자금순환은 통계청 품질진단 결과 다소 만족도가 떨어지나 이는 자금순환계정 자료의 활용이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나온 결과로 해석된다. 한편 한국은행은 금융 시장 분석을 위하여 해당 자료를 작성하고 분석하는 전문성을 충분히 지니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 5) 소비자물가지수

### (1) 통계품질

#### ① 통계청 정기품질진단 결과

소비자물가지수는 통계청이 매월 자료조사를 통하여 작성하는 조사통계로 국민생활이나 경제정책수립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통계품질이 매우 중요한 통계이다.

기획에 많은 비용이 수반되고, 개선에 전문인력이 필요하다. 또한 매월 전국의 다양한 표본에서 자료를 수집하여 작성하기 때문에 자료수집에 많은 비용이 수반되고, 이들 자료의 정리분석에 많은 비용이 수반된다. 또한 홍보에 체계적인 시스템이 요구된다.

통계청에서 실시하는 소비자물가의 정기품질진단은 2007년에 실시되었다. 진단 결과는 <표 7.29>과 같이 종합만족도 3.56으로 조사통계 16종의 평균인 3.60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sup>72)</sup>

한편 작성절차별 및 품질차원별 진단결과에서는 종합진단결과가 4.9를 기록하였다. 이는 조사통계 16종의 평균인 4.6을 크게 초과하여 가장 높은 수준으로 전문가들이 소비자물가의 품질을 매우 높게 평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72) 가계동향조사, 경기사업체기초통계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 광공업동태조사, 국제투자대조표, 기업금융채감지수조사, 농가경제조사, 대외채무채권, 매월노동통계조사, 미시산업통계, 사업체근로실태조사, 생산자물가지수조사, 소비자물가지수조사, 수출입물가지수조사, 어가경제조사, 전자산업경기전망조사, 주택금융 및 보금자리론 수요조사, 한국노동패널조사 등 16종이다. 이렇게 16종을 선택한 이유는 전체 400여종의 통계를 모두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주요통계로 16종을 선택한 것이다.

<표 7.29> 소비자물가조사 품질진단 결과

(a) 소비자물가조사 종합만족도

	종합만족도		중요도 (%)
	5점척도	100점 환산	
통계생산과정부문	3.77	75.40	34.88
활용 편리성 부문	3.43	68.60	6.82
내용충실성부문	3.45	69.00	58.30
종합만족도	3.56	71.20	100.00

(b) 소비자물가조사 작성절차별 및 품질차원별 진단결과

자체 진단	외부진단			종합 진단	품질평가 수준
	진단1	진단2	평균		
4.9	4.9	5.0	4.9	4.9	매우우수

자료: 통계청, 『소비자물가 품질진단 보고서』. 2007

② IMF 품질진단 결과

IMF는 2001년 11월과 2009년 12월 한국의 주요 거시경제 통계품질에 대한 진단을 각각 실시하였다. 이때 IMF는 제3장에서 제시한 통계품질진단 기준에 기초하여 한국의 소비자물가를 평가하였고 이에 기초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였다.<sup>73)</sup>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표 7.30>와 같이 IMF는 2009년 품질진단에서 전반적으로 소비자물가 통계는 문제점이 거의 없고 상당히 높은 수준의 통계를 작성하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특히 전체 24개 항목중 22개 항목을 ‘실제 준수’ 항목으로 표시하였고, 통계기법과 자료접근성의 2개 항목 만을 ‘대체로 준수’ 항목으로 표시하였다. 이때 ‘대체로 준수’ 항목중 하나는 자료접근성으로 사용자의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설치에 관한 것으로 국내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는 항목이었기 때문에 실제로는 한 항목만이 대체로 준수 판정을 받을 것이었다.

한편 IMF가 2001년에 실시한 소비자물가 품질진단과 2009년의 품질진단 결과를 비교할 때 거의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평가결과에 기초할 때,

73) IMF, Republic of Korea: Report on the Observance of Standards and Codes—Data Module; Response by the Authorities; and Detailed Assessments Using Data Quality Assessment Framework, IMF Country Report No. 03/127 May 2003 및 IMF, Republic of Korea: Report on Observance of Standards and Codes—Data Module, IMF Country Report No. 10/229, July 2010

나 우리나라의 소비자물가 통계는 국제적인 기준으로 볼 때 매우 우수한 통계로 판단된다.

<표 7.30> IMF의 소비자물가 품질진단 결과

요소		평가							
		2001				2009			
		O	LO	LNO	NO	O	LO	LNO	NO
0. 품질제고의 전제조건	0.1 법률 및 제도적 환경	X				X			
	0.2 원자료(Resources)	X				X			
	0.3 관련성	X				X			
	0.4 기타품질관리	-	-	-	-	X			
1. 성실성확보	1.1 전문성	X				X			
	1.2 투명성	X				X			
	1.3 윤리적 기준	X				X			
2. 방법론적 건전성	2.1 개념과 정의	X				X			
	2.2 범위		X			X			
	2.3 분류 및 구분	X				X			
	2.4 기록의 근거	X				X			
3. 정확성과 신뢰성	3.1 원자료	X				X			
	3.2 원자료의 접근성	-	-	-	-	X			
	3.3 통계기법	X					X		
	3.4 중간단계 생산물의 타당성과 평가	X				X			
	3.5 개정을 위한 연구	X				X			
4. 서비스제공	4.1 관련성	X				-	-	-	-
	4.2 적시성 및 정시성	X				X			
	4.3 일치성	X				X			
	4.4 개정을 위한 연구와 시행	X				X			
5. 접근성	5.1 자료 접근성	X					X		
	5.2 메타자료 접근성	X				X			
	5.3 사용자에게 대한 도움	X				X			

주: O는 실제로 준수, LO는 대체로 준수, LNO 상당부분 준수되지 않음; NO 전혀 준수되지 않음을 의미 SDDS = Complies with SDDS Criteria

## (2) 통계작성 비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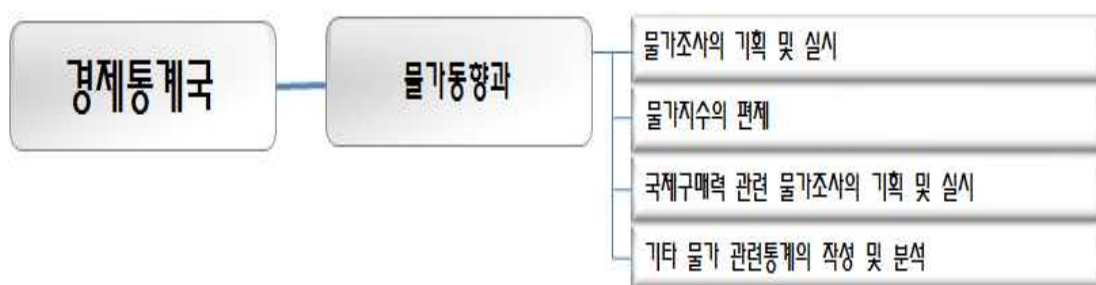
### ① 기획관련 사항

통계청이 작성하는 소비자물가지수가 기획 비용 면에서 과연 효율적으로 작성되는가를 살펴보기 위하여 현재 작성인력과 구성 시스템을 살펴보았다.

소비자물가지수는 통계청 경제통계국 물가동향과가 작성하는 통계이다. 현재 물가동향과는 경제통계국 소속으로 경제통계를 총괄하는 경제통계국장 하에 과장1인과 통계사무관 4인, 행정사무관1인, 통계주무관 10인, 무기계약근로자 1인으로 총 17명에 해당하는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모든 팀원들은 각자 물가조사의 기획 및 실시, 물가지수의 편제, 국제구매력 관련 물가조사의 기획 및 실시, 기타 물가 관련통계의 작성 및 분석과 관련된 뚜렷한 업무 분담하에 일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인력 구성은 현재 소비자물가통계를 구성하고, 개선하는 데 충분한 인력이라고 평가된다. 통계청은 지난 50년간 가까이 소비자물가 통계를 작성하면서 많은 경험과 지식이 축적하여 이러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 <표 7.31>와 같이 통계청은 1963년부터 소비자물가지수를 작성하기 시작하여 여러 번의 표본개편, 지수개편, 연쇄지수 등 새로운 개선작업을 성공리에 추진하였다.

<그림 7.5> 통계청 물가동향과 조직구성





<표 7.31> 소비자물가통계 작성 연혁

편제연혁	편제내용
1963년 1월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현 통계청)으로 이관
1963년-1968년	전국 도시 1,700가구를 표본조사
1969년-1974년	다목적 표본설계를 통해 표본변경과 아울러 1,800가구에 대해 식료품비만 가계부 기장방식으로 조사(나머지 비목은 분기별로 면접조사)
1969년, 1972년	표본개편
1975년-현재	전비목에 대하여 가계부 기장방식을 채택하여 조사
1977년	표본개편
1982년-1994년	소비지출을 5대 비목에서 9대 비목으로 세분하여 조사
1982년, 1988년 1993년	표본개편
1995년 이후	소비지출 비목중 「교육·교양오락」을 「교육비」와 「교양오락비」로 구분하여 10대 비목으로 확대
1998년, 2003년	표본개편
2005년	연동표본제 도입
2006년	1인가구 조사, 전자가계부 조사방식 도입
2008년	연간화 및 균등화 소득분배지표 작성·공표
2009년	소비지출의 항목분류를 COICOP에 기반을 둔 12대 분류체계로 개편

② 자료수집비용

소비자물가지수는 조사통계로 매월 조사항목별 월평균 소비지출액이 총소비지출액의 1/10,000 이상이 되는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을 조사하여 작성되는 지수이며, 정부 재정·금융정책의 기초자료로 이용하고, 가계수지·국민소득계정 등 다른 경제지표의 디스플레이터로 사용되고 있다.

통계청은 소비자물가지수 작성을 위하여 조사대상을 선정하고 조사대상에 맞는 적절한 조사방법을 선택하여 소비자물가조사 작성을 효율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또한 소비자물가조사 작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려면 통계작성기획 및 관리, 모집단 및 표본설계, 조사표 설계, 현장조사관리, 자료처리 및 집계, 자료이용 등 전반적으로 조사과정의 효율성과 비용을 고려하여 조사를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소비자

물가지수 작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려면 조사원이 각 조사항목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하고 있어야 하며 각 대상에 맞는 조사방법을 택하여 자료수집의 정확성을 확보해야 한다.

따라서 자료수집비용 면에서 이 두 가지 점에 착안하여 다음과 같이 현 소비자물가지수의 효율성을 판단하는 것이 가능하다.

첫째, 소비자물가지수 조사원들이 조사에 해당하는 각 항목들에 대해 충분한 지식을 습득하고 있는가 혹은 조사원 관리는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국내에서 생산자물가지수와 수출입물가지수를 생산하고 있는 한국은행과 비교하였다.

한국은행의 경우 경제통계국의 물가통계팀이 생산자물가지수와 수출입물가지수를 작성하고 있다. 구성원은 14명이다. 통계청의 경우는 경제통계국의 물가동향과가 소비자물가지수 작성을 담당하고 있으며 구성원 17명이 각자 다른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먼저 조사에 참여하는 조사원 개개인의 능력 및 지식수준을 측정하여 비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뚜렷한 답변을 할 수 없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자료수집을 하는 조사원 관리는 통계청이 한국은행에 비해 우월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통계청 품질진단 결과 통계청과 한국은행 모두 현장조사 관리측면에서는 둘 다 매우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의 경우는 물가통계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물가시스템에 “조사 시간관리”라는 코너를 마련하여 조사원별 품목별로 PDA를 이용하여 조사 직원의 시간을 체크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를 통하여 조사 직원의 조사시간 등을 파악하여 조사원을 관리하고 있다. 또한 PDA에 들어 있는 물가시스템에 현장조사에 필요한 다양한 코드를 부여하여 현장에서 발생하는 상황을 체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물가통계과는 통계교육원을 통해 매년 신규 물가조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물가조사 전반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소비자물가조사 팀장을 대상으로도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상시 학습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물가조사에 대한 사이버 교재를 작성하여 조사관들이 On-Line을 통해 언제든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둘째, 소비자물가 조사방법이 효율적으로 선택되고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통계조사시스템 구축에 관한 연구자료에 대해 살펴보았다. 최근 들어, 1인 단독가구 및 맞벌이가구의 증가와 개인 사생활 보호강화 등 면접조사가 어려워진 사회환경이 21세기 들어서 더욱 악화되면서, 효과적인 조사방법에 대한 모색이 필요하였고, 대한민국의 IT기반 인프라는 충분히 확대되어 있는 상황에서 인터넷은 충분히 하나의

대안으로 떠올랐다. 따라서 통계청은 인터넷조사시스템을 위한 개발을 추진하였으며 현재 운영중이다. 인터넷조사시스템은 응답률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나 통계품질 저하 등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보완책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 ③ 자료 정비 및 분석

많은 자료를 수집하여 이를 사용하여 분석한 후 자료를 공포하려면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과 인력이 필요하다.

현재 통계청은 이에 필요한 각종 시스템과 인력을 보유하고 있다. 2007년의 통계청의 품질진단과 IMF의 품질진단 결과 통계청은 적절한 인력과 기자재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통계청 경제통계국의 물가동향과의 인원분포를 보면 장기간 통계 업무 경력이 있는 전문 인력들이 통계작성을 총괄하고 있으며 통계 업무에만 전담함으로써 수준 높은 통계작성을 하고 있다. 통계품질향상을 위해 실무진에게 주기적으로 통계관련 교육 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업무 분장이 확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물가동향과에서는 소비자물가지수조사만을 전담하고 있으므로, 업무량이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지 않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통계 작성이 아닌 통계작성 방법 및 업무 개선 연구에 할애할 시간이 부족한 상태이다. 실제 조사원의 경우 예산부족으로 인해 일용직 조사원을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현장조사를 담당하는 조사관들의 빈번한 인사이동으로 조사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조사를 실시함에 부실조사 우려가 있다.

### (3) 통계 발표 및 홍보

소비자물가지수는 매월 발표되는 자료로서 거시경제의 주요 성과지편이자 현황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정부는 물론이고 가계와 기업 모두 매우 관심 깊게 보는 통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신뢰성 확보와 적절한 홍보는 매우 중요한 작업이 된다.

통계청은 소비자물가지수에 대하여 매우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있다. <표 7.32>과 같이 매월 소비자물가지수 통계가 발표되면 통계청은 보도 자료를 만들어 언론에 배포하고 이를 웹사이트에 올리고 있다.

또한 소비자물가지수월보나 소비자물가지수연보 등 소비자물가지수 관련 월간지와 연간간행물을 발행하여 소비자물가지수의 동향과 변화에 대한 설명 자료를 신고

있다.

또한 통계교육원은 <표 7.34>과 같이 매년 1~2회 소비자물가지수의 이해와 변화에 대하여 설명하여 일반인은 물론 전문가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표 7.32> 소비자물가 홍보자료

연도	날짜	제목
2007	매월	소비자물가 동향
2008	매월	소비자물가 동향
2008	매월	소비자물가 동향

자료: 통계청, 웹사이트

<표 7.33> 소비자물가 관련발간물

구분	연도	연호	제목
소비자물가지수 월보	2007	1월-12월	소비자물가지수 월보
	2008	1월-12월	소비자물가지수 월보
	2009	1월-12월	소비자물가지수 월보
소비자물가지수 연보	2007	4월	소비자물가지수 연보
	2008	4월	소비자물가지수 연보

자료: 통계청, 『소비자물가 연보』, 각호  
통계청, 『소비자물가 월보』, 각호

<표 7.34> 통계청의 소비자물가 관련 교육

연도	날짜	제목	교육자
2009	03/02-03/18	소비자물가조사	통계교육원
2009	05/11-05/13	경제통계의 이해	통계교육원
2009	06/10-06/12	소비자물가통계작성	통계교육원
2009	07/13-07/17	경제통계심화	통계교육원
2009	09/21-10/09	소비자물가조사	통계교육원

자료: 통계교육원 웹사이트

#### (4) 장기적인 효율성 유지 및 개선

장기적으로 통계청이 소비자물가조사 통계를 효율적으로 작성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은 통계청의 연구 능력과 실태를 통하여 설명할 수 있다. <표 7.35>과 같이 통계청은 2007년 소비자물가조사의 표본선정방식 전환검토와 소비자물가지수 현실반영도 제고를 위한 지수산식 연구 등 2종의 연구논문을 작성하였다.

또한 통계교육원은 매년 5회 정도 소비자물가조사 관련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소비자물가조사관련 통계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표 7.35> 통계청의 소비자물가 관련 연구

연도	권호	제목	담당자
2007	하반기	소비자물가조사의 표본선정방식 전환검토	이의규
2009	하반기	소비자물가지수 현실반영도 제고를 위한 지수산식 연구	박현정

자료: 통계개발원 웹사이트

#### (5) 소비자물가 효율성 분석 종합

소비자물가는 통계청이 매월 전반적인 소비자들이 직면하는 물가를 평균낸 것이다. 이는 전국적인 다양한 표본을 조사하여 작성하는 것으로 국민생활에 매우 중요한 통계이다.

소비자물가 통계는 국내외 품질진단결과 매우 우수한 통계인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일정한 절차를 통하여 작성되며, 5년 지수 변환 등이 순조롭게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전국적인 표본조사와 분석에 가장 경쟁력있는 통계청에서 수행하여 그 효율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소비자물가의 국민생활에 미치는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일반인을 대상으로한 소비자물가 강연이나 책자 등의 홍보가 많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 6) 생산자물가지수

#### (1) 통계품질

① 통계청 정기품질진단 결과

생산자물가통계는 국내생산자가 공급하는 모든 상품 및 일부 서비스의 가격수준 변동을 측정하는 통계로서 동 상품 및 서비스의 수급상황 파악, 경기동향 판단지표 및 디스플레이터 등으로 이용된다. 상품과 서비스는 월 1회 조사, 농림수산품은 월 3회 생산자판매가격(공장도가격)이 조사된다. 생산자물가통계 작성의 품질조정방법으로는 직접대체법, 접속법, 생산비접근법, 오버랩법 등이 주로 사용되고 있으며 PC 등과 같이 상품의 품질특성을 객관적인 수치로 나타낼 수 있는 상품에 대해서는 헤도닉기법을 적용하고 있다.

생산자물가통계 통계의 품질을 국내 및 국제기구의 품질진단결과를 통해 알아볼 수 있다. 생산자물가통계는 기타 많은 통계와 함께 지난 2007년 통계청의 정기 품질진단을 받았다. 평가는 OECD 통계 품질진단방법에 기초한 통계청 자체 제작 품질진단 매뉴얼에 따라 이루어졌다. 진단 결과 중 본고에서 다룰 주요 분야로는 통계의 작성환경, 이용자만족도, 품질차원별 진단이다.

<표 7.36>은 이용자 만족도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종합만족도는 3.56으로 100점 환산 71.2점이었다. 이는 조사통계 16종의 평균 3.60 근처의 지수로 대체로 평균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7.36> 생산자물가지수 품질진단 결과

(a) 생산자물가지수 종합만족도

	종합만족도		중요도 (%)
	5점 척도	100점 환산	
통계생산과정부문	3.58	71.6	38.31
활용 편리성 부문	3.50	70	37.54
내용충실성부문	3.61	72.2	24.17
종합만족도	3.56	71.2	100.00

(b) 생산자물가지수 작성절차별 및 품질차원별 진단결과

자체 진단	외부진단			종합 진단	품질평가 수준
	진단1	진단2	평균		
5.0	4.8	5.0	4.9	5.0	매우우수

자료: 통계청, 『생산자물가 품질진단 보고서』, 2007

한편 작성절차별 진단결과는 4.9점으로 추정되어 16종의 평균 4.60에 비하여 크게 높은 것으로 제시되었다. 때문에 한국은행의 생산자물가통계는 전문가를 통한 작성 상태가 매우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 ② IMF 품질진단 결과

지난 2001년 11월과 2009년 12월 한국의 주요 거시경제 통계품질에 대한 IMF의 진단이 실시되었다. 각각의 진단 결과는 <표 7.37>에 제시되어 있으며 통계작성의 수준이 상당히 높은 수준에 도달하여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2001년 진단결과는 성실성확보와 방법론적 건전성에 있어서 ‘대체로 준수’ 평가를 받았다. 2009년 진단에서는 방법론적인 건전성, 정확성과 신뢰성, 접근성면에서 ‘대체로 준수’의 평가를 받았는데 이중 자료접근성은 사용자의 컴퓨터소프트웨어의 설치에 관한 것으로 국내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는 항목이기 때문에 실제로 2항목에서 ‘대체로 준수’ 판정을 받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각 품질진단의 결과를 비교해보면 2001년은 18개 항목에서 ‘준수’의 평가를 받았고 3개의 항목에서 ‘대체로 준수’의 평가를 받았다. 2009년 진단에서는 19개 항목에서 ‘준수’의 평가를 받았고 2개의 항목에서 ‘대체로 준수’의 평가를 받았고 통계기법의 항목에서 상당부분 준수되지 않음의 평가를 받았다. 반면에 2001년 ‘대체로 준수’의 평가를 받았던 성실성확보 분야는 상당히 개선되었음을 알 수 있다.

## (2) 통계작성 비용

### ① 기획관련 사항

한국은행이 작성하는 생산자물가통계 기획관련비용의 효율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현재 작성인력과 구성 시스템을 살펴보았다.

생산자물가통계는 한국은행 경제통계국 물가통계팀이 작성을 담당하고 있고 생산자물가통계 작성 인력은 21명이 편제되어있고 11명의 전문(Professional)인력과 10명의 계약직(Contractual)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다.<sup>74)</sup> 또한 생산자물가통계에 대한 개념 및 방법론, 통계작성에 대한 전문지식이 겸비된 인력들으로써 독자적인 연수 프로

74) 이는 2007년 품질진단 받을 당시의 통계이다.

그럼과 주요 작성 책임자에 대한 외부 연수프로그램을 통해 효율적 통계 작성을 도모하고 있다. 이들 모든 팀원들은 각자에 대한 뚜렷한 업무 분담 하에 일을 추진하고 있다. 이들은 수년 동안 통계를 전문적으로 작성한 직원들로 인력의 수준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인력 구성은 현재 생산자물가통계를 기획하고, 개선하는 데 충분한 인력이라고 평가된다.

한국은행이 편제하고 있는 생산자물가지수는 국내물가의 일반적인 수준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로서 1910년 처음으로 편제된 이래 2005년 기준지수에 이르기까지 13차례에 걸친 개편과정을 거치면서 많은 개선과 발전을 거듭하여 왔고 한국은행은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하였다.

<표 7.37> IMF의 생산자물가 품질진단 결과

요소		평가							
		2001				2009			
		O	LO	LNO	NO	O	LO	LNO	NO
0. 품질제고의 전제조건	0.1 법률 및 제도적 환경	X				X			
	0.2 원자료(Resources)	X				X			
	0.3 관련성	X				X			
	0.4 기타품질관리	-	-	-	-	X			
1. 성실성확보	1.1 전문성	X				X			
	1.2 투명성		X			X			
	1.3 윤리적 기준	X				X			
2. 방법론적 건전성	2.1 개념과 정의	X				X			
	2.2 범위		X			X			
	2.3 분류 및 구분		X				X		
	2.4 기록의 근거	X				X			
3. 정확성과 신뢰성	3.1 원자료	X				X			
	3.2 원자료의 접근성	-	-	-	-	X			
	3.3 통계기법	X					X		
	3.4 중간단계 생산물의 타당성과 평가	X				X			
	3.5 개정을 위한 연구	X				X			
4. 서비스제공	4.1 관련성	X				-	-	-	-
	4.2 적시성 및 정시성	X				X			
	4.3 일치성	X				X			
	4.4 개정을 위한 연구와 시행	X				X			
5. 접근성	5.1 자료 접근성	X					X		
	5.2 메타자료 접근성	X				X			
	5.3 사용자에게 대한 도움	X				X			

주: O는 실제로 준수, LO는 대체로 준수, LNO 상당부분 준수되지 않음; NO 전혀 준수되지 않음을 의미 SDDS = Complies with SDDS Criteria



<그림 7.6> 한국은행의 물가통계팀 조직 구성



<표 7.38> 생산자물가통계 작성 연혁

편제 연혁	편제 내용
1910년11월	舊한국은행에서 경성중요물가표 편제 시작
1939년01월	조선은행에서 경성도매물가표로 개편
1949년04월	한국은행에서 서울도매물가지수로 개편
1955년11월	신규도매물가지수로 개편(현 지수체계의 기틀 마련) 이후 5년마다 기준년도 개편 시행
1966년07월05일	통계작성 승인(제30102호)
1993년01월	생산자물가통계로 개편
1993년11월	통계작성 승인번호 변경
1996년12월	지정통계로 전환
1998년07월	서비스부문 신규 추가

자료: 한국은행, 『알기쉬운 경제지표』, 2010

## ② 자료수집비용

생산자물가통계는 개별품목의 국내거래액이 상품의 경우 모집단거래액의 1/10,000 (664억원) 이상, 서비스의 경우 1/2,000 (1,195억원) 이상 거래비중을 갖고 동종 품목의 가격변동을 대표할 수 있는 품목으로 조사대상품목을 선정하며 현재 조사대상품목수는 884개로 상품부문 801개, 서비스부문 83개 부문으로 구성되어있다. 이와 같이 생산자물가통계는 조사통계의 하나로 수많은 자료를 수집하여 작성하는 통계이

다. 따라서 생산자물가통계 작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업무수행자가 다양한 자료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갖고 많은 자료수집 경로로부터 효율적으로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자료수집 비용측면에서 두 가지 점에 착안하여 효율성을 판단해 볼 수 있다.

첫째, 통계 담당자들이 생산자물가통계에 사용되는 각종 자료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습득하고 있는가 혹은 이들 자료에 대한 각종 정보를 쉽게 획득할 수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국내에서 가장 많은 통계를 생산하고 있는 통계청과 비교하였다.

먼저 통계작성에 참여하는 개개인의 능력 및 지적수준을 비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뚜렷한 판단이 힘들다. 그러나 정보를 쉽게 획득할 수 있다는 가능성 면에서는 한국은행이 통계청에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통계청은 관련 부서 직원들과 손쉽게 접할 수 있고 관련내용들의 보도자료나 각종 세미나 등에 참여하여 각종 자료를 획득하고 논의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한국은행이 손쉽게 수집하여 작성하는 통계는 대체로 금융기관에서 제공하는 금융통계에 해당하기 때문에 관련 정보 수집시 효율성이 보다 떨어질 수 있다.

둘째, 한국은행이 각종 원자료를 효율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법과 제도적 장치 및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가이다. 이것이 효율적으로 작동하려면 한국은행이 생산자물가통계 작성에 필요한 각종 법적인 제도와 권위를 갖추고 있어야 하고, 한국은행과 기타 원자료 수집 경로사이의 원활한 관계가 유지되어야 하며, 한국은행에 대한 각 기관의 신뢰성이 성립되어 있어야 한다. 즉, 원자료의 제공자인 한국은행에 대한 신뢰성이 보장되면, 생산자물가통계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경우, 그 자료를 부담 없이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은 중앙은행으로서 발권력을 갖고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하는 중요기관이라는 것을 거의 모든 원자료 제공기관이 알고 있기 때문에 신뢰성 부족에 따른 비효율은 발생할 가능성이 낮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점을 국내에서 국가통계를 책임지는 통계청과 비교할 경우에도 큰 차이를 발견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다. 비록 통계청이 현재에 국내통계의 상당부분을 작성하고 국내 통계를 전반적으로 기획하고 있지만 통계청이 청으로 승격하여 오늘날과 같은 권위를 갖게 된 기간은 한국은행이 국민계정이나 기타 통계를 작성한 기간보다 짧기 때문에 그동안 한국은행이 쌓아온 신뢰성에 비교할 때 통계청이 보다 높은 신뢰성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없다. 더욱이 각종 통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신문이나 방송 등 언론에서 모든 책임을 통계청에 떠맡기는 현실을 고려할 때, 한국은행의 신뢰성은 오히려 통계청

보다 높을 가능성도 있다.

셋째, 각종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한국은행의 물리적인 비용이 과연 통계청보다 높기 때문에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는 가이다.

한국은행이 작성하는 생산자물가통계는 884개의 조사통계를 사용하여 작성된다. 통계청이 제공하는 「2005년 광업·제조업통계조사보고서」와 관세청제공의 2003~2005년 「무역통계연보」, 국통해양부의 2003~2005년 「농림통계연보」(농림수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물통계연보, 한국은행의 2005년 산업연관표」(한국은행) 등 각종 관련통계를 기초자료로 이용하여 추계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다양한 분야의 자료수집경로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한국은행은 통계청에 비하여 비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 작성기관에서 제공하는 통계를 받는 것이 다른 기관에서 받는 것보다 보다 낮은 비용에서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정기적으로 한국은행이 기초통계 작성기관인 통계청 등과 협의를 통하여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비용은 줄어들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많은 자료를 수집하여야 하는 국민소득계정의 특성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은 통계작성전문기관이 아니고 중앙은행이기 때문에 각 기관의 협조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 ③ 자료 정비 및 분석

생산자물가통계는 조사통계로서 자료 수집측면에서 많은 인력과 시스템의 효율성을 필요로 한다. 앞서 언급된 국내외 품질진단결과를 통해 보면 한국은행은 적절한 인력과 기자재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작성에 있어서 가격입력 단계 20명, 편제단계 3명이 배정되어있고 통계작성분야에 있어서 다소 부족한 인력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통계청에서는 생산자물가통계를 작성하지 않고 있으므로 직접 비교할 수 없는 한계가 있으나 소비자물가통계의 작성을 맡고 있는 통계청의 다른 부서의 인력 구조나 시스템을 비교해보면 통계청의 자료수집 대상처→지방 통계사무소→통계청에 이르는 체계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자료수집의 수월함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최근 IT 기술의 발전에 따라 개인용 컴퓨터에서 손쉽게 대용량 자료를 취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전산장비의 중요성은 더욱 줄어들게 되어 설비 구축에 따른 차이점의 의미는 없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보관에 대한 설비의 중요성이 대두되는데 한국은행 및 통계청에서는 우수한 데이터베이스 환경을 구축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 (3) 통계발표 및 홍보

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홍보에 많은 인력을 투입하고 보도 자료를 제공하며 또한 각종 분석 자료를 제공한다. 한국은행은 국민계정 통계를 발표할 때마다 보도 자료를 만들어서 기자에게 배포하기 때문에 공표다음날 자세한 설명과 함께 신문 및 잡지를 통하여 그 내용이 알려진다. 또한 신문이나 잡지보다 더욱더 자세하게 알고 싶은 사람들은 홈페이지를 통하여 원자료를 손쉽게 찾아 볼 수 있다. 특히 한국은행은 [ecos.bok.or.kr](http://ecos.bok.or.kr) 웹사이트를 통하여 매우 편리하게 생산자물가통계를 제공하고 있다. 이 웹사이트는 통계청을 비롯한 국내 다른 기관의 웹사이트를 선도할 정도로 우수한 시스템이며 또한 우수한 품질의 각종 통계설명자료를 제공한다. 『알기쉬운 경제지표』와 같이 전반적으로 경제통계지표를 쉽게 설명하는 자료를 일찍이 작성하여 배포하였고, 월별 생산자물가동향, 물가동향분석과 같은 간행물 발간을 통하여 생산자물가 통계의 현황과 역사, 추계방법 등을 일반인 등은 물론 전문가에게도 도움을 주고 있다. 한국은행의 생산자물가통계 대한 홍보 현황을 볼 때 매우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각종 지표의 설명이나 보도자료 및 문헌 등을 통한 종합적인 홍보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표 7.39> 2007년~2009년 생산자물가통계 관련 한국은행 보도 자료

연도	날짜	제목
2007	매월	매월 생산자물가 동향
2008	매월	매월 생산자물가 동향
2009	매월	매월 생산자물가 동향

자료: 한국은행, 보도자료 웹사이트, [www.bok.or.kr](http://www.bok.or.kr)

<표 7.40> 조사통계월보와 계간 국민계정의 생산자물가통계 설명자료

구분	연도	권호	제목
조사통계월보	2007	2월	2006년중 물가동향 분석의 주요내용
	2008	2월	2007년중 물가동향 분석의 주요내용
	2009	2월	2008년중 물가동향 분석의 주요내용
	2010	1월	2009년중 물가동향 분석의 주요내용
계간 국민계정	2008	제3호	2005년 기준 생산자물가통계 개편결과정 관련 설명자료

자료: 한국은행, 『조사통계월보』, 각호  
한국은행, 『계간국민계정』, 각호

<표 7.41> 한국은행의 생산자물가 관련 강연

연도	날짜	제목	교육자
2007	08/10	물가통계의 이해와 최근 동향	박천일
2008	08/08	최근 물가지수 동향 및 전망	이익노

#### (4) 장기적인 효율성 유지 및 개선

##### ① 변화에 대한 대응 능력 및 현황

한국은행은 통계공급 부문의 변화에 대해 대응력이 다소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생산자물가통계는 여러 가지 관련 자료의 수집을 통해 작성되지만 작성자들이 실제로 이들 자료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작성할 가능성이 있다. 즉 생산자물가통계 작성에 사용되는 수많은 통계가 경제 환경의 변화에 바뀌게 되는데 현재와 같은 구조상 한국은행의 담당자가 이러한 변화를 모두 따라가기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이점을 통계청과 비교할 경우, 그 차이점은 두드러진다고 할 수 있다. 통계청은 다양한 많은 통계를 작성하기 때문에 관련 통계의 작성기법이나 방법이 변화할 때 이에 대한 정보를 즉각적으로 통보하고 공유할 가능성이 높지만 한국은행은 독립적이기 때문에 그렇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통계수요부문의 변화에 대한 적응능력에서 한국은행은 매우 뛰어난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을 담당하고 물가안정을 기

관의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물가변동이나 정책수행 등의 분석에 많은 자원을 사용하고 있다. 때문에 이를 반영할 수 있는 물가에 대한 연구 역시 매우 중요한 연구대상이 된다.

## ② 최근 연구 결과

한편 한국은행의 실제 분석능력이 개선능력을 보기 위하여 최근 수년 동안 생산자물가통계 관련 연구 결과를 <표 7.42>에서 살펴보았다.

이 기간 동안 한국은행은 생산자물가의 기준년 개편 이외에는 뚜렷한 통계작성관련 연구물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대부분의 자료들은 물가동향 분석으로 물가의 변화 원인을 경제학적으로 분석하고 해석하는 것으로 통계추정법에 대한 것은 별로 없는 실정이다. 다만 이들 통계는 상당히 국제적으로 이미 표준화되고 정착화된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연구할 주제가 많지 않기 때문인 이유도 있다.

<표 7.42> 2005년 이후 한국은행의 생산자 물가지수 관련 연구 결과

연도	권호	제목
2007	1월	2006년중 물가동향 분석
2008	1월	2007년중 물가동향 분석
2008	제3호	2005년 기준 생산자물가통계 개편결과
2009	1월	2008년중 물가동향 분석
2010	1월	2009년중 물가동향 분석

자료: 한국은행, 웹사이트

## (5) 생산자물가 효율성 분석 종합

생산자물가는 한국은행이 매월 생산된 상품과 기업서비스가 국내시장에 출하되어 1차 거래단계에서 기업 상호간에 이루어진 가격의 변동을 측정하는 물가지수이다. 이는 전국적인 다양한 표본을 조사하여 작성하는 것으로 국민생활에 매우 중요한 통계이다.

생산자물가 통계는 국내외 품질진단결과 매우 우수한 통계인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일정한 절차를 통하여 작성되며, 5년 지수 변환 등이 순조롭게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물가조사 통계가 조사전문기관이 아닌 한국은행이 작성하고 있다는 점은 효율성 개선 여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즉 전국적인 표본 조사시 전국적인 지부를 갖고 있으며 조사에 특화된 통계청에 비하여 효율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한편 물가변동 관련 연구에 한국은행이 매우 많은 연구 자료를 내놓고 있는 점은 한국은행의 매우 우수한 점이라고 할 수 있다.

## 7) 수출입물가지수

### (1) 통계 품질 진단

우리나라의 수출입물가통계는 수출입상품의 가격동향을 파악하고 그 가격변동이 국내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기 위해 매월 한국은행이 작성하는 물가통계이다. 일반적으로 수출입물가통계와 같은 조사통계는 매월 전국의 다양한 표본에서 자료를 수집하여 작성하기 때문에 자료수집에 많은 비용이 수반되고, 이들 자료의 정리 분석에 많은 비용이 수반된다. 또한 홍보에 체계적인 시스템이 요구된다.

수출입물가통계의 효율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먼저 수출입물가통계의 품질진단 결과를 살펴보고, 이후 작성에 대한 효율성을 분석한다.

수출입물가통계는 2007년 통계청의 정기 품질진단을 받았다. 이때 품질진단은 OECD 통계품질 진단 방법에 기초하여 통계청이 자체 제작한 통계품질진단 매뉴얼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작성환경, 이용자만족도 및 작성절차별 진단결과, 품질차원별 진단 결과를 통하여 살펴볼 수 있다.

먼저 <표 7.43>과 같이 이용자 만족도 결과를 살펴보면 종합만족도가 3.55이고, 100점 환산으로 71점이 도출되어 16개 조사통계의 평균인 3.60에 그집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문가 분석을 포함한 작성절차별 진단결과에서는 5점 만점에 4.93로 추정되었고 품질진단 결과 판정에서 많은 경우 가장 높은 등급인 ‘매우 우수’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에 기초할 때, 수출입물가통계는 전문가에게서는 높은 품질을 보였으나 대중에게서는 평균수준의 만족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살펴볼 때 한국은행의 수출입물가통계는 통계청이 사용하는 통계 품질 기준에 비추어볼 때, 매우 우수하다고 할 수 있다.

<표 7.43> 수출입물가지수 품질진단 결과

(a) 수출입물가지수 종합만족도

	종합만족도		중요도 (%)
	5점척도	100점 환산	
통계생산과정부문	3.59	71.8	43.81
활용 편리성 부문	3.47	69.4	29.63
내용충실성부문	3.57	71.4	26.56
종합만족도	3.55	71.0	100

(b) 수출입물가지수 작성절차별 및 품질차원별 진단결과

자체 진단	외부진단			종합 진단	품질평가 수준
	진단1	진단2	평균		
5.0	4.8	5.0	4.9	4.9	매우우수

자료: 통계청, 『수출입물가 품질진단 보고서』, 2007

(2) 통계작성 비용

① 기획관련 사항

한국은행이 작성하는 수출입물가통계가 기획비용 면에서 과연 효율적으로 작성되는가를 살펴보기 위하여 현재 작성인력과 구성 시스템을 살펴보았다.

수출입물가통계는 한국은행 경제통계국 물가통계 팀이 작성하는 통계이다. 현재 물가통계팀은 경제통계국 소속으로 수출입물가통계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는 현재 4명의 전임과 10명의 일용직원으로 총 14명이 기획, 서비스, 상품조사 분석 등의 통계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인력 구성은 현재 수출입물가통계를 기획하고, 개선하는 데 충분한 인력이라고 평가된다. 한국은행은 지난 약 40년간 수출입물가통계를 작성하면서 많은 경험과 지식이 축적하여 이러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 <표 7.44>과 같이 한국은행은 1976년부터 수출입물가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하여 기준년 개정 및 새로운 분류기준에 따른 개편 등 새로운 개선작업을 성공리에 추진하였다.



<표 7.44> 한국은행의 수출입물가지수 편제 연혁

편제 연혁	편제 내용
1976년 1월	통계작성 승인(제30104호)
1993년 11월	통계작성 승인번호 변경
1999년 12월	조사기준 가격변경(전월 21일~당월 20일 평균가격 -> 당월 1일~말일 평균가격)
2003년 6월	기준년도 변경(1995년 -> 2000년)
2008년 1월	기준년도 변경(2000년 -> 2005년)

② 자료수집비용

수출입물가통계는 조사통계로 수출입 규모가 큰 수출 227개, 수입 222개 품목을 대상으로 하여 작성하는 통계이다. 따라서 수출입물가지수는 소비자물가나 생산자물가에 비하여 수집하는 통계수가 작다.

한편, 수출입물가통계 작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려면 우선, 응답 업체에 조사협조 공문, 답례품 등을 제공하여 지속적인 협조를 구하고, 조사원들에게는 표준화된 교육 실시하여 조사원이 조사목적 및 조사항목 등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갖고 조사대상기관들 즉 관련업체나 조합 등으로부터 효율적으로 자료를 수집 및 종합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새로운 상품의 개발 판매와 함께 기존 품질규격 상품의 판매가 중단되거나 거래량이 크게 감소하여 기존 품질규격의 대표성이 없어지는 경우 대체, 추가, 삭제 등을 적용하여 표본을 교체하여야 한다.

자료수집비용 면에서 위의 사항에 착안하여 다음과 같이 현 수출입물가통계의 효율성을 판단하는 것이 가능하다.

첫째, 수출입물가통계 작성자들이 수출입물가통계에 조사목적과 조사항목 등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습득하고 있는 가 혹은 이들 자료에 대한 표준화된 교육이 실시되고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국내에서 가장 많은 통계를 생산하고 있는 통계청과 비교하였다.

이때, 통계작성에 참여하는 개개인의 능력 및 지식수준을 측정하여 비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뚜렷한 답변을 할 수 없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정보를 쉽게 획득할 수 있다는 가능성 면에서는 한국은행이 통계청에 비해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통계청은 수출입물가통계에서 가장 중요한 전수조사 및 표본조사를 통해 수많은 지표물을 작성하여 제공하는 기관이다.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조사인력을

보유하고 있고, 관련 부서 직원들 간의 협조가 용이하며, 관련내용들의 보도자료나 각종 세미나 등에 참여하여 각종 자료를 획득하고 논의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조사원의 교육 및 관리에 있어 전국 지방통계청(5) 및 사무소(49)를 설치하여 이들을 지속적으로 교육 및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조사에 대한 조사원의 이해도가 높다. 따라서 통계청에 비하여 관련 원자료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에는 수월하다. 한국은행이 손쉽게 수집하여 작성하는 통계는 대체로 금융기관에서 제공하는 금융통계 즉 보고통계에 해당하기 때문에 조사를 통한 정보 수집시 효율성이 보다 떨어질 수 있다.

다음으로 새로운 상품의 개발 판매와 함께 기존 품질규격 상품의 판매가 중단되거나 거래량이 크게 감소하여 기존 품질규격의 대표성이 없어지는 경우 대체, 추가, 삭제 등을 적용하여 표본을 교체하여야 한다. 그러나 한국은행의 경우 조사원과 조사 대상 업체나 기관의 거리가 멀 뿐만 아니라 이들의 보고를 통해서만 이러한 시장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 반면 통계청은 매월 가구 및 사업체를 대상으로 다양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조사원과 조사대상과의 거리가 상대적으로 매우 가깝기 때문에 시장상황에 대해 어느 기관보다도 빠른 정보획득이 가능하다.

둘째, 한국은행이 각종 원자료를 효율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법과 제도적 장치 및 사회적 공감대 즉 신뢰성이 확보되어 있는가의 문제이다. 효율적인 통계조사와 작성을 위해서는 한국은행이 수출입물가통계 작성에 필요한 각종 법적인 제도와 권위를 갖추고 있어야 하고, 한국은행과 조사 대상 업체 및 기관과의 원활한 관계가 유지되어야 하며, 한국은행에 대한 각 기관의 신뢰성이 성립되어 있어야 한다. 즉 원자료 제공기관이 한국은행이라는 기관에 대한 신뢰성을 갖고 있어야 수출입물가통계에 필요한 조사를 요청할 경우, 부담 없이 조사에 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은행은 별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다. 일단 한국은행은 통계조사 및 작성시 발생할 수 있는 정보누출 등의 문제를 막기 위하여 법이나 규정 등을 제정하였다. 그리고 한국은행은 오랜 기간 동안 수출입물가통계를 비롯하여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통계들을 작성하여왔고, 또한 이 기간 중 수출입물가통계에 대해 큰 문제가 제기된 경우가 없기 때문에 상당한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다. 또한 한국은행이 중앙은행으로서 발권력을 갖고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하는 중요기관이라는 것을 거의 모든 조사 대상 업체 및 기관이 알고 있기 때문에 신뢰성 부족에 따른 비효율은 발생할 가능성이 낮다고 볼 수 있다.

비록 통계청이 현재에 국내통계의 상당부분을 작성하고 국내 통계를 전반적으로 기획하고 있지만 통계청이 청으로 승격하여 오늘날과 같은 권위를 갖게 된 기간은 한국은행이 국민계정이나 기타 통계를 작성한 기간보다 작기 때문에 그동안 한국은

행이 쌓아온 신뢰성에 비교할 때 통계청이 보다 높은 신뢰성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없다. 더욱이 각종 통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신문이나 방송 등 언론에서 모든 책임을 통계청에 떠맡기는 현실을 고려할 때, 한국은행의 신뢰성은 오히려 통계청 보다 높을 가능성도 있다.

### ③ 자료 정비 및 분석

수출입물가통계와 같은 조사통계는 많은 품목과 대상기업 또는 기관들을 조사하여 자료를 분석한 후 자료를 공표하기 때문에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과 인력이 필요하다.

2007년의 통계청의 품질진단 결과에 따르면 현재 한국은행은 이에 필요한 각종 시스템, 인력, 기자재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만 다른 물가통계인 소비자물가통계를 작성하고 있는 통계청과 비교함으로써 상대적인 수준을 판단해 볼 수 있다. 과연 통계청과 유사한 정도인가 혹은 통계청에 비하여 보다 효율적인가를 비교하기 위하여 현 통계청의 시스템이나 기자재를 비교할 수 있다.

우선, 최근 IT 기술의 발전에 따라 개인용 컴퓨터에서 손쉽게 대용량 자료를 취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전산장비의 중요성은 더욱 줄어들게 되어 설비 구축에 따른 차이점의 의미는 없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보관에 대한 설비의 중요성이 대두되는데 한국은행은 매우 우수한 데이터베이스 환경을 구축하고 이를 사용하고 있다.

### (3) 통계 발표 및 홍보

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홍보에 많은 인력을 투입하고 보도 자료를 제공하며 또한 각종 분석자료를 제공한다.

한국은행은 매월 수출입물가통계를 발표할 때마다 보도 자료를 만들어서 기자에게 배포하기 때문에 익일날 자세한 설명과 함께 신문 및 잡지를 통하여 그 내용이 알려진다. 또한 신문이나 잡지보다 더욱더 자세하게 알고 싶은 사람들은 홈페이지를 통하여 원자료를 손쉽게 찾아 볼 수 있다. 특히 한국은행은 [ecos.bok.or.kr](http://ecos.bok.or.kr) 웹사이트를 통하여 매우 편리하게 수출입물가통계를 제공하고 있다. 이 웹사이트는 통계청을 비롯한 국내 다른 기관의 웹사이트를 선도할 정도로 우수한 시스템이다.

한국은행은 매우 우수한 품질의 각종 통계설명자료를 제공한다. 알기쉬운 경제지표과 같이 전반적으로 경제통계지표를 쉽게 설명하는 자료를 일찍이 작성하여 배포

하였고, 조사통계월보를 통해 매년 년중 물가동향분석 보고서를 발간하여 수출입물가통계의 현황과 역사, 추계방법 등을 일반인 등은 물론 전문가에게도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매주 금요일 실시되는 경제교육을 통해서 수출입물가통계 등 한국은행에서 작성 및 제공하고 있는 통계에 대한 일반인 및 전문가들의 이해를 돕고 있다.

<표 7.45> 2007~2009년 수출입 물가지수 관련 한국은행 보도 자료

연도	날짜	제목
2007	매월	매월월중 수출입물가 동향
	01/14/08	2007년 12월 및 연중 수출입물가 동향(2005년 기준)
2008	매월	매월월중 수출입물가 동향
	01/15/08	2008년 12월 및 연중 수출입물가 동향(2005년 기준)
2008	매월	매월월중 수출입물가 동향
	01/14/10	2009년 12월 및 연중 수출입물가 동향(2005년 기준)

자료: 한국은행, 보도자료 웹사이트, www.bok.or.kr

<표 7.46> 수출입 물가지수 관련 조사통계월보 논고와 계간 국민계정 관련 설명자료

구분	연도	권호	제목
조사통계월보	2007	1월	2006년중 물가동향 분석
	2008	1월	2007년중 물가동향 분석
	2009	1월	2008년중 물가동향 분석
	2010	1월	2009년중 물가동향 분석
계간 국민계정	2008	제1호	2005년 기준 수출입물가지수 개편 결과

자료: 한국은행, 『조사통계월보』, 각호  
한국은행, 『계간국민계정』, 각호

<표 7.47> 2007년~2009년 최근 한국은행의 주요 경제교육

연도	날짜	제목	교육자
2007	08/10	물가통계의 이해와 최근 동향	박천일
2008	08/08	최근 물가지수 동향 및 전망	이익노

자료: 한국은행 웹사이트

#### (4) 장기적인 효율성 유지 및 개선

##### ① 변화에 대한 대응 능력 및 현황

대상표본을 직접 조사하여 작성하는 조사통계인 수출입물가통계는 표본개편, 기준년 개편 등이 통계품질 유지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한국은행은 <표 7.48>에서 알 수 있듯이 실제로 한국은행은 이러한 문제를 내부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 연쇄방식 수출입물가를 도입하고, 기준물가 개편을 무리 없이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조사통계는 기획 및 자료수집에 많은 비용이 수반되고, 개선에 전문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사통계 작성의 수행능력이 우수한 통계청과 비교해 볼 때 한국은행의 효율성은 다소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즉 통계청은 가계동향조사, 광공업조사 등 수많은 조사통계가 작성되고 있기 때문에 경제 환경의 변화나 국제 통계작성 표준의 변화를 보다 빠르고 유기적으로 파악하여 이를 조사에 반영할 수 있다. 반면 한국은행의 경우 몇몇의 조사통계를 제외하고는 가공통계와 보고통계를 작성해 왔고 자료의 분석적 측면에 대한 경험이 많기 때문에 구조상 손쉽게 이를 따라가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통계청은 다양한 많은 통계를 작성하기 때문에 관련 통계의 작성기법이나 방법 변화시 이에 대한 정보를 즉각적으로 통보하고 공유할 가능성이 높지만 한국은행은 독립적이기 때문에 그렇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점에서 수출입물가통계 작성의 경우 통계청이 한국은행에 비해 더욱 우수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② 최근 연구 결과

한편 한국은행은 보다 우수한 품질의 수출입물가통계를 작성하기 위하여 <표 7.48>와 같이 최근 수년 동안 수출입물가통계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는 대체로 작성방법의 개선보다는 주로 작성된 지수의 활용과 해석에 중점을 둔 것으로 해석된다. 즉 한국은행이 제시하는 연구는 주로 매년 물가동향분석 연구보고서를 통하여 년중 수출입물가동향과 그 의미를 해석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2006년 한국은행이 연쇄방식에 따른 수출입물가지수

를 개편하였고, 2008년에는 2005년 기준으로 다시 개편하는 등 새로운 방법을 도입하여 개선한 것은 지수 개선을 위한 노력이라고 하였다. 또한 이들 통계는 상당히 국제적으로 이미 표준화되고 정착화된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연구할 주제가 많지 않은 것도 특징이다.

<표 7.48> 한국은행의 수출입물가통계 관련 연구

연도	권호	제목	담당자
2007	1월	2006년중 물가동향 분석	물가분석팀
2008	제1호	2005년 기준 수출입물가지수 개편	경제통계국
2008	1월	2007년중 물가동향 분석	물가분석팀
2009	1월	2008년중 물가동향 분석	물가분석팀
2010	1월	2009년중 물가동향 분석	물가분석팀

#### (5) 수출입물가 효율성 분석 종합

수출입물가는 한국은행이 매월 수출품과 수입품의 가격변동을 측정하는 물가지수이다. 수출입물가는 국내외 품질진단결과 매우 우수한 통계인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일정한 절차를 통하여 작성되며, 5년 지수 변환 등이 순조롭게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물가조사 통계가 조사전문기관이 아닌 한국은행이 작성하고 있다는 점은 효율성 개선 여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즉 수출입상품 표본 조사시 전국적인 지부를 갖고 있으며 조사에 특화된 통계청에 비하여 효율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 8) 광공업생산지수

#### (1) 통계품질

광공업생산지수는 통계청이 매월 광공업동향조사를 통하여 작성하는 조사통계로 국민생활이나 경제정책수립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최근과 같이 경제활동의 변화가 매우 빠르게 발생하는 경우, 산업비중이 큰 광공업의 생산을 월간으로 제시하는 광공업생산지수는 거시경제현상 분석과 정책 수립에 매우 중요한 통계가

된다.

통계청에서 실시하는 광공업생산지수의 정기품질진단은 2007년에 실시되었다. 이때 광공업생산지수 통계는 현재 광공업동향조사를 통하여 제공되는 통계이고 당시 광공업동향조사가 광공업동태조사 이름으로 행하여졌기 때문에 광공업생산지수가 아니라 광공업동태조사 이름으로 시행되었다.

광공업동향조사의 통계 품질진단결과는 <표 7.49> 같다. 이때 광공업동향조사의 품질진단은 OECD 통계품질 진단 방법에 기초하여 통계청이 자체 제작한 통계품질 진단 매뉴얼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작성환경, 이용자만족도 및 작성절차별 진단 결과, 품질차원별 진단 결과를 통하여 살펴볼 수 있다.

먼저 이용자 만족도 결과를 살펴보면 종합만족도가 3.74, 100점 환산으로 74.8점으로 앞에서 살펴본 다른 16종의 주요 조사통계의 평균 3.6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문가 분석을 포함한 작성절차별 진단결과 및 품질차원별 분석결과에서는 종합진단 결과 5점 만점에 4.4로 추정되었고 16종의 평균 4.6보다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개별항목에서도 품질진단 결과 판정에서 가장 높은 등급인 ‘매우 우수’와 ‘우수’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할 때 통계청이 작성하는 광공업동향조사는 대체로 우수한 통계로 판단된다.

<표 7.49> 광업제조업동향조사(구 광공업동태조사) 품질진단 결과

(a) 광업제조업동향조사(구 광공업동태조사) 종합만족도

	종합만족도		중요도 (%)
	5점 척도	100점 환산	
통계생산과정부문	3.70	74.00	25.30
활용 편리성 부문	3.55	71.00	31.60
내용충실성부문	3.74	74.80	43.10
종합만족도	3.74	74.80	100.00

(b) 광업제조업동향조사(구 광공업동태조사) 작성절차별 및 품질차원별 진단결과

자체 진단	외부진단			종합 진단	품질평가 수준
	진단1	진단2	평균		
5.0	4.1	4.0	4.1	4.4	우 수

자료: 통계청, 『광공업동태조사 품질진단 보고서』, 2007

(2) 통계작성 비용

① 기획관련 사항

현재 광공업생산지수는 통계청 경제통계국의 산업동향과가 작성하고 있다. 산업동향과는 현재 1인의 과장급 직원 하에 17인이 근무하면서 광업제조업동향 조사 이외에 건설경기, 설비투자 등의 업무를 동시에 하고 있고, 광공업동향조사에 집중하는 인원은 총 8명으로 나타났다.<sup>75)</sup> 담당자들은 100% 통계업무 전담직원으로 상당 수준의 통계지식을 습득한 통계전문가로 평가된다.

광공업생산지수가 매월 전국에 걸쳐 수행되는 조사통계이고 이 통계가 현실 경제현상 분석에 매우 적극적으로 활용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통계전문인력의 배치는 매우 필요한 사항이라고 하겠다.

광공업생산지수는 1957년 한국은행에서 시작하였고, 1970년부터 통계청의 전신인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이 작성을 시작한 것으로 이 분야에서 통계청이 가장 노하우 및 관련 지식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7.50>에서 볼 수 있듯이 수차례에 걸친 표본조정 및 확대를 걸쳐서 오늘날까지 온 것이다. 따라서 향후 광공업생산지수 조사시 통계정보보다 효율적으로 기획하고 분석할 기관이 우리나라에는 없다고 볼 수 있다.

<그림 7.7> 통계청의 산업통계과 조직 구성



75) 2007년 통계청 정기간질진단서에 총괄업무를 담당하는 서기관(4급)1명, 조사기획 및 분석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5급) 1명 주사(6급) 2명, 주사보(7급) 4명 등 8명으로 구성되었다.



다만 2007년 통계품질진단 보고서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통계청내의 보직이동으로 인하여 광공업동향통계에 익숙한 직원이 다른 곳으로 배치되고, 신규 인원이 배치되는 과정에서 약간의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절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 ② 자료수집비용

광공업동향조사는 전국을 단위로 실시되는 조사통계로 전국의 8300개의 광업·제조업 사업체가 조사대상이다.

타계식 방법 및 자계식 방법(CASD)을 병행하는 조사담당자의 면접을 통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방과 연관된 조직이 필수적이다. 또한 이들에 대한 교육이나 경향이 매우 중요한 점을 비추어볼 때, 전국적인 조직을 갖고 있고, 관련 분야에서 많은 경험을 갖고 있는 면접원의 업무가 통계품질 유지를 유지하여 매우 필수적인 상황이다.

### <표 7.50> 광공업생산지수의 주요 연혁

년도	내용
1957. 8	1955년기준 산업생산지수 최초 작성(한국은행)
1957. 8 ~ 1968. 12	1965년 기준, 1960년 기준 지수개편 1965년 기준부터 특수분류지수 작성(한국은행) 1966년 기준부터 생산자 제품출하지수 작성(한국산업은행)
1969.1	한국산업은행으로 지수편제 업무 이관
1970.3	광공업동태조사 지정통계(승인번호 제10111호)로 고시
1970. 7	통계청(구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으로 지수작성 업무 이관
1970 .7 ~ 1988. 6	1970년 기준, 1975년 기준, 1980년 기준 지수개편
1988. 7	1985년 기준 지수개편(시도별 산업생산지수 작성)
1993. 3	1990년 기준 지수개편(가스업 추가, 시도별 지수의 계절변동조정지수 작성)
1997. 10	1995년 기준 지수개편(기업규모별지수, 산업형태별지수 작성)
2002. 12	2000년 기준 지수개편(제조업 ICT지수 작성)
2008. 2	2005년 기준 지수개편
2008. 7	제조업생산능력 및 가동률조사를 흡수 통합
2008. 10	광업·제조업동향조사로 통계명칭 변경
2010. 2	사업체 가동률 및 생산실적 총액 항목 추가

자료: 통계청, 통계설명자료 웹사이트 <http://kosis.kr/metadata/>

이러한 점에서 통계청이 광공업동향조사를 작성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라 할 수 있다. 통계청은 지방조직을 통하여 관련 인원을 확보하고, 교육을 시키며 이들 업무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통계청이 아닌 기관이 이러한 업무를 수행한다면 조사원교육이나 기타 자료 수집 등에서 많은 비용이 수반될 것이므로 중복투자 등 비효율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최근 다른 통계작성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과 같이 대상 업체의 응답회피나 불성실한 답변 등 과 같이 조사환경이 어려워지는 것을 개선한 방법이 요구된다.

### ③ 자료 정비 및 분석

광공업생산지수는 매월 전국을 단위로 실시되는 광공업동향조사에서 작성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각종 자료를 분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즉 계속하여 수집되는 방대한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이를 정리하여 사용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형식으로 바꿔줘야 한다. 이러한 작업이 효과적으로 수행되려면 해당 통계작성 기관은 통계작업에 전념할 수 있는 인원과 관련 장비가 구축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매월 제공되는 광공업생산지수를 분석하여 매월 보도 자료로 제시하고, 분기별 경제 분석을 실시하여야 하기 때문에 통계작성기관이 상당량의 경제학 및 경제현황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통계청이 이 통계를 작성하는 것은 매우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즉 통계청은 통계작성에 필요한 인력을 보유하고, 또한 관련 경제 분석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 3) 통계발표 및 홍보

1990년 동아시아 금융위기나 최근 글로벌 경제위기 등과 같이 급격한 경제 환경의 변화가 발생하면서 거시경제를 반영하는 월별지표의 필요성이 크게 두각 되면서 광공업생산지수는 더욱이 중요한 통계로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에 따라 통계청이 <표 7.51>과 같이 발표하는 산업활동동향 보도 자료는 경제현황 파악에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된다. 이 산업활동동향은 각종 월별자료를 포함하지만 그중에서도 광공업생산지수는 가장 중요한 통계로 인정받고 있다. 이는 인터넷에 공개되기 때문에 정책관련자나 일반인 모두 발표 즉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를 보다 자세하게 알고자 하는 사람들은 국가통계포털 사이트에서 과거 자료를 비롯하여 모두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통계청은 <표 7.52>과 같이 월간지 광공업생산동향 월보와 광공업생산연보를 통하여 자세한 통계표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설명도 제시한다. 이밖에 광공업산업생산지수에 대한 과거 시계열자료와 메타데이터는 통계청이 제공하는 국가통계포털을 통하여 살펴볼 수 있다.

한편 통계청은 관련 광공업생산지수나 광공업생산동향 통계에 관한 교육을 일반인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지 않다. 대신 <표 7.53>과 같이 통계교육원을 통하여 내부 교육이나 직원교육 및 위탁교육에서 이들 통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을 뿐이다.

#### (4) 장기적인 효율성 유지 및 개선

광공업생산지수 통계를 향후 개선하고 장기적으로 효율적으로 작성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있는가를 보기 위하여 광공업생산지수 통계 작성의 최근 개선사항이나 연구사항을 살펴보았다.

광공업생산지수는 지수형태로 작성되기 때문에 매 5년 주기로 지수개편이 이루어진다. <표 7.50>과같이 이러한 작업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것을 고려할 때 장기적인 효율성 유지의 기초조건을 충족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통계청이 지난 1970년 이후 이 통계를 작성하였기 때문에 많은 노하우를 축적한 것으로 보인다.

<표 7.51> 2007년~2009년 산업생산지수 관련 통계청 보도자료

연도	날짜	제목
2007	매월·매분기	매월·매분기산업활동동향
2008	01/31	2007년 12월 및 연간 산업활동동향
	02/28	2005년 기준 산업활동동향 관련 지수개편 결과
	매월·매분기	매월·매분기산업활동동향
2009	01/30	2008년 12월 및 연간 산업활동동향
	매월·매분기	매월·매분기산업활동동향

자료: 통계청, 보도자료 웹사이트 <http://kostat.go.kr/>

<표 7.52> 통계청 산업생산지수관련 설명자료

구분	연도	연호	제목
광공업생산동향 월보	2007	1월-12월	광공업생산동향
	2008	1월-12월	광공업생산동향
	2009	1월-12월	광공업생산동향
광공업생산연보	2007	6월	광공업생산연보
	2008	6월	광공업생산연보
광업·제조업조사 보고서	2007	12월	광업·제조업조사 보고서
	2008	12월	광업·제조업조사 보고서
	2009	12월	광업·제조업조사 보고서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통계설명자료 웹사이트 <http://kosis.kr/metadata/>

<표 7.53> 2007년~2009년 최근 통계청의 주요 경제교육

연도	날짜	제목	교육자
2007	2월, 4월, 11월	통계조사교육 (산업분류)	통계교육원
	3월, 6월	통계전문교육 (산업분류)	통계교육원
	5월	산업통계조사 신규자 교육	통계교육원
	11월	산업팀장 교육	통계교육원
	4월, 9월 11월	통계조사교육 (광공업동태조사지침서)	통계교육원
2008	3월, 10월	통계전문교육 (산업분류)	통계교육원
	2월	통계조사교육 (산업분류)	통계교육원
	2월~10월	통계조사교육 (광공업동태조사지침서)	통계교육원
2009	3월, 11월	통계전문교육 (산업분류)	통계교육원
	2월~10월	통계일반교육 (산업분류)	통계교육원
	2월~10월	통계조사교육 (광업·제조업동향조사)	통계교육원

자료: 통계청 통계교육원, 웹사이트 <http://sti.kostat.go.kr/>

그러나 통계청 내에서 이 지표에 대한 신규 연구는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통계청이 매년 2회 발간되는 학술지인 『통계연구』에 2006년부터 2009년까지 광공업생산지수 혹은 산업생산지수 통계에 관련된 연구 논문은 2007년 1편과 2008년 1편 등 2편에 불과하다. 이중 한편은 통계청이 아닌 외부연구 인력의 연구결과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통계청 내에서 광공업생산지수의 개선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다고 보겠다. 다만 광공업생산지수가 국제적으로 통일된 방법으로 오랜 기간 동안 작성된 상당히 안정된 통계라는 점을 고려할 때, 새로운 개선의 여지가 작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러한 사항은 2007년 통계품질진단 결과에서도 나타났다. 즉 당시 보고서는 소수의 인원이 매월 이 통계작성에 집중하기 때문에 새롭게 연구 활동을 할 여유를 찾기 어렵다는 내용을 작성자의 애로사항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현실적으로 국내 다른 통계작성기관이 이보다 우수한 연구능력을 보유하거나 실제로 연구에 종사하는 경우는 없다는 것이 사실이라고 볼 수 있겠다.

<표 7.54> 통계청의 산업생산지수 관련 연구 결과

연도	권호	제목
2007	1호	한국 제조업의 경기변동 특성에 관한 연구
2008	2호	생산확산지수 작성방법론 연구

자료: 통계청, 『통계연구』, 각호

#### (5) 광공업생산지수 효율성 분석 종합

산업생산지수는 통계청이 매월 산업생산 규모를 지수로 작성하는 통계이다. 이는 통계품질진단결과 우수한 통계이고, 많은 조사자료에 수집하여 효율적으로 작성하는 통계로 판단된다. 특히 1970년 이후 통계청이 이 통계를 작성하여 오면서 많은 노하우를 갖고 효율적으로 작성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현재 국내에서 이러한 전국적인 많은 자료를 수집하고 종합하여 분석한 후 정시에 발표할 수 있는 기관은 통계청이 유일하다고 할 수 있으며 또한 상당수준의 효율성을 지키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9) 경제활동인구조사

### (1) 통계품질

경제활동인구조사는 통계청이 매월 자료조사를 통하여 작성하는 조사통계로 국민 생활이나 경제정책수립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최근과 같이 고용문제가 심각하게 사회문제화되는 시기에 이 통계에 대한 통계품질은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된다.

통계청에서 실시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정기품질진단은 2008년에 실시되었다. 이 경제활동인구 조사 통계의 품질진단결과는 <표 7.55>이다.

이때 경제활동인구조사의 품질진단은 OECD 통계품질 진단 방법에 기초하여 통계청이 자체 제작한 통계품질진단 매뉴얼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작성환경, 이용자 만족도 및 작성절차별 진단결과, 품질차원별 진단 결과를 통하여 살펴볼 수 있다.

먼저 이용자 만족도 결과를 살펴보면 종합만족도가 3.76, 100점 환산으로 75.2점으로 앞에서 살펴본 다른 주요 경제통계에 비하여 다소 높고, 또한 조사통계 16종에 대한 평균 점수 3.60보다 높은 것으로 제시되었다.

<표 7.55> 경제활동인구조사 품질진단 결과

#### (a) 경제활동인구조사 종합만족도

	종합만족도		중요도 (%)
	5점 척도	100점 환산	
통계생산과정부문	4.19	83.8	30.00
활용 편리성 부문	3.56	71.2	40.20
내용충실성부문	3.75	75	29.80
종합만족도	3.76	75.2	100.00

#### (b) 경제활동인구조사 작성절차별 및 품질차원별 진단결과

자체 진단	외부진단			종합 진단	품질평가 수준
	진단1	진단2	평균		
4.9	3.5	4.3	3.9	4.2	우 수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통계품질진단 결과보고서』, 2008

한편 전문가 분석을 포함한 작성절차별 및 품질차원별 진단결과에서는 <표 7.23>와 같이 종합진단 결과 5점 만점에 4.2로 추정되었고 품질진단 결과 판정에서 가장 높은 등급인 ‘매우 우수’와 ‘우수’로 나타났다. 그러나 16종에 대한 평균 4.60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 전문가로부터의 평가는 다른 조사통계에 비하여 떨어지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할 때 통계청이 작성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는 대체로 우수한 통계로 판단되며 일반인 이용자에게서는 만족도가 높으나 전문가들에게서는 진단결과가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제시된다.

## (2) 통계작성 비용

### ① 기획 관련 사항

현재 경제활동인구조사는 통계청 사회통계국의 고용통계과에서 담당하고 있다. 고용통계과는 2010년 말 현재 1인의 과장급 직원 하에 18인(사무관 4인 주무관 14인)으로 구성되어 통계를 전담하는 전문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다.

경제활동인구조사가 매월 전국에 걸쳐 수행되는 조사통계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통계전문인력의 배치는 매우 필요한 사항이라고 하겠다.

<그림 7.8> 통계청 사회통계국 조직구성



<표 7.56> 경제활동인구조사 연혁

년도	내용
1957	「노동력조사」라는 명칭으로 지방행정기관을 통하여 내무부 통계국에서 실시
1961. 7	경제기획원 통계국에서 실시
1962. 8	「경제활동인구조사」로 명칭 변경 및 새로운 표본과 전문화된 조사원에 의하여 시험조사 실시
1969	1966 인구센서스 조사구 중에서 다목적 표본을 설계하여 표본개편
1983. 6	ILO 권고에 따라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조사표 전면개편
1985. 1	단기식 조사표로 단일화
1987. 1	조사대상을 만 14세 이상에서 만 15세 이상으로 상향조정 및 농가·비농가 계절조정 실업률 작성
1988. 7	표본가구를 확대(17,500→32,500가구) 교체(표본개편), 시·도별 자료생산이 가능
1992	1990년 실시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기초로 표본개편
1998. 1	1995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기준으로 표본개편 및 조사표 개편 및 월별로 시·도별 자료 공표
1999. 11	구직단념자 등 비경제활동인구 부문을 보완한 조사표 개편
2005. 1	조사표 수정(조사항목의 보다 나은 의미전달을 위해 질문어구 수정, 선택항목 중 육아와 가사의 분리와 심신장애 추가) 및 전국적으로 연동표본 도입
2007. 9	표본 개편(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기준, 32,580→32,000가구)
2008. 1	조사표 개편, 인터넷조사(CASI) 도입
2009. 7	전화면접조사(CATI) 도입

자료: 통계청, 통계설명자료 웹사이트 <http://kosis.kr/metadata/>

한편 경제활동인구조사는 1962년부터 통계청의 전신인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이 작성을 시작한 것으로 이 분야에서 통계청이 가장 노하우 및 관련 지식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7.56>에서 볼 수 있듯이 수차례에 걸친 표본조정 및 확대를 걸쳐서 오늘날까지 온 것이다. 따라서 향후 경제활동인구 조사시 통계청보다 효율적으로 기획하고 분석할 기관이 우리나라에는 없다고 볼 수 있다.

## ② 자료수집비용



경제활동인구조사는 전국을 단위로 실시되는 조사통계이다.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10% 표본조사구중 일부 조사구를 제외한 26,505조사구와 총조사 실시 이후부터 표본개편 시까지의 신축아파트 506개 조사구를 기본 추출단위 조사구로 설정(총 27,011조사구)하여 지역별 표본수에 따라 크기에 비례한 확률추출법(PPS)을 이용 1,629개 조사구(동부: 1,233, 읍·면부: 396)를 표본조사구로 선정한다.<sup>76)</sup> 그리고, 이들 조사구에서는 한 조사구역이 평균 5가구가 되도록 구역을 분할하여 임의의 표본조사 구역을 포함한 인접 조사구역 4개를 추출하여, 이 구역 내의 거처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가구를 조사한다.

때문에 경제활동인구조사에는 많은 표본을 선택하여 자료를 조사하고 이를 수집하여 작성하고 분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때문에 효율적으로 조사 작업에 필요한 기관이 필요하다. 또한 조사원에 대한 교육과 감독이 필요한 통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통계는 통계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이 통계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모집단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는 기관이 같이 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이다. 만약에 통계청이 아닌 기관이 이러한 업무를 수행한다면 조사원교육이나 기타 자료 수집 등에서 많은 비용이 수반될 것이므로 중복투자 등 비효율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 ③ 자료 정비 및 분석

경제활동인구조사는 매월 전국을 단위로 실시되는 조사통계이므로 이에 대한 각종 자료를 분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즉 계속하여 수집되는 통계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이를 정리하여 사용자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형식으로 바꿔줘야 한다.

이러한 작업이 효과적으로 수행되려면 해당 통계작성 기관은 통계작업에 전념할 수 있는 인원과 관련 장비가 구축되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통계청이 이 통계를 작성하는 것은 매우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즉 통계청은 국내 어느 기관보다 다표본 통계를 정리하고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기 때문이다.

---

76) 섬조사구(섬지역에 설정된 조사구)와 시설단위 조사구(기숙사, 양로원, 고아원 등과 같은 기숙시설에 설정된 조사구) 등을 제외한다.

### (3) 통계발표 및 홍보

최근 고용 통계에 대한 관심이 고조됨을 반영하여 통계청은 경제활동인구조사 관련 많은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먼저 통계청은 <표 7.57>과 같이 매월 경제활동인구조사 통계를 발표할 때마다 보도 자료를 만들어서 기자에게 배포한다. 때문에 이에 대한 정보를 빠르게 알고자 하는 정책관련자나 신문기자 등은 발표 즉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를 보자 자세하게 알려고 하는 사람들은 국가통계포탈 사이트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표 7.57> 2007년~2009년 경제활동인구조사 관련 통계청 보도자료

연도	날짜	제목
2007	매월	고용동향
	05/23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근로형태별) 결과(2007년 3월 실시)
	07/19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청년층, 고령층) 결과(2007년 5월 실시)
	10/26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근로형태별, 비임금근로자) 결과(2007년 8월 실시)
2008	매월	고용동향
	05/29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근로형태별) 결과(2008년 3월 실시)
	07/24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청년층, 고령층) 결과(2008년 5월 실시)
	10/29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근로형태별,비임금근로) 결과(2008년 8월 실시)
2009	매월	고용동향
	07/29	경제활동인구 청년층 및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2009년 5월 실시)
	11/04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근로형태별,비임금근로) 결과(2009년 8월 실시)

자료: 통계청 웹사이트

한편 통계청은 <표 7.58>와 같이 월간지 경제활동인구월보와 경제활동인구연보를 통하여 자세한 통계표를 제공한다. 이밖에 경제활동인구에 대한 시계열자료와 메타 데이터는 통계청이 제공하는 국가통계포탈을 통하여 살펴볼 수 있다.

한편 통계청은 관련 경제활동인구 통계에 관한 교육을 일반인을 대상으로 실시하

고 있지 않다. 대신 통계교육원을 통하여 내부 교육이나 직원교육 및 위탁교육에서 경제활동인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을 뿐이다.

<표 7.58>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관련 설명자료

구분	연도	연호	제목
경제활동인구월보	2007	1월-12월	경제활동인구월보
	2008	1월-12월	경제활동인구월보
	2009	1월-12월	경제활동인구월보
경제활동인구연보	2007	5월	경제활동인구연보
	2008	5월	경제활동인구연보
	2009	5월	경제활동인구연보
	2010	5월	경제활동인구연보

자료: 통계청 웹사이트

<표 7.59> 2007년~2009년 최근 통계청의 주요 경제교육

연도	날짜	제목	교육자
2007	1월, 6월, 12월	통계조사교육 (경제활동인구조사지침서)	통계교육원
2008	2월~10월	통계조사교육 (경제활동인구조사지침서)	통계교육원
2009	2월~10월	통계조사교육 (경제활동인구조사)	통계교육원

#### (4) 장기적인 효율성 유지 및 개선

경제활동인구 통계를 향후 개선하고 장기적으로 효율적으로 작성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있는가를 보기 위하여 경제활동인구 통계 작성의 개선사항이나 연구사항을 살펴보았다.

<표 7.60>과 같이 지난 수년간 관련 방법에 대한 연구가 통계청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난다. 매년 2회 발간되는 학술지인 『통계연구』에 2007년부터 2009년까지 경제활동인구 통계에 관련된 연구 논문이 5편 발표되었고, 이중 4편의 논문이 통계청 관련 부서 직원들이 이를 개편하기 위한 연구결과를 발표한 것이다. 한편 이중 2편의 연구 논문 역시 통계청 직원들의 업무 활동에 기여한 것이기 때문에 통계품질 개선에 기여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점을 볼 때 국내 다른 통계작성기관이 이보다 우수한 연구능력을 보유하

거나 실제로 연구에 종사하는 경우는 없다고 볼 수 있겠다.

<표 7.60> 경제활동인구조사 관련 연구

연도	권호	제목
2007	1호	노동력조사 결과의 패널자료화 해외사례 연구(통계청, 이지연)
	1호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실업자 총계 추정을 위한 설계기반 소지역추정량의 오차추정(정연수, 이계오, 이우일, 공군사관학교 등)
2008	2호	경제활동인구조사의 분산추정방법 검토(통계청, 정구현, 이주희, 김능경)
2009	2호	고용통계의 계절조정방법 연구 : X-12-ARIMA방법 중심으로 (통계청 사회통계과 박순옥)
	2호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의 AK복합추정량에 관한 연구(통계청 통계개발원)

자료: 통계청, 『통계연구』, 각호

#### (5) 경제활동인구 조사 효율성 분석 종합

경제활동인구 조사는 통계청이 매월 인력구성 및 구조의 변화를 조사하는 중요한 통계이다. 특히 최근과 같이 인구 변화가 매우 빠르게 발생하고, 실업 및 취업구조가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매우 중요한 경제통계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매월 전국적인 규모로 자료조사가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통계청의 g 효율성이 가장 잘 나타나는 통계라고 할 수 있다. 즉 전국적인 지부와 원자료 수집방법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려면 현재의 통계청과 같은 조직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통계청이 최근 이 분야 연구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효율성이 관련 통계를 작성하는 다른 기관보다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 10) 사업체임금근로시간조사

##### (1) 통계품질

사업체임금근로시간 조사는 고용노동부가 매월 자료조사를 통하여 작성하는 조사 통계로 국민생활이나 경제정책수립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최근과 같이 고용문제가 심각하게 사회문제화되는 시기에 이 통계에 대한 통계품질은 매우 중요

한 이슈가 된다.

고용노동부가 작성하는 사업체임금근로시간조사는 2008년 이전에는 매월노동통계로 작성되었던 것이고, 이 매월노동통계가 2006년 품질진단을 받았기 때문에 본보고서는 2006년의 보고서의 내용을 포함하되 이후의 개선사항을 포함하는 방향을 택하였다.

2006년에 실시된 매월노동통계(현 사업체임금근로시간조사)의 품질진단결과는 <표 7.61>와 같다

이때 경제활동인구조사의 품질진단은 OECD 통계품질 진단 방법에 기초하여 통계청이 자체 제작한 통계품질진단 매뉴얼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작성환경, 이용자 만족도 및 작성절차별 진단결과, 품질차원별 진단 결과를 통하여 살펴볼 수 있다.

<표 7.61> 사업체임금근로시간조사 품질진단 결과

(a) 사업체임금근로시간조사 종합만족도

	종합만족도		중요도 (%)
	5점 척도	100점 환산	
통계생산과정부문	3.76	75.2	28.67
활용 편리성 부문	3.49	69.8	32.64
내용충실성부문	3.54	70.8	38.38
종합만족도	3.60	72.0	100.00

(b) 사업체임금근로시간조사 작성절차별 및 품질차원별 진단결과

자체 진단	외부진단			종합 진단	품질평가 수준
	진단1	진단2	평균		
4.5	4.3	4.7	4.5	4.5	우 수

주: 사업체임금근로시간조사의 (구) 매월노동통계조사이다.

자료, 통계청, 『매월노동통계조사』, 국가통계품질진단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2006. 10

먼저 이용자 만족도 결과를 살펴보면 종합만족도가 3.60, 100점 환산으로 72.0점으로 앞에서 살펴본 다른 주요 경제통계에 비하여 다소 낮으나 전반적인 16종 조사통계의 평균 3.60과 같은 것으로 제시되었다. 한편 전문가 분석을 포함한 작성절차별 및 품질차원별 진단결과에서는 <표 7.61>과 같이 종합진단 결과 5점 만점에 4.25 추정되어 16종 조사통계평균 4.6보다 낮은 것으로 제시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할 때 고용노동부가 작성하는 사업체임금근로시간조사는 일반 사용자에게서는 다른 통계와 유사한 수준의 만족도를 제공하나, 전문가사이에서는 다소 그 품질이 떨어지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일부의 문제점을 제외하고는 매우 대체로 우수한 통계로 판단된다.

## (2) 통계작성 비용

### ① 기획관련 사항

사업체임금근로시간조사는 <그림 7.9>와 같이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내 노동시장 분석과에서 수행하고 있다. 현재 노동시장분석과는 고용정책에 관한 14종의 통계를 작성하고 있다. 즉 고령자고용현황, 장애인의무고용현황, 외국인근로자(고용허가제) 고용동향,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사업체고용동향조사, 사업체임금근로시간조사, 사업체기간제근로자현황조사, 임금교섭타결현황, 최저임금적용효과에 관한 실태 조사 등 14종의 통계를 1인의 과장 하에 18명의 공무원이 나누어서 추가적인 임시직원의 도움으로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1인당 약 1개 정도의 통계를 담당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고용노동부의 통계작성에서 기획이나 분석 등은 담당공무원이 수행하지만, 실제 통계작성 업무는 외부 기관에 외주를 통하여 해결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이들 담당자가 통계전문가가 아니고 전문적인 교육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2006년 매월노동통계 품질진단 당시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있다. “매월노동통계작성자는 실무 담당자 1인이 자료처리를 위한 2인의 도움을 받아 조사기획, 교육, 지도, 분석 및 결과보고까지 거의 모든 업무를 수행하는 상황이다.” 또한 이러한 사항을 당시 보고서는 “현재의 인력구조로는 전산 프로그램을 이용한 오류자료 검토나 특이치를 검출하여 조정할 수 있는 정도의 업무처리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후 4년이 지난 2010년 현재 위에서 제시한 사항이 크게 바뀐 것은 없다. 현재 담당자는 실제 조사업무를 외부기관에 용역으로 해결하고, 주요 분석지표를 도출하여 정책기관에 제공하는 것을 집중하고 있다. 비록 통계담당인원이 통계전문인력으로 상당기간 통계를 전담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전문성을 확보되어 있는 실정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림 7.9>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 조직 구성



<표 7.62> 사업체임금근로시간조사의 주요 연혁

년도	내용
1968. 4	통계작성 승인(상용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체대상 조사)
1969. 1	노동이동조사와 매월근로자임금통계조사를 통합하여 매월노동통계조사로 변경
1973. 4	작성주기 변경(분기 →월)
1993. 11	통계작성 승인번호 변경
1996. 10	변경승인(매년 2회 특별조사 실시. 4월, 10월 중)
1999. 1	변경승인(조사대상을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로 확대)
2002. 3	표본수 변경(매월조사 5,600개 > 6,700개, 특별조사 8,600개 > 9,600개)
2002. 11	변경승인(특별조사 매년 2회에서 1회 실시, 4월)
2005. 1	표본수 변경(매월조사 6,700개 > 7,438개, 특별조사 9,600개 > 10,776개)
2008. 3	변경승인(매월조사에서 분기조사실시)
2008. 3	표본수변경(분기조사 7,438개 > 9,347개, 특별조사 10,776개 > 13,233개)
2008. 3	조사명칭, 조사대상 및 조사주기 변경 · 조사명칭: 매월노동통계조사 → 사업체 임금근로자시간조사 · 조사대상: 상용근로자 5인 이상 → 상용근로자 1인 이상 · 조사주기: 월 → 분기

② 자료수집비용

사업체임금근로시간조사통계는 연혁에서 볼 수 있듯이 1969년부터 『매월노동통계』에서 시작된 오래된 통계이다. 때문에 많은 통계작성의 노하우를 고려할 수 있고, 또한 담당부서인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내 노동시장 분석과에서 14종의 통계를 작성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 수준의 규모의 경제 효과를 누리고 있다고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통계작성의 현황을 살펴보면 이러한 효과가 크게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통계담당 인원이 상당기간 통계를 다루었고, 관련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일부 이러한 효과가 나올 수 있지만, 자료수집의 경제성 효과를 누리는 어려운 실정이다.

다만 외부용역기관을 통하여 통계자료 조사 및 분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들



외부기관의 효율성이 어느 정도 작동하는가와 통계작성자가 이를 적절히 관리감독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남아있는 실정이다.

이 통계를 통계청이 작성할 경우 자료 수집 면에서 효율성을 개선될 것인가를 살펴보기 위하여 통계청이 실시한다는 가상적인 상황을 고려하였다.

첫째, 이 통계는 전국대상의 표본을 사용하는 조사통계이기 때문에 조사를 전문하는 통계청이 매우 효율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통계이다. 다만 현재의 외부용역사와 통계청간 누가 더 효율적일 수 있는 가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으나 전국적인 규모의 국가통계 조사에서는 통계청이 보다 우월한 조직과 인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자료수집방법 개선이나 비용절감방안에 대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구조이다. 즉 용역회사를 통하여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매년 업체가 바뀔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셋째, 오랜 기간 동안 작성된 중요 국가통계를 과연 외부용역기관이 작성하는 것이 올바른가에 대한 의문이다. 임금은 노동관련 대표적인 중요통계인데 매년 다른 기관이 통계를 작성할 경우 일관성에서 문제점이 제기될 수 있다. 계속되는 통계작성으로 노하우를 축적하고 이를 통계개선에 활용하여야 하는데 이것이 상당부분 어렵기 때문이다.

### ③ 자료 정리 및 분석

현재 사업체임금근로시간조사 통계에서 수집된 자료를 정리하고 분석하는 것은 상당부문 외부용역업체에서 수행하고 있다. 물론 이 과정에서 고용노동부 담당자의 지식과 경험이 상당 수준 내포될 수 있으나, 대체로 용역기관은 상당부문 자신의 갖고 있는 방법으로 정리하고 분석하게 된다.

따라서 이 통계를 통계청 작성할 경우와 효율성을 비교하는 것은 실제로 해당 외부용역업체와 통계청을 비교하는 것이 된다. 사실상 외부용역업체는 상당수준의 통계자료 정리 능력 및 분석능력을 갖고 있으나 이러한 전국단위의 자료 조사 및 수집에서 통계청 역시 우수한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통계청 업무를 통한 효율성 개선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 (3) 통계발표 및 홍보

고용노동부는 사업체임금근로시간조사 발표 이후 관련 통계에 대한 보도 자료를

제하고, 분기별로 정기간행물을 발간한다.

<표 7.63>와 같이 2008년 사업체임금근로시간조사로 명칭이 바뀐 이후 분기별 조사를 마친 후 보도 자료를 제시하고 있으며, <표 7.64>과 같이 이를 자세하게 설명한 사업체임금근로시간조사 보고서를 작성한다. 그리고 연간으로는 지역별 임금근로자시간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관련 내용을 발간하고 있으며 이들 발간물은 모두 고용노동부 고용노동통계웹사이트(<http://laborstat.molab.go.kr/>)를 통하여 제공되고 있다.

한편 관련 통계에 대한 자세한 정보나 시계열자료는 인터넷웹사이트의 통계자료나 메타데이터 부문을 통하여 제공되고 있다. 이밖에 고용노동부는 <표 7.67>과 같이 사업체 임금근로시간조사와 관련되는 많은 노동통계 발간물을 제공하고 있다.

#### (4) 장기적인 효율성 유지 및 개선

본 통계의 장기적인 통계효율성을 유지하고 개선을 하려면 이에 적합한 인력배치와 조직구성이 필수적이다. 현재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내 노동시장 분석과의 인력배치나 관련 준비사항을 고려하면 노동시장분석과내에서 직접적인 업무를 추진하기에는 불가능하다.

<표 7.63> 2007년~2009년 사업체임금근로시간조사 관련 노동부 보도자료

연도	날짜	제목
2007	매월	매월 노동통계조사 결과
2008	02/14	2007년 11월 매월노동통계조사 결과
	02/14	2007년 12월 매월노동통계조사 결과
	매분기	매분기 사업체임금근로시간조사 결과
2009	매분기	매분기 사업체임금근로시간조사 결과

<표 7.64> 고용노동부 사업체임금근로시간조사 관련 설명자료

구분	연도	연호	제목
사업체임금근로시간조사 보고서	1999~2007	1월-12월	사업체임금근로시간조사 보고서
	2008	분기	사업체임금근로시간조사 보고서
	2008	연간	연간 지역별 임금근로자시간조사 보고서

<표 7.65> 고용노동부의 사업체임금근로시간조사 관련 발간물

연도	권호	제목
2001~2007	매년	노동력수요동향조사보고서
2008	1호, 2호	인력수요동향조사보고서
2009	1호, 2호	사업체고용동향특별조사보고서
2000~2008	매년	기업체노동비용조사 보고서
2006~2009	매년	고용형태근로실태조사 보고서
1999~2007	매년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보고서
2003~2009	매년	노동통계연감
2003~2008	매년	사업체노동실태현황
2000~2005	매년	소규모사업체노동실태조사 보고서

한편, 고용노동부는 산하에 전문연구기관으로 노동연구원을 갖고 있어 이 연구원을 적절하게 활용하여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실제로 고용노동부는 2008년 노동연구원을 활용하여 독자적으로 『노동통계의 체계적 관리·활용을 위한 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하고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이는 노동부의 필요에 적합하게 노동통계가 작성되고 있는 가를 조사한 품질진단 보고서로 특히 노동행정통계를 집중하여 분석하고 개선방안 도출을 통하여 노동통계 품질개선을 노력한 증거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미 2003년 노동연구원의 『노동통계개선방안』를 통하여 노동통계의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현실을 고려할 때 과연 고용노동부가 어느 정도 노동통계품질개선에 성공할 수 있는 가는 관련 시스템보다는 담당자의 노력과 의지가 보다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즉 노동통계를 계속 분석하고 개선하는 시스템은 구비되어 있지 않지만 필요에 따라 이를 수행할 수는 있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통계청은 상당부문 효율성 면에서 우위성을 가질 수 있다.

반면, 최근과 같이 노동시장의 변화가 빠르기 일어나고 정책적인 중요성이 강조되는 경우에 과연 통계청이 이러한 사항을 빠르게 고려하여 해결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남는다. 더욱이 고용노동부가 이 통계의 작성을 통계청에 위임한 경우, 고용노동부의 각종 요구에 통계청이 과연 신속하게 반응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도 남는다. 각종 문제에 대처하는 통계청의 해결능력은 매우 뛰어나다고 볼 수

있지만 공공기관의 특성상 그 절차가 복잡하여 해결이 실제로 늦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면에서는 현재와 같이 외부기관을 통한 통계작성이 보다 우월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겠다.

#### (5) 사업체임금근로시간조사 효율성 분석 종합

사업체임금근로시간조사는 고용노동부가 매월 임금 및 근로시간을 조사하여 발표하는 중요 통계이다. 이는 노동자의 생활수준 및 기업의비용 및 최저임금, 소득분배 등의 분석에 사용할 수 있는 중요한 통계이다. 그러나 현재 이 통계는 고용노동부의 해당과 단위에서 담당하는 많은 통계의 하나로 외부 용역을 통하여 작성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한 직원이 여러 통계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성이나 효율성에서 문제점이 제기될 수 있는 통계이다. 따라서 통계청과 같은 전문작성기관의 작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통계라고 할 수 있다.

## 2. 부문별 경제통계

### 1) 국민계정

국민계정은 제3장과 5장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국민소득, 산업연관, 자금순환, 국제수지, 국민대차대조표 등 5대 주요 거시경제통계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이중 국민대차대조표를 제외한 국민소득, 산업연관, 자금순환, 국제수지통계를 한국은행이 작성하고 있다.

따라서 국민계정 통계만을 소부문으로 구분하여 볼 때 국민계정 통계는 집중형시스템 하에서 작성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어느 정도 규모의 경제 및 범위의 경제가 충분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통계품질 면에서 이들 모두는 국내 통계청의 품질진단 결과나 IMF의 품질진단 결과에서 대체로 우수한 통계로 판단되었다.

한편 국민계정 통계의 신뢰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작성기관인 한국은행의 신뢰성을 조사하면 매우 만족스러운 것으로 나타난다. 한국은행은 우리나라의 통화를 발행하고, 통화신용정책을 추진하는 기관으로 상당한 신뢰성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은행은 지난 1957년 이후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국민계정을 작성하여 오면서 상당수준의 노하우를 갖고 있다고 인정되어 왔기 때문이다.

국민계정통계의 작성 효율성은 앞과 같이 기획, 자료수집, 분석 및 발간, 장기적인 효율성 개선 가능성 등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먼저 기획단계에서 한국은행은 이들 통계를 지난 수십년 동안 작성하여 왔고, 또한 상당 수준 개선하는데 노력하였으며, 통계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있어 문제가 크지 않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자료 수집의 효율성 면에서 일부 통계에서 비효율성이 제기될 수 있다. 즉, 자금순환이나 국제수지 등은 각각 보고통계와 가공통계로 자료를 보고 받거나 수집하는 기관의 수가 많지 않다. 또한 주로 금융기관의 자료를 수집하는데 한국은행의 역할이 민간 금융기관과 직접 연관을 맺기 때문에 상당히 수월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많은 자료를 수집하여 작성하는 국민소득이나 산업연관표의 경우에는 다소 문제점이 제기된다고 할 수 있다.

즉 이들 기초통계를 작성하는 기관이 통계작성기준이나 방법을 새롭게 개선할 경우, 이에 대한 정보교환이나 수집이 다소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비록 최근 메타통계의 자료 교환이 활발해지고 통계작성 방법의 공개도가 크게 높아졌지만 이들 통계의 변화를 국민계정이나 산업연관표 작성자들이 모두 살펴보는 것은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산업연관표는 다른 기관이 작성하는 각종 통계이외에서 직접 산업조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즉 한국은행은 전국에 해당 기업을 선정하고, 조사 직원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통계청에 비하여 효율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조사 업무에서 우수한 조사원 선택과 조사원의 경험 및 교육이 통계의 질에 커다란 영향을 준다는 것을 고려할 때 비용문제와 관련하여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또한 최근과 같이 관련 기업들로부터 자료를 얻기가 점차로 어려워지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이러한 문제점이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즉 기업에 대한 많은 통계 자료가 요청되는 현실과 기업들의 자료보안 문제가 심각해지는 현황을 고려할 때 응답자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한편 현재 작성되고 있는 이들 4개의 국민계정 통계가 국가경제를 나타내는 중요 지표로 SNA 68이후 상호 연관성이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으나, 일부 통계는 그렇지 않은 실정이다. 즉 일부 통계는 상당히 전문적인 부문 지식을 요구하는 반면 나머지는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전 세계적으로 많은 국가에서 이들 4개 통계 작성기관이 모두 같은 국가는 많지 않다. <표 7.66>과 같이 집중형시스템을 택하고 있는 영국, 캐나다, 및 호주에서 각각 ONS, StatCan 및 ABS가 각각 이를 작성하고 있다. 또한 분산형시스템을 택하고 있는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등에서는 서로 다른 몇몇 기관들이 이를 작성하고 있다.

특히 한 기관이 국민계정 통계를 모두 작성하는 국가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중앙

통계기관이 이들 통계를 모두 작성하고 있으며, 국민계정 통계가 분리되어 작성되는 국가에서도 국민소득이나 산업연관 통계는 모두 중앙통계기관이 작성하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반면, 자금순환이나 국제수지와 같이 금융관련 통계는 중앙은행이 대부분 작성하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이는 이들 국민소득이나 관련 통계작성기관이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기관들과 상호 연관성을 갖는 것이 통계작성의 효율성과 상당부문 연관을 갖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결론적으로 한국은행은 현재 5대 국민계정 통계를 우수한 품질로 생산하고 있다. 그리고 각종 연구 활동을 통하여 장기적인 통계개선에도 뚜렷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5대 계정을 모두 생사하면서 상당한 수준의 규모의 경제 효과도 누리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며, 각종 홍보를 통하여 국민계정 통계의 유용성도 극대화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한국은행은 원자료를 작성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들 자료의 변화에 대한 대응속도가 늦으며, 원자료 원자료 추가확보나 개선을 통한 국민계정 통계 개선에 한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는 특히 많은 원자료를 사용하는 산업연관표나 국민소득 등에서 보다 가시적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표 7.66> 주요국 국민계정 작성기관

국가	국가통계 시스템	국민계정 시스템	국민소득	산업연관	자금순환	국제수지
미국	분산형	분산형	BEA	BEA	FRB	BEA
영국	분산형	집중형	ONS	ONS	ONS	ONS
독일	분산형	분산형	FSO	FSO	BB	BB
일본	분산형	분산형	내각부 (ESRI)	총무성	BOJ	BOJ
캐나다	집중형	집중형	StatCan	StatCan	StatCan	StatCan
호주	집중형	집중형	ABS	ABS	ABS	ABS
프랑스	집중형	분산형	INSEE	INSEE	INSEE, BDF	BDF
한국	분산형	집중형	한국은행	한국은행	한국은행	한국은행

주: 1) 프랑스 자금순환계정의 금융계정은 BOF가 실물계정은 INSEE가 담당하여 작성함  
 2) BB: Bundes Bank(독일), BOF: Banque De France(프랑스), FRB: Federal Reserve Board(미국), StatCan: Statistics Canada

## 2) 물가부문

우리나라에서 통계청이 국가승인통계로 물가를 구분하는 통계는 소비자물가조사 석유제품가격통계, 전국지가변동률조사,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수출입물가조사, 생산자물가조사, 상가건물임대차실태조사, 농가판매및구입가격조사 등 8종의 통계이다. 그러나 소비자물가, 생산자물가 및 수출입물가는 전반적인 물가수준을 보여주는 통계이고, 나머지 물가지수는 특정 상품이나 산업의 상품가격 지수를 나타내기 때문이 본 연구에서 물가부문의 통계로는 소비자물가, 생산자물가 및 수출입물가를 대상으로 삼았다.

이들 물가통계의 부문별 효율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이들 개별 통계의 특성의 공통점과 작성기관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들 통계는 해당 기관이 매월 전국의 표본조사를 통하여 작성하는 조사통계로 상당금액의 조사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이들은 모두 전국의 통계청 지부나 한국은행 지점 및 시군구청에서 채용한 조사원들이 각종 가격을 조사한 결과를 취합하여 작성하는 통계이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각 조사되는 상품의 종류와 대상이 차이가 나는 것이다.

둘째, 이들 통계는 유사한 방식으로 작성되며, 매 5년마다 지수 기준치를 조정하고, 물가지수 포함 품목 및 가중치를 조정하여 한다. 이들 물가지수는 모두 기준시점을 중심으로 표시되는 지수로 기준치가 조정되는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셋째, 이들 통계는 상대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작성되어 정착된 통계이다. 이중 가장 오래된 생산자물가는 1910년 7월에 작성되기 시작하였고, 소비자물가는 1965년에, 수출입물가는 1976년에 각각 작성이 시작된 통계이다.<sup>77)</sup> 따라서 이들 통계의 작성기관들은 상당히 안정된 방법으로 이들의 통계를 작성하고 있으며 새롭게 추계방법을 개정하거나 수정할 유인이 그렇게 많지 않은 통계이다. 또한 이들 통계를 사용하는 사용자들 역시 이들에 대한 상당한 지식을 갖고 활용한다고 볼 수 있다.

넷째, 이들 통계는 국제적으로 작성방법이 통일되고 인정된 통계로 우리나라 역시 국제적인 규범에 맞추어서 작성하고 있다. 특히 소비자물가와 생산자물가는 모두 UN 이 제정한 방식에 따라 작성되며, 국제간의 비교가 가능한 통계이다.

---

77) 이는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의 물가지수이며, 당시 수도였던 경성지역의 물가를 작성한 것으로 『경성중요물가표』라는 명칭으로 발표되었다. 최초수출입물가는 한국은행이 1957년을 기준년도로 한 수출입물가지수를 1958년 10월에 처음으로 편제하여 공표한 것이었다. 그러나 당시 우리나라의 무역규모가 작았을 뿐만 아니라 수출입물가지수의 이용도가 낮아 1964년말에 편제가 중단되었다.

다섯째, 이들 통계는 모두 권위 있는 국가기관이 작성하는 상당히 우수한품질의 통계이다. 즉 소비자물가는 통계청이, 생산자물가와 수출입물가는 모두 한국은행이 작성하는 통계로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모두 일정 수준 이상의 통계품질을 보유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물가부문 통계작성 시스템은 분산형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소비자 물가는 통계청이 작성하고 있으나, 생산자물가 및 수출입물가는 한국은행이 작성하기 때문에 물가부문통계는 분산형시스템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밖에 통계청이 물가로 구분하는 5종의 다른 통계역시 모두 다른 기관이 작성하고 있다.<sup>78)</sup>

따라서 물가부문의 통계는 집중형시스템으로의 이전을 통하여 규모의 경제 및 범위의 경제 효과를 누릴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를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통계 기획단계 및 연구개발단계에서 이러한 효과가 발생한다. 즉 이들 통계는 유사한 방법으로 작성되는 통계이기 때문에 연구 개발인력을 통합할 경우 규모의 경제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된다. 특히 5년마다 지수개편 및 품목조정시 전문 인력의 효율적인 활용이 기대된다.

둘째, 이들 통계는 모두 전국적인 표본을 활용하는 조사통계이기 때문에 통일적인 조사를 통하여 조사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특히 조사원 교육이나 수집자료 입력 등에서 규모의 경제 및 범위의 경제 효과를 통하여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 특히 생산자물가는 직접적인 기업의 응답으로 작성되고 모집단이 광공업통계조사대상업체이기 때문에 이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과 긴밀한 관계를 맺는 기관이 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조사업체의 답변 업무 과중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이는 국제적으로 인정된 통계로 이 통계의 개선이나 조정을 위해서는 국제적인 협력이 필요한 통계라 할 수 있다. 이때, 유사한 통계에 관련된 국제회의나 지수개발연구 등에 두 개의 기관이 참여하는 것은 비효율을 유발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전 세계적으로 물가는 대체로 하나의 기관이 작성한다고 볼 수 있다. 즉 많은 선진국에서 소비자물가와 생산자물가, 수출입 물가는 같은 기관이 작성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표 7.68>과 같이 국가통계시스템에서 집중형시스템을 사용하는 캐나다, 호주, 영국, 독일의 경우에는 각각 SC, ABS, OSN, FSO와 같이 중앙정부의

78) 이들 물가통계는 과거 한국은행이 모두 작성하던 통계들이다. 현재까지 생산자물가 및 수출입물가는 한국은행이 작성하고 있으나, 소비자물가는 1965년 12월부터 현 통계청의 전신인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이 작성을 시작하기 시작하여 오늘에 이른 것이다.



통계담당기관이 직접 작성하고 있으며, 분산형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미국에서도, BLS가 이들 3개의 물가를 모두 작성하고 있으며 프랑스 역시 INSEE가 작성하고 있다. 다만 일본에서는 일본은행이 생산자물가는 작성하는 반면, 분산형시스템을 사용하는 일본은 총무성(MIAC: Ministry of Internal Affairs and Communications)이 소비자물가를 작성하는 반면, 일본은행이 생산자물가와 수출입물가를 작성하고 발표하고 있다.<sup>79)</sup>

한편 분산형시스템의 이점인 정책담당부서와의 연계성 강화에 대한 이점과 단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1998년 목표물가상승률제도(Inflation Targeting)의 도입과 함께 한국은행은 소비자물가상승률을 통화정책의 목표로 삼고 각종 통화정책을 수행하고 있다.<sup>80)</sup> 이에 따라 한국은행은 소비자물가와 통화정책에 관한 많은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는 소비자물가 지수 개선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둘째, 한국은행은 소비자물가상승률에 따라 정책수행의 성공 여부를 평가 및 판단 받는 기관이 된다. 즉 목표물가상승률 제도에 따라 한국은행은 매년 목표 물가상승률 범위를 발표하고 이의 달성을 기관 성과달성의 주요 지표로 삼는다. 때문에 피 평가기관이 평가를 받는 지표를 작성하는 것은 이치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은행은 소비자물가를 작성할 수 없는 제약을 갖는다.

셋째, 우리나라의 물가정책을 직접 담당하는 부서는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의 물가정책과이다. 현재 통계청이 기획재정부 소속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통계청은 물가정책을 직접 담당하는 부서와 관련이 많다고 할 수 있다. 때문에 통계청은 이들 기관과의 연관성을 통하여 현실 물가지수의 문제점을 직면하고, 개선하려는 수요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물가지수는 효율성 측면에서 볼 때, 하나의 기관으로 통합될 경우 집중형시스템의 이점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통계청이 기획재정부 소속이기 때문에 담당부서와의 연계성도 높아, 시장에서의 지수 개편에 대한 수요로 매우 빠르게 인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79) 일본은행은 생산자물가(기업물가조사)를 이미 1997년부터 실시하여 오늘에 이르렀다.

80) 한국은행의 목표는 이밖에 금융시장 안정과 지급결제시스템 안정 등이 있다.

<표 7.67> 주요국의 물가통계 작성기관

	소비자물가	생산자물가	수출입물가
미국	BLS	BLS	BLS
영국	ONS	ONS	ONS
독일	FSO	FSO	FSO
일본	MIAC	BOJ	BOJ
캐나다	StatCan	StatCan	StatCan
호주	ABS	ABS	ABS
프랑스	INSEE	INSEE	INSEE
한국	통계청	한국은행	한국은행

주: ABS: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오스트레일리아), BLS: Bureau of Labor Statistics(미국), FSO: Federal Statistical Office(독일), MIAC: Ministry of Internal Affairs and Communications(총무성, 일본), ONS: The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영국), StatCan: Statistics Canada(캐나다)

### 3) 산업생산지수

산업생산지수는 광공업생산지수, 서비스업지수 등으로 구성되어 월별로 작성된다. 먼저 광공업생산지수는 광공업의 대표적인 조사통계로 통계청 경제통계국 산업동향과가 작성한다. 이는 현재 서비스업조사와 함께 산업활동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월별 지표로 경기 동향 판단이나 현황분석에 매우 요긴하게 사용되는 지수이다.<sup>81)</sup>

서비스업 생산지수는 정부의 경제정책과 기업의 경영계획 수립 등에 필요한 서비스업의 동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서비스업동향조사를 통하여 작성되는 통계이다. 즉 서비스업 생산지수는 재화의 판매, 서비스의 제공 등 조사대상 포괄업종(13개 산업대분류)에 해당하는 경제활동을 수행하는 약 9,200개 대상처(사업체, 기업체, 기관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이때 사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응답자와 면접을 통해 조사표를 작성하는 방법과 응답자가 직접 조사표를 작성하는 자기 기입식 조사(CASI)를 병행하여 이루어지며, 통계청 지방통계청 및 통계사무소가 조사 및 조사내용 입력, 전송하고, 통계청 서비스업동향과가 이를 집계, 분석 및 공표하고 있다.

81) 광공업생산지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제5장의 우리나라의 경제통계시스템의 광공업생산지수를 참조하시오.

이들 서비스업생산지수와 광공업생산지수 등 산업생산지수들은 국가경제의 현황을 월간지표로 나타내는 매우 중요한 통계이다. 이들 통계는 전국적으로 많은 표본을 사용하여 작성하는 조사통계로 조사비용이 많이 수반되는 통계이기 때문에 통계전문기관이 작성하는 경향이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통계청이 이들 서비스업생산지수와 광공업생산지수 통계를 모두 작성하고 있기 때문에 집중형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다. 즉 통계청은 이들 통계를 동시에 작성하여 발표함으로써 통계작성에서 규모의 경제 효과를 볼 수 있고, 또한 이들 통계를 매월 산업활동동향 보도 자료로 함께 발표함에 따라 통계청이 경제활동 변화를 제시하기에 포괄적일 수 있다. 즉 통계청의 발표내용에서 이들 광공업과 서비스업을 포괄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용자들 역시 한꺼번에 이들 정보를 동시에 접하여 경제활동을 보다 쉽게 판단할 수 있는 이점을 갖게 된다.

또한 이들 통계는 국민소득 계정 추계의 기초자료이기 때문에 국민소득 계정 추정기관이 동시에 추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표 7.68>에서와 같이 채택하고 있는 미국과 일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이 두 통계는 같은 기관이 작성하고 있는 실정이다.

<표 7.68> 주요국의 산업생산 작성기관

	광공업생산지수	국민소득계정
미국	FRB	BEA
영국	ONS	ONS
독일	FSO	FSO
일본	산업성(METI)	ESRI
캐나다	StatCan	StatCan
호주	ABS	ABS
프랑스	INSEE	INSEE
한국	통계청	통계청

자료: 각국 통계청 웹사이트

#### 4) 고용 및 임금

노동통계는 주요 통계로 노동력에 대한 통계와 임금 및 근로조건에 대한 통계로 성된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보면, <표 7.69>과 같이 우리나라의 국가통계 중 고용부문의 통계는 총 37개이다. 이를 보면 대체로 통계청과 고용노동부 및 고용노동부 산하의 기관이 작성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고용 및 임금부문 통계작성 시스템은 분산형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비록 고용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통계인 경제활동인구조사는 통계청이 작성하고 있으나, 다른 고용통계인 사업체 고용동향특별조사와 임금 및 고용 비용에 관련된 사업체임금근로시간조사, 기업체노동비용조사 및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등은 모두 노동부가 작성하고 있다.<sup>82)</sup>

첫째, 이들 통계는 해당 기관이 매월 혹은 매년 전국의 표본조사를 통하여 작성하는 조사통계로 상당금액의 조사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전국의 시군구청에서 채용한 조사원들이 직접 표본을 찾아 면접하여 작성하는 통계로 많은 비용을 지급하고 있다. 또한 이들 통계들의 상당 부분 유사한 것이 많아서 중복조사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둘째, 이들 통계 중 경제활동인구조사와 사업체임금근로시간조사(구 매월노동통계조사)는 각각 1962년 과 1968년에 시작하여 매우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통계이다. 반면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산업직업별 고용구조조사』, 및 『임금제도 실태조사』 등은 각각 2000년, 2001년 및 2005년에 작성을 시작한 통계로 최근에 신설된 통계이다. 특히 2000내 들어서는 패널자료를 활용하는 통계자료 수집이 늘어났다. 즉 『청년패널조사』(2007년) 『한국노동패널』(1998년) 등이 새롭게 작성되기 시작한 것이다.

82) 한편, 노동력 및 고용에 대한 『경제활동인구조사』 및 『사업체 고용동향특별조사』와 임금 및 고용 비용에 관련된 『사업체임금근로시간조사』, 『기업체노동비용조사』 및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등이 있다. 이때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는 임금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를 다양한 고용형태로 구분하고, 이들의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파악하여 노동정책 참고자료로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는 근로자의 고용형태, 성별, 연령, 혼인상태, 학력, 직종, 근속년수, 경력년수, 직급, 근로일수, 근로시간수, 월급여액, 연간특별급여액, 사회보험 가입여부, 부가급부 적용여부 등을 조사한다. 사업체 고용동향특별조사는 사업체의 적극적인 구인에도 불구하고 충원되지 않는 빈 일자리의 실태를 파악하고, 사업체들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위하여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족인력 규모를 조사하는 것으로 근로자 현황(총근로자수, 내국인(상용/기타), 외국인), 현원, 부족인원 및 채용계획인원(현원(내국인/외국인), 부족인원(내국인/외국인), 채용계획인원(내국인/외국인)), 구인인원 및 채용인원(직능수준별 구인인원, 직능수준별 채용인원, 미충원인원(1순위/2순위))와 구인경로(고용지원센터를 통한 구인신청 여부, 구인시 활용 내용) 및 인력부족 해소를 위한 노력 등을 조사한다. 기업체노동비용조사는 근로자 고용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을 종합적으로 조사·파악하여 복지 고용노동행정 구현을 위한 고용노동정책 입안자료로 사용하고 기업의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주요 조사자료로는 기업체에 관한 사항으로 기업체명, 기업체 소재지, 회계결산기간, 전년도 기업체 노동비용조사표 작성 여부, 상용근로자 월급여 지급연인원, 대표자명, 노조유무, 주요 생산품명 또는 사업내용, 상용근로자수)이고, 노동비용에 관한 사항으로 임금, 퇴직금 등의 비용, 법정복지비용, 법정외 복지비용, 현물지급, 채용관련, 교육훈련, 기타 노동비용 등이 포함된다.

<표 7.69> 우리나라 고용 및 임금부문 통계작성 현황

기관	부문	종수	통계명
통계청(2)	고용	2	경제활동인구조사, 지역별고용조사
고용노동부 (14)	고용	7	고령자고용현황, 장애인의무고용현황, 외국인근로자(고용허가제)고용동향,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사업체고용동향조사, 사업체임금근로시간조사, 사업체기간제근로자현황조사,
	임금	2	임금교섭타결현황, 최저임금적용효과에 관한 실태조사
전체	고용	29	
	임금	8	

자료: 통계청 웹사이트

이렇게 최근에 새롭게 노동통계가 도입된 것은 이 분야에 대한 사회적관심이 집중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즉 1997년~1998년 동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조정과정에서 실업자수가 늘어나면서 실업이 본격적인 사회문제화 되었고, 당시 IMF의 정책권고에 따라 노동의 유연성을 제고하는 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고용의 구조가 크게 바뀌었기 때문이다. 결국 이러한 급격한 사회변화에 따라 기존의 노동 및 고용통계로는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할 수 없게 되었고 이 분야 정책을 담당하는 고용노동부가 직접 관련 통계를 작성하게 되었다.

특히 2001년 이후 경기회복세가 진행되었으나 일부 부분에서는 그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 등장하였고, 고용 없는 성장 추세가 지속됨에 따라 임금격차 문제가 더욱 커지게 되었다. 결국 고용 및 임금 문제가 현재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경제현안중의 하나가 되면서 이에 관련된 통계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게 되었다.

셋째, 이들 통계 중 일부는 국제적으로 작성방법이 통일되고 인정된 통계이나 일부 통계를 신규로 작성되어 그렇지 않은 통계이다. 즉 경제활동인구나 기타 임금관련 통계는 ILO나 OECD가 제공하는 기준에 따라 작성하고 있지만 나머지 통계들은 그렇지 않다. 각 국가마다 고용시장의 특성이 서로 다르고 임금구조역시 다르기 때문에 국민계정이나 물가와 같이 일관적인 형태로 통계를 추계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예를 들어, 고용기준을 선정할 때 군인의 포함여부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즉 징병제의 채택여부에 따라 이것이 다르게 나타나는데 일반적으로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는 군인을 제외한 민간인 기준으로, 그렇지 않은 국가는 전체기준을 고용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다.<sup>83)</sup>

또한 고용통계에 포함 되는 연령범위는 하한연령에서 주로 차이가 나는데 이는 의무교육 연수의 차이에 기인한다. 영국, 미국 등은 16세 이하를 하한 연령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한국, 일본 등은 15세를 하한 연령으로 삼고 있다. 구체적으로 한국, 호주, 일본, 프랑스, 독일은 조사대상 연령층은 15세 이상을, 중국, 미국, 영국, 은 16세 이상을, 스웨덴 등은 15~74세에 국한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고용부문 통계가 분산형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작성기관의 이전 혹은 협력을 통하여 집중형시스템으로 조정할 경우,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하여 규모의 경제 및 범위의 경제 효과를 누릴 가능성이 매우 크다.

첫째, 통계 기획단계 및 연구개발단계에서 이러한 효과가 발생한다. 즉 이들 통계는 유사한 방법으로 작성되는 통계이기 때문에 연구 개발인력을 통합할 경우 규모의 경제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된다. 특히 해당 통계를 공동으로 기획할 경우 다양한 경험에 기초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질문서를 작성하는 등,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둘째, 이들 통계는 모두 전국적인 표본을 활용하는 조사통계이기 때문에 통일적인 조사를 통하여 조사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특히 조사원 교육이나 수집자료 입력 등에서 규모의 경제 및 범위의 경제 효과를 통하여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 또한 유사통계의 질문서를 통일할 경우 실제로 통계를 줄이는 것도 가능하다. 이 경우 특히 응답자의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조사업체의 답변 업무 과중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된다.

셋째, 이는 국제적으로 인정된 통계로 이 통계의 개선이나 조정을 위해서는 국제적인 협력이 필요한 통계라 할 수 있다. 이때, 유사한 통계에 관련된 국제회의나 지수개발연구 등에 두 개의 기관이 참여하는 것은 비효율을 유발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을 고려하여 전 세계적으로 임금 및 노동통계는 대체로 하나의 기관이 작성한다고 볼 수 있다. 즉 많은 선진국에서 임금과 노동 통계는 같은 기관이 작성하고 있다. 즉 아래 <표 7.70>과 같이 미국은 이를 BLS가 작성하며, 캐나다는 SC가 작성한다. 이밖에 영국이나 호주, 독일, 일본 역시 주요 임금과 고용 통계를

83) 조사대상범위가 총노동력 기준으로는 스웨덴, 영국, 일본, 프랑스, 독일, 호주 등이 있으며 민간노동력 군인 제외 기준은 한국, 미국, 대만, 중국 등이 있다

하나의 기관이 작성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노동부문 통계의 효율성 개선을 위해서는 이 두 통계를 하나의 기관이 작성하는 것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표 7.70> 주요국의 고용 및 임금 통계 작성기관

나라	통계	작성기관
미국 (별개 조사)	고용통계	Bureau of Labor Statistics
	임금통계	Bureau of Labor Statistics
캐나다 (별개 조사)	고용통계(Labor Force Survey)	Statistics Canada
	임금통계	Statistics Canada
영국 (별개 조사)	고용통계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ONS)
	임금통계	
호주 (별개 조사)	고용통계(Labour Force Survey)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임금통계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일본 (통합 조사)	고용통계, 임금통계 (Labor Force Survey)	Japan Statistics Bureau
독일 (별개 조사)	고용통계(Labour Market costs)	Federal Statistical Office
	임금통계(Earnings and Labour costs)	Federal Statistical Office

### 3. 경제통계 시스템

우리나라 경제통계시스템은 제3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가통계기관의 조정 능력에서는 집중형시스템의 특징을 갖지만, 실제 작성 통계 범위 면에서는 분산형시스템의 특징을 갖는다. 이는 법률이나 기타 규정상에서 국가통계기관인 통계청이 각종 권한과 책임을 갖고 있지만 실제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정도로 정부기관 내에서 힘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한 상당수의 중요 국가경제통계를 통계청이 작성하지 않고 다른 기관이 작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먼저 즉 국가승인통계 850종 경제통계는 모두 321종이고, 102개 기관이 평균 3.1개의 통계를 작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현실에 기초할 때 경제통계시스템은 분산형시스템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이때, 단일기관으로는 통계청이 39종의 통계를 작성하여 가장 많은 경제통계를 작성하고 있으며, 10종이상의 통계를 작성하는 기관은 한국은행 15종, 고용노동부 14종, 국토해양부 17종, 농림수산식품부 17종, 산림청 10종, 중소기업청 8종, 지식경제부 17종 등 주로 정부기관들이다.

이렇게 정부기관들이 많은 경제통계를 작성하는 이유는 각 기관이 필요에 따라 각종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하였고 이후 이를 통계청에 신고하여 국가승인통계로 만들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편 앞에서 살펴본 주요 통계를 보면, 국민계정은 한국은행이 실시하고, 주요 물가는 통계청과 한국은행이, 산업생산 통계는 통계청이 노동통계는 상당수를 노동부가 작성하고 있으며, 재정통계는 재정부가 작성하고 있다. 비록 개별 부문별로는 일부 집중형시스템 형태를 띠다고 볼 수 있으나 경제통계를 통괄한 것은 분산형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다.

경제통계작성기관의 세계적인 현황을 살펴보기 위하여 우리나라와 주요 선진국의 경제통계작성기관을 <표 7.71>에서 제시하였다. 이를 보면 다음의 특징이 나타난다.

첫째, 캐나다와 오스트레일리아, 독일 등 집중형시스템을 채택하고 있는 국가는 거의 모든 중요 경제통계를 중앙통계기관이 직접 작성한다. 즉 집중형 국가의 대표적인 이들 캐나다와 오스트레일리아 등의 특징은 경제통계에서도 이러한 특징이 그대로 나타난다.

둘째, 집중형 성격이 강한 독일과 같은 국가에서도 일부 전문적인 통계는 중앙은행 등 국가통계기관이 아닌 기관이 작성한다. 이들 중앙은행이 작성하는 통계는 자금순환표나 국제수지 등 금융부문의 자료를 많이 활용하는 경우로 중앙은행이 각종 전문지식이나 우수한 보고체계를 활용하기 쉽기 때문이다.

셋째, 분산형시스템을 채택하고 있는 국가도 효율성 문제를 활용하기 위하여 2 3 개 기관이 중요한 경제통계를 작성하고 있다. 대표적 분산형시스템 채택국가인 미국도 BLS와 BEA 및 FRB 등 주요 정부기관이 대분의 주요 경제통계를 작성하고 있고, 영국도 ONS가 대부분의 중요 경제통계를 작성하고 있다. 한편 프랑스 역시 INSEE가 주요 경제통계를 모두 작성하고 있다.

넷째, 분산형시스템을 채택한 일본은 실제로 많은 기관이 개별적으로 주요 국가 통계를 작성하고 발표한다. 이는 국가통계시스템 중 가장 분산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본은 분산형시스템의 비효율을 줄이기 위하여 각종 구조조정을 실시하는 것을 보아 점차적으로 집중형시스템의 이점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특징을 살펴볼 때, 대체로 경제통계는 어느 정도 분산형시스템의 효율성



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즉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 통계환경이나 경제 환경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통계활용기관이 통계를 직접 작성하는 것이 필요한 반면 통계작성의 효율성을 보유하기 위해서는 집중형시스템의 효율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표 7.71> 세계 주요국의 주요 경제지표 작성기관

		미국	영국	독일	일본	캐나다	호주	프랑스	한국
국민계정	국민소득	BEA	ONS	FSO	내각부(ESRI)	SC	ABS	INSEE	BOK
	산업연관	BEA	ONS	FSO	총무성	SC	ABS	INSEE	BOK
	자금순환	FRB	ONS	BB	BOJ	SC	ABS	INSEE, BDF	BOK
	국제수지	BEA	ONS	BB	BOJ	SC	ABS	BDF	BOK
물가	소비자물가	BLS	ONS	FSO	MIAC	SC	ABS	INSEE	통계청
	생산자물가	BLS	ONS	FSO	BOJ	SC	ABS	INSEE	BOK
	수출입물가	BLS	ONS	FSO	BOJ	SC	ABS	INSEE	BOK
산업생산	산업생산지수	FRB	ONS	FSO	산업성(METI)	SC	ABS	INSEE	통계청
고용임금	경제활동인구	BLS	ONS	FSO	MIAC	SC	ABS	INSEE	통계청
	임금	BLS	ONS	FSO	MIAC	SC	ABS	INSEE	고용노동부
재정	재정수지	OMB	ONS	FSO, BB	재무성(MF)	SC	ABS	INSEE	기획재정부
금융	통화지표	FRB	BOE	BB	BOJ	BOC	RBA	BDF	BOK
	이자율	FRB	BOE	BB	BOJ	BOC	RBA	BDF	BOK
	주가	NYSE	LSE	DB	TSE	TSX	ASX	Euronext	KRX

주: 1) MITI는 일본의 Ministry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 MF는: Ministry of finance, DT: department of the treasury를 의미하며, 주가는 각 국가별 대표거래소 기준임  
 2) NYSE: New York Stock Exchange, LSE: London Exchange, DB: Deutsche Borse, TSE: Tokyo Stock Exchange, TSX: Toronto Stock Exchange, ASX: Australian Exchange, Euronext: European stock exchange, KRX: Korea Exchange등을 의미함

그리고 위의 기준과 세계적인 추세를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통계 역시 같은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즉 보다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는 통계는 해당 기관이 작성하고, 일반적이면서, 통계작성 비용이 많이 수반되는 대규모 통계는 통계전문기관이 작성하는 분업 체계가 보다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통계 작성의 역사과 과정을 볼 때 단기적으로 이를 달성하는 것은 어렵고 장기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 제 8 장 경제통계 효율화 정책

### 1. 효율화 정책 설정의 기준

통계청은 우리나라 국가통계를 기획하고, 조정하는 국가 최고의 기관으로 우수한 통계를 보다 효율적으로 작성할 의무와 권한이 있다. 이에 따라 통계청은 국가통계 혹은 경제통계의 효율화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 및 전략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때 통계청은 제7장의 분석내용에 기초하여 각 국가통계들이 일정 수준 이상의 품질을 달성하고 작성 비용이 극소화될 수 있도록 정책 수립의 기본 기준으로 설정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장기적으로도 일정 수준 이상의 품질이 달성되며 비용 극소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통계시스템을 구성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통계청의 통계효율화 방안의 목표로 ① 현 통계품질 수준 평가, ② 비용극소화, ③ 장기적인 개선 가능성 기타 등으로 구분하고, 해당 기관이 작성하는 통계를 통계청이 작성할 경우, 비용과 시간을 분석하여 통계청의 작성 가능성을 평가하게 된다.

이때 만약 현재 작성되는 통계의 품질이 일정 수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1) 기존 작성시스템을 그대로 활용하되 통계청이 측면에서 지원할 것인가와 (2) 장기적으로 통계청이 직접 작성할 것인가를 결정한다.

그러나 통계품질이 일정 수준에 도달한 경우에는 비용측면에서 통계청과 비교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품질 및 비용측면에서 기존 통계의 효율성이 장기적으로 지속될 가능성을 통계청과 비교하여 평가한다.

이상의 단계를 통하여 통계를 평가한 이후, 통계작성기관 조정에 대한 일차적인 견해가 도출된다. 그러나 위의 기준과 단계는 통계작성 시스템의 구조를 결정하기 너무도 단순하다. 때문에 이를 분석할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인 기준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다.

즉 개별적인 통계를 보고 개별적인 기준을 사용하여 효율성 여부를 판단하고 정책을 제시하는 것보다는 보편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이에 기초하여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기준 1: 장기적인 국가통계효율화 정책 방향과 일치하여야 한다.

경제통계는 국가통계에 일부이기 때문에 국가통계효율화 방안과 일치하도록 경제

통계효율화방안이 수립되어야 한다. 만약에 이것이 서로 일치하지 않은 경우, 기존의 국가통계 작성기관은 많은 불만을 표시할 수 있다. 특히 통계청으로의 통계작성 기관 문제를 제시할 경우, 해당 기관은 통계청의 장기적인 방향에 입각하여 이를 비판할 가능성이 크다. 즉 통계작성기관 이관 문제는 기관 대 기관 간의 협조를 요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해당 기관의 장기적인 수행 목표와 연관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 먼저 우리나라의 통계 작성 시스템을 집중형시스템으로 구성하여야 하는가 혹은 분산형시스템으로 구성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방향이 제시되고, 경제통계 역시 이에 맞추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제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들 시스템은 모두 나름대로 강점과 약점을 보유하고 있어 각국의 사정에 따라 그 이점이 극대화되고 약점이 극소화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선택이 이루어지고, 경제통계시스템의 효율화방안이 이에 부합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편 이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이 과연 통계청의 역할이다. 통계청은 제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통계작성기관이면서 동시에 국가통계시스템을 관장하는 기관이다. 통계청의 역할에서 전자가 강조될 경우, 통계청은 직접 중요 통계를 작성하여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후자가 강조될 경우, 직접 통계를 작성하기 보다는 해당 통계작성기관을 조정하고 통계 개선업무에 추진하게 된다.

결국 우리나라 경제통계 효율화정책은 우리나라 국가통계시스템의 장기 발전방향과 일치하도록 추진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추진에 앞서서 통계청의역할 정립이 보다 확실하게 설정되는 것이 필요하다.

기준 2: 효율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통계품질이나 신뢰성이 개선되어야 하고, 적어도 훼손되지 않아야 한다.

통계는 일정한 품질을 지녀야 한다. 제3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통계는 적극적으로 활용되려면 통계는 적절한 수준의 품질을 유지하여야 한다. 이때 통계에 대한 신뢰성 역시 통계품질을 결정하는 중요 요소가 된다.

때문에 통계효율화 정책이나 방안이 추진되면서 통계품질이나 통계의 신뢰성이 개선되지 않고 훼손된다면 이는 해당 정책을 추진하지 않는 편이 오히려 낫을 수가 있게 된다. 즉 효율화방안이 수행됨에 따라 일부 비용절감의 효과가 발생할 수 있지만, 품질이나 신뢰성이 훼손된다면 이는 통계 활용도에 커다란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특정 통계의 신뢰성 저하는 전반적인 통계신뢰성 저하라는 외부효과를 유발할 가능성도 크다. 살펴본 바와 같이 일단 통계의 신뢰성이 저하된다면 이를 회복하려면 수년에 걸친 통계청의 노력이 필요하여 일부 효율성 개

선 효과를 크게 초과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통계작성기관을 이전할 경우, 통계작성기관에 대한 신뢰성이 추가 고려되거나 민주적인 사회발전정도 등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기준 3: 효율화정책은 규모 및 범위의 경제 효과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통계작성에서 규모 및 범위의 경제 효과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통계작성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이는 제4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통계기획, 조사, 분석, 발표 및 홍보 등 각 단계에서 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시되는 방법론이 된다.

예를 들어, 조사기법이 복잡하거나 조사비용이 많이 수반되면서 비슷한 항목의 통계는 서로 통합하거나 작성기관을 통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경우 또한 조사응답자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이점도 발생할 수 있다.

기준 4: 통계작성빈도가 높거나 통계활용여건이 빠르게 변화하는 통계는 활용기관과 작성기관이 밀접하게 연관되어야 한다.

이는 제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특정국가가 분산형시스템을 채택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된다. 작성빈도가 높은 통계가 제공된다는 것은 통계 공급측면에서 빈도가 높은 통계를 작성할 여건이 된다는 의미이고, 통계수요자들이 짧은 주가 동안 발표되는 통계를 사용하여 분석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또한 통계활용 여건이 빠르게 변화한다는 것은 해당 통계가 제시하는 경제현상이 빠르게 변화한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해당 통계 활용자들이 상황변화에 적합한 통계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이러한 통계는 통계수요자들과 항시 직면하고, 이들의 수요를 즉각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부서가 작성하는 것이 효율적이 된다.

예를 들어, 해당 경제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부처는 이들 경제 환경을 나타내는 통계를 빠르게 접하고, 이에 적합한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기준 5: 통계작성빈도가 낮거나 통계작성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통계는 전문통계작성이 작성하여야 한다.

이는 제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특정국가가 집중형시스템을 채택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된다.

이런 통계들은 대체로 수년에 한번 걸쳐서 작성되는 통계로 활용도가 크게 변화하지 않거나 통계가 나타내는 경제구조가 크게 변화하지 않는 통계이다. 따라서 이러한 통계는 굳이 통계를 직접 활용하는 부서가 하기 보다는 통계작성의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규모의 경제 및 범위의 경제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전문통계작성기관이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한편 통계작성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통계는 이러한 작성환경변화에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각종 조사방법이나 통계분석방법이 빠르게 변화할 경우, 이는 전문기관이 작성하는 것이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기 쉽기 때문이다. 통계작성 전문기관들은 비록 각종 통계작성에 대한 전문기법을 개발하고 연구하는데 상당 자원을 활용하기 때문이다.

기준 6: 통계작성이나 해석에 상당한 수준의 주제 분야 지식이 필요한 경우, 활용 기관이 작성하고, 통계의 일반성이 보다 클 경우 전문작성기관이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당 통계가 특수한 산업이나 분야의 고유한 지식을 많이 활용할 경우, 이 통계를 작성하려면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가가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이 통계의 작성 이후에도 발표 및 홍보를 위해서도 이 분야의 전문가가 필요하며, 향후 이 통계의 수요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서도 전문가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주제 전문가를 통계청과 같은 기관이 모두 보유하는 것은 사실상 비효율의 원인이 될 수 있다. 통계청이 작성하는 상당히 많은 종류의 통계에 대하여 해당 통계 전문가를 고용하는 것은 사실상 너무도 많은 지출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통계는 전문 통계작성기관보다는 통계활용기관이 작성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일 것이다.

반면, 통계에 대한 조사사항이 일반적인 내용이면서 해당 통계가 많은 국민들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것이라면 통계작성기관이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기준 7: 현재 통계작성기관으로부터 다른 기관으로 이전비용이 크지 않아야 한다.

한 기관이 작성하는 통계를 다른 기관으로 이전할 경우 여러 가지 비용이 수반된다. 비록 최근과 같이 매뉴얼이 잘 만들어져있고, 메타자료가 잘 개방이 되어있지만 실제로 통계를 작성할 경우 많은 노하우가 필요하다. 더욱이 많은 자료를 사용하고,

종합하는 조사통계나 가공통계에서 이러한 점을 통계의 질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특정기관이 오랫동안 작성해왔거나 해당 통계의 규모가 커서 많은 사람이 작업하여 이루어진 통계의 경우, 이러한 비용은 더욱 커질 수 있다. 실제로 많은 노하우를 이 기관이 축적해왔을 뿐 아니라, 이 기관이 오랜 기간 동안 작성해왔기 때문에 다른 기관이 유사 통계를 작성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또한 규모가 큰 경우, 해당 통계를 구성하는 일부분에서 사소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전체적 통계 작성 작업이 크게 늦어지거나 통계의 질이 훼손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만약에 이전비용이 단기적인 효율성 개선효과보다 크다면 이를 줄일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이 먼저 수립된 후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 2. 효율화 정책 방향

### 1) 기준에 따른 평가

앞에서 조사한 우리나라의 주요 경제통계에 대한 효율화 정책을 위에서 설정한 기준에 기초하여 살펴보고 통계청으로의 이관가능성을 조사할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이 제시된다.

기준 1: 장기적인 국가통계효율화 정책 방향과 일치하여야 한다.

제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통계시스템은 현재 분산형시스템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국가통계의 중요성 및 효율성이 점차 강조됨에 따라 이를 책임지는 통계청의 역할이 점차 커지는 집중형시스템의 특징을 조금씩 채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사항은 현재 통계청이 발표한 통계청의 비전과 미션에 표현되어 있다. 즉 통계청은 미션으로 ‘국가통계 발전선도, 신뢰받는 통계생산’을 선정하고, 이의 구체적인 사항으로 제2장 6절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국가중앙통계기관으로 효율적인 통계조정 및 협력활동을 강화하고 .. 중략, 정확성, 시의성, 유용성을 갖춘 신뢰받는 통계를 생산 한다”는 설명에서 통계청의 가장 중요한 업무는 통계조정업무인 것으로 판단된다.<sup>84)</sup> 또한 개정 통계법 역시 이러한 조정업무에 많은 부문을 할여하

84) 통계청의 미션은 “국가통계발전 선도, 신뢰받는 통계생산”이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의미는 "(1) 우리는 국가 중앙통계기관으로서 효율적인 통계 조정 및 협력 활동을 강화하고 국가통계 품질향상을 주도하여 국가 통계의 발전을 선도한다. (2) 우리는 급격한 경제, 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른 다양한 통계수요와 조사환경 악화에 능

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통계청은 집중형시스템의 우수성을 인정하고, 이를 통하여 국가통계의 효율성을 개선하고자 하는 정책방향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통계가 제3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체 국가승인통계 850종 중 37.8%인 321종에 해당되고, 시도통계를 제외한 경우에는 국가승인통계 542종의 47.4%인 257종으로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통계이다. 따라서 이들 경제통계의 효율화 방안이 국가통계효율화 방안과 일치하지 않게 된다면 이는 매우 커다란 문제점이 될 수가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본 연구에서 고려한 국민소득, 산업연관표, 자금순환, 국제수지, 소비자물가지수, 생산자물가지수, 수출입물가지수, 광공업생산지수, 경제활동인구, 사업체임금근로조사 등의 주요 통계의 작성기관을 다른 기관으로 이전하는 사항은 단기적으로 주장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다. 명확한 효율화방안하에서 경제통계의 효율화 방안이 제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비록 통계청이 차관 청으로 승격되고, 통계법 개정에 따라 통계청이 여러 가지 조정관련 권한을 새롭게 부여받았다고 하여도,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집중형시스템을 선택하고 이를 통하여 통계작성의 효율성을 개선하겠다는 방향이 설정되지 못하였고, 아직까지 공론화되기까지 못하였다.<sup>85)</sup> 특히 집중형시스템의 가장 문제점의 하나가 통계작성기관의 정치적인 중립성 확보의 어려움과 통계작성 권한의 집중화로 인한 통계신뢰성 저하인데, 과연 이것이 우리나라에서 해결되었는가에 대한 의문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이다.

한편 이 기준에 대한 또 다른 문제점은 과연 통계청이 직접 주요 국가통계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합리성이 결여되었다는 점이다. 과거 우리나라의 역사상 각 기관이 자신의 필요에 따라 통계를 작성하였고, 통계청의 승인을 받는 시스템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많은 기관이 주요 국가통계를 작성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이는 분산형시스템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였던 현상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영향을 받아 아직까지 우리나라 통계법상 통계청이 직접 주요 국가통계를 작성하여 한다는 규정이 없다. 다만 통계청이 통계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각종 권한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통계의 품질이 심각하게 문제가 되었다면 통계청이 이를 개선할 수 있도록 각종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정도이다.

---

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지속적인 국가통계시스템 혁신으로 정확성, 시의성, 유용성을 갖춘 신뢰받는 통계를 생산한다. (3) 우리는 통계 생산 및 보급에 있어 관련 법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 개인의 사생활과 기업의 영업비밀을 보장함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는다." 등이다.(www.kostat.go.kr)

85) 통계청은 2005년 7월 차관청으로 승격되었다.



더욱이 현재 주요 국가통계가 무엇인가에 대한 명확한 정의도 없고, 개별 통계품질을 규정하는 기준 역시 모든 통계가 같기 때문에 특별히 중요한 통계나 그렇지 않은 통계간의 구별도 별로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통계청이 직접 주요 국가통계를 작성하고 특히 주요 통계인 국민계정이나 기타 통계를 작성하여야 한다는 것은 주장의 근거는 다소 약하다고 할 수 있다.

기준 2: 효율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통계품질이나 신뢰성이 개선되어야 하고, 적어도 훼손되지 않아야 한다.

현재 본 연구에서 고려한 대부분의 통계는 모두 통계품질진단에서 매우 우수하다고 판단된 통계들이다. 이들은 국가의 대표적인 중요 경제통계들로 통계청이 실시한 정기품질진단결과 상당히 우수한 판정을 받았고, 일부 통계는 국제통화기금이 실시한 통계품질진단 결과에서 선진국 수준의 통계품을 인정받은 통계들이다. 또한 이들은 각종 연구나 분석 등을 통하여 수년 동안 통계품을 개선하였던 통계들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이들 통계들에게 급격한 품질개선 정책을 취할 필요성은 크지 않다. 따라서 통계청이 추진하려는 각종 효율화정책이 적어도 현재의 품질수준이나 신뢰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도록 주의 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통계청으로의 작성기관 이전 문제를 제기할 때에는 적어도 통계청이 이들 통계를 작성할 경우 통계품질이 훼손되지 않는다는 확신을 심어주어야 할 것이다. 이는 대체로 통계청의 해당 통계에 대한 연구 및 설명자료 배포 등을 통하여 통계청이 해당 능력을 보유하고, 또한 꾸준히 노력하였다는 것을 밝히는 것 이외에는 방법이 없을 것이다. 불행히도 현재 통계청의 수준에는 이러한 점이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기준 3: 효율화정책은 규모 및 범위의 경제 효과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상의 두 가지 선행조건이 충족될 경우 기준 3을 고려하여 효율성 정책을 추진하게 된다. 규모의 범위의 효과는 제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집중형시스템의 가장 큰 이점에 해당된다. 즉 통계작성기관을 이전할 경우, 이 효과가 크게 나타날 경우 이전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게 된다.

이를 제7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주요 국가통계를 부문별 및 통계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계정의 4대 통계는 한국은행이 모두 작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상당 수준 규모의 경제 및 범위의 경제 효과를 누린다고 할 수 있다. 특히 1968 SNA 이후 국민계정에 속하는 국민소득, 산업연관표, 국제수지 및 자금순환 등 4대 통계가 서로 연관적으로 추정되게 됨에 따라 이들 통계는 한기관이 작성하거나 연계성이 높은 기관이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한편 국민계정 전체 통계를 한꺼번에 이전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에는 이중 이전할 경우 가장 효율성이 높은 통계를 먼저 시도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즉, 조사 통계의 성격이 강하거나 많은 자료를 수집하여야 하는 통계를 먼저 이전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이 경우 제7장의 분석에서와 같이 산업연관표의 이전시 그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판단된다. 산업연관표는 분류상 가공통계이지만 상당수의 자료조사를 병행하여 작성하기 때문에 통계청의 강점을 활용할 경우, 효율성이 개선될 가능성이 높게 된다. 한편 국제수지와 자금순환계정은 다른 국민계정 통계와 연계성이 다소 떨어지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이전하는 것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국민계정이 많은 원자료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통계청 이전시 일부 효율성 개선 효과가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상당히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자료를 필드에서 조사하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 기존의 자료를 통계적으로 조정하는 것이므로 이에 따른 개선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주요 물가통계에 해당하는 소비자물가와 생산자물가 및 수출입물가는 하나의 기관에서 통합하여 추정하는 것이 보다 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해석된다.

이들 통계는 모두 지수형태로 전국의 상품 및 서비스의 평균 가격을 의미하며, 가중평균방법으로 추정되고, 5년마다 지수의 기준년이 개편되며 국제적으로 작성법이 공인된 통계로 많은 유사점을 갖고 있는 통계이다. 비록 표본의 대상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작성과정에서 일부 차이를 갖지만 이는 전체 지수 작성과정을 고려할 때 크게 문제가 될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통계청의 전국 조직을 활용할 경우, 조사비용 측면에서도 효율성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 물가지수는 하나의 기관이 통합하여 추진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산업생산은 광공업생산과 서비스생산 간의 유사성이 관찰되는 바 이들의 작성은 하나의 기관이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이 통계는 모두 통계청이 작성되므로 이러한 효율성은 도달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두 통계의 작성과 서로 다르지만 상호간의 연계성이 강화되어 서로 보완하면서 통계 개선에 힘써야 할 것이다.

넷째, 임금 및 경제활동인구 통계는 상호 연계성이 높은 통계인데 반하여 서로 다른 기관에서 작성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보겠다. 특히 응답자의 질문기피현상이 더욱 가시화되는 가운데 이들 통계를 하나의 기관이 작성하고 또한 통합하는 것은 응답률 제고 및 비용감소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자료 발표나 홍보시 함께 발표하여 사용자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한꺼번에 제공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기준 4: 통계작성빈도가 높거나 통계활용여건이 빠르게 변화하는 통계는 활용기관과 작성기관이 밀접하게 연관되어야 한다.

기준 5: 통계작성빈도가 낮거나 통계작성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통계는 전문통계작성이 작성하여야 한다.

기준 4와 기준 5는 서로 상대적인 기준이므로 이를 통합하여 한꺼번에 살펴볼 수 있다. 기준 4는 통계작성기관이 특정 부문 통계 혹은 특정 개별 통계를 작성할 때, 분산형시스템이 갖는 이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는 의미이고, 기준 5는 통계작성기관이 집중형시스템이 갖는 이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다.

본 연구에서 고려한 통계 중 산업연관표는 실측치가 5년 만에, 연장표가 매년 연간으로 작성되는 빈도수가 낮은 대표적인 통계이고, 자금순환통계와 국민계정은 분기별과 연간으로 작성되는 통계이며, 나머지 국제수지, 소비자물가지수, 생산자물가지수, 수출입물가지수, 광공업생산, 경제활동인구 및 사업체임금근로조사 통계는 모두 월별 작성되는 통계이다.

또한 국제수지나 광공업생산지수 등은 다소 급격하게 변화할 수 있는 통계인 반면, 산업연관표나 자금순환통계, 경제활동인구 통계 등은 통계활용여건이나 작성환경이 빠르게 변화한다고 보기 어려운 통계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최근과 같이 경제위기에 직면하여 매우 경제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정부의 빠르고 적극적인 대응책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서에 작성할 필요성이 다소 늘어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기준을 적용할 때, 산업연관표의 작성기관이 통계청으로 이전할 때, 효율성 개선효과가 가장 크다고 볼 수 있고, 월별자료들의 경우 그 효과는 크지 않다고 볼 수 있다.

기준 6: 통계작성이나 해석에 상당한 양의 주제분야 지식이 필요한 경우, 활용기관이 작성하고, 통계가 보다 일반적인 경우, 전문작성기관이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7장에서 살펴본 통계 중 자금순환표는 그 활용도가 제한적이고, 매우 전문적인 지식을 보유한 사용자만이 활용하는 통계이다. 때문에 이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수준의 금융시장에 대한 지식과 금융통계 및 이론을 알아야 한다. 따라서 이 통계를 통계청 작성하는 것은 매우 부담스럽고 비효율적이 될 것이다.

한편 국제수지 역시 일부 이러한 성격을 지닌다. 이는 비록 매월 발표되어 일반인이 관심을 갖는 통계이지만 국제수지 통계가 제공하는 많은 지표들은 일부의 경제학자들만이 이해하고 사용하는 통계이다. 때문에 국제수지를 통계전문가들이 작성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 되고 비효율적인 업무가 될 수 있다.

국민소득 계정 역시 일부 이러한 성격을 띠고 있다. 국민계정이 단순히 GDP만을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 지출, 소득 등 여러 계정을 종합하여 작성하는 것이므로 상당한 양의 경제학 지식을 습득한 담당자들이 이를 작성하여야 한다. 또한 국민소득계정이 매우 다양한 부문에서 활용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들 활용부서와 긴밀한 관계를 맺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이의 이전도 신중히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각종 물가나 임금, 경제활동인구, 및 광공업동향 조사의 경우 이러한 문제점은 비교적 작다고 할 수 있다.

기준 7: 현재 통계작성기관으로부터 다른 기관으로 이전비용이 크지 않아야 한다.

기존의 작성통계를 다른 기관으로 이전할 경우 상당한 비용이 발생한다. 일단 새로운 작성기관을 새롭게 통계를 작성할 수 있는 인력을 보유하여야 하고, 이에 필요한 능력을 보유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위에서 제시한 기준 2에 따라 통계품질이 훼손이 되지 않으려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비록 매뉴얼을 통하여 통계작성 과정이 투명하게 제시되어 있더라도, 상당한 기간 동안 해당 통계 작성에서 쌓아온 노하우는 단기간에 이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통계이전 비용은 기존 작성기관 부서의 폐쇄나 신규기관으로의 이전을 의미한다. 때문에 해당 통계가 많은 작성인원을 필요로 할 경우 이에 따른 기관의 경영구조 변화가 크게 때문에 커다란 조정비용을 수반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해당기관 간 급여나 근로조건이 차이가 클 경우, 그 차이나 저항이 더욱 커진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은행으로부터 통계청으로의 일부 통계작성기관 이전은 관련 비용이 커질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한국은행은 한국은행법 2조에 따라 공익성을 띠는 무자본특수법인으로 근로조건이나 급여가 공무원인 통계청보다 좋고 직업의 안정성도 상당 수준 보장된 기관이다. 때문에 한국은행이 작성하는 통계를 통계청으로 이전할 경우, 한국은행에서 통계청으로 이직할 직원은 많지 않게 된다. 따라서 통계청은 새롭게 통계를 작성할 숙련된 직원을 자체적으로 해결하여야 하고, 이 과정에서 상당한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

특히 국민계정과 같이 규모가 큰 통계의 경우, 이전 비용이 매우 클 가능성이 크다. 국민계정은 한국은행이 작성하는 가장 중요한 통계로 가장 많은 인원이 작업하는 통계이다. 때문에 한국은행의 입장에서 국민계정 통계를 통계청으로 이관할 경우, 나머지 통계만으로 경제통계국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한다. 이 경우 전반적인 한국은행 조직을 개편하여 하므로 정관을 개편하여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하므로 단기간에 이를 해결하기 어려운 사향이 된다.

한편, 사업체임금근로시간조사는 제7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노동부의 해당 부서가 담당하는 많은 통계중의 하나이다. 이러한 통계를 하나 통계청으로 이전하는 것은 해당부서에 미치는 영향은 별로 없는 가운데 작성 효율성을 높이는 역할을 할 것이다. 따라서 보다 수월하게 일이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 2) 효율화 정책의 추진

### (1) 국민소득계정

현재 한국은행이 작성하는 국민소득계정을 단기적으로 통계청이 작성하도록 작성기관을 이전하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기 어렵다.

제2장과 본장에 기준 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가통계 및 통계청의 장기적인 발전전략 및 방향에서 국가주요 통계를 통계청이 작성하여야 한다는 명제가 확실하게 정립되지 않았다. 만약 이러한 국가통계 및 통계청의 발전 방향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채 국민계정 통계의 작성기관을 한국은행에서 통계청으로 이전하도록 추진하는 것은 국민적인 지지를 받기 어렵다. 즉 통계청이 국민계정을 작성하려고 시도가 국가통계의 개선보다는 기관 이기주의적인 정책이라는 오해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이 중앙은행으로서 통화신용정책과 금융안정을 위한 각종 정책 수행한다는 기본 목적에 비추어볼 때, 한국은행이 국민소득계정을 작성하는 것은 다소 어긋

나는 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중앙은행이 국민소득 계정을 작성하는 곳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sup>86)</sup>

제7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은행이 작성하는 국민소득 통계는 이미 국내외의 품질진단에서 그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 따라서 현재 한국은행의 작성 능력이 효율성을 사용하여 통계작성이전을 추진하는 것은 설득력이 낮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한국은행과 통계청의 국민소득계정 작성 능력 비교를 위하여 한국은행의 국민소득팀과 통계청의 지역소득팀을 비교한다면 더욱이 이를 인정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예를 들어, 국민소득 계정에 대한 각종 연구 실적이나 홍보 실적을 볼 때 한국은행의 수행기록은 지역소득팀에 비하여 우수하다. 제7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은행은 각종 연구물을 발표하고, 설명서를 정기적 혹은 부정기적으로 발간하는 반면, 지역소득팀은 이러한 실적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은행은 속보치를 도입하고, 계절조정치를 도입하는 등 2000년대 들어 각종 통계개선활동을 추진하고 이를 각종 문헌을 통하여 발표한 반면, 지역소득팀은 2009년 소득계정 공표시에도 크게 주목을 받지 못하였다. 이렇게 통계청이 부진한 실적을 보여주는 것이 통계청의 능력 부족이나 연구 부족에 기인하지 않고 통계청이 갖고 있는 국가기관의 성격상 각종 연구결과는 단지 내부적인 자료로서만 활용하게 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외부기관이나 외부인들의 시각으로는 이러한 통계청의 연구 및 홍보 부족이 통계청의 내부 사정이나 기관 성격보다는 통계청의 연구 결과 부족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이 필요하다.

한편 통계청이 지역소득 통계 작성 현황을 사용하여 통계청의 국민계정 작성 능력을 제시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통계청은 2009년에야 지역소득추정에서 기존의 생산계정이나 지출계정에 추가하여 소득계정을 공표한 반면, 한국은행은 수십년을 생산, 지출, 소득 계정을 모두 작성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통계청의 주장은 오히려 한국은행에 비하여 능력 부족의 근거로 제시될 수 있다. 비록 통계청의 해당부서가 많은 연구를 수행하고 있고, 최근 들어 통계개발원도 신설한 후 각종 새로운 연구를 수행한다고 하고 있으나, 실제로 구체적으로 발간되는 내용이 없는 이상, 설득력을 얻게 어렵다. 학계나 연구계에서는 객관적인 검증을 걸치고 공표된 것만이 인정을 받기 때문이다.

그리고 한국은행은 이미 국민계정 4대 통계를 이미 모두 작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통계작성에 따른 상당수준의 규모의 경제효과를 모두 누린다고 할 수 있다.

86) 선진국 중에 중앙은행이 국민소득 계정 작성에 참여하는 곳은 유럽의 벨기에 한곳에 불과하다. 즉 벨기에는 통계청과 중앙은행 및 국가기획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The Institute for National Account가 국민소득 계정을 작성한다. 그리고 중앙은행이 이를 발표하고 관련 웹사이트를 운영한다.

다만 통계청이 우위를 누릴 수 있는 부문은 국민소득 계정이 수많은 원자료를 사용하는 가공통계이기 때문에 이 통계에 대한 충분한 이해에 기초하여 작성하여야 하고, 향후 미시적인 자료분석과 거시적인 자료 분석의 일치성이 중요해진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역시 한국은행이 통계청과의 협의를 늘리고, 통계청이 각종 원자료의 접근을 허용하게 해준다면 한국은행은 충분히 이를 극복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면 사실상 통계청의 업무만 증가하고, 통계청의 문제만 부가될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더욱이 제7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민소득계정팀은 한국은행 경제통계국의 가장 중요한 구성원들이기 때문에 국민소득계정의 작성을 통계청에 인계할 경우, 한국은행의 경제통계국의 구성이 크게 변화하게 되므로 한국은행은 전체 조직자체를 바꿔야 하는 문제도 발생한다.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할 때, 단기적으로 한국은행의 국민소득 계정 통계를 통계청이 인수받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최선의 방법은 국민계정 중의 일부 계정을 인수받고, 점진적으로 국민소득 계정에 대한 관심을 갖고 관련 연구를 수행하여 그 능력을 인정받는 방법을 취해야 할 것이다.

## (2) 산업연관표

산업연관표는 제5장 및 제7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민계정에 속해있는 4대 통계(국민소득, 산업연관표, 국제수지, 자금순환)중에서 가장 통계청의 이관 가능성이 높은 통계라 할 수 있다.

산업연관표는 가공통계이지만 상당한 통계자료를 직접적으로 수집하여야 하기 때문에 조사통계의 성격이 강하다. 때문에 통계청이 갖고 있는 조사통계작성 능력과 비용절감 효과를 사용하여 이를 추진한 경우 효율성 개선이 이루어진다는 명분이 뚜렷하게 작용할 수 있다.

또한 한국은행도 이미 이점을 인식하고 있고, 현재 이를 작성하기 위하여 상당한 수고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작성기관의 이전 문제를 협의 할 때, 가장 이해를 빨리 받을 수 있는 통계이다.

한편 통계청이 만약 산업연관표 작성을 시작한다면 이는 장기적으로 국민소득계정 추정을 위한 방편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즉 산업연관표가 국민소득 계정과 어느 정도 연관을 맺기 때문에 일단 통계청이 산업연관표를 작성한다면 지속적으로 국민소득 계정 추정시 한국은행이 통계청과 업무제휴를 할 것이므로 국민소득 추계

를 위한 방향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것이 될 것이다.

### (3) 국제수지

국제수지는 통계청이 인수하여 작성할 가능성 낮고 또한 인수하더라도 전반적인 통계효율성 개선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제5장 및 제7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제수지는 작성과 해석에 통계학적인 지식보다는 금융지식과 국제금융 및 무역 지식이 매우 필요하다. 통계청에서 국제수지 통계 작성을 위하여 이들 부문의 고급 지식 인력을 보유하는 것이 과연 효율적인가하는 의문이 발생하게 된다.

또한 국제수지는 매월 작성되는 통계이면서 일, 주간 자료와 밀접한 관계를 맺는 자료이다. 수시로 수출입자료와 자본 유출입 자료 및 환율 등의 자료와 결합하여 분석을 수행하고, 또한 정책결정을 수행하여야 하는 통계이기 때문에 통계작성에 특화된 기관보다는 정책부서에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국제수지는 정부의 정책목표와 크게 연관되지 않기 때문에 정치권의 영향을 별로 받지 않아 통계청이 업무를 수행할 필요가 크지 않다. 이러한 이유로 선진국에서 국제수지 통계를 국가통계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이 작성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 (4) 자금순환

자금순환통계는 통계청이 인수하여 작성할 가능성 낮고 또한 인수하더라도 전반적인 통계 효율성 개선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통계는 국제수지와 같이 작성과 해석에 통계학적인 지식보다는 금융지식이 보다 필요한 통계이다.

제5장과 7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금순환 통계는 국내 거의 모든 금융기관의 대차대조표를 결합하고, 각종 주식과 채권 등의 잔액 등을 결합하여 금융자산의 플로우와 스톡을 만들어내는 통계로 전문적인 금융지식이 반드시 필요한 통계이다. 또한 통계 작성 후 이 통계를 해석하고 경제이론에 맞추어 해석을 하여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역시 매우 고급의 금융시장과 이론을 보유한 경력자가 필요하다.

이러한 이유로 제6장 및 7장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선진국에서 국제수지 통계를 국가통계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이 작성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 (5) 소비자물가, 생산자물가 및 수출입물가

현재 통계청과 한국은행으로 구분된 소비자물가, 생산자물가와 수출입물가는 한 기관으로 작성기관을 통합할 경우, 효율성 개선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큰 통계이다.

제5장과 제7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들 물가지수 통계는 모두 상품 및 서비스의 가격을 취합하여 지수를 만드는 공통점을 가지면 조사비용이 크게 수반되는 통계들이다. 또한 5년마다 유사한 방법으로 지수를 개편하는 업무를 모두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물가라는 일반적인 성격 때문에 굳이 이 분야에 많은 지식을 보유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작성 기관 통합이 절실히 필요시 되는 부문이라고 할 수 있다.

#### (6) 사업체임금근로시간조사와 경제활동인구

고용노동부의 사업체임금근로시간조사와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는 하나의 기관이 통합하여 작성하여 효율성 개선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두 통계 모두 매월 전국에 상당수의 표본을 조사하는 조사통계로 이 과정에서 많은 비용을 지급한다. 따라서 이를 통합하여 조사할 경우 상당 금액을 절약할 수 있고 이 두 통계를 통합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한편, 제7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고용노동부가 통계전문기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많은 통계를 작성하고, 이들 대부분을 외주에 의하여 해결한다는 사실에 기초할 때 전문적인 통계작성기관이 통계청이 이 통계를 작성할 경우, 상당한 품질개선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작성하는 많은 통계중 일부를 이전하는 것에 그렇게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을 가능성도 높다.

#### (7) 국민계정 4대 통계의 동시 이전 가능성

국민계정에 속해있는 4대 통계를 한꺼번에 한국은행에서 통계청으로 이관하는 것은 실현되기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가장 중요한 국민소득 계정의 이전을 한국은행이 강력히 꺼리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사항에 관심이 있는 국민들이나 정치권으로부터도 동의를 받기가 매우 어렵다. 기존의 한국은행이 이 업무를 충실하게 잘 수행하였고, 또한 이들에게

통계청의 인식도가 한국은행의 인식도보다 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국민계정 중의 일부 계정을 인수받고, 점진적으로 국민소득계정에 대한 관심을 갖고 관련 연구를 수행하여 그 능력을 인정받는 방법을 취해야 할 것이다.

특히 통계청이 원자료 수집의 우월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각종 미시자료와 국민계정 각 지표간의 관계를 활용하여 이의 중요성을 설명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국민소득내의 산업별 생산과 기존 산업별 통계간의 연계성을 강조하고, 현재 국민소득내의 산업분류만으로는 현재의 경제현상이나 문제점을 해결하기 어렵다는 점을 찾아내고, 이러한 문제점은 미시자료를 활용하여 극복이 가능하다는 각종 연구를 수행하고는 것이다. 또 다른 예로는 소비지출의 변화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가계소득을 사용한 지출분석과의 연계성을 제시하여 최근 소비패턴의 변화 등을 국민소득계정만을 사용하여 찾기 어렵다는 점을 밝히는 일이 될 것이다.

즉 통계청은 자신만의 장점을 이용하여 향후 국민계정을 개선할 수 있다는 점을 밝히는 쪽으로 장기적인 방향을 잡아서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 3. 주요 효율화 정책

#### 1) 주요 효율화 정책 수단

##### (1) 국가통계작성기관 이전 및 집중

국가통계작성기관 이전은 해당 국가통계를 현재 작성하던 기관에서 다른 기관으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대체로 유사한 경제통계를 기존의 여러 기관이 나누어서 하던 것을 하나의 기관으로 이관하여 집중하도록 하는 것으로 효율화정책 수단의 가장 강력한 수단이 될 것이다. 즉 이는 기존에 분산형시스템 하에서 작성되던 통계를 집중화시스템에서의 통계로 전환하여 경제통계작성의 효율성을 개선하는 방법이 된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경제통계시스템 내에서 물가 및 고용 통계는 분산형시스템으로 작성이 되고 있다. 따라서 이들 통계작성기관을 하나의 기관으로 이전한다면 집중형시스템이 제공하는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 해당기관의 반대나 이전에 따른 비용 발생 등으로 이러한 작성기관의 통합은 단기간에 이룩할 수 없을 것이다. 더욱이 이들은 정부기관이기 때문에

통합시 해당 법이나 규정을 수정하여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오랜 기간이 소요될 수 있게 된다.

국가통계작성기관이전은 크게 개별 통계이전과 부문별 이전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개별 통계이전은 하나의 유사한 통계가 여러 기관에서 작성되던 개별 통계들을 이전하는 것이고, 부문별이전은 현재 이미 일정수준의 집중화가 되어 있는 특정 부문을 부문 간 효율화 극대화를 위하여 다른 작성기관으로 이전하는 경우로 구별할 수 있다.

## (2) 작성기관간 연계성 강화

단기간에 해당 경제통계작성시스템을 분산형시스템에서 집중형시스템으로의 전환하기 어렵다면, 해당 기관간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효율성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연계성을 강화하는 방안으로는 주요 통계의 (1) 통계개선 컨설팅 업무 수행, (2) 주요 통계의 공동개선 작업 수행 등을 들 수 있다.

먼저 통계개선 컨설팅 업무 수행 일부 통계에 대하여 통계청이 통계개선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해당 통계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 분석을 수행하여 해당 통계 개선에 참여하는 것이다. 즉 통계작성에 일부 어려움이 있는 기관의 통계에 대하여 통계청이 분석보고서를 제출하고, 이를 개선하는 작업에 통계청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다. 이는 이러한 작업을 위하여 통계청은 통계컨설팅팀을 개설하고, 작업에 참여하거나 통계개발원의 인력을 적극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두 번째는 통계작성 기관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여 공동으로 연구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 된다. 예를 들어, 물가지수의 경우, 5년마다 이루어지는 지수개편이 이루어진다. 즉 지수의 경우 기준년을 바꾸고 모집단의 변화에 따라 해당 상품의가중치를 조정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각종 물가지수를 작성하는 기관들이 통합하여 개편작업을 추진하거나, 지수 개선을 위한 워크샵이나 세미나 등을 같이 개최하여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이러한 활동을 통하여 중요한 것은 통계청의 각종 통계작성에 대한 지식과 노하우를 가장 많이 갖고 있다는 점을 해당기관에 인식시키고 향후 업무 협력에 대한 준비를 하는 것이다.

## (3) 통계청이 통계작성의 일부 위탁업무 수행

제2장~제5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통계청은 우리나라 국가통계를 책임지는 국가 통계기관인 동시에 가장 많은 국가통계를 작성하는 기관이다. 이미 전국에 지부를 두고 각종 서베이를 수행하면서 각종 노하우를 갖고 있다. 특히 조사통계에서 있어서는 대규모 조사를 가장 많이 수행하는 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때문에 여러 조사통계에서 이러한 통계청의 노하우나 고정자산을 활용하는 것은 경제통계 효율화에 매우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즉 각종 전국단위의 중요 조사를 통계청이 위탁을 받아 수행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노동부는 각종 고용 및 임금 통계작성이 외부용역기관을 통하여 이러한 통계를 작성하고 있다. 이것이 특정 지역의 특정 부문에 한정되는 통계의 경우에는 그 중요성에 비추어볼 때, 굳이 통계청이 개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최근과 같이 노동시장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는 경우, 전국적인 대규모 조사에서는 통계청이 위탁업무를 수행하고 이의 2차적인 분석업무는 노동부 산하의 전문기관이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국민계정에서 산업연관표를 작성할 경우 필요시 되는 각종 조사업무를 한국은행과 통계청이 합동으로 실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제7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산업연관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상당수의 자료를 한국은행은 실제로 조사하여야 하며 이는 실제로 한국은행에 상당한 부담이 된다. 이를 해소하는 측면에서 통계청이 도움을 주고, 또한 해당 통계에 대한 접근을 시도하는 것이 하나의 수단이 될 것이다.

물론 특정집단에 해당되는 각종 소규모 조사업무를 통계청이 대행하는 것은 효율성면에서 통계청이나 해당 기관에 기여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업무는 실제로 사설 중소조사기관이나 연구기관들이 보다 신속적이고 효율적으로 작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통계청은 해당 기준을 먼저 설정하고, 이에 기초하여 관련 통계리스트를 먼저 작성하고, 해당기관과 업무 협조를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실제로 이러한 업무는 국가 경제통계효율화에 기여할 것이고, 장기적으로 통계청 업무 확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분석된다.

#### (4) 통계청의 조정 기능 활용

통계청은 우리나라 국가통계의 조정업무를 최종적으로 담당하는 기관이다. 때문에 통계청은 국가통계의 효율화를 위하여 각종 정책을 추진할 권한과 의무를 갖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통계청은 해당 통계 작성기관들에게 효율성 개선 가능성을 제시

하고 점진적으로 이를 추진하도록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다. 또한 경제통계 뿐 아니라 사회, 복지 등 국내 모든 국가통계의 효율성 개선을 위하여 정책 방향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즉 통계청은 정기품질진단 결과나 자체품질진단 결과 등을 활용하여 해당 기관의 통계품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컨설팅 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 2) 효율화 추진을 위한 통계청의 장단기 전략

### (1) 장기 전략

#### ① 통계청의 국가통계작성 역할 강화

본장 1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통계청이 각종 주요 국가통계를 작성하여야 하는 근거는 별로 많지 않다. 이에 대한 법적 근거로 희박하고, 더욱이 집중형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한다는 명제가 확정되지 않은 가운데 이러한 사항을 주장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제2장과 본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통계청은 비전과 미션에서 통계청이 주요 국가통계를 작성하여야 한다는 사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비록 통계청이 국가 통계의 일정수준 통계품질 유지나 통계품질 개선을 위한 각종 권한 및 정책을 수행할 수 있지만 이를 직접 작성하여야 한다는 법적 근거는 없다.

따라서 해당 통계를 통계청이 작성하기 위하여 첫째, 우리나라 통계시스템의 집중형시스템을 도입하고, 둘째, 집중형시스템하에서 주요국가통계를 통계청이 작성하여야 한다는 명제가 성립하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제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분산형시스템을 채택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들어 집중형시스템의 성격을 갖추어가고 있는 국가이다. 따라서 집중형시스템의 우수성과 필요성 등을 홍보하고, 이것이 이루어지도록 준비하여야 할 것이다.

이미 2009년 국가통계위원회가 발표한 『국가통계발전 전략』에서 우리나라의 국가통계 발전 전략의 기본 목표 및 방향에서 “분산형 통계제도에 따른 통계 생산의 비효율”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크게 실천화된 사항은 별로 많지 않은 실정이다.

한편 집중형시스템은 통계청 뿐만 아니라 다른 정부기관의 조직이나 역할에 영향을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이루어지기 매우 어려운 작업이다. 따라서 통계청은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를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주요 국가통계의 통계청 작성 가능성 역시 여러 가지 준비가 필요할 것이다. 일단 주요 국가통계에 대한 정의를 수립하고, 또한 이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노력하고, 이들 통계는 반드시 통계청이 작성하여야 하는 인식이 정부내에서 형성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와 같이 통계청장이 차관급이고, 기획재정부에 속해있는 상황하에서 이러한 사항이 관철되기에는 매우 어렵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이러한 목표하에 점진적으로 준비하여야 할 것이다.

## ② 통계청의 국가통계 효율화 방안 수립

본 연구에서 살펴본 주요 해당 통계들은 국민경제 분석이나 판단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통계들이다. 때문에 일반 국민들이나 통계작성 부처 공무원 및 기타부처 공무원, 국회의원 등이 모두 관심있게 바라보는 통계들이다. 그리고 이들 통계는 모두 각종 통계품질진단에서 우수한 품질로 인정받은 통계들이다.

이렇게 국민생활이나 국가경제정책에 많은 영향을 주고, 품질 또한 이상이 없는 통계를 효율성 개선이라는 명목으로 이관을 추진할 때 현재 통계를 작성하고 있는 기관이 반대할 경우, 공공적인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

실제로 ‘통계청이 실시한 정기품질진단에서 큰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는데 왜 확실히 해도 않은 효율성 개선 효과를 위하여 굳이 이관업무를 추진하는가’ 하는 주장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통계작성기관 이전 추진에 따른 효율성 개선 효과를 뚜렷하게 계량적으로 제시할 수 없는 현실에게 이러한 반대 주장은 더욱더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통계청이 전반적인 국가통계 효율화 방안을 수립하고, 이의 일환으로 경제통계 효율화 방안을 수립하는 것이다. 이는 앞에서 제시한 효율화정책 수립 기준 1에 해당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국가통계의 효율화 방안이 수립되지 않은 가운데 경제통계만 효율화방안으로 적극적인 구조조정을 수행한다는 것을 설득력이 낮기 때문이다.

특히 현재와 같이 국가통계시스템을 분산형시스템으로 유지하는 가운데 경제통계만 집중형시스템으로 추진한 것이나 일부 통계청이 원하는 통계를 통계청이 작성하는 것을 추진하는 것은 다른 부서의 지지를 얻기 어렵다. 따라서 통계청은 장기발전계획으로 집중형시스템의 우수성에 기초하여 종합효율화 방향을 수립한 후, 이의 일환으로 이러한 정책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통계청이 단기적인 기관 이전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여러 통계의 이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계속

하여 개별 통계의 이전 필요성을 피력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 ③ 장기적이고 점진적인 작성기관 이전 준비

본 절에서 고려한 국가 주요 경제통계들은 그 역사도 깊고, 해당 작성기관이 상당한 수준의 자원을 투입하여 작성하는 통계이다. 따라서 해당 기관 모두 이들 통계작성을 어느 정도 중요한 업무로 판단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실정에서 전격적인 통계기관이나 통계작성방법 개선 등을 추진한다면 해당기관의 상당한 저항에 부딪칠 가능성이 크다. 때문에 이러한 급진적인 방법론 보다는 점진적인 방법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국가통계작성기관을 이전하려면 현재 작성기관의 해당부처 자체를 해체하거나 조정하여야 할 가능성도 높다. 이 경우 관련법이나 규정을 개정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구조조정이 정치적인 문제가 비약될 가능성도 크다.

이러한 구조조정은 효율성 분석 결과에 기초하여 그 타당성이 지지될 수 있지만 실제로 수행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사항을 고려하여야 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를 단기적인 해결방안으로 해결하기 보다는 중장기적인 과제로 삼고 점차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이들 효율성 개선에 통계청의 역할이 강화되려면 통계청에 대한 국민의 신뢰나 정치가들로부터의 지지가 필요한데 현재 통계청의 위상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통계청이 독립된 청으로 된 것이 1992년이고 차관청으로 된 것이 2005년에 불과할 정도로 통계청이 우리나라 통계시스템의 중심에 있다고 주장하기에는 그 역사가 길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통계청의 위상을 한 단계 올려준 개정 통계법이 효력을 발휘한 것도 수년에 불과하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통계청이 국내 주요 경제통계를 작성하도록 작성기관을 통계청으로 단기간에 이전하는 것은 현 수준에서는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정책은 보다 장기적인 계획하에서 점차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 ④ 통계청의 통계작성 역량 강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의 분산형시스템을 집중형시스템으로 전환할 때, 많은 경우 통계작성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국가통계 효율성 개선의 필요조건으로 충분조건이 아니다. 즉 과연 현재의 통계청 업무 및 연구능력을

고려할 때 통계청이 과연 이러한 업무를 수행할 경우 국가통계의 효율성이 개선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가장 중요하고 확실한 방법은 통계청이 통계작성에서 우수한 업무 역량을 갖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홍보 확대나 유관기관과의 업무 확대 등 수단이 활용될 수 있으나 이는 단기적인 방법으로,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통계청이 국내에서 가장 우수한 통계를 작성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될 것이다. 이는 단순한 통계작성의 우수성 확보와 더불어 관련 분야의 다양한 능력 확대도 포함한다.

이때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는 통계청이 작성하면서 다른 기관이 작성하고 있는 유사통계에 대하여 통계청이 보다 많은 연구를 하고 보다 관련 지식을 전파하는 것이 될 것이다. 이는 해당 기관 담당자들이 통계청의 우수성을 인정하는 첫 단계가 될 것이다. 즉 기본적으로 통계청의 업무는 매우 전문적인 것이므로 전문가를 통하여 그 능력을 인정받는 것이 가장 빠를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통계청은 국민계정, 물가 및 노동 등 본 연구에서 살펴본 주요 통계의 작성 역량을 크게 강화하고 이를 외부에 발표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제7장에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통계청의 이러한 연구 능력과 발표실적은 아직까지 주요 통계작성 전문기관인 한국은행에 비하여 상당히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예를 들어, 한국은행의 국민소득 계정에 해당되는 통계청의 지역소득계정 통계부서는 보다 많은 지역소득계정에 대한 연구 논문 및 설명 문서를 작성하여 배포하여야 하나 그렇지 못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 통계를 사용한 각종 응용 결과를 발표하여 관련 연구자들에게 통계청의 연구 역량을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소비자물가를 작성하는 부서는 한국은행의 생산자물가나 수출입물가 지수보다 우수한 작성방법 연구결과 및 분석 결과를 발표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각종 통계개선 정책을 제안하여 통계청의 업무 역량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현재 통계청 내에서 통계관련 연구논문집으로 활용되는 『통계연구』는 연 2회, 매년 약 10편의 연구논문이 게재된다. 한국은행이 『계간국민계정』에서 오직 국민계정 관련 연구논문과 해설 자료로 매회 3~5편을 게재하는 것에 비교할 때, 전 응용통계분야에서의 연구 논문을 게재하는 『통계연구』에서의 연구결과 발표 수는 매우 작은 것으로 해석된다. 더욱이 한국은행은 전적으로 담당직원이 작성하지만 『통계연구』의 논문은 외부연구자를 포함하고 있어 통계청 직원의 연구논문만을 고려할 경우 통계청이 우수한 연구능력 및 통계개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주장하기에는 한계가 있게 된다.

한편 통계청의 통계개선 연구 결과는 대체로 통계청이 작성하는 통계에 한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통계청이 전반적인 통계조정기구 및 작성기구의 역할을 하려면 통계청이 작성하는 통계이외의 통계를 개선하려는 각종 제안을 제시하여 통계청이 실제로 국가 통계개선을 주도하고 있다는 인식을 심어 주어야 한다. 2006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된 통계품질진단은 아마도 통계청이 자신이 작성하지 않는 통계에 대한 매우 광범위한 연구결과라고 할 수 있지만 모든 연구가 외부연구자들에게서 이루어진 것이다. 통계청은 여기에 그치지 말고, 국내 주요 통계를 선정하여 그 통계의 개선을 위한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통계청이외의 통계작성기관에 통계청의 능력을 보여주고 통계개발 및 발전을 추진하여 그 위상을 쌓아야 할 것이다.

#### ⑤ 통계청의 홍보 강화

통계청이 각종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일부 통계의 통계청 이전을 추진하려면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통계청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 그러나 이렇게 역량을 강화하더라도 이에 대한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실제로 구조조정에서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 즉 구조조정은 통계청 이외의 타부서와의 협력하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때 이를 설득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통계청에 대한 신뢰성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아무리 통계청이 역량이 충분하다 하더라도 해당 부처가 이를 확신하지 않는다면 실제로 업무이행이나 협조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 또한 부처 간 업무 이관시에는 때로는 대중이나 정치적인 지지가 필요한데 이러한 지지를 얻으려면 반드시 통계청에 대한 신뢰가 기본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통계청이 신뢰성을 확보하는 방법 중 가장 중요한 것은 통계청의 홍보를 강화하는 것이 될 것이다. 이들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첫째, 통계청은 국내 주요 통계에 대한 설명서나 해설 자료를 만들고 배포하여야 한다. 현재 통계청은 주로 통계전문가를 중심으로 통계청이 작성하는 통계의 매뉴얼을 작성하여 인터넷에 게재하거나 배포하고 있다. 때문에 일반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통계를 설명한 자료가 별로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를 제공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 시도가 될 것이다. 특히 경제통계의 중요성이 더욱더 커지는 가운데 국민들의 경제지식 수준이 점점 더 높아지고, 이에 대한 수요가 더욱더 커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각종 해설서가 작성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통계청은 각종 통계에 대한 강의나 강좌를 개설하여 다양한 계층의 국민이

나 공무원 및 정치가 등에게 홍보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통계청은 주로 통계관련 직원이나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는 통계강좌를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들 통계강좌의 내용은 주로 특정 통계 작성이나 활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 위주로 되어 있고, 일반인들에게 다양한 통계를 한 번에 알 수 있는 강좌는 별로 없다. 특히 통계청을 통하여 모든 중요한 통계를 알 수 있다는 믿음을 심을 수 있는 통계강좌가 별로 없다. 따라서 이러한 강좌를 더욱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전경련이나 표준협회, KOICA 등 각종 기관 등이 무상으로 각종 대학에 자산들의 업무 관련 홍보를 위하여 관련 강의를 보조하거나 직접 진행한다는 점도 참고할 자료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각종 기관에서 실시하는 고위공무원 코스에 통계청이 특강을 지원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현재 외교안보연구원이나 국방대학원 등에서 많은 고위공무원이 연수를 받고 있다. 이때 통계청의 담당부서 직원이 해당 관련 통계를 강의하는 것도 통계청의 인식 제고와 신뢰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이들에게 긍정적인 인상을 심어줄 경우, 이들이 자신들의 해당 부서에 복귀하여 관련 업무에 종사할 때 통계청의 위상제고나 중요성에 크게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넷째, 각종 인터넷을 통한 강좌 등을 제공하여 국내에서 통계에 대한 의문사항은 모두 통계청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현재 인터넷강좌는 거의 모든 직장이나 학교에서 실행되는 교육방법이다. 통계청이 통계이해에 관련된 동영상강좌를 만들고 이를 무료로 배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홍보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⑥ 관련 통계 개발 추진

통계청이 시장 수요에 부응하여 보다 적합한 통계를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제2장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통계는 사용자의 수요에 적합하여야 한다. 현실적으로 사용자가 필요로 하지 않는 통계를 작성할 경우, 국가 예산의 낭비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단순한 예산 낭비의 문제가 아니고, 향후 장기적인 통계청의 위상 정립과도 연결된다.

노동시장의 변화를 나타내는 많은 통계에는 1990년대 들어 작성되기 시작한 통계가 많이 있다. 이는 실업이나 최저임금 등 노동시장의 이슈들이 부각되면서 새로운 통계가 필요하게 되어 현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관련 기관이 필요에 따라 이를 작성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노동통계의 중심이 경제활동인구 중심에서 노동부에서 작성하는 다양한 통계로 이전하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통계청이 모든 분야의 통계를 모두 생산하는 것은 어렵다. 각 분야에 해당하는 전문성을 통계청이 모두 보유하고 이를 추진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통계청이 작성하고 있는 통계에 있어서는 새로운 관련 통계를 도입하고 확대하는 노력을 더욱더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는 기존통계의 추정방법 개선이 아니라, 해당 분야의 수요자가 요구하는 새로운 통계의 작성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항의 이면에서 집중형시스템의 가장 약점이자 분산형시스템의 강점인 통계 수요의 변화에 통계청이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였던 이유도 있다. 즉 정책이나 사회이슈가 되는 통계를 통계청이 개발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통계청은 사회이슈가 되는 항목을 찾고, 해당 정부부처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새로운 통계작성시 일정한 역할을 하고, 또한 일부 통계를 통계청이 직접 작성하는 것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통계개발원은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즉 기존의 통계청 직원들은 자신의 작성하는 통계를 개선하는 것에는 참여할 수 있지만 해당 사회 및 경제의 변화를 읽고 관련 통계를 새롭게 도입하기에는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통계개발원은 사회의 각종 통계수요를 인식하고 관련 통계를 실험적으로 작성하여 정부나 국민들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할 것이다.

#### ⑦ 통계청과 기타 통계 작성 기관들간의 유기적인 협력 강화

통계청은 국가통계기관으로 국가통계작성기관간의 업무 조정 기능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이 기능은 국가통계의 효율성이 개선된다는 주요한 명분하에서 사용할 수 있다. 때문에 통계청은 이러한 방법을 추진하기 위하여 가장 먼저 효율화 개선 가능성을 살펴보고, 이들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고, 통합을 추진하여야 한다.

이때 단기적으로는 협력을 우선화 하고, 장기적으로 통합을 추진하여야 한다. 이는 해당 기관이 모두 정부기관이므로 해당 통계관련 업무를 이관할 경우 해당 공무원의 이전 등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차적으로 분산형시스템으로 작성되는 해당 통계작성기관들 간에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실제 이를 통하여 업무의 효율성 개선 효과를 제시한 후 점차적으로 이관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실제로 일부 기관에서는 통계작성부서가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기관도 있을 수 있다. 또한 해당 통계작성 업무를 담당하는 일부 직원만 통계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나머지 직원들은 통계작성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기관도 있을 수 있다. 이 경우, 이들과의 협력을 통하여 손쉽게 이관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한다.

그러나 이러한 가능성은 실제로 직접 해당 부서와 협력하면서 알아내야 할 것으로 밖에서는 매우 알기 어려운 사실이다.

## (2) 단계별 전략의 시행

### ① 효율화 추진 통계의 선정

본 연구에서는 경제통계효율화를 추진하기 위한 주요 통계를 살펴보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다 많은 통계에서 이러한 효율성 개선효과를 추진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 따라서 통계청은 이러한 효율성 개선이 요구되는 각종 통계를 부문별로 조사하고 추진통계를 선정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본 연구의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일부 통계에서 효율성이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통계의 효율성 개선 방법을 여러 통계에 동시 다발적으로 추진한다면 현 통계청의 인원이나 여력에 비추어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미 통계청은 많은 각종 통계를 작성하고 기획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선택과 집중을 위하여 위의 효율화 7가지 수단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당 통계를 선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단계가 필요할 것이다

첫째, 국가 통계의 전반적인 효율화 방안 연구이다. 즉 통계청은 통계청과 국가통계위원회 및 외부연구진으로 구성된 효율화 위원회를 구성하고, 효율성의 정의 및 국가통계 효율화의 최종적인 목표 등을 총론에서 제시하고, 경제, 사회, 보건, 지역 통계 등 전반적인 통계작성 및 운영 효율화 방안을 제시한다. 이때 해당 통계의 구조조정 및 이전 과정 및 방법이 투명하게 제시되어야 한다.

둘째, 국가통계효율화 방안 연구의 총론과 각론의 경제효율화 방안에 기초하여 국가통계위원회 혹은 상급기관의 주도하에 통계조정을 실시한다. 이때 일부 기관의 적극적인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에 특정한 기준을 선정하고 구조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해당 통계 효율화 수단 결정

일단 효율화 추진할 통계를 선정한 이상 이 통계들에게 어떠한 효율화 방안을 추

진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는 앞에서 설명한 국가통계의 효율화 방안에서 포함되는 내용이어야 한다.

이는 <표 8.1>과 같이 (1) 장기적으로 해당 통계의 작성기관을 이전할 것인가, (2) 장기적으로 현재의 작성 기관이 계속 작성하되 통계청이 단기적으로 일부 지원하는 것인가 (3) 통계청이 용역형식으로 통계를 대행 작성하는 가 등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표 8.1> 통계청의 통계효율화 준비

효율화 수단	구체적 준비 사항
1. 통계작성기관 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계이관 업무를 위한 협의 및 이전계획수립</li> <li>- 해당 통계를 작성할 수 조직을 신규로 작성</li> <li>- 구체적인 인력 확충 및 이전 계획 수립</li> </ul>
2. 통계청이 일부 작성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통계의 대한 분석 및 지원범위 협의</li> <li>- 다음의 두 가지 방안을 갖고 업무를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통계청내에 종합컨설팅 부서를 구성하고 전문적으로 이를 실시</li> <li>② 현재 통계청내에서 현재 작성되는 통계와 가장 유사한 통계를 작성하는 부서가 협력</li> </ul> </li> <li>- 단기적으로 ②를 추진하되 장기적으로 ①을 추진</li> </ul>
3. 통계청이 용역형식으로 대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 통계에 대한 용역 가능성 분석 및 계약 성립</li> <li>- 다음의 두 가지 방안을 갖고 업무를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외부용역 담당부서 설립</li> <li>② 기존의 통계청내 유사통계 작성기관에서 TF를 만들어 수행</li> </ul> </li> <li>- 단기적으로 ②를 추진하되 장기적으로 ①을 추진</li> </ul>

그리고 이 결정에 맞추어 단기적인 효율화 수단을 선택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1)의 경우는 통계청에 가장 커다란 영향을 줄 것으로 통계청의 조직개편이나 인력 확충 계획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이때 가능하면 기존 작성기관의 조직이전이나 인력의 활용 등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2)의 경우에는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종합컨설팅 팀을 통계청내에 설립하거나 해당기관이 통계청의 유사 통계를 작성하는 부서와 정기적인 업무협의 하는 방식으로 협력하는 방법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이 업무가 어느 정도 이루어질 것에 대하여 불확실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현재 통계청에서 유사한 통계를 담당하는 부서가 이를 담당하고, 장기적으로 종합컨설팅 부서를 설립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3)의 경우에는 통계청내에 외부용역을 담당하는 부서를 만들어 국가 통계에 한하여 다른 부서들의 통계를 통계청이 용역받아 처리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역시 장기적으로 외부용역 담당부서의 역할을 강조할 수 있으나 단기적으로 간단한 TF를 통하여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 ③ 해당 효율화 수단의 활용

이상에서와 같이 효율화 대상 통계를 설정하고, 장기적인 목표를 결정하였으면 이제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기본적인 수단을 실행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통계청은 TF를 구성하거나 관련 부서의 일부 직원에서 이 업무의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즉 해당통계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방법을 하나 둘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1) 임금 관련 통계를 (2) 장기적으로 통계청으로 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정하고 (3) 지금 당장 공동연구를 시작하거나, 고용노동부의 자료조사를 통계청에서 외주로 수주할 것을 추진할 것이라면 담당 공무원을 접촉하고, 이를 시도하여 할 것이다.

## 4. 효율화 방안 시나리오

본 절에서는 효율화 방안 시나리오로 작성기관 이전의 경우를 가정한다. 즉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상호 협력이나 컨설팅, 용역 업무 수행 등은 방안 수립에 크게 문제점이 없지만 작성기관이전은 조직이전이나 기타 등 여러 가지 사항을 준비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 1) 작성기관 이전 시나리오의 종류와 내용

#### (1) 작성기관 이전 시나리오의 포함 내용

일단 작성기관 이전에 결정된 이후 통계청은 작성준비를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단계를 통계청이 작성 이전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는 것이 된다.

작성이전계획은 크게 ① 장기적인 통계청의 조직변경과 ② 단기적인 이전 기간 동안의 신규 조직 구성과 업무 조정을 포함한다. 즉 통계청이 새롭게 해당 통계를 작성하려면 이를 수행할 조직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를 담당할 통계청 조직이 필요하다. 따라서 관련 통계를 작성할 팀 혹은 기존의 유사통계를 작성하였던 해당 담당부서의 조직을 변경하여야 한다.

이전 기간 동안의 신규조직은 단기조직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이들 국가통계는 모두 국가경제에서 매우 중요한 통계이기 때문에 이전 기간중 이들 통계 작성에서 오류가 발생하거나 정시에 통계가 제공되지 못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 이는 매우 커다란 문제가 된다. 따라서 단기 조직은 기존의 업무를 모두 수행하면서 동시에 이전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존의 작성기관과 통계청의 인수조직간의 업무 협조는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 (2) 작성기관 이전 시나리오의 구분

이상에서 제시한 기준에 기초하여 경제통계 효율화방안이 도출되고, 해당 통계의 작성기관 이전이 결정되었다면 통계작성 이전을 추진하여야 한다. 이때 추진 방법에서 장기적인 조직개편은 기존 해당 부서의 업무나 현재 새롭게 부과되는 업무의 크기에 따라 결정된다. 즉 만약에 예를 들어 국민소득 계정과 같은 큰 규모의 통계를 새롭게 작성할 경우 이에 해당하는 새로운 과나 팀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반면, 기존의 유사한 통계를 이미 작성하고 있는 경우 새롭게 하나의 통계를 추가한다면 기존 통계를 작성하는 부서에 약간의 인원 보충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항은 해당 업무에 필요한 인력 및 조직을 고려하여 결정할 것이다.

그러나 이전을 추진할 경우 단기적으로 어떻게 이전할 것인가는 크게 (1) 이전비용이 크게 수반되지 않는 경우와 (2) 이전비용이 많이 수반되는 경우로 구분하여 설명한다.

이때, 이전비용이 크게 수반되지 않는 경우는 대체로 이미 통계청이 유사한 통계를 이미 작성하고 있거나, 관련통계가 단순하기 때문에 새롭게 통계청이 이 통계를

작성한다고 하더라도 추가적인 노력이 상대적으로 작은 경우를 의미한다. 반면, 이전 비용이 많이 수반되는 경우는 기존에 통계청이 관련 유사 통계를 작성하고 있지 않거나 해당 통계가 상대적으로 매우 복잡하거나 많은 자료를 활용하기 때문에 이전 노하우가 매우 중요하고 단기적으로 이를 받기 위해서 상당한 수준의 교육이나 연수가 필요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 2) 단기 이전 시나리오

### (1) 작성 기관 이전비용이 크지 않은 경우

작성기관 이전 비용이 상대적으로 작은 경우 앞에서 설명한 두가지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즉 해당통계가 간편하여 추가적인 업무가 크지 않는 경우이다. 이 경우 이 통계는 기존에 통계청에서 유사한 통계를 작성하는 부서가 기존에 해당 통계를 작성하는 기관과의 업무 협조를 통하여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일단 통계청에서 향후 담당할 부서에 담당 직원을 배치하고 이전 계획을 수립하여 관련 자료의 이전이나 협력 방안을 작성한 후 이를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이때 이전 비용이 크지 않기 때문에 통계청의 담당 직원은 기존의 담당직원과의 공동 근무 등을 통하여 방법 및 자료 이전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완전이전시기를 정해놓고, 업무 조정표를 만들어서 착실하게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기존의 통계의 작성이 실제로 해당 기관이 작성하는 것이 아니고, 해당기관이 외주를 주었던 통계라면 이를 계속 외주로 해결할 것인가 아니면 통계청이 직접 작성할 것인가를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과거 담당기관의 통계작성 전문기관이 아니었기 때문에 외부 통계작성기관의 외주를 통하여 해결하던 것이었다면 통계청이 이전 받기에 다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해당 통계작성기관이 민간기관이기 때문에 관련 이가 수월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즉 해당 통계작성기관은 단순히 통계를 작성하는 것에 대한 계약을 맺고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지 노하우를 이전하는 것은 계약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더욱이 해당 통계의 외주기관이 여러 가지 이를 이유로 이를 기피할 경우에도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 (2) 작성기관 이전비용이 큰 경우

#### ① 개요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통계청은 국가 주요 통계를 기존의 작성기관에서 통계청으로 이전할 경우, 이를 추진할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본 절에서는 작성기관 이전 비용이 매우 큰 경우를 고려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이때, 이에 대한 예로서 가장 이전이 복잡한 통계중의 하나로 알려진 국민소득 계정 통계의 이전을 가정하여 이를 위한 구체적인 이행방법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절에서 국민소득 계정을 선택한 이유는 국민소득 계정이 매우 대표적인 가공 통계이고 복잡한 통계이기 때문에 통계 이전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통계 이전을 위한 준비사항 및 과정을 제시하는 것이 보다 포괄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소득 계정은 제 5장과 7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가공 통계이고 복잡한 통계이며 중요한 통계이다. 따라서 이러한 통계를 이전할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전 과정 중 혹은 이전 이후에 통계의 질이 떨어지거나 작성에 문제가 발생하면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특히 국민계정 통계에 기초하여 각종 거시경제정책 및 금융시장이 반응을 보인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통계 작성 및 발표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이는 차라리 이전하지 않는 편이 오히려 낫을 수 있다.

국민소득 계정의 이전은 수년에 걸쳐서 이루어질 것이다. 이전이 확정되더라도, 실제로 통계청이 기존 한국은행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모두 이전 받으려면 수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통계청이 국민소득계정과 가장 근접한 지역소득을 발표하고 있다 하더라도, 아직까지 연간자료 발표에 그치고, 분기계정이나 속보치, 계정조정 등에 대한 분석을 실시해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또한 각종 원자료를 취합하여 이를 통합하는 과정에서의 노하우 역시 쉽게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모두 고려할 때 수년의 준비과정이 필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쉽게 추측할 수 있다.

따라서 이전 계획은 공동작업을 실시하거나, 연구기관을 설립하여 추진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 ② 이전계획 기간

이전 계획의 수행은 크게 (1) 통계청이 국민계정 작성에 대한 필요한 기초 준비기간, (2) 한국은행과 직접 추계에 참여하는 기간 등으로 구분된다.

이때 필요한 기초 준비 기간은 통계청이 관련 직원을 선발하고, 이들에게 국민계정에 대한 기초 준비를 수행하는 기간을 의미한다. 실제로 통계청내에서 국민계정

에 직접 관련된 통계는 지역소득 계정으로 이 업무에 참석하였던 직원을 중심으로 새롭게 팀을 구성할 수 있지만 이 역시 쉽지 않을 것이다. 지역소득 역시 매년 추계하는 중요한 통계이므로 이 통계가 계속 작성되려면 해당 인력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통계청은 국민소득 계정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국민계정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신규인력을 상당히 활용하여야 하므로 이들에 대한 교육기간이 필요할 것이다.

한편 한국은행과 직접 추계에 참여하는 기간은 통계청이 업무를 습득하고 추계에 참여하는 기간을 의미한다. 이는 최소한 3년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된다. 먼저 각 분기 계정에 대한 통계치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국민소득 계정의 계절성 등의 문제로 인하여 약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국민계정은 연간자료로 추정치 발표에 1년, 확정치 발표에 약 2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를 습득하고 독자적으로 추정하기에는 최소한 3년의 시간이 필요하게 된다.<sup>87)</sup> 즉 기존의 한국은행 주도하에 통계청이 보조를 취하는 방식으로 추정할 경우 최소 2년이 수반되고, 추가적으로 통계청이 주도가 되고, 한국은행이 보조를 취하여 통계를 작성할 경우 다시 1년의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 ③ 이전 기관 수립

#### 가. 제1안 공동작업 실시 후 이전

국민소득계정의 이전을 위하여 통계청과 한국은행이 공동연구 및 협업으로 국민계정의 연구 및 생산을 진행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이때 이러한 공동작업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대체로 2~3년이 소요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공동작업의 구체적인 방법은 한 기관에 다른 기관으로 직원을 파견하는 형식이 될 것이다. 한국은행이나 통계청 등 두 기관 직원이 공동작업을 수행하려면 어느 물리적으로 한 기관이 제공한 장소에 다른 기관의 직원이 파견을 가는 형식이 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한국은행에 통계청이 직원을 파견하여 한국은행이 작성하는 방법을 습득하고, 공동으로 작성하는 것이나 반대로 통계청에 한국은행이 직원을 파견하는 방식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전 기간중에도 국민계정이 지속적으로 작성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계속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은행에 통계청이 직원을 파

87) 예를 들어, 2010년의 GDP의 잠정치는 2011년 3월말 경에 발표되고, 2012년 3월말경에 확정치가 발표된다.

견하는 방식이 처음에는 활용되고, 통계청의 작성 능력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경우, 통계청에 관련 부서를 신설하고, 한국은행의 직원이 파견되는 형식이 바람직할 것이다.

#### 나. 제2안 신규연구기관이 업무를 담당

통계청 내에 국민소득 계정 작성 관련 업무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기관 등을 설립하고 이를 추진하는 방법이다. 이 연구기관은 현재의 통계개발원 산하에 두거나 특별 센터(예를 들어, 국민계정센터)로 명명하되, 전문적으로 국민계정만을 작성하는 기관이다.

이 방법은 국민계정 작성 작업을 수행하는데 기존 한국은행의 작성 직원과 통계청 직원이 함께 근무하는 기관을 만드는 것으로 일부의 독립성을 제공하는 것이다. 특히 이는 한국은행에 통계청 직원이 파견을 갈 경우, 한국은행의 좁은 업무 공간이나 여건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될 것이다. 또한 신규연구기관이 인 사나 기타 연구기관으로서의 독립성을 부여받을 경우 이전에 관련된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점을 갖는다.

즉 새롭게 업무를 이관 받는 기관은 이에 관련된 예산문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기 때문에 기존의 작성기관과 현재 통계청간의 근로조건이나 급여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연구기관에 준하는 근로조건이나 급여 등을 제공하기 때문에 기존의 한국은행에서 제공받았던 많은 조건 등을 이 기관은 수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연구기관이 이렇게 되려면 해당 직원들이 일반 공무원의 신분과는 다르게 되어야 하고, 같은 통계청 산하의 기관으로서 여러 근로조건이 다르게 되는 것을 인정하여야 하기 때문에 내부적이나 외부적으로 어려움을 극복하여야 한다.

## 제 9 장 결론

본 연구는 우리나라 국가통계시스템을 살펴보고 주요 경제통계의 현황을 조사하며 이들 통계의 효율성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살펴보고, 보다 구체적으로 통계청으로의 작성기관 이전 가능성까지 살펴보았다.

이때 통계의 효율성을 (1) 개별통계의 효율성, (2) 그룹별 통계작성의 효율성 (3) 경제통계의 효율성 등으로 구분하여 정의하고, 각각의 성격을 제시하였다. 즉 개별 통계에서는 개별 통계의 품질, 비용, 및 개선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최적통계를 정의하고, 현재의 통계품질과 비용 및 개선 가능성 등을 조사한 후, 상대적인 효율성을 비교하기 위하여 통계청에서 작성한다고 가정하는 경우를 고려하여 분석하였다. 그룹별 통계에서는 개별통계 가능성이외에 그룹내에서 통계작성의 규모의 경제 및 범위의 경제 발생 가능성을 조사하였고, 경제통계의 효율성에서는 전체 경제통계 내에서 발생 가능한 규모의 경제 및 범위의 경제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이때 주요 경제통계로는 국민소득계정, 산업연관, 국제수지, 자금순환 등의 국민계정과 산업생산, 경제활동인구, 및 사업체임금근로시간 등의 통계를 살펴보고, 이들 통계의 중요성에 기초하여 일정 수준의 품질의 유지나 개선이 가장 중요한 판단기준이고, 이후 비용 절감 가능성 등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분석을 위해서 세계 주요국의 통계작성 시스템을 조사하였다.

분석 결과 다음의 결과가 제시되었다.

첫째, 이들 주요 경제통계들은 대체로 일정 수준 이상의 품질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주관하는 정기통계품질진단이나 국제통화기관이 수행하는 통계품질진단에서 이들 통계는 상당한 수준의 평가를 받았고, 또한 최근 수년 동안 평가결과가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둘째, 현재 대부분의 통계작성기관들은 지난 수년간 많은 개선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나타나 통계개선 진행사항에서 크게 문제점이 제기되지 않았다. 즉 이들은 많은 연구결과와 홍보물을 통하여 개선사항을 제시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통계의 장기적인 개선 측면에서 미시자료와 가공통계간의 상호 관계를 활용할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일부의 구조조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즉 미시자료와 가공통계간의 유기적인 관계를 활용할 경우, 많은 새로운 정보를 얻어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셋째, 비용측면에서 볼 때 원자료를 작성하는 기관과 가공통계를 작성하는 기관이 서로 다르게 됨에 따라 작성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제시된다. 특히 전국적으로 많은 자료를 수집하여 작성하는 통계의 경우, 이를 조사통계를

전문하는 기관이 수행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넷째, 그룹측면에서 볼 때, 국민계정내의 5대 계정 통계는 현재 한국은행이 모두 작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룹별 효율성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다만 이들 통계중 많은 원자료를 수집하여 작성하여야 되는 일부의 통계는 조사전문기관으로의 이전을 통하여 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섯째, 그룹별 통계에서는 유사한 통계를 다른 기관이 작성하여 비효율이 발생한 사례가 나타났다. 소비자물가, 생산자물가, 수출입물가 등 유사한 방법을 취하여 작성되고 상당부문 표준화된 지수가 다른 기관이 작성하는 것은 비효율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또한 노동량과 시간의 통계가 서로 다른 기관이 작성된 것 역시 새롭게 조정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위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방향이 제시되었다.

첫째, 현재 효율성 분석 대상 통계의 중요성이나 작성단위 및 규모 등을 고려할 때 단순하게 해당 통계만의 구조조정방안을 수립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이는 국가통계 전반적인 효율화 방안이나 국가통계발전방향 등의 보다 근본적인 내용이 이루어진 후에 전반적인 구조조정과정에서 해당 통계의 이전이나 조정 문제를 고려하여야한다. 특히 통계청이 특정 통계의 작성을 원한다고 해당 통계의 작성을 추진한다면 이는 해당기관으로부터 커다란 반대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전반적인 구조조정을 수행하는 특정기관의 특정 통계를 접근하는 것이 된다.

둘째, 통계청은 장기적인 측면에서 해당통계의 이전 문제를 준비하여야 할 것이다. 즉 단순한 통계능력 배양뿐 만 아니라, 홍보나 연구 개발 등을 통하여 우회적인 측면에서 지원을 얻도록 하여야 한다. 결과적으로 효율화 방안은 기관간의 협력에 기초하여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들 기관에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고 통계청의 우월성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통계청이 제시하는 효율화방안은 설득력을 잃을 수 있다. 한편 일부 경우 효율화 방안 실천은 정치적인 결정에 의존할 가능성이 있다. 때문에 통계청은 단순한 내부 역량 확충뿐 만 아니라 대외적인 홍보가 더욱 중요하다라는 점을 인식하여야 한다. 공인되어 발표되지 않는 연구물은 사실상 연구물이 아니고 실제 상황보다는 이에 대한 인식이 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이 연구내용은 통계청이 인수받고자하는 통계에 관한 것으로 현재의 해당 작성기관이 분석할 수 없는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통계청은 해당 통계 개선을 위한 보다 구체적인 구조조정 전략을 수립하여야 한다. 즉 기존의 기관업무를 측면에서 도와주거나 용역형식으로 기존 기관의 통계작성 업무를 대행하거나 아니면 직접 작성하는 작성기관 이전 등의 방법을 선택

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각 방법 선택에 대한 기준을 작성하고, 이에 기초하여 객관적으로 투명한 방법으로 접근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국민소득 계정과 같이 규모가 큰 통계의 이전이 이루어질 경우, 통계청 내에 신규 기관 설립 등과 같은 매우 커다란 조직개편 등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어 매우 커다란 업무가 발생할 수 있다. 결국 통계청은 작성기관 이전이 추진되기 훨씬 이전부터 준비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 노동부(2007), 『노동통계의 체계적 관리·활용을 위한 방안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수탁과제보고서, 2007.12
- 농림수산물식품부, 농림통계연보, 농림수산물식품부
- 유홍림·전명식 (2008), “국가통계기관의 통계조정방법,” 『통계분석』, 제13권 제1호 pp.66-94
- 정진호 남재량(2003), 『노동통계 개선방안: 고용 및 임금』, 정책자료 2003-04, 한국노동연구원
- 통계개발원 (2009), 『국내외 통계제도 및 통계작성현황 비교분석 연구』, 2009.12.1, 학술연구용역 (연구책임자: 김기환)
- 통계청 (2006), 『매월노동통계조사 정기통계품질진단 최종결과 보고서』, 통계청
- 통계청 (2006), 『사업체근로실태조사 정기통계품질진단 최종결과 보고서』, 통계청
- 통계청 (2006), 『자금순환통계 정기통계품질진단 최종결과 보고서』, 통계청
- 통계청 (2006~2009), 『통계연구』, 통계청
- 통계청 (2007), 『광공업동태조사 정기통계품질진단 최종결과 보고서』, 통계청
- 통계청 (2007), 『국민계정 정기통계품질진단 최종결과 보고서』, 통계청
- 통계청 (2007), 『국제수지 국가통계 품질진단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2007 10. 24, 통계청
- 통계청 (2007), 『국제수지통계 정기통계품질진단 최종결과 보고서』, 통계청
- 통계청 (2007), 『산업연관표 정기통계품질진단 최종결과 보고서』, 통계청
- 통계청 (2007), 『생산자물가조사 정기통계품질진단 최종결과 보고서』, 통계청
- 통계청 (2007), 『소비자물가조사 정기통계품질진단 최종결과 보고서』, 통계청
- 통계청 (2007), 『수출입물가조사 정기통계품질진단 최종결과 보고서』, 통계청
- 통계청 (2008), 『경제활동인구조사 정기통계품질진단 최종결과 보고서』, 통계청
- 통계청 (2010), 『국가통계 품질제고를 위한 제도적 고찰』, 2010.6, 학술연구용역 (연구책임자: 박성현), 통계청
- 통계청 (2010), 『통계품질관리 이렇게 합니다』, 통계청
- 통계청 (2010), 『해외통계동향, Vol.13』, 통계청
- 통계청, 서비스업총조사 Meta Data, 통계청
- 한국은행 (1994), 『우리나라 자금 순환계정의 이해』, 한국은행
- 한국은행 (1995), 『한국은행의 통계: 어제와 오늘』, 한국은행
- 한국은행 (1997), 『1993 국민계정체계』, 한국은행

- 한국은행 (2004), 『산업연관분석 해설』, 한국은행
- 한국은행 (2005), 『국민계정의 이해』, 한국은행
- 한국은행 (2005), 『우리나라의 국민계정체계』, 한국은행
- 한국은행 (2006), 『분기 국민소득 추계 편람』, 한국은행
- 한국은행 (2007), 『국제수지표와 국제투자대조표의 이해』, 한국은행
- 한국은행 (2007), 『산업연관분석 해설』, 한국은행
- 한국은행 (2009), 『국제수지표와 국제투자대조표의 이해』, 한국은행
- 한국은행 (2010), 『알기쉬운 경제지표 해설』, 한국은행
- 한국은행 물가통계팀(2009), 물가총람(2009), 한국은행
- 한국은행, Meta Data, 한국은행 · 통계청
- 해양수산부 (2007), 해양수산통계연보, 해양수산부
-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1990), 『Australian System of National Accounts(Concepts, Sources and Method』, Cat. no. 5216.0, May.1990
-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1999), 『Implementing BPM5 and SNA93 in Australia's International Accounts』, IMF, Sep.1999
-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 『Australian System of National Accounts』, Cat. no. 5204
- BEA (1991), 『Gross Domestic Product as a Measure of U.S. Production』, BEA, Aug.1991, <http://www.bea.gov/scb/pdf/national/nipa/1991/0891od.pdf>
- BEA (2007), 『An Introduction to the National Income and Product Accounts』, BEA, July.2009. [http://www.bea.gov/scb/pdf/national/nipa/methpap/mpil\\_0907.pdf](http://www.bea.gov/scb/pdf/national/nipa/methpap/mpil_0907.pdf)
- BEA (2007), 『Measuring the Economy : A Primer on GDP and the National Income and Product Accounts』, BEA, Sep.2007 [http://www.bea.gov/national/pdf/nipa\\_primer.pdf](http://www.bea.gov/national/pdf/nipa_primer.pdf)
- BEA (2009), 『NIPA Handbook : Concepts and Methods of the U.S. National Income and Product Accounts』, BEA, Oct.2009, <http://www.bea.gov/national/pdf/NIPHandbookch1-4.pdf>
- BEA, 『A Guide to the National Income and Product Accounts of the United States』, <http://www.bea.gov/national/pdf/nipaguid.pdf>
- BOJ (2009), 『Japan's Balance of Payments for 2008』, BOJ, Aug.209
- Bureau of Labor Statistics (2007), The Consumer Price Index, June. 2007 <http://www.bls.gov/opub/hom/pdf/homch17.pdf>
- Bureau of Labor Statistics, International Price Indexes, <http://www.bls.gov/mxp/>
- Bureau of Labor Statistics, Producer Prices, <http://www.bls.gov/ppi/>
- Charles Ian Mead, Karin E. Moses, and Brent R. Moulton (2004), 『The NIPAs and the System of National Accounts』, BEA, Dec.2004 [http://www.bea.gov/scb/pdf/2004/12December/1204\\_NIPA&SNA.pdf](http://www.bea.gov/scb/pdf/2004/12December/1204_NIPA&SNA.pdf)



- Dale W. Jorgenson, J. Steven Landefeld and William D. Nordhaus (2006), 『 A New Architecture for the U.S. National Accounts』 ,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Economic and Social Research Institute (2002), 『Outline of the New Estimation of Quarterly GDP』 , Cabinet Office, May.2002  
<http://www.esri.cao.go.jp/en/sna/020612/outline.pdf>
- Economic and Social Research Institute (2004), 『Application of the Chain-Linking Method to the Complication of Japan's SNA』 , Cabinet Office, Nov.2004, <http://www.esri.cao.go.jp/en/sna/041118/egizisokuho.html>
- Economic and Social Research Institute (2005), 『Estimation Method of Preliminary Quarterly GDP』 , Cabinet Office, Jan.2005  
<http://www.esri.cao.go.jp/en/sna/050721/contents.pdf>
- Economic and Social Research Institute (2005), 『New System of Integrated Environment and Economic Accounting』 ,Cabinet Office, Mar.2005  
<http://www.esri.go.jp/jp/workshop/050325/050325paper-c.pdf>
- Economic Research Institute (2000), 『For Promoting Understanding of Japan's GDP Figures』 , Cabinet Office, Jun.2000  
<http://www5.cao.go.jp/2000/g/0602g-gdpcments-e.html>
- Economic Research Institute (2000), 『The Recent Opinions on Japan's GDP Figures and Our Approach』 , Cabinet Office, Jun.2000  
<http://www5.cao.go.jp/2000/g/0609g-qeapproach.pdf>
- Federal Reserve Bank, Industrial Production Explanatory Notes, Monthly, Federal Reserve Bank
- INSEE, National Institute of Statistics and Economic Studies (2008), 『2007 Annual Report』 , INSEE 발행
- International Monetary Fund (2003), 『Data Quality Assessment Framework and Data Quality Program, Fifth Review of the Fund's Data Standards Initiatives』 June 25, 2003
- International Monetary Fund (2003), 『Republic of Korea: Report on the Observance of Standards and Codes--Data Module; Response by the Authorities; and Detailed Assessments Using Data Quality Assessment Framework』 , IMF Country Report No. 03/127 May 2003
- International Monetary Fund (2006), 『Germany: Report on Observance of Standards and Codes--Data Module, Response by the Authorities, and Detailed Assessments Using the Data Quality Assessment Framework (DQAF)』 , IMF Country Report No. 06/18, January, 2006

- International Monetary Fund (2006), 『Japan: Report on Observance of Standards and Codes—Data Module, Response by the Authorities, and Detailed Assessments Using the Data Quality Assessment Framework (DQAF)』, IMF Country Report No. 06/115, March 2006
- International Monetary Fund (2007), 『Italy: Report on the Observance of Standards and Codes—Data Module, Response by the Authorities, and Detailed Assessment Using the Data Quality Assessment Framework (DQAF)』, IMF Country Report No. 07/87, February 2007
- International Monetary Fund (2010), 『Republic of Korea: Report on Observance of Standards and Codes—Data Module』, IMF Country Report No. 10/229, July 2010
- Japan Statistics Bureau and Statistics Center, Guide to Official Statistics in Japan, Composite Index of Living Expenditure(Index), <http://www.stat.go.jp/english/index/official/213.htm#12>
- Japan Statistics Bureau and Statistics Center, Guide to Official Statistics in Japan, Consumer Price Index, <http://www.stat.go.jp/english/index/official/213.htm#6>
- Japan Statistics Bureau and Statistics Center, Guide to Official Statistics in Japan, Corporate Goods Price Index (Index), <http://www.stat.go.jp/english/index/official/213.htm#8>
- Japan Statistics Bureau and Statistics Center, Guide to Official Statistics in Japan, Corporate Goods Price Survey (Notified Survey), <http://www.stat.go.jp/english/index/official/213.htm#7>
- Japan Statistics Bureau and Statistics Center, Guide to Official Statistics in Japan, Corporate Services Price Index (Index), <http://www.stat.go.jp/english/index/official/213.htm#15>
- Japan Statistics Bureau and Statistics Center, Guide to Official Statistics in Japan, Corporate Services Price Index (Notified Survey), <http://www.stat.go.jp/english/index/official/213.htm#16>
- Japan Statistics Bureau and Statistics Center, Guide to Official Statistics in Japan, Indices of Industrial Production, Producer's Shipments, Producer's Inventory of Finished Goods and Producer's Inventory Ratio of Finished Goods(Index), <http://www.stat.go.jp/english/index/official/206.htm#3>
- Japan Statistics Bureau and Statistics Center, Guide to Official Statistics in Japan, National Survey of Family Income and Expenditure(Designated Statistical Survey), <http://www.stat.go.jp/english/index/official/213.htm#3>
- Japan Statistics Bureau and Statistics Center, Guide to Official Statistics in Japan, Statistics Survey of Current Industrial Production(Designated Statistical Survey), <http://www.stat.go.jp/english/index/official/206.htm#2>
- Karen Wilson (2006), “The Architecture of the System of National Accounts: A Three-Way International Comparison of Canada, Australia, and the United

- Kingdom,” NBER Chapters in: A New Architecture for the U.S. National Accounts, pp. 113–142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Inc.
- Michael J. Boskin (2009), “Perspectives on the New Architecture for the US National Accounts”, American Economic Review, 99(2): 69–73.
  - National Institute of Statistics and Economic Studies (2008), 『2007 Annual Report』, INSEE 발행
  -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2010), Producer Price Indices, Apr.2010, <http://www.statistics.gov.uk/CCI/Nscl.asp?ID=8330&Pos=&ColRank=1&Rank=374>
  -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Consumer Price Indices, <http://www.statistics.gov.uk/statbase/product.asp?vlnk=868>
  -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Guide to Index of Production, <http://www.statistics.gov.uk/cci/nugget.asp?id=198>
  - Paul R. Lally (2009), 『How BEA Accounts for Investment in Private Structures』, BEA, Feb.2009 [http://www.bea.gov/scb/pdf/2009/02%20February/0209\\_briefing\\_structures.pdf](http://www.bea.gov/scb/pdf/2009/02%20February/0209_briefing_structures.pdf)
  - Roberto Barcellan and others (1999), 『Handbook on Quarterly National Accounts』, European Communities
  - Sanjiv Mahajan (2007), 『UK National Accounts(GDP and Input-Output Supply and Use Table)』, ONS
  - Simon A. Goldberg (1949), “The Development of National Accounts in Canada”, The Canadian Journal of Economics and Political Science, Vol.25.No.1, pp 34-52
  - Statistic Canada, Changes in the International Merchandise Trade Price Index, <http://www.statcan.gc.ca>
  - Statistic Canada, International Trade Price Indexes, <http://www.statcan.gc.ca>
  - Statistics Canada (1989), 『A User Guide to the Canadian System of National Account』, Minister of Regional Industrial Expansion, Nov.1989 <http://www.statcan.gc.ca/nea-cen/pub/guide/4221065-eng.pdf>
  - Statistics Canada (2002), Gross Domestic Product by Industry - National(Monthly), Nov.2002, <http://www.statcan.gc.ca/pub/15-547-x/15-547-x2002001-eng.pdf>
  - Statistics Canada (2004), Explanation of methods used and additional sources for industrial price indexes, Industry Price Indexes, Sept. 2004, <http://www.statcan.gc.ca>
  - Statistics Canada (2007), 『Canada’s Balance of International Payments : System of National Account』, Statistics Canada, July.2007

- [http://dsp-psd.pwgsc.gc.ca/collection\\_2007/statcan/67-001-X/67-001-XIE2007001.pdf](http://dsp-psd.pwgsc.gc.ca/collection_2007/statcan/67-001-X/67-001-XIE2007001.pdf)
- Statistics Canada (2009), A Revision of the Methodology of the Rent Component of the Consumer Price Index beginning with the July 2009 CPI, [http://www.statcan.gc.ca/imdb-bmdi/document/2301\\_D41\\_T9\\_V1-eng.pdf](http://www.statcan.gc.ca/imdb-bmdi/document/2301_D41_T9_V1-eng.pdf)
  - Statistics Canada (2009), Farm Product Price Index(FPPI), Oct.2009 <http://www.statcan.gc.ca/pub/21-007-x/21-007-x2009010-eng.pdf>
  - Statistics Canada (2010), Consumer Price Index(CPI), July.2010, <http://www.statcan.gc.ca/pub/62-001-x/62-001-x2010007-eng.pdf>
  - Statistics Canada (2010), Industrial Product Price Index(IPPI), June.2010, <http://www.statcan.gc.ca/pub/62-011-x/62-011-x2010006-eng.pdf>
  - Statistics Canada 2008-2009 <http://www.tbs-sct.gc.ca/rpp/2008-2009/inst/stc/stctb-eng.asp>
  - Statistics Canada, Canadian Composite Leading Indicators(CI), <http://www.statcan.gc.ca>
  - Statistisches Bundesamt Duetschland, Index of Foreign Trade Prices, [www.destatis.de](http://www.destatis.de)
  - Statistisches Bundesamt Duetschland, Index of Producer Prices for Industrial Products, [www.destatis.de](http://www.destatis.de)
  - Statistisches Bundesamt Duetschland, The Consumer Price Index, [www.destatis.de](http://www.destatis.de)
  - Statistisches Bundesamt Duetschland, The Product Index, [www.destatis.de](http://www.destatis.de)
  - The Conference Board, Business Cycle Indicators Handbook, 2001, <http://www.conference-board.org>
  - The Office of National Statistics (2000), 『UK National Accounts Blue Book(2000)』, HMSO
  - The Office of National Statistics (2001), 『UK National Accounts Blue Book(2001)』, HMSO
  - The Office of National Statistics (2002), 『UK National Accounts Blue Book(2002)』, HMSO
  - The Office of National Statistics (2003), 『UK National Accounts Blue Book(2003)』, HMSO
  - The Office of National Statistics (2004), 『UK National Accounts Blue Book(2004)』, HMSO
  - The Office of National Statistics (2005), 『UK National Accounts Blue Book(2005)』, Palgrave MacMillan
  - The Office of National Statistics (2006), 『UK National Accounts Blue

- Book(2006)』, Palgrave MacMillan
- The Office of National Statistics (2007), 『UK National Accounts Blue Book(2007)』, Palgrave MacMillan
  - The Office of National Statistics (2008), 『UK National Accounts Blue Book(2008)』, Palgrave MacMillan
  - The Office of National Statistics (2009), 『UK National Accounts Blue Book(2009)』, Palgrave MacMillan
  - The Operation and Organization of a Statistical Agency(2003), 『Handbook of Statistical Organization, 3rd edition』, United Nations New York
  - UN. The Operation and Organization of a Statistical Agency(2003), 『Handbook of Statistical Organization, 3rd edition』, United Nations New York

#### 웹사이트

- 독일 연방은행, <http://www.bundesbank.de/index.en.php>
- 독일 통계청, <http://www.destatis.de/>
- 미국 노동통계국, <http://www.stats.bls.gov/>
- 미국 상무부 경제분석국, <http://www.bea.gov/>
- 미국 상무부, <http://www.commerce.gov/>
- 영국 통계청, <http://www.statistics.gov.uk/hub/index.html>
- 영란은행, <http://www.bankofengland.co.uk>
- 일본 통계청 홈페이지, <http://www.stat.go.jp/>
- 일본은행, <http://www.boj.or.jp/>
- 캐나다 중앙은행, <http://www.bankofcanada.ca/>
- 캐나다 통계청, <http://www.statcan.ca/>
- 프랑스 중앙은행, <http://www.banque-france.fr/>
- 프랑스 통계청, <http://www.insee.fr/en/default.asp>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http://ecos.bok.or.kr/>
- 한국은행 홈페이지, <http://bok.or.kr/>
- 한국 통계청, <http://www.kostat.go.kr>
- 호주 연방준비은행, <http://www.rba.gov.au/>
- 호주 통계청, <http://www.abs.gov.au/>
- Eurostat, <http://epp.eurostat.ec.europa.eu/portal/page/portal/eurostat/home>

-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http://www.itu.int/ITU-D/icteye/Indicators/Indicators.aspx>
- IMF, <http://www.imf.org/external/index.htm>
- OECD, <http://www.oecd.org/redirect/>

<부록 A.1> 국민계정 추계를 위한 자료

1. 생산계정

1) 농림어업

자료명	작성기관	주요내용	종류
농가경제통계연보	통계청	부가가치 구성요소 및 중간투입자료	조사
농림통계연보	농림부	농산물 생산량 및 생산액	조사
농약연보	농약공업협회	농약출하량 및 출하금액	보고
농축산물소득자료	농촌진흥청	농축산물가격 중간투입가격	
농협조사월보	농협중앙회	농축산물가격 및 중간투입가격	조사
비료판매자료	농협중앙회	비료판매액 및 판매량	보고
수삼생산량, 정부수매량, 정부수매액, 부수매단가	한국인삼공사	인삼 생산량, 수매량, 수매액, 수매단가	보고
잎담배(예상)생산량 및 수매단가	케이티앤지(KT&G)	잎담배 생산량 및 단가	보고
작물통계	농림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재배면적 및 생산량	보고
추곡 및 하곡 수매량 및 수매단가	농림부	벼 수매량, 수매단가	보고
춘장, 추장 생산량 및 수매액	농림부	춘추장 생산량, 수매액, 수매단가, 누에씨상자당 정부고시가	보고
특용작물 생산실적	농림부	특용작물 생산량 및 생산액	보고
화훼작물 생산실적	농림부	화훼작물 생산량	보고
가축통계	농림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축산물 순종두수	조사
도축검사실적	농림부	축종별 도축두수	보고
기타가축통계	농림부	기타가축 사육두수	보고
생우유생산실적	농림부	생우유생산량	보고
일반사슴 농장분양가격, 녹용생산량 및 가격	한국양록협회	사슴 종류별·성별·연령별 평균가격, 녹용생산량, 가격	보고
축산물 생산비 통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축산물 생산비용	조사
수렵생산량	환경부	수렵 생산실적	보고
임업생산통계	산림청	임산물 생산량 및 가격	조사
조림투자실적	산림청	조림면적 및 금액	보고
어업생산통계	해양수산부	업종별·어종별 생산량 및 생산액	조사
원양어업통계연보	원양어업협회	원양어업 생산량 및 생산액	보고
농업어업서비스 관련 결산서	농·수협 중앙회, 농업기반공사	영업비용, 인원 및 인건비	보고
산업별 외형거래액	국세청	농업어업서비스 산출액	보고
생산자물가통계	한국은행	중간투입 가격자료	조사
소비자물가통계	통계청	중간투입 가격자료	조사

## 2) 광업

자료명	작성기관	주요 내용	종류
광공업통계조사	통계청	품목별 생산액 및 주요 생산비 자료	조사
산업연관표	한국은행	기준년 부가가치율 추계 및 비교년 이중환가시 이용	가공
광산물수급통계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품목별 생산량 및 기준단가 자료	보고
소금생산량	대한염업조합한국은행	원염 산출액	보고
생산자물가통계	한국은행	산출액 디플레이터, 중간투입 디플레이터 계산	조사
수출디플레이터	한국은행	산출액 디플레이터 계산	가공
수입디플레이터	한국은행	중간투입 디플레이터 계산	가공
석탄산업규모	산업자원부	석탄 산출액	보고
골재수급현황	한국골재협회	모래, 자갈 산출액	보고

## 3) 제조업

자료명	작성기관	주요내용	종류
광공업통계조사	통계청	품목별 생산액, 주요생산비자료	조사
기업경영분석	한국은행	부가가치율	가공
투입산출표	한국은행	기준년 산출액 및 부가가치율	가공
생산자물가통계	한국은행	산출액 디플레이터, 중간투입 디플레이터	조사
수출디플레이터	한국은행	산출액 디플레이터	가공
수입디플레이터	한국은행	중간투입 디플레이터	가공
국세통계연보	국세청	생산세, 보조금	보고
지방세정연감	행정자치부	생산세, 보조금	보고
정곡검사실적	국립농수산물검사소	정미 및 정맥 생산량	보고
정곡생산량	농림부	정미 및 정맥 생산량	보고



#### 4) 전기가스수도업

구분	자료명	작성기관	종류
판매전력	결산서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거래소 등	보고
	전력거래명세서	한국전력거래소	보고
	전력판매속보	한국전력공사	보고
	핵연료도입단기	한국수력원자력	보고
판매전력	직관실적	한주, 여천NCC, 대구염색산단 등	보고
자가발전가스업	상용자가발전실적	한국전력거래소	보고
	결산서	한국가스공사	보고
	가스판매실적	도기가스사(32), 한국가스공사	보고
열공급업	열공급판매실적	집단에너지사업자(28)	보고
	집단에너지사업 관련자료	에너지관리공단	보고
수도업	급수수익실적	지방자치단체(70), 한국수자원공사	보고
	결산서	한국수자원공사, 행정자치부	보고

#### 5) 건설업

자료명	작성기관	주요내용	종류
건설업통계조사보고서	통계청	공종별 기성액, 산업 및 공사실적 통계	조사
건축 허가 및 착공면적통계	건설교통부	용도 및 구조별 건축 허가, 착공면적통계	보고통 계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세출자료	재정경제부 및 각 지방정부	예산집행실적	보고
건물신축단가표	한국감정원	신축건물 단가	보고
지방재정연감	행정자치부	지방정부 예산집행실적	보고
공기업특별회계결산서	행정자치부	-	보고
공사집행실적	각 조사대상처(한국전력공사, 도로공사 등 50여개 기관)	과세대상 건물 면적	보고
지방세정연감	행정자치부	주택수선비 지출액	보고
도기가계조사	통계청	주택수선비 지출액	조사
농가경제통계·어가경제 통계	통계청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수	조사
국부통계조사	통계청	종합재무표	조사
건설경영분석	대한건설협회	재무제표 및 경영분석지표	보고
기업경영분석	한국은행	입금	가공
매원노동통계	노동부	노임단가	보고
건설업 노임단가	대한건설협회	생산자물가 총지수 등	보고
생산자물가통계	한국은행		조사

6)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구분	자료명	작성기관	종류
도소매업	도소매업 통계조사 보고서	통계청	조사
	국세청외형거래	국세청	보고
	수출액 및 수입액	관세청	보고
	양곡 방출량 및 판매액	농림부	보고
	비료 판매량 및 판매액	농협중앙회	보고
음식숙박업	도소매업 통계조사 보고서	통계청	조사
	국세청외형거래	국세청	보고
	서비스업활동지수	통계청	조사
	음식업체수	음식업 중앙회	보고
	객실수입액 및 객실수판매현황	표본 호텔	조사

7) 운수창고통신업

구분	자료명	작성기관	종류
운수 및 보관	운수업통계조사보고서	통계청	조사
	건설교통통계연보	건설교통부	보고
	한국철도공사 결산서	한국철도공사	보고
	지하철 관련 결산서	서울시지하철공사, 서울시도시철도공사, 대구지하철공사, 인천지하철공사, 부산교통공단	보고
	한국도로공사 결산서	한국도로공사	보고
	항공사 결산서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보고
	공항공사 결산서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보고
통신	통신사업특별회계 결산서	정보통신부	보고
	택배업체 결산서	한진택배, 현재택배, CJGLS 등	보고
	유선통신회사 결산서	KT 하나로텔레콤, 데이콤 등	보고
	무선통신회사 결산서	SKT, LGT, KTF	보고
	정보통신산업통계산업연보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조사

8) 금융보험업 · 부동산업

(1) 금융보험업 기초통계자료

구분	자료명	작성기관	종류
중앙은행	결산서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보고
예금취급기관, 기타금융중개기관	결산서	금융감독원, 해당기관	보고
	금융자산부채잔액표	한국은행	가공
생명보험, 비생명보험, 금융보조기관	결산서	금융감독원, 해당기관	보고
디플레이터	생산자물가통계	한국은행	조사
	소비자물가통계	통계청	조사

(2) 부동산업 기초통계자료

구분	자료명	작성기관	종류
부동산 임대개발업	농임업통계조사보고서	농림부	조사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	통계청	조사
	도소매업통계조사보고서	통계청	조사
	운수업통계조사보고서	통계청	조사
	서비스업통계조사보고서	통계청	조사
	기업경영분석	한국은행	가공
	산업연관표	한국은행	가공
	결산서	한국토지공사 등	보고
	서비스업활동지수	통계청	가공
부동산 관련서비스업	외형거래액	국세청	보고
	산업연관표	한국은행	가공
	결산서	한국감정원 등	보고
주택소유업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통계청	조사
	산업연관표	한국은행	가공
	가구수 통계	광역자치단체, 행정자치부	보고
디플레이터	생산자물가통계	한국은행	조사
	소비자물가통계	통계청	조사

9) 공공행정 ·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서비스업

구분	자료명	작성기관	종류
회계별 · 세목별 예산	중앙정부 예산	기획예산처	보고
회계별 · 세목별 예산	중앙정부 결산	재정경제부	보고
기금별 현황과 운용계획	기금운용계획서	기획예산처	보고
일반 및 특별회계 소간별 결산 및 증감사유	세입 · 세출결산서	재정경제부	보고
차입금, 국채, 국고채무부담 행위, 채무보증명세서	국가채무에 관한 계산서	재정경제부	보고
회계별 · 종류별 · 관리청별 증감 및 현재액	국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총계산서	재정경제부	보고
회계별 · 소관별 사용명세서	예비비비사용총괄서	재정경제부	보고
결산총괄 및 결산서류	기금결산보고서	재정경제부	보고
재정현황 및 자치단체별 예산	지방자치단체예산개요	행정자치부	보고
단체별 · 회계별 예산 · 결산	지방재정연감	행정자치부	보고
지방세 세목별 · 단체별 부과 · 징수실적	지방세정연감	행정자치부	보고
국세 세목별 개념 및 부과 · 징수실적	국세통계연보	행정자치부	보고
	교육통계연보	국세청	보고
	중앙 · 지방정부예산서	각 부처, 도, 시, 군, 구	보고
	지방정부결산서	각도, 시, 군, 구	보고
회계별 · 소관별 · 세목별 집행실적	중앙정부 세출자료	재정경제부	보고
	지방정부 지출액 누계	각 도, 시, 군, 구	보고
	교육비 지출액 누계	각 교육청	보고
장교, 하사관, 병, 공익요원	국방평균운용병력	국방부	보고
중앙 · 지방 직급별 공무원 정원	중앙 · 지방 공무원 정원 총괄표	행정자치부	보고
	사회보장기금 인원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고
중앙 · 지방 · 교육 공무원 건강보험 가입자 수	중앙 · 지방 · 교육 공무원 현재원수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고

10) 사업·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구분	자료명	작성기관	종류	
사업서비스	기계장비 및 용품임대	운용리스 수입액	각 종합금융사 및 할부금융사	보고
		결산서	각 항공사 및 한국 공항공단 등	보고
	광고	결산서	각 방송사	보고
		광고연감	제일기획	보고
	법무 및 회계서비스	법원통계	법원행정처	보고
	건축공학 및 기타공학	외환수급통계 특허권사용료 수익	한국은행	보고
	컴퓨터관련 서비스	정보통신산업통계 연보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조사
	기업내 연구개발	과학기술연구활동조사보고서	과학기술부	보고
	기타사업서비스	결산서	전기 및 수도검침 대행업체	보고
통신사업특별회계 결산서		정보통신부	보고	
교육서비스	교육서비스(산업)	결산서	각 전문연수원	보고
		도시가계연보	통계청	조사
		교육통계연보	한국교육개발원	보고
보건 및 사회서비스	의료 및 보건서비스(산업)	진료비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고
		보건복지통계연보	보건복지부	보고
기타서비스	위생서비스	지방공기업 하수도 특별회계 세입결산서	지방재정연감	보고
		방송서비스	정보통신산업통계 연보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결산서		각 방송사	보고
	영화 및 연예서비스	한국영화연감	영화진흥위원회	보고
	기타오락서비스	프로야구 입장수입액	한국야구위원회	보고
		복권판매기관 복원매출 및 당첨금	각 복권판매기관	보고
		카지노 환전실적	각 카지노업체	보고
		결산서	한국마사회, 국민체육진흥공단경륜사업본부 등	보고
	對 개인서비스	도시가계연보	통계청	조사
	팁	골프장 캐지 및 입장인원	골프장 협회 등	보고
		미용, 욕탕 및 유사서비스업 종사자수	서비스업통계조사보고서	보고
가사서비스	도시가계연보	통계청	조사	

## 2. 재화서비스(지출) 계정

### 1) 최종소비지출

#### (2) 민간소비

자료명	작성기관	주요 내용	종류
양곡소비량조사	통계청	양곡소비 증가율	조사
농업기본통계조사	통계청	농가인구	조사
KT&G IR자료	케이티앤지(KT&G)	내수판매실적	보고
	자동차공업협회	내수판매대수	보고
내수출하	통계청	내수출하	조사
수입자동차통계월보	수입자동차협회	수입차등록대수	보고
자동차등록현황	건설교통부	승용차 등록 및 중고수출 자료	보고
도소매판매액지수	통계청	품목별 소매판매지수 증감률	조사
유무선통신 가입자현황	정보통신부	이동전화·인터넷 가입자수	보고
서비스업활동지수	통계청	항목별 서비스업 동향	가공
전력통계연속보	한국전력공사	가정용 전력판매실적	보고
농수산물거래실적	가락시장	주요 농수산물 판매 증감률	보고
소비자물가통계	통계청	품목별 물가지수	조사
산용카드 이용액	여신금융협회	판매신용 증감률	보고
도시가스사업 통계월보	한국도시가스협회	가정용 도시가스 판매실적	보고
종목별 원수보험료	손해보험협회	손해보험 월별 원수보험실적	보고
주요기업의 내구재 판매실적	금융감독원	주요 내구재의 분기중 내수판매	보고

#### (2) 정부소비

자료명	작성기관	주요 내용	종류
세입·세출결산서	재정경제부	중앙정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보고
지방재정연감	행정자치부	지방정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보고
지방세외수입연감	행정자치부	지방정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외수입	보고
사회보장기금결산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외	사회보장기금 사회수혜금 및 사회복지부담금	보고

## 2) 총자본형성

### (1) 총고정자본 형성

구분	자료명	작성기관	종류
자본재 형태별 총고정자본형성	산업활동동향	통계청	가공
	자동차 통계월보	자동차공업협회	보고
	자동차 등록실적	건설교통부	보고
	선박 등록실적	해양수산부	보고
	항공기 등록실적	건설교통부	보고
경제활동별 총고정자본형성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	통계청	조사
	건설업통계조사보고서	통계청	조사
	운수업통계조사보고서	통계청	조사
	정보통신통계연보	정보통신산업협회	보고
	기업경영분석	한국은행	가공
	법인 및 개인기업 재무제표	국세청	보고
	중앙 및 지방정부 결산자료	재정경제부, 각 지방자치단체	보고
디플레이터	가공단계별물가통계	한국은행	조사
	수출입물가통계	한국은행	조사
	생산자물가통계	한국은행	조사

### (2) 재고증감

자료명	작성기관	주요 내용	종류
산업생산, 재고지수 및 물량	통계청	재고율 계산	가공
광공업통계조사 세세분유별자료	통계청	재고증감	조사
석유수급통계	한국석유공사	원유재고 증가	보고

### (3) 재화와 서비스의 수출입

#### ① 재화의 수출입

자료명	작성기관	주요 내용	종류
통관통계	한국무역협회	품목별 재화의 수출입금액 및 물량	보고
남북교역통계	한국무역협회	품목별 재화의 반출·반입금액	보고
국제수지통계	한국은행	포괄범위 조정, 계상시점 조정, 분류조정액	가공
수출입물가통계	한국은행	품목별 수출입물가	조사

#### ② 서비스의 수출입

자료명	작성기관	주요내용	종류
국제수지표	한국은행	서비스 수출입금액	가공
외환수급통계	한국은행	무역의 수입 및 지급금액	보고
관광통계	한국관광공사	목적별 및 국가별 입출국지수 통계	가공
입어료통계	한국원양어업협회	연간 입어료 현황	보고
생산자물가통계	한국은행	총지수, 운수(외항운송)·통신업 지수	조사
소비자물가통계	통계청	총지수	조사
미국 소비자물가통계	미국 BLS <sup>88)</sup>	총지수	조사
일본 소비자물가통계	일본 통계청	총지수	조사
IFS <sup>89)</sup>	IMF	주요국 환율 및 소비자물가지수	보고

88) Bureau of Labor Statistics

89)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 3. 분배(소득)계정

자료명	작성기관	종류
종합계정표, 국외거래자료, 정부부문 추계자료, 금융·보험·부동산업 추계자료	한국은행	가공
기업경영분석	한국은행	가공
금융부채잔액표	한국은행	가공
법인기업 및 개인 재무제표	국세청	보고
지방재정연감	행정자치부	보고
생명보험 재무제표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등	보고
비생명보험 재무제표	건설공제 등	보고
국민주택기금 재무제표	국민은행	보고
국가채무에 관한 계산서	재정경제부	보고
도시가계연보, 농가경제통계, 어가경제통계, 운수업통계보 사보고서	통계청	조사
결산실적분석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보고
정부투자기관결산서	재정경제부	보고
지방공기업특별회계, 중앙정부 기업특별회계	행정자치부, 재정경제부	보고
손해보험통계연보	보험개발원	보고
금융통계월보	금융감독원	보고

[ 부록 A.2 ] 소비자물가지수

소비자물가지수						
국가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일본	독일
통계명	• Consumer Price Index(CPI)	• Consumer Price Index(CPI)	• CPI • RPI(RetailPriceIndex)	• CPI(Consumer Price Index)	• Consumer Price Index (CPI)	• Consumer Price Index (CPI)
조사주기	• 매월	• 매월	• 대부분월간조사 • 몇개품목은분기조사	• 월별 • 분기별	• 매월1회 • 신선식품은매월3회	• 월간조사
조사방법	• 면접조사	• 표본조사 • 면접조사	• 면접조사 • 전화조사	• 면접조사 • 전화조사	• 면접 및 청취조사	• 인터넷 조사 및 우편조사
표본크기	• 26,400여개소매점포 • 집계:20,000여임차 인구조사	• 650,000개의가격자료	• 20,000점포	• 100,000여개 가격 자료	• 34,000여개상품 • 서비스점포233,000여개	• 4000여개 소매점포
공표방법	• 홈페이지 수록	• 홈페이지수록 • 간행물	• 온라인 • 뉴스 • 보도자료	• 홈페이지수록 • 간행물	• 공표때, 주요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	• 보도자료, 홈페이지
공표주기	• 매월 중순에 공표	• 매월, 매년	• 월간	• 분기별	• 매월	• 매월
간행물명	• Consumer Price Index • Historical data in Handbook of Labor Statistics	• Consumer Price Index • Prices and price indexes	• Focus on consumer price indices	• ConsumerPriceIndex, Australia • Average Retail Price of selected Items	• 소비자물가지수스코어 • 소비자물가지수월보 • 소비자물가지수연보	• Consumer price indices for germany
Website	• <a href="http://www.bls.gov/cpi/">http://www.bls.gov/cpi/</a>	• <a href="http://www.statcan.gc.ca/bsolc/olc-cel/olc-cel?lang=eng&amp;catno=62-001-X">http://www.statcan.gc.ca/bsolc/olc-cel/olc-cel?lang=eng&amp;catno=62-001-X</a>	• <a href="http://www.statistics.gov.uk/ci/nugget.asp?id=23">http://www.statistics.gov.uk/ci/nugget.asp?id=23</a>	• <a href="http://www.abs.gov.au/AUSSTATS/abs@.nsf/DetailedPage/6427.0Mar%202010?OpenDocument">http://www.abs.gov.au/AUSSTATS/abs@.nsf/DetailedPage/6427.0Mar%202010?OpenDocument</a>	• <a href="http://www.stat.go.jp/data/cpi/index.htm">http://www.stat.go.jp/data/cpi/index.htm</a> • <a href="http://translate.google.com/translate?hl=ko&amp;sl=ja&amp;tl=ko&amp;u=http%3A%2F%2Fwww.stat.go.jp%2F">http://translate.google.com/translate?hl=ko&amp;sl=ja&amp;tl=ko&amp;u=http%3A%2F%2Fwww.stat.go.jp%2F</a>	

작성기관	U.S Bureau of Labor Statistics	Statistics Canada	ONS	ABS	Japan Statistics Bureau and Statistics Center	
주요연혁	• 1913년	• 1914년 처음 실시	• CPI:1996년부터 작성 • RPI:1947년부터 작성 (1914년부터 생계비조사)	• CPI : 1912년부터 작성	• 소비자물가지수는 1946년8월부터 만들기 시작	• 통일독일 이후: 1991년부터 자료 존재
세부연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19년 BLS가 정기적 인물가조사를 실시 시작하고 32개 도시에 대한 각 지수 작성과 발표(publication) 시작함</li> <li>■ 1921년 미국 도시들의 평균을 나타내는 국가 지수(national index)의 발표 시작</li> <li>■ 1940년 CPI 첫 번째 개정이 이루어짐</li> <li>■ 1953년 CPI 두 번째 개정</li> <li>■ 1964년 CPI 세 번째 개정</li> <li>■ 1978년 CPI 네 번째 개정: 도시 거주자의 소비자물가지수를 나타내는 CPI-U 추가됨, 따라서 예전의 CPI는 CPI-W라고 불려짐, CPI 샘플링에 있어 probability sampling methods가 고안됨, CPI 샘플링 오차 추정과 오차를 최소화 하기 위한 최적의 샘플 allocation이 개발됨</li> <li>■ 1987년 CPI 다섯 번째 개정: CPI 주택조사를 재구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45년 분기별 LFS 시작</li> <li>■ 1952년 월별 조사로 바뀜</li> <li>■ 1960년 LFS가 캐나다 실업률 공식 추정 조사로 지명됨(interdepartmental Committee on Unemployment Statistics의 권장으로 인해)</li> <li>■ 1976년과 1997년 조사의 재구성으로 인해 LFS에 의한 정보가 크게 확대됨. 이로 인해 LFS는 캐나다 노동시장을 나타내는 중요한 조사로 자리매김</li> <li>■ 1997년 1월을 시작으로 세전 임금자료가 LFS 한 부분으로 수집되기 시작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RPI: 1947년부터 작성 (1914년부터 생계비 조사) 1947년부터 RPI(Retail Price Index)를 사용하였으나 1996년부터 통화위원회 요청에 의거하여 RPI를 CPI(Consumer Price Index)로 대체하여 사용하기 시작함.</li> <li>■ CPI: 1996년부터 작성 2003년 12월까지 CPI는 HICP(Harmonised Index of Consumer Prices)로 간행됨</li> <li>■ 2003년 12월 이후 영란은행 통화정책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물가안정목표제의 기본이 되는 새로운 역할을 반영 시키기 위해서 CPI를 HICP로 변환시켜 사용하고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60년 이전: Consume rpriceindex“Commonwealth Bureau of census and statistics“에 의해 작성되었음. 모두 5가지의 series로 나누어짐</li> <li>1) A series: 1912년 작성되었고 1938년에 중단됨. 1913년과 1933년 사이의 임금 조정에 사용된 지표</li> <li>2) B series: 1925년 첫 작성 이후 1953년에 중단됨.</li> <li>3) C series: 1921년에 처음 도입되었으며 1961년에 중단됨.</li> <li>4) D series: 1933년-34년 사이 간헐적으로 작성</li> <li>5) The interim retail price index: 1954년도 도입 이후 1960년까지 작성.</li> <li>■ 1960년 이후 : CPI를 이용하였으며 basket내의 품목별 가중치는 수시로 변화됨</li> <li>■ 가중치 변화 시점 : 1960, 1963, 1968, 1973, 1982, 1992, 1998, 2000, 2005</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46년 8월: Consumer Price Survey(CPS)와 Family Income and Expenditure Survey(FIES)를 기초로 Fisher 방식을 이용한 소비자물가지수 작성 시작</li> <li>■ 1949년: Lespeyres 방식으로 소비자물가지수 재작성, 인구가 5만 이 넘는 도시와 도쿄의 Ku-are a 중심으로 조사 및 작성</li> <li>■ 1950년: 일본 경제가 안정을 되찾음으로 인해서 CPS 대신 Retail Price Survey(RPS)로 조사 방식 변경</li> <li>■ 1952년: 1949년의 조사 범위에서 27개의 다른 도시를 포함하여 조사 실시</li> <li>■ 1955년: 5년마다 기준 년도를 변경하는 방식 시작</li> <li>■ 1966년: 조사 범위를 각 도시 그룹 단위와 도시 단위 지방 단위로 나누어 각각의 평균 기준으로 조사 및 작성</li> </ul>	

	<p>샘플링·자료수집·통계 추정방법 등 개선, CPI 생산과 추정을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기술고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98년CPI여섯번째 개정:computer-assisted 자료수집사용</li> <li>■ 1998년 개정이후의 개선: 헤도닉 회귀분석사용 확장</li> <li>■ 2002년ChainedCPIConsumerPriceIndexforAll UrbanConsumer(C-CPI-U)추가</li> </ul>					
참고자료	<p>BLSHandbookofMethods,Chapter17. TheConsumerPriceIndexpp.7(파일명:cpi_us)</p>	<p>Guide to the Labour Force Survey 2010 pp.5(파일명: labor force survey_canada)</p>	<p>Focus on consumer price indices</p>	<p>Consumer Price Index, Australia</p>	<p>2005-basedExplanation oftheConsumerPriceIndex,MinistryofInternalAffairsandCommunications,StatisticsBureau <a href="http://www.stat.go.jp/english/data/cpi/pdf/2005base.pdf#page=143">http://www.stat.go.jp/english/data/cpi/pdf/2005base.pdf#page=143</a></p>	

[ 부록 A.3 ] 수입물가지수

국가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일본	독일
통계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mport/Export Price Indices (MXP)</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nternational Merchandise Trade Price Index (IMTPI)</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PIs (The Import Price Indices)</li> <li>• EPIs (The Export Price Indices)</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mport Price Index</li> <li>• Export Price Index</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본의 경우는 CGPI와 CSPI의 지수 안에 수출입 물가지수가 포함되어 있다. (참고 : 생산자 물가지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Foreign Trade Prices (Export, Import)</li> </ul>
조사주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매월 첫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매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월별</li> <li>• 분기별</li> <li>• 연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분기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월간조사</li> </ul>
조사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편조사</li> <li>• Fax조사</li> <li>• 인터넷조사</li> <li>• 전화조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표본조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화조사</li> </ul>			
표본크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출지수의 샘플 (shippers export declaration)</li> <li>• 수입지수의 샘플 (consumption entry document)</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S PPI로부터 2000개 지수</li> <li>• Canada PPI로부터 1000개 지수</li> <li>• 일본 수출지수</li> <li>• 참고: <a href="http://www.statcan.gc.ca/cgi-bin/imdb/p2SV.pl?Function=getSurvey&amp;SDDS=2203&amp;lang=en&amp;db=imdb&amp;adm=8&amp;dis=2">http://www.statcan.gc.ca/cgi-bin/imdb/p2SV.pl?Function=getSurvey&amp;SDDS=2203&amp;lang=en&amp;db=imdb&amp;adm=8&amp;dis=2</a></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PIs: 사업체수(1,600) 가격자료(2,500)</li> <li>• EPIs : 사업체수(1,900) 가격자료(3,800)</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입 -3000여개기업, 1214여개</li> <li>수출 -3000여개기업, 1196여개</li> </ul>

공표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도</li> <li>• 간행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간행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간행물 발간</li> <li>• 온라인(NationStatisticWebsite)</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간행물 발간</li> <li>• 온라인 수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터넷</li> <li>• 간행물</li> </ul>
공표주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매월 둘째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매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월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분기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매월 25일</li> </ul>
간행물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S.ImportandExportPriceIndexes</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Canadian International Merchandise Trade</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PIs : The Business Monitor MM22 Table 5</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ConsumerPriceIndex,</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Press Releases</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HistoricaldatainHandbookofLaborStatistics</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nternational Merchandise Trade Annual Review</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EPIs:TheBusinessMonitorMM22Table6</li> </ul>			
Websit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 href="http://www.bls.gov/mxp/">http://www.bls.gov/mxp/</a></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 href="http://www.statcan.gc.ca/cgi-bin/imdb/p2SV.pl?Function=getSurvey&amp;SDDS=2203&amp;lang=en&amp;db=imdb&amp;adm=8&amp;dis=2">http://www.statcan.gc.ca/cgi-bin/imdb/p2SV.pl?Function=getSurvey&amp;SDDS=2203&amp;lang=en&amp;db=imdb&amp;adm=8&amp;dis=2</a></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 href="http://www.statistics.gov.uk/cci/nugget.asp?id=23">http://www.statistics.gov.uk/cci/nugget.asp?id=23</a></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 href="http://abs.gov.au/AUSSTATS/abs@.nsf/DetailsPage/6401.0Mar%202010?OpenDocument">http://abs.gov.au/AUSSTATS/abs@.nsf/DetailsPage/6401.0Mar%202010?OpenDocument</a></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 href="http://www.destatis.de/jetspeed/portal/cms/Sites/destatis/Internet/EN/press/abisz/Erzeugerpreise__e.templateId=renderPrint.psml">http://www.destatis.de/jetspeed/portal/cms/Sites/destatis/Internet/EN/press/abisz/Erzeugerpreise__e.templateId=renderPrint.psml</a></li> </ul>
작성기관	U.S.BureauofLaborStatistics	StatisticsCanada	ONS	ABS	Research and Statistics Department Bank of Japan	
세부내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61년NationalBureauofEconomicsResearch(NBER)의보고서에서수출입가격지수편찬은연방통계에이전시가담당해야한다고나타냄</li> <li>■ 1971년TheInternationalPriceProgram생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28년 RBA(Reserve bank of australia)에 의해 1982년까지 작성</li> <li>■ 1983년ABS에의해최초작성되고Importpriceindex를통해발행되었고 분기별로작성되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전연혁은CorporateGoodsPriceIndex와동일함</li> <li>○ 1991년:CorporateGoodsPriceIndex에추가하여일본중앙은행필요에 의해1985년기준으로공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73년 첫 번째 연간 국제가격지수 생성</li> <li>■ 1974년 국제가격지수의 수집과 발표가 분기별로 행해지기 시작함</li> <li>■ 1983년: 수입가격의 분기별 지수를 나타내는 수입가격지수가 처음으로 발표됨</li> <li>■ 1984년: 수출가격의 분기별 지수를 나타내는 수출가격지수가 처음으로 발표됨</li> <li>■ 1989년: BLS가 월별에 기초한 제한적인 지수를 생성하기 시작함</li> <li>■ 1993년 1월 : 수출입물가지수 월별 발표가 시작됨</li> </ul>			<p>1981-82=100으로 기준삼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97년까지 분기 단위 지수작성됨</li> <li>■ 1999년 연간 작성을 위하여가중치 재조정하였고 1989-90=100으로 둠.</li> <li>■ 2001년 Import price index는 International trade price indexes로 통합되어 작성되고 공표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95년: 제공범위 확대 실시</li> <li>○ 2000년: 조사범위 및 제공범위의 확대 실시</li> </ul>	
참고자료	<p>BLS Handbook of Methods, Chapter 15 International Price Indexes pp.154 (파일명: ipp_us)</p>				<p>Explanation of the 2000 Base Corporate Services Price Index (CGPI) <a href="http://www.boj.or.jp/en/type/exp/stat/pi/data/excspi03.pdf">http://www.boj.or.jp/en/type/exp/stat/pi/data/excspi03.pdf</a></p>	

[ 부록 A.4 ] 수출물가지수

국가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일본	독일
통계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mport/Export Price Indices (MXP)</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nternational Merchandise Trade Price Index (IMTPI)</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PIs (The Import Price Indices)</li> <li>• EPIs (The Export Price Indices)</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mport Price Index</li> <li>• Export Price Index</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본의 경우는 CGPI와 CSPI의 지수 안에 수출입 물가지수가 포함되어 있다. (참고 : 생산자 물가지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Foreign Trade Prices (Export, Import)</li> </ul>
조사주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매월 첫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매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월별</li> <li>• 분기별</li> <li>• 연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분기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월간조사</li> </ul>
조사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편조사</li> <li>• Fax조사</li> <li>• 인터넷조사</li> <li>• 전화조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표본조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화조사</li> </ul>			
표본크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출지수의 샘플 (shippers export declaration)</li> <li>• 수입지수의 샘플 (consumption entry document)</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S PPI로부터 2000개 지수</li> <li>• Canada IPI로부터 1000개 지수</li> <li>• 일본 수출지수</li> <li>• 참고: <a href="http://www.statcan.gc.ca/cgi-bin/imdb/p2SV.pl?Function=getSurvey&amp;SDDS=2203&amp;lang=en&amp;db=imdb&amp;adm=8&amp;dis=2">http://www.statcan.gc.ca/cgi-bin/imdb/p2SV.pl?Function=getSurvey&amp;SDDS=2203&amp;lang=en&amp;db=imdb&amp;adm=8&amp;dis=2</a></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PIs: 사업체수(1,600) 가격자료(2,500)</li> <li>• EPIs : 사업체수(1,900) 가격자료(3,800)</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입 -3000여개 기업, 1214여개</li> <li>수출 -3000여개 기업, 1196여개</li> </ul>
공표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도</li> <li>• 간행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간행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간행물 발간</li> <li>• 온라인 (NationStatistic)</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간행물 발간</li> <li>• 온라인 수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터넷</li> <li>• 간행물</li> </ul>



공표주기	• 매월 둘째주	• 매월	Website) • 월별	• 분기별		• 매월 25일
간행물명	• U.S. Import and Export Price Indexes • Historical data in Handbook of Labor Statistics	• Canadian International Merchandise Trade • International Merchandise Trade Annual Review	• IPIs : The Business Monitor MM22 Table 5 • EPIs: The Business Monitor MM22 Table 6	• Consumer Price Index,		• Press Releases
Website	• <a href="http://www.bls.gov/mxp/">http://www.bls.gov/mxp/</a>	• <a href="http://www.statcan.gc.ca/cgi-bin/imdb/p2SV.pl?Function=getSurvey&amp;SDS=2203&amp;lang=en&amp;db=imdb&amp;adm=8&amp;dis=2">http://www.statcan.gc.ca/cgi-bin/imdb/p2SV.pl?Function=getSurvey&amp;SDS=2203&amp;lang=en&amp;db=imdb&amp;adm=8&amp;dis=2</a>	• <a href="http://www.statistics.gov.uk/cci/nugget.asp?id=23">http://www.statistics.gov.uk/cci/nugget.asp?id=23</a>	• <a href="http://abs.gov.au/AUSSTATS/abs@.nsf/DetailsPage/6401.0Mar%202010?OpenDocument">http://abs.gov.au/AUSSTATS/abs@.nsf/DetailsPage/6401.0Mar%202010?OpenDocument</a>		• <a href="http://www.destatis.de/jetspeed/portal/cms/Sites/destatis/Internet/EN/press/abisz/Erzeugerpreise___e,templateId=renderPrint.psml">http://www.destatis.de/jetspeed/portal/cms/Sites/destatis/Internet/EN/press/abisz/Erzeugerpreise___e,templateId=renderPrint.psml</a>
작성기관	U.S. Bureau of Labor Statistics	Statistics Canada	ONS	ABS	Research and Statistics Department Bank of Japan	
세부내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61년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NBER)의 보고서에서 수출입 가격지수 편찬은 연방 통계에 이전시가 담당해야 한다고 나타냄</li> <li>■ 1971년 The International Price Program 생김</li> <li>■ 1973년 첫 번째 연간 국제 가격지수 생성</li> <li>■ 1974년 국제 가격지수의 수집과 발표가 분기별로 행해지기 시작함</li> <li>■ 1983년: 수입 가격의 분기별 지수를 나타내는 수입 가격지수가 처음으로 발표됨</li> <li>■ 1984년: 수출 가격의 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01년 ABS에 의해 최초 작성</li> <li>■ 1937년 새로운 Series 도입 후 1962년까지 작성</li> <li>■ 1962년 1959-60=100기준으로 삼아 작성 시작 후 1979년까지 사용</li> <li>■ 1979년 이후 1974-75=100기준으로 삼아 1990년까지 사용</li> <li>■ 1990년 Export Price Ind</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전 연혁은 Corporate Goods Price Index와 동일함</li> <li>○ 1991년: Corporate Goods Price Index에 추가하여 일본 중앙은행 필요에 의해 1985년 기준으로 공표</li> <li>○ 1995년: 제 공 범 위 확대 실시</li> <li>○ 2000년: 조사 범위 및 제 공 범 위 의 확대 실시</li> </ul>	

	<p>기별 지수를 나타내는 수출가격지수가 처음으로 발표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89년: BLS가 월별에 기초한 제한적인 지수를 생성하기 시작함</li> <li>■ 1993년 1월 : 수출입물가지수 월별 발표가 시작됨</li> </ul>			<p>ex 발행하고 1989-90=100으로 삼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99년 수출물가지수 수정</li> <li>■ 2001년 수출물가지수는 International trade price indexes로 통합되어 발행 및 작성됨.</li> </ul>		
참고자료	<p>BLS Handbook of Methods, Chapter 15 International Price Indexes pp.154 (파일명: ipp_us)</p>				<p>Explanation of the 2000 Base Corporate Services Price Index (CGPI) <a href="http://www.boj.or.jp/en/type/exp/stat/pi/data/excspi03.pdf">http://www.boj.or.jp/en/type/exp/stat/pi/data/excspi03.pdf</a></p>	

[ 부록 A.5 ] 경제활동인구조사 및 임금

구분	한국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일본
통계명	경제활동인구조사	Current Population Survey(CPS)	Labor Force Survey	Quarterly Labor Force Survey(QLFS)	Labor Force Survey	Labor Force Survey
조사주기	매월	매월	매월	분기	매월	매월
조사방법	면접(CAPI), 자기기입식, 인터넷(CASI)	면접조사, 전화조사(CATI)	전화조사(CATI병행) 면접조사	면접, 전화조사 (CATI병행)	면접, 전화조사 (CATI병행)	종이조사표 및 OMR조사표
표본크기	총 32,000가구	총 60,000 가구	총 54,000 가구	총 60,000가구	총 22,800	총 40,000가구
주요연혁	1962년 승인	1942년 시작	1945년 시작	1973년(매 2년) 1980년(연간 조사) 1992년(분기조사)	1960년(분기별) 1978년(월별)	1946년 시작
공표주기	매월	매월	매월	매월	매월	매월
간행물	경제활동인구월보	Employment and	Labor Force	Monthly Digest of	Labor Force,	Annual Report on

	경제활동인구연보	Earning	Information	Statistics. Quarterly Report for Labor Market	Australia	the Labor Force Survey
작성기관		U.SBureauofLaborSt atistics	StatisticsCanada	ONS		National Statistics Center
주요연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40년 Works Progress Administration에 의해 Monthly Report of Unemployment 라는 가구 국민 샘플 조사가 시작됨</li> <li>■ 1942년 후반 미국 상무부의 센서스국(Census Bureau)으로 가구 조사가 이관되고 이때 조사명이 Monthly Report on the Labor Force 로 바뀜</li> <li>■ 1948년 조사명이 Current Population Survey 로 다시 바뀜</li> <li>■ 1959년 CPS Labor Force 자료의 분석과 발표가 BLS 로 이관됨(자료 수집은 계속해서 센서스국이 담당)</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45년 분기별 로 LFS 시작</li> <li>■ 1952년 월별 조사로 바뀜</li> <li>■ 1960년 LFS 가 캐나다 실업률 공식 추정 조사로 지명됨(interdepartmental Committee On Unemployment Statistics 의 권장으로 인해)</li> <li>■ 1976년과 1997년 조사의 재구성으로 인해 LFS 에 의한 정보가 크게 확대됨. 이로 인해 LFS 는 캐나다 노동 시장을 나타내는 중요한 조사로 자리매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73년- 83년 : 2년 단위 작성</li> <li>■ 1984년-91년: 년단위 작성</li> <li>■ 1992년 분기 단위 작성</li> <li>■ 1992년-93년: 임금 관련 문항 추가</li> <li>■ 1994년-95년: 북아일랜드에서도 분기 단위 작성 방식 채택</li> <li>■ 1997년: 임금 관련 문항 추가</li> <li>■ 2000년: 지역 생활 인구 조사 및 웨일즈 지방 생활 인구 조사 도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60년~78년 최초 작성(분기 단위)</li> <li>■ 1970년: 계절 조정 도입</li> <li>■ 1975년 : 다원 지방 제외 시킴(사이클론의 영향으로 인함)</li> <li>■ 1979년 : ASIC 1978에 의한 산업 분류</li> <li>■ 1989년 : CCLO에 의한 직업 분류</li> <li>■ 1984년 : ASIC 1984년에 의한 산업 분류</li> <li>■ 1986년 : ASCO에 의한 직업 분류</li> <li>■ 1987년 : 1986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46년: 노동 통계 작성에 대한 연구 실시</li> <li>○ 1947년: 매달 노동 통계 관련 통계 작성 실시</li> <li>○ 1950년: 국가지정 통계로 지정됨</li> <li>○ 1982년: 노동 관련 통계 증가(이전엔 10개로 지정해서 조사)</li> <li>○ 2002년: Labour Force Special Survey 와 통합되어 조사 실시</li> <li>○ 2009년: 국가지정 통계로 법적 제화됨</li> </ul>

					센서스 기준으로 표본조정 ■ 1993년 : 계절조정 및 추세의 도입 ■ 2002년 : 2001년 센서스 기준으로 표본조정 ■ 2003년 : 월간 Labour Force 발행중단 ■ 2007년:Composite Estimation의도입	
참고자료		BLS Handbook of Methods, Chapter 1 Labor Force Data Derived from the Current Population Survey pp.1 (파일명: labor force(cps)_us)	Guide to the Labour Force Survey 2010 pp.18(파일명: labor force survey_canada)			OutlineoftheLabourF orceSurvey,National StatisticsSurvey <a href="http://www.stat.go.jp/english/data/roudou/pdf/1.pdf">http://www.stat.go.jp/english/data/roudou/pdf/1.pdf</a>
작성기관		U.SBureauofLaborSt atistics	StatisticsCanada	ONS	ABS	National Statistics Center
주요연혁		■ 1940년WorksProgr essAdministration에	■ 1945년분기별로LF S시작	■ 1973년- 83년 : 2년단위 작성	■ 1960년~78년최초 작성(분기단위)	○ 1946년:노동통계 작성에대한연구실시

		<p>의해MonthlyReportofUnemployment라는 가구국민샘플조사가 시작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42년 후반미국상무부의센서스국(CensusBureau)으로가구조사가이관되고이때조사명이MonthlyReportontheLaborForce로바뀜</li> <li>■ 1948년조사명이CurrentPopulationSurvey로다시바뀜</li> <li>■ 1959년CPSLaborForce자료의분석과발표가BLS로이관됨(자료수집은계속해서센서스국이담당)</li> <li>■ 1994년CPS구성항목재구성,이때예전에 주급 위주였던 임금항목이 응답자편의에 따라 시급, 주급, 2주급, 월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52년월별조사로바뀜</li> <li>■ 1960년LFS가캐나다실업률공식추정조사로지명됨(interdepartmentalCommitteeOnUnemploymentStatistics의권장으로인해)</li> <li>■ 1976년과1997년조사의재구성으로인해LFS에의한정보가크게확대됨.이로인해LFS는캐나다노동시장을나타내는중요한조사로자리매김</li> <li>■ 1997년1월을시작으로세전임금자료가LFS한부분으로수집되기시작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84년-91년:년단위작성</li> <li>■ 1992년분기단위작성</li> <li>■ 1992년-93년:임금관련문항추가</li> <li>■ 1994년-95년:북아일랜드에서도분기단위작성방식채택</li> <li>■ 1997년:임금관련문항추가</li> <li>■ 2000년:지역경활인구조사및웨일즈지방경활인구조사도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70년:계절조정도입</li> <li>■ 1975년 : 다원지방 제외시킴(사이클론의영향으로인함)</li> <li>■ 1979년 : ASIC 1978에 의한 산업분류</li> <li>■ 1989년 : CCLLO에 의한 직업분류</li> <li>■ 1984년 : ASIC 1984년에 의한 산업분류</li> <li>■ 1986년 : ASCO에 의한 직업분류</li> <li>■ 1987년 : 1986년 센서스 기준으로 표본조정</li> <li>■ 1993년 : 계절조정 및 추세의 도입</li> <li>■ 2002년 : 2001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47년:매달노동 통계관련통계작성 실시</li> <li>○ 1950년:국가지정 통계로지정됨</li> <li>○ 1982년:노동관련 통계증가(이전엔10개로지정해서조사)</li> <li>○ 2002년:LabourForceSpecialSurvey와통합되서조사실시</li> <li>○ 2009년:국가지정 통계로법제화됨</li> </ul>
--	--	--	--	--	---	--

		연봉으로 작성하도록 틀이 잡힘			센서스 기준으로 표본조정 ■ 2003년 : 월간 Labour Force 발행중단 ■ 2007년:Composite Estimation의도입	
참고자료		BLS Handbook of Methods, Chapter 1 Labor Force Data Derived from the Current Population Survey pp.4 (파일명: labor force(cps)_us)	Guide to the Labour Force Survey 2010 pp.5(파일명: labor force survey_canada)			OutlineoftheLabourF orceSurvey,National StatisticsSurvey <a href="http://www.stat.go.jp/english/data/roudou/pdf/1.pdf">http://www.stat.go.jp/english/data/roudou/pdf/1.pdf</a>

[ 부록 A.6 ] 생산자물가지수

국가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일본	독일	
통계명	• Producer Price Index(PPI)	• Farm Product Price Index(FPPI)	• Industrial Product Price Index(IPPI)	• PPI (Producer Price Index) • Factory gate prices	• Stage of Production Producer Price Indexes	• Producer Price Index (PPI) - Corporate Goods Price Index - Corporate Services Price	• Producer Price Index(PPI)
조사주기	• 매월	• 매월	• 매월	• 월별 • 분기별 • 연간	• 분기별	• 매월	• 월간조사
조사방법	• 우편조사 • Fax조사	• 표본조사 • FAX조사 • 전자우편조사	• 우편조사(80%) • 전화조사(10%) • 다른 통계로부터 인용(10%)	• 전화조사	• 우편		
주요연혁	• 1902년 공표 (1890~1901) • 제조업·광업지수 (1980년 이후부터 자료존재) • 대부분 서비스지수 (최근 5년까지 자료 존재)	• FPPI를 결정하는 Survey 4개 중에서 각각 분기별, 월별로 샘플을 뽑아서 표본크기를 결정.	• 1920년대 초 the Dominion Bureau of Statistics (now Statistics Canada)가 처음 실시 • 1956년에 Industry Selling Price Index (ISPI)로 공포됨 • 1980년대 초 ISPI에서 IPPI 바뀜	• 1979년부터 작성 • 기준 : 2005년	• 1998 ~ 99 = 100.0	• 1887년 (CGPI), • 1985년 (CSPI) 이후 작성	• 1997년부터 자료존재

<p>표본 크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5,000여개기관(기업)</li> <li>• 100,000여개가격자료</li> </ul>	<p>4개중에서 각각 분기별, 월별로 샘플을 뽑아서 표본크기를 결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The Ontario Hayand Straw Prices Survey: 분기별 125개 가격</li> <li>• TheGrainsandSpecialtyCropsSurvey: 월별13개기업</li> <li>• ThePotatoPrices Survey: 월별600개가격</li> <li>• TheGrainsandOils eedsSurvey: 월별21개기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매달 3,000 생산자로부터 9,000개 가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체수 : 5,000</li> <li>• 가격자료 : 9,000</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CGPI -ForDomesticCorporate Goods Price Index : 910개상품</li> <li>-ForExportPriceIndex: 222개상품</li> <li>-ForImportPriceIndex: 293개상품</li> <li>• CSPI : 110개상품</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300여개 소매점포</li> <li>• 1254개 대표상품</li> </ul> <hr/>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비스350000여개 가격을 조사</li> </ul>
<p>공표 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도</li> <li>• 홈페이지</li> <li>• Fax-on-demeand 서비스</li> <li>• 전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간행물</li> <li>• 홈페이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간행물</li> <li>• 홈페이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간행물 발간</li> <li>• 온라인 수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간행물 발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터넷</li> <li>• 간행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터넷</li> <li>• 간행물</li> </ul>
<p>공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매월 9일~16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매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매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월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분기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매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매월 20일</li> </ul>



주기	사이 공표						
간행 물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Producer Price Index</li> <li>• HistoricaldatainHandbookofLaborStatistics</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Farm Product Price Indexes</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ndustryPriceIndexes</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The First Release</li> <li>• The publication Economic Trends</li> <li>• The Business Monitor MM17</li> <li>• The Business Monitor MM19</li> <li>• TheBusinessMonitorMM22</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Producer Price Indexes, Australia</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Price Indexes Monthly</li> <li>• Bank of Japan Statistics</li> <li>• Financial and Statistics</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Press Releases</li> </ul>
Websi t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 href="http://www.bls.gov/ppi/">http://www.bls.gov/ppi/</a></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 href="http://www.statcan.gc.ca/cgi-bin/imdb/p2SV.pl?Function=getSurvey&amp;SDDS=5040&amp;lang=en&amp;db=imdb&amp;adm=8&amp;dis=2">http://www.statcan.gc.ca/cgi-bin/imdb/p2SV.pl?Function=getSurvey&amp;SDDS=5040&amp;lang=en&amp;db=imdb&amp;adm=8&amp;dis=2</a></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 href="http://www.statcan.gc.ca/cgi-bin/imdb/p2SV.pl?Function=getSurvey&amp;SDDS=2318&amp;lang=en&amp;db=imdb&amp;adm=8&amp;dis=2#b3">http://www.statcan.gc.ca/cgi-bin/imdb/p2SV.pl?Function=getSurvey&amp;SDDS=2318&amp;lang=en&amp;db=imdb&amp;adm=8&amp;dis=2#b3</a></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 href="http://www.statistics.gov.uk/cci/nugget.asp?id=23">http://www.statistics.gov.uk/cci/nugget.asp?id=23</a></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 href="http://www.abs.gov.au/AUSSTATS/abs@.nsf/DetailsPage/6427.0Mar%202010?OpenDocument">http://www.abs.gov.au/AUSSTATS/abs@.nsf/DetailsPage/6427.0Mar%202010?OpenDocument</a></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 href="http://www.stat.go.jp/english/index/official/213.htm#8">http://www.stat.go.jp/english/index/official/213.htm#8</a></li> <li>• <a href="http://www.stat.go.jp/english/index/official/213.htm#15">http://www.stat.go.jp/english/index/official/213.htm#15</a></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 href="http://www.destatis.de/jetspeed/portal/cms/Sites/destatis/Internet/EN/press/abisz/Erzeugerpreise_e.templateId=renderPrint.psml">http://www.destatis.de/jetspeed/portal/cms/Sites/destatis/Internet/EN/press/abisz/Erzeugerpreise_e.templateId=renderPrint.psml</a></li> </ul>
작성 기관	U.SBureauofLaborStatistics	StatisticsCanada	StatisticsCanada	ONS	ABS	Research and Statistics Department Bank	

						of Japan	
주요 연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02년 공표 (1890~1901)</li> <li>• 제조업·광업지수 (1980년 이후부터 자료존재)</li> <li>• 대부분 서비스지수 (최근 5년까지 자료 존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FPPI를 결정하는 Survey 4개 중에서 각각 분기별, 월별로 샘플을 뽑아서 표본크기를 결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20년대 초the DominionBureauofStatistics(nowStatisticsCanada)가처음실시</li> <li>• 1956년에Industry SellingPriceIndex(ISPI)로공포됨</li> <li>• 1980년대초ISPI에서IPPI바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79년부터 작성</li> <li>• 기준 : 2005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98 ~ 99 = 100.0</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887년(CGPI),</li> <li>• 1985년(CSPI) 이후 작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97년부터 자료존재</li> </ul>
세부 내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02년:1890~1901을포함하는지수가 처음으로공표됨(이 당시의지수는비가중평균값이었음)</li> <li>■ 1914년:가중시스템이처음으로사용됨</li> <li>■ 1952,1967년:샘플의재분류와확장이 시행됨</li> <li>■ 1978년:당시WholesalePriceIndex라고 불리던생산자지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20년대 초the DominionBureauofStatistics(현재StatisticsCanada)가처음실시</li> <li>■ 1956년에Industry SellingPriceIndex(ISPI)로공포됨</li> <li>■ 1980년대초ISPI에서IPPI로바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03년 WPI(Whole Price Index)라는 명칭으로 “Board of trade“에 의해 작성됨. 1871년부터 45개 품목을 포함함.</li> <li>■ 1935년 1930년을 기준으로 1955년까지 지수작성</li> <li>1950년대중반PPI의 기초가갖추어지고1</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12년WPI(Whole PriceIndex)발행으로 통해생산자물가지수작성했고신문을 통해공포함.</li> <li>“Wholesaleprice“발행을통해1970년까지발표됨.</li> <li>■ 1976년1968년을 기준으로한월별지수가공표됨.</li> <li>■ 1990년지수작성에대한개정이이루어지고이후1988-89</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897년:TokyoWholesalePriceIndex를 이름으로하여처음 작성실시(1887년1월 기준)</li> <li>○ 1933년:산출방식으로Laspeyers방식 도입</li> <li>○ 1952년:Wholesale PriceIndex를이름으로하여처음공표</li> <li>○ 1960년:5년마다기준년도를변경하는 방식실시</li> </ul>	

	<p>가ProducerPriceIndex로명칭이바뀔,모든상품가격지수로 나타내어지다가최종소비재가격지수로변화함</p>			<p>956년Phillips에의해기본개념이갖추어짐.이후7회에 걸쳐수정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79년부터작성 현재작성기준년도:2005년</li> </ul>	<p>의평균치를기준으로삼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97년까지분기별및월별지표발표</li> <li>■ 2000년지수개정하였고1989-90=100으로기준을잡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80년:Domestic WholesalePriceIndex,ExportPriceIndex,ImportPriceIndex를 포함하여작성 실시</li> <li>○ 2000년:Corporate GoodsPriceIndex(CGPI)로이름을변경및 공표방법개선</li> </ul>	
<p>참고 자료</p>	<p>BLSHandbookofMethods,Chapter14. ProducerPricespp.1(파일명:ppi_us)</p>		<p>파일명:ippi_canada  <a href="http://www.statcan.gc.ca/cgi-bin/imdb/p2SV.pl?Function=getSurvey&amp;SDDS=2318&amp;lang=en&amp;db=imdb&amp;adm=8&amp;dis=2">http://www.statcan.gc.ca/cgi-bin/imdb/p2SV.pl?Function=getSurvey&amp;SDDS=2318&amp;lang=en&amp;db=imdb&amp;adm=8&amp;dis=2</a></p>			<p>Explanationofthe2000BaseCorporateGoodsPriceIndex(CGPI)  <a href="http://www.boj.or.jp/en/type/exp/stat/pi/data/ecgpi00.pdf">http://www.boj.or.jp/en/type/exp/stat/pi/data/ecgpi00.pdf</a></p>	

[ 부록 B.1 ] IMF 통계품질평가프레임(Data Quality Assessment Framework)

Quality Dimension	Elements	Indicators	
0. Prerequisites of Quality(품질의 선결조건)	0.1 legal and institutional environment (법적 제도적 환경)	0.1.1 통계자료의 수집, 처리 및 제공에 대한 책임소재가 명백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0.1.2 통계작성기관간의 자료 공유 및 협조관계는 적정한가	
		0.1.3 응답결과의 비밀이 유지되고 통계목적으로만 쓰이는가	
		0.1.4 통계조사에 대한 응답은 법률에 의하여 또는 자발적 응답을 유도하는 방법에 의하여 확보되는가	
	0.2 resources (자원)	0.2.1 인력, 예산 및 전산자원은 적정한가	
		0.2.2 자원의 효율적 사용을 보장하기 위한 방법이 사용되는가	
	0.3 relevance (관련성)	0.3.1 이용자 요구를 충족시키는 선에서 현 통계의 관련성과 실질적 유용성을 모니터링 하는가	
	0.4 other quality management (기타 품질관리)	0.4.1 일련의 과정이 품질에 대한 적절히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	
		0.4.2 일련의 과정이 통계프로그램의 품질을 모니터링하는 것이 적절한지	
		0.4.3 일련의 과정이 통계프로그램을 기획함에 있어서 품질고려 사항을 다룸에 있어 적절한지	
	1. Assurance of Integrity (필요통보성 보장)	1.1 professionalism (전문성)	1.1.1 통계는 독립성을 갖고 공정하게 집계되는가
			1.1.2 통계기법은 통계적인 고려에 의해서만 선택되는가
1.1.3 통계의 오역 및 오용에 대하여 설명할 권한을 확보하고 있는가			
1.2 transparency (투명성)		1.2.1 통계 수집, 처리 및 제공되는 법령과 조건이 일반에게 알려지고 있는가	
		1.2.2 공표에 앞서 정부 내부의 접근이 가능한 경우가 있다면, 국민에게 이러한 사실이 알려져 있는가	
		1.2.3 공표통계의 작성책임기관이 명시되어 있는가	
		1.2.4 방법론, 하위통계 및 통계기법 등에 중요한 변동이 있을 때, 사전에 공표가 되는가	
1.3 Ethical standards (윤리적 기준)		1.3.1 종사자의 행위규범이 적절하고 모든 직원에게 잘 알려져 있는가	

Quality Dimension	Elements	Indicators
2.. Methodological Soundness (통계처리방법의 건전성)	2.1 Concepts and definition (개념 및 정의)	2.1.1 개념과 정의의 체계가 국제기준, 지침 또는 실행기준을 따르고 있는가
	2.2 scope(포괄 범위)	2.2.1 범위는 대체적으로 국제기준, 지침 또는 실행기준을 따르고 있는가
	2.3 classification sectorization (부문분류)	2.3.1 분류체계는 대체적으로 국제기준, 지침 또는 실행기준을 따르고 있는가
	2.4 Basis for recording (기록방법)	2.4.1 플로우와 스톱은 시장가격으로 평가하는가
		2.4.2 발생주의 회계에 의해 기록이 되는가
		2.4.3 총계/순계절차는 국제기준, 지침 또는 실행기준을 따르고 있는가
	3. Accuracy and Reliability (정확성과 신뢰성)	3.1 source data (기초자료)
3.1.2 기초자료는 정의, 범위, 분류, 평가 및 기록시점에 대한 요구조건에 매우 근접하는가		
3.1.3 기초자료는 시의성이 있는가		
3.2 assessment of source (기초자료의 평가)		3.2.1 센서스, 표본조사, 행정자료 등을 포함한 기초자료는 주기적으로 커버리지, 표본에러, 응답에러, 비 표본오차 등에 대하여 평가되는가, 평가결과는 모니터되고 기획과정에 반영되는가
3.3 statistical techniques (통계적 기술)		3.3.1 자료 집계는 적절한 통계기법을 이용하여 이루어지는가
		3.3.2 여타 통계절차(자료조정 및 변형, 통계분석 등)는 적절한 통계기법을 이용하여 이루어지는가
3.4 assessment and validation (중간자료 및 최종 산출물의 평가)		3.4.1 주요 중간결과들은 적용가능한 다른 정보에 의하여 타당화되는가
		3.4.2 중간자료의 통계상 불일치는 평가되고 조사되는가
		3.4.3 통계생산물의 통계상 불일치, 다른 잠재적 지표 또는 문제들은 조사되는가
3.5 revision studies (통계수정에 관한 연구)		3.5.1 개편에 대한 연구분석은 주기적으로 수행되고 통계과정에 반영되기 위하여 이용되는가

Quality Dimension	Elements	Indicators
4. Serviceability (서비스성)	4.1 periodicity timeliness (주기성과 시의성)	4.1.1 주기는 공표기준을 따르는가 4.1.2 시의성은 공표기준을 따르는가
	4.2 consistency (일관성)	4.2.1 통계는 dataset과 일치하는가
		4.2.2 통계는 상당한 기간에 걸쳐서 일치되고 조화할 수 있는가
		4.2.3 통계는 다른 자료원 또는 통계프레임워크를 통해 수집된 것과 일치되고 조화할 수 있는가
	4.3 Revision policy and practice (개정정책과 기준)	4.3.1 개편은 정규적이고 체계적이며 투명한 일정에 의해 이루어지는가
		4.3.2 잠정치 또는 수정자료는 명백하게 밝히는가
		4.3.3 개편에 대한 연구 및 분석이 공개되는가
5. Accessibility (접근가능성)	5.1 Data accessibility (자료 접근성)	5.1.1 통계는 적절한 해석과 의미있는 비교가 용이하도록 제공되고 있는가(레이아웃, 텍스트, 표, 도표 등)
		5.1.2 공표 매체와 포맷은 적절한가
		5.1.3 통계는 사전에 예고된 일정을 준수하여 공표되고 있는가
		5.1.4 통계는 모든 이용자가 동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공표되는가
		5.1.5 정기적 미공표 자료에 대하여 요구시 제공되고 있는가
	5.2 Metadata accessibility (메타데이터 접근성)	5.2.1 개념, 범위, 분류, 통계기법 등에 대한 문서화가 공개되고 있고, 국제기준과의 차이가 명시되어 있는가
		5.2.2 다양한 수준의 세부자료가 이용자 수준별로 제공되고 있는가
	5.3 Assistance to users (사용자 지원)	5.3.1 주제분야별로 민원담당자가 공개되고 있는가
5.3.2 간행물 기타 서비스에 대한 카탈로그가 광범위하게 제공되고 있는가		

[ 부록 B.2 ] IMF의 일본 통계 품질진단결과

Dimensions/Elements	국민 소득계 정	소비 자물가	생산 자물가	재정 통계	금융 통계	국제 수지
0. 품질제고의 전제조건						
0.1 법률 및 제도적 환경	○	○	○	LO	○	LO
0.2 통계작성 자원	LNO	○	○	○	○	○
0.3 관련성	○	○	○	○	○	○
0.4 기타품질관리	○	○	○	○	○	○
1. 성실성 확보						
1.1 전문성	○	○	○	○	○	○
1.2 투명성	○	○	○	○	○	○
1.3 윤리적 기준	○	○	○	○	○	○
2. 방법론적 건전성						
2.1 개념과 정의	○	○	LO	○	LO	○
2.2 범위	○	LO	○	LNO	LO	○
2.3 분류 및 구분	○	○	○	○	LO	LO
2.4 국제기준에 따른 가치 산정	○	○	○	○	LO	○
3. 정확성과 신뢰성						
3.1 원자료	LO	○	LO	LO	○	LO
3.2 원자료의 접근성	LO	○	○	○	○	○
3.3 통계기법	○	LO	LNO	○	○	○
3.4 중간단계의 자료접근성	○	○	○	○	○	○
3.5 개정을 위한 연구	LNO	○	○	LO	○	○
4. 서비스제공						
4.1 시의성과 적시성	○	○	○	LNO	○	○
4.2 일치성	○	○	○	LO	○	○
4.3 통계개정	○	○	○	○	○	LNO
5. 접근성						
5.1 자료 접근성	○	○	○	○	○	○
5.2 메타자료 접근성	○	○	○	○	○	○
5.3 사용자에게 대한 도움	○	○	○	○	○	○

주: ○ = Practice Observed; LO = Practice Largely Observed; LNO =Practice Largely Not Observed; NO = Practice Not Observed; NA = Not Applicable>

자료: IMF, Japan: Report on Observance of Standards and Codes—Data Module, Response by the Authorities, and Detailed Assessments Using the Data Quality Assessment Framework (DQAF), IMF Country Report No. 06/115, March 2006

[ 부록 B.3 ] IMF의 독일 통계 품질진단결과

Dimensions/Elements	국민소득 계정	생산자물가	재정통계	국제수지
0. 품질제고의 전제조건				
0.1 법률 및 제도적 환경 0.2 통계작성 자원 0.3 관련성 0.4 기타품질관리	O O O O			O O O O
1. 성실성 확보				
1.1 전문성 1.2 투명성 1.3 윤리적 기준	O O O			O LO O
2. 방법론적 건전성				
2.1 개념과 정의 2.2 범위 2.3 분류 및 구분 2.4 국제기준에 따른 가치 산정	O O O O	O O O O	LO LO LO O	O O LO O
3. 정확성과 신뢰성				
3.1 원자료 3.2 원자료의 접근성 3.3 통계기법 3.4 중간단계의 자료접근성 3.5 개정을 위한 연구	LO O O O O	L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4. 서비스제공				
4.1 시의성과 적시성 4.2 일치성 4.3 통계개정	O O O	O O O	O LO O	O O O
5. 접근성				
5.1 자료 접근성 5.2 메타자료 접근성 5.3 사용자에 대한 도움	O O O	O LO O	O O O	O LO O

주: O = Practice Observed; LO = Practice Largely Observed; LNO =Practice Largely Not Observed; NO = Practice Not Observed; NA = Not Applicable>

자료: IMF, Germany: Report on Observance of Standards and Codes--Data Module, Response by the Authorities, and Detailed Assessments Using the Data Quality Assessment Framework (DQAF), IMF Country Report No. 06/18, January 2006



[ 부록 B.4 ] IMF의 이탈리아 통계 품질진단결과

Dimensions/Elements	국민소득 계정	소비자물가	생산자물가	재정통계
0. 품질제고의 전제조건				
0.1 법률 및 제도적 환경 0.2 통계작성 자원 0.3 관련성 0.4 기타품질관리	O LO O O	O O O O	O O O O	LO LO O O
1. 성실성 확보				
1.1 전문성 1.2 투명성 1.3 윤리적 기준	O O O	O O O	O O O	O O O
2. 방법론적 건전성				
2.1 개념과 정의 2.2 범위 2.3 분류 및 구분 2.4 국제기준에 따른 가치 산정	O O O O	O LO O O	O O O O	LO O O O
3. 정확성과 신뢰성				
3.1 원자료 3.2 원자료의 접근성 3.3 통계기법 3.4 중간단계의 자료접근성 3.5 개정을 위한 연구	LO O O O O	O O O O O	LO O LO O O	O O O LO O
4. 서비스제공				
4.1 시의성과 적시성 4.2 일치성 4.3 통계개정	O O O	O O O	O O O	LO O LO
5. 접근성				
5.1 자료 접근성 5.2 메타자료 접근성 5.3 사용자에 대한 도움	O O O	O O O	O O O	O O O

주: O = Practice Observed; LO = Practice Largely Observed; LNO =Practice Largely Not Observed; NO = Practice Not Observed; NA = Not Applicable>

자료: IMF, Italy: Report on the Observance of Standards and Codes—Data Module, Response by the Authorities, and Detailed Assessment Using the Data Quality Assessment Framework (DQAF), IMF Country Report No. 07/87, February 2007

[ 부록 B.5 ] 통계청 정기품질진단 결과(국민소득계정)

■ 종합만족도(자료: 국민계정 )

	종합만족도		중요도 (%)	체감만족도와 상관계수
	5점척도	100점 환산		
통계생산과정부문	3.91	78.16	40.28	.
모집단의 명확한 정의	3.72	74.40	10.03	0.41
조사대상의 정확한 정의	3.86	77.20	8.30	0.37
적절한 시기에 공표	3.99	79.80	13.74	0.48
예고된 일정에 공표	4.05	81.00	8.21	0.37
활용 편리성 부문	3.70	74.10	31.55	.
제공방법/편제구성의 편리성	3.78	75.60	8.80	0.38
시계열 비교 편리	3.99	79.80	6.90	0.34
국가간 비교 편리	3.47	69.40	8.03	0.37
유의사항/관련개념/용어정의	3.61	72.20	7.82	0.36
내용충실성부문	3.73	74.70	28.17	.
충분한 정보 제공	3.58	71.60	9.31	0.40
다양한 내용수록	3.76	75.20	5.55	0.31
통계의 정확성	3.77	75.40	6.90	0.34
통계의 신뢰성	3.90	78.00	6.42	0.33
종합만족도	3.80	76.00	100.0	.

■ 작성절차별 진단결과

작성절차	자체 진단	외부진단			종합 진단	품질평가 수준
		진단1	진단2	평균		
통계작성기획	5.0	4.6	5.0	4.8	4.9	매우우수
통계작성과정설계	5.0	4.7	5.0	4.9	4.9	매우우수
투입자료 수집, 입력, 편집	5.0	4.0	5.0	4.5	4.8	매우우수
투입자료 조정, 가공 및 통계작성	5.0	5.0	5.0	5.0	5.0	매우우수
결과공표 및 자료 이용	5.0	5.0	5.0	5.0	5.0	매우우수
사후 관리	5.0	4.5	5.0	4.8	4.9	매우우수
총합계	5.0	4.6	5.0	4.8	4.8	매우우수

■ 국민소득계정 품질차원별 분석결과

품질차원	자체 진단	외부진단			종합 진단	품질평가 수준
		진단1	진단2	평균		
관련성	5.0	4.0	5.0	4.5	4.8	매우우수
정확성	5.0	4.5	5.0	4.8	4.9	매우우수
시의성/정시성	5.0	4.8	4.8	4.8	4.9	매우우수
비교성	5.0	4.8	5.0	4.9	5.0	매우우수
일관성	5.0	4.6	5.0	4.8	4.9	매우우수
접근성/명확성	5.0	4.3	5.0	4.7	4.8	매우우수
전체평점	5.0	4.5	5.0	4.7	4.9	매우우수

[ 부록 B.6 ] 통계청 정기품질진단 결과(산업연관표)

■ 종합만족도(자료: 국민계정 )

	종합만족도		중요도 (%)	체감만족도와 상관계수
	5점척도	100점 환산		
통계생산과정부문	3.28	65.50	11.3	
적절한 시기에 공표	3.09	61.80	5.5	0.259
예고된 일정의 공표	3.46	69.20	5.8	0.267
활용 편리성 부문	3.41	68.25	52.0	
제공방법/편제구성 편리	3.63	72.60	15.8	0.441
시계열 비교 편리	3.38	67.60	9.9	0.349
국가간 비교 편리	2.93	58.60	11.0	0.368
유의사항/용어 정의	3.71	74.20	15.3	0.434
내용충실성부문	3.67	73.47	36.7	
충분한 정보 제공	3.59	71.80	15.2	0.432
다양한 내용 수록	3.68	73.60	5.9	0.269
정보의 신뢰성	3.75	75.00	15.6	0.438
종합만족도	3.45	69.07	100.0	

■ 작성절차별 진단결과

작성절차	내부 진단	외부진단			종합 진단	품질평가 수준
		진단1	진단2	평균		
통계작성기획	4.7	4.6	4.7	4.7	4.7	매우우수
통계작성과정설계	5	4.9	5	5	5	매우우수
투입자료 수집, 입력, 편집	5	5	5	5	5	매우우수
투입자료 조정,가공 및 통계작성	5	5	5	5	5	매우우수
결과공표 및 자료이용	5	5	4.9	5	5	매우우수
사후 관리	5	5	5	5	5	매우우수
총합계	5	4.9	4.9	4.9	4.9	매우우수

■ 품질차원별 분석결과

품질차원	내부진단	외부진단			종합진단	품질평가 수준
		진단1	진단2	평균		
관련성	5	5	5	5	5	매우우수
정확성	5	5	5	5	5	매우우수
시의성/정시성	5	4	5	4.5	4.7	매우우수
비교성	5	5	5	5	5	매우우수
일관성	5	5	5	5	5	매우우수
접근성/명확성	5	5	5	5	5	매우우수
전체평점	5	5	5	5	5	매우우수

[ 부록 B.7 ] 통계청 정기품질진단 결과(국제수지)

■ 종합 만족도

	종합만족도		중요도 (%)	체감만족도와 상관계수
	5점 척도	100점 환산		
통계생산과정부문	3.96	79.13	45.10	.
모집단의 명확한 정의	3.87	77.40	10.30	0.40
조사대상의 정확한 정의	4.00	80.00	15.00	0.49
적절한 시기에 공표	3.95	79.00	7.50	0.35
예고된 일정에 공표	3.98	79.96	12.30	0.44
활용 편리성 부문	3.90	78.05	33.00	.
제공방법/편제구성의 편리성	3.94	78.80	18.10	0.54
시계열 비교 편리	4.00	80.00	11.80	0.43
국가간 비교 편리	3.45	69.00	0.10	0.05
유의사항/관련개념/용어정의	3.32	66.40	3.00	0.22
내용충실성부문	3.85	77.07	21.90	.
충분한 정보 제공	3.70	74.00	6.60	0.32
다양한 내용수록	3.76	75.20	4.90	0.28
통계의 정확성	3.84	76.80	2.70	0.21
통계의 신뢰성	4.05	81.00	7.70	0.35
종합만족도	3.92	78.40	100.0	.

■ 작성절차별 품질진단

작성절차	내부 진단	외부진단			종합 진단	품질평가 수준
		진단1	진단2	평균		
통계작성기획	4.8	4.8	4.6	4.7	4.7	매우우수
통계작성과정설계	4.67	4.67	4.56	4.61	4.6	매우우수
투입자료 수집, 입력, 편집	4.67	4.83	4.83	4.83	4.8	매우우수
투입자료 조정,가공 및 통계작성	5	5	4.8	4.9	4.9	매우우수
결과공표 및 자료이용	5	5	4.89	4.94	5.0	매우우수
사후 관리	5	5	5	5	5.0	매우우수
총합계	4.86	4.88	4.78	4.83	4.8	매우우수

■ 품질차원별 품질진단

품질차원	자체 진단	외부진단			종합 진단	품질평가 수준
		진단1	진단2	평균		
관련성	4.8	4.8	4.6	4.7	4.7	매우우수
정확성	4.8	4.8	4.7	4.75	4.8	매우우수
시의성	5	5	5	5	5.0	매우우수
접근성	5	5	5	5	5.0	매우우수
정확성	4.8	4.8	4.7	4.75	4.8	매우우수
일관성	5	5	5	5	5.0	매우우수
평균	4.93	4.93	4.88	4.91	4.9	매우우수

[ 부록 B.8 ] 통계청 정기품질진단 결과(자금순환표)

■ 종합만족도

	종합만족도		중요도 (%)	체감만족도와 상관계수
	5점 척도	100점 환산		
통계생산과정부문	3.54	70.85	26.50	
모집단의 명확한 정의	3.52	70.40	0.62	0.055
조사대상의 정확한 정의	3.58	71.60	20.76	0.319
적절한 시기에 공표	3.44	68.80	4.92	0.155
예고된 일정에 공표	3.63	72.60	0.20	0.031
활용 편리성 부문	3.36	67.20	33.32	
제공방법/편제구성의 편리성	3.54	70.80	15.44	0.275
시계열 비교 편리	3.46	69.20	16.24	0.282
국가간 비교 편리	3.14	62.80	0.11	0.024
유의사항/관련개념/용어정의	3.30	66.00	1.53	0.087
내용충실성부문	3.43	68.68	40.18	
충분한 정보 제공	3.33	66.60	19.34	0.308
다양한 내용수록	3.38	67.60	9.20	0.212
통계의 정확성	3.48	69.60	6.50	0.178
통계의 신뢰성	3.52	70.40	5.14	0.159
종합만족도	3.46	69.20	100.00	

■ 작성절차별 분석결과

작성절차	자체 진단	외부진단			종합 진단	품질평가 수준
		진단1	진단2	평균		
통계작성기획 및 관리	4.8	4.8	4.4	4.6	4.7	매우우수
모집단 및 표본설계	3.4	3.4	3.4	3.4	3.4	보통
조사표 설계	4.3	4.3	4.0	4.2	4.2	우수
자료수집 대상설정 및 양식설계	5.0	5.0	4.8	4.9	4.9	매우 우수
보고체계 관리	4.0	4.5	3.5	4.0	4.0	우수
자료처리 및 집계	4.3	4.3	4.3	4.3	4.3	우수
자료 이용	4.6	4.8	4.7	4.8	4.8	매우우수
총합계	4.3	4.4	4.2	4.3	4.3	우수

■ 품질차원별 분석결과

품질차원	자체진단	외부진단			종합진단	품질평가 수준
		진단1	진단2	평균		
관련성	4.7	4.7	4.3	4.5	4.5	매우우수
정확성	4.3	4.4	4.2	4.3	4.3	우수
시의성	4.4	4.4	4.2	4.3	4.3	우수
비교성	4.5	4.5	4.5	4.5	4.5	매우우수
효율성	4.0	4.0	4.0	4.0	4.0	우수
접근성	4.3	4.7	4.7	4.7	4.7	매우우수
전체평점	5.0	4.5	4.4	4.5	4.7	매우우수

[ 부록 B.9 ] 통계청 정기품질진단 결과(소비자물가지수)

■ 종합만족도

	종합만족도 (평가점수)	중요도 (%)	체감만족도와 상관계수
통계생산과정정부문	3.77	34.88	.
모집단의 명확한 정의	3.48	9.45	0.466
조사대상의 정확한 정의	3.57	4.40	0.318
적절한 시기에 공표	3.88	14.43	0.576
예고된 일정에 공표	4.06	6.61	0.390
활용 편리성 부문	3.43	6.82	.
제공방법/편제구성의 편리성	3.71	3.75	0.293
시계열 비교 편리	3.73	0.04	-0.031
국가간 비교 편리	3.04	2.56	0.242
유의사항/관련개념/용어정의	3.34	0.47	0.104
내용충실성부문	3.45	58.30	.
충분한 정보 제공	3.52	18.65	0.654
다양한 내용수록	3.42	7.81	0.424
통계의 정확성	3.28	15.74	0.601
통계의 신뢰성	3.55	16.10	0.608
종합만족도	3.56	100.00	.

■ 작성절차별 진단결과

품질차원	자체 진단	외부진단			종합 진단	품질평가 수준
		진단1	진단2	평균		
통계작성기획 및 관리	4.9	4.9	5.0	4.9	4.9	매우 우수
모집단 및 표본설계	5.0	4.5	5.0	4.8	4.8	매우 우수
조사표 설계	5.0	5.0	5.0	5.0	5.0	매우 우수
현장조사 관리	4.8	4.8	5.0	4.9	4.8	매우 우수
자료처리 및 집계	5.0	5.0	5.0	5.0	5.0	매우 우수
자료 이용	4.9	4.9	5.0	5.0	4.9	매우 우수
총합계	4.9	4.9	5.0	4.9	4.9	매우 우수

[ 부록 B.10 ] 통계청 정기품질진단 결과(생산자물가지수)

■ 종합만족도

	종합만족도		중요도 (%)	체감만족도와 상관계수
	5점척도	100점 환산		
통계생산과정부문	3.58	71.6	38.31	
모집단의 명확한 정의	3.54	70.8	15.10	0.617
조사대상의 정확한 정의	3.61	72.2	10.70	0.520
적절한 시기에 공표	3.56	71.2	9.31	0.485
예고된 일정에 공표	3.73	74.6	3.20	0.284
활용 편리성 부문	3.50	70	37.54	
제공방법/편제구성의 편리성	3.60	72	8.73	0.469
시계열 비교 편리	3.59	71.8	11.47	0.538
국가간 비교 편리	3.41	68.2	5.96	0.388
유의사항/관련개념/용어정의	3.39	67.8	11.38	0.536
내용충실성부문	3.61	72.2	24.17	
충분한 정보 제공	3.54	70.8	5.56	0.374
다양한 내용수록	3.55	71	5.52	0.373
통계의 정확성	3.63	72.6	7.87	0.445
통계의 신뢰성	3.71	74.2	5.22	0.363
종합만족도	3.56	71.2	100.00	

■ 작성절차별 진단결과

품질차원	자체 진단	외부진단			종합 진단	품질평가 수준
		진단1	진단2	평균		
통계작성기획 및 관리	5.0	4.9	4.9	4.9	4.9	매우우수
모집단 및 표본설계	5.0	4.2	5.0	4.6	4.8	매우우수
조사표 설계	5.0	5.0	5.0	5.0	5.0	매우우수
현장조사관리	5.0	4.7	5.0	4.9	4.9	매우우수
자료처리 및 집계	4.8	5.0	5.0	5.0	5.0	매우우수
자료 이용	5.0	4.9	5.0	5.0	5.0	매우우수
총합계	5.0	4.8	5.0	4.9	5.0	매우우수

[ 부록 B.11 ] 통계청 정기품질진단 결과(수출입물가지수)

■ 종합만족도

	종합만족도		중요도 (%)	체감만족도와 상관계수
	5점 척도	100점 환산		
통계생산과정부문	3.59	71.8	43.81	-
모집단의 명확한 정의	3.54	70.8	13.34	0.597
조사대상의 정확한 정의	3.62	72.4	9.29	0.498
적절한 시기에 공표	3.53	70.6	13.13	0.592
예고된 일정에 공표	3.72	74.4	8.05	0.464
활용 편리성 부문	3.47	69.4	29.63	-
제공방법/편제구성의 편리성	4.56	91.2	9.81	0.512
시계열 비교 편리	3.54	70.8	8.56	0.478
국가간 비교 편리	3.33	66.6	5.83	0.394
유의사항/관련개념/용어정의	3.35	67	5.43	0.381
내용충실성부문	3.57	71.4	26.56	-
충분한 정보 제공	3.43	68.6	6.10	0.404
다양한 내용수록	3.5	70	5.48	0.382
통계의 정확성	3.64	72.8	7.78	0.456
통계의 신뢰성	3.67	73.4	7.20	0.438
종합만족도	3.55	71.0	100	

■ 작성절차별 진단결과

작성절차	자체 진단	외부진단			종합 진단	품질평가 수 준
		진단1	진단2	평균		
통계작성기획 및 관리	4.86	4.71	4.86	4.79	4.71	매우우수
모집단 및 표본설계	5.0	5.0	5.0	5.0	5.0	매우우수
조사표 설계	5.0	5.0	5.0	5.0	5.0	매우우수
현장조사	5.0	4.67	5.0	4.83	4.92	매우우수
자료처리 및 집계	5.0	4.25	5.0	4.63	4.92	매우우수
자료 이용	5.0	5.0	5.0	5.0	5.0	매우우수
전체평점	4.98	4.77	4.98	4.88	4.93	매우우수



[ 부록 B.12 ] 통계청 정기품질진단 결과(광업제조업동향조사(구광공업동태조사))

■ 종합만족도

	종합만족도		중요도 (%)	체감만족도와 상관계수
	5점척도	100점 환산		
통계생산과정부문	3.70	74.00	25.30	
모집단의 명확한 정의	3.75	75.00	9.30	0.529
조사대상의 정확한 정의	3.78	75.60	8.50	0.505
적절한 시기에 공표	3.49	69.80	4.10	0.350
예고된 일정에 공표	3.64	72.80	3.40	0.318
활용 편리성 부문	3.55	71.00	31.60	
제공방법/편제구성의 편리성	3.52	70.40	6.00	0.425
시계열 비교 편리	3.56	71.20	11.60	0.591
국가간 비교 편리	3.42	68.40	3.40	0.317
유의사항/관련개념/용어정의	3.60	72.00	10.60	0.563
내용충실성부문	3.74	74.80	43.10	
충분한 정보 제공	3.51	70.20	4.80	0.378
다양한 내용수록	3.65	73.00	10.20	0.552
통계의 정확성	3.74	74.80	13.60	0.638
통계의 신뢰성	3.87	77.40	14.50	0.660
종합만족도	3.74	74.80	100.00	

■ 작성절차별 분석결과

작성절차	자체 진단	외부진단			종합 진단	품질평가 수준
		진단1	진단2	평균		
통계작성기획 및 관리	5.0	4.0	4.0	4.0	4.3	우 수
모집단 및 표본설계	5.0	3.3	3.8	3.5	4.3	우 수
조사표 설계	5.0	4.5	3.7	4.0	4.3	우 수
현장조사	5.0	4.3	3.8	4.1	4.4	우 수
자료처리 및 집계	5.0	3.7	4.0	3.8	4.4	우 수
자료 이용	5.0	5.0	4.8	4.9	4.8	매우 우수
총합계	5.0	4.1	4.0	4.1	4.4	우 수

■ 품질차원별 분석결과

작성절차	자체진단	외부진단			종합진단	품질평가 수준
		진단1	진단2	평균		
관련성	5.0	4.4	4.2	4.3	4.5	매우 우수
정확성	5.0	4.1	3.9	4.0	4.5	매우 우수
시의성/정시성	5.0	5.0	5.0	5.0	5.0	매우 우수
비교성	5.0	5.0	5.0	5.0	5.0	매우 우수
일관성	5.0	4.0	4.0	4.0	4.3	우 수
접근성/명확성	5.0	4.4	4.4	4.4	4.6	매우 우수
전체평점	5.0	4.5	4.4	4.5	4.7	매우 우수

[ 부록 B.13 ] 통계청 정기품질진단 결과(경제활동인구조사)

■ 종합만족도

	종합만족도		중요도 (%)	체감만족도와 상관계수
	5점 척도	100점 환산		
통계생산과정부문	4.19	83.8	30.00	
적절한 시기에 공표	4.17	83.4	16.50	0.686
예고된 일정에 공표	4.21	84.2	13.50	0.620
활용 편리성 부문	3.56	71.2	40.20	
제공방법/편제구성의 편리성	3.87	77.4	12.80	0.604
시계열 비교 편리	3.79	75.8	9.10	0.509
국가간 비교 편리	2.93	58.6	6.00	0.414
유의사항/관련개념/용어정의	3.64	72.8	12.30	0.593
내용충실성부문	3.75	75	29.80	
충분한 정보 제공	3.64	72.8	6.50	0.430
다양한 내용수록	3.64	72.8	9.00	0.506
통계의 신뢰성	3.96	79.2	14.40	0.640
종합만족도	3.76	75.2	100.00	

■ 작성절차별 진단결과

작성절차	자체 진단	외부진단			종합 진단	품질평가 수준
		진단1	진단2	평균		
통계작성기획 및 관리	5.0	3.7	5.0	4.3	4.6	매우 우수
모집단 및 표본설계	4.8	2.4	4.8	3.6	4.0	우 수
조사표 설계	4.7	3.7	4.0	3.8	4.1	우 수
현장조사 관리	5.0	4.0	4.2	4.1	4.4	우 수
자료처리 및 집계	4.8	3.0	4.5	3.8	4.1	우 수
자료 이용	4.9	3.9	4.8	4.4	4.5	매우우수
사후관리단계	5.0	4.0	4.0	4.0	4.3	우 수
총합계	4.9	3.5	4.3	3.9	4.2	우 수

■ 품질차원별 분석결과

작성절차	자체 진단	외부진단			종합진단	품질평가 수준
		진단1	진단2	평균		
관련성	4.8	3.6	4.0	3.8	4.1	우 수
정확성	4.8	3.4	4.4	3.9	4.2	우 수
시의성/정시성	5.0	4.0	5.0	4.5	4.7	매우우수
비교성	5.0	3.0	5.0	4.0	4.3	우 수
일관성	5.0	2.0	4.0	3.0	3.7	보 통
접근성/명확성	5.0	4.0	4.4	4.2	4.5	매우우수
전체평점	5.0	3.4	4.5	3.9	4.3	우 수

[ 부록 B.14 ] 통계청 정기품질진단 결과(사업체임금근로시간조사)

■ 종합만족도

	종합만족도		중요도 (%)	체감만족도와 상관계수
	5점 척도	100점 환산		
통계생산과정부문	3.76	75.2	28.67	-
모집단의 명확한 정의	3.76	75.2	6.33	0.451
조사대상의 정확한 정의	3.70	74.0	8.02	0.507
적절한 시기에 공표	3.74	74.8	9.42	0.550
예고된 일정에 공표	3.84	76.8	5.20	0.409
활용 편리성 부문	3.49	69.8	32.64	-
제공방법/편제구성의 편리성	3.62	72.4	10.68	0.585
시계열 비교 편리	3.67	73.4	8.40	0.519
국가간 비교 편리	3.16	63.2	4.74	0.390
유의사항/관련개념/용어정의	3.52	70.4	8.82	0.532
내용 충실성 부문	3.54	70.8	38.38	-
충분한 정보 제공	3.50	70.0	10.43	0.579
다양한 내용수록	3.49	69.8	7.50	0.491
통계의 정확성	3.52	70.4	9.21	0.544
통계의 신뢰성	3.66	73.2	11.24	0.601
종합만족도	3.60	72.0	100.00	

■ 작성절차별 진단결과

작성절차	자체 진단	외부진단			종합 진단	품질평가 수준
		진단1	진단2	평균		
통계작성기획 및 관리	4.6	4.0	4.7	4.4	4.4	우수
모집단 및 표본설계	4.6	4.2	4.8	4.5	4.5	매우우수
조사표 설계	4.7	4.3	4.7	4.5	4.6	매우우수
현장조사	4.5	4.3	4.8	4.6	4.6	매우우수
자료처리 및 집계	4.5	4.5	4.8	4.6	4.6	매우우수
자료 이용	4.5	4.4	4.5	4.4	4.5	매우우수
전체평점	4.5	4.3	4.7	4.5	4.5	매우우수

■ 품질차원별 분석결과

작성절차	자체진단	외부진단			종합진단	품질평가 수준
		진단1	진단2	평균		
관련성	4.6	4.4	4.9	4.6	4.6	매우우수
정확성	4.3	4.0	4.0	4.0	4.1	우수
시의성/정시성	4.5	4.0	4.5	4.3	4.3	우수
비교성	4.8	4.5	5.0	4.8	4.8	매우우수
일관성	4.5	4.0	4.0	4.0	4.2	우수
접근성/명확성	4.0	4.0	4.0	4.0	4.0	우수
전체평점	4.5	4.3	4.7	4.5	4.5	매우우수

< 부록 C >

[ 부록 C.1 ] 주요 국가통계작성기관

(2010. 08. 10. 현재)

구분	작성 기관	작성 통계수	작성통계
국가기 관	기획재 정부	6	공적개발원조실적통계, 국가채권, 국가채무, 국유재산현황, 통합재정 수지, 해외직접투자통계
	고용 노동부	17	고령자고용현황,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근로자건강진단실시상황 보고, 기업직업훈련실태조사, 기업체노동비용조사, 노사분규통계, 사 업체고용동향조사, 사업체기간제근로자현황조사, 사업체노동실태현 황, 사업체임금근로시간조사, 산업재해현황, 산재보험통계, 외국인근 로자(고용허가제)고용동향, 임금교섭타결현황, 장애인의무고용현황, 전국노동조합조직현황, 최저임금적용효과에관한실태조사
	농림 수산 식품부	17	과실류가공현황, 농기계보유현황, 농림업생산지수, 누에사육및양잠규 모현황, 도축검사보고, 등록어선통계, 배합사료생산실적및원료사용실 적, 버섯생산통계, 수산물가공업통계, 수출입수산물검사검역통계, 시 설채소온실현황및생산실적, 식품산업분야별원료소비실태조사, 여성 농업인실태조사, 우유및유제품생산소비상황, 채소류가공현황, 천해양 식어업권통계, 화훼류재배현황
	중소 기업청	8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상가건물임대차실태조사, 소상공인경기동향 조사, 신설법인동향, 장애인기업실태조사, 전국소상공인실태조사, 중 소기업수출통계, 중소기업실태조사
	지식 경제부	20	IT산업수출입통계, 공공기술이전사업화조사, 광산물생산량현황, 국내 바이오산업실태조사, 미시산업통계조사, 봉제업체실태조사, 부품소재 산업동향조사, 산업기술인력수급동향실태조사, 산업디자인통계조사, 선박건조량조사, 에너지사용량통계, 에너지총조사, 엔지니어링활동주 체 현황, 외국인직접투자통계, 우편물통계, 이터닝산업실태조사, 정 보통신기술산업(ICT)통계, 주요유통업체매출동향조사, 중소기업실 태조사, 한국인인체치수조사
	통계청	52	가계금융조사, 가계동향조사, 가축동향조사, 건설경기동향조사, 건설 업조사, 경기종합지수, 경제총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 광업제조업동 향조사, 광업제조업조사, 국가자산통계, 국내인구이동통계, 국제인구 이동통계, 기계수주동향조사, 기업활동조사, 농가경제조사, 농가판매 및구입가격조사, 농림어업인복지실태조사, 농림어업총조사, 농어업법 인조사, 농업면적조사, 농업조사, 농작물생산조사, 농축산물생산비조 사, 도소매업조사, 사교육비조사, 사망원인통계, 사이버쇼핑동향조사, 사회조사, 생명표 생활시간조사, 서비스업동향조사, 서비스업조사, 설비투자지수, 소비자물가조사, 양곡소비량조사, 여가경제조사, 어류 양식동향조사, 어업생산동향조사, 어업조사, 운수업조사, 인구동향조 사, 인구총조사, 장래가구추계, 장래인구추계, 전국사업체조사, 전 문·과학·기술서비스업조사, 전자상거래동향조사, 주택총조사, 지역 별고용조사, 지역소득, 통계인력및예산조사

구분	작성 기관	작성 통계수	작성통계
금융 기관	중소기업은행	3	중소제조업경기전망조사, 중소기업동향조사, 중소기업설비투자전망조사
	한국은행	14	국민계정, 국제수지통계, 국제투자대조표(IIP), 금융기관대출행태조사, 기업경기조사, 기업경영분석, 대외채무및대외채권, 산업연관표, 생산자물가조사, 소비자동향조사, 수출입물가조사, 자금순환표, 지급결제통계, 통화금융통계
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3	도시계획현황, 부동산거래현황, 전국지가변동률조사
협회	대한건설협회	5	건설업경영분석, 건설업임금실태조사, 국내건설수주동향조사, 완성공사원가통계, 종합건설업조사
	중소기업중앙회	3	월간중소기업경기전망조사, 중소기업기술통계조사, 중소기업직종별임금조사
	한국무역협회	4	SITC에의한무역통계, 기업물류비 실태조사, 수출산업경기전망조사, 수출산업실태조사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4	월별정보통신주요품목동향조사, 정보통신부문인력동향실태조사, 정보통신산업기업경기조사, 정보통신산업실태조사
기타기관	한국고용정보원	6	고용보험통계, 대출자직업이동경로조사, 산업직업별고용구조조사, 워크넷구인구직및취업동향, 청년패널조사, 한국노동패널조사
	한국전력거래소	4	가전기기보급률및가정용전력소비행태조사, 발전설비현황, 상용자가발전업체조사, 전력시장통계

[ 부록 C.2 ] 산업연관표의 기초자료 구성

부문	자료	작성기관
농림어업	작물통계, 농림통계연보, 농축산물표준소득, 축산물가격및수급자료, 벌꿀생산량, 임업통계연보, 해양수산물통계연보 특용작물생산실적, 농협조사월보, 임업통계연보	농림부, 농촌진흥청, 연연초생산조합중앙회, 축협중앙회, 양봉협회, 산림청, 해양수산부
광업	광산물수급현황자료, 원업생산량및 연평균단가자료	산업자원부, 건설교통부, 대한염업조합
제조업		
음식료품	농림통계연보, 산업총조사보고서, 사업체총조사보고서, 산출액(제일제당 삼양사 대한제당), 백삼 검사량, 인삼검사소 홍삼 검사량, 한국인삼공사생산액, 담배생산액(한국담배인삼공사PM코리아BAT코리아)	농림부, 통계청, 제일제당, 삼양사, 대한제당, 농협중앙회, 한국인삼공사, 한국담배인삼공사, PM코리아, BAT코리아
섬유 가죽제품	산업총조사보고서, 동양섬유 생산액	통계청, 동양섬유
목재 및 나무제품	산업총조사보고서	통계청
펄프 및 종이	동해펄프생산액, 팬아시아페이퍼코리아생산액, 산업총조사보고서	동해펄프, 팬아시아페이퍼코리아, 통계청
인쇄 출판 및 복제	산업총조사보고서, 동양섬유생산액, 한국조폐공사 인쇄 매출액	통계청, 광고연감(제일기획), 한국조폐공사
석유 석탄 제품	산업총조사보고서, 사업체총조사보고서	통계청
화학제품	산업총조사보고서, 생산량, 동양제철화학생산량, 사업체총조사보고서, 한국비료공업협회생산량, 농약공업협회생산액, 제약협회생산액	통계청, 한국석유화학공업협회, 동양제철화학, 한국비료공업협회, 농약공업협회, 제약협회
비금속광물제품	산업총조사보고서, 한국점토벽돌공업협동조합생산량 시멘트크링커매입액(한국시멘트대한시멘트) 포항종합제철자가소비분(석회)	통계청, 한국점토벽돌공업협동조합, 한국시멘트, 대한시멘트, 포항종합제철
제1차금속	산업총조사보고서	통계청
금속제품	산업총조사보고서, 임가공수입액산출액, 조폐공사생산액	통계청, 조폐공사
일반기계	산업총조사보고서	통계청
전기 및 전자기기	산업총조사보고서, 전자산업통계, 정보통신산업통계연보	통계청, 한국전자산업진흥회,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정밀기기	산업총조사보고서	통계청
수송장비	산업총조사보고서, 한국선박기관수리협회 수리수입액	통계청
가구 기타	산업총조사보고서, 국세청 외형거래액	통계청, 국세청
제조업제품		
전력가스열공급		
수도및 건설업		
전력 가스 열공급 수도	한국전력공사 전기판매수입(한전+타사), 총자가발전량	한국전력공사
서비스업		
도소매	총사업체통계조사보고서	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은행,

	유통실태및마진율조사,상품유통현황조사표 도소매업및서비스업통계조사보고서,양곡관리 특별회계,조달특별회계	통계청
음식점 및 숙박업	도소매업통계조사보고서, 국세청 외형거래액, 투입구조조사자료	통계청, 국세청,한국은행
운수 및 보관	철도통계연보,운수사업수익(서울지하철공사, 서울도시철도공사,대구지하철공사,부산교통공 단,인천지하철공사) 운수업통계조사보고서,송유관운영수익,한국도 로공사손익계산서 지자체일반회계경상적세외수입,국세청외형거 래액 무역항항만시설사용료징수결정액,지자체연안 항항만시설사용료징수결정액, 컨테이너부두에대한항만시설사용료 여객수입,화물운송수입(대한,아시아나),공항수 익,시설이용수익,정비용역수입, 지상조업수입,급유용역수입 건설교통통계연보,하역수입,컨테이너전용부두 컨테이너화물처리실적, 화물조업수입액,사업체기초통계조사보고서,투 입구조조사표,결산서 표본조사,지방자치특별회계결산서,수송품목별 수송량및거리자료 2000년산업연관표상배분품목,2003년상품유통 현황조사	한국철도공사, 서울지하철공 사, 서울도시철도공사,대구지 하철공사, 부산교통공단, 인 천지하철공사, 통계청,대한송유관공사,한국 도로공사,국세청, 대아고속해운,부관훼리,미래 고속등8개여객운송업체, 해양수산부, 한국컨테이너부 두공단,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한국 공항공사,인천국제공항공사, 아스공항,한국공항, 한국항만물류협회,부산항,광 양항,한국도로공사,국가교통 DB센터
통신 및 방송업	통신사업특별회계세입결산서,2001년국내택배 업체실태조사, 정보통신산업통계연보,광고연감 통신사업특별회계예산서,투입구조조사표,투입 내역조사표,결산서	정보통신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KT,데이콤,SK텔레콤,KTF,LG 텔레콤,KT네트워크,두루넷,드 림라인, 한국정보통신, 한국정 보기술, 케이에스넷,나이스정보통신, 한국무역정보통 신,KBS,MBC,SBS,북인천케이 블방송, 드림씨티방송, 한국케이블 TV,YTN미디어, 한국디지털위 성방송,디지털조선일보, 한국 경제TV
금융 및 보험	경상경비지출액,수수료수입액,각은행손익계산 서,대차대조표, 금융중개서비스료, 결산서및경비지출내역,표본조사,자금순환표,산 업별대출금,	한국은행,국세청,각은행,생명 보험사,손해보험사,증권회사, 증권거래서,한국증권전산, 증권예탁원,신용보증기금,기 술신용보증기금,주택신용보증

	<p>국세청과표자료(손익계산서), 생명보험및손해보험사손익계산서, 경비지급내역서, 표본조사, 국세청외형거래액, 분담금수입액, “산업별자금조달상황“, “산업별거래대금실적“</p>	<p>기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금융결제원, 한국자산관리공사,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외환심사팀</p>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p>2000년인구주택총조사, 기업경영분석, 서비스업통계조사보고서, 국세청과세표준자료 국세청외형거래액, 감정평가수익, 도시가계연보, 농가경제, 어가경제, 한국토지공사결산서, 투입구조조사자료, 2001년 서비스업총조사, 공공연구기관기술이전실적조사, 정보통신산업통계연보,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금융기관손익계산서, 한국방송광고공사결산서, 광고연감, 2003총광고비, 농림통계연보, 농산물생산비조사결과, 지도사업특별회계(농협중앙회), 결산서(농업기반공사, 산림조합중앙회(수협중앙회)지역조합), 투입구조조사자료 예.결산서, 산업총조사</p>	<p>통계청, 국세청, 한국감정평가협회, 한국토지공사, 한국은행, 산업자원부,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노동부, 금융감독원, 한국방송광고공사, 제일기획, 농림부, 농협중앙회, 농업기반공사, 산림조합중앙회(수협중앙회)지역조합, 축협중앙회, 중앙정부, 지방정부</p>
공공행정 및 국방	<p>세입세출결산보고서, 기금결산보고서, 정부출연기관결산서, 지방재정연감, 일반회계예산각목명세서, 특별회계예산각목명세서, 추가경정예산자료</p>	<p>중앙정부, 지방정부, 정부출연기관</p>
교육 및 보건	<p>교육통계연보, 예.결산서, 손익계산서(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결산보고서, 직업학교운영지원금, 노동백서, 고용보험통계연보, 새마을운동중앙회결산서, 연수수입, 과학기술연구개발활동조사결과, “2003병원경영분석“, 특별회계비용, 결산서, 기금결산보고서, 산재보험회계결산서, 과세표준외형거래액, 경상경비, 사업비, 기관운영비, “2003전국폐기물발생및처리현황“, “폐수종말처리시설운영현황(2003.12)“, “2003년하수종말처리시설운영관리실태분석결과“, “하수도통계(2004)“, “2003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통계“, “전국운영중인분뇨처리시설현황“</p>	<p>교육부, 중앙정부, 지방정부,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노동부, 새마을운동중앙회, 한국금융연수원, 한국증권연수원, 보험연수원, 한국생산성본부, 정부출연연구기관, 시도발전연구원, 국방부(국방과학연구소, 국방연구원, 군사편찬연구소, 국방품질관리소), 과학기술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대한적십자사, 한국건강관리협회, 한국한센복지협회(구대한나관리협회), 대한결핵협회, 국세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연금관리공단,</p>



	투입구조조사	중앙정부,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안전공단,사회복지공 동모금회, 환경부
사회 및 기타서비스	2003년세입세출결산보고서(일반회계),공공도 서관집계표 외형거래액 정보통신산업통계연보,산업총조사,영화통계,영 화연감통계 2001서비스업통계조사,정당별재산및수입지출 총괄내역, 결산서(대한체육회및가맹단체,시도지부,국민 체육진흥공단) 서비스업통계조사보고서 '결혼정보회사업계현황및실태보고서'	중앙정부,한국도서관협회 국세청 영화진흥위원회 선우
가설부문	투입구조조사,2000년가계외소비지출산출 액,2000년및2003년산출액, 기업경영분석자료	한국은행
<b>최종수요및 부가가치 소비및투자</b>	인구및주택센서스,도시가계연보,농림통계연보, 농업기본통계조사, 해양수산통계연보,어업기본통계조사,한국전력 통계,도시가스사업편람, 상수도통계,산업총조사보고서,수입통계,임업통 계연감, 농정주요지표(화훼종류별생산통계),"2003년한 국의사회지표(정보통신부문)", 2003년우리나라총가구수 시추탐사비자료	통계청,농림부,해양수산부,한 국전력,한국도시가스협회,환 경부,농림수산부, 석유공사,광업진흥공사
수출입	통관자료, 무역통계자료, 국제수지통계, 외환 통계	관세청, 한국은행
부가가치	투입구조조사,산업연관표,광공업통계조사보고 서,건설업통계조사보고서, 도소매업및서비스업통계조사보고서,운수업통 계조사보고서,농림통계연보, 해양수산통계연보,농축산물소득자료집,노동통 계연감,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국세통계연보,지방세정연감,세입세출결산,생산 세추계자료 지방정부결산서,특별회계결산서,기금결산보고 서	한국은행,국민계정,통계청,농 림부,해양수산부,농촌진흥청, 노동부 국세청,행정자치부,정부,한국 은행국민소득팀
<b>부속표</b>		
도소매마진표	총사업체통계조사보고서 유통실태및마진율조사,상품유통현황조사표	농수산물유통공사,한국은행, 통계청

	도소매업및서비스업통계조사보고서, 양곡관리특별회계,조달특별회계	
화물운임표	철도통계연보,운수사업수익(서울지하철공사, 서울도시철도공사,대구지하철공사,부산교통공 단,인천지하철공사) 운수업통계조사보고서,송유관운영수익,한국도 로공사손익계산서 지자체일반회계경상적세외수입,국세청외형거 래액 무역항항만시설사용료징수결정액,지자체연안 항항만시설사용료징수결정액, 컨테이너부두에대한항만시설사용료 여객수입,화물운송수입(대한,아시아나),공항수 익,시설이용수익,정비용역수입, 지상조업수입,급유용역수입 건설교통통계연보,하역수입,컨테이너전용부두 컨테이너화물처리실적, 화물조업수입액,사업체기초통계조사보고서,투 입구조조사표,결산서 표본조사,지방자치특별회계결산서,수송품목별 수송량및거리자료 2000년산업연관표상배분품목,2003년상품유통 현황조사	한국철도공사,서울지하철공 사,서울도시철도공사,대구지 하철공사,부산교통공단,인천 지하철공사, 통계청,대한송유관공사,한국 도로공사,국세청, 대아고속해운,부관훼리,미래 고속등8개여객운송업체, 해양수산부,한국컨테이너부두 공단,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한국 공항공사,인천국제공항공사, 아스공항,한국공항, 한국항만물류협회,부산항,광 양항,한국도로공사,국가교통 DB센터
고용표	사업체기초통계조사보고서,산업총조사보고서, 경제활동인구연보, 농어업총조사보고서,도소매업통계조사보고서, 서비스업통계조사보고서, 건설업통계조사보고서,운수업통계조사보고서, 농어가경제통계,교육통계연보, 농림통계연보,보건복지통계연보,노동통계연감, 통계연보,산업총조사, 서비스업조사,임업통계연보,한국전력통계	통계청, 교육인적자원부, 농 림부, 보건복지부, 노동부, 행 정자치부, 한국전력공사
고정자본형성표	업체별고정자본형성내역조사,자본계산업별배 분내역조사 산업총조사보고서,건설업통계조사보고서,운수 업통계조사보고서,기계수주통계 건설수주통계,농업기계연감,설비투자추계지표, 농림수산통계연보, 결산서(한국전력공사,한국가스공사,한국수자 원공사) 도소매업및서비스업통계조사보고서	한국은행, 통계청, 산업은행,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수자원공사
잔폐물 발생수요표	표본조사, 간접조사	한국은행
기초가격평가표		

[ 부록 C.3 ] 우리나라 주요 경제통계 작성 기관

기관	부문	종수	통계명
통계청 (39)	가계소비	4	가계동향조사, 농가경제조사, 가계금융조사, 어가경제조사
	건설	2	건설업조사, 건설경기동향조사
	경기	2	경기종합지수, 설비투자지수
	고용	2	경제활동인구조사, 지역별고용조사
	광공업	3	광업제조업조사, 광업제조업동향조사, 기계수주동향조사
	국민계정	1	국가자산통계
	기업경영	2	전국사업체조사, 기업활동조사
	농림	9	농림어업총조사, 농축산물생산비조사, 양곡소비량조사, 농업조사, 농어업법인조사, 농림어업인복지실태조사, 농업면적조사, 가축동향조사, 농작물생산조사
	도소매	3	도소매업조사, 사이버쇼핑동향조사, 전자상거래동향조사
	물가	2	소비자물가조사, 농가판매및구입가격조사
	서비스	4	서비스업조사, 경제총조사,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조사, 서비스업동향조사
	수산	3	어업조사, 어업생산동향조사, 어류양식동향조사
	주택	1	주택총조사
지역계정	1	지역소득	
한국은행	가계소비	1	가계금융조사
	경기	2	소비자동향조사, 기업경기조사
	국민계정	3	자금순환표, 산업연관표, 국민계정
	국제수지·외환	3	대외채무및대외채권, 국제투자대조표(IIP), 국제수지통계
	금융	3	지급결제통계, 금융기관대출행태조사, 통화금융통계
	기업경영	1	기업경영분석
	물가	2	수출입물가조사, 생산자물가조사
강원도청	고용	1	강원도취업여성실태조사
	기업경영	1	강원도사업체조사
	지역계정	1	강원도시군단위지역내총생산(GRDP)
경기도 부천시청	기업경영	1	부천시경제지표조사
경기도 여주군청	농림	1	여주군농업환경조사
경기도청 (3)	고용	1	경기도시군별고용조사
	기업경영	1	경기도사업체조사
	지역계정	1	6경기도시군단위지역내총생산(GRDP)
경상남도 창원시청	고용	1	경상남도창원시경제활동인구조사
	광공업	1	창원시광업제조업동향조사
	도소매	1	창원시서비스업동향조사
경상남도청	기업경영	1	경상남도사업체조사
	농림	1	경상남도시군별특화농업조사
	지역계정	1	경상남도시군단위지역내총생산(GRDP)
경상북도 김천시청	농림	1	김천시농업조사
경상북도 울진군청	농림	1	울진군농업조사
	수산	1	울진군어업조사
경상북도 청송군청	농림	1	청송군농업조사

송군청			
경상북도 포항시청	광공업	1	포항시광업제조업동향조사
경상북도청	기업경영	1	경상북도사업체조사
	정보통신	1	경상북도주력IT분야역량조사
	지역계정	1	경상북도시군단위지역내총생산(GRDP)
고용노동부	고용	7	고령자고용현황, 장애인의무고용현황, 외국인근로자(고용허가제)고용동향,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사업체고용동향조사, 사업체임금근로시간조사, 사업체기간제근로자현황조사,
	기업경영	2	기업체노동비용조사, 전국노동조합조직현황,
		3	기업직업훈련실태조사, 노사분규통계, 사업체노동실태현황
임금	2	임금교섭타결현황, 최저임금적용효과에관한실태조사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경영	2	대기업집단지정및채무보증현황, 시장구조분석
관세청	무역	2	수출입물류통계, 무역통계
광주광역시청	기업경영	1	광주광역시사업체조사
	지역계정	1	광주광역시자치구단위지역내총생산(GRDP)
교육과학기술부	고용	3	이공계인력국내외유입및유출실태조사, 이공계인력육성활용과처우등에대관한실태조사, 여성과학기술인력활용실태조사
	무역	1	기술무역통계조사
국민은행	물가	1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국세청	재정	1	국세통계
국토해양부	건설	6	건축허가및착공통계, 수문조사및홍수에보지점현황, 수자원현황, 도시재정비사업현황, 건축물통계, 도로현황
	주택	11	미분양주택현황보고, 주거실태조사, 주택보급률, 주택건설실적통계, 아파트주거환경통계, 택지에정지구지정및공급현황, 아파트실거래가가격지수, 수도권월세가격동향조사, 주택소유현황, 국민주택기금및주택분양보증현황, 임대주택통계
금융감독원	가계소비	1	가계금융조사
	금융	1	금융통계
금융위원회	금융	1	사금융이용실태조사
기획재정부	국제수지·외환	1	해외직접투자통계
	재정	4	통합재정수지, 국유재산현황, 국가채권, 국가채무
농림수산식품부	농림	13	식품산업분야별원료소비실태조사, 여성농업인실태조사, 채소류가공현황, 화훼류재배현황, 농림업생산지수, 우유및유제품생산소비현황, 도축검사보고, 배합사료생산실적및원료사용실적, 버섯생산통계, 시설채소온실현황및생산실적, 과실류가공현황, 누에사육및양잠규모현황, 농기계보유현황
	수산	4	수산물가공업통계, 천해양식어업권통계, 수출입수산물검사검역통계, 등록어선통계
농촌진흥청	농림	2	농업인의업무상질병및손상조사, 농산물소득조사
대구광역시	경기	1	대구광역시경기종합지수

청	기업경영	1	대구광역시사업체조사
	정보통신	1	대구IT/SW산업실태조사
	지역계정	1	대구광역시구군단위지역내총생산
대전광역시청	경기	1	대전광역시경기종합지수
	기업경영	1	대전광역시사업체조사
	지역계정	1	대전광역시자치구단위지역내총생산
대한건설협회	건설	4	국내건설수주동향조사, 완성공사원가통계, 건설업경영분석, 종합건설업조사,
	임금	1	건설업임금실태조사
대한설비건설협회	건설	1	설비건설업통계조사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건설	1	시설물유지관리업조사
대한전문건설협회	건설	1	전문건설업통계조사
대한측량협회	임금	1	측량업체임금실태조사
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	1	인터넷이용실태조사
보험개발원	금융	1	보험통계
부산광역시청	기업경영	1	부산광역시사업체조사
	지역계정	1	부산광역시구군단위지역내총생산
산림청	가계소비	1	임가경제조사
	농림	9	목재이용실태조사, 임산물생산비조사, 산불통계, 임업경영실태조사, 국가산림자원조사, 관상수시업상황조사, 임산물생산조사, 목재수급통계, 산림기본통계
서울특별시청	기업경영	1	서울특별시사업체조사
	지역계정	1	서울특별시구단위지역내총생산
수산협동조합중앙회	수산	2	영어자금소요액조사, 어업경영조사
시장경영진흥원	경기	1	시장경기동향조사
	도소매	1	전통시장및점포경영실태조사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	1	에너지수급통계
에너지관리공단	에너지	2	에너지사용및온실가스배출실태조사, 신재생에너지보급실적조사
여성가족부	고용	1	여성관리자패널조사
울산광역시청	기업경영	1	울산광역시사업체조사
	지역계정	1	울산광역시구군단위지역내총생산
인천광역시청	경기	1	인천광역시경기종합지수
	광공업	1	인천경제자유구역(IFEZ)사업체현황조사
	기업경영	1	인천광역시사업체조사
	서비스	1	인천서비스업동태조사
	지역계정	1	인천광역시구군단위지역내총생산

전라남도청	기업경영	1	전라남도사업체조사
	지역계정	1	전라남도시군단위지역내총생산(GRDP)
전라북도 군산시청	서비스	1	군산시 서비스업 동향조사
	고용	1	군산시경제활동인구조사
전라북도 김제시청	농림	1	김제시농업조사
전라북도 전주시청	고용	1	전주시경제활동인구조사
	서비스	1	전주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동향조사
전라북도청	경기	1	전라북도경기종합지수
	기업경영	1	전라북도사업체조사
	지역계정	1	전라북도시군단위지역내총생산(GRDP)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정보통신	1	국내기업 e-비즈니스와 IT활용조사
제주특별자치도청	경기	1	제주도경기종합지수
	기업경영	1	제주특별자치도사업체조사
	지역계정	1	제주특별자치도행정시단위지역내총생산(GRDP)
조달청	서비스	1	조달통계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정보통신	1	중소기업정보화수준조사
중소기업은행	경기	2	중소제조업설비투자전망조사, 중소기업경기전망조사
	기업경영	1	중소제조업동향조사
중소기업중앙회	경기	1	월간중소기업경기전망조사
	기업경영	1	중소기업기술통계조사
	임금	1	중소제조업직종별임금조사
중소기업청	경기	2	소상공인경기동향조사, 신설법인동향
	기업경영	4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장애인기업실태조사, 전국소상공인실태조사, 중소기업실태조사
	무역	1	중소기업수출통계
	물가	1	상가건물임대차실태조사
지식경제부	경기	1	미시산업통계조사
	고용	1	산업기술인력수급동향실태조사
	광공업	4	봉제업체실태조사, 선박건조량조사, 부품소재산업동향조사, 광산물생산량현황
	국제수지·외환	1	외국인직접투자통계
	도소매	2	중소유통업실태조사, 주요유통업체매출동향조사
	서비스	3	엔지니어링활동주체현황, 이러닝산업실태조사, 산업디자인통계조사
	에너지	2	에너지사용량통계, 에너지총조사
정보통신	3	우편물통계, IT산업수출입통계, 정보통신기술산업(ICT)통계	
축산물품질평가원	농림	1	축산물등급판정통계
충청남도 아산시청	광공업	1	아산시제조업실태조사
충청남도청	경기	1	충청남도경기종합지수

	기업경영	1	충청남도사업체조사
	지역계정	1	충청남도시군단위지역내총생산(GRDP)
충청북도 보은군청	농림	1	보은군주요소득작물및한우실태조사
충청북도 옥천군청	농림	1	옥천군주요농특산물및특구작물실태조사
충청북도청	경기	1	충청북도경기종합지수
	기업경영	1	충청북도사업체조사
	지역계정	1	충청북도시군단위지역내총생산(GRDP)
한국 RFID/USN협회	광공업	1	RFID/USN관련산업동향조사
한국가스공사	에너지	1	천연가스통계
한국거래소	금융	1	증권·파생상품시장통계
한국건설감리협회	임금	1	감리원임금실태조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설	1	건설공사비지수
한국고용정보원	고용	6	청년패널조사,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워크넷구인구직 및취업동향, 고용보험통계, 산업직업별고용구조조사, 한국노동패널조사
한국광물자원공사	광공업	1	광물자원매장량현황
한국금융투자협회	금융	1	펀드산업현황
한국기계산업진흥회	광공업	1	기계산업통계
한국노동연구원	기업경영	1	사업체패널조사
한국농어촌공사	농림	1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통계조사
한국로봇산업협회	광공업	1	로봇산업실태조사
한국무역협회	경기	1	수출산업경기전망조사
	기업경영	1	기업물류비실태조사
	무역	2	수출산업실태조사, SITC에의한무역통계
한국산업단지공단	광공업	4	국가산업단지입주기업체현황조사, 국가산업단지산업동향, 전국산업단지현황통계, 공장등록현황
한국산업은행	기업경영	1	주요기업의설비투자계획조사
한국생산성본부	기업경영	2	상장기업의부가가치분석, 노동생산성지수
한국석유공사	물가	1	석유제품가격통계
	에너지	1	석유수급통계
한국소프트	임금	1	소프트웨어기술자임금실태조사

웨어산업협회			
한국시설안전공단	건설	1	시설물정보현황
한국엔지니어링협회	기업경영	1	엔지니어링서비스업경영분석
	임금	1	엔지니어링업체임금실태조사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기업경영	1	여성기업실태조사
한국예탁결제원	금융	1	증권예탁통계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통신	5	개인인터넷이용자정보보호실태조사, 스팸수신량조사, 민간기업정보보호실태조사, 무선인터넷이용실태조사, 인터넷기반통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	3	장애인고용패널조사, 기업체장애인고용실태조사, 장애인구인구직및취업동향
한국전기공사협회	건설	2	전기공사업경영분석, 전기공사업통계조사
한국전기산업연구원	건설	1	전기공사비지수
한국전력거래소	가계소비	1	가전기기보급률및가정용전력소비행태조사
	에너지	3	상용자가발전업체조사, 전력시장통계, 발전설비현황
한국전력공사	에너지	2	전력소비행태분석, 한국전력통계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경기	1	정보통신산업기업경기조사
	고용	1	정보통신부문인력동향실태조사
	정보통신	2	월별정보통신주요품목동향조사, 정보통신산업실태조사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건설	1	정보통신공사업통계조사
	기업경영	1	정보통신공사업경영분석
한국조세연구원	가계소비	1	재정패널조사
한국주택금융공사	금융	2	주택금융및보금자리론수요실태조사, 주택금융및주택저당증권(MBS)통계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기업경영	1	인적자본기업패널조사
한국철강협회	광공업	1	철강통계조사
한국토지주택공사	건설	1	도시계획현황
	물가	1	전국지가변동률조사
해외건설협회	건설	1	해외건설수주통계
행정안전부	재정	2	지방세표작성보고, 지방세외수입징수실적
	정보통신	3	정보화통계조사, 정보격차지수및실태조사, 인터넷중독실태조사
환경부	에너지	1	온실가스배출통계



[ 부록 C. 4 ] 국가승인통계중 경제통계 현황

통계부문	통계명
가계소비(소득) (7)	가계동향조사, 농가경제조사, 가계금융조사, 어가경제조사, 임가경제조사, 가전기기 보급률 및 가정용 전력소비 행태조사, 재정패널조사
건설 (23)	건설업조사, 건축허가및착공통계, 수문조사및홍수에보지점현황, 수자원현황, 국내건설수주동향조사, 완성공사원가통계, 건설업경영분석, 종합건설업조사, 전기공사비지수, 시설물유지관리업조사, 시설물정보현황, 해외건설수주통계, 도시계획현황, 건설공사비지수, 정보통신공사업통계조사, 전기공사업경영분석, 전기공사업통계조사, 설비건설업통계조사, 전문건설업통계조사, 도시재정비사업현황, 건축물통계, 도로현황, 건설경기동향조사
경기 (20)	경기종합지수, 인천광역시경기종합지수, 충청북도경기종합지수, 전라북도경기종합지수, 정보통신산업기업경기조사, 수출산업경기전망조사, 월간중소기업경기전망조사, 시장경기동향조사, 중소기업설비투자전망조사, 중소기업경기전망조사, 소비자동향조사, 기업경기조사, 제주도경기종합지수, 충청남도경기종합지수, 대전광역시경기종합지수, 대구광역시경기종합지수, 미시산업통계조사, 소상공인경기동향조사, 신설법인동향, 설비투자지수
고용 (29)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패널조사,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워크넷구인구직및취업동향, 고용보험통계, 산업직업별고용구조조사, 강원도취업여성실태조사, 경기도시군별고용조사, 여성관리자패널조사, 고령자고용현황, 장애인고용패널조사, 기업체장애인고용실태조사, 장애인구인구직및취업동향, 장애인의무고용현황, 외국인근로자(고용허가제)고용동향,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사업체고용동향조사, 사업체임금근로시간조사, 산업기술인력수급동향실태조사, 이공계인력국내외유입및유출실태조사, 이공계인력육성활용과처우등에관한실태조사, 경상남도창원시경제활동인구조사, 군산시경제활동인구조사, 전주시경제활동인구조사, 정보통신부문인력동향실태조사, 한국노동패널조사, 사업체기간제근로자현황조사, 여성과학기술인력활용실태조사, 지역별고용조사
광공업 (20)	광업제조업조사, 창원시광업·제조업동향조사, 포항시광업제조업동향조사, 로봇산업실태조사, 국가산업단지입주기업체현황조사, 국가산업단지산업동향, 전국산업단지현황통계, 공장등록현황, 광물자원매장량현황, 기계산업통계, 철강통계조사, 인천경제자유구역(IFEZ)사업체현황조사, 아산시제조업실태조사, RFID/USN관련산업동향조사, 봉제업체실태조사, 선박건조량조사, 부품소재산업동향조사, 광업제조업동향조사, 광산물생산량현황, 기계수주동향조사
국민계정(4)	국가자산통계, 자금순환표, 산업연관표, 국민계정
국제수지, 외환 (5)	해외직접투자통계, 대외채무및대외채권, 외국인직접투자통계, 국제투자대조표(IIP), 국제수지통계

금융 (11)	사금융이용실태조사, 보험통계, 금융통계, 증권예탁통계, 증권·파생상품시장 통계, 펀드산업현황, 주택금융및보급자리론수요실태조사, 주택금융 및 주택저당증권(MBS) 통계, 지급결제통계, 금융기관대출행태조사, 통화금융통계
기업경영 (42)	전국사업체조사, 기업활동조사, 기업체노동비용조사, 전국노동조합조직현황, 기업직업훈련실태조사,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광주광역시사업체조사, 인천광역시사업체조사, 대구광역시사업체조사, 부산광역시사업체조사, 서울특별시사업체조사, 대기업집단지정및채무보증현황, 시장구조분석, 장애인기업실태조사, 전국소상공인실태조사, 부천시경제지표조사, 여성기업실태조사, 인적자본기업패널조사, 엔지니어링서비스업경영분석, 정보통신공사업경영분석, 기업물류비 실태조사, 상장기업의부가가치분석, 노동생산성지수, 중소기업기술통계조사, 사업체패널조사, 중소기업동향조사, 주요기업의설비투자계획조사, 경상북도사업체조사, 전라남도사업체조사, 전라북도사업체조사, 충청남도사업체조사, 충청북도사업체조사, 강원도사업체조사, 경기도사업체조사, 울산광역시사업체조사, 대전광역시사업체조사, 기업경영분석, 제주특별자치도사업체조사, 경상남도사업체조사, 중소기업실태조사, 노사분규통계, 사업체노동실태현황
농림 (43)	농림어업총조사, 농축산물생산비조사, 양곡소비량조사, 농업조사, 농어업법인조사, 경상남도시군별특화농업조사, 식품산업분야별원료소비실태조사, 여성농업인실태조사, 채소류가공현황, 화훼류재배현황, 농림업생산지수, 우유및유제품생산소비상황, 도축검사보고, 배합사료생산실적및원료사용실적, 버섯생산통계, 시설채소온실현황및생산실적, 과실류가공현황, 누에사육및양잠규모현황, 농기계보유현황, 농업인의업무상질병및손상조사, 농산물소득조사, 목재이용실태조사, 임산물생산비조사, 산불통계, 임업경영실태조사, 국가산림자원조사, 관상수사업상황조사, 임산물생산조사, 목재수급통계, 산림기본통계, 농림어업인복지실태조사, 농업면적조사, 울진군농업조사, 청송군농업조사, 김천시농업조사, 김제시농업조사, 옥천군주요농특산물및특구작물실태조사, 보은군주요소득작물및한우실태조사, 여주군 농업환경조사, 축산물등급판정통계,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통계조사, 가축동향조사, 농작물생산조사
도소매 (7)	도소매업조사, 사이버쇼핑동향조사, 전통시장및점포경영실태조사, 창원시서비스업동향조사, 중소기업통업실태조사, 주요유통업체매출동향조사, 전자상거래동향조사
무역 (6)	기술무역통계조사, 수출산업실태조사, SITC에의한무역통계, 중소기업수출통계, 수출입물류통계, 무역통계
물가 (8)	소비자물가조사, 석유제품가격통계, 전국지가변동률조사,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수출입물가조사, 생산자물가조사,

	상가건물임대차실태조사, 농가판매및구입가격조사
서비스 (11)	서비스업조사, 군산시 서비스업 동향조사, 전주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동향조사, 인천서비스업동태조사, 조달통계, 엔지니어링활동주체 현황, 이터닝산업실태조사, 산업디자인통계조사, 경제총조사,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조사, 서비스업동향조사
수산 (10)	어업조사, 수산물가공업통계, 천해양식어업권통계, 수출입수산물검사검역통계, 울진군어업조사, 영어자금소요액조사, 어업경영조사, 등록어선통계, 어업생산동향조사, 어류양식동향조사
에너지 (13)	온실가스배출통계, 전력소비행태분석, 천연가스통계, 에너지사용및온실가스배출실태조사, 상용자가발전업체조사, 전력시장통계, 발전설비현황, 에너지수급통계, 신재생에너지보급실적조사, 석유수급통계, 한국전력통계, 에너지사용량통계, 에너지총조사
임금 (8)	임금교섭타결현황, 중소기업제조업직종별임금조사, 엔지니어링업체임금실태조사, 측량업체임금실태조사, 감리원임금실태조사, 소프트웨어기술자임금실태조사, 건설업임금실태조사, 최저임금적용효과에관한실태조사
재정 (7)	통합재정수지, 국유재산현황, 국가채권, 국세통계, 지방세표작성보고, 지방세외수입징수실적, 국가채무
정보통신 (18)	정보화통계조사, 정보격차지수및실태조사, 인터넷중독실태조사, 우편물통계, IT산업수출입통계, 국내기업e-비즈니스와IT활용조사, 월별정보통신주요품목동향조사, 정보통신산업실태조사, 개인인터넷이용자정보보호실태조사, 스팸수신량조사, 민간기업정보보호실태조사, 무선인터넷이용실태조사, 인터넷기반통계, 경상북도주력IT분야역량조사, 대구IT/SW산업실태조사, 인터넷이용실태조사, 중소기업정보화수준조사, 정보통신기술산업(ICT)통계
주택 (12)	주택총조사, 미분양주택현황보고, 주거실태조사, 주택보급률, 주택건설실적통계, 아파트주거환경통계, 택지예정지구지정및공급현황, 아파트실거래가격지수, 수도권월세가격동향조사, 주택소유현황, 국민주택기금및주택분양보증현황, 임대주택통계
지역계정 (17)	지역소득, 울산광역시구군단위지역내총생산, 강원도시군단위지역내총생산(GRDP), 제주특별자치도행정시단위지역내총생산(GRDP), 경상남도시군단위지역내총생산(GRDP), 경상북도시군단위지역내총생산(GRDP), 전라남도시군단위지역내총생산(GRDP), 전라북도시군단위지역내총생산(GRDP), 충청남도시군단위지역내총생산(GRDP), 충청북도시군단위지역내총생산(GRDP), 경기도시군단위지역내총생산(GRDP), 대전광역시자치구단위지역내총생산, 부산광역시구군단위지역내총생산, 대구광역시구군단위지역내총생산, 광주광역시자치구단위지역내총생산(GRDP), 인천광역시시군구단위지역내총생산, 서울특별시구단위지역내총생산